발 간 등 록 번 호
11-1192000-000123-10

글로벌해양강국!

2019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Ⅱ
(세부사업계획)

(수산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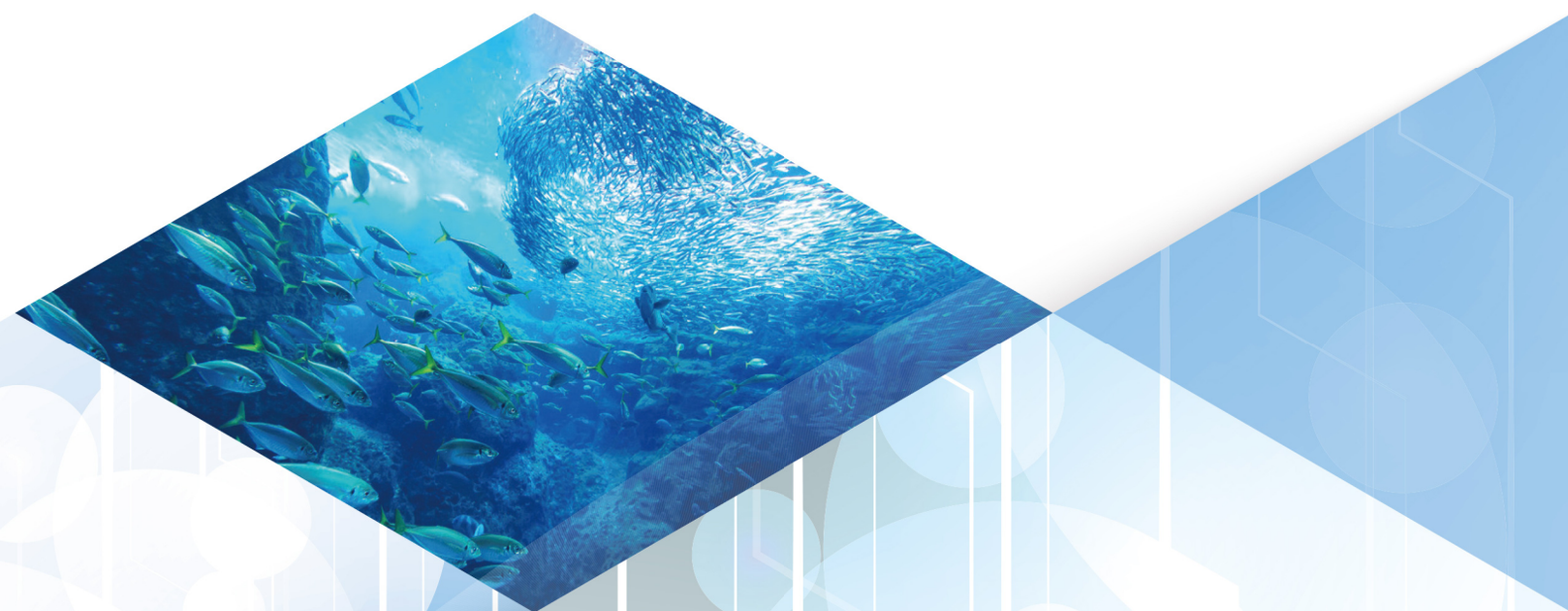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목차

수산분야 ····· 1

1. 유류피해지역 지원 ····· 3
   ① 오염어장 환경개선 ····· 3
   ② 수산종자발생장 환경개선 ····· 37
2.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 71
   ① 어업경영통계조사 ····· 71
   ② 단위수협 감사업무 지원 ····· 76
   ③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운영지원 ····· 82
   ④ 어업용면세유공급시설 개선 ····· 88
3. 어업협정이행 ····· 94
4. 어업정보통신지원 ····· 99
5.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 107
   ① 지역별 창업투자 지원센터 ····· 107
   ②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지원 ····· 112
6. 수산연구시설 및 선박관리(R&D) ····· 126
   ① 수산과학관 운영 ····· 126
7. 수산정보화 ····· 132
8. 천일염산업육성 ····· 149
   ① 천일염산업육성(지자체) ····· 149
   ② 천일염 소비촉진홍보 ····· 200
9. 수산물해외시장개척 ····· 205
   ① 수산물해외시장개척(총괄) ····· 205
   ② 물김세척수정수시설 ····· 215
10. 수산물 물류 표준화 ····· 230
11. 노량진수산시장 건립 ····· 237
12.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지원 ····· 245
13.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 254
14. 수산물 위생관리 ····· 264
   ① 수산생물질병관리 ····· 264

② 유해생물구제(적조, 기생충·쏙) ····· 278
③ 유해생물구제(해파리) ····· 294
15.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 313
16.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지원(시범지역) 사업 ····· 327
17. 친환경양식어업육성 ····· 348
①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 348
② 가두리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 ····· 361
③ 2019년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시행지침 ····· 372
④ 고수온대응지원사업 ····· 392
18. 친환경 어구보급 ····· 403
19.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 425
20. 김 제품의 CODEX 규격화 연구사업 ····· 451
21. 내수면자원조성 ····· 456
①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 456
②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 ····· 464
③ 뱀장어 어도개발 ····· 475
④ 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 ····· 481
⑤ 어도 개보수사업 ····· 492
⑥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 501
⑦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 ····· 508
⑧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 520
⑨ 내수면단체 활성화 지원 ····· 527
⑩ 내수면유통판매센터 지원 ····· 533
22. 자율관리어업육성(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비 지원사업) ····· 543
23.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 550
① 수산자원 증대 ····· 550
② 바다숲 조성·관리 ····· 563
③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 578
24. 낚시산업 선진화 ····· 585
①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 585

목차

②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 601
25.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구축(어선어업생산자단체 육성사업) ····· 611
26. 어촌6차산업화지원 ····· 642
①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 ····· 642
②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 ····· 659
③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 666
④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 710
⑤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 ····· 723
27. 어촌발전 기반조성 지원 ····· 732
28. 귀어귀촌 활성화 ····· 740
①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 740
② 귀어귀촌 홈스테이 ····· 746
③ 귀어학교 개설 ····· 766
④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 776
29.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제주 포함) ····· 796
30.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 ····· 902
31. 양식어업재해보험 ····· 936
32. 어선원 및 어선보험 ····· 956
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 956
② 어선원보험 재활급여(시범사업) ····· 967
33. 어업인 안전보험 ····· 995
34. 어업인삶의질향상 ····· 1002
① 낙도지역 어업인 안점쉼터 조성 ····· 1002
② 어업도우미 지원 ····· 1018
③ 가사도우미 지원 ····· 1036
35. 원양어업활성화 ····· 1056
① 해외어장자원조사 ····· 1056
② 옵서버 승선경비지원 ····· 1080
③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구축 운영 ····· 1088
④ 해외선원묘지 관리 ····· 1102

⑤ 원양산업 통계조사 ····· 1108
⑥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지원 ····· 1116
⑦ 국제수산협상전문가 육성관리 ····· 1124
⑧ 원양산업 관련 회의 개최 ····· 1129
36.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 1135
①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지원(WFU Pilot Program 운영) ····· 1135
②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 1145
③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지원(WFU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 1150
37. 연안국과의 협력(ODA) ····· 1160
① 2019년도 연안 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 1160
② 2019년도 연안·도서국 해양수산 기술 및 정책연수교육사업 ····· 1167
38.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 1175
① 2019년도 근해어선 감척 ····· 1175
② 2019년도 연안어선 감척 ····· 1216
39. 어촌뉴딜 300 ····· 1247
① 어촌뉴딜을 통한 혁신어촌 조성 ····· 1247
40. 청년어촌정착지원 ····· 1255
41.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지자체) ····· 1291
42.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 1328
①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 1328
②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시범사업 ····· 1370
③ 양식장 용수관리 ····· 1406
④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 1419
43. 어업기반정비 ····· 1428
① 지자체관리어항건설 ····· 1428
② 소형어선인양기설치 ····· 1441
③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 1453
④ 인공어초 사업 ····· 1465
⑤ 수산종자관리 사업 ····· 1473
⑥ 양식어장관리 ····· 1479

목차

⑦ 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 1496
⑧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 1507
⑨ 내수면어업생산시설 ····· 1521
⑩ 멸종위기어종 생태계 복원 ····· 1531
⑪ 어업인 편익시설 조성 ····· 1541
44.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 1553
① 수산물유통시설건립 ····· 1553
② 수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 1567
③ 수산식품특화단지조성개보수 ····· 1577
45. 수산물가공산업육성(제주 포함) ····· 1613
46.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 1630
47.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 1637
48.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조성 ····· 1652
49.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지원 ····· 1662
①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 1662
② 청정 위판모델 구축 ····· 1673
50. 수산어업행정지원 ····· 1682
51. 국가어항(제주) ····· 1697
52. 폐업지원금 ····· 1713
53. 피해보전직불금 ····· 1749
5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 1787
55. 양식시설현대화자금지원 ····· 1839
56.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1862
57.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구.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 1870

2019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서
(세부사업계획)

수산분야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1 유류피해지역 지원

① 오염어장 환경개선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지원총괄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H/S피해지원단 지원총괄팀	팀 장 윤두한 사무관 조상원	044-200-6020 044-200-602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장의 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통하여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생계지원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어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구축으로 국민에게 양질 수산물의 지속적 공급

2. 근거법령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및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추정)		
마을어업수역 환경개선	1,021ha (1억원당 15ha)	1,256ha	1,256ha	1,020ha	익년 2월	사업추진 후 환경개선 면적 산정
어선어업수역 환경개선	568톤 (1억원당 30톤)	612톤	384톤	540톤	익년 2월	사업추진 후 폐기물 반출량 산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합 계	**130,400**	**10,500**	**10,500**	-	
- 국 비	**130,400**	**10,500**	**10,500**	-	'19년 종료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추진

○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 : 시·도지사

- 시·도지사의 관리 하에 시장·군수에게 위임 가능

○ 사업시행(위탁) : 시·군 또는 수탁기관

- 시장·군수는「수산자원관리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회,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가능

※ 위탁수수료는 사업관리 위탁에 따른 대가로 총사업비의 9%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며, 동 비율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위탁기관은 본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기간 1년 이상으로 설정가능

- 다만, 어업인 단순 인력만으로 작업이 가능한 공정(패각제거, 잡석제거, 유생착저시설 등)에 한하여 시·군 또는 위탁기관에서 공공근로 형식으로 어업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

- 국립수산과학원장(지역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해양수산청장, 수협중앙회장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추진절차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시·도)	→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시·도)	→	지방자치단체 (시·도)
사업수요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세부사업계획 시달 및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시·군)		사업결과 보고
9월~12월		9월~익년1월		익년1월~2월		익년2월~11월		익년11~12월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대상 지역 및 용어 정의

- 사업대상지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고시(국토해양부 제2010-923호, 2010.12.31.)」 지역 중 유류피해를 입은 어장과 연근해 주요 어선어업 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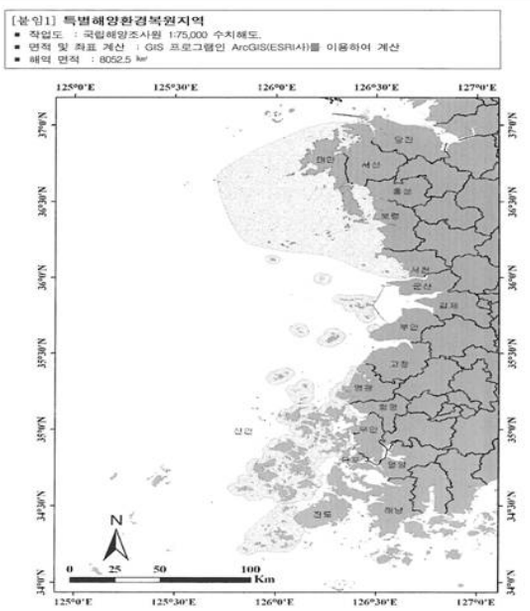

행정구역	해안시군구(읍면리)	면적(㎢)
충청남도	당진군 (장고항리, 고대리, 한진리 해안)	30.9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 홍성군 (대산항 서쪽끝단~천수만 북쪽끝단 해안 및 외해역)	4,469.7
	서천군	234.1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483.0
	부안군 (위도면, 변산면)	195.5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성산1리~염산면 옥실리 남단, 낙월면)	387.9
	무안군 (대사리 백학 북단~현경면 해운리 서단)	91.5
	신안군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압해면)	1,495.7
	진도군 (조도면, 지산면, 진도읍)	664.2

- 용어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마을어업수역 등”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장 및 그 어장과 연접한(면허어장 면적의 20%범위 내) 주변을 말함

· “어선어업수역”은 수산업법 제41조제3항1호 및 3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을 하는 어장과 연근해어선이 조업활동을 하는 수역을 말하며, 항만(어항 포함)구역을 제외함

○ 지원대상 세부사업

- 마을어업수역 등 환경개선

· 생물학적, 물리적(경운, 어장평탄, 투석, 모래살포, 인공어초 등), 화학적 방법(저질개선제 살포) 등 수산생물의 최적합 서식환경 조성

※ 투석은 1,000㎥, 모래살포는 900㎥ 이상 규모로 설계하여야 한다.

※ 인공어초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인공어초시설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 어장 등에 설치되는 해삼 전용어초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마을어장 등에 설치되는 해삼 전용어초는 일반어초로 등록된 것에 한하며, 동 어초의 적지조사는 퇴적환경, 수질환경, 대상생물, 먹이생물 및 지형·지질조사(기존 조사결과가 있을 경우 적지조사로 갈음 가능)를 실시한 후 정부 등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폐지주 제거, 침체어망·어구, 어장 폐기물 등 수거·처리

· 어장정리(잡석제거), 채묘완류시설, 어장정리(어장구획표지) 등을 포함하며, 수산생물 수산종자구입 및 살포(방류) 사업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어선어업수역 환경개선

· 유류피해오염어장 내 폐어업기자재(침체어망·어구 등), 어장폐기물 등 수거·처리

○ 사업비의 사용용도

- 마을어업수역 등 환경개선 사업비

- 어선어업수역의 폐어업 기자재 수거사업비 및 처리비

- 기타 설계비, 장비임대료, 사업시행 전 어업인 교육비용 등 사업목적과 부합되는 비용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연도 잔여사업비를 활용하여 사업대상 후보지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입금(수입이자, 고철 매각수익 등)은 별도항목으로 표시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지원 우선순위

- 시·도(시·군)별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을 참조하여 「지역별·연차별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지역별·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지역 선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필요시 전문연구기관의 의견 등 참조)

· '07년 유류사고 이전대비 수산물 생산이 저하된 지역
· 최적품종 적지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
·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의 생계지원 효과가 큰 지역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 등 의지가 높은 지역

○ 지원 의무사항

- 마을어업수역 등 환경개선 대상 어촌계에 대해서는 사업 전 세부사업계획 교육실시

※ 마을어업수역 등 환경개선사업 실시 어장에 대해서는 <서식6> 작업일지 작성

- 우선적지로 선정된 어장은 사업 종료 후 보존기간(3년) 설정

※ 시·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생산량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및 조건 : 자치단체경상보조, 국고 100%

○ 사업 의무량

- 마을어업수역 등 환경개선사업 : 사업비 1억원 당 15ha 이상
- 어선어업수역 폐어업기자재 수거사업 : 사업비 1억원 당 30톤 이상

4. 사업집행 방법

○ 사업추진 기관 및 선정기준

조사·연구·진단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어장환경개선 용역추진	→	사업평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		엔지니어링등록업체 기술사사무소		어장정화정비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해양수산부 또는 지정기관, 해당지자체

ㅇ 적지조사·연구·진단

- 적지조사·연구·진단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에 위임할 수 있음
- 사업집행주체(시·도)는 유류피해지역 어장복원을 위해 차년도 사업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지조사·연구·진단을 실시하여 복원 및 관리방향을 설정하는 결과물을 도출하여 사업에 적용
- 사업의 조속추진을 위해 시·군에서 사전 적지조사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사업지 선정 가능(단, 마을어업수역 사업 중 주 공정이 폐지주 제거 및 폐기물 수거 일 경우 적지진단 조사 면제 가능)
-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우선적지는 타 사업후보지 보다 우선하여 시행

ㅇ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해양 분야의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해양 및 수산양식 기술사 개설등록업체

· 자격증빙서류(엔지니어링신고필증 또는 해양 및 수산양식기술사자격증, 실적증명서 등)

- 사업시행자는 여러 개의 사업장 또는 동일한 공정을 묶어서 발주, 원자재를 관급으로 공급하는 등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ㅇ 어장환경(오염어장)개선 용역업체 자격

- 「어장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한 업체

· 자격증빙서류(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 및 장비보유 또는 임차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해양수거업”으로 등록한 업체

· 자격증빙서류(폐기물해양수거업등록증 및 장비보유현황, 실적증명서 등)

ㅇ 사업평가 기관

-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국·공립 연구 및 평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소속 수산사무소, 전문연구소, 대학교, 환경평가대행업체 등

○ 사업 추진절차

적지조사· 연구 · 진단

○ **조사 · 연구 · 진단기관 선정**
○ 대상수역 어업실태 및 어장환경조사
○ 사업대상 후보지 및 사업순위 선정
※ 국립수산과학원의 모니터링 자료 인용 가능

↓

실시설계 및 계약체결

○ 착수전 어업인 간담회 개최(현장실태 정보 취득)
○ **사업장별 실시설계**(작업 및 폐기물처리 별도설계)
- 실시설계 전문업체 선정
- 실시설계 감독
※ 해양수산부 어장환경개선사업 표준설계기준과 갯벌의 모래 유실 방지 및 유용생물 서식장 복원 매뉴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
○ 시공사 선정(공개입찰)
- 공개입찰 후 계약 체결(용역업체 및 폐기물처리 업체)

↓

어장환경개선 용역수행

○ 착수전 사업설명회 개최(민원발생 최소화)
○ 시공사 착수계 접수
○ **어장환경개선사업 실시**(마을어업수역 등, 어선어업수역)
- 현장점검, 폐기물중간반출
○ 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반출(발주기관)
- 신고처 : 관할지자체
- 입 회 : 용역감독관
○ 선금 지급(시공사 요청 시)

↓

사업 종료

○ 시공사 준공계, 준공검사원 접수 및 준공검사
- 준공내역서, 정산내역서, 기타증빙서 접수
○ 준공금 정산 및 정산내역서 통보
○ 준공금 신청 및 준공금 지급
○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

사업 평가

○ 평가업체 선정(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전문연구소 등)
○ 대상사업장 어장환경조사
- 조사항목 기준 :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 단위면적당 생산량 조사 · 분석
○ 어장환경개선사업 평가결과 보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추진절차

○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업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집행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위탁사업자 포함)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위탁시 국고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어장환경 복원계획 및 특별해양환경 복원계획 수립

- 사업평가기관으로부터의 대상지선정 및 사업평가 결과 검토

○ 시·도 사업신청서 검토 및 사업비 배정기준 수립

- 현지 실태파악 및 관계자 협의회(워크숍) 개최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

○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시·군별 사업비 배정 및 사업우선 순위 지역 검토·확정

시·군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소요량을 파악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후보지를 대상으로 어장환경 진단 및 평가 결과서를 바탕으로 사업비 배정 및 사업우선후보지를 선정할 것

3.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분기별로 자금 배정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기타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가재정법」등 제 규정 준수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배정 요청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서 교부 결정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설계서),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 기타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가재정법」등 제 규정 준수

○ 사업집행주체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4.1 세부계획수립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작성한 세부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사업평가 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 전·후 효과조사 추진

○ 유류피해 정도, 시·도별 신청상황 및 예산확보 추이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물량 배정

시·도

○ 시장·군수부터 제출된 사업세부지침 검토

○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세부사업계획을 근거로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

- 동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지원대상 세부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반드시 명시

○ 시·도지사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사업평가기관(추후 결정하여 통보)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제공

○ 지역 어업인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는 사업비 배정 지양

- 당해연도 사업비를 이미 배정하여 내시변경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사업비 배정 축소 또는 미배정

○ 기타 사업자 선정절차 및 선정방식 등은 관련법령 준수

시·군

○ 시·도지사가 시달한 세부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사업 세부지침 작성·시행

○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고용 시에는 취약계층이 우선 채용 될 수 있도록 검토·조치

○ 사업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통해 선정

- 사업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 등 사업실시는 해당사업 성격을 고려, 수산증·양식, 어장환경분야 전문가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기관(단체·업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어선 및 어업인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간 공동도급을 구성,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추진 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사업평가기관(추후 결정하여 통보)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제공

○ 지역어업인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곤란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사업비 배정 지양

○ 기타 사업자 선정절차 및 선정방식 등은 관련법령 준수

국립수산과학원

○ 사업대상지 적지 선정을 위한 조사·검토·평가에 협조

○ 사업대상 지역 선정 시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협의회에 참석, 의견 제시

○ 가능한 사업설계 시에도 참여하여 사업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협조

위탁받은 기관

○ 사업개요 및 목적, 일반현황, 추진방향 및 부문별 세부계획, 기대효과, 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지자체’, ‘용역수행사’, ‘어업인’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를 위탁기관(지자체)에 보고

- ‘용역수행사’가 원활히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실정과 지역 어업인의 민원이나 어장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추진 계획을 변경할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설계변경 검토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용역업체

○ 발주기관(위탁기관 포함)이 시달한 세부사업실시계획(과업지시서 포함)을 기준으로 착수계획을 수립·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착수 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어업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착수계획 수립

○ 인명, 장비 등 안전관련 보험가입 및 어업인 대상 사업홍보 계획 수립

4.2 시행단계

○ 추진 절차

- 사전조사·연구·진단 : 국립수산과학원, 지역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해양수산분야 엔지니어링등록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 용역수행 :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업체 또는 「어선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어선 등을 활용

사전조사 및 진단

○ 대상수역 어장환경, 문헌조사 결과, 전문가 및 어업인 자문을 통한 사업대상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과 현재 어장상태를 파악하여 사업추진 공정 및 순위 결정(해양수산부, 시·도와 협의하여 추진)

○ 진단 및 평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역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에 위임 가능

※ 국립수산과학원의 모니터링 자료 인용하여 진단・평가 가능

조사·설계

ㅇ 대상수역 어업실태 : 어업종류, 어장면적, 시설(살포)량, 살포 및 채포시기 등

ㅇ 사업내용, 사업시기, 추진방법, 사업실시설계, 소요경비 내역

※ 해양수산부 어장환경개선 표준설계기준과 갯벌의 모래유실 방지 및 유용생물 서식장 복원 매뉴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표준품셈 및 설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

ㅇ 사업대상지의 오·폐기물 실태 및 수거·인양된 오폐기물의 처리방안

ㅇ 기타 어장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내용

ㅇ 사업대상지 또는 사업방식 결정전 국립수산과학원·사업평가기관 등 관계기관 및 지역어업인과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성과 제고

ㅇ 사업계획 수립

-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어장환경개선 방안, 폐어업기자재 수거물량, 투입선단,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을 기초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을 것

○ **오염어장 환경개선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수행절차**

1. 현장조사 준비
   ① 조사 대상 해역 세부 결정
   ② 문헌·통계자료 분석
      ⇨ **조사 대상 해역에 대한 조업현황, 어업권·양식장 및 인공어초의 분포, 해저케이블의 매설, 수심 등 확인**
   ③ 현장조사 행정공문 발송
2. 현장 실태조사
   ① 실 어업권 등 확인
   ② 어업인 간담회 및 행정관계자 탐문·설문조사
      ⇨ **조사대상구역 재확정, 사업기간(금어기 등) 조사**
   ※ 현장 실태조사 이후 전문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현장 조사 실시
3. 현장 표본조사
   ① 인양틀 예인조사
   ② 양방향 음파 탐사기 조사
   ③ 잠수조사
   ④ 육안확인조사(마을어업수역, 수산종자(종패)어장)
   ※ 현장 표본조사 시 주안점
   저질의 상태, 어업폐기물의 분포율, 어업폐기물의 종류 등에 따라서 사업방안을 고려
      ⇨ **실제 사업 시 투입선박 및 투입장비의 규모를 결정**
4. 자료 분석
   ① 현장 탐문·설문조사 자료정리 및 분석
   ② 현장 표본조사 자료정리 및 분석
   ③ 사업대상지 협의 및 선정
5. 현장조사 자료집 및 사진첩 작성
6. 사업 실시설계도서 작성**(어장환경개선사업 표준설계기준 준용)**
   ① 물량표 작성 ⇨ 사업량 산출
   ② 사업설계도 작성 ⇨ 사업대상 해역 확정
   ③ 설계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작성
   ④ 적용기준(적용노임·기계경비·물가정보 등) 마련
   ⑤ 산출근거 및 일위대가 작성
   ⑥ 설계내역서 작성

어장환경개선용역수행

ㅇ 사업 착수 전

- 유류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
- 사업 착수 전 어업인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구역 내 어장분포현황 및 불법 어장 실태, 사업 추진시 문제점 등 파악
- 사업대상해역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염어장 특성에 맞는 작업 방법 채택
- 민원발생 최소화 및 장비·인력에 대한 산재보험 또는 「선원법」에 따른 보험 가입 여부 등 사전 확인
- 설계서 검토 및 안전관리 철저(사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등)
- 어장 내 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처리 방안 강구
- 사업 참여장비 및 작업선에 대하여는 홍보현수막 부착을 의무화하고 어선 및 어업인 장비 활용 시 어업활동 등 사업 외의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 실시
- 어선어업수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가 설치된 정화선박을 이용하고, 어선을 사용할 경우 당해선박 2척 이상 선단(선도선박지정)을 구성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V-PASS(Vessel-Pass)가 설치되어 있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특별검사 허가를 득한 어선에 한하여 사업에 투입할 것(단, 길잡이 안내선은 제외)
-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

· 시공업체는 사업 착수 전 수중 침적쓰레기 탐색활동에 참여하는 어선과의 계약 현황 및 변동사항을 사업집행주체와 해당어선 소속 수협(급유소)에 그 현황을 통보하여야 함

· 또한 시공업체는 본 사업 종료 시 참여어선 명부를 해당 수협에 통보함으로써 동 수협이 면세유 공급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사업 추진 중

- 어장환경개선사업

·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사·채택된 사업내용(모래살포, 투석, 폐지주, 잡석 등 방치시설물 등 철거, 어장바닥경운, 어장바닥고르기 등) 이행

· 설계시방서에 따른 철저한 작업 수행

· 쓰레기 수거량, 사업추진관련 사진 및 동영상의 기록유지 및 자료확보

· 등록업체는 작업선 등 활동상황 확인을 위해 항해일지(GPS Plotter 기록지, AIS 또는 V-PASS 기록(어선어업수역에 한함)) 및 작업일보, 사진자료 기록

- 폐기물 등의 처리

· 폐기물 등의 계량방법 : 해당 지자체에서 계량확인을 실시하고, 사업수행자는 사전에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

· 수거된 폐기물 등은 재활용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매립·소각 시 지자체 운영 처리시설을 우선 활용

*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폐기물 반출시 수거량 계량 등 확인 철저(지정장소에서 수거량 계량, 제반 증명서 보관 등)

·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계시 최종 처리물량은 '수거량'으로 책정하며, 최종 처리물량에 재활용 처리 물량도 포함

- 사업계획 변경 조치 등

· 어업인의 민원과 어장환경변화로 인한 사업구역, 사업면적,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 지자체의 승인 또는 "설계변경 검토위원회"를 개최·의결하여 변경조치

⇒ 단, 위탁받은 기관은 소량의 단순물량 증감(폐기물 수거 및 잡석 정리량, 모래 및 투석량, 경운 구역 등)에 의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사전 보고 후 추진

ㅇ 사업 종료 후

- 어장환경개선사업 종료 기준

·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작업완료시 또는 작업 수행 중 계획물량을 이미 달성한 경우 당해 사업 종료

· 작업수행 중 계획 물량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 또는 "설계변경 검토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조치

※ 장비 및 인력투입실적, GPS기록지, 사진 등 자료 참조 판단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위탁기관) 직원의 “유류피해지역지원 폐기물 반출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는 발주기관(위탁기관)에 제출

사업평가

○ 해양수산부는 어장환경개선사업(모래살포, 투석, 경운공정 등)이 이루어진 구역에 대하여 사업효과를 외부기관에 위탁·측정하여 분석·검토

※ 사업효과 조사계획 수립 시, 시・군별 사업비 5억원 당 1개소 조사를 기준으로 함 (사업비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1개소 조사)

○ 어장환경개선사업 효과조사는 아래 평가항목을 준용하여 평가

※ 평가항목(예시)

구 분	어장환경 평가	생산성 평가
항 목	퇴적물	생산량 및 개체율
세부 사항	입도 강열감량(IL) COD 황화물 유기탄소 질소	단위면적당 생산량 사업 전·후 개체율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 추진상황 관련 자료를 사업 집행주체(시·도)에게 요구

○ 반기별 사업현장 점검 및 어업인 간담회를 추진하여 사업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도출·적용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 시달

시·도, 시·군

○ 사업 추진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목적(유류피해지역 지원 어장환경 개선)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사업종료 후 완료(결과)보고 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자 선정, 사업비 집행내역 등 추진사항을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서식 2, 3, 4, 5>

○ 국고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 본 지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위탁받은 기관

○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지도·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추진한 시·군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도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다(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예외).

- 어업인의 민원으로 사업변경을 위한 “설계변경 검토위원회”에 상정된 어촌계는 향후 사업비 삭감조치(설계변경 검토위원회(안)참조)

○ 삭감제외 사유 대상

- 모래살포나 투석 공종의 경우 원자재 수급의 애로
- 기상변화 및 어장주변 요인에 따라 설계당시와 어장환경 조건의 변화가 커 사업추진 애로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2월에 당해연도 사업 성과지표를 측정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성과지표 : 마을어업수역 등 환경개선 면적 및 어선어업수역 폐어업 기자재 등 수거량
- 산정방법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분석

《만족도 조사》

○ 해양수산부는 연 1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사업성과, 사업추진 방식, 문제점 등
- 조사방법 : 설문조사 또는 현장방문 조사
- 조사대상 : 어업인, 지자체공무원, 용역수행사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초 시·도지사의 사업추진 실적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

- 사업추진의 적정성, 신속성, 홍보노력 등

《환 류》

○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평가결과가 미흡한 시·도에는 차기 년도 사업량 축소 또는 배제

【별지 제1호서식】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추진개요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사업수행자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규모

사업지별	구분[1)]	사업내역[2)]	사업비 (백만원)	사업면적 (ha)	사업량 (톤)	사업기간 (시작~종료)	비고
합계							

주) 1. 구분 : 마을어업수역, 어선어업수역으로 구분
2. 사업내역 : 경운, 투석, 모래살포, 폐지주 제거 등 세부사업내역을 기재
* 필요시 세부사업내역 및 세부사업비 등은 별지 작성

2. 사업추진방향

○ 기본방향

○ 추진방향

3. 세부추진계획

○ 사업단 구성운영

○ 사업추진 체계(도표)

○ 장비, 인력투입계획

- 장비투입계획

장비명	규격	수량	비 고
계			

- 인원투입계획

구 분	인 원	비 고
계		

4. 작업요령

ㅇ 사업착수 전

ㅇ 사업추진 중

ㅇ 사업종료 후

5. 안전 및 보안관리 등

ㅇ 안전관리

ㅇ 보안관리

ㅇ 관련기관(주민) 협조강화 방안

ㅇ 사업효과 홍보 등

6. 사업추진중 이해당사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현지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ㅇ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ㅇ 기타

7. 사업추진일정

8. 행정사항

【별지 제2호서식】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결과 보고

1. 총괄표

사업지별	구분[1)]	사업내역[2)]	사업비 (백만원)	사업면적 (ha)	사업량 (톤)	사업기간 (시작~종료)	비 고
합계							

주) 1. 구분 : 마을어업수역, 어선어업수역으로 구분
2. 사업내역 : 경운, 투석, 모래살포, 폐지주 제거 등 기재

2. 장비 및 인력 투입현황

장비명	규 격	수 량	장비운용 요원	잠수사	보조요원	어업인	비 고
계							

※ 장비동원은 구체적으로 명시(수중카메라, 어선 등 포함)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현황

구 분		수거처리량 (톤)	처리비용 (천원)	처리업체	비 고
계					
지출					
	계				
수입					
	계				

※ 수거처리량 : 계근증명서 첨부

4.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 환경개선사업 추진 대상어장에 대한 생산량 현황

사업대상 어촌계	품종명	생산량			사업이력	비고
		'15년	'16년	'17년		

※ 마을어업수역 환경개선사업에 한하여 작성하며, 사업이력은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추진한 마을·수산종자발생장·숙원사업 이력사항을 작성
(월별 생산량 세부내역은 서식6 작업일지 작성)

※ 사업 전 생산량은 통계확보가 가능한 생산량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하고, 사업 후 생산량은 생산(채취)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경우 결과보고 후 별도 제출

○ 환경개선사업 효과에 대한 보조사업자 의견

-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사업효과 관련 의견 및 향후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

5. 기타사항

- *서식3, 4, 5, 6은 별첨*

【별지 제3호서식】

유류피해지역지원 사업 폐기물 반출 확인서

사업수행기관	
사 업 기 간	201 . . - . . (일)
사 업 지 역	00주변수역
반 출 량	톤 (공인계량소에서 발급된 수량을 표시)
기 타 (의견첨부)	

위와 같이 폐어업 기자재 등 해양쓰레기가 배출되었음을 확인함

첨부 : 1. 계량증명서
2. 바지선에 적재된 쓰레기 사진

201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시·도
직 급 :
성 명 : (인)
입회인 : 소속
성명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유류피해지역지원 사업 폐기물 수거·처리실적

(단위 : 개, 톤)

구 분		수 거		처 리					비 고
		개 수	중 량	소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기 타	
총 계									
일반쓰레기	소 계								
	종 이 류								
	비닐,플라스틱								
	유 리								
	금속(고철)	( )	( )	( )	( )	( )	( )	( )	
	나무(원목)	( )	( )	( )	( )	( )	( )	( )	
	고무(폐타이어)	( )	( )	( )	( )	( )	( )	( )	
	대형쓰레기								
	스티로폼								
	섬유류								
	기 타								
어업쓰레기	소 계								
	스티로폼(폐부자)								
	폐어망,로프								
	고철(닻와이어로프등)								
	패 각								
	기 타								
오니등준설토(㎥)									
기 타									

□ **작성요령**

- 일반생활 쓰레기와 어업으로 인한 부산물 등 종류별로 구분
  ※ 육상유입 (하천을 통한 자연유입, 주변상가, 일반인 등의 투기), 선박투기(어구, 어망, 로프, 기름걸레) 등과 같이 발생원별 분석 필요
- 상기분류를 따르되 지역별 특성 등에 따른 종류 세분화 가능
- 괄호안의 원목, 고철 등은 특히 무역항에서 취급하는 화물을 주로 기재
- 대형쓰레기, 폐타이어 등 개체수 파악이 가능한 것은 개수 명기

□ **분류예시**

- 비닐, 플라스틱 : 노끈, 과자봉지, 펫트병, 천막 등
- 유리 : 각종 병류, 거울 등
- 나무 : 널빤지, 각목, 원목 등
- 금속 : 음료용기, 가스용기, 고철 등
- 섬유 : 선박 기름걸레, 의류
- 대형쓰레기 :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작 업 일 지

월일	작업내용	생산량	비고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 작업내용은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추진한 사업 대상품종 등 기록

<붙임 1. 업무추진 점검표>

▣ 업무추진 점검표

구 분	세부점검사항
업 무 협 의	○ 사업별 세부사업계획 검토 ○ 업무관련 기관과 협의(수협, 어촌계, 유관단체 등) ○ 각 사업별 현황파악(예산, 담당자 등) ○ 자료정리 및 대응방안 마련
계 약 **(업무관리 위탁시)**	○ 업무관리 위탁계약서 및 세부시행지침 검토 ○ 사업추진방안 사전 협의·조정 ○ 계약관련 자료 제공 ○ 위탁계약 체결
계 획 수 립	○ 사업대상지역 수요조사 계획 검토 및 협의 ○ 사업수행방식 결정(공개경쟁입찰 등) - 설계, 시공, 처리 용역 관리 방안 검토 ○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및 보고 - 업체선정 및 예산집행계획 등 수립
사업설명회 개최 **(어업인간담회)**	○ 사업설명회 및 어업인 간담회 자료 작성 - 유인자료, 현수막 준비 ○ 일정 협의 및 확정 ○ 관계기관 및 어업인 참석 요청 공문발송 ○ 사업설명회 및 어업인 간담회 개최 ○ 현안사항 정리 및 회의결과 보고
사업협조요청	○ 관계기관에 사업추진계획 및 협조 문서발송 - 해양수산부, 지방청, 해경, 수협, 정보통신국, 어촌계 등 ○ 수시 업무연락
실시설계용역	○ 사업대상지역 선정 결과 검토 ○ 실시설계 업체선정 계획 수립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등 ○ 입찰공고 준비 및 진행 -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 - 필요시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별 과업지시서 및 설계산출내역 검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적용) ○ 용역계약의뢰(과업지시서, 내역서, 예산) ○ 공정관리 및 결과 분석 - 설계설명서, 시방서 점검 ○ 완수검사 - 용역감독조서 및 용역검사조서 작성 ○ 용역 결과 보고 ○ 사업비 정산

구 분	세부점검사항
어장환경개선용역	○ 용역 추진계획 점검 ○ 과업지시서 등 실시설계서 검토 ○ 용역발주의뢰(공고문, 예산) ○ 용역업체 등록사항(선박, 자격사항) 확인 - 수행가능여부 판단 ○ 공정관리 및 감독 - 어업인 간담회, 폐기물반출, 관계기관 협의 ○ 추진상황 보고 - 월간 공정보고 ○ 설계변경 사항 발생시 변경 검토 ○ 기성 및 완수검사 - 용역감독조서. 완수검사조서 작성 ○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작 ○ 사업결과 보고 ○ 사업비 정산 보고
폐기물 처리용역	○ 처리용역 추진계획 점검 ○ 과업지시서 등 실시설계서 검토 ○ 용역발주의뢰(공고문, 예산) ○ 처리업체 등록사항(자격사항) 확인 - 수행가능여부 판단(처리업체 공장 방문확인) - 수탁능력확인서 점검 ○ 폐기물배출자 신고 ○ 공정관리 및 감독 - 폐기물반출시 현장 입회 확인 ○ 추진상황 보고 - 월간 공정보고 ○ 기성 및 완수검사(업체 신청시) ○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 사업결과 보고(처리실적보고 포함) ○ 사업비 정산
공정관리	○ 업체 사업추진계획 점검 ○ 선박 투입일자 및 현장도착 여부 확인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여부 확인
	○ 폐기물 공인계량측정 현장점검 ○ 고철매각단가 및 입금 확인 ○ 폐기물배출(변경)신고
	○ 작업일보, GPS 플로터 확인 ○ 사업비 집행계획 대비 실적 점검 ○ 설계변경 여부 결정
	○ 선금, 기성금, 완수금 등 신청 확인 ○ 사업비 실행예산서 변경여부 검토
사업준공 및 결과보고	○ 보험료, 안전관리비 실비정산 점검 ○ 완료성과품 제출 확인 ○ 완료내역 확인 및 사업비 정산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기타 사업 지원	○ 어장환경실태조사 등 각종 연구용역 사업 지원

<붙임 2. 유류피해지역 지원 업무관리 위탁계약서>

유류피해지역 지원(오염어장 환경개선사업) 업무관리 위탁계약서

2018. .

“갑” (인)

“을” (인)

유류피해지역지원(오염어장 환경개선사업)
업무관리 위탁계약서

지방자치단체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업무관리 수탁자인 000 (이하“을”이라 한다)은 어장환경개선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유류피해지역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어선어업수역 및 마을어업수역의 환경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어장환경개선사업의 관리를 “을”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관리 위탁내용) ① 업무관리 위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역 사전조사 및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사업
2. 오염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원회복 등에 필요한 마을어업수역의 환경개선사업과 어선어업수역의 환경개선사업
3. 오염어장환경개선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
4. 기타 예기치 못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등으로 인하여 어장 환경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시는 “갑”의 승인과 감독하에 실시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00.00.00까지 한다. 다만,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집행계획 수립) “을”은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갑”이 수립한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착수전 각호의 사업별로 전체사업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업비 등의 조정) 제2조제1항각호의 사업비 집행계획과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사업비 집행계획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검사와 감독)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갑”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부담 및 배상책임) ① 사업수행 중 “을”의 관리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 중 발생한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을”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고와 민원 등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취득물품의 귀속)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로 취득하였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갑”의 소유로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물품으로 “갑”의 관리가 곤란한 소모성물품은 제외한다.

제9조(추진실적보고 등) “을”은 매년도 사업추진실적을 세부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고 매년도 사업완료시에는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갑”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갑”, “을”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4. “을”이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을”이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제11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을”은 본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갑”이 “을”에게 지급한 선급금 및 개산급의 지출 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지급) ① “갑”은 “을”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 또는 개산급으로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사업비 등을 청구할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경리구분) “을”은 본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특별계정 및 계좌를 설치하고 타 계정 및 계좌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관리 위탁 비용) 본 업무관리를 위탁함에 따른 위탁 비용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투자 사업비의 9%이내로 하며 동 비율 범위 내에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기록자료 보존) “을”은 사업에 관계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조사 자료, 과업수행 촬영사진 등)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갑”의 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규칙 및 정산) ① 이 계약에 의한 회계는 예산회계관계법령, 기타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을"은 매년도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갑"에게 정산서를 제출하고, 제12조에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자금에 대하여 "갑"의 결재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사업(설계에 의한 사업은 제외)에 대하여 매년도 사업종료 후 정산결과 초과로 집행된 사업비가 발생된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다.

제17조(해석의 결정)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써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갑", "을"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기타)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령이나 별도 통지하는 「사업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에 의한다.

제19조(계약서)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각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갑" (인)

"을" (인)

<붙임 3. 설계변경 검토 위원회 운영 규정(안)>

설계변경 검토 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류피해지역지원 오염어장 환경개선사업의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감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해당지자체 담당공무원, 지자체 수산사무소 연구원, 위탁기관 및 전문설계업체의 임·직원, 외부 전문가 등 최소 5인으로 위원회 소집 3일전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며,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련 설계업체 및 시행업체 담당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서면 진술 가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소집) ① 위원회는 해당지자체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이 요청할 때 소집한다.

② 위탁받은 기관 담당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전일까지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지자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구성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부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유류피해지역 오염어장 등 환경개선사업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류피해지역 오염어장 등 환경개선사업비 100분의 20이상의 증감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위원 구성

1.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지역수산사무소 2~3명
2. 사업위탁기관 임·직원 1명
3. 전문설계업체 임·직원 1명
4. 외부 전문가 1명

② 수산종자발생장 환경개선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지원총괄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H/S피해지원단 지원총괄팀	팀 장 윤두한 사무관 조상원	044-200-6020 044-200-602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장의 수산종자발생 환경 조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등) 및 제12조(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9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의 이미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 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추정)		
수산종자발생장 환경개선	36ha	36ha	36ha	36ha	익년 2월	사업추진 후 조성면적 산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합 계	**19,042**	**1,800**	**1,800**	-	
- 국 비	**19,042**	**1,800**	**1,800**	-	'19년 종료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추진

○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 : 시·도지사

- 시·도지사의 관리 하에 시장·군수에게 위임 가능

○ 사업시행(위탁) : 시·군 또는 수탁기관

- 시장·군수는「수산자원관리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회,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 가능

※ 위탁수수료는 사업관리 위탁에 따른 대가로 총사업비의 9%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며, 동 비율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위탁기관은 본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탁기간 1년 이상으로 설정가능

- 다만, 어업인 단순 인력만으로 작업이 가능한 공정(패각제거, 잡석제거, 유생착저시설 등)에 한하여 시·군 또는 위탁기관에서 공공근로 형식으로 어업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

- 국립수산과학원장(지역 수산연구소장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지방해양수산청장, 수협중앙회장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추진절차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시·도)	→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시·도)	→	지방자치단체 (시·도)
사업수요 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 및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세부사업계획 시달 및 보조금 교부		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시·군)		사업결과 보고
9월~12월		9월~익년1월		익년1월~2월		익년2월~11월		익년11~12월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대상 지역 및 용어 정의

- 사업대상지역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고시(국토해양부 제2010-923호, 2010.12.31.)」 지역 중 마을어업수역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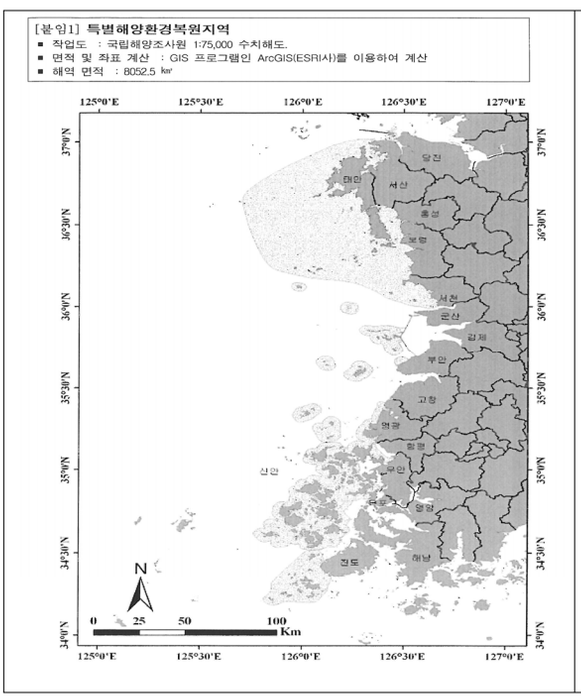

행정구역	해안시군구(읍면리)	면적(㎢)
충청남도	당진군 (장고항리, 고대리, 한진리 해안)	30.9
	서산시, 태안군, 보령시, 홍성군 (대산항 서쪽끝단~천수만 북쪽끝단 해안 및 외해역)	4,469.7
	서천군	234.1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483.0
	부안군 (위도면, 변산면)	195.5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성산1리~염산면 옥실리 남단, 낙월면)	387.9
	무안군 (대사리 백학 북단~현경면 해운리 서단)	91.5
	신안군 (지도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비금면, 도초면, 하의면, 신의면, 장산면, 안좌면, 팔금면, 암태면, 압해면)	1,495.7
	진도군 (조도면, 지산면, 진도읍)	664.2

- 용어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마을어업수역 등"은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어장 및 그 어장과 연접한(면허어장 면적의 20%범위 내) 주변을 말함

○ 지원대상 세부사업

- 수산종자(패류, 해삼, 낙지 등) 번식어장 조성에 필요한 유생 착저 유도시설, 채묘시설, 모래살포(객토) 또는 투석 또는 인공어초 등 시설비

※ 투석은 1,000㎥, 모래살포는 900㎥ 이상 규모로 설계하여야 한다.

※ 인공어초사업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인공어초시설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 어장 등에 설치되는 해삼전용어초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마을어장 등에 설치되는 해삼전용어초는 일반어초로 등록된 것에 한하며, 동 어초의 적지조사는 퇴적환경, 수질환경, 대상생물, 먹이생물 및 지형·지질조사를 실시(기존 조사결과가 있을 경우 적지조사로 갈음 가능) 후 정부 등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 산란 어미군 이식비

※ 수산종자구입 및 살포 사업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산란 어미군 이식비는 바지락·해삼의 경우 20%, 백합·꼬막류·동죽·가무락·낙지의 경우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함. 또한, 간조시 노출되는 수산종자 번식어장 조성 시설물은 가급적 미관을 고려 시설(유용생물 번식·조성을 위해 지역별로 자체적인 보호기간 설정·운영 등)

※ 품종별 산란기 이전에 살포 시행

※ 수산종자발생장 어미산란군 살포시 새조개, 해삼은 필요할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대상 품종의 크기 조정 가능

- 수산종자발생 매뉴얼 개발

※ 매뉴얼 개선 및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 및 모니터링 시행 가능

○ 사업비의 사용용도

- 수산종자발생장 조성 사업비

- 기타 설계비, 장비임대료, 사업시행 전 어업인 교육비용, 매뉴얼 개선(개발), 모니터링 등 사업목적과 부합되는 비용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년도 잔여사업비를 활용하여 사업대상 후보지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음

- 보조금으로 발생한 수입금(수입이자, 고철 매각수익 등)은 별도항목으로 표시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잔액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지원 우선순위

- 시·도(시·군)별로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을 참조하여 「지역별·연차별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지역별·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지역 선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필요시 전문연구기관의 의견 등 참조)

· ‘07년 유류사고 이전대비 수산물 생산이 저하된 지역

· 최적품종 적지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지역

·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어업인의 생계지원 효과가 큰 지역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발적 노력 등 의지가 높은 지역

○ 지원 의무사항

- 수산종자발생장 사업 전 세부사업계획 교육실시, 사업 완료 후 보존기간(3년) 설정

※ 수산종자발생장 환경개선사업 실시 어장에 대해서는 <서식6> 작업일지 작성

※ 수산종자발생장은 생산량의 50%이상을 수산종자 또는 다른 어장 이식용으로 출하하고, 시·도지사는 12월 31일까지 판매량 등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수산종자 생산량은 수산과학원 등 전문연구기관에 의뢰, 추정가능

3.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및 조건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국고 100%

○ 사업의무량

- 갯벌어장 수평망식 종패발생장 조성사업 : 사업비 1억원당 0.5ha이상

- 갯벌어장 바닥식 종패발생장 조성사업 : 사업비 1억원당 2ha이상

4. 사업집행 방법

○ 사업추진 기관 및 선정기준

조사·연구·진단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수산종자발생장 조성 용역추진	→	사업평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		엔지니어링등록업체 기술사사무소		어장정화정비업, 진단·조사기관		해양수산부 또는 지정기관, 해당지자체

○ 적지조사·연구·진단

- 적지조사·연구·진단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에 위임할 수 있음

- 사업집행주체(시·도)는 유류피해지역 어장복원을 위해 차년도 사업후보지를 대상으로 적지조사·연구·진단을 실시하여 복원 및 관리방향을 설정하는 결과물을 도출하여 사업에 적용

- 사업의 조속추진을 위해 시·군에서 사전 적지조사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사업지 선정 가능(단, 마을어업수역 사업 중 주 공정이 폐지주 제거 및 폐기물 수거 일 경우 적지진단 조사 면제 가능)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해양 분야의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령에 의하여 해양 및 수산양식 기술사 개설등록업체

· 자격증빙서류(엔지니어링신고필증 또는 해양 및 수산양식기술사자격증, 실적증명서 등)

- 사업시행자는 여러 개의 사업장 또는 동일한 공정을 묶어서 발주, 원자재를 관급으로 공급하는 등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수산종자발생장조성 용역업체 자격

- 「어장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등록한 업체

· 자격증빙서류(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 및 장비보유 또는 임차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 사업추진 특성에 따라 중요한 기술을 요하는 일부 공정에 대해서는 조사· 연구·진단 기관에서 직접 수행 가능

○ 사업평가 기관

- 해양수산부 또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국·공립 연구 및 평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소속 수산사무소, 전문연구소, 대학교, 환경평가대행업체 등

○ 사업 추진절차

적지조사 · 연구 · 진단

○ **조사 · 연구 · 진단기관 선정**
○ 대상수역 어업실태 및 어장환경조사
○ 사업대상 후보지 및 사업순위 선정
※ 국립수산과학원의 모니터링 자료 인용 가능

↓

실시설계 및 계약체결

○ 착수전 어업인 간담회 개최(현장실태 정보 취득)
○ **사업장별 실시설계**(작업 및 폐기물처리 별도설계)
- 실시설계 전문업체 선정
- 실시설계 감독
※ 해양수산부 어장환경개선사업 표준설계기준과 갯벌의 모래유실 방지 및 유용생물 서식장 복원 매뉴얼을 준용하여 작성
○ 시공사 선정(공개입찰)
- 공개입찰 후 계약 체결(용역업체 및 폐기물처리 업체)

↓

수산종자발생장 조성 용역수행

○ 착수전 사업설명회 개최(민원발생 최소화)
○ 시공사 착수계 접수
○ **수산종자발생장 조성사업 실시**
- 현장점검, 어장내 폐기물중간반출
○ 폐기물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반출(발주기관)
- 신고처 : 관할지자체
- 입 회 : 용역감독관
○ 선금 지급(시공사 요청 시)

↓

사업 종료

○ 시공사 준공계, 준공검사원 접수 및 준공검사
- 준공내역서, 정산내역서, 기타증빙서 접수
○ 준공금 정산 및 정산내역서 통보
○ 준공금 신청 및 준공금 지급
○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

사업 평가 및 교육

○ 평가업체 선정(국·공립연구기관, 대학교, 전문연구소 등)
○ 대상사업장 어장환경조사
- 조사항목 기준 :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
○ 단위면적당 생산량 조사 · 분석
○ 수산종자발생장 조성사업 평가결과 보고
○ 사업대상 어업인 대상으로 어장관리교육 실시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추진절차

○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업담당부서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업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집행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위탁사업자 포함)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위탁시 국고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의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어장환경 복원계획 및 특별해양환경 복원계획 수립

- 사업평가기관으로부터의 대상지선정 및 사업평가 결과 검토

○ 시·도 사업신청서 검토 및 사업비 배정기준 수립

- 현지 실태파악 및 관계자 협의회(워크숍) 개최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지자체)

시·도

○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시·군별 사업비 배정 및 사업우선 순위 지역 검토·확정

시·군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소요량을 파악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후보지를 대상으로 어장환경 진단 및 평가 결과서를 바탕으로 사업비 배정 및 사업우선후보지를 선정할 것

3.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분기별로 자금 배정

○ 보조금 교부결정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기타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가재정법」등 제 규정 준수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배정 요청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서 교부 결정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설계서),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

○ 기타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한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가재정법」등 제 규정 준수

○ 사업집행주체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4.1 세부계획수립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작성한 세부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사업평가 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 전·후 효과조사 추진

○ 유류피해정도, 시·도별 신청상황 및 예산확보 추이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물량 배정

시·도

○ 시장·군수부터 제출된 사업세부지침 검토

○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세부사업계획을 근거로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

- 동 세부사업계획서에는 지원대상 세부사업별 사업량 및 사업비를 반드시 명시

○ 시·도지사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사업평가기관(추후 결정하여 통보)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제공

○ 지역어업인 등의 비협조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는 사업비 배정 지양

- 당해연도 사업비를 이미 배정하여 내시변경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사업비 배정 축소 또는 미배정

○ 기타 사업자 선정절차 및 선정방식 등은 관련법령 준수

시·군

ㅇ 시·도지사가 시달한 세부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사업세부지침 작성·시행

ㅇ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고용 시에는 취약계층이 우선 채용 될 수 있도록 검토조치

ㅇ 사업자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통해 선정

- 사업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설계 등 사업실시는 해당사업 성격을 고려, 수산증·양식, 어장환경분야 전문가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기관(단체·업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
- 사업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많은 어선 및 어업인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
-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가능한 설계업체와 시공업체간 공동도급을 구성,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추진 가능

ㅇ 시장·군수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사업평가기관(추후 결정하여 통보)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제공

ㅇ 지역어업인의 비협조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곤란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사업비 배정 지양

ㅇ 기타 사업자 선정절차 및 선정방식 등은 관련법령 준수

국립수산과학원

ㅇ 사업대상지 적지 선정을 위한 조사·검토·평가에 협조

ㅇ 사업대상 지역 선정시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협의회에 참석, 의견 제시

ㅇ 가능한 사업설계시에도 참여하여 사업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협조

위탁받은 기관

○ 사업개요 및 목적, 일반현황, 추진방향 및 부문별 세부계획, 기대효과, 홍보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계획 수립,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지자체', '용역수행사', '어업인' 등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종료 후 사업결과를 위탁기관(지자체)에 보고

- '용역수행사'가 원활히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실정과 지역 어업인의 민원이나 어장환경변화에 따라 사업추진 계획을 변경할 경우 위탁받은 기관은 "설계변경 검토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용역업체

○ 발주기관(위탁기관 포함)이 시달한 세부사업실시계획(과업지시서 포함)을 기준으로 착수계획을 수립·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착수 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어업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착수계획 수립

○ 인명, 장비 등 안전관련 보험가입 및 어업인 대상 사업홍보 계획 필히 수립

4.2 시행단계

○ 추진 절차

- 사전조사·연구·진단 : 국립수산과학원, 지역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
-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 해양수산분야 엔지니어링등록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
- 용역수행 :「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 또는 특수기술이 필요한 공법일 경우 조사·연구·진단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음

사전조사 및 진단

○ 대상수역 어장환경, 문헌조사 결과, 전문가 및 어업인 자문을 통한 사업대상 생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과 현재 어장상태를 파악하여 사업추진 공정 및 순위 결정(해양수산부, 시·도와 협의하여 추진)

○ 진단 및 평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역수산사무소 등 전문연구기관에 위임 가능

※ 국립수산과학원의 모니터링 자료 인용하여 진단・평가 가능

조사·설계

○ 대상수역 어업실태 : 어업종류, 어장면적, 시설(살포)량, 살포 및 채포시기 등

○ 사업내용, 사업시기, 추진방법, 사업실시설계, 소요경비 내역

※ 해양수산부 어장환경개선 표준설계기준과 갯벌의 모래유실 방지 및 유용생물 서식장 복원 매뉴얼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각 품종별 수산종자발생장 매뉴얼이 있는 경우 그 매뉴얼에 맞게 설계

○ 사업대상지의 오·폐물 실태 및 수거·인양된 오폐물의 처리방안

○ 기타 어장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내용

○ 사업대상지 또는 사업방식 결정전 국립수산과학원·사업평가기관 등 관계기관 및 지역어업인과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사업성과 제고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은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수산종자발생장 조성 방안, 폐어업기자재 수거물량, 투입선단,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을 기초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을 것

○ **수산종자발생장 조성사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수행절차**

1. 현장조사 준비
   ① 조사 대상 해역 세부 결정
   ② 문헌·통계자료 분석
   ⇨ **조사 대상 해역에 대한 조업현황, 어업권·양식장 및 인공어초의 분포, 해저케이블의 매설, 수심 등 확인**
   ③ 현장조사 행정공문 발송

2. 현장 실태조사
   ① 실 어업권 등 확인
   ② 어업인 간담회 및 행정관계자 탐문·설문조사
   ⇨ **조사대상구역 재확정, 사업기간(금어기 등) 조사**
   ※ 현장 실태조사 이후 전문기관 및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현장 조사 실시

3. 현장 표본조사
   ① 인양틀 예인조사
   ② 양방향 음파 탐사기 조사
   ③ 잠수조사
   ④ 육안확인조사(마을어업수역, 수산종자발생장)
   ※ 현장 표본조사 시 주안점
   저질의 상태, 어업폐기물의 분포율, 어업폐기물의 종류 등에 따라서 사업 방안을 고려 ⇨ **실제 사업 시 투입선박 및 투입장비의 규모를 결정**

4. 자료 분석
   ① 현장 탐문·설문조사 자료정리 및 분석
   ② 현장 표본조사 자료정리 및 분석
   ③ 사업대상지 협의 및 선정

5. 현장조사 자료집 및 사진첩 작성

6. 사업 실시설계도서 작성**(어장환경개선사업 표준설계기준 준용)**
   ① 물량표 작성 ⇨ 사업량 산출
   ② 사업설계도 작성 ⇨ 사업대상 해역 확정
   ③ 설계설명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작성
   ④ 적용기준(적용노임·기계경비·물가정보 등) 마련
   ⑤ 산출근거 및 일위대가 작성
   ⑥ 설계내역서 작성

수산종자발생장 조성 용역수행

ㅇ 사업 착수 전

- 유류피해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 사업 착수 전 어업인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구역 내 어장분포현황 및 불법 어장 실태, 사업 추진시 문제점 등 파악
- 사업대상해역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어장 특성에 맞는 작업 방법 채택
- 민원발생 최소화 및 장비·인력에 대한 산재보험 또는 「선원법」에 따른 보험 가입 여부 등 사전 확인
- 설계서 검토 및 안전관리 철저(사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실시 등)
- 어장 내 폐기물의 효과적인 수거처리 방안 강구
- 사업 참여장비 및 작업선에 대하여는 홍보현수막 부착을 의무화하고 어선 및 어업인 장비 활용시 어업활동 등 사업외의 다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 실시
- 어선어업수역 환경개선사업 추진시 어선을 사용할 경우 당해선박 2척 이상 선단(선도선박지정)을 구성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필히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특별검사 허가를 득한 어선에 한하여 사업에 투입할 것(단, 길잡이 안내선은 제외)
-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

· 시공업체는 사업 착수 전 수중 침적쓰레기 탐색활동에 참여하는 어선과의 계약 현황 및 변동사항을 사업집행주체와 해당어선 소속 수협(급유소)에 그 현황을 통보하여야 함

· 또한 시공업체는 본 사업 종료 시 참여어선 명부를 해당 수협에 통보함으로써 동 수협이 면세유 공급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사업 추진 중

- 수산종자발생장 조성

·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사·채택된 사업내용(모래살포, 투석, 폐지주, 잡석 등 방치시설물 철거, 어장바닥경운, 어장바닥고르기 등) 이행

· 설계시방서에 따른 철저한 작업 수행

· 각 공정별 사업량, 사업추진관련 사진 및 동영상의 기록유지 및 자료확보

· 등록업체는 작업선 등 활동상황 확인을 위해 항해일지(GPS Plotter 기록지) 및 작업일보, 사진자료 기록

- 폐기물 등의 처리

· 폐기물 등의 계량방법 : 해당 지자체에서 계량확인을 실시하고, 사업수행자는 사전에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도록 통지

· 수거된 폐기물 등은 재활용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매립·소각시 지자체 운영 처리시설을 우선 활용

*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폐기물 반출시 수거량 계량 등 확인 철저(지정장소에서 수거량 계량, 제반 증명서 보관 등)

· 폐기물 처리업체에 인계시 최종 처리물량은 '수거량'으로 책정하며, 최종 처리물량에 재활용 처리 물량도 포함

- 사업계획 변경 조치 등

· 어업인의 민원과 어장환경변화로 인한 사업구역, 사업면적,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 등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 지자체의 승인 또는 "설계변경 검토위원회"를 개최·의결하여 변경조치

⇨ 단, 위탁받은기관은 단순물량 증감(폐기물수거 및 잡석 정리량, 모래 및 투석량, 경운구역 등)에 의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사전 보고 후 추진

ㅇ 사업 종료 후

- 수산종자발생장 조성사업 종료 기준

·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작업완료시 또는 작업 수행중 계획물량을 이미 달성한 경우 당해사업 종료

· 작업수행중 계획 물량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 또는 "설계변경 검토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조치

※ 장비 및 인력투입실적, GPS기록지, 사진 등 자료 참조 판단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제출시 발주기관(위탁기관) 직원의 "유류피해지역지원 폐기물 반출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 사업추진 결과보고서는 발주기관(위탁기관)에 제출

사업평가

○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발생장 조성사업(모래살포, 투석, 경운공정, 모패살포 등)이 이루어진 구역에 대하여 사업효과 분석·검토

※ 사업효과 조사계획 수립시 시·군별 사업비 5억원당 1개소 조사를 기준으로 함(사업비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1개소 조사)

○ 수산종자발생장 조성사업 효과조사는 아래 평가항목을 준용하여 평가

※ 평가항목(예시)

구 분	어장환경 평가	생산성 평가
항 목	퇴적물	생산량 및 개체율
세부 사항	입도 강열감량(IL) COD 황화물 유기탄소 질소	단위면적당 생산량 사업 전·후 개체율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 추진상황 관련 자료를 사업 집행주체(시·도)에게 요구

○ 반기별 사업현장 점검 및 어업인 간담회를 추진하여 사업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도출·적용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 시달

시·도, 시·군

○ 사업 추진상황 관련 자료를 사업 집행주체(시·도)에게 요구

○ 반기별 사업현장 점검 및 어업인 간담회를 추진하여 사업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도출·적용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 시달

위탁받은 기관

○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

○ 사업추진 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작성, 시장·군수에게 제출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지도·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추진한 시·군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도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사업비를 삭감할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예외)

- 어업인의 민원으로 사업변경을 위한 “설계변경 검토위원회”에 상정된 어촌계는 향후 사업비 삭감조치(설계변경 검토위원회(안)참조)

○ 삭감제외 사유 대상

- 모래살포나 투석 공종의 경우 원자재 수급의 애로
- 기상변화 및 어장주변 요인에 따라 설계당시와 어장환경 조건의 변화가 커 사업추진 애로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2월에 당해년도 사업 성과지표를 측정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성과지표 : 시설 또는 수산종자발생장 조성면적, 연구결과 보고서 발행
- 산정방법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분석

《만족도 조사》

○ 해양수산부는 연 1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사업성과, 사업추진 방식, 문제점 등
- 조사방법 : 설문조사 또는 현장방문 조사
- 조사대상 : 어업인, 지자체공무원, 용역수행사 등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매년 초 시·도지사의 사업추진 실적을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

- 사업추진의 적정성, 신속성, 홍보노력 등

《환 류》

○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평가결과가 미흡한 시·도에는 차기 년도 사업량 축소 또는 배제

【별지 제1호서식】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신청서

1. 사업추진개요

○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사업수행자
-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규모

사업지별	구분[1]	사업내역[2]	사업비 (백만원)	사업면적 (ha)	사업량 (톤)	사업기간 (시작~종료)	비고
합계							

주) 1. 구분 : 굴, 해삼, 바지락, 백합, 꼬막, 새꼬막 종패발생장 등으로 구분
2. 사업내역 : 시설명 또는 공종명을 기재

* 필요시 세부사업내역 및 세부사업비 등은 별지 작성

2. 사업추진방향

○ 기본방향

○ 추진방향

3. 세부추진계획

○ 사업단 구성운영

○ 사업추진 체계(도표)

○ 장비, 인력투입계획

- 장비투입계획

장비명	규격	수량	비 고
계			

- 인원투입계획

구 분	인 원	비 고
계		

4. 작업요령

○ 사업착수 전

○ 사업추진 중

○ 사업종료 후

5. 안전 및 보안관리 등

○ 안전관리

○ 보안관리

○ 관련기관(주민) 협조강화 방안

○ 사업효과 홍보 등

6. 사업추진중 이해당사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 현지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기타

7. 사업추진일정

8. 행정사항

【별지 제2호서식】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결과 보고

1. 총괄표

사업지별	구분[1)]	사업내역[2)]	사업비 (백만원)	사업면적 (ha)	사업량 (톤)	사업기간 (시작~종료)	비고
합계							

주) 1. 구분 : 굴, 해삼, 바지락, 백합, 꼬막, 새꼬막 종패발생장 등으로 구분
2. 사업내역 : 시설명 또는 공종명을 기재

2. 장비 및 인력 투입현황

장비명	규 격	수 량	장비운용요원	잠수사	보조요원	어업인	비 고
계							

※ 장비동원은 구체적으로 명시(수중카메라, 어선 등 포함)

3. 시설현황

시설명	부속품명	규격 및 갯수	시설면적 (ha)	가 격		비 고
				단가(원)	총액(천원)	
계						

※ 부속품명은 모패를 포함하여 시설에 소요되는 각종 원·부자재을 말하며, 필요시 세부 내역 첨부

4.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효과

ㅇ 환경개선사업 추진 대상어장에 대한 생산량 현황

사업대상 어촌계	품종명	생산량			사업이력	비고
		‘15년	‘16년	‘17년		

※ 사업이력은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추진한 마을·수산종자발생장·숙원사업 이력사항을 작성(월별 생산량 세부내역은 서식6 작업일지 작성)

※ 사업 전 생산량은 통계확보가 가능한 생산량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하고, 사업 후 생산량은 생산(채취)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경우 결과보고 후 별도 제출

ㅇ 환경개선사업 효과에 대한 보조사업자 의견

- *사업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사업효과 관련 의견 및 향후 기대되는 효과를 서술*

5. 기타사항

- *서식3, 4, 5, 6은 별첨*

【별지 제3호서식】

유류피해지역지원 사업 폐기물 반출 확인서

사업수행기관	
사업기간	201 . . - . . (일)
사업지역	00주변수역
반 출 량	톤 (공인계량소에서 발급된 수량을 표시)
기 타 (의견첨부)	

위와 같이 폐어업 기자재 등 해양쓰레기가 배출되었음을 확인함

첨부 : 1. 계량증명서
2. 바지선에 적재된 쓰레기 사진

201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 시·도
직 급 :
성 명 : (인)
입회인 : 소속
성명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유류피해지역지원 사업 폐기물 수거·처리실적

(단위 : 개, 톤)

구 분		수 거		처 리					비 고
		개 수	중 량	소계	매 립	소 각	재활용	기 타	
총 계									
일반쓰레기	소 계								
	종 이 류								
	비닐,플라스틱								
	유 리								
	금속(고철)	( )	( )	( )	( )	( )	( )	( )	
	나무(원목)	( )	( )	( )	( )	( )	( )	( )	
	고무(폐타이어)	( )	( )	( )	( )	( )	( )	( )	
	대형쓰레기								
	스티로폼								
	섬유류								
	기 타								
어업쓰레기	소 계								
	스티로폼(폐부자)								
	폐어망,로프								
	고철(닻,와이어로프등)								
	패 각								
	기 타								
오니등준설토(㎥)									
기 타									

□ 작성요령

- 일반생활 쓰레기와 어업으로 인한 부산물 등 종류별로 구분
  ※ 육상유입 (하천을 통한 자연유입, 주변상가, 일반인 등의 투기), 선박투기(어구, 어망, 로프, 기름걸레) 등과 같이 발생원별 분석 필요
- 상기분류를 따르되 지역별 특성 등에 따른 종류 세분화 가능
- 괄호안의 원목, 고철 등은 특히 무역항에서 취급하는 화물을 주로 기재
- 대형쓰레기, 폐타이어 등 개체수 파악이 가능한 것은 개수 명기

□ 분류예시

- 비닐, 플라스틱 : 노끈, 과자봉지, 펫트병, 천막 등
- 유리 : 각종 병류, 거울 등
- 나무 : 널빤지, 각목, 원목 등
- 금속 : 음료용기, 가스용기, 고철 등
- 섬유 : 선박 기름걸레, 의류
- 대형쓰레기 :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등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정산서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 전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작 업 일 지

월일	작업내용	생산량	비고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 작업내용은 유류피해지역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추진한 사업 대상품종 등 기록

<붙임 1. 업무추진 점검표>

▣ 업무추진 점검표

구 분	세부점검사항
업 무 협 의	○ 사업별 세부사업계획 검토 ○ 업무관련 기관과 협의(수협, 어촌계, 유관단체 등) ○ 각 사업별 현황파악(예산, 담당자 등) ○ 자료정리 및 대응방안 마련
계 약 (업무관리 위탁시)	○ 업무관리 위탁계약서 및 세부시행지침 검토 ○ 사업추진방안 사전 협의·조정 ○ 계약관련 자료 제공 ○ 위탁계약 체결
계 획 수 립	○ 사업대상지역 수요조사 계획 검토 및 협의 ○ 사업수행방식 결정(공개경쟁입찰 등) - 설계, 시공, 처리 용역 관리 방안 검토 ○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및 보고 - 업체선정 및 예산집행계획 등 수립
사업설명회 개최 (어업인간담회)	○ 사업설명회 및 어업인 간담회 자료 작성 - 유인자료, 현수막 준비 ○ 일정 협의 및 확정 ○ 관계기관 및 어업인 참석 요청 공문발송 ○ 사업설명회 및 어업인 간담회 개최 ○ 현안사항 정리 및 회의결과 보고
사업협조요청	○ 관계기관에 사업추진계획 및 협조 문서발송 - 해양수산부, 지방청, 해경, 수협, 정보통신국, 어촌계 등 ○ 수시 업무연락
실시설계용역	○ 사업대상지역 선정 결과 검토 ○ 실시설계 업체선정 계획 수립 -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수의계약 등 ○ 입찰공고 준비 및 진행 -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 - 필요시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 사업별 과업지시서 및 설계산출내역 검토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적용) ○ 용역계약의뢰(과업지시서, 내역서, 예산) ○ 공정관리 및 결과 분석 - 설계설명서, 시방서 점검 ○ 완수검사 - 용역감독조서 및 용역검사조서 작성 ○ 용역 결과 보고 ○ 사업비 정산

구 분	세부점검사항
어장환경개선용역	○ 용역 추진계획 점검 ○ 과업지시서 등 실시설계서 검토 ○ 용역발주의뢰(공고문, 예산) ○ 용역업체 등록사항(선박, 자격사항) 확인 - 수행가능여부 판단 ○ 공정관리 및 감독 - 어업인 간담회, 폐기물반출, 관계기관 협의 ○ 추진상황 보고 - 월간 공정보고 ○ 설계변경 사항 발생시 변경 검토 ○ 기성 및 완수검사 - 용역감독조서. 완수검사조서 작성 ○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작 ○ 사업결과 보고 ○ 사업비 정산 보고
폐기물 처리용역	○ 처리용역 추진계획 점검 ○ 과업지시서 등 실시설계서 검토 ○ 용역발주의뢰(공고문, 예산) ○ 처리업체 등록사항(자격사항) 확인 - 수행가능여부 판단(처리업체 공장 방문확인) - 수탁능력확인서 점검 ○ 폐기물배출자 신고 ○ 공정관리 및 감독 - 폐기물반출시 현장 입회 확인 ○ 추진상황 보고 - 월간 공정보고 ○ 기성 및 완수검사(업체 신청시) ○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 사업결과 보고(처리실적보고 포함) ○ 사업비 정산
공정관리	○ 업체 사업추진계획 점검 ○ 선박 투입일자 및 현장도착 여부 확인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 상주여부 확인
	○ 폐기물 공인계량측정 현장점검 ○ 고철매각단가 및 입금 확인 ○ 폐기물배출(변경)신고
	○ 작업일보, GPS 플로터 확인 ○ 사업비 집행계획 대비 실적 점검 ○ 설계변경 여부 결정
	○ 선금, 기성금, 완수금 등 신청 확인 ○ 사업비 실행예산서 변경여부 검토
사업준공 및 결과보고	○ 보험료, 안전관리비 실비정산 점검 ○ 완료성과품 제출 확인 ○ 완료내역 확인 및 사업비 정산 ○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기타 사업 지원	○ 어장환경실태조사 등 각종 연구용역 사업 지원

<붙임 2. 유류피해지역 지원 업무관리 위탁계약서>

유류피해지역 지원
(수산종자발생장 조성사업)
업무관리 위탁계약서

2018. .

"갑" (인)

"을" (인)

유류피해지역지원(수산종자발생장 조성사업)업무관리 위탁계약서

지방자치단체장(이하“갑”이라 한다)과 업무관리 수탁자인 000 (이하“을”이라 한다)은 수산종자발생장 조성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유류피해지역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관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수산종자발생장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구축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를 위한 수산종자발생장 환경개선사업의 관리를 “을”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관리 위탁내용) ① 업무관리 위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지역 사전조사 및 실시설계 등에 필요한 사업
2. 수산종자발생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원회복 등에 필요한 환경개선사업
3. 수산종자발생장 조성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활동
4. 기타 예기치 못한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 등으로 인하여 수산종자발생장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시는 “갑”의 승인과 감독하에 실시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00.00.00까지 한다. 다만,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사업집행계획 수립) “을”은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갑”이 수립한 세부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착수전 각호의 사업별로 전체사업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업비 등의 조정) 제2조제1항 각호의 사업비 집행계획과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사업비 집행계획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의 검사와 감독)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갑”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부담 및 배상책임) ① 사업수행 중 “을”의 관리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 중 발생한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을”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고와 민원 등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8조(취득물품의 귀속)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로 취득하였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갑”의 소유로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물품으로 “갑”의 관리가 곤란한 소모성물품은 제외한다.

제9조(추진실적보고 등) “을”은 매년도 사업추진실적을 세부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고 매년도 사업완료시에는 30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갑”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갑”, “을”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4. “을”이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을”이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제11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을”은 본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갑”이 “을”에게 지급한 선급금 및 개산급의 지출 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 지급) ① “갑”은 “을”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선급금 또는 개산급으로 “을”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사업비 등을 청구할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경리구분) “을”은 본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특별계정 및 계좌를 설치하고 타 계정 및 계좌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관리 위탁 비용) 본 업무관리를 위탁함에 따른 위탁 비용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투자 사업비의 9%이내로 하며 동 비율 범위내에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기록자료 보존) “을”은 사업에 관계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 (조사 자

료, 과업수행 촬영사진 등)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갑”의 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규칙 및 정산) ① 이 계약에 의한 회계는 예산회계관계법령, 기타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② “을”은 매년도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갑”에게 정산서를 제출하고, 제12조에 규정에 의하여 수령한 자금에 대하여 “갑”의 결재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사업(설계에 의한 사업은 제외)에 대하여 매년도 사업종료 후 정산결과 초과로 집행된 사업비가 발생된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다.

제17조(해석의 결정)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써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갑”, “을”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8조(기타)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령이나 별도 통지하는 「사업지침 및 세부시행지침」에 의한다.

제19조(계약서)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각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갑” (인)

“을” (인)

<붙임 3. 설계변경 검토 위원회 운영 규정(안)>

설계변경 검토 위원회 운영 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류피해지역지원 수산종자발생장조성사업의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감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해당지자체 담당공무원, 지자체 수산사무소 연구원, 위탁기관 및 전문설계업체의 임·직원, 외부 전문가 등 최소 5인으로 위원회 소집 3일전 각 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며,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련 설계업체 및 시행업체 담당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서면 진술 가능)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소집) ① 위원회는 해당지자체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탁받은 기관이 요청할 때 소집한다.

② 위탁받은 기관 담당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 회의 개최 전일까지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지자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의결방법) 위원회는 재적구성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부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유류피해지역 수산종자발생장 조성사업의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2. 유류피해지역 수산종자발생장 조성사업비의 100분의 20이상의 증감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위원 구성

1.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지역수산사무소 2~3명
2. 사업위탁기관 임·직원 1명
3. 전문설계업체 임·직원 1명
4. 외부 전문가 1명 4. 외부 전문가 1명

2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① 어업경영통계조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이시원 사무관 박천일	044-200-5420 044-200-542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주요어업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수산정책 수립 및 어업경영합리화를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협 통계조사 사업비 지원

2. 근거법령

○ 수산청훈령 제233호(1976년 어업경영조사업무 수협중앙회 위임)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당없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400	400	400	400
- 국 비	400	400	400	400

Ⅱ. 2019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수협중앙회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운영 : 수협중앙회(민간경상보조)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국가 승인통계인 어업경영통계조사(근해·정치망어업, '08~)를 위한 위탁사업비(조사원 수당, 여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업경영조사 수행을 위한 경비(조사수당, 일비 등)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 국고 100%

- 사업수행을 위해 자담분은 수협중앙회에서 보조

○ 지원기준 및 한도

-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은 사업주관기관이 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민간보조(비공모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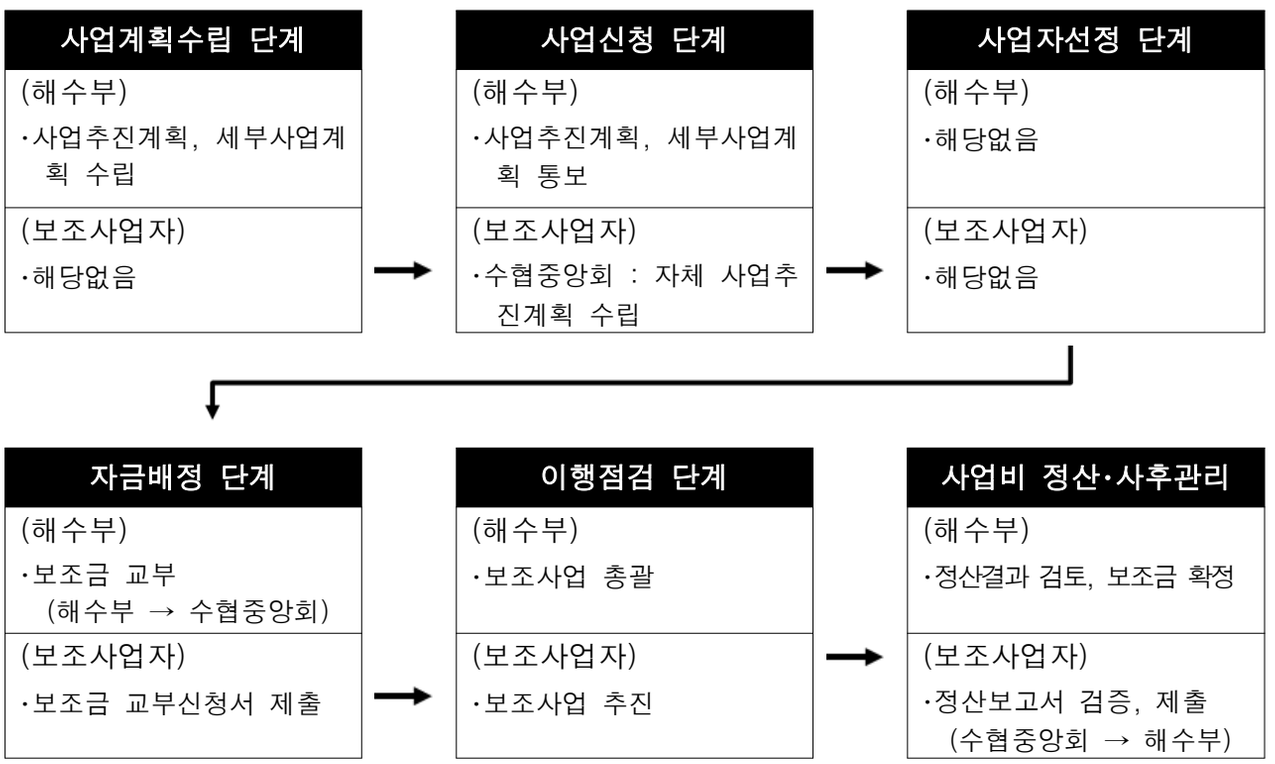

1. 사업신청단계

수협중앙회

○ 사업관리주체 : 수협중앙회

○ 수행절차 : 수협중앙회는 ‘19년 어업경영통계조사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 선정주체 : 수협중앙회

○ 어업경영통계조사를 위한 조사원 수당 및 여비 지원 등과 함께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시행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통계조사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공통 제2호 서식)를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에서 사업계획서(공통 제1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세부사업계획 변경(필요시)

-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협의 요청

○ 보조사업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사업비 집행·정산》

수협중앙회

○ 어업경영통계조사 사업 집행에 대한 자체점검계획(연2회 이상)을 수립하고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상·하반기)

《제재》

해양수산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동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과 이에 따른 이자 환수

6.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단,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여건을 감안하여 수협중앙회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② 단위수협 감사업무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이시원 사무관 박천일	044-200-5420 044-200-542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정부에서「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위탁한 단위수협에 대한 감사권 강화로 협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 단위수협의 경영지도 감사와 경영상태 평가를 통하여 경영개선과 사전 부실 예방을 유도하는 한편 부실조합의 경우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감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감독권의 위임·위탁)

3. 성과목표 및 지표

○ 단위수협의 경영을 정상화하여 대국민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수협 감사결과 징계처분 인원 감소율을 지표로 설정하고, 직전 연도 징계인원의 15% 감축을 목표 설정

성과지표	'19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수협감사결과 징계처분 인원 감소율(%)	15	10	10	15	15	사업 종료 후	(당해연도 징계 처분실적 / 당해연도 징계처분 목표인원)×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6,238	6,238	6,238	6,238
- 국 비	1,200	1,200	1,200	1,200
- 자부담	5,038	5,038	5,038	5,038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단위수협을 지도·감독하는 수협중앙회(조합감사위원회)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운영 : 수협중앙회(민간경상보조)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단위수협의 회계, 재산, 조직 업무집행상황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감사 대상

(46개조합, 상호금융점포 436개, 위판장 212개, 급유소 142개, 가공시설 116개, 수산물직거래사업장 36개)

○ 수협중앙회 소속 조합감사위원회의 운영 등 경상보조비 집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단위수협의 회계, 재산, 조직 업무집행상황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감사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 국고 20%

- 사업수행을 위해 자담분은 수협중앙회에서 보조

○ 지원기준 및 한도

-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은 사업주관기관이 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민간보조(비공모사업)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수협중앙회 :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수협중앙회)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수협중앙회 → 해수부)

1. 사업신청단계

수협중앙회

○ 사업관리주체 : 수협중앙회

○ 수행절차 : 수협중앙회는 '19년 단위수협 감사업무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 단위수협 감사지원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 대상으로 수협중앙회 직접 수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업무수행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공통 제2호 서식)를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에서 사업계획서(공통 제1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세부사업계획 변경(필요시)

-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협의 요청

○ 보조사업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사업비 집행·정산》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의 단위수협 감사지원을 위한 경상보조비사업비 집행에 대한 자체점검계획(연2회 이상)을 수립하고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상·하반기)

《제재》

해양수산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동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과 이에 따른 이자 환수

6.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단,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여건을 감안하여 수협중앙회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③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운영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이시원 사무관 박천일	044-200-5420 044-200-542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 중이었던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수협중앙회로 이관함으로써 계속 운영을 위한 관리비 지원

2. 근거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당없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301	301	301	301
- 국 비	261	261	261	261
- 자부담	40	40	40	4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수협중앙회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운영 : 수협중앙회(민간경상보조)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은 수산정책의 기준이 되는 국가통계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17년부터 수협중앙회 이관에 따른 운영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관리비용 등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 국고 100%

- 사업수행을 위해 자담분은 수협중앙회에서 보조

○ 지원기준 및 한도

-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은 사업주관기관이 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민간보조(비공모사업)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수협중앙회 :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수협중앙회)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수협중앙회 → 해수부)

1. 사업신청단계

수협중앙회

○ 사업관리주체 : 수협중앙회

○ 수행절차 : 수협중앙회는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후 시행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 선정주체 : 수협중앙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운영비 지원 등과 함께 별도의 기준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시행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운영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공통 제2호 서식)를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에서 사업계획서(공통 제1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등을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세부사업계획 변경(필요시)

-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협의 요청

○ 보조사업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보조사업 집행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사업비 집행·정산》

수협중앙회

○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운영비 지원 사업 집행에 대한 자체점검계획(연2회 이상)을 수립하고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상·하반기)

《제재》

해양수산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동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과 이에 따른 이자 환수

6.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단,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여건을 감안하여 수협중앙회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④ 어업용면세유공급시설 개선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이시원 사무관 곽재욱 주무관 주정미	044-200-5420 044-200-5431 044-200-5432
단 체	수협중앙회 및 일선수협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노후한 급유시설의 교체 및 개보수를 통해 화재와 유류누출 사고로 인한 연안 어장 오염 등 해양 유류오염 사고 예방

○ 어업용 면세유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어업인 대외경쟁력 강화 및 수산업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9조(국가·공공단체의 협력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19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노후시설개선실적(누적)(%)	20	-	-	신규	-	'20.1월	시설개선수(누적) / C등급이하시설수(92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1,960**	**1,960**	**1,960**	**1,960**
- 국 비	980	980	980	980
- 지방비	-	-	-	-
- 자부담	980	980	980	980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업용 면세유를 공급하는 수협중앙회 및 일선수협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수협중앙회 및 일선수협

3. 지원대상

○ ‘11년 및 ‘16년 수협 급유시설 안전진단 결과, 개·보수가 시급하여 개선대상으로 지정된 시설 및 이전 설치가 필요한 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일선수협 유류공급시설 개·보수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별지 제4호)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자담 50%

-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담분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보조 가능

○ 지원기준 및 한도

-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은 사업주관기관이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의 50%

- 총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용은 사업주관기관이 부담

7. 2019년도 사업계획

(백만원)

조 합 명	사업규모(드럼)	시설수	구분	사 업 비		
				계	국 고	자담
합계(2개조합)	**계(4기)**	**4**		**1,960**	**980**	**980**
마산	2,000×1기 1,500×1기	2	이전	820	410	410
여수	4,000×2기	2	교체	1,140	570	57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수협중앙회

○ 사업관리주체 : 수협중앙회

○ 공고시기 : 연 1회(1월)

* 공고 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 가능

○ 신청절차

- '11년 및 '16년 급유시설안전점검 결과, 유류공급시설 개선 소요조사를 통한 우선순위 사업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사업 관리 주체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급유시설 안전점검 결과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령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 주체에 통지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 주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9.1월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	일선수협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추진사항점검·확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 사업 지도·감독		· 사업시행 · 사후관리 · 사업집행및결과보고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의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사업비 정산 및 교부금 확정

-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보조금의 교부신청 내용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금 확정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수협중앙회

○ 일선수협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확정 후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계획 변경(필요시)

-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협의 요청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및 폐지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는 등 검정 실시 후 사업비 잔액을 집행하고,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비 정산 요청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 정산보고서 제출 시 정산보고서를 검증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일선수협

○ 선정된 사업자는 추진일정, 추진내용 및 소요 사업비 등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에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요청

- 사업이 완료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에 제출
- 정산 요청 시에는 보조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관련 증빙서류 및 보조금 입금통장사본 등을 첨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수협중앙회

○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일선수협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

- 보조사업자는 매분기별 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 보고

* 추진일정 대비 추진실적, 예산 집행상황 및 홍보실적 등 포함

《제재》

수협중앙회

○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또한 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법령 및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 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단,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여건을 감안하여 수협중앙회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3 어업협정이행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과 장 임태훈 사무관 김기훈	044-200-5560 044-200-5561

Ⅰ. 사업개요

1. 목적

○ 한·일, 한·중 조업수역의 자원관리 및 조업질서 유지 등 어업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민간어업협력사업 지원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수산업법시행령 제72조제13호(정부간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어업협력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관리기관 지정)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19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중간수역 1인당 폐어구 수거량(kg)	1,007	862	1,056	1,373	1,350	사업종료 후	폐어구 수거량(kg)/어장청소 참여인원(명) * 어장청소 실적(우리부 및 한국수산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2,967	2,967	2,967	2,967
- 국 비(100%)	2,967	2,967	2,967	2,967

Ⅱ. '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 및 수산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중 하나, (사)한국수산회

2.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한·일 중간수역,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 협정수역에서의 ① 수산자원 관리 ② 상대국 어업자, 어선 간 안전조업 및 질서 유지 ③ 해상사고 및 조업분쟁 처리를 위한 민간어업협력 업무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한·중·일 중간수역 침적 폐어구 수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예산범위 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보조금 신청서(공통 제1호서식)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이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1호)
-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보조금법 제16조제2항제3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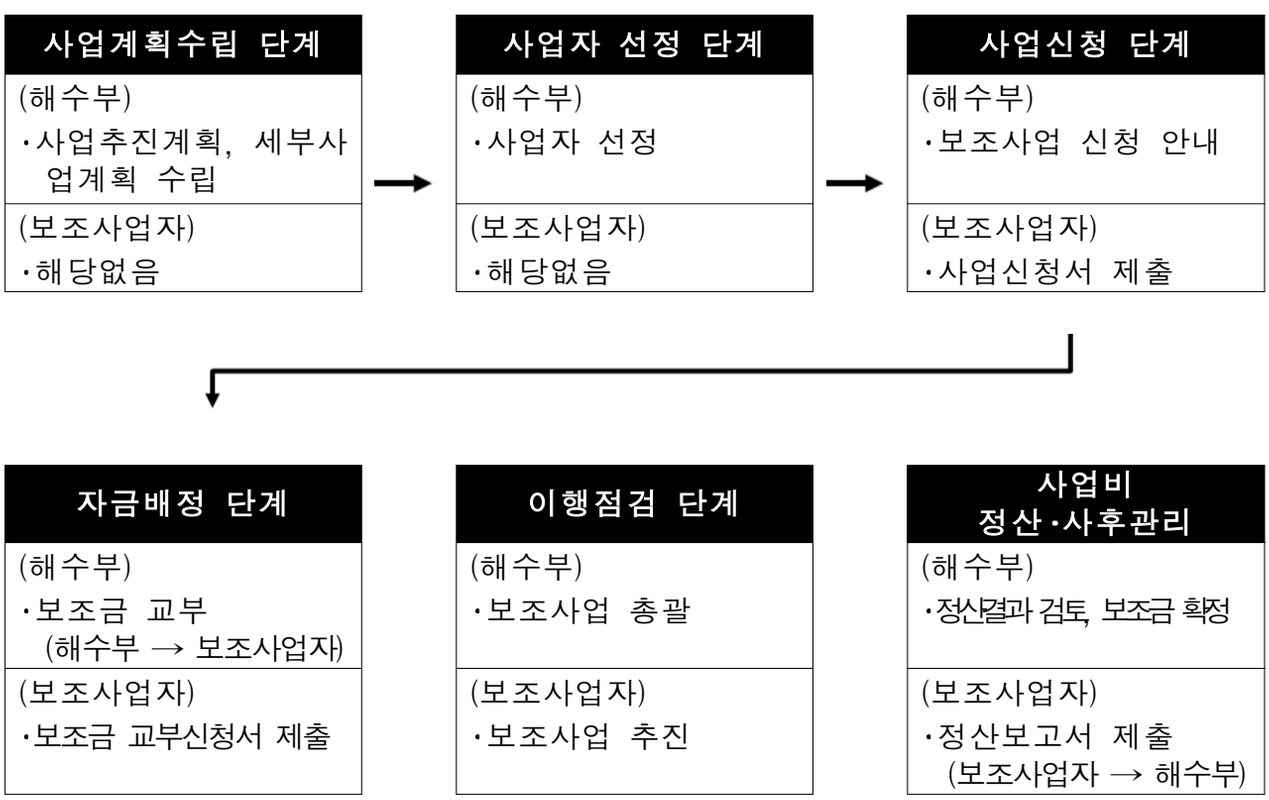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대상자의 어장환경개선사업 등 민간어업협력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

- 점검일정 : 사업시행 시 년 2회 이상
- 점검반 : 해양수산부(지도교섭과) 사업 현장 방문 점검
- 점검내용 : 민간어업협력사업이 승인한 내용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민간어업협력사업 보조금이 용도 범위 내에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등

보조사업자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비고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	해양수산부장관	교부신청시	
사업추진실적	보조사업자	해양수산부장관	개발착수, 중간, 완료보고시	
사업비검정 및 정산 실적	보조사업자	해양수산부장관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	

6.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보조사업자

○ 주관기관 : 보조사업자

○ 평가시기 : 12월말 기준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자체 사업평가 실시 및 그 결과 제출

- 자체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9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4 어업정보통신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팀 장 김종모 사무관 김성국 주무관 최정호	044-200-5505 044-200-5527 044-200-552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정부로부터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한·일, 한·중 어업협정에 따른 EEZ 출어선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지원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보조대상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절감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10		
당해 연도 사망 실종자 수 (단위 : 명)	75	81	103	100	75	매년 말	○ '18년도 사망·실종자 수 - ('18)81명→('19)75명→('20) 69명 ※ 최근 5년간('11~'15) 사망·실종자 수를 2020년까지 30% 감축

* 자료수집 방법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시통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1,684**	**21,684**	**21,684**	**21,684**
국 고	17,347	17,347	17,347	17,347
자 부 담	4,337	4,337	4,337	4,337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수협중앙회(어업정보통신국)

○ 근거 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제60조 및 제13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제55조(해양수산부소관)

* 한·중·일 어업협정 이행을 위한 양국어선 입어절차 관련 업무

-「선박안전조업규칙(해양수산부령)」제23조(어업정보통신국에의 가입 및 위치보고 등)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선정 제외대상

○ 사업 자격 및 사업운영 : 수협중앙회(어업정보통신국)

- 정부의 어업인 안전조업지도, 긴급 구조통신, EEZ출어선 관리업무 등을 수행이 가능한 법인

○ 선정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지원

- 인건비 : 인원 272명(통신국운영요원 204, 사회복무요원 68),
- 운영비 : 시설 83개소(상황실 1, 통신국 19, 송신소 11, 수신소 1, 무인중계소 51)
- 시설비 : 노후 통신장비 교체 및 장비보강을 위한 장비구입 등 시설비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재원) :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 지원기준 및 한도 : 국고 80%, 자담 20%

- 총 사업비를 초과 비용은 사업주관기관(수협중앙회)에서 부담한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검토 단계
(해수부) ・사업계획 수립 시달	(해수부) ・세부사업계획서 승인(필요시 보조사업자에게 수정 요청)	(해수부)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요청(해수부 요청시 수정)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자금배정 및 사업시행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평가 및 환류
(해수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승인 교부	(해수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현장점검 실시(필요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해수부) ・사업평가 점검 ・정산보고서, 감사보고서 점검
(보조사업자) ・해수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업자) ・분기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해수부 시정요구에 대한 개선 조치	(보조사업자) ・사업평가 실시(중간, 최종) ・정산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어업정보통신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 시달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19년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을 위한 세부사업계획서 검토·승인

- 사업계획서 검토후 해양수산부 사업 추진계획상 요구내용 등의 미반영된 경우 사업계획서 수정을 요구하고, 수정후 반영

수협중앙회

○ ‘19년 어업정보통신국 운영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및 승인요청

- 해양수산부 세부 사업계획서 수정 요청시 의견반영 재작성 및 제출

* <붙임 2> 2019년도 어업정보통신 지원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제출

3. 사업자검토 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 어업정보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사업과 정부간 어업협정에 따른 민간어업협력사업 등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수협중앙회에서 직접 수행

4. 자금배정 및 사업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의 세부 사업계획서 승인을 통보하고 수협중앙회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송금

- 보조사업 신청이 보조금 관련 법령 및 동 사업시행지침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금은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에 따라 분할하여 교부

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은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해수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세부사업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변경승인 요청서를 제출하고 해양 변경승인시 사업 변경추진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의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 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서 포함) 등을 통해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 받아 점검 및 평가

-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 지연, 부당 집행 등의 사례 파악
- 점검 결과 현장점검이 필요할 경우 현장에 대한 점검 실시

○ 점검 및 평가결과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거나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있는 등 문제가 발견된 경우 수협중앙회 즉시 시정 요구

수협중앙회

○ 분기별 사업 추진실적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서 포함)를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해양수산부 점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조치 실시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연 2회(중간평가, 최종평가)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토록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조치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주관으로 연 2회(중간평가, 최종평가)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해양수산부에 보고

* 평가위원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성과, 예산집행상황, 사업홍보 추진사항, 어선원 등 정책수혜자의 만족도 및 문제점, 개선점 및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수협중앙회는 매년 회계연도 및 보조사업 종료시 「보고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은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수협중앙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보고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19년도 어업정보통신지원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금액(국비)	비 고
합 계	**17,347,000**	
□ 어업정보통신국 운영	13,514,000	
○ 인건비	10,874,000	
○ 운영비	2,640,000	
□ 어업정보통신국 시설	3,833,000	
○ 장비유지비	1,293,000	
○ 노후장비교체	336,000	
○ 장비보강	204,000	
○ 창원어업정보통신국 신설	2,000,000	

<붙임 2>

2019년도 어업정보통신 지원 세부 사업계획서

Ⅰ. 운영방향

□

○

Ⅱ. 운영비 조달 및 집행 계획

□

○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

Ⅳ. 2019년 세부시행계획

□

○

5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

① 지역별 창업투자 지원센터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이 시 원 사무관 송 준 석 주무관 유 종 민	044-200-5420 044-200-5427 044-200-542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해양수산업의 창업 및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별로 거점 센터를 선정·운영하여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 및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해양수산에 특화된 창업·기업 교육, 마케팅 등 맞춤형으로 지원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어·경영기법을 개발하고,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제28조의2(해양수산분야 신산업 개발의 지원) 정부는 해양수산분야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	'16	'17	'18		
지원업체수(개)	240	73	139	167	213	매년말	지역거점센터를 통해 지원받은 업체수
일자리창출수(개)	1,000	195	872	965	983	매년말	창업투자지원센터 통해 지원받은 업체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합 계	9,000	12,000	15,000	15,000
- 국 비	4,500	6,000	7,500	7,500
- 지방비	4,500	6,000	7,500	7,500
- 융 자	-	-	-	-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역전략산업 집적화단지 또는 혁신거점을 조성하여 연구개발, 시제품개발 등을 종합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지역거점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독립법인으로 설치된 기관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지역특화센터*(지역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등)

* 신청시 지방비 납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방비 납입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지자체와 사업비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운영 : 해양수산기업 발굴 및 육성, 마케팅 지원 등

- 기업발굴 : 창업기업 맞춤형 사업화, 창업·중소기업 컨설팅 및 해양수산창업 성장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 기업육성 : 제품개발 및 과제발굴 활성화, 기업 혁신역량 강화, 단기 실용화 제품 기술개발 지원
- 마케팅지원 : 브랜드 개발, 국내 및 해외 마케팅 지원

3. 지원대상

○ 해양수산분야 우수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연관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중소기업 컨설팅 및 R&D 비용, 제품개발 및 브랜드 개발 등 사업 수행기관 사업 프로그램에 따라 사업비 산정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기준 및 한도 : 각 지역특화센터별 사업계획서에 따름(단, 수혜기업 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법」제30조 내지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 공고시기 : 사업시행연도 시작 전 3개월 이내

○ 신청절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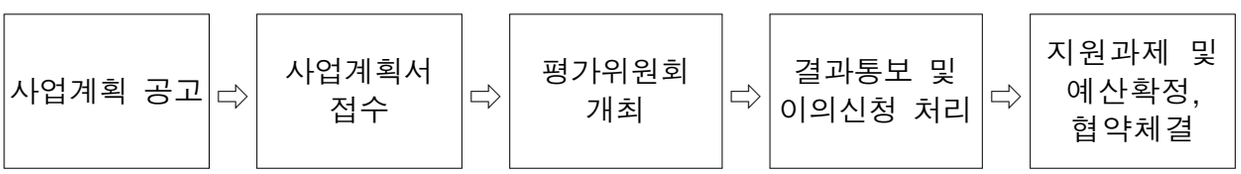

○ 구비서류 : 사업공고 시 구비서류 공지

- 상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를 참조하거나 수산정책과로 문의(044-200-5427, 5428)

○ 신청서 접수 : 신청서(1부) 및 사업계획서(10부) 방문 제출

- 제출장소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접수 불가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 사업자 변경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해양수산부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수행기관
· 사업시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및 통보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등 사업총괄		· 사업수행기관과의 협약체결 · 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 등의 지도·감독 · 사업비 정산 등		· 사업추진계획 수립 · 수혜기업 선정·기업 지원 프로그램 구성 · 사업비 관리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제2호서식) 및 자금 교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사업수행기관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과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

시·도(시·군·구)

○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매년 4월 이후 전년도 사업의 정산보고서를 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사업비 사용의 타당성 및 부정수급 여부 등을 조사

《제재》

○ 「보조금법」제30조 내지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보조금 반환조치 및 보조사업 취소·중단 조치

사업수행기관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기업 간의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대로 사업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환수조치

6.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수행기관 협약서 내용을 준용한다.

②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이 시 원 사무관 송 준 석 주무관 유 종 민	044-200-5420 044-200-5427 044-200-5428

Ⅰ. 사업개요

1. 목적

○ 수산분야 벤처 등록기업과 특허 등록자 등에게 저리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수산기술의 산업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 추진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제20조(벤처수산업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 및 영어·경영기법을 개발하고,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지원·육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	'16	'17	'18		
사업화자금 지원건수(건)	8건	신규	신규	신규	3건	매년말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화자금 지원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09	109	109	109
- 국 비	109	109	109	109

* 융자금은 수협은행이 부담하고 정부는 기준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보조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하는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2. 사업자격 및 요건

○ 사업자 자격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발급한 “우수기술 확인서(별지 3호)”를 받은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여신기관의 대출심사 규정에 자격 미달인 자

3. 지원대상

○ 수산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가 가능한 중소기업 또는 어업법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분야 R&D에 대한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영자금(시제품생산, 연구·시험장비 구입 등)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기준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보조)

○ 지원형태 및 조건 : 연리 2.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총 지원액(이차보전)			업체당 지원액			비고
	계	국비	자담	계	융자	자담	
수산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109	109	-	1,000	1,000	-	-

○ 집행주체(주관기관) : 수협은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주요내용	담당기관	세부내용
사업공고	해양수산부	○ 해수부 홈페이지 공지
⇩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상담 및 사전신용평가	수협은행	○ 사업신청서 접수 * 수산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호**) ○ 지원내용 및 지원프로세스 상담 - 대출 기본요건 검토 : 사전신용평가 등 *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발급(**별지 2호**)
⇩		
기 술 평 가 신청서접수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우수기술평가' 또는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 신청서, 금융기관 사전상담확인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기술평가 예비심사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접수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대출대상 자격,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평가 예비심사
⇩		
기술평가 본 심사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신청기업은 기술평가기관과 평가계약 체결, 기술평가수수료 납부 ○ 기술평가 실시 -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기술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평가결과를 통보
⇩		
우수기술 확인서교부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 업체 및 금융기관에 "우수기술확인서(**별지 3호**)" 교부
⇩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대출신청서 접수	수협은행	○ 대출신청서류 접수 - 우수기술 확인서(인증서), 대출관련서류 등
⇩		
대출심사	수협은행	○ 신용평가(기업체 신용등급 결정) - 신용등급, 채권보전 방법(담보, 보증서, 신용) 및 자금지원 여부 결정
⇩		
대출실행	수협은행	○ 자금지원 여부 결정 통보 ○ 채권보전 조치 및 대출 실행 - 담보 근저당 설정, 보증서 취득 등

1. 사업계획수립 단계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시·군·구), 수협은행장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시달한다.

2. 사업신청 단계

○ 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1호)에 기술사업계획서를 구비하여 수협은행에 신청한다.

- 사업신청자의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고 보완 후 다시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 수협은행은 사업신청자에게 금융기관 사전상담확인서(별지 2호)를 교부하여야 한다.

○ 사업 신청자는 수협은행의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 시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이행점검단계

《추진상황 점검》

○ 사업비 집행내역 등 매 분기별 추진현황 보고(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사후관리》

○ 수협은행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 즉시 자금 회수

○ 수협은행은 융자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 지도·감독

《제재》

○ 「보조금법」제30조 내지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보조금 반환조치 및 보조사업 취소·중단 조치

Ⅳ. 기타사항

○ 융자금의 대출 등

- 융자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융자금취급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에 따름
- 대출 취급시 농신보 등 신용보증서에 의한 대출을 최대한 활용
- 신용등급 판정을 위한 신용평가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우수기술사업화자금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 기술수준 관련 항목을 우대하여 평가

○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347호)에 따르며, 세부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하여 집행

○ 사업 담당기관 및 부서

- 해양수산부 : 수산정책실 수산정책과(044-200-5427,5428)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정책기획본부 기술사업화실(02-3460-4021)
- 수협은행 : 수산금융부(02-2240-8525)

【제1호서식】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 자금지원 사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 해당하는 항목에만 기재	기관(업체)명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주 생산품 (주요 연구분야)		업종
	기업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기타) [ ]국공립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 ]대학 [ ]기타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팩스	전자우편

신청 기술	기술명칭	
	적용제품 명칭 ※ 해당되는 경우 기재	모델 명칭 ※ 해당되는 경우 기재
	기술의 완성수준	[ ]개발완료단계 [ ]시제품생산 [ ]시험가동설비운영 [ ]양산단계
	상품화 예상기간	[ ]양산 중 [ ]6개월 이내 [ ]1년 이내 [ ]1년6개월 이내 [ ]기타( )
	신청내용	[ ]소 요 자 금 : [ ]자 금 용 도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수협은행장 귀하

제출서류	1. 기술사업계획서 1부

기 술 사 업 계 획 서

1. 기술사업 개요

기술(사업)명				개발 방법	□단독 □공동
총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총소요자금	백만원	제품화여부	□여 □부
당해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당해사업 소요자금	백만원	당해사업 신청자금	백만원
권 리 구 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프로그램저작권 □기타 ( )	제품화 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		
권리상태	□출원중 □등록				
등록(출원)번호					

권 리 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관계	
발 명 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관계	

2. 기술의 내용

주요기술내용	(기술의 특성 및 핵심기술, 기술개발내용 및 과정 등)

도입 또는 개발희망기술	(향후 품질향상, 제품개발 등의 필요에 따라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기술에 대한 내용)

기 술 명(제품명이 아닌 구체적인 기술명을 기재)	개 발 목 적	개 발 주 체
	□원가절감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자체 개발 □공동개발(□타기업 □대학 □ 연구소)
	□원가절감 □품질향상 □신제품 개발	□자체 개발 □공동개발(□타기업 □대학 □ 연구소)

시장상황	(경쟁상황, 시장안정성, 주요수요처, 유사 제품 및 경쟁업체 현황 등)

연도별		전전년도	전년도	신청년도(예상)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명
시장 규모	국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해외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관련 근거 또는 출처 :

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	(국내 경쟁사 제품 및 국외 경쟁사 제품과의 품질, 기술, 가격 비교 등)

생산추진계획	(개발완료 및 제품화시기, 설비도입, 양산착수, 판매 등의 계획)

3. 사업장 및 설비 투자계획(신청금액 1억원 이하 기업 작성 생략 가능)

• 인력확보계획

구 분	현재인원 (신청일현재)	추가 소요인원		확보방안
		년도	년도	
연구개발직				
사무·영업직				
생산·일용직				
계				

• 사업장 확보 계획 (단위:백만원)

소 재 지	규모(m^2)	자가, 임차	소요자금	자금조달방법	비 고

• 설비 도입계획 (단위:백만원)

시 설 명	규 격	수 량	용 도	소요자금	제작처

4. 판매계획 및 전략

(단위:백만원)

판매계획	제 품 명 (상 품 명)		전 년 도 실 적	년도		년도		년도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내 수	수 출
	당해기술 사업관련								
	기 타								
	계								
판매전략									
마케팅	전담팀(조직) 보유 여부		전담팀(조직)명		전담인력수				

5.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운전자금

(단위:백만원)

소 요 자 금 내 역			조 달 계 획			
세부내용		금 액	조달방법	기조달액	추가조달확정액	추가조달예정액
운영(생산)자금	재료비		자기자금			
	인건비		금융차입			
	기타경비					
기술개발비			(보증신청)			( )
창업비(창업기업인경우)			기 타			
합 계			합 계			

상 세 비 목		금 액	산 출 근 기
운영(생산)자금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기술개발비	인건비		
	시험검사비		
	재료비		
	금형제작비		
	기술도입비		
	위탁개발비		
	기자재구입비		
	기 타		
창업비	창업(개업)비		
	법인설립비용		
시장 개척 자금	인건비		
	광고비		
	출장비		
	외부용역비		
	기타		
합 계			

• 시설자금(시설자금 신청의 경우 작성) (단위:백만원)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시 설 명	금 액	조달방법	기조달액	추가조달 확정액	추가조달 예정액
		자기자금			
		금융차입			
		기 타			
합 계		합 계			

6. 본사 및 사업장 약도

담당자	직위 : 성명 :	
	TEL : ( )	

【제2호 서식】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지침상 대출 적격 여부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여부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유	무

3. 소요금액

사 업 명	총사업비(㉮+㉯)	㉮융자(90%)	㉯자담(10%)

4. 담보여력(㉮+㉯+㉰) : _____천원

㉮ 동산 · 부동산

담 보 종 류	감정가액 ①	담보인정비율 ②	선순위설정금액 ③	담보여력 (①X②-③)

※ 담보대출의 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 감정가액은 탁상감정으로 평가

㈏ 보증서

담 보 종 류	보증한도	한도산정	비 고
간이신용	5천만원 이내		
일반신용	3억원 이내		
정식신용	3억원 초과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 가능

㈐ 기타담보

담 보 종 류	담 보 가 액	담 보 여 력	비 고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 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대출취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정식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대출적격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부를 최종 결정

《 사업신청자 제출서류 》

O 부동산 및 동산 등 제공 담보 관련 서류 일체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등

O 금융거래확인서

O 자부담 관련 서류

5. 종합의견

○ 신용등급, 대출가부 등 영업점 의견 작성

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수협은행 지점장 (인)

【제3호 서식】

제 0000-000 호

우수기술 확인서

업 체 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표자명 :
주 소 :
기 술 명 :
점 수 :
소요자금 규모 :
용 도 : 우수기술 사업화지원(대출)
유효기간 : 발행일로부터 6개월

위 기술은 우수기술 사업화지원을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이 확인한 우수기술임을 확인합니다. 본 증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직인

6 수산연구시설 및 선박관리(R&D)

① 수산과학관 운영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운영지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	과 장 구도형 서기관 이갑돌 주무관 박은주	051-720-20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과학관을 수산해양의 산 교육장으로 육성하여, 해양수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제고

○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05년부터 민간(한국수산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

2. 근거법령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과학관의 구분), 「국유재산법」 제29조(관리위탁)

3. 성과목표 및 지표

○ 보다 많은 국민이 해양수산 관련 지식과 정보를 직접 확인·체험할 수 있도록 관람객 유치 확대에 최선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수산과학관 관람객 유치 실적(천명)	412 (350)*	304	409	414	413	매년 1월	[(최근 3개년도 관람객 총합)/3] 이상

* 2019년 수산과학관 전시시설 리모델링으로 인해 관람객 대폭 감소 예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100**	**1,200**	**1,300**	**1,400**
- 국 비	1,100	1,200	1,300	**1,4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학관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산계를 대표하고, 관련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보유한 한국수산회에 '05.1월부터 위탁

* 민간위탁 방침 결정('03.10)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05년부터 수산과학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운영관리비를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지원기준 및 한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법」 제21조·제30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위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예산의 범위 내

○ 기준 및 범위 : 예산의 범위 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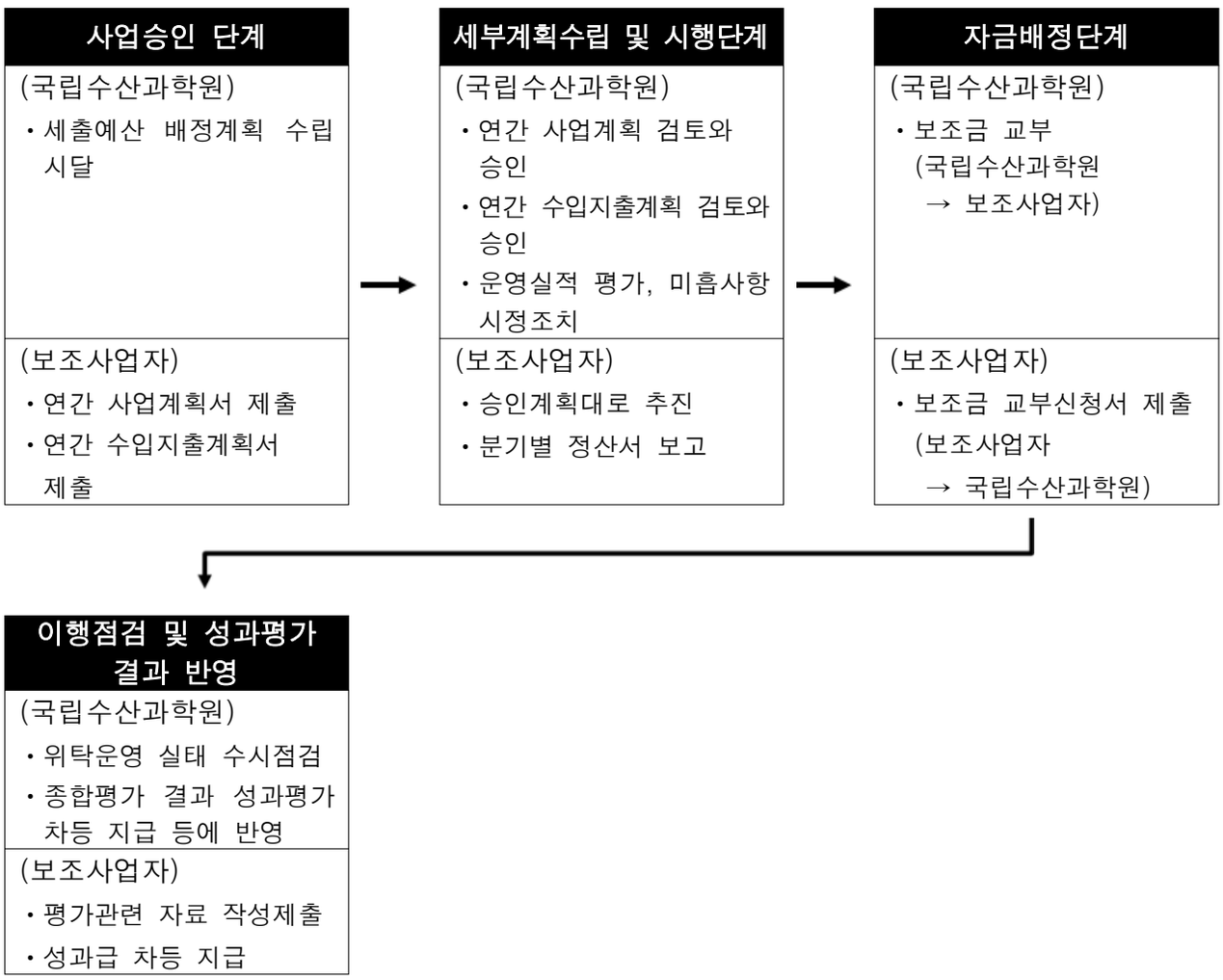

1. 사업승인 단계

국립수산과학원

○ 수산과학관 세출예산 배정계획 시달

수산과학관

○ 운영과 전반에 대한 연간 사업계획서 제출

○ 정부예산 편성내역에 따른 연간 수입지출계획서 제출

2.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국립수산과학원

ㅇ 수산과학관에서 작성한 연간 사업계획 검토와 승인

ㅇ 수산과학관에서 작성한 연간 수입지출계획 검토와 승인

ㅇ 수산과학관에서 제출한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

수산과학관

ㅇ 승인받은 연간 사업계획과 수입지출계획으로 시행

- 해양수산과학기술 자료 발굴 · 수집 · 보존 · 관리와 전시
- 전시물과 부대시설물 운영 · 관리
- 교육프로그램 개설 · 운영과 학습자료 발간
- 해양수산 정책 홍보를 위한 각종행사 개최·지원
- 기타 수산과학관 발전을 위해 위탁자가 인정하는 사업 등

ㅇ 관리·운영과 관련한 수입금명세서와 지출보고서(국가재정법)를 분기별로 보고

3. 자금배정단계

국립수산과학원

ㅇ 수산과학관에서 제출한 분기별 보조금 교부 신청서(서식4)를 검토하여 교부결정 후 자금을 배정(별지제6호서식)

수산과학관

ㅇ 분기별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교부 신청

4. 이행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반영

국립수산과학원

○ 위탁운영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문제점 개선·보완

○ 고객 만족도, 경영 혁신, 자체 수입실적 등을 종합평가하여, 위탁수수료와 성과급 지급에 반영

-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위탁수수료 차등지급

· 90점 이상: 지급 예정 금액의 100%

· 80점 이상 90점 미만: 지급 예정 금액의 90%

· 70점 이상 80점 미만: 지급 예정 금액의 70%

· 70점 미만: 지급 예정 금액의 50%

-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 90점 이상: 지급 예정 금액의 100%

· 80점 이상 90점 미만: 지급 예정 금액의 90%

· 70점 이상 80점 미만: 지급 예정 금액의 70%

· 70점 미만: 지급 예정 금액의 50%

○ 종합평가 결과가 70점 이하이면 관리위탁 협약 해지 등을 검토

수산과학관

○ 평가 관련 자료 작성 제출, 결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7 수산정보화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황통성 사무관 하영호	044-200-5460 044-200-546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양식장 등 수산업(생산·가공·유통 등) 현장에 환경센서 정보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표준모델(정보시스템 체계) 개발 및 보급으로 수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모과제 선정 지원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1조(수산업 및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의 지원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 u-IT융합 모델화”사업을 통해 수산분야(생산·경영·유통·소비 단계)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후 사업시행 이전 대비 생산성 향상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생산성향상(%)	30	33	33	31.9	30	사업종료 후 지자체결과 보고	(사업시행이후 생산량-사업시행이전 생산량) / 사업시행이전생산량 * 100 사업시행 지자체별 생산성 증가율 평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2,400**	**2,400**	**2,400**	**2,400**
- 국 비	960	960	960	960
- 지방비 및 자부담	1,440	1,440	1,440	1,440

※ 사업비 : 2,400백만원(국고 40% : 960백만원, 지방비 및 자담 60% : 1,440백만원, 자부담은 10%이상 권고)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 과제공모에 응모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과제에 양식장 어업인(어업경영체) 등 수산인 반드시 참여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지방자치단체(지방비) 및 어업인 등(자부담)의 추진의지가 있으며 양식장 등 수산업 현장에 환경센서 및 전산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대상 장소의 어업인 등이 참여하여 과제(계획서)응모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사업 운영

-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에 선정된 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관(사업계획·발주·계약·수행, 사후관리 등) 및 준공검사, 정산결과보고 등을 직접수행

- 다만,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한 경우 수협,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산하기관과 공식(문서) 협약(MOU) 체결을 통해 보조사업을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반드시 해양수산부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실시

- 더불어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을 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추진(사업계획·발주·계약·수행·관리 등) 및 절차 등을 보조금·계약법·소프트웨어사업 등 관련 법률·규정·지침에 따라 수행하는지 점검

※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지자체 경상보조이므로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예산비목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과제지원 대상자인 민간인 지원금으로 변경하거나 민간인이 집행하여서는 안됨

3. 지원대상

○ 양식장 등 수산분야(생산·유통·가공 등) 현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신규 모델(정보시스템 체계)개발 과제 및 성과가 검증된 모델 확산보급과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거쳐 현장실사 및 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

- 대상사업 예시

· 양식장에 환경센서를 설치하여 수온, CO2 등을 실시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는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하며 급이 여부 등을 결정하는 양식장 관리시스템

· 굴 박신장별 실시간 생산량 측정 및 굴수협위판장 정보연계 등

· 기타 양식장, 가공업체 등 수산업 현장의 시설정보와 ICT를 접목한 정보시스템 관리체계 개발 등

※ 세부 대상과제(예시)는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추진계획 참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지자체 경상보조이므로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예산비목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과제지원 대상자인 민간인 지원금으로 변경하거나 민간인이 집행하면 안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지원기준 및 한도 : 국고 40%, 지방비 및 자담 60%(자부담 10%이상 권고)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금법」제30조 내지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6조(보조금 교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중 반환 및 취소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법률·규정 등에 의거 조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 24억원 규모 중 국비 40%(9.6억원) 이내

- 과제당 총 6억원 규모 중 국비 40%(2.4억원) 이내 지원

○ 기준 및 범위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1개 과제당 국비 2.4억원 이내 지원(중복지원 불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과제)신청 단계	지원사업(과제) 평가단계
(해양수산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사업추진계획 시행 – 지원액, 지원대상, 공모방법, 평가 등 세부계획 시행	(해양수산부) ·제안과제 검토 및 현장실사 평가(평가위원회 구성)
(시·도) ·해당없음	(시·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전파 ·공모 과제계획서 제출	(시·도) ·평가 및 현장실사 대응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어업인등이 포함된 공모과제계획서 작성 제출 (시·도 경유)	(시·군·구) ·평가 및 현장실사 대응

과제협의·조정 및 과제선정 단계	최종과제 계획서 제출 단계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과제별 사업비 규모 및 자부담 비율 협의·조정	(해양수산부) ·최종 과제계획서 접수	(해양수산부) ·보조금 신청(지자체)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시·도) ·과제별 사업비 규모 및 자부담 비율 협의·조정	(시·도) ·최종 과제계획서 제출 (시·도 → 해수부)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군·구) ·과제별 사업비 규모 및 자부담 비율 협의·조정	(시·군·구) ·최종 과제계획서 제출 (시·군·구 → 시·도)	(시·군·구) ·지방비(추경예산)확보 ·어업인(경영체) 자부담 확보

사업시행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양수산부) ·착수, 중간, 완료보고회 참석	(해양수산부) ·보조사업 총괄	(해양수산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사업자 선정 ·착수,중간,완료보고회 참석 ·사업착수,중간,완료보고회 실시 통지(시·도 →해수부)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사업실적보고서 – 정산보고서 등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서류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사업자 선정 ·사업착수,중간,완료보고회 실시 통지(시·군·구 → 시·도, 해수부)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사후관리	(시·군·구)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등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서류 제출 (시·군·구 → 시·도)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2019년 사업시행지침 시달

○ 2019년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 추진계획(지원규모, 공모대상, 평가 등) 수립(매년 2월)

- 공모대상, 지원규모, 선정(평가)방법, 과제평가위원회 구성 등 사업추진계획 수립

○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 대상 과제공모 모집 공고(3월, 1회*)

* 보조금 국고지원규모 내에서 과제공모가 필요한 경우 추가공모 실시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대상 과제공모 공지

- 지방자치단체에 문서통보

※ 2020년 과제공모부터 지자체 '20년 본예산안에 편성 추진할 수 있도록 '19년 8월(정부안 심의 후) 공모예정

2. 사업신청 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주관(수행)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에서 과제공모 세부추진계획을 통지받은 때에는 즉시 수산업(생산·가공·유통 등) 현장의 어업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지

- 사업종류, 지원(자격·조건·기한 등), 신청방법, 선정기준 등

- 민간사업자 선정 시에는 보조금 수행대상 배제, 교부제한, 중복수급 여부 및 추진의지, 자부담, 현장시설 적정성 등을 고려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과제공모 기간 이내에 어업인 등이 참여한 과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과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등 서류 제출

○ 신청서 접수

-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 과제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는 지정된 공모 기한 이내로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에 서류 제출(접수)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 공모(선정)주체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지원금액의 적정성 판단

- 공모과제에 대한 과제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모과제에 대한 현장실사 및 과제(계획서) 등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선정

* 공모사업의 추진의지, 과제효과, 현장적합, 지원규모 및 사업범위 등 종합적 적정성 검토

- 공모과제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국비 지원액 이내에서 선정
- 필요한 경우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선정 과제의 지원규모(사업내용, 지원비 등) 적정성에 대해 협의·조정을 실시하며, 협의·조정 결과에 따라 과제 내용을 수정한 최종 과제계획서 등 제출요청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최종적으로 확정된 과제에 대하여 국고지원규모 등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시·도(시·군·구)

○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 공모과제에 참여할 어업인 등을 공지·선정

- 어업인 등을 선정 시에는 보조금 수행대상 배제, 교부제한, 중복수급 여부 및 추진의지, 자부담, 현장시설 적합성 등을 고려

○ 선정된 과제는 사업주관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

- 다만,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한 경우 수협, 지방자치단체 연구소·산하기관과 공식(문서) 협약(MOU) 체결을 통해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을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반드시 해양수산부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실시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을 할 경우에는 사업추진(계획발주·계약·수행·관리 등) 및 절차 등을 보조금·사업시행지침·계약법·소프트웨어사업 등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점검

○ 사업내용 및 대상자 변경 : 선정 과제의 참여 수산인(자부담인)을 변경하거나 과제계획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수행

○ 지방자치단체는 선정 과제의 협의·조정이 있는 경우에 수정한 최종 과제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별지 제1호서식] 과제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과제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운영계획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관기관 참여확약서

※ 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금의 규모, 조달방안,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과제신청기관은 대표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 공동주관기관 참여확약서를 과제신청서에 첨부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해양수산부 2019년 사업시행지침 및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사업수행

○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과제계획서에 따라 자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세부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업절차 및 장비 설치에 관해서는 전문기관(정보화 부서 등)의 의견을 반드시 참고하여 수행

○ 선정과제의 사업주관(시행)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관(사업계획·발주·계약·수행, 사후관리 등) 및 준공검사, 정산결과보고 등을 직접 수행

- 다만, 원활하고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가능한 경우 수협, 지방자치단체 연구소·산하기관과 협약(MOU)을 통해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을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에 승인을 받은 후 실시

※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지자체 경상보조이므로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 예산비목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과제지원 대상자인 민간인 지원금으로 변경하거나 민간인이 집행하면 안됨

○ 사업발주 및 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 사업발주·공고·계약체결은 사업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입찰 진행 및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사업주관기관은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 과제수행과 관련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준용하여 감리 수행

○ 사업보고회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시스템 개발)과 관련 사업(착수·중간·완료)보고회 등 사업 진행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결과물의 활용

- 주관기관은 사업결과물을 활용한 서비스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노력해야함
- 해양수산부는 사용권을 가질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지적재산의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결과물을 활용할 것을 승인하거나, 사업결과물을 양도받은 기관은 별도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 사업주관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최종 과제계획서와 다르게 대상 어업인등 변경, 사업내용 변경 등 승인 없이 변경해선 안되며,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수행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군·구
· 사업시행지침 시달 · 보조금 교부·통보 · 추진사항점검·확인		· 사업추진계획 수립 · 보조금 신청 · 사업자 선정 · 사업관리·감독		· 사업시행 · 사후관리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완료 등에 따라 제출한 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서류)의 적절성 여부 등 검토

시·도(시·군·구)

○ 시·도는 사업대상 시·군·구(사업자)에 보조금 교부 시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적절성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사업비(국고,지방비,자부담)은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실적의 확인 등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자금을 집행
-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

○ 정산 및 결과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사업폐지 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보조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실적보고서 : 정산보고서 및 계약서, 사업결과보고서, 기타 해양수산부에서 요청한 추가 서류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기 전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업비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사업절차가 적절한지 정산보고와 관련 증빙서류 검토 및 사업준공결과 등을 확인

6. 이행점검단계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보고회 참석 등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정상 추진여부 등 사업부진 예방

○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 결과보고서 등을 통한 사업측정
- 사업성과측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하는 사업성과측정 지표(생산성 향상) 결과보고서 등 제출

시·도(시·군·구)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추진(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착수·중간·완료)보고회 등 사업 진행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지방자치단체는 과제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주기적인 집행상황 점검

- 시스템 구축사업 정산(완료)을 위해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 확인, 시스템 구축 준공검수, 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및 동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과 이에 따른 이자 환수 등 법률에 따라 조치

○ 지방자치단체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축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계획(예산분담, 역할, 지원방법 등)을 수립하여 관리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성과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및 시설양수양도를 할 수 없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단,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능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비고
사업과제계획서	지자체(사업자)	해양수산부장관	교부신청시	
사업추진실적	지자체(사업자)	해양수산부장관	개발착수·중간·완료보고시	
사업비검정 및 정산, 결과	지자체(사업자)	해양수산부장관	사업종료후 2개월이내	

《제재》

해양수산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및 동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과 이에 따른 이자 환수 등 보조금 반환

○ 부정 보조금 교부, 보조금의 다른 용도사용, 사업내용 변경, 보조사업 인계·중단, 부정수급 등 사전 승인없는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

- 부당한 사업집행 등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와 결과보고를 요구

시·도(시·군·구)

○ 지방자치단체는「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및 동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과 이에 따른 이자 반납

○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정당한 사업집행(사업비, 사업추진 등) 및 사업내영 변경, 부정수급 등을 행한 과제참여 수산인(자부담인)은 사업지원 제한

○ 부당한 사업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조치와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7. 본 세부사업지침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음.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서식] 과제신청서

수산분야 u-IT융합 모델화사업 과제신청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주관기관이 다수일 경우 대표주관기관명으로 작성					
과제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비	합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금	천원		

수산분야 u-IT융합 모델화사업을 붙임과 같이 신청함에 있어 향후 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주관기관의 업무를 비롯한 소유권 양수, 운영환경 조성, 제도 정비 등 과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주관기관으로서 제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붙 임 : 과제계획서 1부.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주관기관의 장 직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과제계획서

과제명				
공동주관기관				
과제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위(급)		전화/이메일	
사업기간				
소요재원	총 ○○억원(국고 ○○%, 지자체 ○○%, 자부담 ○○%)			
필요성	*※ 해당 과제 제안 배경 및 경위*			
사업 목표	*※ IT 신기술 적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주요 사업 내용	*※ 본 과제에서 개발할 응용 SW 대상업무, 대상기관, 적용범위, 주요내용, 과제완료 후 제공될 서비스 및 프로세스 개선 내용 등*			
운영계획	*※ 동 과제의 성공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향후 운영계획*			
기대효과	*※ 성과 증진, 효율성 향상 등 정성적 효과 및 인건비 절감, 업무절차 단축, 생산성 향상, 어업인 소득 증대 등 정량적 효과 서술*			

※ 1~2장 내외 핵심내용 중심으로 작성(참고자료는 추가 작성 제출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운영계획 확인서

수산분야 u-IT융합 모델화사업 운영계획 확인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수산분야 u-IT융합 모델화사업의 원활한 구축 착수 및 향후 운영을 위해 아래의 사항에 대해 확인합니다.

- 아 래 -

항목	확인내용
주관기관 자부담금 확보여부	
운영계획, 운영예산 확보 및 지원여부	
통신회선비 확보 및 지원여부	
표준화 방안 준수	

년 월 일

주관기관(신청기관)의 장 직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관기관 참여확약서

공동주관기관 참여확약서

과 제 명						
대표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비	합계	천원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금	천원		
공동주관기관	기관명		책임자			
	기관명		책임자			
	기관명		책임자			

당 *주관기관명*은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상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주관기관인 *대표주관기관명*과 함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의거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주관기관장 : (직인)
과 제 책 임 자 : (인)

공동주관기관장 : (직인)
공동주관기관책임자 : (인)

공동주관기관장 : (직인)
공동주관기관책임자 : (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자부담금 출자확약서

자부담금 출자확약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주관기관이 다수일 경우 대표주관기관명으로 작성
자부담금	일금 원정(₩)

<자부담금 내역>

기관명	자부담금	비율(%)	비고
합 계			

※ 다수의 주관기관이 출자하는 경우 기관별 자부담금 출자 금액 제시

년 수산분야 u-IT융합 모델화사업으로 신청한 *과 제 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상기금액을 자부담금으로 출자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제 확정 이후라도 과제선정 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관기관(신청기관)의 장 직인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8 천일염산업육성

① 천일염산업육성(지자체)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정도현 사무관 하소형 주무관 정창균	044-200-5440 044-200-5449 044-200-545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염전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천일염의 고급화 및 현지 가격 안정에 기여하고, 생산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수행해온 수집, 저장, 선별, 유통 시스템을 규모화, 집단화, 현대화하여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

2. 근거법령

○ 「소금산업진흥법」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 천일염종합유통센터 건립 추진율	6%	-	-	26%	매12월	예산교부액(누계)/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합 계	19,003	27,003	16,003	16,003
□ 천일염포장재 지원	**1,177**	**1,177**	**1,177**	**1,177**
- 보 조	353	353	353	353
- 지방비	353	353	353	353
- 자부담	471	471	471	471
□ 염전바닥재 개선	**7,633**	**7,633**	**7,633**	**7,633**
- 보 조	2,290	2,290	2,290	2,290
- 지방비	2,290	2,290	2,290	2,290
- 자부담	3,053	3,053	3,053	3,053
□ 장기저장시설설치	**3,000**	**3,000**	**3,000**	**3,000**
- 보 조	900	900	900	900
- 지방비	900	900	900	900
- 자부담	1,200	1,200	1,200	1,200
□ 염전취수용배관설치	**200**	**200**	**200**	**200**
- 보 조	60	60	60	60
- 지방비	60	60	60	60
- 자부담	80	80	80	80
□ 천일염생산시설자동화*	**3,993**	**3,993**	**3,993**	**3,993**
- 보 조	1,198	1,198	1,198	1,198
- 지방비	1,198	1,198	1,198	1,198
- 자부담	1,597	1,597	1,597	
□천일염종합유통센터건립	**3,000**	**11,000**		
- 보 조	1,500	5,500		
- 지방비	1,500	5,500		
- 자부담	-			

*** 내역사업 : ① 자동채염기, ②반자동포장기계, ③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전동대파기**

1 천일염 포장재 지원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 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천일염 포장재 지원(20kg 이하 규격, 천일염 품질인증업체 우선지원)

○ 지원규모

- box형 포장재(20kg이하 규격) 및 일반 포대형포장재, 또는 2중 코팅 포대형 포장재(20kg이하 규격으로 재봉틀에 의한 봉인(이력제 스티커 부착 시 스티커와 함께 재봉)으로 제작)

* 일반 포대형 포장재 지원 시 국비:지방비:자부담 비율은 25:25:50으로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일반 포대형은 25%, 25%,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금액

- box형 포장재 개당 국고 315원이하(개당 사업비 1,050원의 30%)
- 2중 코팅 포대형 포장재 개당 국고 105원이하(개당 사업비 350원의 30%)
- 일반 포대형 포장재 개당 국고 88원이하(개당 사업비 350원의 25%)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함.

사 업 자

○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및 지자체

〈포장재 디자인 및 규격 등〉

○ 시장·군수는 소규모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에게 지원하는 포장재는 해당 지자체에서 디자인, 규격 등을 확정하여 지원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지역여건상 법인 혹은 작목반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포장재를 공동 구매할 경우 지원 가능

○ 천일염 포장자동화 설비, 기타 관련설비 등이 시설되어 대규모로 처리 가능한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은 디자인, 규격 등 자체 선정 가능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 등〉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포장재 제작업체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사업지침에 따른 완료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별지 4호서식]으로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5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 상황, 지원목적에 적합한 사용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 필요시, 지자체 담당자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사전 통지 없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함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시장·군수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기재된 증빙서류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도지사는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연도 1월말까지)
  * 이월 등으로 기준일까지 정상적인 정산이 어려울 경우,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가정산하여 우선 보고하고 추후 정산이 마무리되면 실 정산보고 실시

○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0년도 예산 신청(3월말)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0년도 예산 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가내시 통보(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시·도별 사업 예산 확정 알림(국회 예산 확정일에 따름)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2 염전바닥재 개선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염전 결정지 바닥재

○ 시설기준

- 천일염 바닥재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 PVC 재질의 경우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제조 공정상의 비의도적인 혼입 가능성을 감안하여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총 함유량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어린이용 장신구 부속서 1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재질 중의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다이부틸프탈레이트(DBP),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의 총 함유량이 0.1 % 이하로 허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금액

- 타일옹기 소재 : ㎡당 국고 6,000원이하(㎡당 사업비 20,000원의 30%)
- 친환경 장판소재 : ㎡당 국고 3,000원이하(㎡당 사업비 10,000원의 30%)

(기존의 친환경 장판소재를 다시 친환경장판 소재로 변경하는 경우. 단, 비친환경 장판을 친환경장판 소재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당 국고 4,500원(㎡당 사업비 15,000원의 30%))

* 타일·옹기 소재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 다만, 지자체별 천일염 생산시기 등 사업 추진 가능 시기를 고려하여 조기에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신청 절차 추진 가능

사 업 자

○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및 지자체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표준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나.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시공은 사업자 직접 추진

다. 매년 1월말까지 전라남도 신안군수는 공고 등을 통해 염전바닥재 생산업체로부터 단가, 제품규격, AS규정, 제품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받아 동 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하여 공급제품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선정된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함.
신안군수는 단가 등 제출받은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전라남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에 알려주어야 함.

라. 시장·군수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마.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및 설계서 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 바닥재 제품 검사>

가.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시공할 바닥재 제품을 계약한 경우 제품명·단가 등 계약조건과 제조사의 시험성적서가 동 지침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나.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바닥재 교체 시공을 하기 전에 관내 시공 건수의 10%를 무작위 추출하여 공인된 검사기관에 동 지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사 의뢰하여야 함. 이 경우 검사수수료는 국비(천일염 품질인증지원 사업)에서 100% 지원

* 시공건수는 동일한 시기에 1개 염전에 1개의 제품을 시공하는 것을 1건으로 보며, 시기·염전·제품 등이 다른 경우 별개의 건수로 산정

** 10% 산출 시 1건이 안 되는 경우 1건으로 처리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다. 시장·군수는 나호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반기에 1회 이상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라. 시험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즉시 사업자에게 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제품으로 시공할 것을 지시하고 재시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 결과를 시·도와 해양수산부에 통보하여야 함

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생산한 제조사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는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재발 시에는 동 제조사의 모든 염전 바닥재 제품에 대해서 염전 바닥재 개선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재발 시 지원하지 않아야 함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별지 4호서식]으로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5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바닥재의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 필요시, 지자체 담당자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사전 통지 없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함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시장·군수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기재된 증빙서류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도지사는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연도 1월말까지)

  * 이월 등으로 기준일까지 정상적인 정산이 어려울 경우,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가정산하여 우선 보고하고 추후 정산이 마무리되면 실 정산보고 실시

○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0년도 예산 신청(3월말)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0년도 예산 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가내시 통보(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시·도별 사업 예산 확정 알림(국회 예산 확정일에 따름)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3 장기저장시설 설치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구분	내용
중·대형	○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지방자치단체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소형	○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농(어)업회사법인
공통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어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 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 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대형저장창고 : 저장창고 및 부대시설(부지 매입비 제외)
- 소형저장창고 : 저장창고(부지매입비제외)

○ 설치규모

- 중·대형 장기저장 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면적(대형 1,650㎡, 5천톤, 중형 990㎡, 3천톤)이상으로 시설하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하며 이 경우 기준 면적의 20%이상을 가감시킬 수는 없음
- 소형 장기저장시설의 경우 최소한의 면적(85㎡, 250톤) 이상으로 시설하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하며, 기준면적의 20%이상을 가감시킬 수 없음. 단, 필요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기준 면적을 추가적으로 가감 가능

* 소형 저장시설의 경우, '13년 천일염품질관리사업에 의한 '저장창고 표준설계' 활용 권고

○ 시설기준

구분	내용
중·대형	○ 시설 부지는 집단화된 염전과 인접한 곳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함 ○ 시설 내부는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수 배출이 가능하고, 자연건조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함 ○ 저장·이송 작업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을 갖출 것 ○ 저장공간은 품질별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할 것을 권장함
소형	○ 시설 부지는 염전 허가 부지 내 * 염전 허가 부지 내 설치함에 따른 구비시설변경 사항 발생할 경우 필요시,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소금제조업 변경허가 실시 ○ 시설 내부는 식용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간수 배출이 가능하고, 자연건조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함 ○ 저장공간은 품질별로 저장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할 것을 권장함 ○ 기존 소금 창고의 변경 또는 증축은 불가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단, 시설부지 매입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금액

- 대형 : 개소당 국고 450,000천원 이하(총사업비 1,500,000천원의 30%)
- 중형 : 개소당 국고 270,000천원 이하(총사업비 900,000천원의 30%)
- 소형 : 개소당 국고 22,500천원 이하(총사업비 75,000천원의 3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소형 저장시설을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대형·중형 저장시설 지원의 경우 해당 기초 자지단체(시·군·구)에 배정된 예산의 50%를 넘을 수 없음. 필요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지원 추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공고를 하여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적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저장시설 예정부지가 건축법, 환경보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사전 확인 후 필요한 방안 조치 강구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지조사, 시군 심의회를 거쳐 기업화·규모화 가능성, 운영자금 확보 능력, 지역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량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 업 자

○ 장기저장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설치사업계획서[별지 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장기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사업 시행 예정시기까지 확보할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장기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사항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장기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시장·군수에 통보

사 업 자

○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로 확정되면 설치사업계획서 [별지 1호 서식]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월별 공정계획서 포함)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계획 변경) 사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시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 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별지 4호서식]으로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5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 필요시, 지자체 담당자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사전 통지 없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함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시장·군수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기재된 증빙서류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도지사는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연도 1월말까지)
  * 이월 등으로 기준일까지 정상적인 정산이 어려울 경우,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가정산하여 우선 보고하고 추후 정산이 마무리되면 실 정산보고 실시

○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천일염 품질관리, 상품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통한 천일염 유통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사업관리기관(시장·군수)는 지원된 저장시설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지정·관리하고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준공일	10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시·도지사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사업비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 시장·군수는 완료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7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0년도 예산 신청(3월말)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0년도 예산 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가내시 통보(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시·도별 사업 예산 확정 알림(국회 예산 확정일에 따름)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4 염전취·배수용 배관설치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의 경우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하인 법인은 지원할 수 없음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지원시설

- 취·배수관 설치 및 인·배수로, 저수지 정비 또는 취·배수문 등

* 취·배수관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취·배수시설 정비 사업 추진가능

○ 설치규모

- 깨끗한 바닷물의 원수 사용 및 배수로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한 안전한 천일염 생산기반 구축

○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 및 소재를 사용하여야 함
- 「식용천일염의 생산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바닷물을 염전 저수지에 공급하거나 염전주변환경 정비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고품질 천일염 생산을 위한 취·배수용 배관 및 인·배수로 설치
- 취·배수용 배관 및 인·배수로 정비를 통한 주변으로부터 오염 물질 혼입 방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단, 시설부지 매입비는 사업비 지원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금액

- 대규모 취배수용 배관설치 : 개소당 국고 60백만원 이하~15백만원이상(총사업비 200백만원~50백만원의 30%)
- 소규모 취배수용 배관설치 : 개소당 국고 10.5백만원 이하~4.5백만원 이상(총사업비 35백만원~15백만원의 3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공고를 하여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 시장·군수는 적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염전취·배수용배관 예정부지가 건축법, 환경보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저촉 여부를 사전 확인 후 필요한 방안 조치 강구
- 취·배수용배관 및 인·배수로 시설 예정부지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사업인지를 사전 검토*
  * 법령 저촉 여부, 토지소유자 기공승낙서 확인 등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심사 및 현지조사, 시군 심의회를 거쳐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적격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량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확정한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 업 자

○ 염전취·배수용배관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설치사업계획서 [별지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타인 소유의 부지를 사용할 경우 소유자의 “기공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 자 체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제출한 장기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시행계획 및 변경사항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장기저장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및 세부 사업 시행계획에 대해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시장·군수에 통보

사 업 자

○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로 확정되면 염전 취·배수용배관 설치계획서 및 세부사업시행계획(월별 공정계획서 포함)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 (사업계획 변경) 사업 대상자는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시행

사업자 및 지자체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설 계

○ 사업대상자가 건설 법령에서 정한 설계 유자격자에게 의뢰하여 설계서를 작성하고 시장·군수에게 설계서의 적정성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설계변경 포함)

○ 시장·군수는 설계서 내역을 검토하여 보완사항 등 필요한 조치 이후 승인 하여야 다.(설계변경 포함)

나. 시 공

○ 해당분야 관련법에 의한 면허를 가진 자(일반 또는 전문건설)로서 시공능력, 시공실적, 기술자 확보,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 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참여 허용

○ 시장·군수는 적정한 시공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경쟁 입찰 적용 원칙

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독공무원 지정 선택 운영

○ 시장·군수는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준공 시 설계서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 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사업관리 주체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별지 4호서식]으로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5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 필요시, 지자체 담당자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사전 통지 없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함

《사업비정산》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시장·군수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기재된 증빙서류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도지사는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연도 1월말까지)
  * 이월 등으로 기준일까지 정상적인 정산이 어려울 경우,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가정산하여 우선 보고하고 추후 정산이 마무리되면 실 정산보고 실시

○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사업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사업관리기관(시장·군수)는 지원된 저장시설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지정·관리하고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염전취·배수용배관시설	준공일	5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시·도지사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사업비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 시장·군수는 완료사업장에 대해 반기에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7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0년도 예산 신청(3월말)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0년도 예산 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가내시 통보(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시·도별 사업 예산 확정 알림(국회 예산 확정일에 따름)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5 천일염생산시설 자동화 지원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① 자동채염기, ② 반자동포장기계, ③ 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전동대파기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가 시·군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① 자동채염기, ③ 수문제어 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 전동대파기

○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또는 2019년 내에 생산예정인 개인, 법인, 지자체, 조합 등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② 반자동포장기계

○ 공기업,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천일염관련 협동조합, 개인 및 법인(천일염 생산자)

* 염전에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에 농약사용이 적발되거나 잔류농약이 검출된 염전 및 염전생산자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염전 및 생산자는 지원대상에서 배제

-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천일염 인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음

3. 지원대상

① 자동채염기

○ 지원대상

- 결정지에서 생성된 소금을 이동수레로 옮기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채염자동화 기계

○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사용자 안전성, 이용편의성,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 장비공급업체는 재무건전성, 지속적인 AS 역량 등을 확보하여야 함

② 반자동포장기계

○ 지원대상

- 소금창고 등에서 천일염 출하 시 인력을 보조하여 포장 과정을 수행하는 기계

○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사용자 안전성, 이용편의성,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 장비공급업체는 재무건전성, 지속적인 AS 역량 등을 확보하여야 함

③ 수문제어급·배수자동화시스템

○ 지원대상

- 천일염 생산 공정을 무인화·자동화하기 위한 수문원격제어, 급·배수자동화시스템, 관측장비, 송신장치 등

○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 수문원격제어 장치, 급·배수 자동화 시스템, 기상관측 장비 및 송신장치가 연계된 구성을 갖추어야함
- 장비공급업체는 재무건전성, 지속적인 AS 역량 등을 확보하여야 함

④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 지원대상

- 농축된 함수에 유입된 이물질을 자동으로 여과 처리하는 장치

○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 유효정수량은 3마력 모터 기준 40t/hr이상, 정수된 함수를 시험하였을 때 불용분과 사분 함량의 합은 0.15w/v%이하, 철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자석의 경우 1만 가우스 이상 내장) 포함
- 장비공급업체는 재무건전성, 지속적인 AS 역량 등을 확보하여야 함

⑤ 전동대파기

○ 지원대상

- 결정지에서 생성된 소금을 가장자리로 모으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채염자동화 기계

○ 시설기준

- 식품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소재와 구조이어야 하며, 사용자 안전성, 이용편의성, 내부식성, 절연성 등을 갖추어야 함
- 장비공급업체는 재무건전성, 지속적인 AS 역량 등을 확보하여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자동채염기, ②반자동포장기계, ③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전동대파기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① 자동채염기, ② 반자동포장기계, ③ 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전동대파기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기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① 자동채염기

○ 사업별 지원금액

- 자동채염기 : 대당 국고 6,000천원 이하(총사업비 20,000천원의 3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②반자동포장기계

○ 사업별 지원금액

- 대당 국고 12백만원 이하(총사업비 40백만원의 3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③ 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 사업별 지원금액

- 수문제어 급·배수자동화시스템 : 개소당 국고 10,500천원 이하(총사업비 35,000천원의 3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④ 함수 자동정화 처리장치

○ 사업별 지원금액

- 함수 자동정화 처리장치 : 개소당 국고 2,100천원 이하(총사업비 7,000천원의 3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⑤ 전동대파기

○ 사업별 지원금액

- 전동대파기 : 대당 국고 1,800천원 이하(총사업비 6,000천원의 30%)

○ 사업시행 주관기관 : 시장·군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① 자동채염기, ②반자동포장기계, ③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전동대파기

시·도(시·군)

○ 시장·군수는 1월 중으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보,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2월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사 업 자

○ 사업자는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시군에서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① 자동채염기, ② 반자동포장기계, ③ 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전동대파기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보고한 사업물량을 토대로 시·도별 사업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사업량 배정 통보

○ 시장·군수는 자체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별지 2호 서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① 자동채염기, ⑤전동대파기

사업자 및 지자체

〈공급 장비 선정〉

가. 전라남도지사는 천일염 생산자,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 8인~15명으로 구성된 장비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구성, 장비선정 기준 및 방법,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규정을 마련

나. 전라남도지사는 공고 등을 통해 장비제공업체로부터 규격, 소재, 성능, 단가, AS규정 등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세부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제공할 제품과 기준 등을 결정

- '19년도 장비선정 기준이 '18년도 기준과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이 없을 경우, '18년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제품은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공급할 수 있음. 다만, '18년도 선정된 제품일 경우라도 주요재원 및 공급단가가 상승된 경우에는 심의를 하여야 함.

다. 전라남도지사는 선정 결과를 시장·군수를 통해 사업자에게 알리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며, 동 사업을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에 통보

라. 사업자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제품 중에서 장비를 구입

마. 시장·군수는 장비 구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장비 인도 시 사업자 입회하에 당초 계약대로 납품되었는지를 확인

② 반자동포장기계

사업자 및 지자체

〈공급 장비 선정〉

가. 시장·군수는 아래 기준을 갖춘 장비가 천일염 생산어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기본 구비시설 및 처리능력>

- 이송시설 (벨트, 스크류컨베이어 등)
- 대포장 계량기: 300포/h 이상 (롤러 이송시설 포함)
- 대포장 포장기: 500포/h 이상 (20kg/포 기준)

<관련 기준>

- 소금과 접촉하는 시설(기계, 이송시설)의 표면은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과 식품위생법 제 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 할 것
- 각종 설비는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의 제품 또는 동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

나. 사업자는 위 기준에 적합한 장비 중에서 구입

다. 시장·군수는 장비 구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장비 인도 시 사업자 입회하에 당초 계약대로 납품되었는지를 확인

③ 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사업자 및 지자체

〈설계 및 시설업체 선정〉

가. 시장·군수는 아래 기준을 갖춘 장비가 천일염 생산어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기본 시설기준>

- (수문제어 급·배수자동화시스템) 수문 원격제어 장치, 급배수 자동화 장치, 관측 장비(염도, 온도, 습도, 강우량 등), 송신 장치(각종 관측 데이터를 스마트 폰으로 송신하는 장치)
- (함수 자동정화 장치) 함수에 농축된 이물질을 자동으로 여과·제거할 수 있는 장치

나. 시장·군수는 공고 등을 통해 스마트염전 장비 생산업체로부터 단가, 제품 규격, AS규정, 기본 시공 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동 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장비에 한하여 공급 장비로 결정하고, 단가 등 제출받은 내용을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공급 결정된 장비로 시공하여야 함.

다.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행” 규정을 적용하여 시공자 선정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현지 및 시공 여건상 사업자 직접 시공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직접 추진 가능

라.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표준 설계도서 제공을 요청할 경우 표준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마.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반드시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

바. 시장·군수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는지 감독하고 계획서 및 설계서대로 준공되었는지 현장 확인 이행

4. 자금배정단계

①자동채염기지원, ②반자동포장기계 지원, ③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전동대파기 지원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대상자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자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관리》

① 자동채염기지원, ② 반자동포장기계 지원, ③ 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전동대파기 지원

사업관리 주체

○ 시장·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등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별지 4호서식]으로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 사업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장 현지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여 익월 10일까지 [별지 5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시·도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부여

* 필요시, 지자체 담당자간 교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거나, 사전 통지 없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함

《사업비정산》

① 자동채염기지원, ②반자동포장기계 지원, ③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 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전동대파기 지원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시장·군수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기재된 증빙서류 따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시·도지사는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연도 1월말까지)

  * 이월 등으로 기준일까지 정상적인 정산이 어려울 경우,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12월말 기준으로 가정산하여 우선 보고하고 추후 정산이 마무리되면 실 정산보고 실시

○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사후관리》

① 자동채염기지원, ②반자동포장기계 지원, ③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전동대파기 지원

사업관리주체

○ 사업관리 기관(시장·군수)은 사업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사업관리기관(시장·군수)는 지원된 장비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으로 지정·관리하고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구입일	5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기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사업비 정산 실적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해양수산부장관)	

○ 시장·군수는 완료사업장에 대해 반기에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7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① 자동채염기지원, ②반자동포장기계 지원, ③수문급·배수자동화시스템 ④함수자동정화처리장치 ⑤전동대파기 지원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0년도 예산 신청(3월말)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0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가내시 통보(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시·도별 사업 예산 확정 알림(국회 예산 확정일에 따름)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사업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6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전라남도 (신안군)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한 설계, 공사 및 시설·장비, 감리 등

○ 사용용도

-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필요한 설계비, 공사비, 시설·장비 구입비, 감리비 등을 지원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량 : 국제기준(Codex)에 부합하는 천일염 및 고품질 천일염 가공제품의 생산·저장·가공·유통 기능을 갖춘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 지원규모 : 총사업비 150억원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 2018. 4 ~ 2020. 12 (총사업기간 2018~2020)

* 사업기간과 예산액은 2019년도 이후 예산 반영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전라남도(신안군)

○ 전라남도지사(신안군수)는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 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연차별 시설투자 등 기본계획 및 부지선정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얻어 시행
- 기본계획 중 시설규모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얻어 시행

해양수산부

○ 전라남도지사(신안군수)가 통보한 천일염종합유통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부지선정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도지사(군수)에게 통보

2. 자금배정단계

전라남도(신안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도지사는 군에 보조금 교부 시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지침 적합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

○ 도지사(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 부담을 우선하여 집행하게 하고 집행실적을 확인한 후 국비를 집행

-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비율 준수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및 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3.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전라남도(신안군)

○ 도지사는 반기별 1회 이상 사업장을 현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별지 4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 도지사는 관련 시·군·구를 통해 분기별 추진 실적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추진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신안군수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점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사 추진상황, 지원시설 적정설치 여부,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년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시설물 적정설치여부, 보조금 집행상황 등

《사업비 정산》

전라남도(신안군)

○ 사업관리 기관(군수)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도지사(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해 책임을 짐

* 신안군은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기재된 증빙서류 따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

- 도지사(군수)는 증빙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에 조회하여 사실여부 확인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도지사(군수)는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다음연도 1월말까지)

  * 이월 등으로 기준일까지 정상적인 정산이 어려울 경우, 해수부와 협의하여 해당연도 12월 말 기준으로 가정산하여 우선 보고하고 추후 정산이 마무리되면 실 정산보고 실시

《사후관리 책임》

전라남도(신안군)

○ 도지사(군수)는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천일염 품질관리, 상품화,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통한 천일염 유통구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 군수는 지원된 종합유통센터를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지정·관리하고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천일염 종합유통 센터	건물	준공일	10년	○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1조 등) ○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의2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기계, 설비	구입일	5년	

- 보조시설물에 대해 보조금 범위 내 부기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

○ 도지사는 관련 군수를 통해 완료사업장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7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4. 성과측정단계

○ 천일염 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의 성과측정은 건립기간('18～'20년) 교부액으로 산정한 사업공정률로 측정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추진 공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유사 사업 추진 시 환류

[별지 1호 서식]

천일염장기저장시설 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자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위치

○ 위치도(1/5,000 축적 지형도)

○ 사업부지

- 면적 : ㎡,
- 소유자 :
- 지번(지목) :
- 농업진흥지역 여부 : (농지전용가능지역 여부 :)
- 개발제한지역 여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발법 등의 저촉 여부 :
- 자기 토지, 천일염 수집지역, 제반여건 등을 상세히 기재

나. 사업규모(부지, 건축물, 시설능력 등)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라. 사업운영방안(연도별 매출계획 등)

5. 사업여건

○

* 장기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사업시행 예정 시기까지 확보할 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별지 1-1호 서식]

염전 취·배수용배관 설치 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3. 사업자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장 위치

○ 사업부지

- 저수지 소유자(　　), 지번 및 지목(　　,　　), 면적(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합 법률, 방조제 관리법 등의 저촉 여부 :

○ 공유수면 점용·허가계획

- 지적위치도(1/5,000 축적 지형도)

- 계획평면도(1/5,000 축적 지형도)

나. 사업규모(점용면적, 구조물 시설계획, 시설능력 등)

다. 소요예산 및 자금조달계획

라. 사업운영방안(연간 취수계획 및 천일염 생산계획 등)

* 타인 소유의 부지를 사용할 경우 소유자의 기공 승낙서를 첨부

[별지 2호 서식]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시·도명 :

시군명	사업자명	소재지	사업자 구 분	시설 구분	사업규모	지원계획(백만원)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법인 민간	신규 계속	면적, 저장능력 등				

[별지 3호 서식]

○○○○○○사업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생년월일)

5.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계	국고 보조	지방비	자담

○ 세부명세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기타
							거래처,전화번호,기타 필요한 사항
합계							

〈작성요령〉

○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첨부(증빙서류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는 각 사업비 합계와 일치)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자필서명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계좌입금 등)
- 시설설치시 인부에게 제공한 식사대는 정산 대상에서 제외(포장재지원사업은 적용 제외)
- 포장재 인계 운송비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포장재지원사업만 해당)

○ 주요공정 및 완성사진, 작업일지, 기타 사업추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 첨부(포장재지원사업은 적용 제외)

○ 세부시설(사업)명 단위사업의 실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구분하고, 소요자재(인력)명은 자재, 장비, 인력,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한 상세하게 구분(포장재지원사업은 적용 제외)

○ 포장재 디자인 도안 및 완성사진, 기타 사업 추진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포장재 지원 사업만 해당)

[별지 4호 서식]

○○○○○○보조사업 점검 결과 보고서

1. 시군명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비 집행명세

(단위 : 원)

내역사업명	사업계획			국고보조금교부액(A)	보조금집행액			집행잔액(A-B)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B)	지방비	

5. 기타 점검시 특이 사항

[별지 5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

1. 시·도명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 추진현황(실적)

* *내역사업별로 작성*

5. 예산집행 실적 및 전망

(해양수산부, 농특회계) (백만원)

사 업 명	'18년 예산(A)	*상(하)반기*			*하반기*	
		계획 (B)	집행액 (C)	집행률 (C/B)	계획	전망
○ 천일염산업육성						
- 천일염포장재지원						
- 염전바닥재개선						
…						
…						

* *하반기 보고 시에는 계획·전망 대신 이월·불용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6. 향후 추진계획

* *내역사업별로 작성*

7. 현지점검 실적

* *내역사업별로 작성*

8. '18년 이전 시설설치 사업(중요재산) 사후관리 실적

* *내역사업별로 작성*

9. 이월예산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이월예산 승인 받은 경우)

* *이월 연도별로 작성*

10. 기타 특이 사항 및 건의사항

[별지 제6호 서식]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정산서

(제23조제1항 관련)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인)**

3. 확인자 직 성명 : **(인)**

4. 민간 또는 시·도명 :

5. 정산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예산액	보조금 교부결정액	보조금 교부확정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 과년도 이월 사업이 있는 경우 아래의 서식에 따라 추가작성

이월연도	사업명	세부사업명	물량	이월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별지 7호 서식]

시설·장비 관리 대장

1. 시군명 :

2. 작성년 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비 점검명세

사업자	시설(장비) 소재지	보조사업규모	지원액				준공일 (구입일)	국비 지원일	점검일	장비 상태 등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면적, 수량, 소요 비용 등								

5. 기타 점검시 특이 사항

② 천일염 소비촉진홍보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정도현 사무관 하소형 주무관 정창균	044-200-5440 044-200-5449 044-200-545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내산 천일염에 대한 가치 및 우수성, 활용성 등을 통해 소비촉진 도모

2. 근거법령

○ 근거 :「소금산업진흥법」 제15조(전시 및 홍보 등)

* 동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예산 관련 법령,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 소금박람회참관객수	50,000	49,317	49,881	미정	매12월	박람회 결과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18
합 계	**224**	**224**	**224**	**224**
□ 천일염소비촉진홍보	**224**	**224**	**224**	**224**
- 보 조	224	224	224	224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① 소비촉진홍보, ② 소금박람회 지원

① 소비촉진홍보

- 천일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업·단체 또는 기관

② 소금박람회지원

- 해수부, 전남도, 신안군, 영광군 공동개최 사업으로 주관 지자체인 전남도에서 선정한 사업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① 소비촉진홍보, ② 소금박람회 지원

① 소비촉진홍보

- 사업자격 및 운영: 홍보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업·단체 또는 기관
-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보조사업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상

② 소금박람회지원

- 사업자격 및 운영 : 소금산업박람회를 개최·운영할 수 있는 업·단체 또는 기관
-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보조사업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대상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소비촉진홍보, ② 소금박람회 지원

① 소비촉진홍보

ㅇ 지원대상 및 사용용도

-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시행
- 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
- 온라인 광고 및 홍보
- 천일염 인식 제고 등을 업무협약, 교육교재 제작·배포

② 소금박람회지원

ㅇ 지원대상 및 사용용도

- 소금박람회 개최 홍보
- 소금락회장 운영, 관리
- 기념품제작·배포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① 소비촉진홍보, ② 소금박람회 지원

① 소비촉진홍보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한도 : 154백만원

② 소금박람회지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 지원한도 : 7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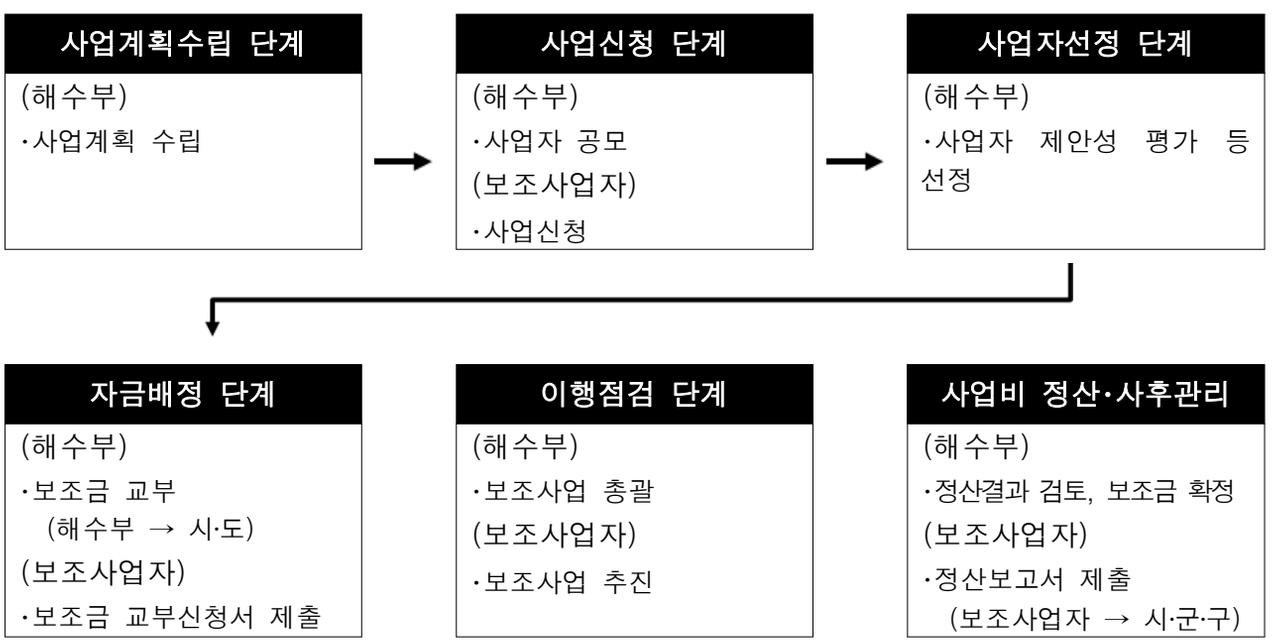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계획 수립(매년 1월)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 선정된 사업자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천일염소비촉진사업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 해양수산부는 천일염소비촉진사업의 지원을 위한 공모 실시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 공모계획을 참고하여 천일염소비촉진 홍보을 위해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신청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공모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사업수행을 위한 비용 선 지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후 정산
- 정산시점 : 사업실적보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 정산방법 : 총 소요비용에 대해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시행 중 사업자에게 타당성조사 진행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하게 하여 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

-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자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천일염소비촉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

* 필요시, 사전 통지 없는 불시점검을 할 수 있음

《제재》

해양수산부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관리 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9 수산물해외시장개척

① 수산물해외시장개척(총괄)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 장 지정훈 사무관 장용호 주무관 이현옥	044-200-5480 044-200-5483 044-200-548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업체의 품질관리, 상품개발, 시장 개척, 정보수집,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여 수산물 유통·무역 시장 확대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소비자 등의 책임) 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3조(수산물의 품질관리 등) 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물 생산 이후의 관리기술 및 원산지표시와 품질관리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5조(수산물의 수출 진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업 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산물을 수출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우리 수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박람회 상담계약액, 수산물 수출국가수, 가공수산식품 수출액을 성과지표로 구성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국내외박람회 참여를 통한 상담계약액(백만불)	180	151	163	176	171	'20.2	정부지원 국제수산박람회 참여를 통해 체결된 상담금액을 측정
수산물 수출 국가수	147	138	138	144	147	'20.2	관세청 수출 통계로 측정
가공수산식품 수출액(백만불)	843	669	727	904	843	'20.2	관세청 수출 통계로 측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9,503	28,511	27,941	27,662
- 국 비	29,503	28,511	27,941	27,662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물·수산식품 생산·가공·유통·무역업체, 생산자단체, 영어조합법인, 수협중앙회, 한국수산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수산물·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무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 또는 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수산물·수산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유통·무역업체, 지자체 등 수산물 생산·가공·유통·무역과 관련이 있는 업·단체 모두가 사업 자격이 있음

○ 내역사업별 참여 업·단체 선정 시 가점 부여
- 수산물 품질관리사 인력 보유 업·단체
- K·FISH 브랜드 제품 업체(제품에 브랜드를 표시하고 생산 중인 업체)
- 수출수산물 브랜드대전 입상 업체 및 수산식품 명인 지정업체
- 기타 내역사업별 특성에 맞는 기준으로 사업계획 제출 시 승인 된 기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물·수산식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유통·무역업체, 지자체 생산·가공·유통·무역에 전문성이 있는 업·단체 등이 사업 지원 대상임

○ 내역사업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는 아래와 같음

< 전문조직 육성 >

- 협의조직 구성 및 규모화, 공동 무역현안 대응, 마케팅, 상품 포장 개선, 물류 개선, 안전성검사, 전문인력 양성, 관리·운영 비용 등

< 우수수산물 유망상품화 >

-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유망상품 개발 및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등

< 수산식품 품질관리 >

- (가공설비 지원) 수산식품 안전에 필요한 품질관리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기기 개선
- (물김세척수정수시설) 마른김 안전성 관리와 환경보호를 위해 물김 세척수·

배출수 등을 정수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

- (무역애로해소) 바우처 사업, 상품 라벨링, 등록공장 가공용수 검사, 국가별 사전등록, 준비 자문 등 무역초보기업의 애로해소와 관련 되는 비용
- (수산식품 국가표준 운영) 수산물 가공식품 KS 개정(안) 도출, 시판품 조사, 품질시험 분석, 인증심사 비용 등
- (국제인증) 할랄, 코셔, MSC, ASC, Global GAP 등 수산식품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국제인증 취득 소요경비
- (국가통합브랜드) 세계 각국에 통합브랜드 상표 등록비 및 운영비, 홈페이지 구축, 브랜드 확산 등 통합브랜드 운영에 관련 되는 비용

< 수산산업 인프라 구축 >

- (무역지원센터) 무역기업 인큐베이팅, 홍보·판촉, 시장개척단 운영 경비 등
- (수산식품앵커숍) 임차비, 장치비, 홍보·판촉비, 시식행사비 등
- (청년 마케터 육성) 청년의 수산식품기업 취업을 위해 무역전문가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
- (공동물류센터) 국내외 공동물류센터 구축 및 이용에 소요되는 경비
- (활어무역용컨테이너제작) 활어 무역에 필요한 특수컨테이너 제작비용

< 수산기업 경영개선 >

- (리스크 안전망 구축) 환변동, 미수금, 신용보증, 신용조사 등 리스크에 대한 안전망 구축 소요 경비
- (무역시장분석센터) 국가별·품목별 시장조사, 무역통계, 시장 동향 조사, 인력교육, 사업 홍보, 운영경비 등

< 수산식품 거래선 발굴 >

- (박람회 운영) 부스임차료, 기본비품(진열대, 상담테이블 등), 전시품 운송·통관비, 통역비 등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 (관광객 홍보관 운영) 홍보관 설치비, 이전비, 상담요원 통역비, 운영비 등
- (무역 상담회) 상담회 개최 경비, 구매담당자 현장시찰 경비 등

- (온라인시장 활성화) O2O, 온라인 등 시장진출에 필요한 임차비, 장치비, 행사비, 운영비, 입점비, 홍보 마케팅비 등

< 대내외 통합마케팅 >

- (통합마케팅) 주요 홍보매체(TV, SNS 등) 광고를 위한 컨텐츠 제작 및 배포, 미디어 관계자 팸투어 사업비, 품목별 특화 프로젝트, B2B 프로모션, 홍보·판촉 행사 등
- (지자체 연계마케팅)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B2B·마케팅 등의 사업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여 규모화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형태) 민간경상보조·자본보조, 자치단체 경상보조·자본보조

○ (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 지원조건

구분	집행단위 사업명	지원조건
전문조직 육성	전문조직 육성	국고 80%, 자부담 20%
우수수산물 유망상품화	우수수산물 유망상품화	국고 80%, 자부담 20%
수산식품품질관리	가공설비 지원 물김세척수정수시설 무역애로해소 수산식품 국가표준 운영 국제인증 국가통합브랜드 운영	국고 30%, 자부담 70%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국고 70%, 자부담 30% 국고 100% 국고 70%, 자부담 30% 국고 100%
수산산업 인프라구축	무역지원센터 수산식품 앵커숍 청년마케터육성 공동물류센터 활어무역용컨테이너제작	국고 100% 국고 80%, 자부담 20% 국고 100% 국고 80~100%, 자부담 0~20%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수산기업경영개선	리스크 안전망 구축 무역시장 분석센터	국고 90~95%, 자부담 5~10% 국고 100%
수산식품거래선 발굴	박람회 운영 관광객 홍보관 운영 무역 상담회 온라인시장 활성화	국고 30~100%, 자부담 0~70% 국고 80%, 자부담 20% 국고 100% 국고 100%
대내외 통합마케팅	통합마케팅 지자체연계 마케팅	국고 100% 국고 50%, 지방비 5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 서식)를 작성

2. 사업신청단계

보조사업자

○ 작성된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 서식)를 해양수산부로 제출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별로 보조사업의 연속성, 기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4. 자금배정단계

보조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자금송금 요청

해양수산부

○ 보조금 교부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공통 제4호 서식) 및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상 문제점, 예산 사용의 적정성 등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별지 제1호 서식)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 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3억원 이상 보조금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

○ 기타 사항은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제재》

해양수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 삭감

보조사업체

○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보조사업별로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해양수산부에 성과달성 여부 보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8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추진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 시정토록 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별지 제1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부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년]

<보조사업자명>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				
		집행계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이자

주) 1. “단위사업”은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으로 기재

2. “세부사업”은 세부 내역사업명을 기재

3.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 사유 등

4. 이자는 반납 시점을 고려하여 작성

5. 필요할 경우, 작성서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해도 무방

② 물김세척수정수시설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 장 지정훈 사무관 김용원 주무관 권용찬	044-200-5480 044-200-5485 044-200-5486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며,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마른김 제조공장의 가공용수를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여 위생·안전성 확보를 통한 김 수출확대 및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 수산업법 제8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마른김 제조공장 위생가공시설(정수시설) 확충 도모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 마른김 가공업체 정수시설 설치율(%)	15	-	-	-		'20.2월	('19년까지 정수시설 설치업체수/전국 마른김 가공업체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5,950**	**5,940**	**5,940**	**5,940**
- 국 비	4,785	1,782	1,782	1,782
- 지방비	4,785	1,782	1,782	1,782
- 자부담	6,380	2,376	2,376	2,376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인 경우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설립 후 마른김 제조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어업법인이 아닌 경우

- 마른김 제조분야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기타사항

-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법인의 경우 의결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구비

- 당해 연도내 마른김 제조공장 사업의 완공이 가능하다는 증빙서류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된 자에 한하여 마른김 제조분야 운영실적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 제한 기준

-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군·구에 중요재산(기 지원된 시설물) 현황을 보고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는 포기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제한

- 하나의 주소지내 하나의 사업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주소지내 (지원 받은 사업자 이외) 다른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주소지내에서 최초 지원을 받은 자의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한 날로부터 5년 동안 신청제한

- 어업법인 등 지원받은 단체의 구성원이 신규로 신청하는 어업법인에 속해 있으면 당초 지원 받은 어업법인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신청 및 지원 제한(개인사업자에서 법인구성원, 법인 구성원에서 개인사업자 포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지방(시·군·구)비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원자격 및 요건에 맞지 않는 부적격 사업자 선정으로 사업포기가 발생한 시·군·구는 익년도부터 향후 3년간 신청 제한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지자체의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지자체에 착공보고를 하여야 하며, 미보고시 행정절차 지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을 포기한 자로 간주하여 사업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즉시 대체사업자 선정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마른김 제조에 필요한 물김 세척용수 정수시설, 재사용수 정수시설, 배출수 정수시설, 부대시설(부지구입비 제외)

- 배출수 정수시설 지원 : ①물김 세척용수 또는 재사용수 정수시설을 동 사업으로 설치하려 하거나 ②물김 세척용수 또는 재사용수 정수시설이 기 설치된 상태에서 배출수 정수시설을 추가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지원가능

(다만, 2018년도에 2019년도 보조사업자를 기 선정한 지자체는 2020년부터 적용)

※ **정수시설별 용수의 정의**(식품의약품안전처,「단순처리 농·수산물 위생관리메뉴얼」참조)

1. 물 김 세척용수 : 숙성 및 탈수, 조합·성형·탈수공정에 사용되는 용수
2. 재사용수 : 숙성 및 탈수, 조합·성형·탈수공정에서 배출되는 용수를 정수하여 재활용하는 용수
3. 배출수 : 물 김을 마른김으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세척용수를 재사용하지 않고 배출되는 용수

※ **정수시설을 거친 용수의 수질 기준**

1. 물 김 세척용수, 재사용수 :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2호 가의 검사항목*이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
2. 배출수 : 「물환경보전법」 적용

* 배출수 정수시설은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수 수질기준에 적합해야 함(수질검사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금의 재원 : 농어촌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구 분	지원조건
마른김 가공용수(물김 세척수)정수시설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은 지자체 실정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해당없음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해당없음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사업자 공고·선정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를 대상으로 익년도 사업 수요조사 시행

지자체

○ 시·도는 시·도 단위 종합사업계획(지역간 과잉·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마른김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군·구의 사업수요 조사 및 자료 확보

2. 사업신청 단계

지자체

○ 시·군·구는 시·도 단위 종합사업계획을 토대로 다음 연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적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신청 서류 접수)

- 시·군·구에서는 여건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당해연도 사업자 첫 모집공고시 30일 이상, 사업자 미신청으로 재공고시 공고기간 단축 가능) 이를 공고해야 함

  (다만, 2018년도에 2019년도 보조사업자를 기 선정한 지자체는 2020년부터 적용)

- 시·군·구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지원자격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제출받아 사업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사업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만 시·도 단위 종합사업계획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3.31일까지>

해양수산부

○ 시·도가 제출한 종합사업계획과 사업계획서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한 내용을 우선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5.31일까지>

○ 다음년도 예산(안) 조정 및 확정<사업시행 전년도 12.31일까지>

3. 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한 예산안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 시·군·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당연도 예산 확정 통보를 받은 후 해당연도 2월 15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통보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시행 해당연도 2월 28일까지>

○ 시·군·구는 사업자 선정시 자체 평가 기준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해야 하며, 旣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를 사업자로 선정하되,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사업자

○ 선정된 사업자는 시·군·구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시행 해당연도 2.28일까지>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지자체의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지자체에 착공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해당지자체에 보고해야 함

지자체

○ 시·군·구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않아 사업포기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사업시행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당연도 2월 28일까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야 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교부신청 시 건축허가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권확보증명서(지상권 포함),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다시 제출받아 재확인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4. 자금배정 단계

시·도

○ 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상유무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정산방법은「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름

○ 사업완료 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

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자체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 등의 근저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정수시설 (부대시설 포함)	준공일부터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6. 성과측정단계

○ 마른김 제조업체 정수시설 가동률 및 마른김 제품의 위생·안전성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의 집행실적, 지방비 확보상황, 보고실적 및 사업평가 등을 고려하여 다음년도 예산 반영

- 사업부진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 삭감
-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우선 고려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자자체간 연계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우선 고려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 준공 후 동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수질검사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정보를 지지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할 수 있음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별지 제1호 서식]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업계획서

1. 세부사업명	마른김 가공용수(물김 세척수)정수시설				
2. 사업위치					
3. 사업규모	o 면적 : 부지 ㎡, 연면적 ㎡ o 정수능력 : Ton/일 o 주요시설 :				
4. 사업내용	o				
5. 사 업 비	백만원(국비 지방비 자담)				
6. 지원조건	국고 %, 지방비 %, 자담 %				
7. 세부 사업추진 일정	o 년. 월 : o 년. 월 : o 년. 월 :				
8. 시행주체	○○시장, 군수 (사업자 : ○○수산 대표 ○○○)				
9. 부지확보여부	o 확보여부 :				
10. 매출규모 (단위 : 백만원) ※'19부터는 계획	'18	'19	'20	'21	'22
11. 광역시·도 검토의견 (우선순위 포함)	o				
12. 담당자	o ○○시·도 : o ○○시·군 :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2019년 00분기)

1.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마른김 가공용수(물김 세척수)정수시설	
2.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3. 사업비	사업장 주소	
	사업량	부지 00㎡, 정수능력(Ton/일)
	사업비	총사업비 00백만원(국비00, 지방비 00, 자담 00)
	사업품목	정수시설 등
4. 추진상황 ※ 날짜를 기재	사업자 선정	
	사업자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보조금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확정(예정)	
	보조금 지급 완료(예정)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획				집행실적(누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금액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수산물 물류 표준화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정도현 사무관 박정인 주무관 김재훈	044-200-5440 044-200-5441 044-200-54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등 표준화된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을 통해 하역 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및 위생관리 강화 도모

2. 근거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수산물 규격화의 촉진) 제2항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규격화의 촉진을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거래 품목의 규격에 맞는 장비의 제조·사용, 규격에 맞는 포장, 이에 필요한 유통 시설 및 장비의 확충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자금지원)

제110조(자금 지원) 정부는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 또는 농수산물의 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장자재, 시설 및 자동화장비 등의 매입 및 농산물품질관리사 또는 수산물품질관리사 운용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 비율(%)	18.7	신규	신규	17.8	18.4	매년 1월	플라스틱어상자 사용량/위판장 어상자 사용량 (수협 자체 통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896**	**1,748**	**1,712**	**1,696**
- 국 비	948	874	856	848
- 자부담	948	874	856	848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업인, 생산자단체, 위판장, 공판장, 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등 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하역기계화 및 물류 효율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생산자단체 등

○ (**선정 제외 대상**)「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어상자, 지게차, 전동차, 파렛트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위한 임차료 지원사업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위한 임차 비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민간경상보조, 국고 50%, 자부담 50%

○ (**지원기준 및 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신청 수요 및 전년도 실적에 따라 조정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수산물 물류표준화 사업 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수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추진계획 통보

수협중앙회

○ 어상자, 지게차, 전동차, 파렛트 등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신청 공고 (12월중)

○ 지원대상자 사업신청서 접수

3. 사업자선정 단계

수협중앙회

○ 사업공고를 통해 접수한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당해 연도 세부사업추진계획을 해양수산부에 보고(1월말)

* 재원(자담) 확보 여부를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시 다음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사업비 지원계획 등을 통보

○ 사업대상자는 수협중앙회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자담 확보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사업지원 대상자 확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매칭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수협중앙회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수산부는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한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수협중앙회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자별 예산은 당해연도 배정기준에 의해 개별사업자에게 연간 단위로 배정

5. 시행 단계

수협중앙회

○ (**사업계획 변경**) 사업대상 지역, 투자규모 등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 조치

-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 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협중앙회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 집행절차**) 사업추진 내용, 임차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물류기기임대사용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 (**사업 관리**)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반드시 사업장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 감독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관리(연 2회 이상)

- 점 검 반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또는 해당기관에서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는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사업집행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추진상황 및 점검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분기말)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보조금 전액 반납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실시

수협중앙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 및 추진절차 준수

○ 수협중앙회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 보고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 삭감 가능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함께 제출

* 다만, 보조사업자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

○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

*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수협중앙회

○ 관련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은 용도에 맞게 사용·집행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6. 성과측정단계

○ 수협중앙회는 수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참여한 사업자의 어상자 사용현황 조사하여 플라스틱 어상자 사용비율을 해양수산부에 제출(1월말)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수협중앙회는 당해 연도 사업결과와 산지위판장 및 소비지 도매시장의 물류기기 현황 및 실태 등을 분석하여 자체 물류 표준화사업 확대방안 마련·추진

8. 기타 사항

○ 기타 동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협중앙회는 2020년 지원 사업자를 사전에 조사하고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도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3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수협중앙회가 제출한 예산신청서 등을 반영하여 2020년도 물류표준화 사업 예산요구안 작성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11 노량진수산시장 건립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정 도 현 주무관 최 수 경	044-200-5440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건립된 지 40여 년이 경과하여 노후도가 심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추진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3조(재정 지원)

>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 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 노량진수산시장 건립사업 공정률(%)	100	99	99	99	12월말	달성 공정률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778**	**-**	**-**	**-**
- 국 비	1,245	-	-	-
- 지방비	-	-	-	-
- 자부담	533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협중앙회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수협중앙회

* 시설부지 확보(자가 소유 또는 임차 등),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되어야 함

○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노량진수산시장 건립 지원

* 노량진수산시장 건립 사업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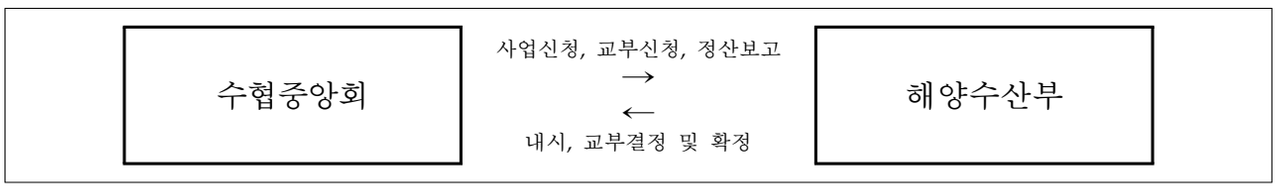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수협중앙회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수협중앙회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 자담 확보 방안, 민원발생 여부 및 대책, 지자체 의지 등 적정성 검토

○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협중앙회에 예산안 통보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수협중앙회

○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가급적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대행토록 추진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보조사업 관련 계약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안 통보

수협중앙회

○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5.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비 집행

수협중앙회

○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수협중앙회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수협중앙회

○ 지자체의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 실시

라. 기타사항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수협중앙회

○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수협중앙회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해당 없음

12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정 도 현 주무관 최 수 경	044-200-5440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자단체 중심의 산지(FPC 등)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연계하는 다거점 공동물류 인프라 구축 지원

2. 근거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 국가는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수산물을 수집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할 목적으로 보관·포장·가공·배송·판매 등 수산물의 유통 효율화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수산물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개설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3조(재정 지원)

>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등 보조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사업 공정률(%)	59.8	33	19.7	52.4	12월말	(연도별 예산 누적투자액 /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30,100**	**20,306**	**12,000**	**12,000**
- 국 비	15,050	10,153	6,000	6,000
- 지방비	-	-	-	-
- 자부담	15,050	10,153	6,000	6,00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협중앙회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수협중앙회

* 시설부지 확보(자가 소유 또는 임차 등),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되어야 함

○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소비지분산물류센터 지원

*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 사업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 : 민간자본보조(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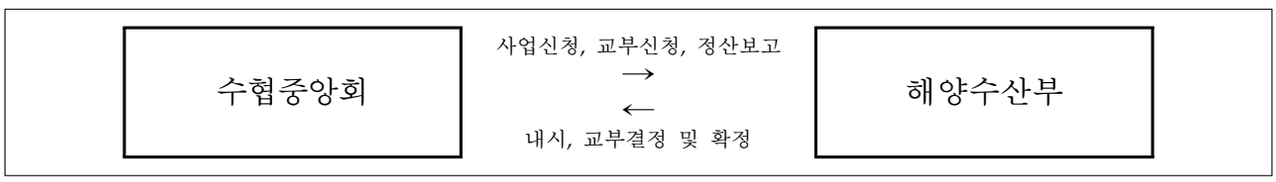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수협중앙회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에서는 자담 확보 방안, 민원발생 여부 및 대책, 지자체 의지 등 사업계획서를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매년 1월말까지)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 자담 확보 방안, 민원발생 여부 및 대책, 지자체 의지 등 적정성 검토

○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협중앙회에 예산안 통보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수협중앙회

○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가급적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대행토록 추진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보조사업 관련 계약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시·군의 승인하에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안 통보

수협중앙회

○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5.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비 집행

수협중앙회

○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수협중앙회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수협중앙회

○ 지자체의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 실시

라. 기타사항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수협중앙회

○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수협중앙회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해당 없음

13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정 도 현 주무관 최 수 경	044-200-5440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73년에 건립되어 노후도가 심한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추진

2. 근거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3조(재정 지원)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기구의 육성을 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민영 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등 보조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공정률	17.0	3	4	14.5	12월 말	(연도별 예산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4,286**	**31,690**	**47,536**	**47,536**
- 국 비	3,000	22,183	33,276	33,276
- 지방비	857	6,338	9,507	9,507
- 자부담	429	3,169	4,753	4,753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부산시

○ 간접보조사업자 : 부산공동어시장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광역시·부산공동어시장
  * 시설부지 확보,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 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되어야 함

○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 시설 설치 타당성 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등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 * 부지매입비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경매시설, 냉동·냉장시설 등
- 물류시설 : 파렛트, 지게차, 운반상자, 냉동탑차, 활어수조차 등
- 철거,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사업비 산출근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종합물가정보 등) 사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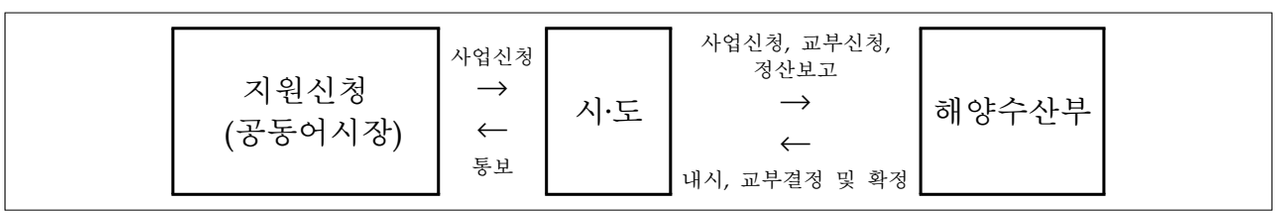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부산공동어시장

○ 매년 사업계획서를 부산광역시 제출(매년 1월말까지)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공정율 등의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 해양수산부에 제출(매년 2월말까지)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공동어시장

○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부산시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가급적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대행토록 추진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부산시에 제출

○ 보조사업 관련 계약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부산시와 협의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부산시의 승인하에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지자체

○ 부산시는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해양수산부에 제출(2월말)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계획서(변경사유, 검토결과 등을 첨부)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부산시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 해양수산부는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예산안 통보

부산광역시

○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6.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

부산광역시

○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공동어시장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부산광역시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부산시의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라. 기타사항

부산광역시

○ 부산시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부산광역시

○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보조금 회수 등 필요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시)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을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부산시의 승인을 받고,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 부산시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공동어시장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해당 없음

14 수산물 위생관리

① 수산생물질병관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 장 윤분도 사무관 이상윤	044-200-5610 044-200-5622
지자체(시·도, 시·군·구)	방역수행 관련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수산생물질병의 예방·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

2. 근거법령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3조, 제37조의5, 제38조, 제42조 및 제43조

○ 「수산업법」 제54조 및 제86조

○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및 제8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병원체 검출 시 방역 등의 신속한 조치를 통하여 안전한 수산생물을 생산하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 전염병 모니터링율 향상

(단위 : %)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	'16	'17		
■ 양식장 법정 전염병 모니터링율	9.2	6.5	8.7	8.7	'20.1월말	양식장 모니터링 개소수/법정 전염병 모니터링 대상어가 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5,875**	**5,875**	**5,875**	**5,875**
- 국 비	2,068	2,068	2,068	2,068
- 지방비	1,943	1,943	1,943	1,943
- 자부담	1,864	1,864	1,864	1,864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상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지침에서 같다)에 따른 살 처분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업인, 수산생물집합시설의 관리자, 수산생물운송업자, 활어수조 등 수산생물의 보관과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생계안정자금 : 법에 따른 살 처분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업인

○ 방역비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관련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동물예방백신 : 양식장을 운영 중이며, 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2. 사업 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 공통요건 :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체계를 필요로 하는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지자체(병성감정실시기관·방역수행기관 포함)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

- 양식장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
- 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별도요건 : 영어조합법인 등(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제31조[별표 3])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 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04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19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19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다만,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통기준에 따름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별도기준

- 보상비
  * 신고대상인 수산생물을 발견한 후 지체하여 신고한 수산생물양식자
  *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
  * 수산생물거래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
  *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

* 수산생물의 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수산생물양식자
* 지원제한 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별표 4] 보상금의 감액기준에 따라 지급

- 생계안정자금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투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양식어가
  *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격리 또는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양식어가
- 방역비 : 지자체가 위촉한 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인건비 성격)은 당해 지자체에서 배정한 방역비(경상보조)의 70% 초과 지원 제한
- 수산동물예방백신 :「약사법」제85조 제6항에 따라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의 건강에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 등은 처방전 없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소 등과 계약 등을 통해 사업을 참여하려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이후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기준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상비 》

○ 법 제16조에 따른 살 처분 전염병(잉어봄바이러스병)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가

- 살 처분 수산생물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에 관한 고시(제2013-94호)에 따름

○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으로 격리 또는 이동제한 등의 명령을 받았으나 확인결과 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염병의 발생·확산을 예방·방지하기 유해 검사 또는 수산생물용 의약품을 투약 하였으나 전염병과 무관하게 이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수산생물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유해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을 명령하였으나 전염병과 무관하게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수산생물
*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유해 수산생물의 사체를 이동·매몰 또는 소각 등을 제한하였으나 전염병과 무관하게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수산생물
*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유해 임상증상이 있는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하여 소독·소각 또는 매몰을 명령하였으나 이와 무관하게 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물건
*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검역을 신청하여 실시한 결과 합격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출하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지정검역물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 시험운영 및 관리비용, 국가시험 시스템 구축·운영

《 생계안정자금 》

○ 법 제16조에 따른 수산생물의 살 처분 명령을 이행한 양식어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
-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한 고시(제2013-95호)에 따름

《 방역비 》

○ 역학조사비(긴급방역비) : 역학조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격리·수송 비용(차량, 선박임차, 폐사 수산생물 소각·매몰·재활용처리 등), 출장비용(현지조사 및 시료채취 등, 공수산질병관리사 포함)

○ 방역사업비 : 방역교육,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 수당 및 경비, 방역사업 및 질병진단에 소요되는 경비
- 자치단체경상보조 : 방역교육 비용(식사료 제외),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수당 및 경비(방역관 및 위촉공수산질병관리사의 방역복 포함), 방역사업 및 질병진단에 필요한 제경비(시약 및 재료비*, 홍보물 제작 비용, 단 소독제, 투약·치료제 제외)

* 시약 및 재료비 : 질병진단에 필요한 시약 및 시료채취 비용
* 방역교육은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의 효율성 제고(위탁계약시 시·도에서 일괄 계약 추진 가능)

- 자치단체자본보조 : 방역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수산동물예방백신 》

○ 수산생물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 백신 및 면역증강제 : 국립수산과학원 등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용의약품
*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백신을 지원하되,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참고 1] 예방백신 공급사업 체계도 참조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

집행단위사업명	지원조건
보상비	국고 100%
생계안정자금	국고 50%, 지방비 50%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국고 100%
방역비	국고 50%, 지방비 50%,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국고 50%, 자부담 50%)
수산동물예방백신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

(단위 : 백만원)

집행단위사업명	총 지원액				양식어가당 지원한도액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5,875	2,068	1,943	1,864	-	-	-
보상비	50	50	-	-	-	-	-
생계안정자금	100	50	50		-	-	-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75	75	-	-	-	-	-
방역비	990	495	495	-	-	-	-
수산동물예방백신	4,660	1,398	1,398	1,864	-	-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예산 집행 실적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도 10.15 전후)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 및 수협 등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보조금액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 사업계획 수립 : 시·도는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2.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및 사업자

○ 사업관리주체 : 시·도

○ 공고시기 :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 신청절차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Ⅱ. 2. 사업 자격 및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구비서류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제시된 서류 제출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Ⅱ. 2. 사업 자격 및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Ⅱ. 2. 사업 자격 및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3.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시·도 및 사업자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 및 사업자 등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시·도(시·군·구)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살 처분 대상 수산생물은 위판장·도매시장(공판장) 등에서 거래되는 경매가를 기준으로 하는 등 공정하고 적정한 평가기준 마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 비	5년(구입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불가

* 내구 년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 년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제재》

시·도(시·군·구)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관리 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추진상황 점검》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는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를 조사

○ 시·도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별표 1] 방역사업 추진상황 보고
- [별표 2] 백신공급사업 추진상황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사업 추진상황, 사업 추진 적정여부, 자부담 확보상황 등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시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사업비 정산》

시·도(시·군·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실적보고서 제출 및 정산 보고

6.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 최근 3년간 지원물량 등 지자체 사업추진상황(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시·도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등 패널티 부여

○ 병원체 검출 시 방역 및 약품 지원 등을 통한 법정 전염병 모니터링율 향상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0년도 예산 신청(4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0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세부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참고 1]

<예방 백신 공급사업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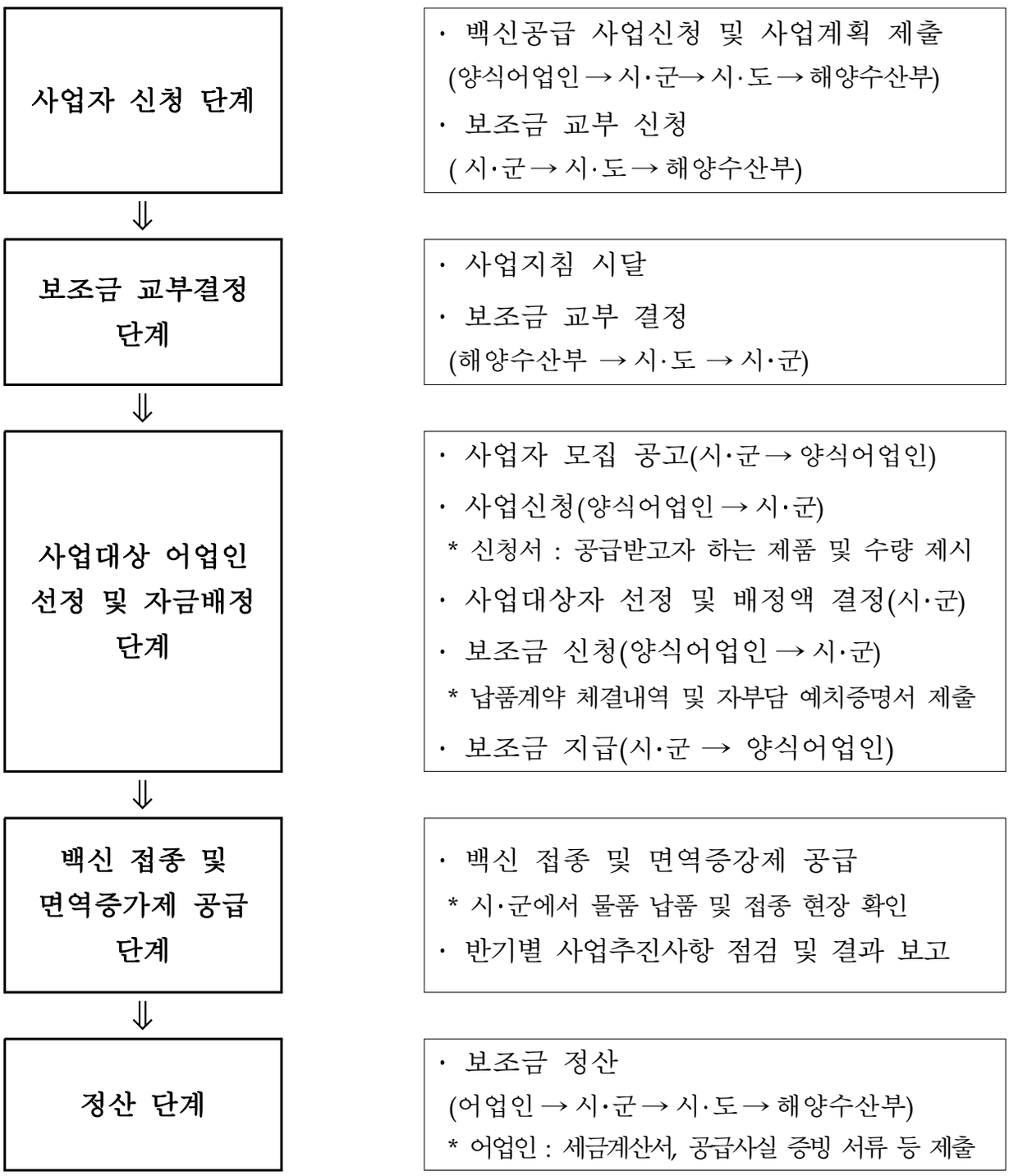

[별표 1]

방역사업 추진상황 보고(분기별)

□ 사업 개요

○ 사업명 : 수산물위생관리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사업)

○ 집행주체 : 시·도

○ 사업내용 :

- 주요내용 :

□ 보조금 교부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18년 예산			실집행액(지자체)			비고
	합계 (A)	국고	지방비	계획※ (B)	집행액 (C)	집행율 (C/A)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 - 방역사업비							○ 방역교육 실시 ('17.3.25)
·경상보조							
·자본보조							

※ 계획 : 분기별 집행계획

□ 추진실적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 ㎡, 천미)

시·도	방문일자	대상어종	양식장명	양식시설	사육면적 (㎡)	비고
	4. 23	넙치	가나 양식장	육상수조	3,580	
(완도)						
(진도)						
(해남)						
-						

○

-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

[별표 2]

백신공급사업 추진상황보고(분기별)

□ 사업 개요

○ 사업명 : 수산물위생관리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사업)

○ 집행주체 : 시·도

○ 사업내용 :

- 주요내용 :

□ 보조금 교부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18년 예산				실집행액(지자체)			비고
	합계 (A)	국고	지방비	자담	계획※ (B)	집행액 (C)	집행율 (C/A)	
○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 - 백신공급사업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계획 : 분기별 집행계획

□ 추진실적 (일정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 ㎡, 천미)

시·도	방문일자	대상어종	양식장명	양식시설	사육면적 (㎡)	비고
	4. 23	넙치	가나 양식장	육상수조	3,580	
(완도)						백신 : ℓ 면역증강제 : kg
(진도)						
(해남)						
-						

□ 조사결과(조치사항)

○

-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

② 유해생물구제(적조, 기생충·쏙)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및 어촌양식정책과 입니다.

내역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적조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사무관 송상욱	044-200-5810 044-200-5641
기생충·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 장 윤분도 사무관 이상윤	044-200-5610 044-200-5622
적조·기생충·쏙	시·도(시·군·구)	해양수산관련 사업부서		

Ⅰ. 사업개요

1. 목적

○ 적조·기생충·쏙 등 유해생물의 효율적인 방제·구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2. 근거법령

○「수산업법」제86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적조사업비 집행비율	80%	92	39	51	72	매년 말	적조사업비 집행 비율 (4개년 평균 집행금액)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4,446**	**4,446**	**4,446**	**4,446**
- 국 비	4,446	4,446	4,446	4,446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적　조 : 적조 발생 해당 지자체

○ 기생충 :「수산업법」및「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방역교육을 받은 양식어업인,「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 쏙 : 쏙 발생 해당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2. 사업 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공통요건 : 적조·기생충·쏙 등 유해생물 구제를 필요로 하는 어업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별도요건 : 영어조합법인 등(「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제31조)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18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19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19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지원 제한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적조 》

○ 적조구제물질, 방제장비 및 장비운영비, 피해예방시설, 폐사어 처리비, 예찰비 등 지원
- 적조구제물질, 물품구입 또는 황토 토취장 확보비, 적조방제용 장비 구입 또는 보급비(가두리이동에 따른 닻, 야간점등시설 로프를 포함한다.), 부대경비(선박·장비 임차료, 인건비, 적조예찰용 유류비, 처리운반비 등) 등
- 지원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

○ 적조구제물질 : 황토를 구입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등 관련 연구기관에서 구제효율, 입도 및 미량금속 농도를 분석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한 황토를 구입하여야 하며, 살포기준은 1㎡당 100~400g 범위로 함
- 황토류의 구입단가는 부대경비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다만, 사업집행 주체는 지역특성에 따라 지원기준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조정 집행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기관은 황토구입비와 부대경비를 산출하여 예산을 별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

구분	인증기준	측정기준
구제효율	○ 적조생물 구제효율 : 70%이상	○ 1% 농도 황토 투여 10분후의 적조 생물구제효율
입도분석	○ 0.125mm이상의 입도구성비율 : 20% 미만	○ 1kg이상 황토를 해수에 침적, 용해시킨 후의 입도구성비율
중금속 농도	○ 크롬(Cr^{6+}) : 80 mg/Kg ○ 카드뮴(Cd) : 2.5 mg/Kg ○ 납(Pb) : 50 mg/Kg ○ 아연(Zn) : 200 mg/Kg ○ 구리(Cu) : 65 mg/Kg ○ 수은(Hg) : 0.3 mg/Kg	○ 황토 건중량 기준 농도로 해양환경공정시험법에 의거한 측정 방법으로 산분해법을 이용하여 측정된 농도

* 적조구제효율 측정방법 및 황토 입도 분석방법은 [별표 3, 4, 5, 6]와 같음

○ 적조방제용 장비보급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적조의 효율적인 방제를 유해 적조구제물질 구입 이외 적조방제용 장비보급의 목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집행계획(예산, 장비명, 수량, 보급지역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단 장비 등을 개별 어업인에게 보급할 때에는 사업비의 20% 이상을 어업인이 자기 부담을 하여야 함

- 적조방제용 장비 및 장비운영비라 함은 산소공급기, 액화산소공급기, 액화산소(평상시 수준의 사용량은 제외, 적조주의보 또는 적조경보 발령기간 중 추가 사용량에 한함), 저층해수공급장치, 적조경보기, 적조계측기, 황토살포기, 가두리 이동에 따른 장비(닻, 야간점등시설, 로프) 및 “적조구제물질·장비의 사용승인에 관한 고시”에 따라 승인받은 장비에 한 함
- 지원 받은 공공용 방제장비는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을 위하여 자자체 보관창고나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또는 민간 전문단체·업체에 위탁운영·관리할 수 있음

○ 피해예방시설

-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어류공동이동시설

○ 폐사어 처리비

- 폐사어 매립지 확보비, 폐사어 수거, 운반, 매몰 등에 직접 소요되는 중장비, 덤프트럭 등 장비대 및 장비운영 인건비. 다만, 어류에 한하고, 당해 피해 어업인에 대해서는 선박 및 인건비와 재해복구비용 중 철거비는 지원할 수 없음

○ 적조 예찰 유류비 등

- 적조예찰 유류비와 자재 등의 처리운반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총예산의 50%범위 내에서 지원액, 지원기관, 필요성 등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후 집행하여야 함

《 기생충 》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경비, 구제약품 구입 등

- 예찰 및 모니터링 중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약품 구입비(최대 5회)
- 원인구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경비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약품 지원)

《 쏙 》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입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입·입식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

집행단위사업명	지원조건
적조	국고 100%, 다만, 어업인에 대한 장비보급은 80%이하
기생충	국고 100%
쏙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한도

(단위 : 백만원)

집행단위사업명	총 지원액				양식어가당 지원한도액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4,546	4,446	60	40	-	-	-
적조방제사업	3,846	3,846	-	-	-	-	-
기생충구제사업	500	500	-	-	-	-	-
쏙구제사업	200	100	60	40	-	-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해당없음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해당없음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예산 집행 실적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도 10.15 전후)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 지자체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시·도(시·군·구)

○ 사업계획 수립 : 시·도는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Ⅱ. 2. 사업자격 및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시·도(시·군·구)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Ⅱ. 2. 사업자격 및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Ⅱ. 2. 사업자격 및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3.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선정

○ 시·도(시·군·구) 및 수협 등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4. 자금배정 단계

시·도 및 사업자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시·도(시·군·구)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장 비	5년(구입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불가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제재》

시·도(시·군·구)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관리 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추진상황 점검》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를 조사

○ 시·도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별표 1] 기생충 모니터링 조사결과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및 국립수산과학원(수산방역과, 병리연구과)에 보고 (매월)
- [별표 2] 쏙구제사업 추진상황 익월 10일까지 보고 (분기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사업 추진상황, 사업 추진 적정여부, 자부담 확보상황 등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시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사업비 정산》

시·도(시·군·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산 보고

6.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 최근 3년간 지원물량 등 지자체 사업추진상황(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시·도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등 패널티 부여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0년도 예산 신청(4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0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세부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표 1]

기생충 모니터링 조사결과(월별)

□ 사업 개요

○ 사업명 : 수산물위생관리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위해생물구제사업)
○ 집행주체 : 시·도
○ 사업내용 :
○ 조사기간 : 매월 1회 20어가 (20어가 이상/표본조사)

□ 어류 양식 현황

(단위 : 건수, ㎡, 천마리)

구 분	양식장					
	합계	육상수조식	해면가두리	내수면	축제식	육상종묘
면허건수						
면적						
주요양식어종						
사육량(천마리)						

□ 보조금 교부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18년 예산			실집행액			비고
	합계 (A)	국고	지방비	계획※ (B)	집행액 (C)	집행율 (C/A)	
○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위해생물구제 - 기생충구제							국 비 100%

※ 계획 : 분기별 집행계획

□ 기생충 발생 동향

(단위 : 천마리, %)

시·도	방문 일자	조사 어가	수면적 (㎡)	사육		기생충 발생		폐사(월별)	
				어종	사육량 (천마리)	기생충명	발생량(%)	폐사량 (마리)	폐사율(%)

□ 조사결과(조치사항)

○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별표 2]

쏙구제사업 추진사항 보고(분기별)

□ 사업 개요

○ 사업명 : 수산물위생관리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위해생물구제사업)

○ 집행주체 : 시·도

○ 사업내용 :

□ 보조금 교부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	'18년 예산				실집행액			비고
	합계 (A)	국고	지방비	자담	계획※ (B)	집행액 (C)	집행율 (C/A)	
○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위해생물구제 - 쏙구제사업								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 계획 : 분기별 집행계획

□ 쏙 발생 현황

(단위 : ha, %)

시·도	조사일자	양식장명	면허번호	면 적	발생여부(%)
		○○ 어촌계			

□ 조사결과(조치사항)

○

-

□ 향후계획 및 추진일정

○

-

[별표 3]

적조구제효율 측정 방법

□ 조사목적

배양한 국내산 적조생물을 대상으로 하여 황토 등 적조구제물질의 구제효율을 파악

□ 준비물

○ 대수성장기의 적조생물(*Cochlodinium polykrikoides)*

- 밀도: 2000-3000 개체/mL

○ 비이커(1,500mL), 유리막대, 피펫, 광학현미경

□ 측정방법

1) 1,500mL 비이커에 적조생물이 들어있는 배양액을 최종부피 1,000mL가 되도록 각각 채운다.
2) 무작위로 비이커 내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 중 활동성 있는 적조생물만을 계수하여 초기 적조생물 밀도를 구한다.
3) 비이커에 적조구제물질 10g(1% 농도기준)을 투여한 후 유리봉으로 5회 혼합시킨다.
4) 10분후, 30분후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살아있는 적조생물 수만을 계수한다.
5) 구제효율(%)은 초기 적조생물 밀도와 구제물질 투여 후의 밀도차로 구하며 경과시간별 퍼센트로 각각 표시한다.
6) 시료의 채취는 채취직전 유리막대로 반드시 혼합시킨 후 3회 이상 무작위로 채취하여 계수한 평균값으로 구제효율을 구한다.

□ 적조생물 배양방법

1) 실험 적조생물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분양받아 수행할 수 있음.
2) 실험용 적조생물 배양조건

① 배양수 : 공극 0.45㎛ 필터로 여과하여 멸균한 해수

② 배양배지 : f/2 배지(Guillard & Ryther, 1962)

③ 수온: 22-25℃, ②염분: 33 내외, ③광도: 50-100μmol·m^{-2}·sec^{-1}

[별표 4]

황토 입도 분석 방법

□ 실험목적

적조방제용 황토 선정 시 황토내 적조구제에 관여하지 못하는 모래, 자갈 등의 함량을 분석함으로써 구제효율이 높은 미세입자가 많이 포함된 양질의 황토를 판별

□ 준비물

○ 황토시료 1kg, 입도분석용 표준체(0.125mm, 메쉬 120, 파이 3), 2-10L 용량 플라스틱 용기, 증발접시, 드라이오븐, 전자저울, 증류수(또는 여과해수)

□ 측정방법

1) 무작위로 채취한 황토 1kg 이상을 드라이오분으로 110℃에서 24시간 건조시킨 후 이 중 1kg을 전자저울 등을 이용하여 정확히 정량한다.
2) 건조황토 1kg을 2-10L 용량의 용기에 넣고 증류수(또는 여과해수)를 첨가하면서 황토입자가 물에 완전히 풀어지도록 용해시킨다.
3) 표준체(메쉬 120)를 이용하여 용해된 황토수를 모두 여과한다. 여과도중 모래나 자갈에 붙어 있는 세립 황토입자가 모두 탈락될 수 있도록 붓 등을 이용하여 표준체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러 황토수가 모두 여과되도록 한다.
4) 표준체에 남아있는 0.125mm 이상의 큰 입자를 모아 증발접시에 옮긴 후 드라이오븐으로 110℃에서 24시간 건조 시킨다.
5) 건조된 입자를 전자저울 등을 이용하여 측정한 후 1kg 황토 중 0.125mm 이상 입자의 구성 비율을 무게비(%)로 구한다.

[별표 5]

미량금속(크롬, 카드뮴, 납, 아연, 구리) 농도 분석 방법

□ 측정원리

○ 퇴적물(토양) 내에서 미량금속은 다양한 형태의 화학적 형태를 가질 수 있다. 퇴적물(토양) 중 미량금속의 총량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질산, 과염소산 및 불소산을 이용하여 완전 분해한 후 희석질산용액으로 재용해한 다음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이하 ICP-MS)로 정량한다.

□ 측정 방법

○ 습식 시료를 균질화 한 후, 5-10g을 냉동 건조 시킨다.

○ 건조한 시료를 마노 분쇄기를 사용하여 곱게 분말화한다.

○ 분말시료를 200 메쉬 체를 이용하여 거른 후,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 100 mL 테플론 비이커나 60 mL 산분해용 가압 용기에 건조시킨 분말 시료 0.5 혹은 0.2 g을 넣고 0.0001 g 단위까지 무게를 측정한다.

○ 질산 3 mL와 과염소산 1 mL를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반응 시키고 냉각시킨 다음 뚜껑을 열고 가열판에 올려 용액을 증발시킨다.

○ 건고 직전까지 증발시킨 후 불산 3 mL와 과염소산 1 mL를 첨가하고 뚜껑을 닫고 가열판에서 6시간 이상 반응시킨다.

○ 상온으로 냉각한 후 뚜껑을 열고 가열판에서 건고 직전까지 증발시킨다.

○ 시료에 과염소산 2 mL와 포화 붕산 용액 5 mL를 첨가하고 가열판에서 휘발시키면서 반응시킨다.

○ 진한 질산 1 mL를 넣고 잔류물을 용해시킨 후 1 % 질산 용액 적당량을 추가하면서 벽면과 뚜껑에 묻은 용액들을 비이커 및 용기에 모은다.

○ 1 % 질산 용액으로 20 mL 혹은 60 mL 바이알에 무게를 측정하여 20 g 및 50 g 이 되게끔 한다.

○ 이 용액을 기기 측정시에 사용하며 이 용액의 희석배수는 100에 해당한다.

○ 이하 각 성분별 측정 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법에 의거하여 실험한다.

[별표 6]

미량금속(수은) 농도 분석 방법

□ 측정원리

○ 퇴적물(토양)의 총 수은을 왕수로 산 분해하여 산화, 퍼지와 포집, 탈착시켜 냉증기 원자형광분석기 (Cold Vapor Atomic Fluorescence Spectrometry)로 정량한다.

□ 측정 방법

○ 습식 시료를 균질화 한 후, 5-10g을 냉동 건조 시킨다.

○ 건조한 시료를 마노 분쇄기를 사용하여 곱게 분말화한다.

○ 분말시료를 200 메쉬 체를 이용하여 거른 후, 건조한 상태로 보관한다.

○ 100 mL 테플론 비이커나 60 mL 산분해용 가압 용기에 건조시킨 분말 시료 0.2 g을 넣고 0.0001 g 단위까지 무게를 측정한다.

○ 왕수 2.5 mL를 일회용 피펫으로 첨가한다.

○ 뚜껑을 닫고 상온에서 4시간 방치한 후 발생한 가스를 날려보내고 뚜껑을 닫고 가열판에 올린다.

○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 60 mL를 폴리에틸렌 병에 옮긴다.

○ 시료 분석 24시간 전에 산분해 용액 10 mL를 60 mL 원심분리관에 넣고 초순수를 40 mL 첨가한 후 염화브롬 용액을 0.5 mL 첨가하여 노란색이 나타나도록 한다.

○ 염화브롬 용액으로 산화시킨 시료에 하이드록실아민염화수소 용액 0.2-0.25 mL를 첨가한 후 뚜껑을 닫고 흔들어 노란색이 없어지면 수은분석 준비가 완료된다.

○ 이하 각 성분별 측정 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법에 의거하여 실험한다.

③유해생물구제(해파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영신 사무관 송병훈	044-200-5530 044-200-55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해파리 구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및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2. 근거법령

○「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해파리 구제량(톤)	4,500	3,917	6,571	4,697	4,564	해파리 위기경보 해제시	해파리 구제량(톤)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670**	**1,870**	**1,870**	**1,870**
- 국 비	1,670	1,870	1,870	1,87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구제장비(제거그물, 피시펌프 등)를 가지고 제거에 참여하려는 어업자(어선)

- 단체 또는 어업자가 구제장비를 가지고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에 한함

○ 연근해어업 중 인망이 허용된 어업자가 허가된 그물을 사용하여 제거작업을 하려는 어업자(어선)

-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안어선에 한해 해파리 구제망 제공

○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허가어업자 중 해파리 수매에 참여하려는 어업자

○ 해양수산부에서 개발한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하여 해파리를 제거하려는 자, 기관단체

○ 해파리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 수행기관

- "해파리 발생조사 및 예보" 임무를 수행하는 국립수산과학원. 다만 지자체에서 구제사업비로 연구용역 위탁 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집행주체(주관기관)** : 시·도지사, 국립수산과학원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 **지원대상**

- 연근해어업(정치망 및 구획어업 포함, 이하 같음) 어선의 해파리 제거비(처리비포함)
- 해파리 무인방제선을 이용한 해파리 제거비 및 장비 유지보수·보관비
- 해파리 제거를 위한 제거망 및 장비의 구입·제작비
- 행정관청에서 제공한 제거망의 보수·수리·보관비
- 해파리 대량발생 및 의심지역에 대한 부착유생조사 및 제거방안 마련 시험연구비
- 해파리 확산방지를 위한 유생 제거비(처리비 포함) 및 수매사업비
- 효과적인 해파리 구제를 위한 구제장비 연구개발비(장비 규격화, 표준화 등)

○ **사용용도 :** 지원대상에 명기된 용도로만 사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운영비(시험연구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1) 해파리 제거 및 처리비 집행기준

① 해파리 제거비 지원금액 : 참여어선에 대한 지원은 1일(8시간·척당)을 기준

근해어선	규 모	40톤급 이상			20~39톤급			10~19톤급
	지원금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연안어선	규 모	3톤 미만	3톤이상 ~4톤미만	4톤이상 ~5톤미만	5톤이상 ~6톤미만	6톤이상 ~7톤미만	7톤이상 ~8톤미만	8톤급 이상
	지원금	42만원	49만원	56만원	63만원	70만원	77만원	100만원

- 지원금 한도 내에서 어선의 규모, 참여시간, 구제실적, 지역특성, 어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톤급별 단가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지급 가능
- 지원규모를 조정해서 집행할 경우에는 소요경비 내역을 객관적으로 산출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집행
- 해파리 무인방제선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 시설장비 운영경비, 유지·보수·보관비 등으로 현실성을 감안하여 지급 가능

② 해파리 처리비 지원금액 : 제거 또는 수거된 해파리의 처리비 및 바지선 임차료 등의 경비로 집행(해파리 수매는 하지 않음)

(2)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 집행기준

① 지원내용 :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

② 수매대상 :「수산업법」제8조제1항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1조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근해, 연안,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 중 인양한 해파리. 다만, 구제사업비로 선박을 임차하여 수거한 경우는 제외

③ 수매대금 및 지급방법

- 해파리 수매 시 해당 어업인으로 하여금 어선입출항 확인대장 작성 후 서명
- 수매대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확인대장과 수협 또는 해양경비안전센터 소속 파출소・출장소・대행신고소의 어선입출항 확인 서류와 대조하여 지급
- 300원/kg(습중량 기준), 사업집행주체(위탁계약 시는 위탁기관)가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

④ 수매증서 발급

- 지자체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
- 위탁기관 : 위탁기관이 물량확인 후 어업인에게 교부

⑤ 수매장소 : 지자체장이 해파리 출현어장, 수매의 용이성 등 여건을 감안하여 정하거나 지자체장과 위탁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조업어장 인근 항포구 등 수매가 용이한 해상의 선박위에서 함

⑥ 계량방법 : 해당 지자체 지도 감독관 또는 사업위탁기관 소속 담당자가 입회하여 계량하여야 함

(3) 해파리 무인방제선 시설장비 운영비 집행기준

① 지원내용 : 무인방제선의 운용, 이동·보관,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운영비용

② 지원대상 : 무인방제선 접안 등에 필요한 바지선 이동·보관에 필요한 중장비, 컨테이너 등 임차비, 인건비, 재료비 등

(4) 사업자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① 해파리발생지역 인근에 있는 연근해어업 단체 또는 종사자 중 해파리 제거장비를 보유하고 해파리 제거작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

② 해파리 무인방제선의 운영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공공기관 및 해파리 무인방제선 운영능력이 인정되는 민간업체에 위탁 가능

(5) 사업 추진절차

① 사업 추진(시・도) :「해파리 대량발생에 의한 어업피해 위기대응 매뉴얼」의 발생단계별, 기관별 조치상황에 따라 추진

- 주의단계 발령 전 해파리 구제 작업망 제작·구입 등을 완료하여 피해발생에 신속 대응
- 해파리 구제작업 및 수매사업은 위기대응 매뉴얼상 주의경보단계 이상 발령 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예외>
가. 시·도지사가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심단계에서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나. 해파리 무인방제선의 경우, 해파리 출현 시 주의 경보 발령 이전에도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상시 운영 가능하되 운영근거(해파리 출현량 모니터링 결과 등)를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해양수산부에 사전 통보
다. 해수욕장 인근 해역의 구제작업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자체장이 자체 판단하여 추진할 수 있음

(6) 사업비 집행

-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감독공무원 입회하에 제거작업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폴립, 부유유생 및 성체구제비, 해파리 무인방제선 운영 또는 해파리제거 장비 구입비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음. 다만, 무인방제선 운영은 상시 운영으로 감동공무원은 시·도에서 판단 하에 필요시 입회
- 해파리 무인방제선의 경우, 운영경비, 유지·보수·보관비를 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음.
- 부유유생의 경우 어선 등을 동원 그물로 잡아 배에 끌어올린 후 육지로 인양 처리하여야 하며, 성체는 제거망 등으로 절단하거나 수매 후 수매선박에서 분쇄하여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함

(7) 사업관리

- 사업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선박 출입항 통제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사업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
- 해파리구제작업 및 수매사업에 투입되는 고용인에 대하여는「산업재해보상법」또는「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또한 수매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가 수매사업에 활용하는 선박의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해파리 무인방제선 운영 시에는 사전에 제작업체로 부터 기기작동 및 운용요령을 충분히 숙지한 후 해파리 제거작업에 활용

* 해파리 현장종사자 지정 및 업무수행요령 지도[별지 제3호서식]

(8) 위탁수수료의 지급 기준

- 사업관리 위탁에 따른 대가로 총사업비의 10%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며, 동 비율 범위 내에서 위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

○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대량발생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시 · 도(시 · 군 · 구) 또는 국립수산과학원

○ 시·도(시·군·구)에서는 해파리 대량발생 피해 예방을 위해 자체사업계획 및 지방비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 신청

○ 국립수산과학원은 해파리 대량발생 피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사업설계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시 · 도(시 · 군 · 구)

○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은 시·도가 해당 시·군·구에 배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은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산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 적임자를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시 · 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

시 · 도(시 · 군 · 구)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 · 도(시 · 군 · 구) 또는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비 집행내역(영수증 등 관련서류 첨부) 등 추진사항[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당해 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2호서식]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성과와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사업종료 후 완료보고 시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집행주체는 국고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및 사업담당부서의 사업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별표 1]

해파리 구제사업 추진결과 보고(00도)

□ 해파리 제거 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시·군별	제거실적				사업비 집행(천원)			비고
	제거일	참여선박	인원	제거톤	배정액	집행액	잔액	
00					0,000	0,000	000	
.								
.								
계	00일간	000척	00명	00톤	0,000	0,000	000	

* 제거일 : 제거작업일 기재
* 참여선박 : 작업일에 동원된 참여선박 척수 기재(예시 : 5척이 5일 구제시 참여선박은 25척)
* 인원 : 작업일에 동원된 인원수 기재
* 제거톤 : 제거그물의 시간당 제거능력을 고려한 추정치를 기재

□ 해파리 처리비 집행내역

선박명	처리내역	지급금액	비 고

□ 해파리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용역명	처리내역	지급금액	비 고

[별표 2]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지자체)
사무위탁계약서(안)

2019. . .

시장·도지사

위탁기관장

사무위탁계약서

□ 건　　명 :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지자체)

□ 계약금액 : 금　　원정(₩　　)(부가세 포함)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한다)와 사업시행자인 위탁기관장은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연근해어업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해파리 중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하는 해파리를 수매하는데 있어 위탁기관에 사업을 위탁시행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무위탁 내용 및 승인) ① 사무 위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파리 등 수산 유해생물 구제사업 중 조업 중 인양된 해파리 수매사업
2. 기타 수산 유해생물로 수매사업에 필요하다고 시·군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 시에는 시·군의 승인과 감독하에 실시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와 위탁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d위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군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집행계획 수립) 위탁기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착수 전에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등의 조정)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비 집행에 있어 사업내용을 달리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시·도에게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물량등의 변동으로 전체 사업비를 증액시키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탁기관은 시·군에게 요청하며, 시·도지사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업무의 검사와 감독) 시·군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정한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량 확인 등) 수매한 물량은 위탁기관이 작성한 수매대장·처리증명사진대장으로 확인한다.

제8조(위험부담) ① 사업수행 중 위탁기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군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위탁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된 때 시·군이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시·군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9조(배상책임) ① 사업수행 중 발생한 위탁기관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협회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의 구성원(위탁기관 직원) 및 피고용인(위탁기관에서 채용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귀속)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군의 사업비로 취득하였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시·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물품으로 시·군의 관리가 곤란한 소모성물품은 제외한다.

제11조(공정보고 등) 위탁기관은 사업추진실적(월별)에 대한 공정보고서를 별도 서식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사업 완료시에는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군에 제출한다.

제12조(계약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시·군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시·군, 위탁기관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4.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제13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위탁기관은 이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시·군이 위탁기관에 지급한 예산에 대하여 지출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경리구분) 위탁기관은 본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특별계정 및 계좌를 설치하고 타 계정 및 계좌와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지급) ① 시·군은 위탁기관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의 개산급으로 위탁기관에 일괄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이 제1항의 사업비 등을 청구 시에는 시·도가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관리 위탁 비용) 본 업무관리를 위탁함에 따른 위탁 비용은 사업비 지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하며 동 비율 범위 내에서 시·군과 위탁기관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기록자료 보존) 위탁기관은 사업에 관계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과업수행 촬영사진 등을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시·군의 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규칙 및 정산) ① 이 계약에 의한 회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 기타관련법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위탁기관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시·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반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해석의 결정)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써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군, 위탁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군의 해석에 따르며, 다만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결정에 의한다.

제20조(기타사항) 전 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군, 위탁기관 쌍방이 협의·결정한다.

제21조(계약서)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군과 위탁기관은 각각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장·도지사

위탁기관장 직인

[별표 3]

해파리 현장종사자 지정 및 업무수행요령

□ 수매관련 제반사항 관장 및 감독 : 위탁기관

□ 종사자 지명

○ 위탁기관은 책임자(수매사업소장) 및 필요시 현장 종사자 등 관계자 지명·역할 부여 및 복무감독

○ 관계자는 사업진행사항을 위탁기관에 보고

□ 현장종사자 업무수행요령

○ 수질오염, 악취, 소음 등 2차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상부지시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 및 결과보고

○ 분쟁 또는 민원 발생 시, 장애요인 발생으로 사업수행 지연 시,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보고

○ 인계인수 시 전·후임자의 연서로 인수인계서를 작성보고

○ 임무가 완료된 때에는 관련서류 일체를 위탁기관에 반납 제출

○ 당해 작업과 관련된 지침서 등 관계서류를 숙지

□ 유의사항

○ 임의로 수매조건, 수매대상 등 지침과 상이한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음

○ 사업현장에 문제점을 발생되거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의 지시를 받아 처리

□ 수매금지품에 대한 조치

○ 수매금지품 투입 및 분리수거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침과 상이한 경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위탁기관에 보고

[별지 제1호서식]

해파리 어선 입·출항 확인대장

□ **확인일자 : 2019년 월 일**

출항일	조업구역	수 량 (매수)	수 령 자				비고
			선 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규격 어상자 개					

[별지 제2호서식]

해파리 수매 증서

조업 중 인양 해파리 인수증 (위탁기관명)	
NO.	2019. . .
선 명	
수 량	kg
비 고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조업 중 인양 해파리 인수증 (참가 선박명)	
NO.	2019. . .
선 명	
수 량	kg
비 고	
인수자	(서명 또는 인)

주) 해파리 수매 증서를 발행하여 1장은 발행기관(지자체, 위탁기관장)이 보관하고, 1장은 어업인이 소지한다.

[별표 4]

해파리 무인방제선 운영관련
사무위탁계약서(안)

2019. . .

시장·도지사

위탁기관장

사무위탁계약서

□ 건　　명 : 해파리 무인방제선 운영(　　대)
□ 계약금액 : 금　　원정(₩　　)(부가세 포함)

시·도와 사업시행자인 위탁기관장은 해파리 무인방제선 운영(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연근해어업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는 해파리 구제를 위하여 무인방제선 운영 사업을 위탁시행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무위탁 내용 및 승인) ① 사무 위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파리 무인방제선의 운용, 이동·보관, 유지·보수 등 해파리 무인방제선 운영을 위한 일련의 사업
2. 기타 해파리 무인방제선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도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 시에는 시·도의 승인과 감독하에 실시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0000년 0월 0일까지 한다. 다만,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와 위탁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종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도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집행계획 수립) 위탁기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 착수 전에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등의 조정)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비 집행에 있어 사업내용을 달리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은 시·도에게 승인을 얻어 집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내용 등의 변동으로 전체 사업비를 증액시키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탁기관은 시·도에게 요청하며, 시·도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업무의 검사와 감독) 시·도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지정한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량 확인 등) 해파리 구제실적은 위탁기관이 작성한 운영대장·해파리 구제 증명사진대장으로 확인한다.

제8조(위험부담) ① 사업수행 중 위탁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도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위탁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된 때 시·도가 이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시·도에게 보고하고 가능한 모든 구제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제9조(배상책임) ① 사업수행 중 발생한 위탁기관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의 구성원(위탁기관 직원) 및 피고용인(위탁기관에서 채용한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위탁기관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귀속) 사업수행을 위하여 시·도의 사업비로 취득하였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시·도의 소유로 한다. 다만,「물품관리법」등에 따른 물품으로 시·도의 관리가 곤란한 소모성물품은 제외한다.

제11조(실적보고 등) 위탁기관은 사업추진실적(월별)에 대한 보고서를 별도 서식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사업 완료시에는 15일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도에 제출한다.

제12조(계약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시·도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시·도, 위탁기관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4.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제13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위탁기관은 이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시·도가 위탁기관에 지급한 예산에 대하여 지출증빙 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시·도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경리구분) 위탁기관은 본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특별계정 및 계좌를 설치하고 타 계정 및 계좌와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지급) ① 시·도는 위탁기관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

령 및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의 개산급으로 위탁기관에 일괄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이 제1항의 사업비 등을 청구 시에는 시·도가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관리 위탁 비용) 본 업무관리를 위탁함에 따른 위탁 비용은 사업비 지원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하며 동 비율 범위 내에서 시·도와 협회가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기록자료 보존) 위탁기관은 사업에 관계되는 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과업수행 촬영사진 등을 유지·보관하여야 하며, 시·도의 인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규칙 및 정산) ① 이 계약에 의한 회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 기타관련법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② 위탁기관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계약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결과 반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해석의 결정)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써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도, 위탁기관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의 해석에 따르며, 다만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결정에 의한다.

제20조(기타사항) 전 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도, 위탁기관 쌍방이 협의·결정한다.

제21조(계약서)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도와 위탁기관은 각각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시장 · 도지사

위탁기관장 직인

15 수산업가치및소비촉진제고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정도현 서기관 류선형 주무관 오영진	044-200-5440 044-200-5447 044-200-544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업·어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을 통해 어업·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 홍보를 통해 소비촉진의 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수산물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비자의 수산물 선호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산물의 수요개발과 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의 수산물 기호 변화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새로운 수산물 수요개발
2.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박람회, 시식회,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
3.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활동
4.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5. 그 밖에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유통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19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수산정책에 대한 신뢰도(%)	72	62.9	68.2	71.6	-	12월 말	○ 여론조사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정책 신뢰도 설문조사 * 국민(도시민, 어업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여 결과 도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2,890	3,000	3,000	3,000
- 국 비	2,890	3,000	3,000	3,0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공모 접수·공모 심사를 통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최근 5년간('14 ~ '18년) 수산물 소비촉진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수산업 및 수산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성 있는 단체로 제한)

- 지원기관별로 2개 공모사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공모사업별로 1개 기관 및 단체를 선정 함(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업계획서상 기재내용에 중대한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시 사업대상자 지정 취소 가능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사업 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기관 및 단체에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운영

3. 지원대상

○ 어식백세 캠페인 홍보 및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개최

- 우리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어식백세 캠페인”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수산업·수산물과 관련된 교육·행사 및 직거래 장터 등 통합관리 운영

○ 수산물 판로확대

- 수산물 대량 소비를 위하여 수산 업체의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전자상거래 컨설팅, 학교·군 급식의 수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쿠킹클래스 운영 등 소비 홍보 방안 마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에 명시된 사업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민간경상보조)

○ 지원기준 및 한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신청 수요 및 전년도 실적에 따라 조정

○ 사업자의 자격 박탈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기준 및 범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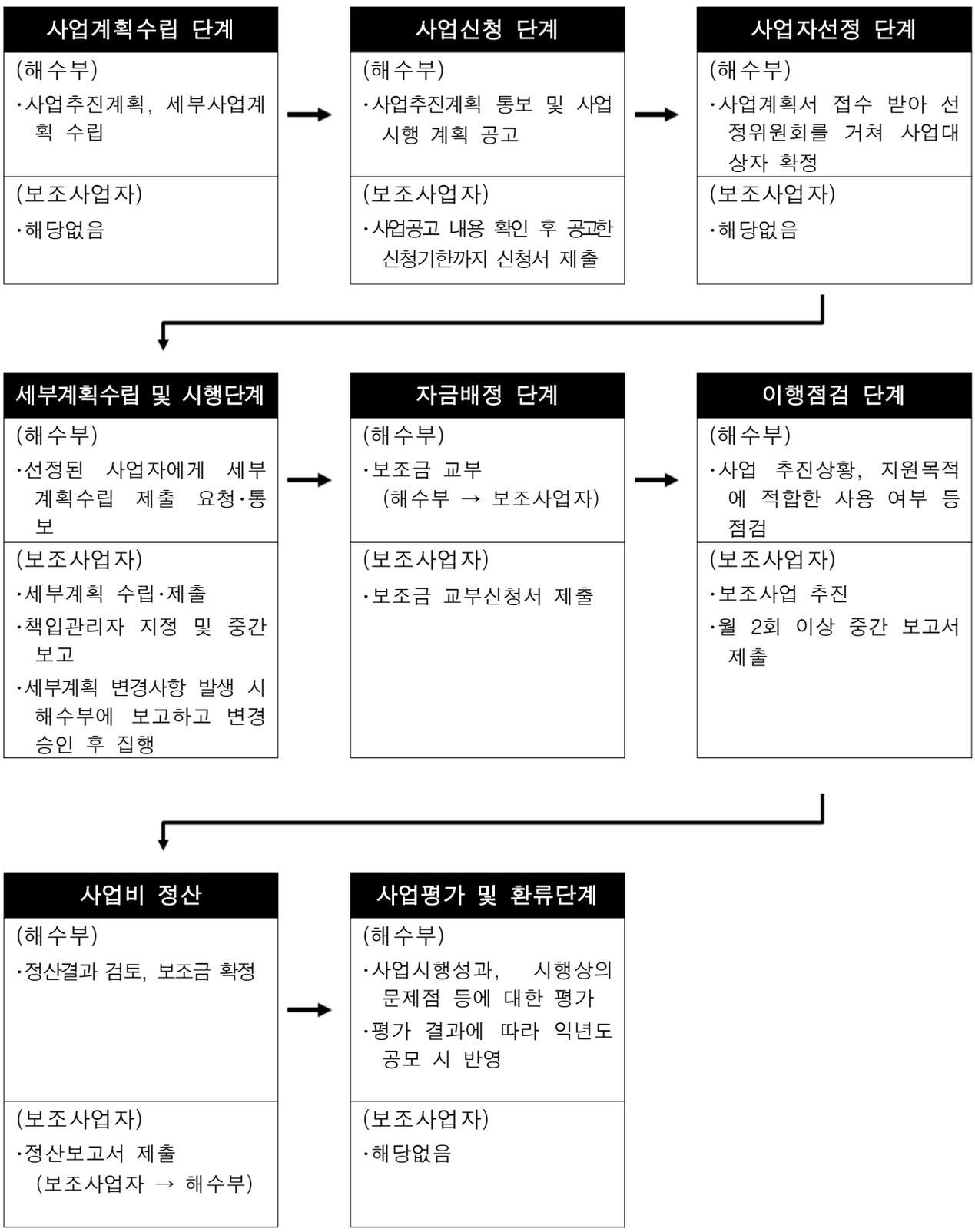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방향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 공고시기 : 연 1회

사 업 자

○ 사업 공고내용을 확인하여 공고한 신청기한까지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 신청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별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해당 사업전문가 및 보조금전문가 각 2인 이상 포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확정

○ 선정된 사업자에게 세부계획수립 제출 요청 통보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 업 자

○ 해양수산부의 통보에 따라 주어진 기한 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계획 확정

○ 부실사업 방지를 위해 반드시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감독하고 분기 1회 이상 중간보고서 제출

○ 사업자는 세부계획안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며, 변경사항이 발행 시에는 즉시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 변경승인 후 집행(단, 긴급한 사유 발생 시 구두보고 및 승인 후 집행)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별지 제5호서식)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자선정 적합여부, 보조금 지원자격 및 요건 적정여부, 사업비 확보 여부 등을 확인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양수산보조및융자사업에관한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사 업 자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자는 보조금을 집행할 때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사용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 상황, 지원목적에 적합한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예방

- 점검시기 : 연 1회 이상
- 점검방법 : 해양수산부(주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상황 등

○ 사업 지도·감독이 미흡한 해당 사업자는 다음연도 공모 추진 시 불이익 부여

사 업 자

○ 사업자는 분기 1회 이상 중간보고서 제출

○ 기타 보고사항 발생 시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보조금 전액 반납 조치

7.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경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실시

사 업 자

○ 사업자(책임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고 사업종료 후 1개월 내에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구두 보고 후 2개월 내 결과보고서 제출 가능)

- 정산서는 국고보조,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상세히 결과보고서에 기재(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하고 자체 보관)
- 기타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불법행위, 승인 없는 변경 수행 등이 적발된 경우 지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Ⅳ. 기타사항

○ 기타 동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별지 제1호서식】

‘19년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공모 참가신청서

<table>
<tr><td colspan="2">사업명</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 rowspan="2">공모분야(2개 분야)
* 2개 모두 지원가능</td><td colspan="3">□ 어식백세 캠페인 홍보</td></tr>
<tr><td colspan="3">□ 수산물 판로확대</td></tr>
<tr><td rowspan="3">기관·
단체</td><td>기관·단체명</td><td colspan="3"></td></tr>
<tr><td>대표자명</td><td colspan="3"></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홈페이지</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2">주 소</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대표
연락처</td><td>사무실</td><td></td><td>팩스</td><td></td></tr>
<tr><td>e-mail</td><td></td><td>휴대폰</td><td></td></tr>
</table>

해양수산부에서 모집하는 「2019년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공모」사업의 목적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공모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사업기관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별첨 : ‘19년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 세부사업계획서

2018. . .

신청자 성명 : (인)(또는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기관·단체 소개서

<table>
<tr><td>설립일자</td><td colspan="2">년 월 일</td><td colspan="2">설립근거</td><td colspan="2">관련 법규 등 기재</td></tr>
<tr><td>소 재 지
주 소</td><td colspan="4"></td><td>전화번호
(FAX)</td><td></td></tr>
<tr><td>설립목적</td><td colspan="6"></td></tr>
<tr><td>대 표 자</td><td colspan="2"></td><td colspan="2">직 원 수</td><td colspan="2">명(정규 -명, 임시 -명)</td></tr>
<tr><td>임원현황</td><td colspan="6">이사 - 명(상근 - 명), 감사 - 명(상근 -명)</td></tr>
<tr><td>조직구성</td><td colspan="3"></td><td colspan="2">기본재산
(정부출연금)</td><td>백만원
(-)</td></tr>
<tr><td rowspan="5">예산규모
(단위:천원)</td><td>구 분</td><td>2014년</td><td>2015년</td><td>2016년</td><td>2017년</td><td>2018년</td></tr>
<tr><td>합 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자체예산</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국고보조금</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기타지원금</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최근
5년간
활동실적</td><td colspan="6">○ 수산물 소비촉진 및 수산관련 사업추진실적 기재
*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td></tr>
<tr><td>기 타
증명서류</td><td colspan="6">○ 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td></tr>
</table>

※ 첨부서류 :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자산 및 부채내역

【별지 제6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지원(시범지역) 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사무관 권미연 주무관 최현숙	044-200-5630 044-200-5631 044-200-56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배합사료 사용률이 저조한 양식품종에 한하여,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성공 모델 발굴을 통해 배합사료 사용으로의 전환 도모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시범지역에서의 배합사료 사용어가 비율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배합사료 사용어가 비율(%)	16.0	14.5		-	익년 2월	(시범지역 양식어가수/양식방법별 종사자수)×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33,710**	**33,710**		
- 국 비	6,742	6,742		
- 지방비	6,742	6,742		
- 자부담	20,226	20,226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취득하여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 허가를 받았거나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 시·군·구 등 일정지역의 육상수조식 및 가두리 양식장에서 넙치, 우럭 등 어류를 사육하는 양식장 10개 이상이 치어부터 출하까지 100%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지역(이하 “시범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양식장

  * 단, 근접 해역 및 지역 양식장으로 배합사료 확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리회가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모니터링 양식장도 관리회에 참여하며, 시범 양식장과 동일한 지원, 의무 보유

  * 기존 시범지역 참여 어가의 경우는 10개 미만이라도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어업인(최소 5개 어가 이상)은 해당 지역(또는 해당 양식 품종)의 ① 양식어업 세력, ② 생사료 사용 비중 및 배합사료 사용 비중, ③ 동 지원사업의 필요성, ④ 동 지원사업을 통해 동 사업이 목적으로 하는 배합사료 사용 확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2019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로 제출할 경우, 동 사업 목적에 비추어 판단하여 지원 추진

○ 사업 운영

① 배합사료 사용 자율관리회

- 시범지역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여 양식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배합사료 사용 자율 관리회(이하 관리회)”를 구성, 사업관련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 사업관련 주요 사항이란, ①관리회 운영 방법, ②양식장 별 지원 규모, ③생사료 관련 시설에 대한 처리 방안(생사료 관련 시설 및 냉동창고 사용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포함), ④생사료 사용자에 대한 제재, ⑤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홍보 등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관리회가 사업관리 주체와 협의 후 정한다.

- 사업관리주체는 신속하게 관리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시범지역에서는 생사료 사용 관련 기기(분쇄기 등)를 철거하거나 봉인해야 하며 사업관리주체는 철거 여부를 항상 확인한다.
  * 이를 위해 관리회는 생사료 관련 기기·시설 및 냉동창고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을 분기별로 사업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②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 시·도에서는 동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선정위원회(5인 이상 구성)를 개최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동 지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사업자 선정 등을 위하여 경미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자체 세부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 할 수 있다.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 이내 본 지침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의무(배합사료 100% 사용 및 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 등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보조금을 반납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지원 제외(신설)
-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었거나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불법 이탈·초과시설로 행정처분을 받은 양식장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가 완료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 사업관리주체가 판단하여 선정·지원함
- 사업추진 중 사업자의 자격을 박탈당한 사업자 또는 어병, 재해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자는 당해 연도 및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보조금 수령 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제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 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 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 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범지역 양식장

- 시범지역에서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배합사료(EP, SEP)를 사용하여 넙치, 우럭 등을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및 가두리 양식장

○ 육상수조 및 가두리 양식장에서 배합사료를 구입하여 사용한 어가에 대해 배합사료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

- 필요 시, 사업관리주체는 관리회와 협의하여 배합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제반 활동(홍보 등)을 사업비의 5%이내에서 지원 가능

* 단, 홍보 등의 사업비를 편성할 경우 사업관리주체는 매년 2월말(또는 사업자 선정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홍보 계획 등)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대상사료

-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배합사료(EP : Extruded Pellet 및 SEP : Soft Extruded Pellet) 단, 분말사료 및 종묘용 배합사료는 대상에서 제외

- (신설)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등록된 배합사료 중 넙치용 사료에 한하여 다음의 품질기준을 따라야 함

(품질기준) 조단백질 함량 52% 이상, 조지방 5% 이상, 조섬유 5% 이하, 탄수화물 25% 이하

* 단, 넙치용 사료에 한함

(조사기관)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

(조사방법)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등록된 배합사료 중 지역별로 사료등록업체 시판사료 3종(무작위)을 선정하여 일반성분(조지방, 조단백질, 조회분, 조섬유 등) 분석(5개 지역, 배합사료업체 3개 시료, 총 15개 시료)

(조치사항) 해당업체 품질기준 준수 권고(2019년에 한함), 이후 해당사료의 공급을 즉각 중단하고 동 시범지역사업 참여 제한(2020년 이후)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20%, 지방비 20%, 자담 60%

* 단, 지방비와 자부담은 지자체 사정에 맞춰 조정 가능

** 2018년 이월액을 포함하며, 홍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지원한도(보조금 기준) : 어가당 최대 124백만원 한도(어가당 국비 62백만원 한도)

- 단, 지자체 및 관리회의 협의를 통해 최대 지원액의 10%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4,500㎡ 이상의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최대 지원액의 30%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추가 지원의 경우에도 지원액(국비, 지방비)은 40%를 초과할 수 없다.

** 사업자 지원 대상 중 양식어가는 주민등록등본상 한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므로, 동일한 세대에 夫婦(父子)가 각각 면허(허가, 신고)권인 자 인 경우 1어가로 인정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사업목적에 반하여 생사료를 사용했거나, 사용했다고 충분히 의심되는 경우
- 배합사료 급이대장의 불성실 작성, 양식장에 급이대장을 미비치, 급이대장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 부정하게 허위로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업자
- 사업관리주체가 배합사료의 투여실적 등을 확인하는데 고의적으로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업자
- 대상어업인의 어장에서 면허 면적 초과 등 불법양식 시설 등을 하였을 경우
- 생사료 급이에 필요한 기기(분쇄기, 혼합기 및 생사료 보관을 위한 냉동창고 사용) 등을 철거 또는 봉인하지 않은 사업자

* 단, 배합사료를 일반창고 용도로 사용하거나, SEP 사료 및 대량 폐사어 발생시 일정기간 냉동고로 사용은 허용, 이 경우 매월 사업관리주체 또는 관리회의 확인·감독을 받아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시행지침 통보	(해수부) ·해당없음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사업자 공고·선정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사업자 공고·선정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해수부→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 사업추진시행지침 의견조회 및 시달(매년 12월말)

시·도(시·군·구)·특별자치도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금 내시에 따라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1월)

- 관할 어업인들에게 홍보 등을 위해 모집 공고를 할 수 있다. 단, 사업관리주체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생략 또는 공고기간을 줄일 수 있다.

2. 사업신청 단계

시·도(시·군·구)·특별자치도

○ 사업관리주체 : 시·도, 제주특별자치도

* 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업관리주체를 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 또는 시·군·구에 위임할 수 있다.

○ 공고시기 : 연 1회(1월)

* 단, 공고시기는 사업관리주체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신청절차 : 지원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제2호 서식), 사용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시범지역 사업자의 지원액을 확정한 후, 잉여액이 발생할 경우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하여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구비서류

-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인 경우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 단, 협업 및 어촌계가 전부 참여하는 경우에는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 1부로 갈음

-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본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관할 사업관리주체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3. 사업자 선정 단계

시·도(시·군·구)·특별자치도

○ 사업자 선정 주체 : 사업관리주체(시·도/시·군·구/특별자치도)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배합사료 사용량, 과거의 생산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등 적절성 판단
- 배합사료 급이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시행할 수 있다.
- 양식어가에서 융자를 신청할 때에는「배합사료 구매자금 기본지침」 2. 사업개요(지원규모)에 따라, 동일한 사업지역(광역시·도)에서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비와 융자사업비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통보·확인해야 한다.

○ 사업자 변경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업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관리주체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추진 이행각서를 제출 한다.
- 양식장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육현황 및 급이계획서를 승계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배합사료 시범지역 대상자 선정 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관리회에 통지한다.
- 또한, 사업자 선정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다.

4. 자금배정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3월~)

해양수산부

○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시·도(시·군·구)·특별자치도

○ 사업자 선정 : 연간 1회, 2월말일까지

- 정해진 사업 개시일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양식장은 사업 포기로 간주하고 포기각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 시범사업 대상 양식장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 신규사용자 : 선정일 이후 배합사료 사용일부터 당해 연도 12월까지로 한다.

  * 단, 사업자가 선정일 이전에도 배합사료를 사용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사업관리주체와 관리회의 협의 하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에 보고 한다.

  * 사업관리주체는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제반 행정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 적용 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개월 이상 사용 시 후정산 지급
- 정산시점 : 사업개시 후 매월 말(단, 첫 번째 정산은 사업 개시 2개월 후)
- 정산방법 : 양식장별 지원 금액(단, 자부담 60%이상) 등을 기준으로 지급 정산

  * 단, 사업관리주체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사업자(또는 배합사료회사)는 상기 사업비 정산월말기준 정산자료(배합사료구매 세금계산서, 급이대장 등)를 정리하여 정산되는 익월 15일까지(단, 12월 기준은 당해 12월로 함) 사업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의 의무사항(급이계획서 내용을 이행, 배합사료 급이대장 작성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와 사료회사(대리점)가 제출(FAX 등)한 거래실적 확인서(사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확인)를 대조하여 최종 정산 후 자부담입금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지정한 사료공급업체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상시점검 하여야 한다.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점검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점검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등 명시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사료연구센터(이하 사료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

- 실시시기 : 연중
- 실시방법 : 시범지역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생사료 급이 여부(분쇄기 및 냉동창고 사용여부), 사업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 시범사업 참여 양식장에 대해서는 사료센터에서 배합사료 공급실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모니터링 방법 : 생존율, 성장량, 배합사료 공급실태 등에 대한 표본조사

○ 사료센터는 시범사업 참여하는 배합사료공급업체에 대하여 지역별로 사료등록업체 시판사료(넙치용 사료에 한함)를 무작위로 3개 시료를 선정하여 품질기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도(시·군·구)·특별자치도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대상 모든 양식장에 대하여 배합사료 급이 실태를 3개월마다 1회 이상 조사 실시하며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한다.

* 단, 분기별 1회씩 월별 점검결과와 함께 배합사료 시범지역사업 추진결과 보고

- 사업자의 배합사료 사용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료저장고, 분쇄 및 혼합기 등 생사료 사용여부에 대하여 점검하여야한다. 필요시 관리회와 협의하여 병행 점검할 수 있다.
- 의무이행이 불성실하여 생사료 급이가 의심되는 어장에 대하여는 어체 해부검사를 실시하여 생사료 급이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범 양식장에서 생사료를 쓸 경우 시범양식장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참여 양식장에게 전달하여 숙지시킨다.

○ 지자체는 연 1회 배합사료 사용교육을 실시(해양수산부에 결과 보고)하고, 사료센터와 관리회는 적극 협조한다.

○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

- 동 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배합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업체(사료회사)는 사료센터에 이행각서(별표 2)와 사료성분등록증(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8호)을 제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 사료센터는 매분기말에 배합사료 공급업체 등록현황과 각서사본을 각 시·도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 등록기준

- 사업자 등록증 사본(사료관리법에 따라 배합사료를 제조하는 사료회사)
- 관할 어류양식수협은 사료회사 또는 대리점과 MOU 등 공급계약을 체결 후 공급 가능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각서

《제재》

시·도(시·군·구)·특별자치도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사업관리주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 시범지역에서 부정행위자 발생 및 사업포기 등으로 10개 이상의 양식장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시범지역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 회수하여 반납한다.
  * 단, 폐업, 부도 등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 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10개 미만이 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시범지역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
- 어병, 재해 등에 의한 양식어류의 폐사발생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동 사업자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은 전액 환수 조치한다.
- 다만, 어병예방 및 치료 등을 목적으로 생사료에 투약하여 급이하거나 조기출하가 불가피한 사업자(폐업 또는 도산업체 포함) 및 양식장 정비 등을 위해 원상복구를 전제로 일시적으로 사육어류를 이동, 양성하는 경우 등 사업관리주체가 인정한 사업자는 제외한다.
  * 폐사원인의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 전문기관 및 수산질병관리사에게 폐사원인을 의뢰하여 확인

○ 특별한 사유 없이 시범지역에서 생사료 사용을 인지한 경우, 지자체는 생사료 사용자의 확인서와 함께 생사료 사용자의 지원금액 전액을 환수하고, 사업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지자체(또는 관리회)의 차년도 지원 예산은 20%이상 감액 조치하도록 한다.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예산회계법),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사업대상자는 배합사료 급이, 질병 등과 관련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변경] 신청서

<table>
<tr><td colspan="2">업체(어촌계)명</td><td></td><td>대표자 성명</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신청인</td><td>성명</td><td></td><td>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주소</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양식방법</td><td colspan="6">□ 수조식육상 □ 가두리</td></tr>
<tr><td>품 종 명</td><td colspan="6"></td></tr>
<tr><td>면허(신고)
형태</td><td colspan="6">□ 개인 □ 어촌계 □ 협업 □ 기타</td></tr>
<tr><td>구분</td><td colspan="2">어 장 소 재 지</td><td>면허(신고)
번호</td><td>품종</td><td colspan="2">시설면적
(㎡)</td></tr>
<tr><td rowspan="4">대
상
어
장</td><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사업규모</td><td colspan="6">연간 배합사료 급이 계획량 톤, 지원요구 금액 천원
(지원한도 금액 천원)</td></tr>
<tr><td rowspan="2">변경내용</td><td colspan="3">당 초</td><td colspan="3">변 경</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7">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ㅇㅇ 지자체장 귀하</td></tr>
<tr><td colspan="5">※ 구비서류
1. 면허(혹은 허가·신고)대장 사본 1부.
2. 협업 및 어촌계 어업권의 경우 행사자 전원의 동의서(다만, 어업권 전체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분 또는 행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1부)
3. 변경사유(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4.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사본 1부.</td><td>수수료</td><td>없음</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사육현황 및 급이 계획서

성 명				면허번호								
소유면적 (수조)	ha(㎡)			시설칸수 (수조수)	: m× m ( )							
사육현황	어 종											
	입식년도											
	중 량(g)											
	미수(천미)											
금후입식 예상량	입식예정일											
	어 종											
	미수(천미)											
배합사료 급이계획 기간표시 (↔)	월별 품종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배합사료 투여계획	공급업체명												
	톤												
사육일지 작성여부 (기간)													
기타참고사항													

〔별지 제3호 서식〕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통지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배합사료 공급업체를 결정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자 명단

일련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면허(허가·신고)증번호	어종 및 양식면적(㎡)	보조금 지급예상액

※ 배합사료 급이실태 조사시 사업자가 보조금지급예정액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2019년 월 일

○○ 지자체장 인

어업인(어업인단체)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자 선정 결과보고

1. 어종별 어가수 및 어장면적 (국비기준)

(단위 : ha, 천원)

시·군		합계			가두리			수조식육상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금 액
합계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군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어종별 예상지원금액 산출근거 : 별지 작성

2. 면허(신고)형태별 어가수 및 어장면적 (국비기준) (단위 : ha, 천원)

시·군		합계			가두리			수조식육상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금 액	어가수	면적	예상지원금 액
합계	개인									
	어촌계									
	협업									
	기타									
○○군	개인									
	어촌계									
	협업									
	기타									

3.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국비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사업자 선정			집행 실적		추가소요 예상액
	어가수	면적(ha)	사업비	총예산액	실집행액	
계						
(어종명)						

〔별지 제5호 서식〕

배 합 사 료 급 이 대 장

□ 면허(신고)번 호 :

□ 사업자명(어업인단체) :

일자	어종	입식량 (천미)	출하량 (천미)	폐사량 (천미)	양 식 현 황			사료 구입량 급이 등 (kg)					
					마리수	평균 체중 (g)	평균 전장 (㎝)	제품명	구입량	급이량	시간	급이량 (누계)	잔량

〔별지 제6호 서식〕

배합사료 급이실태 조사 결과 보고('00년 ○월)

□ 배합사료 급이실태

(○○시·도)

어장 및 사업자	점검일자	점검결과	점검자	비고

〔별지 제7호 서식〕

배합사료 지원사업 집행실적 보고(○월)

□ 사업비 집행실적(국비기준)

(단위: 가구, ha, 톤, 천원)

지역별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실집행액(○월말)				향후 추진 내역		
				어가구	면적	사료량	금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예상
계										

※기재요령

- 실집행액 : 1월부터 당월까지 누계실적
- 예산액 : 2017년 배정된 사업비,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이월,
  집행예상 : 12월말까지 실집행 예상액

□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전망

○ 집행부진 사유

-

○ 향후 전망

-

[별표 1] 각서(예)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시범지역 사업 추진 이행 각서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연락처 :)

상기 본인은 시·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EP) 시범지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

다 음

1. 생사료 관련 기기 철거, 배합사료 사용의무(배합사료 100%사용 및 사료급이대장 작성 등)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하고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향후 2년간 동 배합사료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다.
2. 어병·재해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에도 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한다.
3. 시·도 관계관의 수시점검 및 정기점검에 성실하게 협조하며 사용금지 시설물(생사료 보관용 저장고, MP 제조기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4. 불법양식 시설을 하지 않고, 사료회사와 거래실적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거래한 실적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전액 반납한다.

20 년 월 일

○○ 지자체장 귀하

[별표 2] 각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공급관련 이행 각서

소속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

생년월일 :

성명 : (연락처 : ☎ /FAX)

상기 본인은 ㅇㅇ시·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친화형 배합사료(EP) 시범지역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불이행에 따른 법적, 행정적 불이익에 대하여는 본인이 감수하겠음을 각서합니다.

다 음

1. 배합사료 지원사업의 최종 결산에 필요한 거래명세서 등의 장부를 확인, 열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관계관에게 적극 협조한다.
2.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인출하도록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협조하는 경우 즉시, 그에 상응하는 사법당국에 고발과 배합사료 시범지역 양식장 공급대상 업체에서 제외조치를 받게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귀하

17 친환경양식어업육성

①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대상사업 : ①양식기술 기반구축, ②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지원 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 성 대 사무관 한 지 용	044-200-5630 044-200-5635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며,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생산 증대를 위하여 기르는어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며, 수산종자 및 양식 시설을 친환경·첨단시스템으로 전환키 위함.

2. 근거법령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및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수산업법」 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및 제86조(보조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수산종자산업육성법」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3. 성과목표 및 지표

○'14년 대비 '18년까지 양식수산물 생산량 15% 증대(매년 3% 증가)

(단위 : 만톤)

성과지표	2018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년	15년	16년	17년		
국내양식 생산량	196	156	167	184	190	'19.1	양식 생산량 잠정치 (KMI 관측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중기예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56,293**	**56,293**	**56,293**	**56,293**
국 비	19,338	19,338	19,338	19,338
지 방 비	19,338	19,338	19,338	19,338
자 부 담	17,617	17,617	17,617	17,617

* 지방비와 자부담은 예산액, 사업규모,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식기술 기반구축)** 지방자치단체장(시·도, 시·군)

○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 포함)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기르는 어업(종자 포함)을 경영중인 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어업(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및 영어조합법인 등)
- 내수면어업법 적용사업 대상자는 스마트양식시스템*을 적용한 시설에 한함

*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P5) 참조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공통)**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거나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이상의 지상권을 사전에 확보된 자

- 부지확보, 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 여건사항 및 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착수가 가능한 자

○ **(양식기술 기반구축)** 고부가가치 양식수산물 기술 개발 및 연구 또는 신품종 종자생산 등을 계획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 **(첨단 친환경 양식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부담 확보 등 사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중 신품종 보급 및 친환경· 첨단 양식시설 확산 등의 사업계획이 있는 자

-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해야 함

나.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등 지원제한 기준

① 일반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요건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는 해당 요건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3년간 사업신청 및 지원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제3항을 위반한 자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거짓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모사업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② 지방비 미확보·사업 포기·지연 시

-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행정기관에 보조금 교부신청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계 등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차순위 사업자에 인계할 수 있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된 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보조사업 교부결정서[제5호서식] , 보조사업 반납 서약서[제8호서식], 보조사업신청서 부기사항(동의)

* 차순위 사업자 인계 조건 : 지자체(도, 시군)내 우선 순위에 보조사업자 명단이 있어야 하며 도, 시·군 자체평가나 해수부 평가 필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는 사업 포기년도 이후 향후 3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지연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1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세부사업별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2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 제한

- 상기 사항에 대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다만, 민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신청 또는 지원 제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③ 보조금 부정수급(횡령 등) 적발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를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공모사업 신청시 부정수급 발생 사업 개수에 상응하는 패널티 부여(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시 별도 통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사업 영구 참여 제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①친환경 또는 ②스마트시스템 양식방식으로 ③고부가가치 또는 ④신 양식 품종을 대상으로 양식하는 시설과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⑤기반시설 및 ⑥개발된 기술을 보급 확대하는 사업, 신규사업은 매년 공모로 선정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은 양식시설을 지원하는 건축 및 시설비 사업이므로 단순한 장비를 구매나 교체는 지원 불가

< 친환경양식어업의 요건 >

① **(친환경 양식)** 양식(수산종자 포함)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산물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건강한 수산물을 길러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생산방식에 의한 시설이어야 함

예)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플락양식, 필터로 바이러스 및 사육수 등을 제어하는 순환여과식양식, 전기분해 등으로 바닷물을 살균·소독하는 용수정화 시스템 등

② **(스마트양식시스템)** 민간양식장 용수처리시설 등에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 또는 산업화 기술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스템을 도입한 시설이어야 함

③ **(고부가가치 품종)** 공모사업 평가시 심사위원이 산업적 가치가 높아 고부가가치품종으로 인정하는 품종이어야 함

④ **(신 양식품종)** 기술개발 및 보급이 미흡한 양식품종으로 산업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종이어야 함

⑤ **(기반시설)** 민간분야의 친환경양식어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보급 등 양식시설 및 양식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 이어야 함

⑥ **(기술개발·보급)** 양식어업에 관한 친환경 등 국외 새로운 기술·자재도입, 개발된 기술·자재를 산업화하거나 그 밖에 양식어업에 관한 기술·자재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어야 함

○ 2019년도 지원 및 사업의무량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식)	지원율 (국:지:자담)	사업 기간	총 사업비	'19년 지원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담
합 계					**43,081**	**14,924**	**14,924**	**13,233**
o 지자체 직접사업 (양식기반 기술구축)		**50:50:0**						
가. 계속사업								
① 관상어종자육성센터	1		'18～'19	3,000	2,000	1,000	1,000	
② 신품종 육성용 양식시설	1		'18～'20	5,000	2,000	1,000	1,000	
③ 친환경 패류양식 시설	1		'18～'21	10,000	1,000	500	500	
④ 친환경 민물고기 우량종자 생산시설	1		'18～'19	2,500	1,500	750	750	
나. 신규사업								
① 에너지 절감 수산자원 생산 기반	1		'19	1,500	1,500	750	750	
② 친환경 첨단 갑각류 연구센터	1		'19～'20	5,000	2,000	1,000	1,000	
o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첨단민간시스템 지원)		**30:30:40**						
가. 계속사업								
① 순환여과식 자동화	1		'18～'19	5,000	4,000	1,200	1,200	1,600
② ICT 참치외해가두리	1		'18～'19	1,200	867	260	260	347
나. 신규사업								
① 흰다리새우 친환경예방시설	**1**		'19	1,000	1,000	300	300	400
② 해수 순환여과식 스마트 양식시설	**1**		'19	1,000	1,000	300	300	400
③ 친환경 바이오플락 새우 육상 양식장	**1**		'19	1,000	1,000	300	300	400
④ 전복 육상양식장 용수정화 시설	**1**		'19	3,000	3,000	900	900	1,200
⑤ 육상 스마트 양식 시설	**1**		'19	800	800	240	240	320
⑥ ICT 친환경육상 스마트 양식시스템	**2**		'19	6,000	6,000	1,800	1,800	2,400
⑦ 용수정화시설을 활용한 친환경 전복 양식장 시스템 구축	**1**		'19	197	197	59	59	79
⑧ 스마트 순환여과시스템을 접목한 친환경 새우양식	**1**		'19	500	500	150	150	200
⑨ 친환경 스마트 황복 양식시설 구축	**1**		'19	2,187	2,187	656	656	875
⑩ 압력식 모래 여과기를 이용한 해수 순환여과 친환경 양식시설	**1**		'19	1,000	1,000	300	300	400
⑪ 해수순환여과식 친환경 양식시설	**1**		'19	1,000	1,000	300	300	400
⑫ 첨단친환경 순환여과식 양식시설	**1**		'19	1,000	1,000	300	300	400
⑬ 신품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	**1**		'19	4,843	4,843	1,453	1,453	1,937
⑭ 친환경양식시설구축	**1**		'19	4,687	4,687	1,406	1,406	1,875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식관련 연구시설, 양식 및 종묘생산시설 등을 건립(증·개축포함)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설설비 및 건축 공사비,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 비용 등
- 토지·부지·건물매입비, 운영자금, 임차 및 종묘구입으로는 사용 금지
- 부대시설(사무실, 관리사 및 화장실 등)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자금 매칭기준

구 분	지 원 조 건
지자체 직접사업	국비 50%, 지방비 50%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명시된 기준 적용

○ 사업주관(집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민간보조사업자

- 단, 지방자치단체장(보조사업자의 협의 必)은 사업의 추진여건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산양식어장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시행 가능

*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명시된 기관이며 총사업비의 9% 이내에서 위탁수수료 지급이 가능(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사업자가 협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같은조 제3호의「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는 전자조달사용의 수요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추진 절차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자체자본보조) 지자체사업**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구, 사업소 등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보조사업비 확정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 첨부) ·세부사업지침 시달 ·보조금 집행점검		·보조사업실적보고 ·사정변경 교부취소 ·법령위반 교부취소 ·용도외 사용금지 ·수행상황보고 ·취득재산처분 제한

○ **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자체자본보조) 민간시설사업**

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구, 위탁기관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보조사업비 확정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 첨부) ·세부사업지침 시달 ·보조금 집행점검		·사업시행 및 사후관리 ·보조사업실적보고 ·사정변경 교부취소 ·법령위반 교부취소 ·용도외 사용금지 ·수행상황보고 ·취득재산처분 제한 ·시정명령 <중앙관서 승인 필요>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내용 경비배분 ·보조사업 인계·중단·폐지 ·사업대상자 선정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내역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양식어업기반조성 추진방향과 재정투입 계획 및 지원 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19.1월초)

○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양식기반조성에 적합한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공모계획 수립

- '19년도, '20년도 친환경사업 공모 시기 : '19. 4월, 8월, 필요시 추가공모

※ 2개년도 사업에 대하여 공모를 실시하되, 지방비·자부담 매칭, 사업부지 준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금년도('19년도) 추진 사업 우선 배정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에서는 해양수산부 공모계획을 참고하여 친환경양식어업육성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고 개발할 가치가 충분한 품종의 양식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자체사업계획 및 지방비 투자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 신청

○ 신규사업은 시·도 심의회 심의를 통해 부지확보, 환경보호 및 공유수면관리 등 제반 여건사항 및 추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즉시 착수가 가능한 사업에 한해 해양수산부 공모계획에 따라 신청

○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 수요조사 또는 예비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 신청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공모신청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 공모사업 선정시 보험가입 어가 우대 및 가급적 보험가입 권고

- '20년 신규사업은 '19년도에 사전 공모를 통해 지원사업, 대상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를 선정

* 기획재정부, 국회 예산 심의결과 등에 따라 신규사업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시·도(시·군·구)

○ 지방자치단체 직접사업은 시·도가 해당 시·군·구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에 보조하는 사업은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수산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

* 다만, 해양수산부 공모 신청시 지자체가 예비사업자로 선정한 자 및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4. 사업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승인 및 교부 결정

시·도(시·군·구)

<지자체 직접사업>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교부조건을 명기하여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아래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명시

1) (계약)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교중 제30조에 따라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중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 (정산보고서 검증) 보조금이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은 회계법인 등*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3)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2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사업자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공통사항

○ 사업 시행 중 승인 받은(보조금 교부 결정)경비배분이 변동되는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후 사업 추진(경미한 사항 제외)

5. 자금배정 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 지자체 직접사업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지자체 민간보조사업 :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 ⇒ 시·군·구청장 ⇒ 민간사업자

○ 사업비의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을 사용

○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에 사업시행을 위탁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자부담분을 포함한 사업비 전액을 사업착수전 위탁사업자 계좌에 이체하여야 함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 하고자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6. 이행점검단계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년 2회이상)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에는 집행부진 해소방안 강구

○ 보조사업자는 사업진행시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매칭하여 **보조금 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하여야 함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교부조건 및 사업시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사업내역을 별도 대장으로 관리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시·도(시·군·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 군수· 구청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 기계장비	재산 인수후	5년	목적외 사용, 양도, 대여 등	-
- 건축물	〃	10년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보조금 환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를 위한 행정사항 협조 :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시 행정사항 협조

《사업비 정산》

공통사항

○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사업 완료 후 사업집행 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조치

시·도(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민간사업자

○ 민간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군·구의 총괄부서에 제출

- 제출 서류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은 회계법인 등* 검증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 보고서를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이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은 회계법인 등*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

○ 시·군·구청장은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두리시설 현대화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사무관 송상욱	044-200-5630 044-200-5641

1 가두리시설 현대화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적

○ 적조발생에 대비하여 피해최소화 및 효율적인 방제·구제를 통하여 안정적인 어업생산 활동 지원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 도모

2. 근거법령

○「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산업법 시행령」제72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가두리시설 현대화 실적(비율)	95	99	97	95	92	매년 말	가두리시설 현대화 집행실적 ×97% (집행목표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4,286**	**14,286**	**-**	**-**
- 국 비	5,000	5,000		
- 지방비	5,000	5,000		
- 자부담	4,286	4,826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업면허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

- 수산업법 제8조에 의한 어류 등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자(수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로서 과거 적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해역에 양식어장을 가진 어업권자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 PE 재질 등 적조발생시 이동 또는 수심조절이 가능한 양식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 PE 재질은 KS 제품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부력 제로 부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친환경부표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다만,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한 KS 제품인증 기준 이상의 시험성적서 제출 시는 적용 제외
- 어류가두리는 PE 규격 ∅ 140mm 이상, 전복가두리는 PE 규격 ∅ 120mm 이상 사용.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의 표준양식시설 규격 및 설계도와 동일하게 시설시는 적용 제외
- 사업 착공 또는 보조금 정산 시 국가공인원가분석사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인에게 설계서 내역 또는 보조금 정산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받아야 함.

  다만, 지자체에서 일상감사 또는 계약심사를 거친 사업은 제외하고, 국가공인기관의 표준원가분석에 의한 설계검토의 경우 업체별로 동일한 표준설계시는 1회 적용으로 갈음함.

- 사업체별 사업비 총액의 3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두리양식장 시설 및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및 가두리관리사 제외)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 어업인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형 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자체 보조 : 국고 35%, 지방비 35%, 자부담 30%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연도별 재정계획의 분담비율에 의함

○ 지원기준 및 한도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비율에 따라 정산처리 함
- ha당 사업비 210백만원 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해당없음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해당없음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 지자체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금 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 이내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

-「Ⅱ. 1. 사업대상자,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자체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Ⅱ.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4월 30일까지)

-「Ⅱ.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예산 집행 실적 부진할 경우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및 사업자

○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선정

○ 시·도(시·군·구) 및 수협 등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시·도는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 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도 10.15 전후)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및 세부사업계획을 시·도에 통보(매년 1월)

5.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및 사업자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확보 내역서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매반기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를 조사

○ 시·도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사업 추진상황, 사업 추진 적정여부, 자부담 확보상황 등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시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사업비 정산》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산 및 사업완료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지자체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건축물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불가
기계·장비	5년(구입일로부터)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지원물량 등 지자체 사업추진상황(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시·도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등 패널티 부여

8.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0년도 예산 신청(4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0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및 정부(안) 시·도에 통보(9~10월)

○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세부사업계획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table>
<tr><td>단 체 등 의
명 칭</td><td colspan="2"></td><td>단 체 등 의
형 태</td><td colspan="2"></td><td>참여자수</td><td colspan="3"></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3">( )
-</td></tr>
<tr><td>주 소</td><td colspan="9"></td></tr>
<tr><td rowspan="3">신청내용</td><td>사업명</td><td colspan="2"></td><td colspan="6">사 업 비 (천원)</td></tr>
<tr><td>사업
규모</td><td colspan="2"></td><td rowspan="2">합계</td><td colspan="3">정부지원
(재원명기재)</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담</td></tr>
<tr><td>계</td><td>보조</td><td>융자</td></tr>
<tr><td>사 업
예정지</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사업검토

구 분	검토항목	평 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기술 또는 경영능력 현재사업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생산조건 판매조건				

※ 사업성 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 가능

3.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
(연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③ 2019년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사무관 류성봉 주무관 최상민	044-200-5630 044-200-5639 044-200-5640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양식어장의 재배치를 통해 적조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어장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 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2호

3. 성과목표 및 지표

○ 양식어장 재배치를 통해 건강한 어장 환경을 조성하여 수산물 생산성 증대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 양식어장 재배치 면적	100ha	58ha	-	39	10 (추진중)	익년 2월	지자체 추진실적 보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286**	**2,286**	**2,286**	**2,286**
- 국 비	800	800	800	800
- 지방비	800	800	800	800
- 자부담	686	686	686	686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식어장을 운영하는 자(어촌계, 개인, 어업인 단체, 지구별 수협, 업종별 수협)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① 사업자격

○ 수산업법 제8조에 의거 면허를 받은 후 양식어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장기간 어장이용으로 생산력이 저하된 양식어장에 대하여 환경개선 등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자

- 지자체장(시·군·구)이 자부담 확보 등 사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사업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산력 향상 및 환경 개선을 필요로 하는 양식어장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

- 재배치 어장 선정시 우선순위

① 적조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장

②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장

③ 어장환경평가 결과 미흡 어장 및 기타 어장환경오염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

- 재배치 방법의 우선순위

① 전복 가두리 어장과 해조류 어장을 맞교환

② 전복, 어류가두리, 해조류 및 굴 등 수하식어장을 타 시·군으로 이설

③ 전복, 어류가두리, 해조류 및 굴 등 수하식어장을 타 읍·면·동으로 이설

④ 전복, 어류가두리, 해조류 및 굴 등 수하식어장을 기존 어장 인근으로 이설

- 어장을 이설하는 경우 기존어업권을 포기해야 하며, 해당 시·군·구는 포기한 어장에 대해 양식어업면허 전면 제한(3년 이상)
- 어장간 맞교환 또는 이설 시 시설물 증가는 없어야 함(다만,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시 예외)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의 효과 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적조, 고수온, 어장환경평가결과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실시

○ 조사설계비(사전조사, 측량 등), 전복 및 어류가두리, 해조류 양식시설, 굴 등 수하식어장 이설 비용(닻, 닻줄, 외곽시설 자재구입, 시설비 및 이설시 필요한 청소비용 등), 어장 실명 표지비용, 단 종묘구입비는 제외

○ ‘19년 예산사업부터 본 지침을 적용하여 추진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35%(농특), 지방비 35%, 자담 30%

* **자담을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 지원기준 : 사업자로 선정된 해당 사업자(사업장소) 한함

○ 지원한도액 : 사업비 산출근거는 사업장소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 집행 주체(시·군·구)에서 결정(별표 1)

○ 사업비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지침 수립, 지자체 시달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해당없음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해당없음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사업자 공고·선정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

2. 사업신청 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집행주체 : 시·군·구

○ 공고시기 : 사업집행주체가 결정

○ 신청절차 : 사업 희망자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

- 별지 제1호서식 작성

○ 구비서류

- 어장연락도(사업지구) 1부, 자부담 확보 증명서 1부, 어촌계의 경우 어촌계 총회 회의록, 협의서1부, 사업비 산출예상서 1부, 양식어장 이설 시 기존 어업권 포기 및 개발 제한 동의서 1부

○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관련 장소(어장)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 등)를 실시

○ 신청서 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3. 사업자선정 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 : 시·군·구

○ 선정절차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시·군·구에서 선정

○ 선정기준

-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선정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 통지

- 사업집행주체는 사업 장소별 사업비내역을 확정하여 대상 사업자에 통보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시·도(시·군·구)

○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상 문제점, 양식어장 여건 개선 파악, 조류소통 및 생산량 비교 분석 동향 등

시·도(시·군·구)

○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4회)로 점검

- 사업 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현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별지 제3호서식 : 점검 기록부(매회 실시한 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에 비치 보관)

○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지 제4호서식 : 사업추진 상황 보고서

○ 재배치어장에 대해 어구실명제, 사육지도 등을 추진하고 불법시설물이 설치되지 않도록 사후관리해야 함

○ 재배치어장에 어업인(어촌계)들이 자율적으로 이설 또는 신규설치한 시설물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시설물과 통합하여 사후관리해야 함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 집행율이 낮고, 이월율 및 불용율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예산 삭감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의 적발 시 보조금 반환은 물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도(시·군·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시·도(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함

《기타사항》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환 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 확대 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 개선을 추진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9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수요조사(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지자체에 사전 통보 예정)

○ 사업신청 : 시·군·구

○ 신청기간 : 2019년 3월 말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선정

【별표 1】

어장재배치 품종별 사업비 산출내역(예시)

품종별	산출내역(ha)
전복가두리	▪ ha 당 : ≒ 47,132천원 - 닻 및 로프 : 41,100천원(15톤 30개, 40mm 로프) - 슬림바 : 2,079천원 - 부자 : 1,1970천원 - 청소비 등 : 2,756천원
어류가두리	▪ ha 당 : ≒ 43,900천원 - 닻 및 로프 : 24,400천원(2톤 2개, 75kg 30개, 34mm~40mm 로프) - 말목 및 선박임차료: 1,500천원(60개), 1,000천원(1척, 8~10톤) - 인부 및 전기설치 : 1,000천원(5명 2일), 10,000천원(100m 내외) - 부자 : 3,000천원(400L 150개) - 청소비 등 : 3,000천원
수하식 (굴 등)	▪ ha 당 : ≒ 34,500천원 - 닻 및 로프 : 21,500천원(75kg 50개, 34mm~40mm 로프) - 말목 및 선박임차료: 5,000천원(200개), 1,000천원(1척, 8~10톤) - 인부 : 1,000천원(5명 2일) - 부자 : 2,000천원(400L 50개, 62L 100개) - 청소비 등 : 4,000천원
해조류 (미역 등)	▪ ha 당 : ≒ 6,358천원 - 닻 및 로프 : 3,088천원(60봉, 24mm, 30mm 로프) - 부자 : 270천원(380mm 30개) - 청소비 등 : 3,000천원

* 지자체 별 어장환경 및 조건을 감안하여 사업비 증감 가능

【별표 2】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 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2019년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신청서

신 청 인 (대표)	성 명		연락처	
	주 소			

1. 사업장소(어장)

사업장소(어장)	(기존어장) (이설 또는 맞교환어장)	(면허번호) (면허번호)	(면적) (면적)
현재시설량 (규격, 칸)	(기존어장) (이설 또는 맞교환어장)	참여(행사)자 (명)	
재배치 이용 어장(장소) 방법	①양식어장 이설(어류, 전복, 해조류, 굴 등 수하식 등) ②가두리양식장과 해조류양식장간 맞교환		

2. 사업신청 및 추진계획

사업신청량	단 가	금 액	추진계획

3. 사업비(총 사업비 : 원)

국고 보조(35%)	지방비 보조		자부담
	도비	시군비	
원	원	원	원

4. 착공(착수) 예정일 :

5. 준공(완료) 예정일 :

2019년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군·구 귀하

※ 구비서류 1.어장연락도(사업지구)도면 1부. 2. 자부담 확보증명서 1부. 3. 어촌계 총회회의록, 협의서 1부. 4. 사업비 산출예상서 1부. 5. 양식어장 이설 시 기존 어업권 포기 및 개발 제한 동의서 1부. ※ 기타사항 1. 작성내용이 많아 신청서 기재란(추진계획 등)에 작성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 별도 첨부 가능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서식】

2019년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사업주관기관(민간사업자) : 시군구명 (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총사업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지원율)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계	(100%)	( )	( )	( )

○ 사업위치 :

* 맞교환 또는 기존어장과 이설어장의 상세주소(어장위치) 작성 및 위치도 별도 첨부

○ 사업규모 :

* 맞교환 또는 기존어장과 이설어장의 어장면적, 시설규모(가두리 칸수 등 포함) 각각 작성

○ 사업내용 :

2.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여부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부담자	부담방법
지방비			
자부담			

3. 사업수행계획

○ 사업추진방향

- 맞교환, 어장 이설 등 재배치 방법 작성, 재배치 도면 별도 첨부

- 재배치 시 시설 배치 방법 등 환경개선 및 불법시설물 관리 계획 포함 작성

○ 민간사업자 :

- 사업자명 :

- 사업장주소 및 연락처 :

○ 세부추진계획

*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최소 월단위로 작성

일정	내용

4. 사업비의 산출내역

구분	산출산식	금액(백만원)

5. 사업성과 관리

가. 사업성과 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 성과지표 :

나. 사업주관기관 정기 점검 계획

○ 사업추진 중

구 분	주요내용
점 검 시 기	
점 검 기 관	
점검내용·방법	

○ 사업완료 후

구 분	주요내용
점 검 시 기	
점 검 기 관	
점검내용·방법	

다. 사업의 기대효과

품목	사업 전					사업 후					비 고
	시설량 (규격) (칸)	연간 생산량 (톤)	연간 소득액 (백만원)	연간 폐사량 (톤)	일자리 (명)	시설량 (규격) (칸)	연간 생산량 (톤)	연간 소득액 (백만원)	연간 폐사량 (톤)	일자리 창출효과 (명)	

6. 보조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별지 제3호서식】

점검기록부

일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ㅇ 점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ㅇ 수검자

- 소속 :

- 직급 :

- 서명 :

년 월 일

지자체장

【별지 제4호서식】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추진상황(○/4분기) 보고
(○○○○도)

1. 사 업 명 :

2. 사업주체 :

3. 사업추진내용 :

4. 추진현황

(단위 : ha, 천원)

시군	2019년 계획					실집행실적(누계)				
	사업 물량 (ha)	예산				사업 물량 (ha)	예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대 책 >

○

< 건의사항 >

○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추진 현황

(○○○도)

□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 사업자 : 성명 또는 단체명

□ 사업대상(어장)장소 :

(단위 : 칸, ha, 톤, 천원)

월별	사업량	시기별 실 적	참 여 어가수	사 업 추 진 실 적			사업비 (지출)
				계획	실적	비율	
총계							
1							
2							
3							
4							
5							
6							

【별지 제5호서식】

양식어장 재배치 지원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년)

1. 추진실적

사업 연도	사업자명	재배치 방법	기존어장			이설어장			계획(백만원)				실적(백만원)			
			면적 (ha)	시설량		면적 (ha)	시설량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규격	칸/줄		규격	칸								

④ 고수온대응지원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 장 윤분도 사무관 이동희	044-200-5610 044-200-5614

Ⅰ. 사업개요

1. 목적

○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고수온 대응 장비지원 등 사전 예방을 통하여 양식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도모

2. 근거법령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고수온지원사업비 집행실적(비율)	95%	-	-	-	-	매년 말	고수온지원사업 집행실적 × 95%(집행목표율)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3,725**	**3,725**	**3,725**	**3,725**
- 국 비	3,000	3,000	3,000	3,000
- 지방비	-	-	-	-
- 자부담	725	725	725	725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행사계약자 포함)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수온 대응장비구입비, 선박 임차비, 폐사어 처리비, 일반연구비 등 지원
- 지원단가 등은 해당 지자체별 자체조사 후 결정

○ 고수온 대응장비 구입비
- 고수온 대응장비라 함은 액화산소공급기, 액화산소(평상시 사용량은 제외, 고수온 관심단계·주의보·경보 발령기간 중 사용량에 한함), 산소공급기(발생기), 저층해수공급장치, 면역증강제(활력강화제), 얼음(육상양식장), 차광막 등 고수온의 효율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장비 등에 한 함

○ 선박 임차비
- 선박 임차비라 함은 사업주관기관에서 고수온 특보(관심단계, 주의보, 경보) 기간 중 “섬 지역 양식장”에 액화산소(산소통) 운반에 필요한 선박임차비(선박임차료, 유류비, 인건비 등)로 사업비의 자기 부담 20%는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에서 부담 하여야 함.

○ 폐사어 처리비
- 폐사어 매립지 확보, 폐사체 처리기 보급 및 폐사어 수거, 운반, 매몰 등에 직접 소요되는 중장비, 덤프트럭 등 장비대(임차 포함) 및 장비운영 인건비(다만, 어류에 한하고, 당해 피해 어업인에 대해서는 선박 및 인건비와 재해복구비용 중 철거비는 지원할 수 없음), 폐사어 위탁 처리비로 사업비의 자기 부담 20%는 해당 지자체(시·도, 시·군)에서 부담 하여야 함.(다만, 개인 사업자에게 설치되는 폐사체 처리기의 자부담은 사업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일반 연구비
- 고수온 등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용역비용 등 연구 지원에 한 함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규모 : 국비 보조 3,000백만원

○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80%, 자담 20%
(단, 선박 임차비, 폐사어 처리비는 : 국고 보조 80%, 지방비 20%)

○ 지원한도

(단위 : 백만원)

집행단위사업명	총 지원액				양식어가당 지원한도액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3,725	3,000	-	725	-	-	-
고수온대응장비지원	3,625	2,900	-	725	-	-	-
기후변화대응일반연구	100	100	-	-	-	-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해당없음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해당없음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 지자체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금 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3월 31일 이내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

-「Ⅱ. 1. 사업대상자,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지자체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Ⅱ.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4월 30일까지)

-「Ⅱ. 3. 지원대상」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시 현장 검증을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자담)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예산 집행 실적 부진할 경우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도별 사업량 및 예산안 통보

지자체 및 사업자

○ 사업대상자 적격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자체 심의 등을 거쳐 선정

○ 시·도(시·군·구) 및 수협 등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및 자담 확보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도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시·도는 자부담 확보 방안 등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 지역·사업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에 즉시 보고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중도 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다만, 동일 시·도에서 국고 보조금의 변경 없이 사업자, 사업량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사항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전년도 10.15 전후)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및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통보(매년 1월)

5. 자금배정단계

지자체 및 사업자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확보 내역서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을 때에는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매반기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를 조사

○ 시·도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사업 추진상황, 사업 추진 적정여부, 자부담 확보상황 등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에 대하여 필요시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사업비 정산》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정산 및 사업완료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지자체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건축물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불가
기계·장비	5년(구입일로부터)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최근 3년간 지원물량 등 지자체 사업추진상황(실집행률 등) 등을 감안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예산 지원

○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시·도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등 패널티 부여

8. 본 지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0년도 예산 신청(4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0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및 정부(안) 시·도에 통보(9~10월)

○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2호서식]

사업성검토서

1. 신청자

<table>
<tr><td>단 체 등 의
명 칭</td><td colspan="2"></td><td>단 체 등 의
형 태</td><td colspan="2"></td><td>참여자수</td><td colspan="3"></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3">( )
-</td></tr>
<tr><td>주 소</td><td colspan="9"></td></tr>
<tr><td rowspan="3">신청내용</td><td>사업명</td><td colspan="2"></td><td colspan="6">사 업 비 (천원)</td></tr>
<tr><td rowspan="2">사업
규모</td><td colspan="2" rowspan="2"></td><td rowspan="2">합계</td><td colspan="3">정부지원
(재원명기재)</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담</td></tr>
<tr><td>계</td><td>보조</td><td>융자</td></tr>
<tr><td>사 업
예정지</td><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2. 사업검토

구 분	검토항목	평 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기술 또는 경영능력 현재사업 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생산조건 판매조건				

※ 사업성 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 가능

3.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3호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
[연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18 친환경 어구보급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 장 조일환 사무관 송창수	044-200-5510 044-200-5522
국립수산과학원	수산공학과	과 장 양용수 담당자 김현영	051-720-2560 051-720-2581
수협중앙회	자재사업부	팀 장 담당자	02-2240-3216 02-2240-3231
시·도(시·군·구)	해양수산관련부서	업무 담당자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실된 폐어구로 인한 어장환경 오염 방지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 바다 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 지원
- 생분해성어구 품질향상으로 상용화 기반 구축
- 생분해성어구 사용효과 규명 및 어업인 친환경 의식 제고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27조(환경친화적 어구사용)
○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어구관리정책 만족도(점)	83.7	-	-	79.6	81	매년5월	설문조사 점수(출처: FTA국내 보완대책 어업인지원성과 분석 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7,428**	**7,428**	**7,428**	
- 국 비	5,200	5,200	5,200	
- 지방비	2,228	2,228	2,228	
- 자부담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① 사업자격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관리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 사업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19년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시·도의 어업인으로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자

* 대게·참조기·꽃게 자망, 붕장어 통발 등 지역별로 사업 참여 실적이 우수한 어구를 우선 지원

○ 생분해성 자망 또는 통발 등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인증한 생분해성 어구·어망 구매 보급 및 수거된 생분해성 폐어구의 폐기물 처리비

- 폐기물 처리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생분해성 폐어구의 처리비용에 한하며, 총사업비의 5%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다만, 폐어구를 재활용할 경우에는 관련 특허받은 업체와 우선하여 수행할 수 있음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 범위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70%, 지방비 30%

* 어구 규격은 지역별 어업 특성에 따라 원가계산서상의 규격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 사업시행기관 : 시·도(시·군·구)

○ 지원기준 :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과 나일론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하고, 어업인 자부담 중 기존어구 가격의 10%를 추가 지원. 필요시 지방비로 10% 추가 지원하여 최대 20%까지 지원 가능(다만, 신규 진입 품목에 대해 20%를 국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신규 진입 품목 예시 : 참조기 자망, 꽃게 자망 등 최근 2년간 보급 실적이 없는 품목
* 지원한도액 : 차액지원(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 - 기존어구가격)+(기존어구가격×10%~ 20%)
*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 결정을 위한 기준단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의뢰조사 후 관계기관에 통보
*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 계약은 공급업체의 요구 또는 계약당사자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격협상 방식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통보한 기준단가 미만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 사업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자별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자부담 납입능력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5. 생분해성어구의 성능검사 및 인증

○ 어구의 성능검사 및 인증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수행
- 그물실 및 완성된 제품 등에 대한 물리적 특성 성능 인증서 교부
- 그물실의 방사, 편망공정 기술이전 및 연구지원

○ [별표 1]의 생분해성어구 검사 규정에 따라 생분해성어구로 합격한 제품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발급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국립수산과학원) ·생분해성 어구 신청서 검토 및 인증서 발급 →	(국립수산과학원) ·해당없음 →	(국립수산과학원) ·해당없음
(지자체) ·해당없음	(지자체)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보고 ·사업자 공고	(지자체) ·사업자 공고·선정
(수협중앙회) ·해당없음	(수협중앙회) ·사업시행지침 및 인증신청 홍보	(수협중앙회) ·사업대상자 정리 및 지역별 어구량 취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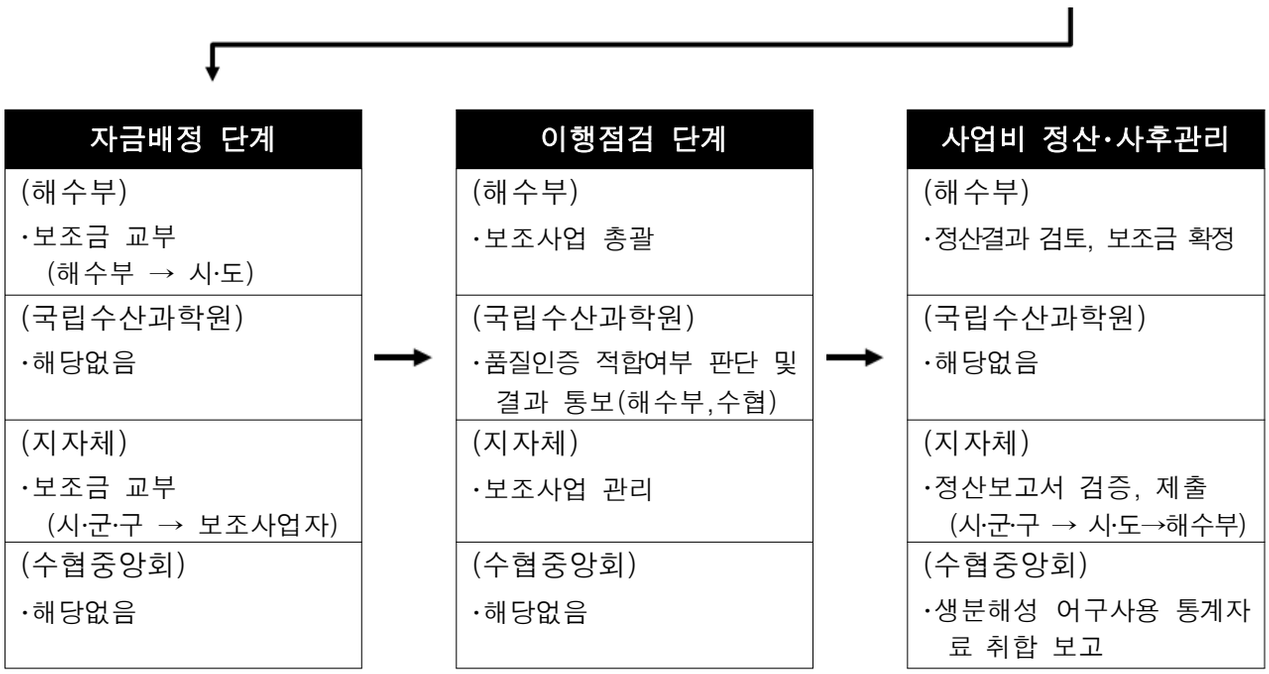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예산 지원계획 시·도에 통보(사전 통보, ’18. 10까지)

○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자재사업부)에 시달 (’18. 12까지)

○ 확정 예산 시·도에 시달(’19. 1까지)

국립수산과학원

○ [별표 1]의 생분해성어구 검사 규정에 따라 어구성능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규정에 합격한 어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서 발급

* 별지 제6호 서식 :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 기준단가 산정 및 통보

- 생분해성어구 및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를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뢰, 산정하여 통보(국립수산과학원 → 해양수산부, 지자체, 수협중앙회)

○ 수협중앙회(일선조합)로부터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의뢰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 편망업계에서 생산중인 생분해성어구의 성능 조사 실시

○ 납품 어구에 대한 검사는 납품전 무작위로 현장 방문하여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검수 시험 실시

* 검수시험내용 : 재질판별, 파단강도, 신장률, 그물실 굵기

지자체(시·군·구)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시·도/시·군·구)

- 사업자(어업인)의 수요를 파악하여 다음연도 사업 예산 신청 ('19.1월까지)
- 예산배정에 따른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19.2월까지)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세부사업계획 및 사업자 선정결과 등을 수협중앙회에 통보(시·도, '19. 2~3월)

○ 생분해성어구 사업내용 교육·홍보 및 어구 공급시 검수 입회(시·군·구)

* 별지 제7호 서식 : 검수조서(2부 작성, 지자체 및 수협 각 1부 보관)

○ 시·도는 사업 이행결과를 매 분기별로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규정에 따라 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정산

○ 시·도는 수협중앙회에서 제출 받은 사업비 정산 현황에 의거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의 종료시 해양수산부에 보고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된 생분해성어구 조달가격 통보(수협중앙회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 사업대상자별 생분해성어구 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어업인 보급 및 설명·교육,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업무 수행 및 보고

* 별지 제7호 서식 : 검수조서(2부 작성, 지자체 및 수협 각 1부 보관)

○ 납품되는 어구에 대해 생분해성 소재로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 할 수 있음

○ 국립수산과학원 분석결과 생분해성 소재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급업체와 계약을 해지

○ 수협중앙회(일선조합)는 시·군·구에서 사업자 공고 시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사업 설명회 등을 지원하여야 함

공급업체

○ 업체의 자격은 생분해성 어구보급 사업대상 어구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갖고 있는 자

- 국내에서 중합된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그물을 생산, 편망·열처리·포장·건조 및 보관 공정을 보유한 업체(자망)
- 국내에서 중합된 생분해성 수지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사출하는 업체(통발, 인공소라 등)

○ 생분해성어구 공급업체*는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중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급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서를 취득한 업체

* 별지 제6호 서식 :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 (사)한국생분해어망협회는 생분해성어구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분해 어구 공급업체들의 어업인 홍보활동과 생분해성 어구의 어획성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공급업체는 납품전에 납품상황을 국립수산과학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 단계

지자체(시·군·구)

○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 사업자 선정(공고)

- 공고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매년 2월중에 모집 공고
  * 필요시 신청기간의 변경 또는 별도의 신청기간을 둘 수 있음
- 구비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신청자 및 관련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 신청·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군·구에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함

○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시·도(시·군·구)에서 선정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지도

시·도(시·군·구)

○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 선정절차

- 해양수산사업 심의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 단, 추가 사업자 선정의 경우 사업물량보다 신청물량이 적어 경합이 없을 경우 생략 가능

○ 선정기준

- 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참여 어업인을 우선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 및 확정결과 보고 등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수협중앙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

* 별지 제2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서

- 사업 대상자 선정결과 및 연간 사업비내역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 별지 제3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 사업 대상자 등이 변경된 경우, 관련내용을 해양수산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

* 별지 제4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대상자·주소 등) 변경 통보서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대상자 정리 및 지역별 어구량 취합·확인

* 수협중앙회 계약 지침은 해수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4. 자금배정 단계

시·도

○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공통 제3호 서식】('19.1월까지)

해양수산부

○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공통 제4호 서식】('19.2월까지)

○ 생분해성어구 공급이 완료되어 수협의 준공계가 제출되는 경우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공통 제4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별 특정 교부조건이 필요하여 【공통 제5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변형하는 경우 별도서식으로 작성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 현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친환경 어구 보급 여부, 사업 추진상 문제점, 어업인 동향 등

○ 보조사업으로 보급되는 어구에 대한 품질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품질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 할 수 있음

시·도

○ 지자체(시·도)에서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반기(2회)별로 점검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하면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별지 제8호 서식 : 점검기록부(점검기록부는 점검기록대장을 작성, 비치 보관)

○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지급결과를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별지 제5호 서식 :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결과서

《제재》

해양수산부

○ 년1회 이상 지자체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지침에 적합토록 시행 조치

○ 보조금 집행실적이 낮고, 이월률이 높은 지자체는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패널티 부여

○ 본 지침사항을 위반하거나 납품어구 성능기준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1년간 제한 조치 실시

시·도(시·군·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감독

○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기타사항》

○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환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2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을 추진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 시·군·구에서 사업자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 조사 실시

○ 사업신청 : 시·군·구 (3월말까지) → 시·도 (4월말까지) → 해양수산부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되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

○ 대게, 붉은대게, 꽃게 등 향후 사용의무화가 예상되는 어구를 우선 지원 예정
- 기타 어구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수협중앙회는 생분해성어구 보급을 위해 공급업체와 조달가격 계약시 가격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가격협상을 위한 기준단가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물가조사기관에 의뢰, 최종 산정하여 제공한다.

[별표 1]

생분해성어구 검사 규정

□ 수지에 관한 규정

○ 생분해성 수지는 PBS(Polybutylene Succinate), PBS 95%/PBAT 5% 중합체, PBS 공중합체 또는 기타 생분해성 수지로 하여야 하며, 국내에서 중합 생산하여야 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생분해성 수지제품(EL724)임을 인증하는 환경표지 인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생분해성 수지는 환경부 고시(제2015-29호)에서 규정하는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생분해성 수지의 생분해도는 해상에서 20~24개월, 육상에서는 자연 옥외폭로 상태에서 24개월경과 시점에서 초기강도 (0개월 시점) 100% 대비 80% 이상의 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그물실 방사에 관한 규정

○ 그물실은 “수지에 관한 규정”을 만족시키는 생분해성 수지로 방사하여야 한다.

○ 그물실의 성능 인증은 가공업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서 또는 유선(팩스)으로 의뢰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가공업체에서 직접 무작위로 10개의 표본을 추출하며, 승인 및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및 수수료 고시에 준하며, 성능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성능인증 시험방법은 KS K 0412:2005 시험법을 준용한다.

< 자망 및 통발 그물실 성능인증 기준 >

품명	직경 (mm)	파단강도 (kgf/㎠)	신장율 (%)
mono. 2호	0.220±0.01	3,200 이상	25 이상
mono. 3호	0.285±0.01	4,700 이상	25 이상
mono. 3.5호	0.310±0.01	4,700 이상	25 이상
mono. 4호	0.330±0.01	4,700 이상	25 이상
mono. 5호	0.370±0.01	4,700 이상	25 이상
mono. 6호	0.405±0.01	4,700 이상	25 이상
mono. 24호(통발용)	0.801±0.01	3,200 이상	25 이상

* mono.는 monofilament를 칭함 / 통발용 그물실은 유연도 측정 제외

□ 사출통발에 관한 규정

○ 사출통발의 성능 인증 절차는 “그물실 방사에 관한 규정”과 같으며, 성능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붕장어 플라스틱 통발

< 붕장어 플라스틱 통발 성능인증 기준 >

품명	사출조건	통발(몸통)	깔때기		두께 (mm)	비고
		압축강도 (kgf)	파단강도 (kgf)	신장율 (%)		
붕장어 플라스틱 통발	통발용 수지는 생분해성 수지로 하여야하며 본 지침서상의 “수지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25.0 이상	18.0 이상	20.0 이상	1.80 이상	1. 수지 : 국내에서 중합 및 사출 2. 10개 표본중 90%이상 규정에 적합시 합격

* 압축강도 측정법 : 몸체의 중앙부분을 직경 1cm 이하까지 압축하여 10회 값을 평균한 값 (압축강도 실험시 파손 및 균열 발생시 불합격)
* 파단강도 : 사다리꼴형의 시편을 사용하여 인장실험을 10회 실시하여 평균한 값 (시편크기 : 윗변 8mm, 아랫변 4mm, 길이 70mm)
* 두께측정 : 통발의 몸통 및 깔때기 살 부분을 각각 10회씩 측정하여 평균한 값

○ 주꾸미 어획용 인공소라

< 주꾸미 인공소라 성능인증 기준 >

품명	사출조건	비중	비고
주꾸미 인공소라	주꾸미 인공소라 사출용 수지는 생분해성 수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상의 “수지에 관한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1.4~1.6 내외	1. 수지 : 국내에서 중합 및 사출 2. 비중 : 수중치환법으로 측정

○ 자망의 성능 인증은 편망업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망업체에서 직접 무작위로 1~2폭의 표본을 선택하고, 생산 공정을 실사 검사하며, 승인 및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 의뢰 규칙 및 수수료 고시에 준하며, 자망의 제작과 성능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자망은 이중막매듭으로 편망하여 열처리하며, 성능인증시험은 아래의 규격으로 실시하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그물규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mono. 3호 자망 : 망목 내경 51mm, 가로 1,000코, 세로 300코
- mono. 4호 자망 : 망목 내경 75mm, 가로 2,000코, 세로 40코
- mono. 5호 자망 : 망목 내경 127mm, 가로 2,380코, 세로 30코

· mono. 6호 자망 : 망목 내경 240mm, 가로 1,265코, 세로 18코

ㅇ 통발용 그물의 성능 인증은 편망업체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문서 또는 유선(팩스)으로 의뢰하며, 국립수산과학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망업체에서 직접 무작위로 1필(1,000코×100코)의 표본을 선택하고, 생산 공정을 실사 검사하며, 승인 및 절차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및 수수료 고시에 준하며, 성능인증 기준은 아래와 같다.

- 그물감은 mono 2호 그물실을 수 가닥 연사하여 단매듭으로 편망하여 열처리하며, 성능인증시험은 아래의 규격으로 실시하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그물감의 규격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 망목 내경 22mm, 가로 100코, 세로 30코

< 그물에 관한 성능인증 기준 >

품명	파단강도 (kgf/㎠)	신장율 (%)	두 발사이의 각도 (°)	비고
mono. 2호(통발용)	2,000 이상	15 이상	25 이하	1.매듭 정확도는 100개 표본중에서 90% 이상 적합시 합격 2.두 발사이의 각도는 폭 방향의 매듭을 중심으로 발의 1/2 기점 사이의 각도
mono. 3호(어류)	2,000 이상	20 이상		
mono. 4호(어류)	2,000 이상	20 이상		
mono. 5호(어류)	2,000 이상	20 이상		
mono. 5호(갑각류)	2,100 이상	15 이상		
mono. 6호 이상 (갑각류)	2,250 이상	15 이상		

□ 성능인증에 대한 경과조치 및 사후관리

ㅇ mono. 6호 그물실 또는 그물의 성능인증을 취득한 경우, 그 이상의 그물실 또는 그물에 대해 성능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그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의 굵기별로 성능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 특정 굵기의 성능인증을 취득하면 인증받은 동일굵기의 품종별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 지침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동일굵기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ㅇ 생분해 그물실 또는 그물의 성능 인증서는 사업 기간 동안 유효하다. 다만, 2년 이상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는 신규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ㅇ 생분해어구 생산업체는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생산어구에 대한 품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어업구분	□ 연안자망어업 □ 근해자망어업 □ 연안통발어업 □ 근해통발어업 □ 연안복합어업							
선박제원	선명(허가번호)		톤수		승선원수			
품 명	어구규격	단위	연간사용량	신청량	총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분기 별 구입계획 (천원)	1/4분기				2/4분기			
	구입량	구 입 비			구입량	구 입 비		
		계	보 조	자 담		계	보 조	자 담
	3/4분기				4/4분기			
	구입량	구 입 비			구입량	구 입 비		
		계	보 조	자 담		계	보 조	자 담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1. 어업 허가증 사본 1부. 2. 선적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 1부. 3. 변경사유(변경사업 신청서에 한함) 1부.	없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만족도 조사 등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1년이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및 연구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 만족도 조사 등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1년이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서

(단위 : 폭(개), 천원)

시·군	성명	어선명 (허가번호)	톤수	어구규격	연간 총사용량	사업 물량	정부지원 금액	어업인 부담금액	연락처
총계									
계									
연안어업									
계									
근해어업									

[별지 제3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귀하가 금년도 생분해성어구 구입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급대상자 명단>

(단위 : 폭(개), 천원)

일련 번호	성 명	선명 (허가번호)	주 소	어구 규격	폭(개)수	부담액	연락처

년 월 일

ㅇㅇㅇ 귀 하

지방자치단체장

[별지 제4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대상자·주소 등] 변경 통보서

일련번호	성 명	어 선 명 (허가번호)	주 소	톤수	어구규격	폭(개)수	연락처	기타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별지 제5호 서식]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지급 결과서

(단위 : 천원)

시·군	합 계					
	성명	어선명 (허가번호)	어구규격	폭(개)수	어가부담 금 액	정부 지원 금액
총계						
계						
연안어업						
계						
근해어업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별지 제6호 서식]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제 ○○-○호

□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판정결과 :
□ 세부시험성적서 : 별첨

귀 사에서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에 성능 의뢰한 그물은 해양수산부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생분해성 ○호 자망그물로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과학원장

[별지 제7호 서식]

검 수 조 서

일자	지역	어구종류	수 량	비고
				※ 사진첨부

○ 납 품 자
- 상 호 :
- 서 명 : ㊞

○ 검 수 자
- 소 속 :
- 직 급 :
- 서 명 : ㊞

○ 입 회 자
- 소 속 :
- 직 급 :
- 서 명 : ㊞

[별지 제8호 서식]

점 검 기 록 부

일 자	지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 점 검 자(시·도)

- 소 속 :
- 직 급 :
- 서 명 : 名

○ 수 검 자(시·군·구, 수협)

- 소 속 :
- 직 급 :
- 서 명 : 名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별지 제9호 서식]

2019년 생분해성어구보급 보급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군	어구종류	계 획					추진실적					비고
		물량		금액(천원)			물량		금액(천원)			
		척수	폭(개)	계	국비	지방비	척수	폭(개)	계	국비	지방비	
계												
○○시	대게자망											
○○군	붕장어통발											
:	:											
:	:											

※ 보조금 지급결과 등 세부내역은 사업지침 별지 제5호 서식을 준용하여 별첨

□ 생분해성 폐어구 처리현황*(본 사업예산으로 처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시·군	총 사업예산 (천원)	생분해성 폐어구 처리내역		비 고
		처리비용(천원)	처리량(톤)	
계				
○○시				
○○군				

<참고자료> 시행지침 개정(안) 비교

2018년 시행지침	2019년 시행지침(안)	수정사유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 사업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범위** ○ 사업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생분해성어구 보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업자별 총사업비 한도 내에서 자부담 납입능력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신설)**	○ 생분해성어구 보급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4.27일)과 간담회(9.3일) 시, 어업인의 일시 자부담 납부 부담 해소와(사)한국생분해성어망협회의 역할에 대한 지침개정 건의 반영* * 지자체, 수협, 업계 등의 의견 수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공급업체	**공급업체**	
○ 생분해성어구공급업체*는 상기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중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급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인증서를 취득한 업체 * 별지 제6호 서식: 생분해성 그물 성능 인증서 ○ 공급업체는 납품전에 납품상황을 국립수산과학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생분해성어구공급업체*는 상기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중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발급한 별지제6호 서식의 인증서를 취득한 업체 * 별지 제6호 서식 : 생분해성 그물성능 인증서 ****(사)한국생분해어망협회는 생분해성어구보급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생분해어구 공급업체들의 어업인 홍보활동과 생분해성 어구의 어획성능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 공급업체는 납품전에 납품상황을 국립수산과학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팀 장 김종모 사무관 김형덕 주무관 이형록	044-200-5505 044-200-5523 044-200-550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장비보급으로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선진화사업에 대한 지원)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30년까지 어선어업분야 20,000톤CO_2 배출 저감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목표/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 CO2배출 저감량(톤)	1,555	1,530 / 1,553	1,530/ 1,768	1,555/	2월	노후엔진대체[에너지절감량(5%)]에 따른 해상용 엔진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4,000**	**24,000**	**24,000**	**24,000**
○LED등 보급	**340**	**340**	**340**	**340**
- 국 고	102	102	102	102
- 지방비	102	102	102	102
- 자부담	136	136	136	136
○기관·장비·설비	**23,660**	**23,660**	**23,660**	**23,660**
- 국 고	7,098	7,098	7,098	7,098
- 지방비	7,098	7,098	7,098	7,098
- 자부담	9,464	9,464	9,464	9,464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燈)(어선에서 사용하는 집어등, 작업등을 포함한다. 이하 "LED등" 이라한다), 어선의 기관·장비·설비에 대하여 대체(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어선의 기관·장비·설비를 대체(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어업인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과징금 처분이상)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수산관계 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 제출한 어선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따른 감척대상 어선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단, LED등을 설치한 자는 지원받을 수 있다.
-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3. 지원대상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포함)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또는 무동력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

※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톤수 2톤 미만 소형어선으로 150마력 이하 가솔린기관을 포함하되 관리선으로 지정된 어선은 제외한다.

○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설비

※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 용품에 한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LED등 및 어선의 기관·장비·설비의 개량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회 계 명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LED등 18척, 기관·장비·설비 839척

○ LED등 설치사업과 어선의 기관·장비·설비의 대체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없으나, 사업집행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 해양수산부 변경승인을 거쳐 집행 가능함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 사업별 지원한도액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한다)의 보조지원율로 지원

6. 유류절감장비 및 LED등의 성능검사 및 승인

○ 유류절감장치 및 LED등은 성능 보장을 위해 공인기관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지원 대상으로 함

장비명	유류절감장치	LED등
공인기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수산과학원에 LED등을 승인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제2호, 제3호에 따른 KOLAS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국립수산과학원 협의)하여야 함

※ 성능검사 및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승인받은 제품에 한하여 3년이내 공급실적이 있고, 7항의 품질평가를 통과한 제품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 공인기관에서는 새로운 생산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승인서를 교부하고, 해양수산부 및 수협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함

○ 승인기준이 변경된 경우, 기존의 승인받은 제품도 변경된 기준으로 재승인을 받아야 함

7. LED등 승인제품에 대한 품질평가

○ 승인받은 업체는 ISO9001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경영시스템을 수립하여 품질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인증서)를 매년 국립수산과학원에 제출하여야 함

○ 승인받은 업체, 수협중앙회 및 사업집행주체는 LED등 승인제품에 대한 품질평가를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자료제출 등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협조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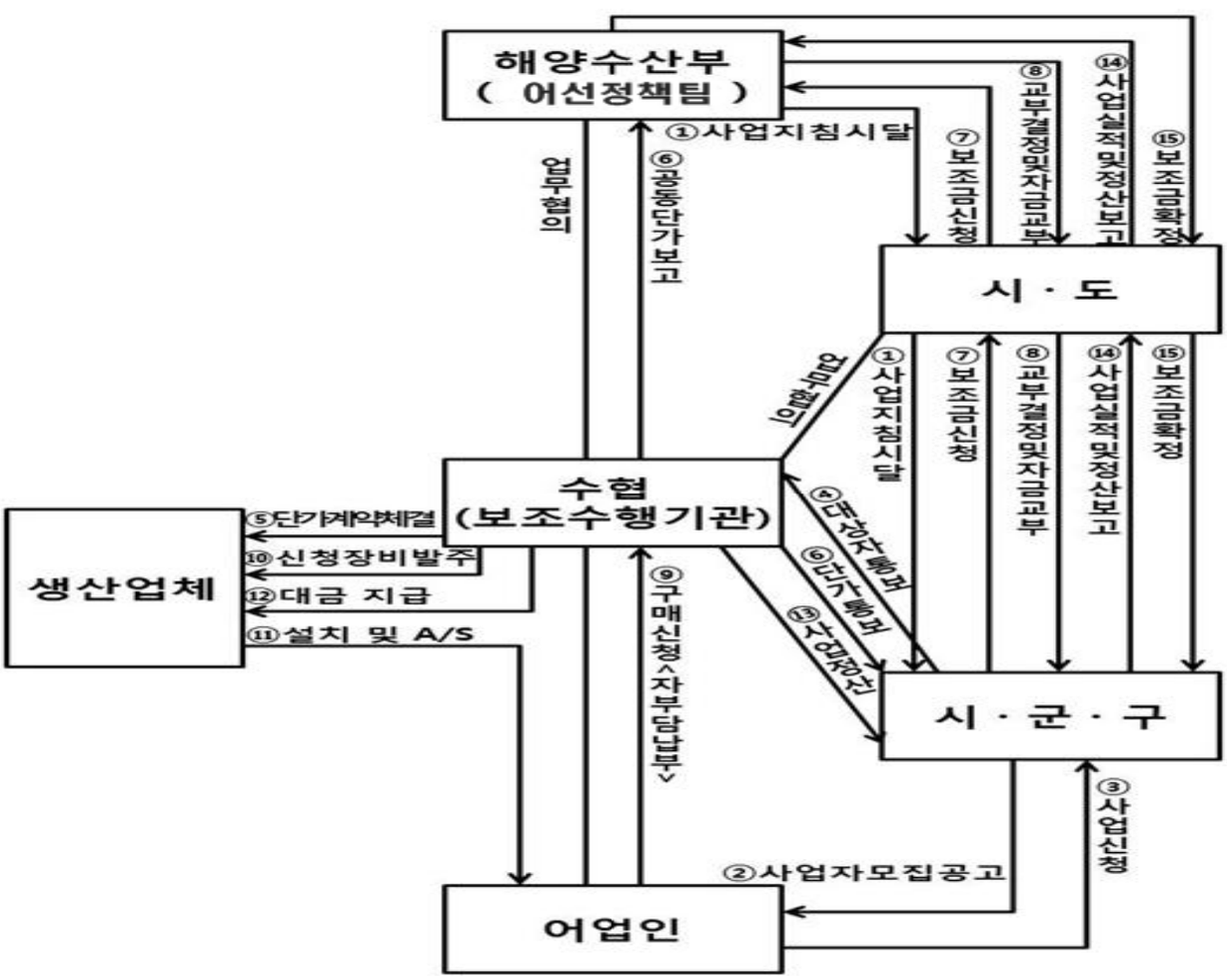

1. 사업계획 수립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매년 10월말)

○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달(매년 12월말)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19. 1월말)

시·도(시·군·구)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1.20일까지 수립하고 4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지자체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수협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에게 사업전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시달

시·도(시·군·구)

○ 사업 수요조사,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 사업자 공고·모집을 위해 어촌계 등 방문 사업 홍보·지도 강화

○ 사업자 모집 공고기간 : 2019. 1. 20. ~ 2. 28.

※ 지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모집공고 기간을 설정(30일 이상 권고) 하되, 사업별 희망자가 없거나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별 별도 계획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수협중앙회(단위수협)

○ 사업자 모집 공고 및 희망 수요자 모집을 위해 어업인 홍보·지도 강화

○ 사업에 필요한 기종(장비)별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에 통보

어 업 인

○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공통 제1호 서식〕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지자체 사업담당 부서 등에 신청

※ 사업신청서는 시·도(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비치

3. 사업자 선정 및 시행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집행 주체 시·군·구별로 사업자를 선정

○ LED등 사업자 선정에 있어, LED 집어등 설치어업인을 우선으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우선순위는 소형어선 어업인(수협위판 실적이 있어야 한다), 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함.

* 어선어업 목적의 어업인을 지원하되, 낚시 영업 목적의 낚시어선업은 지원 제외

○ 기관·장비·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위판 실적이 있어야 한다),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대체기관의 단종 등 부득이한 경우 상위 마력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허용범위는 10% 이하로 한다.

① 유류절감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신청자가 있을 경우 최우선 지원)

② 육상용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 하고자 하는 자

③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④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해상용 디젤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⑤ 노후장비·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⑥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노후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자

⑦ 새로운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⑧ 가솔린 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 단, ①~⑦순위 보다 우선지원 불가하며 전체 보조금의 30%를 넘을 수 없음

* 기타 지자체 자체실정에 따라 우선순위 추가 가능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 단, 추가모집 사업자 선정시 지자체 판단에 의거 심의생략 가능

○ 시·도에서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 함

* 연중 사업자 선정 또는 변경 시에도 해양수산부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시·군·구에서 해양수산부 승인을 득한 후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및 지역별 수협(수협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함

○ 지자체는 사업자를 2019. 3. 8일까지 선정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2019. 3. 31.일까지 승인을 득하여 함

○ 지자체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수협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에게 사업전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자체에서 운용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준용하여 수협중앙회에서 체결한 단가계약을 지자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체결 제품 구입을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에서 어업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별도 구매계약 체결 가능

수협중앙회(단위수협)

○ 사업자별 장비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업무을 수행하고, 사업자에게 사업전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공통 제3호 서식〕 : 2019. 2월말까지

○ 보조금 지급은 어업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장비·설비가 어선에 설치 완료된 때, 수협의 준공계를 제출받아 확인 후 준공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해양수산부

○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송금〔공통 제3호 서식〕 : 2019. 3월까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6월, 10월)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등

○ 사업추진 실적 보고는 국회 등 필요에 따라 월별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고 사업별·재원별로 보조금의 정산서를 제출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시설관리책임	비고
기계·장비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사업주관기관	

단, 조달청 내용연수에 따라 해상용 디젤기관 및 가솔린기관의 사후관리기간은 7년으로 한다.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 내용연수가 5년 미만의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해당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는 관리를 아니 할 수 있음

- 단년도 소모품 성격의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 관리를 아니 할 수 있음

○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제재》

해양수산부

○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3개월 10%이내, 6개월 20%이내, 12개월 50%이내

** 지침위반 사례 적발 시 삭감비율 : 1회 20% 이내, 2회 30% 이내, 3회 50% 이내

사업관리주체
(시·도, 시·군·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집행율 95% 이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보조사업 관련 우수지자체 공무원에 대하여 장관표창 상신

《환 류》

○ 사업추진 실적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등

○ 사업희망 수요조사 : 시·군·구별(어촌계 단위별) 공고를 통한 조사 실시

○ 사업신청 : 어업인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신청기한 : 2019. 3. 31

○ 시·군·구는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시·도에 제출(2019. 4. 30)

○ 시·도는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2019. 5. 31)

○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하여 시·도에 통보(2019. 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2019. 12월)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사업시행지침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침서를 준용하여 신청

【별지】

2019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보급사업 집행실적 보고

□ oo시(도) 2019년 (1/4분기) 집행 실적

(단위 : 척, 천원)

구 분	2019년 또는 1/4 분기 집행 실적					
	계획			실적		
	물량		금액 (국비)	물량		금액 (국비)
	척수	마력수* 또는 등(燈)수		척수	마력수* 또는 등(燈)수	
합 계						
○ 친환경LED등 보급				-		-
- LED집어등						
- LED작업등				-		-
○ 노후기관·장비 보급						
- 기관 교체 및 설치						
- 장비 교체 및 설치						

【별표 제2호】

LED 집어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AC 220V, 60Hz 에서 LED모듈 및 LED 소자를 광원으로 하는 집어용 LED 집어등(이하 “LED 집어등”라 한다.)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며,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A 0006 시험 장소의 표준 상태

KS C IEC 60050-845 국제 전기 기술 용어 - 제845장: 조명

KS C IEC 60529 외곽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드)

KS C IEC 60598-1 등기구－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C IEC 60598-2-3 등기구-제2-3부: 가로등 기구-개별 요구 사항

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성능 요구 사항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안전 요구 사항

KS C IEC 61347-1 램프 구동장치 - 제1부: 일반 및 안전 요구 사항

KS C IEC 61347-2-13 램프 구동장치－제2－13부 : LED 모듈용 DC/AC 전원 전자 구동장치에 대한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1547 조명 기기-전자파 내성

KS C IEC 62031 일반 조명용 LED 모듈－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2384 LED 모듈용 DC/AC 전원 제어 장치－성능 요구 사항

KS C CISPR 15 전기 자기적합성(EMC)-조명기기, 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해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

KS C ISO 10055 기계적 진동 - 선박용 기기와 기계부품에 대한 진동시험 요구사항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 시험)

3 용어와 정의

3.1 LED집어등

집어 목적의 등기구를 말하며 LED 램프와 램프 구동장치로 구성된다.

3.2 LED 램프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 컨버터는 제외

3.3 램프 구동장치

전원과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램프 사이에서 공급 전압을 변화하거나, 램프가 시방에 적합하게 전류를 제한하거나, 시동 전압과 예열 전류를 공급하거나, 냉시동을 방지하거나, 역률을 조절하거나 전자파 장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구성 부품

3.4 내장형 램프 구동장치

박스, 외함 또는 이와 유사한 등기구의 내부에 설치되도록 설계된 램프 구동장치

3.5 독립형 램프 구동장치

별도 외함 없이 등기구 외부에 분리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 램프 구동장치

3.6 일체형 램프 구동장치

조명 장치와 분리할 수 없으며, 분리하여 별도로 시험할 수 없는 램프 구동장치

3.7 배광 측정기

광원, 조명기구, 매체 또는 표면 등의 방향성 및 분포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측광기 (고니오포토미터, gonio-phtometer)

3.8 정격 전력

램프를 규정된 상태에서 동작시켰을 때 제조자 또는 책임 있는 판매자에 의해 명시된 램프의 전력값

3.9 전 광속

단위 입체각 4π sr의 광원의 누적 광속

3.10 정격 광속

램프를 규정된 상태 하에서 동작시켰을 때 제조자 또는 책임 있는 구매자에 의해 명시된 램프의 초기 광속값

3.11 초기 광속

관련 램프 규격에 규정된 짧은 에이징 후의 램프 광속

3.12 광효율

전 광속을 광원의 소비 전력으로 나눈 값

3.13 광속 유지율

램프를 규정 조건하에서 동작시켰을 때 초기 광속에 대한 수명 중 주어진 시간에서의 광속의 비

비고 : 이 비는 일반적으로 %로 표현된다.

4 안전 요구 사항

4.1 표시 사항

4.1.1 제품 표시 사항

다음의 정보는 LED 집어등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료하고 견고하게 표시 하여야 한다.

a)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b) 모델번호 또는 형식

c) 정격 표시 : 정격전압(V), 정격전류(A), 정격전력(W)

d) 제조년월

4.1.2 포장 표시 사항

제조자는 다음 사항을 추가로 사용 설명서 또는 최소 단위 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a) 광효율(lm/W)

b) IP등급

c) 승인번호

d) A/S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e) 안전에 필요한 경우 연결부의 위치와 목적의 표시. 선을 연결하는 경우 배선도를 명확하게 표시 해야 한다.

4.1.3 사용 상의 주의 사항

LED 집어등을 사용할 때 특별하게 주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포장 박스 또는 사용 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놓아야 한다.

4.1.4 표시의 내구성 및 식별의 용이성

표시는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적합성 여부는 물에 적신 천 조각으로 15 초 동안 가볍게 문질러 보고 말린 다음 석유 알코올에 적신 천 조각으로 15초 동안 더 문질러 보고 판정한다. 시험 후 표시된 글자는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표시 라벨은 쉽게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

비 고 사용된 석유 알코올은 부피 상으로 최대 0.1%의 향료를 포함하고 큐리-부탄올 29%, 65℃ 정도의 초기 끓는점, 69℃ 정도의 건조 온도 및 약 0.68 g/cm3 의 밀도를 가진 핵산 용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4.1.5 LED집어등의 종류

LED 집어등은 표 1 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 LED 집어등의 종류

구 분	종 류
램프 구동장치	내장형
	일체형
	독립형
냉각방식	자연냉각
	강제냉각

4.2 구조

KS C IEC 60598-1 의 4 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리덮개일 경우 잘게 부서지는 유리로 만들거나, 촘촘한 그물형 보호장치를 사용하거나, 유리 파편이 튀지 않도록 필름을 입힌 유리로 구성하여야 한다.

4.3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

KS C IEC 60598-1의 10.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4 누설 전류

KS C IEC 60598-1 의 10.3 누설전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5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KS C IEC 60598-1의 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6 접지

KS C IEC 60598-1 의 7 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7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KS C IEC 60598-1 의 13 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8 방진성 및 방수성

KS C IEC 60598-1 의 9 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IP67 이상이어야 한다.

비고 선교(기관실)에 위치하는 램프 구동장치는 제외함.

4.9 진동

LED 집어등에 대하여 1g 의 힘에서 33 ㎐의 주파수로 x, y, z 축별로 각각 2 시간씩 시험한다. 시험 후 외관이나 내부 부품의 느슨함 또는 다른 물리적 손상이 없어야 하며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4.10 고장 상태 조건

KS C IEC 60598-1 의 12 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11 전기자기 장해 및 내성(EMC & EMI)

4.11.1 전기자기 장해

KS C CISPR 1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4.11.2 전기자기 내성

KS C 61547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고 전기자기 장해 및 내성 인증을 받은 전원공급장치를 사용할 경우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4.12 염수 분무

KS D 9502(7.2.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고 선교(기관실)에 위치하는 램프 구동장치는 제외한다.

5 성능 요구 사항

성능 시험 방법은 부속서 A 를 따르며 전원공급장치를 통하여 제조자가 표시한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측정한다.

5.1 점등 특성

LED 집어등은 -10 ℃ 와 40 ℃ 에서 미 점등 상태로 1 시간 방치 후 정격 전압의 92 % 와 106 %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5.2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입력 전력, 입력 전류, 역률 및 전압 변동 시험은 그림 1 과 같이 접속하고 정격 주파수의 입력전압을 가하여 측정한다.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값은 표시값의 ± 10 % 범위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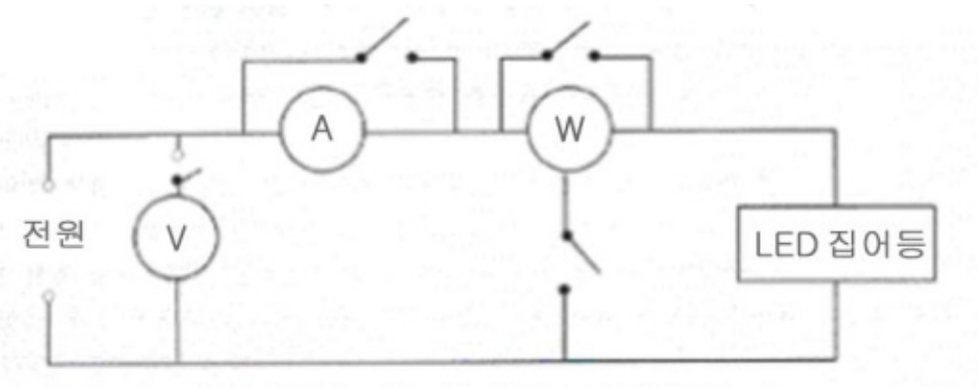

그림 1 - 입력 전력, 전류 및 역률 측정 회로

5.3 전압 변동 시험

초기 광속 측정 시 정격 전압의 90 %와 110 %를 인가할 때 각각의 입력 전력은 정격 전압을 인가했을 때의 입력 전력 표시값의 ± 10 % 이내 이어야 한다.

5.4 광학적 성능

5.4.1 초기 특성

LED 집어등에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100 시간 동안 에이징한 후 배광 측정기를 사용하여 광속을 측정한다.

적합성은 표 2 를 만족하여야 한다. (단, 재 인증 시에는 5.4.3항의 성능기준을 초기 특성에 포함하여 확인한다)

표 2 - LED 집어등 광학적 특성 기준

항 목	성능 기준
초기 광속	정격 광속의 95% 이상
등기구효율	70lm/W 이상일 것

5.4.2 광속 측정 일반사항

모든 시험은 주위온도 (25 ± 1) ℃ 와 최대 65 %의 상대 습도 환경을 갖는 통풍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한다.

LED 집어등은 정상적인 동작 상태에서 100 시간 동안 에이징 되어야 한다.

시험 전압은 안정화 기간 동안 ± 0.5 %내에서 안정되어야 하며, 이 허용차는 측정 순간에 ± 0.2 % 이하이어야 한다. 수명 시험동안의 전압 변동률은 0.2 %이하 이어야 한다. 공급전압의 전체 고조파 성분은 3 %를 초과할 수 없다.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 %로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 합으로 정의된다. 모든 시험은 정격 주파수에서 실시해야 한다. 시험 전압은 정격 전압이어야 한다.

사용된 전기적 광학적 장치는 시험의 요구 사항들과 같은 보증된 정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5.4.3 LED 집어등의 파장분포

LED 집어등의 파장분포는 제조자가 제시한 모델별 분광분포와 색좌표에 따르며, 성능 기준은 최초 인증모델에 대해

1) 제1 및 제2 피크파장의 반치폭의 ± 10%이내이어야 하고 분광분포 데이터를 첨부한다.

2) 해당 인증모델 x,y 색좌표의 ± 10% 이내이어야 한다.

5.5 내구성

본 시험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5.5.1 개폐시험

LED 집어등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후 30 초 ON, 30 초 OFF 를 1 주기로 연속 점등을 10,000 회 반복한다.

5.5.2 광속유지율

광속유지율 시험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택 1 하여 시험한다. 조건 1 은 온도 60℃, 습도 90%에서 정격 전압으로 500 시간 동작시킬 때 정상으로 점등되어야 하고 시험 전후에 전 광속의 변화율이 ± 30 % 이내이어야 한다. 조건 2 는 상온 25±3℃에서 2,000 시간 동작시킬 때 정상으로 점등되어야 하고 시험 전후에 전 광속의 변화율이 ±10%이내이어야 한다.

시험전압은 ± 3 %의 허용오차를 갖는 정격 전압이어야 한다.

5.5.3 내구성 적합성

위의 모든 시험 후 실내 상온으로 2 시간 방치 후 3 분 ON, 2 분 OFF 의 주기로 15 분간 정상 점등하여야 하고, 시험 동안 구조물의 균열이나 파손이 없고, 부점등된 광원(LED Device or Module)이 없어야 한다.

부표 1 — 검사 항목별 시료 수량

구분		항목		시료1	시료2	시료3	시료4	비고
안전	1	표시 사항		○				
	2	구 조		○				
	3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		○				
	4	누설 전류		○				
	5	충전부에 대한 감전 보호		○				
	6	접 지		○				
	7	내열,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				
	8	방진성 및 방수성		○				
	9	진 동		○				
	10	고장 상태 조건		○				
	11	전기자기 장애 및 내성			○			
	12	염수 분무						별도시료
성능	1	점등 특성				○		
	2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		
	3	전압 변동 시험				○		
	4	광학적 성능				○		
	5	내구성	개폐시험				○	
			광속유지율				○	
			적합성				○	

비고1) 시험 항목의 특성상 추가 시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비고2) 염수 분무 시험은 KS D 9502에 규정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제3호】

어선용 LED 작업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요구사항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DC 50V이하에서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어선용 LED 작업등기구(이하 'LED 등기구'라 한다)의 안전 및 성능에 대하여 규정한다.

KS C 7651(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2(컨버터 외장형 LED 램프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3(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등 관련 KS 또는 이와 동등한 표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추가로 KS C IEC 60092-306(선박용 전기설비 제 306부 -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요건에 대해서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KS C IEC 60092-306(선박용 전기설비 제 306부 -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을 따라야 한다.

비고 1 LED 등기구에 사용되는 전원공급장치는 선박용 축전지를 사용한다.

비고 2 이 표준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KS C IEC 60092-305 기기-축전지를 기본으로 적용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며,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0079 방폭 전기기계기구 -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092-101 선박용 전기설비 - 제101부 : 정의 및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092-305, 선박용 전기설비 -제305부 : 기기-축전지

KS C IEC 60092-306:2007 선박용 전기설비 - 제306부 : 기기 - 조명 및 부속품

KS C IEC 60529 외곽의 방진 보호 및 방수 보호 등급(IP 코드)

KS C IEC 60598-1, 등기구 - 제1부 : 일반 요구사항 및 시험

KS V 0818 선박용 전기 기구 환경 시험 통칙

KS X IEC 60945 해상 항해 및 무선 통신 기기와 시스템 - 일반 요구 사항

KS V 8011, 선박용 전기 기구의 방수 검사 통칙

GC-01-K 제조법 및 형식승인 등에 관한 기준

RA-06-K 선급 및 강선 규칙 - 제6편 전기설비 및 제어시스템 – 제1장 10절 조명기구, 전열기구 및 배선기구

SPS-KLEDA 1004 LED 집어등기구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3 용어와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와 정의는 다음 KS C IEC 60092 및 KS C 7651, KS C 7652 및 KS C 7653에 따른다.

3.1 LED (Light Emitting Diode)

전류인가 시 광학적 복사를 방출하기 위하여 p-n 접합을 구현한 반도체 소자

3.2 LED 모듈 (LED Module)

하나 이상의 LED와 전기적, 전자적 구성요소를 포함하여 광원으로 사용되는 장치로서 컨버터는 제외

3.3 선박용 LED 조명 (Ship's LED Luminaries)

선박에서 조명을 목적으로 제조된 LED조명 기기

3.4 선외기 (Outboard motor)

소형 보트 등의 선미에 붙여지는 탈착 가능한 기관

3.5 선내기 (Inboard motor)

보트의 선체 안에 설치하여 사용되는 기관으로서 선외기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출력이 크며, 탈착이 불가능한 기관

3.6 선박용 기기 (Ship's equipment)

선박의 작동 기구의 정상적인 구성 요소인 기계와 전자 장치

3.7 초기 특성 (Initial values)

100 시간 에이징 후의 광학적 특성 및 전기적 특성

3.8 광속유지율 (Lumen maintenance)

LED 램프의 수명 이내의 주어진 시간에서 측정된 광속을 초기광속으로 나눈 값으로 백분율로 표시.

4 종류와 형식

LED 등기구의 종류는 구성에 따라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 LED 등기구의 종류

항 목	종 류
DC-12V	소형선박 (선외기 용)
DC-24V	중대형선박 (선내기 용)

5 안전요구사항

5.1 표시사항

제품 표시 및 포장 표시는 KS C 7651, KS C 7652 및 KS C 765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선박용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 표시 및 포장 표시에 연결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예 : 일반조명용 LED조명기구 표기+ship 등)

5.2 구조

KS C IEC 60598-1의 4 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유리덮개일 경우 잘게 부서지는 유리로 만들거나, 촘촘한 그물형 보호장치를 사용하거나, 유리 파편이 튀지 않도록 필름을 입힌 유리로 구성하여야 한다.

5.3 절연저항시험

극성이 다른 도전부 사이 및 각 도전부와 접지 사이의 절연저항을 다음과 같은 시험전압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다.

표 2 — LED 등기구의 절연저항 시험전압

정격전압 : Un(V)	시험전압(V)
Un ≦ 65	DC 100

절연저항측정은 일련의 환경시험(염수분무시험) 전, 후에 실시한다. 시험전압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회로(전자부품 등을 사용)를 포함하는 시험품에 대하여는 해당 회로를 분리한 다음 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절연저항값(MΩ)은 다음에서 규정한 값보다 커야 한다.

표 3 — LED 등기구의 절연저항 특성 기준

정격전압 : Un(V)	시험전	시험후
Un ≦ 65	10 MΩ	1 MΩ

5.4 누설전류

KS C IEC 60598-1의 10.3 누설전류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5.5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KS C IEC 60598-1의 8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5.6 내열성,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KS C IEC 60598-1의 13 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5.7 진동시험

LED등기구에 대하여 1 g의 힘에서 33 ㎐의 주파수로 x, y, z축별로 각각 2시간씩 시험한다. 시험 후 외관이나 내부 부품의 느슨함 또는 다른 물리적 손상이 있으면 안되고 동작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8 염수분무시험

KS D 950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이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고) 선교(기관실)에 위치하는 램프 구동장치는 제외한다.

5.9 방수시험

KS C IEC 60598-1의 9 절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IP67 이상이어야 한다.

6 성능요구사항

성능 시험 방법은 부속서 A를 따르며 전원공급장치를 통하여 제조자가 표시한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측정한다.

6.1 점등특성

LED 등기구는 -10 ℃ 와 40 ℃ 에서 미 점등 상태로 1시간 방치 후 정격 전압의 92 %와 106 %에서 점등되어야 한다.

6.2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입력 전력, 입력 전류 및 전압 변동 시험은 정격 주파수의 입력전압을 가하여 측정한다.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값은 표시값의 ± 10 % 범위이어야 한다.

6.3 전원변동시험

인가된 전원이 다음과 같이 변동할 때 시험품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시험 후 시험품에 이상이 없으며, 지정된 작동을 하여야 한다.

25% 감전압 시 불밝기 흐려짐은 허용함

표 4 — DC전원의 경우 전원변동시험 조건

축전지에 의한 DC(%)	충전하는 동안 축전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25 ~ +30
	충전하는 동안 축전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	-20 ~ +20

6.4 광학적 성능

6.4.1 초기특성

LED등기구에 정격 주파수의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100시간 동안 에이징한 후 배광 측정기를 사용하여 광속을 측정한다. 적합성은 표 5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5 — LED 등기구의 광학적 특성 기준

항 목	성능 기준
초기 광속	정격 광속의 95% 이상
등기구효율	80 lm/W 이상일 것
연색성	75 이상

6.4.2 성능측정 일반사항

모든 시험은 주위온도 (25 ± 1)℃ 와 최대 65 %의 상대 습도 환경을 갖는 통풍이 없는 장소에서 해야 한다.

LED 등기구는 정상적인 동작 상태에서 100시간 동안 에이징 되어야 한다.

시험 전압은 안정화 기간 동안 ±0.5%내에서 안정되어야 하며, 이 허용차는 측정 순간에 ±0.2% 이하이어야 한다. 수명 시험동안의 전압 변동률은 0.2%이하 이어야 한다. 공급 전압의 전체 고조파 성분은 3%를 초과할 수 없다. 고조파 성분은 기본파를 100%로 사용해 각 고조파 성분의 r.m.s합으로 정의된다. 모든 시험은 정격 주파수에서 실시해야 한다. 시험 전압은 정격 전압이어야 한다.

사용된 전기적 광학적 장치는 시험의 요구 사항들과 같은 보증된 정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6.4.3 광속 유지율

주위온도는 15℃ ~ 40℃ 범위 내에 유지되어야 한다. 무풍상태에서 LED등기구가 심한 진동이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험전압은 ± 3 %의 허용오차를 갖는 정격 전압이어야 한다.

6.5 내구성

본 시험은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6.5.1 점멸수명시험

LED등기구에 정격전압을 인가한 후 30초 ON, 30초 OFF를 1주기로 연속 점등을 20,000회 반복한다.

6.5.2 광속유지율

광속유지율 시험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택1하여 시험한다. 조건1은 온도 60℃, 습도 90%에서 정격 전압으로 500시간 동작시킬 때 정상으로 점등되어야 하고 시험 전후에 전 광속의 변화율이 ± 30 % 이내이어야 한다. 조건 2는 상온(25±3)℃에서 2,000시간 동작시킬 때 정상으로 점등되어야 하고 시험 전후에 전 광속의 변화율이 ±10%이내이어야 한다.

6.5.3 적합성 평가

위의 모든 시험 후 실내 상온으로 2시간 방치 후 3분 ON, 2분 OFF의 주기로 15분간 정상 점등하여야 하고, 시험 동안 구조물의 균열이나 파손이 없고, 미 점등된 광원(LED Device or Module)이 없어야 한다.

부표 1 — 검사 항목별 시료 수량

구분		항목		시료1	시료2	시료3	비고
안전	1	표시 사항		○			
	2	구 조		○			
	3	절연 저항 시험		○			
	4	누설 전류		○			
	5	충전부에 대한 감전 보호		○			
	6	내열, 내화성 및 내트래킹성		○			
	7	진동 시험		○			
	8	염수분무시험					별도시료
	9	방수방진시험		○			
성능	1	점등 특성			○		
	2	입력 전력 및 입력 전류			○		
	3	전압 변동 시험			○		
	4	광학적 성능			○		
	5	내구성	점멸수명시험			○	
			광속유지율			○	
			적합성			○	

비고1) 시험 항목의 특성상 추가 시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추가할 수 있다.

비고2) 염수 분무 시험은 KS D 9502에 규정된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김 제품의 CODEX 규격화 연구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 장 윤분도 사무관 류성봉 주무관 정윤석	044-200-5610 044-200-5618 044-200-561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우리나라 김 제품의 산업 발전 및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국제규격개발 단계과정을 통해 김 제품 지역규격 개발을 추진함.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21조(전통식품의 국제규격화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은 전통식품의 품질향상과 국제교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규격화를 추진하고 국제식량농업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식품 규격제정 및 정보제공 등 국제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 CODEX 지역규격 채택	▪ CODEX 분석법(수분 및 산가) 유효성 검증 대응 완료	4단계 심의 상정·승인	세계 최초 해조류(김) CODEX 지역규격 마련	분석법 유효성 검증 및 마른김 표준위생관리지침 마련 연구	익년 3월	▪ CODEX 표준개발 단계절차에 따른 작업 수행상황 및 실적 (분석법 유효성 검증관련 분과위 대응)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20	120	120	120
- 국 비	120	120	120	120
- 지방비				
- 자부담	-	-	-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또는 전통식품에 대하여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규격 개발 참여 경험과 지식이 있는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경우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김제품의 국제 규격화 추진을 위하여 국제기구인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참석, CODEX 회원국과 규격 설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절차에 따라 국제식품규격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한함

○ (**사업 운영**) 김제품 국제 규격화를 위해 사업자로 선정된 연구기관에서는 CODEX 관련 분과회의 참석 및 대응하고 그 결과를 보고 토록 조치

- 규격 추진 절차상 필요한 경우 품질 및 위생분야 분석항목에 대한 김제품 분석법 마련 등 분석 실시

○ (**보조금 제한 등**)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사업자 선정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김 제품의 CODEX 국제규격화 추진을 위한 인건비, 자료조사비, 회의참석을 위한 국외여비 등 한국식품연구원 사업수행 계획서상 사용 용도에 한함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형 태 : 민간자본보조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및 한도 : 국고보조 100%, 120백만원

○ 사업의무량 : ‘19년 김제품 CODEX 국제규격화 추진 계획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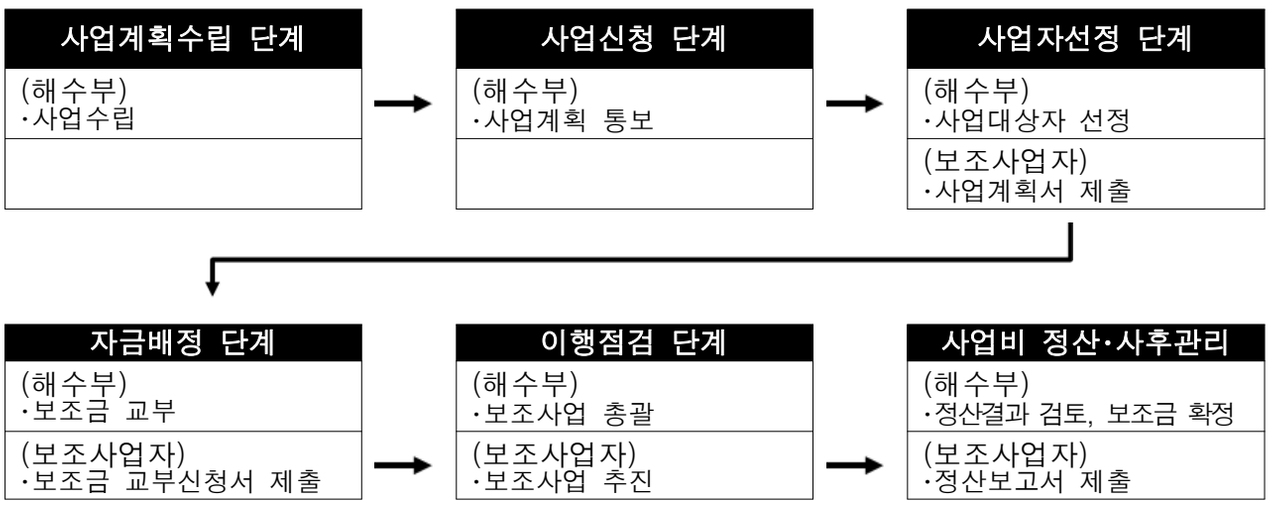

1. 사업계획 수립단계

해양수산부

○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 가내시 통보('18.9월)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통보('18.12월)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 예산편성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세부사업계획 시달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선정 주체 : 해양수산부(어촌양식정책과)

○ 사업자선정 : 세부사업계획에 따른 적격 사업자를 지정

보조사업자

○【공통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후 【공통 제4호서식】「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통해 보조금 지급 결정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 보조금 신청

- 보조사업자는【공통 제3호서식】「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

○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보조사업자

○ 김 제품의 CODEX 국제규격 추진을 위한 .CODEX 분과위 등 참석 또는 국내 관련업계와의 토론회 등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사전보고 후 추진

○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추진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기타사항》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예산 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기타 사업관련 개선사항 등
-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 보조금 확정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심사 후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추진상황 분기별 실적보고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 및 납부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21 내수면자원조성

①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팀 장 안치국 사무관 박승희	044-200-5630 044-200-5680 044-200-563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댐·호에 인공산란장 시설 등의 설치로 수산생물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의 원활한 번식을 유도하여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도모

2.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공정률(%)	100	100	100	100	100	사업종료후	목표공정률 대비 달성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500**	**500**	**500**	**500**
- 국 비	400	400	400	400
- 지방비	100	100	100	100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관내 댐·호 등에 인공산란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해당되는 자

○ 사업운영

- 댐·호소에 서식하는 수산생물에게 적합한 인공산란장을 설치 및 관리

3. 지원대상

○ 내수면 수산생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위한 인공산란장 설치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인공산란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설치(반드시 지자체 내수면 연구기관장과 협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공산란장 설치비

○ 인공산란장 설치효과 분석비(총사업비의 10% 이상 의무 책정)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비 80%, 지방비 20%

○ 지원기준 및 한도 : 400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400백만원

○ 기준 및 범위 : 400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 : 지자체

○ 신청절차 : 공문

○ 구비서류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

○ 시·도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별지 제1호서식】「수산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해당 사업 전년도 4월 30일 이전 신청

○ 세부사업계획 보고 후 예산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요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선정 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 사업자선정 : 세부사업계획에 따른 적격 사업자를 선정

○ 사업자 변경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사업자 선정 시 사업계획,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사업장소 및 설치유형 선정방법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시행 전 사업의 효과 증진을 위해 반드시 관할 지자체 내수면 연구소장과 협의하여 사업 적지 및 설치 유형을 선정

- 설치 유형은 댐·호의 경관을 고려하고, 1회 설치로 반영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 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통보	(해수부) ·사업자 공고·선정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전파	(시·도) ·사업신청서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군·구)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시·군·구 → 시·도)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군·구) ·보조사업 추진	(시·군·구) ·정산보고서 제출 (시·군·구 → 시·도)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구)

○ 보조금 신청

- 보조사업자는【공통 제3호서식】「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

○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예산 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기타 사업관련 개선사항 등

-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 보조금 확정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심사 후 보조금 교부 금액 확정

※ 효과분석비 10%이상 편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실적보고서 작성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시·도지사는 보조금이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 및 납부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정한다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기타사항》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의 효과조사를 지자체 내 수면연구소 등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 효과조사기관에서는 인공산란장 효과조사의 방법·시기 등을 정하고 대상품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조사를 수행

- 인공산란장 시설의 구조 및 설치 위치의 적정성
- 설치된 인공산란장 이용 어류의 조사
- 산란장 효과 및 이용 효율
- 당해연도 집중 조사구역 선정 등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인공산란장 효과조사가 종료된 때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2019년 수산사업 계획서(작성서식)

※ 사업시행주체는 동 사업계획서의 서식범위 내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작성할 수 있음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기관, 총사업비(국비,지방비,자담), 보조율, 사업주체 등

2.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내역

○ 지방비 확보 여부 :

○ 자부담 확보 여부 :

※ 지방비 및 자부담 미확보시 향후 확보계획 :

3. 사업 추진계획

4. 사업금액의 산출내역

※ 효과분석비 10%이상 편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산출내역 작성

5.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계획	사업결과	사업효과	고용효과	비 고

6. 사업성과 관리

가. 사업성과 목표 및 지표

○ 성과목표 :

○ 성과지표 :

나. 사업정기 점검 추진

○ 점검 계획

구 분	주요내용
점 검 시 기	
점 검 기 관	
점검내용·방법	

○ 문제점 및 조치사항 :

※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추진사항 점검결과 제출시 함께 보고

7. 기타사항

②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팀 장 안치국 사무관 최상화	044-200-5630 044-200-5680 044-200-56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어도관리 담당자의 업무효율을 개선하고 국가예산의 효율적 집행 유도

○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주기적인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어도 컨텐츠를 개발하여 대국민 서비스 확대

2.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19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접속건수(명)	250,000	3,500	3,700	3,800	236,951	매년 말	국가어도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200	200	200	200
- 국 비	200	200	200	2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2조(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22조(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 365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고 어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해당되는 자

○ 사업 운영

- 국가어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담당자 순회교육, 어도 발전 토론회 개최
- 신뢰성 있는 어도 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 현행화 등

3. 지원대상

○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서버)를 보유한 전문기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유지관리비

○ 시스템 보안관리, DB 업데이트에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 경비

○ 국가어도정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지자체 교육, 홍보자료 작성, 어도 발전 토론회 개최비, 어도사진전 공모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지원기준 및 한도 : 20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200백만원

○ 기준 및 범위 : 시스템 1식당 200백만원 / 정보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기타 부대경비, 일반관리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 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 가내시 통보 : 2018년 9월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 사업자 선정 : 세부 사업계획에 따른 적격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지정

○ 해양수산부와 위탁기관 간 【별지 제2호서식】「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사업 계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

보조사업자

○ 위탁기관 지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계약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에 대한 확정예산 통보('18.12.)

○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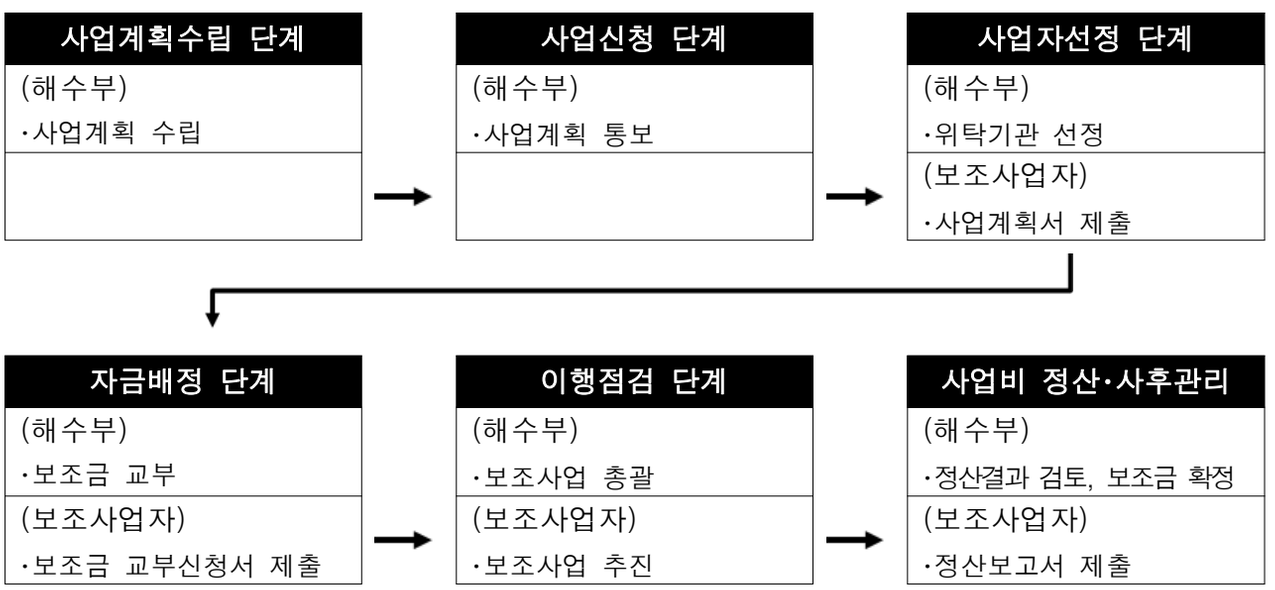

보조사업자

○ 2019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후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통해 보조금 지급 결정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 보조금 신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

○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보조사업자

○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추진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기타사항》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예산 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기타 사업관련 개선사항 등

-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 보조금 확정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심사 후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추진상황 분기별 실적보고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 및 납부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ㅇㅇ년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명, 사업목적, 위탁사업자, 사업비 등

2. ‘18년 사업 성과분석

ㅇ 시스템 활용도 등

3. ‘19년 사업내용

ㅇ

4. 사업비 집행계획

ㅇ

5. 기대효과

ㅇ

6. 사업 참여자

ㅇ

7. 추진일정

ㅇ

【별지 제2호서식】

ㅇㅇ년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 위탁 계약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탁자인 ㅇㅇㅇㅇ(이하 “을”이라 한다)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 위탁자의 사업 범위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도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사업의 범위) ① “을”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에 관한 사항
   가.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설계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체계적인 어도정보 관리를 위하여 초기 데이터(하천코드, 전국실태조사 결과)를 구축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을 위한 컴퓨터와 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방화벽, 전담부서 등 정보시스템 운영의 기반이 되는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및 방호에 관한 사항
   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련 법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4. 데이터베이스 관련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 조사에 관한 사항
   가.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및 보완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나. 자체 실태조사, 유관기관 협조요청 등 데이터베이스의 현행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의 원활한 데이터베이스 이용을 위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갑”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어도 데이터베이스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는 서로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장관이 승인한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 계약기간) ① 위탁 계약기간은 20ㅇㅇ.1.1부터 20ㅇㅇ.12.31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국가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라. “을”이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마. “을”이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제5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을”은 본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 되었을 경

우에 이미 “갑”이 “을”에게 지급한 선급금 및 개산급의 지출 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사업비 지급) ① “갑”은 “을”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급금 또는 개산급으로 “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사업비 등을 청구할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탁사업비 등의 조정) 사업 시행계획과 사업비의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위탁사업비의 집행) ① 데이터베이스 운영을 위한 비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집행한다.
② 세부적인 사항은 “갑”의 사업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9조(위탁사업의 정산 등) ① “을”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 실적 보고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및 사업비로 인해 발생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갑”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최종 운영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배상책임) ①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을”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취득물품의 귀속)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비로 취득하였거나, 사업수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갑”의 소유로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등

에 따른 물품으로 “갑”의 관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은 제외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성과와 본 계약으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열람, 누설, 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탁사업의 감독) ① “갑”은 “을”의 위탁사업 수행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갑”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의 결정) ①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령에따라 해석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써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 위탁자(갑) (인)

사업 수탁자(을) (인)

③ 뱀장어 어도개발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팀 장 안치국 사무관 최상화	044-200-5630 044-200-5680 044-200-56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주요 강 하구에 설치된 하굿둑, 방조제 등 인공구조물에 뱀장어 전용 어도를 개발·설치하여 뱀장어 자원 회복 및 양식 산업 보호

2.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19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뱀장어 어도 설치(개소)	1	-	-	-	1	매년 말	어도 설치 개소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300	400	400	400
- 국 비	300	400	400	4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강 하구에 설치된 하굿둑, 방조제 등 시설물 관리자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실뱀장어의 주요 회유구간에서 실뱀장어 소상을 차단하고 있는 하굿둑, 방조제 등의 시설물 관리자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해당되는 자

○ 사업 운영

- 뱀장어 어도 설치 및 뱀장어 소상시기에 지속적으로 유인수 방류

3. 지원대상

○ 실뱀장어 소상을 차단하고 있는 인공구조물 또는 구조물 인근에 뱀장어 어도를 설치할 경우 뱀장어 자원 회복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뱀장어 어도 설치 공사비(어도, 관측소, 영상감시 장비 등)

○ 어도 이용 효과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비

○ 기본·세부설계비, 관련 인허가비, 기타 부대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비 100%

* 사업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어도신설, 인공산란장, 종묘방류 사업 등과 연계시 우선 선정

○ 지원기준 및 한도 : 1개 설치지점에 300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300백만원

○ 기준 및 범위 : 어도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 공고시기 : 사업시기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 신청절차 :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구비서류 :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일체

보조사업자

○ 사업신청 :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응모

- 사업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선정 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 사업자선정 절차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8조(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 따라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 가내시 통보('18.10.)

○ 사업자에 대한 확정예산 통보('18.12.)

○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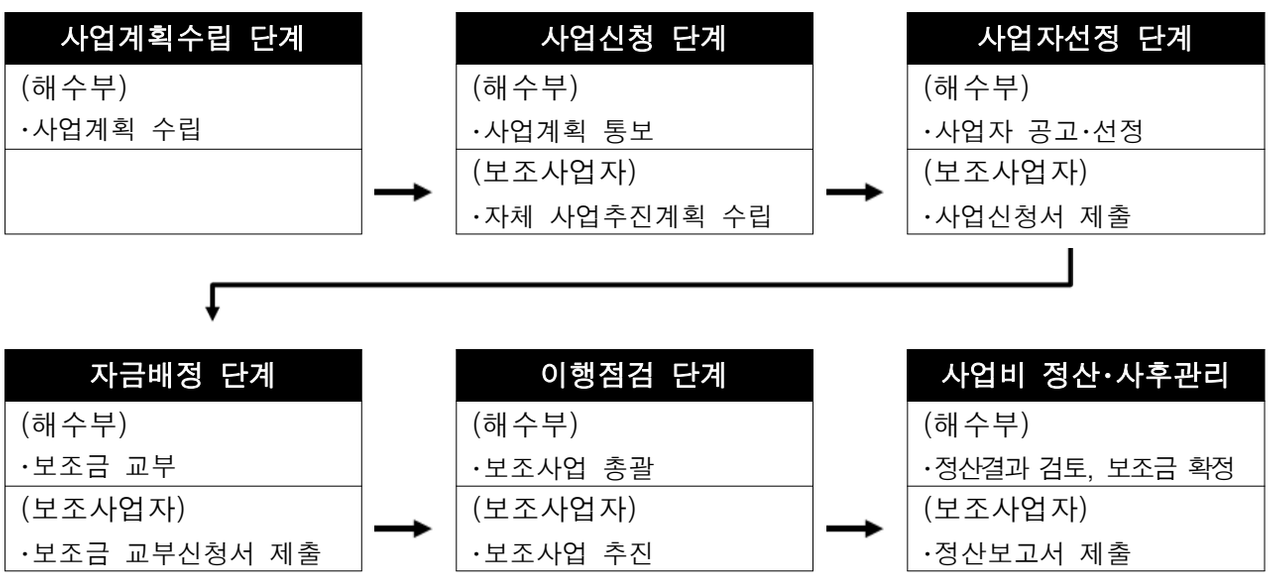

보조사업자

○ 2019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세부사업시행계획 검토·승인 후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통해 보조금 지급 결정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

○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7(조치명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

○ 사후관리 책임자 : 보조사업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종류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비고
	부터	까지		
- 기계, 장비	준공후	5년	-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 - 담보의 제공 등	

○ 보조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실뱀장어 소상시기에는 지속적으로 유인수를 방류하는 등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되도록 뱀장어 어도의 선량한 관리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기타사항》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예산 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기타 사업관련 개선사항 등

-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 보조금 확정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심사 후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추진상황 분기별 실적보고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 및 납부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팀 장 안치국 사무관 최상화	044-200-5630 044-200-5680 044-200-56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뱀장어 전용어도의 자원조성 효과 분석 및 확대 보급을 위한 적정 운영조건 도출

2. 근거법령

○「내수면어업법」제17조(보조 등) 및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19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뱀장어 어도 모니터링	1	-	-	-	-	매년 말	뱀장어 전용어도 운영결과 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150	350	500	650
- 국 비	150	350	500	65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하굿둑, 방조제에 설치된 뱀장어 전용어도 시설 관리자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하굿둑, 방조제 등에 설치된 뱀장어 전용어도 관리자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해당되는 자

○ 사업 운영

- 뱀장어 전용어도 운영을 위한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및 기능 개선
- 뱀장어 전용어도 설치 효과 모니터링(실뱀장어, 검둥뱀장어 소상량 관측)
- 뱀장어 소상특성 파악 등

3. 지원대상

○ 실뱀장어 주요 회유구간에 설치된 뱀장어 전용어도를 관리하는 기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 유인수 방류 펌프, 집어조, 어도 바닥 솔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 뱀장어 전용어도 운전 조건별 소상량 측정비

- 조사인력 인건비, 출장비, 측정장비 구매(또는 임차비) 등에 필요한 비용

○ 뱀장어 전용어도 효과 분석비

- 소상특성 분석에 필요한 전문가 자문비, 회의비 개최 등에 필요한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지원기준 및 한도 : 15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150백만원

○ 기준 및 범위 : 뱀장어 전용어도 개소당 150백만원 / 뱀장어 소상 모니터링에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기타 부대경비, 일반관리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 가내시 통보 : 2018년 1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 사업자 선정 : 세부 사업계획에 따른 적격 기관을 보조사업자로 선정 또는 지정

○ 해양수산부와 보조사업자 간 【별지 제2호서식】「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 과업 계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 지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 사업계획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지침 시달 · 보조금 교부 · 추진사항점검·확인 · 정산결과 검토 및 보조금 확정		·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사업시행 · 사후관리 · 사업집행 및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2019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 실시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후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통해 보조금 지급 결정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 보조금 신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

보조사업자

○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추진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기타사항》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예산 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기타 사업관련 개선사항 등
-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 보조금 확정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심사 후 보조금 교부 금액 확정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추진상황 분기별 실적보고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 및 납부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년 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 사업계획서

1. 사업의 개요

○ 사업명, 사업목적, 위탁사업자, 사업비 등

2. ‘19년 사업내용

○

○

3. 사업비 집행계획

○

○

4. 사업 추진체계

○

○

5. 기대효과

○

○

6. 추진일정

○

○

【별지 제2호서식】

○○년 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 과업 계약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 과업(이하 “과업”이라 한다)에 관하여「내수면어업법」제17조(보조 등) 및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을 위한 보조사업자의 사업 범위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어도 운영 및 설치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① “을”은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일주기 조사(매일 조사)
   가. 조사내용 : 뱀장어 전용어도 효과 분석 및 소상기간 파악을 위한 총 소상량 측정
   나. 조사기간 : ’19.3.1.～’19.8.31.
2. 대조기 연속조사(15일 간격 조사)
   가. 조사내용 : 최적 운영조건 도출을 위한 조위(潮位)별 소상량 측정
   나. 조사기간 : ’19.3.1.～’19.8.31.(기간 중 대조기에 한하여 측정)
3. 영상관측
   가. 조사내용 : 주야간 뱀장어 소상특성 확인을 영상촬영
   나. 관측기간 : ’19.3.1.～’19.8.31.(세부일정은 사업계획서 참조)

② 제1항의 과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장관이 승인한 과업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1.1부터 20○○.12.31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을”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할 수 있다.

제4조(계약의 해약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국가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쌍방이 계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을 때
4. “을”이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을”이 계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제5조(해약 등에 따른 정산) “을”은 본 계약이 해약 또는 해지 되었을 경우에 이미 “갑”이 “을”에게 지급한 선급금 및 개산급의 지출 증빙서류를 포함한 정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급) ① “갑”은 “을”이 청구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급금 또는 개산급으로 “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을”이 제1항의 보조금 등을 청구할 때에는 “갑”이 요구하는 구비서류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7조(보조금 등의 조정) 시행계획과 보조금의 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집행) ①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집행한다.

② 세부적인 사항은 “갑”의 사업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9조(보조금의 정산 등) ① “을”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서, 실적보고서, 지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 종료 후 집행 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갑”에게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이 종료될 때에는 최종 운영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배상책임) ①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을”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을”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을”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취득물품의 귀속) 과업수행을 위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과업수행 중 취득한 유·무형의 재산은 “갑”의 소유로 한다. 다만,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물품으로 “갑”의 관리가 곤란한 소모성 물품은 제외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을”은 본 계약에 의한 성과와 본 계약으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열람, 누설, 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탁사업의 감독) ① “갑”은 “을”의 위탁사업 수행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전반에 대한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갑”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의 결정) ①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관련 법령에따라 해석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써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 위탁자(갑) (인)

사업 수탁자(을) (인)

⑤ 어도 개보수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팀 장 안치국 사무관 최상화	044-200-5630 044-200-5680 044-200-568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전국에 설치된 5,223여개의 어도 중 설치 후 사후관리 미흡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도를 개보수하여 강·하천의 연계율 향상

○ 수산자원의 이동이 많은 하천을 중심으로 연차적 어도 개보수 사업 추진으로 수산자원 증강 및 내수면어업 활성화 유도

2.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19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어도 개보수(개)	24	24	24	24	24	사업종료 후	개보수 완료 어도 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3,000	6,000	6,000	6,000
- 국 비	1,500	3,000	3,000	3,000
- 지방비	1,500	3,000	3,000	3,000
- 자부담	-	-	-	-

* 개보수 단가(125백만원/개소) : 보 낙차 1.0m, 어도 폭 5.0m, 어도 길이 20m 기준

Ⅱ. '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사업시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위탁시행 : 한국농어촌공사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한국농어촌공사가 지정한 우선 개보수 대상 어도를 보유한 지자체

  * 우선 개보수 대상 어도는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따라 구축된 국가어도정보시스템(http://fishway.go.kr)을 통해 확인 가능

- 지방비(50%) 투입계획(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이 수립된 지자체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해당되는 자

○ 사업 운영

- 기능 불량어도 개보수
- 어도 기능 개선에 따른 수산자원 조성효과 모니터링
- 어도 개보수 예정지 조사 등

3. 지원대상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우선 개보수 대상 어도를 보유한 지자체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지자체

  * 동일 수계에 여러 지자체가 신청한 경우 하천 연계율 또는 소상거리 증가 폭이 큰 어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비는 어도 개보수 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홍보용 안내판 설치비), 모니터링사업비, 투자효과 분석비, 예정지 조사비, 기 설치된 어도 유지관리비 등으로 집행

○ 어도 개보수 효과 조사를 위한 모니터링, 투자효과 분석, 예정지 조사비 등은 총 예산의 10%이내에서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으로 집행(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 어도 모니터링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14년부터 현재까지 개보수 사업이 시행된 지점 중 매년 적정 지점을 선정하여 모니터링 실시

○ 기 설치된 어도의 유지관리비는 총 예산의 5% 이내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집행

< 어도 개보수사업 범위 >

① 비표준 형식 어도를 표준형식으로 개보수
② 손상된 어도 구조물의 개보수
③ 어도 입·출구부 주변 퇴적 또는 세굴된 하상 정비
④ 어도 내부에 유입된 토사, 유목 등 제거
⑤ 주수로(主水路)가 변경되거나 퇴적된 어도의 위치 변경
⑥ 수산생물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어도 입·출구부 연장 및 어도 폭 확장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어도신설, 인공산란장, 종묘방류 사업 등과 연계시 우선 선정

○ 지원기준 및 한도 : 1.25억원/개소,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 관리

* 2019년 24개소 30억원(국비 15억, 지방비 15억)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개소별 단가 및 물량조정 가능(단, 연도별 사업물량 미만 조정은 불가)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125백만원/개소

○ 기준 및 범위 : 보 낙차 1.0m, 어도 폭 5.0m, 어도 길이 20m 기준 / 개보수비, 모니터링비, 유지관리비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 지자체별 어도 개보수사업 수요조사(4월) 및 차기연도 예산편성계획 및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시달(12월)

○ 사업추진 성과 및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사업규모를 적정하게 배정하고 재정여건과 지역별 내수면 어도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시·도(시·군·구)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어도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어도개보수 계획과 지방비 투입계획 등을 반영한 '시·도 어도관리계획' 을 수립

- 계획 수립시 한국농어촌공사에 기술검토 의뢰

○ 어도 개보수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시·도지사는 수산자원 잠재력이 우수한 내수면을 선정하여 사업후보지 선정

○ 시·도는 선정된 사업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분석하고, 정부의 사업시행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사업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 어도 우선 개보수 지점을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매년 제출하고,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에 따라 구축된 국가어도정보시스템(http://fishway.go.kr)에 우선 순위를 등록·갱신

○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어도 개보수 효과 등을 조사하여 지자체에 통보하고 어도 개보수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업무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지방비 투입계획(50%)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요건에 적합한 사업지 등을 검토하여 시·도별 예산 배정 계획 수립

○ 사업지 선정시 우선 순위 및 고려사항

〈관할 내수면에 해역이 없는 지자체〉

① 국가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② 경제성 어종이 분포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③ 어도 개보수 사업이후 어류의 소상 확대 효과가 큰 경우

④ 법정 보호종의 서식처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⑤ 어도 표준형식 준수 여부

〈관할 내수면에 해역이 있는 지자체〉

① 바다로 직접 유입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② 경제성 어종이 분포하는 내수면의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③ 어도 개보수 사업이후 어류의 소상 확대 효과가 큰 경우

④ 법정 보호종의 서식처 보전 및 복원을 위해 어도를 개보수하는 경우

⑤ 어도 표준형식 준수 여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 가내시 통보('18.10.)

○ 사업자에 대한 확정예산 통보('18.12.)

○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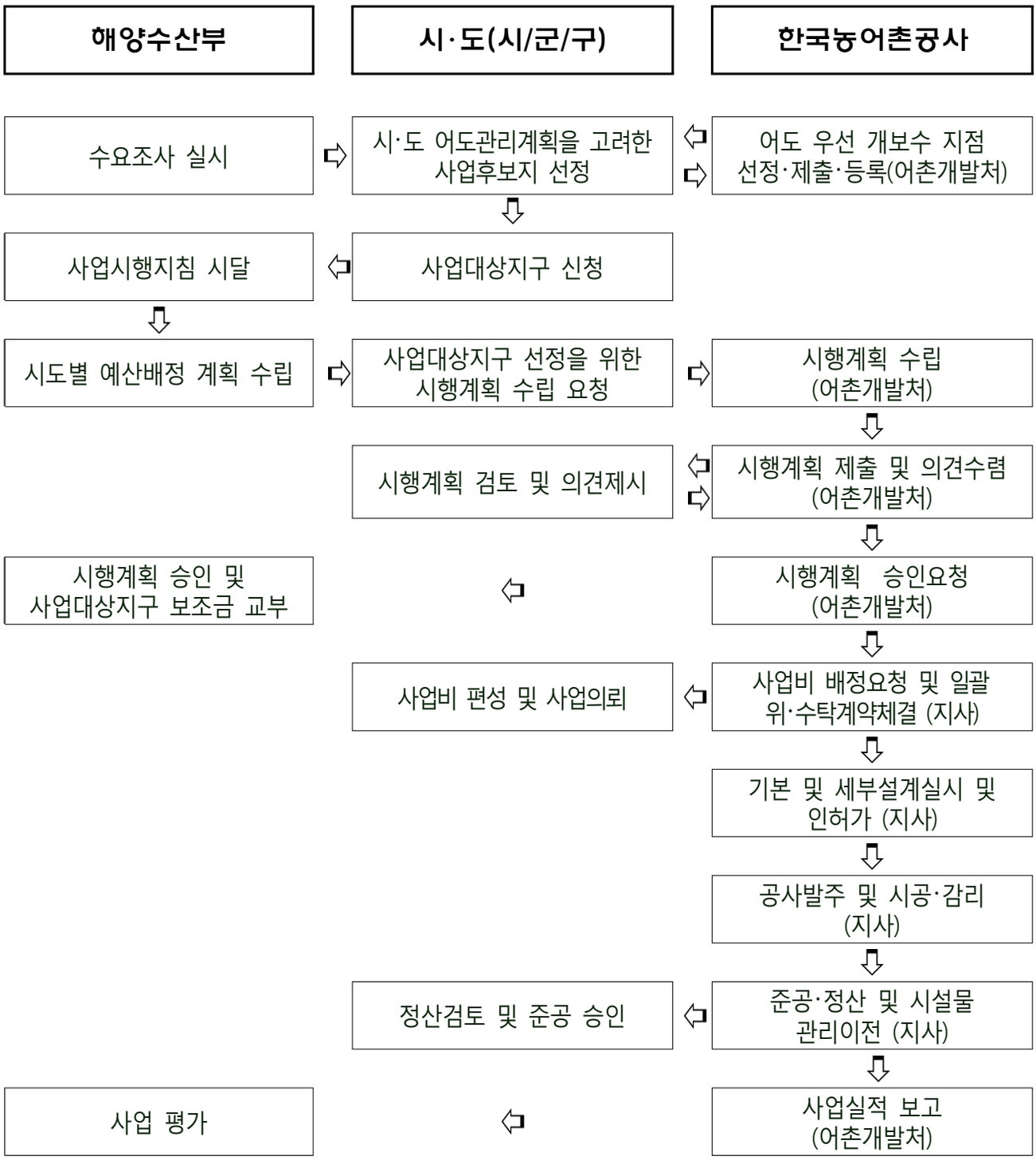

시·도(시·군·구)

○ 2019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선정된 어도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 수립된 사업비(국고 50%)를 지자체 자본보조로 편성하여 시도별 예산배정하고 보조금 교부

○ 당해 연도 책정된 사업비(국비 50%, 지방비 50%)는 지자체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 대행 의뢰토록 조치

○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구)

○ 지자체는 예산이 배정된 지구에 대해 당해 연도에 수립된 사업비(국비 50%, 지방비 50%)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

* 총 예산 5%이내의 기설 어도 유지관리비 집행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한국농어촌공사

○ 당해 연도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업비(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배정요청

○ 사업예산, 개보수 대상지, 어도 형식·규모 등 총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시행

* 기설 어도 유지관리비 집행계획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행계획에 반영

○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검토·승인을 받아 실시

- 단, 우선 개보수 지점 변경의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후 시행계획 변경

○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금 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실시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 완료 후 개보수된 어도를 시설물 관리자에게 이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사업이행 점검 및 평가

○ 실시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파악

○ 사업관리부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시·도(시·군·구)

○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추진

○ 사업추진 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고 받고 이행점검 및 정산 확정

○ 해양수산부로부터 현장점검 참여 및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

한국농어촌공사

○ 해양수산부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며, 점검 후 시정조치사항 협의 수용

○ 사업추진 실적 및 보조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에게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기타사항》

해양수산부

○ 평가는 지자체 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확인평가를 실시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지자체의 이용관리역량, 사업추진 성과, 사업홍보 추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지자체에 시정조치

○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

시·도(시·군·구)

○ 어도 개보수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 완료 후 시설물 관리자에게 이관

- 사업 완료 후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를 부여

○ 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 실적 및 결과, 정산 등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 전년도에 실시된 어도 개보수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을 위해 현장조사가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

○ 사업종료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소요된 경비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자체장에게 정산 보고

○ 어도 개보수사업으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 완료 후 시설물 관리자에게로 관리·이전하며, 사후관리방안에 대해 시설물 관리자와 지자체에 협의 및 자문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팀 장 안치국 사무관 박승희	044-200-5630 044-200-5680 044-200-563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중 FTA 체결 등에 대비하여 내수면 양식어업 시설의 규모화·현대화로 친환경 양식기반을 구축하여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강화

- 내수면 양식수산물의 생산·판매·관광산업이 함께 어우러진 6차산업 모델 개발

2.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공정률(%)	100	100	100	100	100	사업종료후	(집행액/예산액)×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합 계	**2,122**	**4,000**	**3,000**	**3,500**
- 국 비	1,061	2,000	1,500	1,750
- 지방비	1,061	2,000	1,500	1,750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공공기관 등에 위탁 가능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사업자 자격

- 내수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비 조달이 가능한 지자체

○ 사업운영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및 양식단지 임대 또는 분양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해당되는 자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친환경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통한 6차산업화 시설 개발

  * 양식단지 입주자격 : 내수면 친환경 양식(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등)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어업인 또는 창업 희망자(재래식 양식시설은 제외)

< 우선순위 >

① 3년이상 내수면양식 경험이 있는 어업인 또는 전문성이 확보된 자

② 수산계학교 졸업자 또는 전문교육를 이수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자

③ 내수면어업 창업을 희망하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비는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공사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홍보용 안내판 설치비), 용지매수보상비 등으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 70억 원/지구

- 지구별 35억 원 범위 내에서 국고 지원

  * 양식장 시설은 필요시 저리 융자(1%)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 : 지자체

○ 공고시기 : 해당 사업 시행 전년도

○ 신청절차 : 공모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이력서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 선정주체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사업자 변경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수요조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상후보지 결정

- 지역여건, 지방비 투입계획, 수원 확보, 지자체 의지, 주민의견 등을 반영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사업추진위원회(지자체 공무원, 내수면 국·공립 연구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지도기관 등)를 구성하여 사업후보지 선정

○ 시·도는 선정된 사업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양수산부의 세부사업계획 및 일정 등에 따라 신청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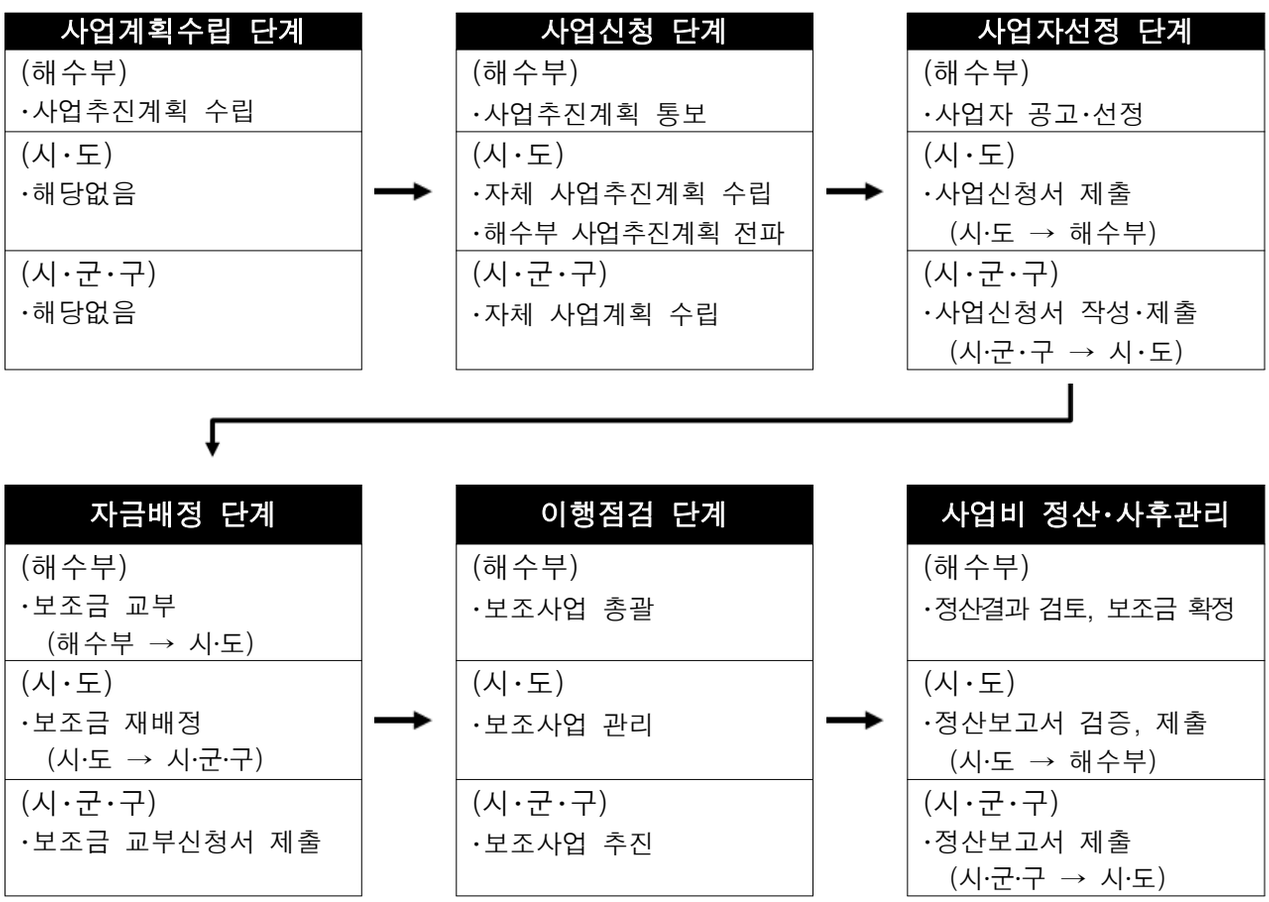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 내수면 양식단지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지구 선정

< 사업지구 선정시 우선순위 고려사항 >

① 지자체별 사업추진계획(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등 2, 3차 산업과 연계 추진시 최우선 선정)

②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여건(취수조건, 접근성 등)

③ 지자체별 유치 의지 및 입주자 희망 전망 등

시·도(시·군·구)

○ 내수면 양식단지 정책목적에 부합한 사업계획서 수립

- 지자체별 특성에 적합한 모델개발(양식장 면적은 부지면적의 50% 이상)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된 사업후보지를 해양수산부 “우선순위” 등을 참조하여 1개소 확정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 신청자 요건 >

① 입주 신청자 자부담 재원 조달 가능성

② 우선순위 대상자 유무 등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제출된 당해연도 내수면 양식단지 세부사업 검토 승인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구)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요청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확보

○ 입주 희망자 1차년도에 모집 공고 후 선정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사항 점검, 보조금 정산 및 확정

○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내수면 양식단지” 사업목표의 적정성 여부, 보조금 집행지연 및 부당집행 여부 등 필요시 점검

○ 지방비 확보 지연 및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시 조기추진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독려

시·도(시·군·구)

○ 반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 해양수산부에서 현장점검 및 협조요청 시 적극 협조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기타사항》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정책 목적 부합성 여부(사업설계 및 예산집행 등), 진척상황,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지자체에 시정 등 조치명령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추진 등이 부진한 지자체에는 페널티 부여

- 차기년도 내수면어업 관련 예산 감액, 신규사업 지원 대상 제외 등

시·도(시·군·구)

○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통하여 내수면어업의 새로운 전기 마련과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여건 조성

- 내수면 양식수산물의 생산시설 집중화 및 가공·판매·관광산업과 연계 추진으로 생산자에게는 고수익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먹거리 제공 기회로 전환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등 회계 관련 보고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⑦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팀 장 안치국 사무관 박승희	044-200-5630 044-200-5680 044-200-5637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며,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중 FTA 체결 등 국제 정세 대비하여 내수면 양식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수면 양식시설의 스마트*화·규모화 사업 추진

* 스마트양식시스템이란 민간양식장 용수처리시설 등에 정보통신기술(ICT)이 결합 또는 산업화 기술개발·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스템을 접목한 시설임이어야 함(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 참조)

※ 스마트 양식의 단계별 구분(최소 1단계 이상, 수처리방식 필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개념	원격감시 + 원격제어	복합환경제어 + 자동제어	양식장 로봇자동화 + 자율제어	디지털트윈 기반 양식 생산 관리 + 자율경영
	IoT 기반 양식장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양식장 자동제어 시스템	AI 기반 양식장 자율제어 시스템	디지털 트윈 기반 자율경영 시스템
의사결정	사람	사람+컴퓨터	컴퓨터	컴퓨터
예시	 무선 네트워크 기반 양식장 수조 감시 시스템('16.12)	 복합 환경 자동제어시스템	 차세대 딸기 수확 및 선별포장 로봇시스템 (일본)	 디지털트윈 기반 양식생산 자율관리 및 경영지원시스템

★ 수처리방식 : 바이오플락, 순환여과식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3조(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및 제25조(친환경수산업 등의 촉진)

○ 「수산업법」 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및 제86조(보조 등)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친환경농어업 기술 등의 개발 및 보급)

○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9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및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내수면 스마트 양식장 사업 집행률(%)	100					‘20.1.	(집행액/연간예산)×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합 계	**5,000**	**10,000**	**10,000**	**5,000**
국 비	2,500	5,000	5,000	2,500
지 방 비	1,500	3,000	3,000	1,500
자 부 담	1,000	2,000	2,000	1,000

* 총 3개소 집행계획은 1차(‘19~’20), 2차(‘20~’21), 3차(‘21~’22) 이며 지방비와 자부담은 예산액, 사업규모,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재원 매칭비율(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50% : 30% : 2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필수조건) 내수면 어종일 것, 스마트 기술(수처리, ICT제어 등)적용, 양식수 확보 상태(근거자료 첨부), 지방비 투자계획(방침문서), 부지는 사업비에 미포함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사업자 자격

- 지방비 예산이 편성중이거나 완료된 지자체
- 내수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내수면양식단지를 조성중이거나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중인 지자체

○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해당되는 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제3항을 위반한 자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거짓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모사업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 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 사업운영

-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 양식 관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
- 내수면 스마트양식 기술을 활용시 제고되는 **부가가치에 대한 연구 진행**
- 주변 가공·유통 시설과의 **클러스트화 추진 및 주변 관광 상품 발굴**

< 민간보조사업자 선정 가이드 라인 >

해수부는 보조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추진 전년도에 선정하고 선정된 **지자체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

○ **(사업자격)**「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장(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증빙 확인)

○ **(부지확보)** 시설사업부지가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었거나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이상의 지상권을 사전에 확보할 것(증빙 확인)

○ **(자부담확보)**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확보할 것(증빙 확인)

3. 지원대상

○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및 부대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식관련 연구시설, 양식 및 종묘생산시설 등을 건립(증·개축포함)하기 위한 실시설계, 시설설비 및 건축 공사비 등

○ 토지·부지·건물매입비, 운영자금, 임차 및 종묘구입으로는 사용 금지

○ 부대시설(사무실, 관리사 및 화장실 등)은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비 5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20%**

○ 사업자의 자격박탈 :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참고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 100억원(최대 국비50억원) / 개소당

○ 기준 및 범위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7. 사업주관 및 위탁시행

○ 사업주관(집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지방자치단체장(보조사업자의 협의必)은 사업의 추진여건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산양식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시행 가능**

*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명시된 기관이며 총사업비의 9% 이내에서 위탁수수료 지급이 가능(지방자치단체장과 보조사업자가 협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같은조 제3호의「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는 전자조달사용의 수요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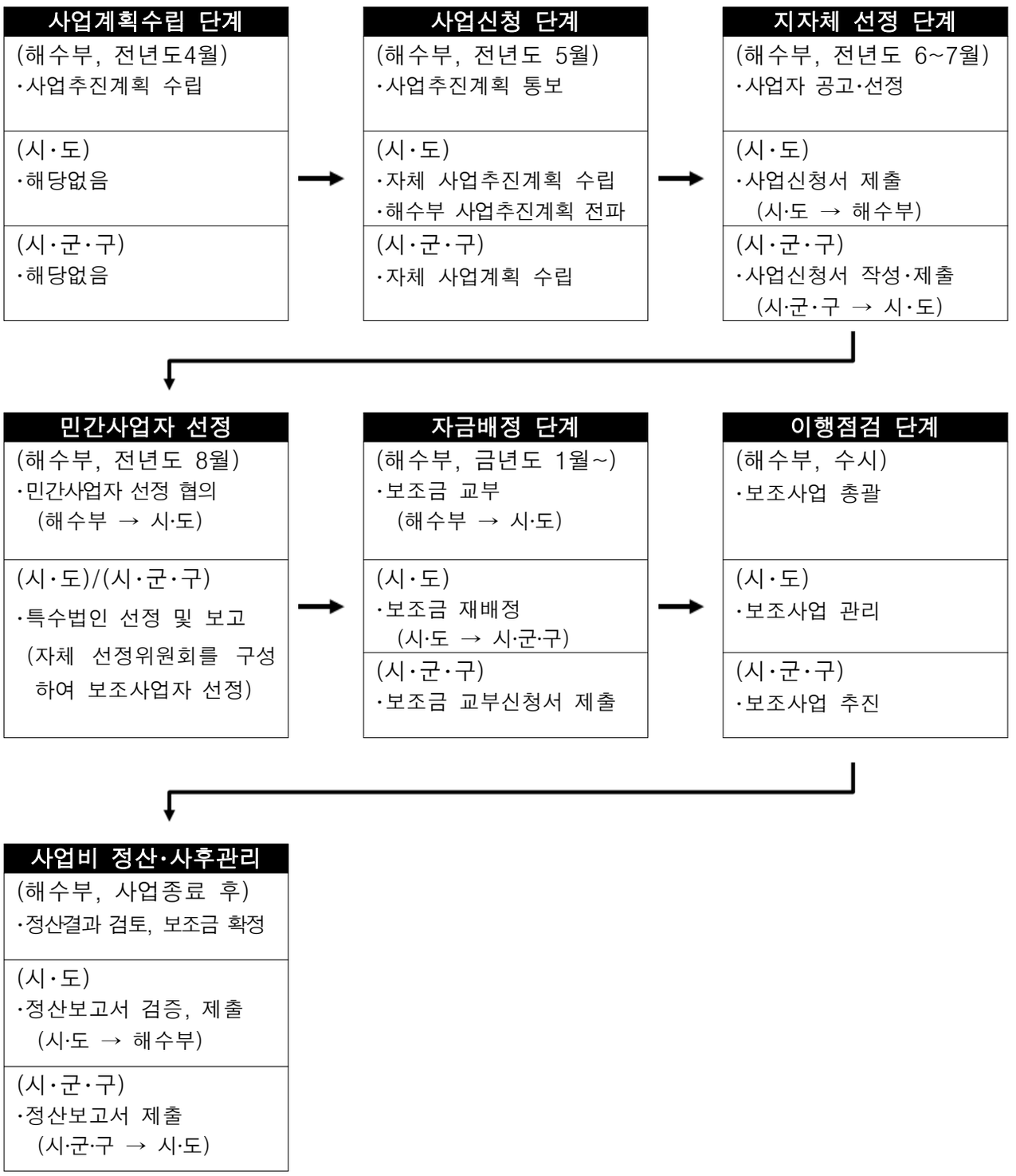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2019년도 사업계획 수립(전년도 4월)·통보(전년도 5월)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 세부사업계획 및 지자체에 대한 확정 내시 통보(전년도 12월)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재정투입 계획, 지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 통보(전년도 5월)

○ 수요조사, 공모계획 시달(전년도 6월) 및 사업대상지역 선정(전년도 7월)

○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 마련(연중)

시·도(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구별 수요조사 등을 통해 종합 검토한 후 대상후보지 결정

- 지역여건, 지방비 투입계획, 수원 확보, 지자체 의지 등을 반영하여야 함
- **자부담과 부지가 확보된 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요건을 충족

○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의 투자효과 제고를 위해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함

○ 시·도는 선정된 사업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양수산부의 세부사업계획 및 일정 등에 따라 신청

3. 사업자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선정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사업지자체 선정

시·도(시·군·구)

○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정책방향에 부합한 사업계획서 수립

- 지자체별 특성에 적합한 모델개발(양식장 면적은 부지면적의 80% 이상)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된 사업후보지를 해양수산부 “우선순위” 등을 참조하여 1개소 확정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 지자체는 자체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2020년도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지자체 선정 모집 공고(시·도)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절차 참조

5.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구)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요청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확보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사항 점검, 보조금 정산 및 확정

○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사업목표의 적정성 여부, 보조금 집행지연 및 부당집행 여부 등 필요시 점검

○ 지방비 확보 지연 및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시 조기추진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독려

시·도(시·군·구)

○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사업추진 반기별 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 >**(서식1)**

재 산 명	사후관리	처 분 제 한 기 준
기계 장비 시설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장 보조사업 사후 관리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금지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서식2)**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토록하여 부기등기 표기 확인 必

《제 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기 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정책 목적 부합성 여부(사업설계 및 예산집행 등), 진척상황,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지자체에 시정 등 조치명령

○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추진 등이 부진한 지자체에는 페널티 부여

- 차기년도 내수면어업 관련 예산 감액, 신규사업 지원 대상 제외 등

시·도(시·군·구)

○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단지 조성을 통하여 내수면어업의 새로운 전기 마련과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여건 조성

- 가공·판매·관광산업과 연계 추진으로 생산자에게는 고수익을,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먹거리 제공 기회로 전환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등 회계 관련 보고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서식1】

중요재산 현황

중앙관서명					
세부사업명					
재 산 명					
유 형					
목적(용도)					
주소	시·도 구분				
	상세주소				
면적(㎡)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원)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현재가액(원)					
보조금유형					
취득일자					
처분제한기간(일자)					
소유자구분					

【서식2】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제54조 제2항 관련)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팀 장 안치국 사무관 박승희	044-200-5630 044-200-5680 044-200-563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업용수 저장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대규모 유휴저수지를 내수면 수산자원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

2.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8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년	15년	16년	17년		
유휴저수지 자원화 추진 공정률(%)	100	-	100	100	100	사업종료후	(집행액/예산액)×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580**	**3,420**	**280**	**3,000**
- 국 비	1,290	1,710	140	1,500
- 지방비	1,290	1,710	140	1,500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수면관리자에게 위탁하여 시행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사업자 자격

- 갈수기 때 최저 저수율이 50% 이상인 대규모 저수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 우선순위 >

① 대규모 유휴저수지 중 갈수기 때 최저 저수율이 50%이상인 저수지를 확보하고 지방비(공기관 대행사업비) 부담 능력이 있는 지자체

② 지방비 투자를 확대하여 판매·유통·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자체

③ 지자체에서 사업 시행 후 인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어업계 등에 관리권을 위탁하거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자체 운영·관리 가능한 지자체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해당되는 자

○ 사업운영

-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어업계 등 단체를 통해 내수면 수산물 판매·유통·관광 등 6차 산업화

3. 지원대상

○ 농업용저수지를 활용한 내수면 수산자원증대 및 소득 기반시설 설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류서식 및 산란 환경 조성시설

○ 수산종묘 방류·육성·관리(효과조사 포함)

○ 어족자원 및 자원화시설 이용·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어로어업 등을 위한 다기능부잔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비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

○ 지원기준 및 한도 : 총 사업비 3,140백만 원/지구

- 지구별 1,570백만 원 범위 내에서 국고 지원
- 기본실시설계(0.7억), 생태환경 조성 · 특화품종 방류(15억)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총 사업비 3,140백만 원/지구 이하

○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 3,140백만 원/지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 : 지자체

○ 공고시기 : 해당 사업 전년도

○ 신청절차 : 공모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이력서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 선정주체

○ 지원 금액의 적정성 판단

○ 사업자 변경

○ 사업자 선정결과 통지 등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도)

○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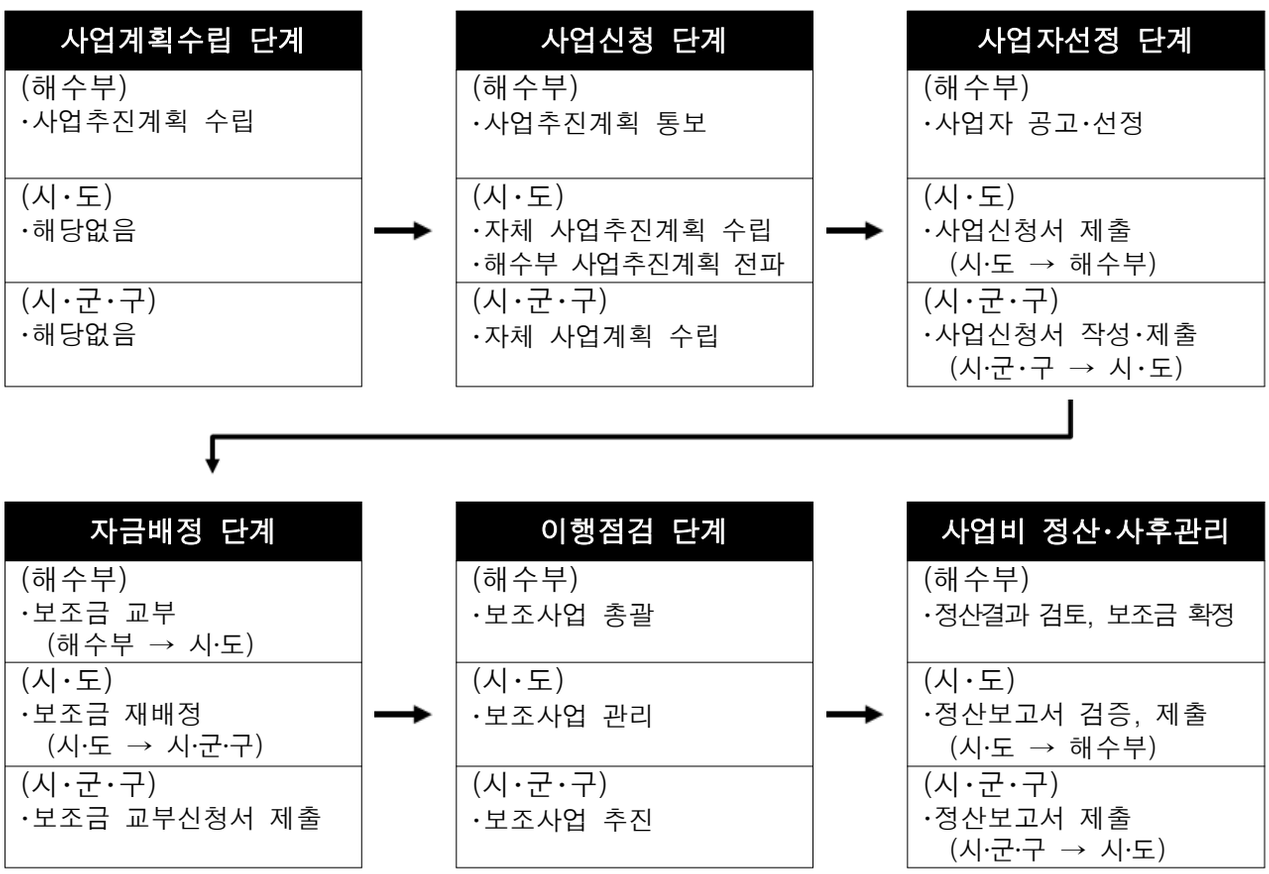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로부터 제출된 당해 연도 세부사업계획 검토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 당해 연도 책정된 사업비(국고 50%, 지방비 50%)는 지자체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수면관리자에 대행 의뢰토록 조치

○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구)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요청

○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확보

○ 사업완료 후 어촌계 등 위탁관리자 선정 및 활용, 저수지 사용을 위한 사전 협의(저수지 목적외사용 등)

○ 국고 및 지방비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수면관리자에 위탁시행

수면관리자

○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해 당해 연도 예산계획에 따른 사업비 교부 요청

○ 수면관리자는 위수탁 협약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지자체에 이관

- 예산계획 및 설계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자체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시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사항 점검, 보조금 정산 및 확정

○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업목표의 적정성 여부, 보조금 집행지연 및 부당 집행 여부 등 필요시 점검

○ 지방비 확보 지연 및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추진 지연 시 조기추진을 위한 대책방안 마련 독려

시·도(시·군·구)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확인

○ 해양수산부에서 현장점검 및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

수면관리자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로부터 현장점검 요청 시 적극 협조하며, 시정조치 필요시 협의하여 수용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기타사항》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정책 목적 부합성 여부(사업설계 및 예산집행 등), 진척상황,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지자체에 시정 등 조치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추진 등이 부진한 지자체에는 페널티 부여

- 차기년도 내수면어업 등 관련 예산 감액, 신규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등

시·도(시·군·구)

○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을 통하여 내수면어업의 새로운 전기 마련과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등으로 어업인 자생력 확보 여건 조성

- 다른 내수면 자원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생산·가공·판매·관광산업 등 6차 산업화 기반 구축

○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 등 회계 관련 보고는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수면관리자

○ 매년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결과 등을 지자체에 보고

○ 자원화사업으로 시행된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하자보수 및 기술자문 협조

○ 수면관리자는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전체 지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여 필요 시 해양수산부에 보고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⑨ 내수면단체 활성화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팀 장 안치국 사무관 박승희	044-200-5630 044-200-5680 044-200-563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차원의 지원활동 사업자

2.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 증가율	5.0	신규	6.4	4.8	-	매년 말	(당해년도 생산량 - 전년도 생산량/ 전년도 생산량)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100	100	100	100
- 국 비	100	100	100	1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

○ 시행기관 :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내수면 주요 품종별 생산자 협회의 대표단체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에 해당되는 자

○ 사업 운영

-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내수면 어업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공유, 교육, 홍보 등을 통한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

3. 지원대상

○ 내수면 주요 품종별 생산자 협회의 대표단체인 (사)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내수면단체 활성화를 통한 어업인 경쟁력 강화

- 양식기술 개발 정보교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문교육, 우수어가 선발, 해외시장 개척, 사업 운영·관리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지원기준 및 한도 : 100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100백만원

○ 기준 및 범위 : 양식기술 개발 정보교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전문교육, 우수어가 선발, 해외시장 개척, 사업 운영·관리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 사업자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 가내시 통보 : 2018년 9월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 선정주체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 세부사업계획 시달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 제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확정예산 통보('18.12.)

○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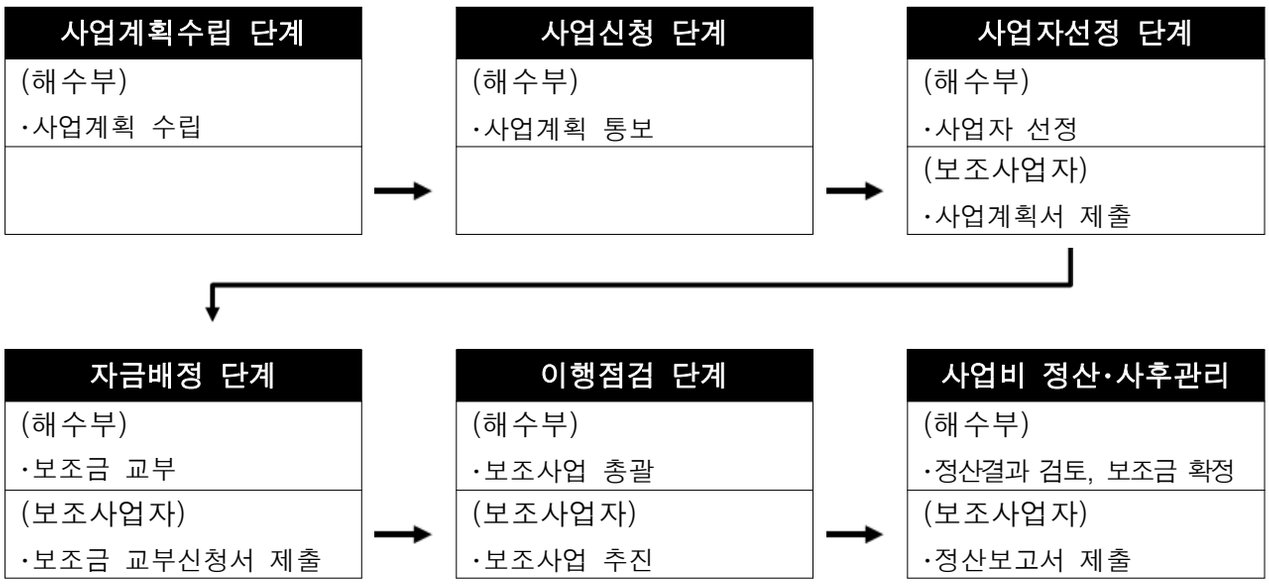

보조사업자

○ 2019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 내수면단체 활성화 사업 시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후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를 통해 보조금 지급 결정
- 보조금은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보조금 교부 전 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 보조금 신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5조

- 집행잔액, 보조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수익금을 반납

* 보조사업자의 정산방법, 정산보고서 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중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

○ 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보조사업자

○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추진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징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4항

○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른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1. 3개월 지연 : 10%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 20%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 50%내 보조금 삭감

《기타사항》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비 추진실적, 예산 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기타 사업관련 개선사항 등

-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 보조금 확정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심사 후 보조금 교부금액 확정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추진상황 분기별 실적보고

○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이 발생한 경우 세입고지서 발급 요청 및 납부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⑩ 내수면유통판매센터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정 도 현 주무관 최 수 경	044-200-5440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내수면 수산물의 투명한 유통체계 미흡으로 수입수산물과 혼재되거나 국산으로 둔갑·판매 방지를 위해 국내산 내수면 수산물에 대한 차별화 유도

2. 근거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 해수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 해수부장관은 수산물 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 개선에 대한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한다.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 해수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등 보조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 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어업회사법인 민물고기 유통판매(주))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한국 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어업회사법인 민물고기 유통판매(주))

*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

○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건립을 위해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에서 설립한 어업회사법인 민물고기 유통판매(주)

○ 사용용도

- 지원대상 건물의 유통기능이 건물 면적의 50%이상 차지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내수면 수산물 유통판매센터 건립에 필요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 지원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은 예산으로 신청불가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형　　태 : 민간자본보조

○ 사 업 량 : 수도권 일원 내수면 유통판매센터 부지매입 및 건립

○ 지원조건 : 국고 50%, 자부담 50%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총사업기간 2016~2019)

* 사업기간과 예산액은 2019년도 이후 예산 반영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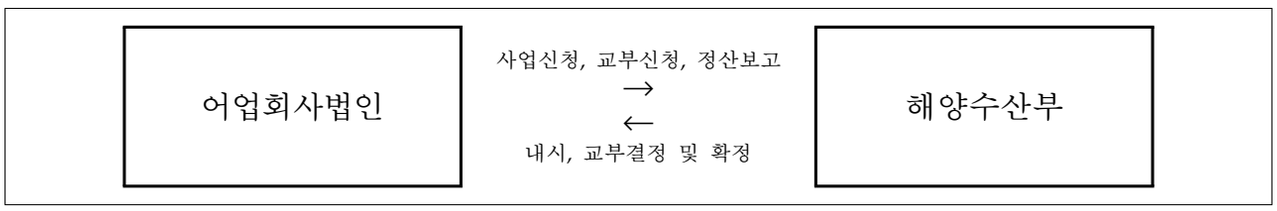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해수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 통보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사업시행자

○ 사업추진계획 자담 확보 방안, 민원발생 여부 및 대책 등 포함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및 해양수산부 제출

- 사업타당성, 적정성, 기본여건 충족여부, 국가계획에 부합여부 등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사업내용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자에 대한 확정예산을 통보

사업시행자

○ 기본설계 결과에 따른 시설투자계획 및 자담 확보방안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선정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 중 사업대상 지역·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진

○ 사업시행자가 중도포기 또는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부지매입 : 기본계획에 따라 부지매입 완료

- 사업자는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시설부지를 수도권 지역에 확보하여야 함

○ 공사착공 : 조달청 입찰계약 및 공사 추진

○ 보조사업 관련 계약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조달청을 통해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시·군의 승인하에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5. 자금배정단계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별지 제2호 서식) 및 국고송금 요청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안 통보

6.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비 집행

사업시행자

○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사업시행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사업시행자

○ 지자체의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 실시

라. 기타사항

사업시행자

○ 수협중앙회는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동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마련

○ 사업시행자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자담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 방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사업시행자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2개월내 보조금을 정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준수

○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이내, 6개월 20%이내, 12개월 50%이내

○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외부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의 시정명령 불이행시에는 보조금 반납 이행(보조금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 명시)

-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및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	

Ⅳ. 2020년도 사업신청

○ ‘19년 사업실적에 따라 검토

22 자율관리어업육성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비 지원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영신 사무관 송병훈	044-200-5530 044-200-55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자원의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토록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체계를 구축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제1항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실행한 어업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자율관리어업 교육 실적(명)	6,000	6,000	6,000	6,000	6,000	매년 12월 말	자율관리어업 교육참여자 수

* 18년 사업 실적은 12월말 집계 예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40**	**140**	**140**	**140**
- 국 비	**140**	**140**	**140**	**14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구성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교육내용>**

- 자율관리어업의 정책 소개, 공동체 참여 절차 안내
- 우수공동체 성공사례 발표 및 토론
- 지도자 리더십 강화 및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 자율관리육성 사업비 사용 및 사후관리 안내 등

○ **<교육방법>**

- 다수 공동체 대표 또는 다수 공동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특정시설(관공서, 수협, 마을회관 등)에서 교육을 실시

  ※ 타 공동체 방문, 시·도 자율관리대회 등 자체행사는 제외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수를 고려하여 각 시·도에 배분

○ 지원범위 : 교육시에는 도서지역(다리 등 육로가 연결되지 않아 배를 이용

해야 하는 지역) 참석자 참석수당(2만원 범위내), 초빙강사 수당 및 여비(교통비에 한함), 식대(다과), 임차료, 교육자료 인쇄비, 교육관련 물품구입비 등 지원

※ 초빙강사 수당의 경우, 최초 1시간에 12만원, 초과 1시간에 8만원 추가하여 총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2. 사업신청 단계

시·도(시·군·구)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관리하고 있는 시·도에서 보조금 교부 요청

- 수산사무소에서는 세부사업내용, 예산내역,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연간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자금배정 단계

시·도(시·군·구) 또는 해양수산부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관리하고 있는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시·군·구) 또는 해양수산부

○ 추진상황보고 :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별지 제2호 서식)

- 보조사업 결과보고 : 사업완료 후 다음 년도 15일 이내(별지 제3호 서석)

○ 점검

- 해양수산부는 매분기 추진상황 보고서를 검토 후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리

《기타사항》

○ 수산사무소별 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1일 일정으로 실시하고, 그 대상은 공동체 평가가 전년도 500점 미만의 평가를 받

은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500점 이상인 공동체의 경우에도 수요에 따라 실시

○ 방식은 수산사무소별 사업관리 담당(자)이 주관하되, 필요시 우수공동체위원장 및 간사 등을 활용하여 추진

○ 선진지견학, 1:1교육, 행사(워크숍 등) 등은 민간단체(한국수산회, 우수공동체)에서 주관하도록 일원화 하되, 민간단체의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 시·도(시·군·구)자율관리어업 담당자 및 공동체 구성원이 교육 목적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경비는 동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시·도는 교육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 행사 참여 등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서식】

○○(시)도 자율관리어업 교육 추진계획서

사무소	분기	대상공동체 (개소)	대상인원 (명)	강 사 (소속)	장 소	소요 사업비	비 고

【별지 제2호서식】

[/4분기]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 추진실적보고

사무소	대상공동체 (개소)	참석인원 (명)	강 사 (소속)	장 소	교육(토론)내용 및 결과	집행액
						강사료, 출장비, 교육비 등

【별지 제3호서식】

[　　] 년 지역단위 확산교육 추진결과보고

사무소	배정액	집행액	집행잔액	교육 내용	교육 횟수	참석 인원	사업효과	비 고
계								

23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① 수산자원 증대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영신 사무관 윤영자	044-200-5530 044-200-55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해역별 특성과 주요 어종을 고려한 연안바다목장,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등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연안 수산자원의 회복·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연안바다목장 조성(개소)	14	19	19	19	19	매년 말	조성지 개소수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개소)	10	-	6	6	8	매년 말	조성지 개소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4,000**	**14,000**	**10,000**	**5,000**
- 국 비	7,000	7,000	5,000	2,500
- 지방비	7,000	7,000	5,000	2,500

※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및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 연안바다목장 조성
- 연안 해역에 수산자원조성 시설물 설치 및 수산종자 방류 등 체계적 조성·관리를 통한 연안 수산자원 증대

○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 해역별 주요 어종에 대한 생태계 기반의 산란·서식장 조성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공급 거점 구축

* 대상 종 : 문어, 주꾸미, 낙지, 동해대게, 말쥐치, 꼼치, 해삼

** 꼼치, 해삼의 경우 '18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고용위기지역에 한정

○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
- 회유성 어종의 생활사를 감안한 수산자원 조성으로 근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력 확보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적지조사, 구조물 설치, 모니터링 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효과조사 등의 모니터링을 위한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15% 수준으로 편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① 연안바다목장 및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지방비 50%

*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의 경우 대상어종 등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

○ 지원한도(기준) : 수산자원증대사업을 신청한 지자체에 대해 자원회복 대상종의 명확성, 지방비 투입 여건,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지로 선정된 경우 국비 지원(동일한 금액의 지방비 매칭)

② 근해 수산자원 증대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지원한도(기준) :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 기본계획 및 적지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지(대상종)로 선정된 경우에 대해 국비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연안바다목장, 산란·서식장)

사업신청 및 사업자선정 단계	사업 시행 및 자금 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해양수산부) ·재정투입계획 등의 세부사업 계획 시달 ·사업자 선정	(해양수산부) ·총괄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해양수산부 → 공단)	(해양수산부) ·예산 집행실적 등 점검	(해양수산부) ·사업평가 및 환류 총괄
(시·도)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	(시·도) ·당해연도 사업비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에 의뢰	(시·도) ·이행점검 협조	(시·도) ·사업 완료되면 관련 시설물 이관받아 사후관리 실시
(공단) ·시도별 사업계획 토대로 총괄적 사업계획 수립	(공단) ·보조금 교부 신청 ·지자체와 사업위탁 협약	(공단) ·사업추진상황(분기별) 및 사업실적보고서(연말) 제출	(공단) ·연 2회 사업평가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 완료되면 관련 시설물 지자체로 관리 이전

사업추진 절차(근해 수산자원)

사업신청 및 사업지선정 단계	사업 시행 및 자금 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해양수산부) ·재정투입계획 등의 세부사업 계획 시달 ·사업지 선정	(해양수산부) ·총괄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 (해양수산부 → 공단)	(해양수산부) ·사업추진, 예산 집행실적 등 점검	(해양수산부) ·사업평가 및 환류 총괄
(시·도) ·사업계획 협의	(시·도) ·해당 없음	(시·도) ·이행점검 등 협조	(시·도) ·사업 완료되면 관련 시설물을 이관 받아 사후관리 실시
(공단) ·사업예정지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사업계획 수립 ·사업 신청	(공단) ·사업시행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신청	(공단) ·사업추진실적분기별 보고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공단) ·연 2회 사업평가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 완료되면 관련 시설물을 지자체로 관리 이전

1.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매년 연안바다목장 조성,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 계획 및 자원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추진계획 시달

○ 매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또는 공단의 사업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대상지(사업자) 선정*

* 연안바다목장 및 산란장·서식장 조성 사업지역으로 기 예산이 확정된 지역은 당연 선정

시·도(지자체)

○ 관리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해당 사업지에 대한 당해연도 사업계획 수립

* 학계, 연구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 / 사업계획 수립· 변경 등 심의

**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및 동해대게 자원회복 사업의 경우에는 지역별 실정에 따라 필요시 구성·운영

○ 수산자원증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신청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 승인 요청

2. 사업시행 및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연안바다목장 조성 등의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국고 50% 또는 100%)를 공단의 민간자본보조로 편성 및 교부 결정 통지

* 국고 100%는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에 한함

○ 당해연도 책정된 지방비(50% 이상)는 지자체에서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으로 대행의뢰하도록 조치 및 관리

*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

시·도(지자체)

○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비(지방비 50%)를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하여 공단에 의뢰 및 업무관리 위탁 협약 체결(별지 제1호서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50% 또는 100%의 국비(민간자본보조)에 대해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 결정 및 정산 등의 제반 절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국비 100%는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에 한함

○ 공단은 지자체와 업무관리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50%의 지방비(공기관 대행 사업비) 배정 요청

○ 공단에서는 자금 배정이 완료되면 확정된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며, 사업완료 후 조성해역을 지자체에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계획 변경(대상해역,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항목 등), 세부사업의 신설 및 폐지, 사업예산 변경 등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관리위원회 심의 등 지자체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에 검토·승인을 받아 실시

*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지자체와 협의 없이 해양수산부에 검토·승인

3. 이행점검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분기별) 및 사업비 정산(연말) 등을 통해 예산집행 및 실적을 보고 받아 점검 및 평가

○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파악

○ 사업관리부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는지 점검하고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 조치

시·도(지자체)

○ 지자체는 필요한 경우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을 공단으로부터 보고 받음

*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해당 없음

○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참여 및 협조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의 경우 지자체는 사업개시 전까지 어업인 협의를 거쳐 대상해역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및 관리·이용규정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기간 내에 관리수면으로 지정·고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해양수산부 사업관리부서로부터 현장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며, 점검 후 시정 조치사항 협의 수용

○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회계연도 및 보조사업이 종료될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4.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단 주관으로 연 2회(중간평가, 최종평가)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조치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상황,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 이용관리역량,

사업추진 성과, 사업홍보 추진상황,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점검결과 사업 지연 및 부당집행 사항 등이 있을 경우 공단에 시정조치

○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여
- 차년도 예산지원 중단 또는 감액, 신규해역에 대한 지원 보류 등

시·도(지자체)

○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공단으로부터 이관 받아 사후관리 실시
- 사업 완료 후 공단과 협의하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를 등을 명시

○ 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 대책 및 실적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시 공단과 협의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연 2회(중간평가, 최종평가)에 걸쳐 사업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평가위원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

○ 공단은 매년 사업 종료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소요된 경비 및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함

○ 공단은 사업완료 후 지자체와의 업무관리 위탁협약에 의거 집행내역 등을 첨부한 정산결과와 사업결과보고서를 본 사업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지자체에 통보
* 근해 수산자원 증대사업은 해당 없음

○ 사업비로 지원된 모든 시설물 및 사업지의 사후관리는 사업완료 후 지자체로 관리 이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신청 수요조사

해양수산부

○ (산란·서식장) 2020년도 정부안을 기준으로 사업에 대한 지자체 수요조사

* 자원회복 대상종의 명확성, 지방비 투입 여건, 지속가능성 등을 검토

○ (근해 수산자원) 2019년도 근해자원조성사업 추진계획(적지조사 등) 결과를 토대로 사업지역 선정

* 대상종의 명확성, 조성기술 수준, 자원 회복 시급성 등을 검토

시·도(지자체)

○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증대 사업에 대한 사업신청요구가 있을 경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 지자체에서 부담해야될 지방비를 국비와 동일한 사업비로 편성 추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지자체에서 의뢰받은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사업계획(안)을 마련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에 보고

○ 2019년 근해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2. 기타

○ 수산자원조성 관련사업(인공어초사업, 수산종자방류사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사업지역 선정과 연계

* 어초어장관리비를 당해연도 인공어초사업비의 15% 이상 및 방류효과조사비를 당해연도 방류사업비의 10% 이상 확보 등 반드시 준수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2019년도 ㅇㅇ사업
업무관리 위·수탁 협약서

2019. .

지방자치단체장 **(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인)**

2019년도 ○○사업 업무관리 위·수탁 협약서

지방자치단체장(이하 “00시(군)”이라 한다)과 업무관리 수탁자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19년도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업무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 시행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탁사무의 범위)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지 조사 및 구조물 시설에 관한 사항
2. 효과 등 모니터링 조사에 관한 사항
3. ◇◇◇에 관한 사항
4. △△△에 관한 사항

제3조(협약기간)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00시(군)”와(과) “공단” 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 “공단”은 제2조 각 호의 사업시행 전 집행일정, 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00시(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업비 지급 등)① “사업비”라 함은 조사·설계비, 구조물 설치비, 모니터링 조사비, 기타 부대비용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② “00시(군)”은 “공단”이 청구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급금 또는 개산급으로 “공단”에

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비 집행 시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근거를 명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및 사업관리) ①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2조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입찰, 협약 등 중요 절차 이행 시 “00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 상 필요 시 “00시(군)”에 입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00시(군)”은 “공단”의 요청 등이 있을 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위원회 개최) “00시(군)”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경우 위원수당 등 필요 경비는 “공단”이 부담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00시(군)”은 “공단”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00시(군)”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관계법령·규정 및 이 협약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자료의 제출 등) ① “공단”은 “00시(군)”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타기관 등에 제출할 시는 “00시(군)”과 사전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사본 1부를 “00시(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부담 및 배상책임) ① 사업수행 중 “공단”의 관리자가 선량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00시(군)”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발생한 손해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한다.

② 사업 수행 중 발생한 “공단”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공단”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공단”의 구성원 및 피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및 재산 등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공단”이 손해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고와 민원 등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공단”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정산) ① “공단”은 사업완료 후 집행내역 등을 첨부한 사업비 정산결과와 사업 결과보고서를 본 사업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00시(군)”에 통보하여야 하며, “00시(군)”의 보완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①항의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는 “00시(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지 등) ① “00시(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재,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00시(군)”의 예산사정, 기타 국가시책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사정으로 “00시(군)”, “공단” 쌍방이 협약을 해약 또는 해지하기로 합의 하였을 때
4. “공단”이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5. “공단”이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때

② “00시(군)”은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의견진술 등 청문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공단”은 협약 해지 시 본 협약과 관련된 각종 증빙서류와 사업비 집행내역서 및 집행 잔액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공단”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정보 등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위탁대행 수수료) “00시(군)”이 “공단”에게 본 사업을 위탁 대행함에 있어 수수료는 본 사업비의 △%로 한다.

제15조(보고의무) “공단”은 “00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추진 사항을 매분기 등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용어해석 및 분쟁해결)

① 본 협약의 용어해석에 관하여 “00시(군)”과 “공단”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00시(군)”과 “공단”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00시(군)”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00시(군)”이 소재한 법원으로 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의 효력은 “00시(군)”과 “공단”이 상호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② 본 협약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00시(군)”과 “공단”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장 **(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 **(인)**

② 바다숲 조성·관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영신 사무관 윤영자	044-200-5530 044-200-55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전국 연안의 갯녹음 발생 해역과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 해역에 대규모 바다숲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연안 생태계 및 수산자원 서식처 복원

○ 바다숲을 이산화탄소의 흡수원으로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국민들의 해양 레저관광에 활용함으로써 어촌의 소득향상에 기여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친환경 농림수산의 촉진 및 탄소흡수원 확충)

3. 성과목표 및 지표

○ 매년 3,000ha 이상의 바다숲을 조성하여 2030년까지 54,000ha 바다숲 조성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바다숲 조성면적(ha)	3,000ha 이상	3,236	3,064	3,043	3,108	매년 말	바다숲 신규조성 면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35,173**	**35,700**	**40,000**	**40,000**
- 국 비	35,173	37,000	40,000	40,000
- 지방비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 사업자격 및 운영,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바다숲 조성·관리하여 연안생태계가 복원 및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사업시행자(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지급

○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수역의 바다숲 조성과 조성관리, 갯녹음 확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천연해조장 보호·보전, 바다숲조성 기술개발 및 바다식목일 행사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100%

○ 지원한도(기준) : 바다숲 적지조사를 거쳐 사업지로 선정된 경우, 기 사업지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해 국비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	사업선정	계획 수립 및 시행
(해양수산부) ·재정투입계획 등의 세부사업계획 시달	(해양수산부) ·바다숲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사업지 선정	(해양수산부)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공단의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세부계획 승인
(시·도) ·시군구에서 추천한 수역 중에서 우선순위 정하여 공단에 추천	(시·도) ·해당없음	(시·도) ·해당없음
(시·군·구)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후보지 목록표에서 사업희망지역을 시·도에 추천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해당없음
(공단) ·시·도 추천목록 및 구비서류 등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공단) ·사업후보지 조사·평가 결과 설명 등	(공단)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세부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보조금 교부 (해양수산부 → 공단)	(해양수산부) ·사업추진, 예산집행 등 점검	(해양수산부) ·사업평가 및 환류 총괄
(시·도) ·해당없음	(시·도) ·이행점검 등 협조	(시·도) ·사업완료지에 대해 사후관리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이행점검 등 협조	(시·군·구) ·사업완료지에 대해 사후관리
(공단)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공단) ·사업추진실적 분기별 보고, 어업인 및 지지체와 유기적인 협조 등	(공단) ·연 2회 사업평가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 완료 후 해당 지자체로 이관 ·지자체로부터 사후관리 위탁

1.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바다숲 조성 대상지가 선정되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바다숲 조성관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 사업 추진계획에는 사업개요, 부문별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바다숲 조성 및 관리, 천연해조장 보호·보전, 기술개발사업, 공감대 형성 등 포함)

* 바다숲 조성관리 사업추진계획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의결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2019년 사업계획서"를 말함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사업추진 현장 상황 점검 및 각종 업무협의회 등을 개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해양수산부의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되면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확정

-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에는 대상수역의 해저지형 및 해양환경, 생태특성 등 기반조사 등을 토대로 조성수역 범위, 시설 면적, 바다숲 조성용 어초 선정 및 배치 계획, 조성방법, 관리방법, 모니터링 및 효과조사 등 사업전반을 포함

- 공단은 매년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해역별로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바다숲 조성 생물의 순기와 생태, 해양환경 등 해역별 특성에 맞게 사업 수행

○ 바다숲 조성용 어초 선정

- 어초 효율성, 안정성, 경제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인공어초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어초 제작기간, 이식해조류 생활사 등을 감안하여 바다숲 조성규모 및 예산범위에 따라 어초를 선정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

- 선정은 해양수산부 훈령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행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세부사업계획은 해역별 특성에 맞는 주요 조성 방법 및 바다숲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수립

- 바다숲 조성 및 관리의 종료 확정을 위한 대상지, 진단·평가 조사, 종료 기준 및 절차 등 관리계획 수립

-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현안 및 재난 발생 시에 체계적 상황전파, 대응 방안 수립 및 피해 대응 등 재난(위기) 관리 체계 구축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매년 바다숲 조성사업 재정투입 계획 및 사업요건 등을 포함한 사업추진계획 시달

○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 성과 및 재정여건과 해역별 해양환경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규모 시달

시·도 및 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공단에서 작성한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후보지 목록표(별지 제1호서식)에서 사업 희망 수역을 선택하여 해역별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추천 목록(별지 제2호서식)과 해당 어촌계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시·도에 추천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추천한 수역 중에 우선 순위를 정하여 공단에 추천

○ 구비서류

-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후보지 추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 확약서 및 어업인 동의서(서명 포함) 1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공단은 사업시행 해역별 사업후보지 조사·평가 결과, 시·도 추천 목록 및 구비서류 등을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단에서 제출한 사업후보지 조사·평가 결과, 각 시·도의 추천 목록 및 구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최적의 조건을 가진 수역을 사업지로 선정

○ 선정 방법

- 해양수산부, 공단,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인 이내로 "바다숲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후보지 조사·평가 결과 및 후보지 추천 목록 및 구비서류 등을 참고하여 선정

○ 선정 우선순위

- 갯녹음 진행해역으로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수역
- 인공어초 등 설치보다 자연암반 활용·개선 등을 통해 바다숲 조성이 가능한 수역
- 어촌계 참여 및 지자체의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등 사업 협조가 적극적인 수역
- 바다숲 조성사업지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바다숲 조성완료지에 대해 사후관리 등이 우수하게 진행되는 지자체가 신청한 해역
- 접근성 및 생태체험 등 친수공간으로서 활용성이 높은 수역
- 전년도에 추천지역 중에서 재선정 가능한 수역
- 수산자원조성 관련사업(인공어초사업, 수산종자방류사업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어초어장관리비를 당해연도 인공어초사업비의 15% 이상 및 방류효과조사비를 당해연도 방류사업비의 10% 이상 확보 등 반드시 준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공단은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하는 "바다숲 선정위원회"에서 사업후보지 조사·평가 결과와 시·도 추천 목록 및 구비서류 등 관련정보 설명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공단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되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개요, 사업수행계획,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정산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공단은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2개월 이내에 당해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목별 및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예산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정산서를 해양수산부 사업담당부서에 제출

○ 사업비의 집행은 예산회계관계법령, 관련규정 및 정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집행

○ 보조금 교부신청, 결정(취소, 변경포함), 확정, 교부조건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

5. 사업 이행 및 점검단계

《총 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지도·점검

○ 해양수산부는 공단이 보고한 사업 종료내용(진단·평가 조사결과 및 위원회 개최 결과)을 검토하여 바다숲 조성사업 완료에 대한 최종 판정 실시(확정)

○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효과의 안정적 유지·확산을 위해 사업 완료지를 해당 지자체 이관

○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안 및 위기(재난)에 대하여 대응체계에 따라 상황파악 및 해결방안을 공단에 지시하거나 필요시 직접 대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공단은 개별 사업수역에 대하여 1년 동안 조성한 후 3년간 관리 실시

* 모니터링을 통해 3년 이내라도 바다숲 조성이 안정화된 경우에는 관리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으며, 추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간 연장 가능(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 공단은 바다숲 조성 및 관리 이후, 진단·평가 과정을 통하여 사업 종료가 확정된 수역의 진단·평가 결과, 이력카드 및 완료보고서 등을 해양수산부에 결과 보고

* 사업 종료 후에도 공단은 바다숲 조성효과의 안정적 유지·확산을 위해 사후관리(모니터링, 조식동물 구제, 해조류 이식 등)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술지원 등 지자체의 사후관리 적극 협조

○ 공단은 바다숲 조성관리사업 수행과정에서 해양수산부, 관할 지자체, 유관기관 및 어업인과 사업설명회, 업무협의회 및 좌담회 등을 개최

시·도 및 시·군·구

○ 바다숲 조성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바다숲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사업추진 단계마다 적극 협조하고 어촌계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 해당 지자체는 사업수행에 따른 각종 사업설명회, 업무협의회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하고 바다숲 관리 사업 적극 지원

○ 바다숲 조성 해조류 및 해초류 종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관할 행정관청은 채취 승인 등에 적극 협조

○ 해당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해양수산부 사업 완료지 이관 조치에 따라, 바다숲 조성효과의 안정적 유지·확산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적극적인 사후관리 실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공단은 바다숲 조성 계획에 따라 해역특성 및 해조류 생활사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바다숲 조성 수행

- 바다숲 조성은 연안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서식처를 회복시키는 사업으로 해조숲, 해초숲 및 산호숲 등을 포함하여 해역특성에 맞게 바다숲을 조성

- 해조숲 조성 방법은 갯녹음 암반 복원(갯닦기, 해조류 종자부착판 설치, 해조류 이·보식 등), 해조류 부착 암반 확장(바다숲 조성용 어초 설치, 자

연석 및 블럭 시설), 해조류 포자 확산단지 조성(수중저연승, 모조주머니 등), 조식동물 밀도제어, 환경 개선 등으로 해역특성에 맞게 대상생물의 재생산 및 확산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행

- 대상 해조류는 다년생(감태, 곰피, 모자반 등) 및 단년생(다시마, 미역, 쇠미역 등) 중 해역특성에 맞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품종을 선정

- 바다숲 조성 해조류 및 해초 종자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민간 계약재배, 자체생산 및 관할 행정관청의 채취 승인 등 세부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사전 준비

- 어초의 제작 설계 및 설치 감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공단은 조성된 바다숲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해조류의 재생산을 통한 원활하고 효과적인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다숲 관리 수행

○ 바다숲 조성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로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항목 : 갯녹음 해소율, 해조류 천이와 생물상 변동, 이식해조류의 생장 및 생존율, 설치 어초의 안정성과 부착생물상 등 조사

○ 조식동물(성게류, 고둥류, 군소류, 등)의 서식밀도를 일정한 수준 이하로 유지하여 조성된 바다숲을 보호하고 확산토록 함

- 특히 바다숲 조성 당해 연도에는 수시로 구제작업을 실시, 해조류 생존율 제고

* 어촌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해당 어촌계와 협조하여 얕은 수심은 해녀, 깊은 수심은 전문 잠수사 및 자율관리어선 등을 활용하여 조식동물 구제)

○ 이식 해조류의 생장 및 생존율이 불량한 경우 해조(초)류 보식

- 다른 해조류에 비해 생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자연재해 등 외부환경에 의해 조성 당시에 비해 생존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해조(초)류 보식

○ 조성된 바다숲의 보식 및 조식동물 먹이 공급용 등 종자은행(seed bank) 역할의 목적으로 해조류 양성장을 운영할 수 있음(연구교습어장으로 지자체 허가)

- 양성장 시설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에 위탁 가능

○ 바다숲 조성해역의 해조류 생장을 저해하는 폐어구 및 폐기물 수거, 처리

○ 자연재해(태풍 등) 발생에 대응한 시설물 유지·보수 등으로 시설 안정성 확보

《점 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바다숲 조성용 어초의 설치, 해조류 이식 및 기타 조성방법 등이 적기에 추진되는지를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시정토록 요구

○ 매분기 사업추진 실적, 성과 및 예산집행실적 등을 점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공단은 사업추진 실적, 성과 및 예산집행실적 등을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제 재》

해양수산부

○ 사업대상자의 불법 행위 및 사업비 부정 집행 적발 시, 관련 사업 중지 및 사업비 환수조치

○ 사업지연 및 성과 미흡한 수역에 대해 시정조치 및 사후관리 미흡지역에 대해 차기년도 사업지 선정 시에 패널티 부여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공단이 적기에 중간 및 최종 평가,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평가에 참여하거나 점검하고 최종 평가 결과를 분석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공단은 연 2회(중간, 최종)에 걸쳐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중간평가(7월)와 최종평가(12월) 실시
- 평가위원은 7명 이상,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

- 평가내용은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수행 실적 및 성과, 예산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중간 및 최종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성과측정》

해양수산부

○ 연도 말을 기준으로 사업계획 대비 성과목표 달성도와 성과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달성 여부 측정

《환 류》

해양수산부

○ 사업지연 및 성과가 미흡한 수역은 원인분석을 통해 바다숲 관리 강화 등 시정조치

○ 평가결과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평가결과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 수정 및 개선방안을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년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목록표

해역	시·도	추천 후보지	면적(ha)	비 고
동해	강원			
	경북			
	울산			
	부산			
서해	인천			
	경기			
	충남			
	전북			
남해	전남			
	경남			
제주	제주			

[별지 제2호서식]

해역별 바다숲 조성사업 후보지 추천 목록

해역	시·군·구	추천 후보지	면적(ha)	순위	비고

년 월 일

신청자 : 시·도지사 (서명)

[별지 제3호서식]

0 0 바다숲 조성 사업 후보지 추천서

《개　　요》

○ 위 치 :

○ 바다숲 수역면적 : 000㎢(00,000ha)

○ 어촌계명 및 어촌계원 수 :

《수역내 어업실태 및 특성》

○ 어업 현황

- 어업인수 :
- 연안어업 :
- 구획어업 :
- 마을어업 :

○ 어업 특성

-
-
-

《수역 특성》

○

○

○

《해 역 도》

《관리수면 지정 등 관리이용 계획》

○ 자율관리공동체 구성

-

-

○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계획 등

-

-

《기대 효과》

○

○

○

○

※ 사업담당 : 000국 000과 000사무관(전화 :)

③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 영 신 사무관 윤 영 자	044-200-5530 044-200-55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연어자원 보호 및 자원 증대를 위한 생태친화적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 연어 회귀율 확대 및 관광산업화 등 부가가치 창출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 연어 자연산란장 기본·실시설계	설계 완료	-	-	-	12월말	연어 자연산란장 대상지에 대한 조성 실시설계 완료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1,400**	**5,200**	**4,900**	**3,800**	**1,400**
- 국 비	700	2,600	2,450	1,900	700
- 지방비	700	2,600	2,450	1,900	700

* 1단계('19～'23년) 167억원 / 2단계('24년～) 30억원

**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강원도(양양군)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강원도 양양군 남대천에 연어자연산란장을 설치 및 관리

○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사업비의 50%를 지방비로 부담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강원도 양양군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마련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립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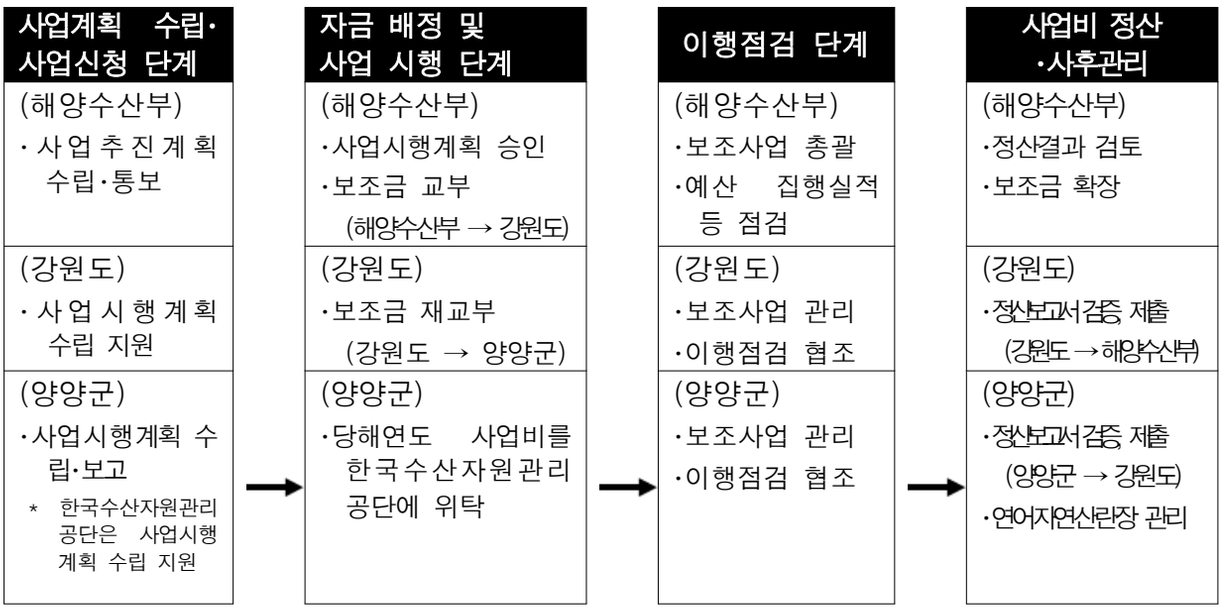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 가내시 통보(매년 9월15일까지)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 통보(다음연도 예산 확정 시)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매년 12월)

강원도(양양군)

○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매년 1월)

* 강원도 및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양양군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수산자원정책과)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강원도(양양군)

○ 세부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수립, 해양수산부에 제출(매년 1월)

3. 자금배정 및 시업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강원도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국고보조금 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강원도(양양군)은 사업종류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를 해양수산부로 제출
- 해양수산부는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 해양수산부는 강원도(양양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양양군)에 예산안 통보

강원도(양양군)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 「수산자원관리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사업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게 위탁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 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 부진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강원도(양양군)

○ 강원도(양양군)은 해양수산부 요청이 있을 시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 등을 해양수산부로 제출 및 보고

○ 해양수산부로의 현장점검 지원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3.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해양수산부 및 강원도(양양군)

○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강원도(양양군)

○ 최종사업 완료 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용자·관리자 등 주체별 역할과 임무 등을 명시

○ 최종사업완료 후에 사후관리 대책 및 실적을 매년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 하며, 보수·보강 및 추가사업 요인 발생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협의 후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2019년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토대로 사업추진지침을 마련 시행

강원도(양양군)

○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의 2차년도 사업 신청을 위한 2020년 예산 지원 요구

○ 강원도(양양군)에서 부담해야 될 지방비를 국비와 동일한 사업비로 편성 추진

2. 기타사항

○ 동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이행

24 낚시산업 선진화

①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 영 신 사무관 김 주 성 주무관 조 문 래	044-200-5530 044-200-5538 044-200-553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낚시터의 오염물질 정화·예방을 통해 낚시로 인한 환경오염을 개선 및 안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낚시 환경 조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정착을 유도

- 낚시터 저질에 퇴적된 납추·쓰레기 및 낚시터 주변 오염물질 수거로 환경·생태계 보전과 낚시인 및 낚시터 인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 깨끗하고 아름다운 낚시터 조성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로 레저인구 유치 확대에 따른 농어촌 소득증대 및 발전 도모

2. 근거법령

ㅇ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 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평균)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	'16	'17(추정)		
낚시터 쓰레기 수거량(톤)	820	830	766	830	다음해 1월	사업 완료 후 쓰레기 수거량 합산
낚시터 안전환경 시설 설치율(%)	100%	-	-	(신규)	다음해 1월	안전환경구축시설 설치공정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200**	**2,200**	**2,200**	**2,200**
- 국 비	660	660	660	660
- 지방비 및 자부담	1,540	1,540	1,540	1,540

※ 사업비 : 2,200백만원(국고 30% : 660백만원, 지방비 70% : 1,540백만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환경정화 사업 : 설계·조사비, 수거·처리비, 기타 사업시행기관이 인정하는 비용

○ 환경오염방지 사업 : 화장실 및 쓰레기 수거함 설치비

* 화장실은 발효식, 소멸식, 포세식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화장실에 한정

○ 안전환경구축 사업 : 데크, 펜스 및 계단 등 안전시설 설치비

* 갯바위 등 비관리 낚시터 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에 한정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제외대상

○ 비관리 낚시터를 사실상 운영, 관리하고 있는 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단체·개인

* 상기 신청된 낚시터 또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직접 선정

○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낚시터. 다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3조의 행사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 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유료낚시터*를 제외한 낚시가 가능한 장소**(비관리 낚시터)

* 유료낚시터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허가·등록된 낚시터(같은 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내수면어업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내수면 낚시터 포함) 및「수산업법」제65조에 따라 지정된 유어장

** 저수지, 강, 호수, 바다, 바닷가 등(사유수면은 제외하고 공공용 수면으로 한정)

- 유료낚시터 중 어촌계 및 내수면 어업계가 직접 운영하는 낚시터. 다만,「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43조의 행사계약 등을 통해 사실상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

○ 사용용도

- 환경정화사업 : 매년 낚시 행위 시 발생하는 폐기물·쓰레기 수거
- 환경오염방지사업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쓰레기수거함·화장실 등 설치
- 안전환경구축사업 : 낚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난간, 펜스, 데크, 계단 등 설치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

- 사업관리주체(주관기관) : 시·도(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 지원규모(총 지원액) : 660백만원

< 분야별 지원예산 배분비율 >

구 분	계	환경 정화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	안전환경 구축사업	비 고
예산배분비율(%)	100	50 ~ 100	0 ~ 50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이내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70%

○ 지원한도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환경정화사업	- 해수면 : 1ha 당 10백만원 한도 - 내수면 : 10ha 당 10백만원 한도	
환경오염방지사업*	- 화장실 : 1개당 20백만원 한도(수세식은 30백만원) - 수거함 : 1개당 70만원 한도	
안전환경구축사업	- 데크, 펜스, 계단 :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환경오염방지사업 시행시 화장실 등은 건축법,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비관리 낚시터에 화장실 또는 쓰레기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시·군·구에서는 사업추진계획에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계획을 포함할 것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사업시행지침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사업시행지침 통보	(해수부) ·해당없음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사업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지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사업자 공고·선정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계획, 사업시행지침 및 시·도별 사업예산 지원 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시·도별 사업예산 배분내역 포함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주관기관) : 시·도(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 사업공고(시·군·구) 시기 : 연 1회(1~2월)

- 인터넷 홈페이지, 공보판 또는 지역 신문에 사업계획 공고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의 예산확보,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신청절차 : 어촌계 등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신청서<서식1>」를 시장·군수·구청장(사업시행기관)에게 제출

  * 사업주체가 시·군·구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생략

○ 사업시행기관은 신청된 낚시터 및 사업시행기관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대상지를 취합하여 「세부추진계획서<서식2>」를 시·도지사(사업주관기관)에게 보고

3.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자 선정주체 : 사업관리주체

○ 시·도지사는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분야별(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안전환경구축사업) 사업대상지를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 시·도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계, 환경단체, 어업인 및 낚시단체(해양수산부 등록 사단법인) 등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

- 선정 기준 :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시·도 실정에 맞게 조정
- 단, 시·도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산관련 위원회가 있을 경우 동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대상지 경쟁이 없을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심의위원회를 생략 가능)
- 사업대상지 선정 절차는 시·도의 관리 하에 관할 시·군·구로 위임 가능
  * 위임받은 시·군·구는 시·도의 사업대상지 선정 절차를 준용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장소별						
			A	B	C	D	…		
사업수행 능 력	① 세부추진계획의 충실성 - 사업 대상지의 적절성	30							
	② 시·군·구의 사업 참여도 - 자체예산 투입여부, 전년도 사업실적	20							
	③ 이해관계자의 협조(의견 수렴 여부)	10							
	④ 사업 대상지 사전조사 여부	10							
사업예산 적 정 성	④ 예산금액 대비 사업 신청면적	15							
	⑤ 예산금액 대비 쓰레기 수거신청량	15							
총 점		100							
순 위									

주 1) 항목별 점수는 수(10)·우(8)·미(6)·양(4)·가(2)로 평가(10점 만점일 경우)
2) 예산금액 대비 사업면적은 면적/예산액, 화장실·수거함·데크·펜스·계단 설치 개소는 설치 개소/ 예산액으로 계산하여 상위 100~80%는 수, 80~60%는 우, 60~40%는 미, 40~20%는 양, 20~0%는 가로 평가
3) 사업 분야별로 상기 평가기준, 내용, 배점 등은 심의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 가능
4) 시·도는 예산 배분액 범위 내에서 사업비율별(환경정화사업 - 50 ~ 100%, 환경오염방지사업·안전환경구축사업 - 0~50%)로 사업대상을 선정

○ 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통지 등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 대상지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서식3>하고, 시·군·구에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19년도 사업시행지침 통보(해양수산부) : ’19.1월

- 시·도별 사업예산 배분내역 포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 지침을 토대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서식2>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통보 : ‘19.1월

○ 시·군·구는 시·도의 사업추진계획서 및 낚시터환경개선사업대상지선정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시·군·구) : ’19.1 ~ 2월

○ 사업 시행

< 조사설계 >

- 사업시행기관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기술사법」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로 신고·등록된 업체를 조사·설계업체로 선정하여 시행(「조사」는 해양수산 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소도 포함 가능)
- 사업지역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업물량, 투입장비·인력,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이 포함된 기본 설계서를 작성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화 대상 장소의 폐기물 등의 조사·설계를 일괄 발주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조사·설계 대상이 여러 장소이거나 수심, 지리적 특성 및 수면여건 등 환경적 요인으로 조사·설계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사·설계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중 퇴적 쓰레기의 육상 식별이 가능한 수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자체 조사·설계 가능

< 환경정화 사업 >

- 사업시행업체 선정은 시·도(혹은 시·군·구)를 통해 공개입찰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조달구매)방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선정
- 사업시행 가능업체
  1)「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폐기물해양수거업 등록업체
  2)「어장관리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
  3) 기타 관련법규에 의하여 동 사업을 할 수 있는 업·단체 중 사업시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단체(수중공사업 면허업체 포함)

* 다만, 사업시행기관이 공개입찰방식으로 선정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관할지역단체(어업계 또는 환경단체 및 새마을 협의회,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이 인정하는 지역 비영리단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하고, 사업시행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로 선정된 자로부터 실시설계에서 제시된 수거물량, 투입선단, 사업기간, 소요비용 등을 기초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승인
- 쓰레기 수거는 관할 자치단체(시·군)의 지도 및 확인하에 실시하고 쓰레기 처리는 해당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에서 계량 확인을 실시하고 적법하게 위탁 처리하도록 함
- 수거·인양된 각종 폐기물은 사업시행업체에서 처리(매각한 납추는 다시 낚시용 추로 사용되거나 납추제조용 원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 낚시터업자가 원인 제공한 폐기물은 수거 대상에서 제외

< 환경오염방지사업 >

- 사업시행업체 선정은 시·도(혹은 시·군·구)를 통해 화장실 및 수거함의 제작, 설치 혹은 판매의 실적이 있는 업체를 공개입찰 또는 조달구매방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선정
  * 다만, 공개입찰 또는 조달구매방식으로 선정이 곤란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이 판단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 가능

< 안전환경구축사업 >

- 사업시행업체 선정은 시·도(혹은 시·군·구)를 통해 데크, 펜스 및 계단의 제작, 설치 혹은 판매의 실적이 있는 업체를 공개입찰 또는 조달구매방식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선정
  * 다만, 공개입찰 또는 조달구매방식으로 선정이 곤란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이 판단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 가능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시·도(시·군·구)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사업자(사업시행업체)는 정산자료를 정리하여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산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매반기말 익월 5일까지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결과보고서」<서식 4>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반기말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반기에는 <서식 5>자료를 추가로 첨부)

5. 이행점검단계

< 사업 관리 >

○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연 2회 이상 사업 집행실태를 점검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 지시

○ 사업관리주체(또는 사업시행기관)는 사업시행업체(또는 사업위탁기관)의 사업시행과정·결과를 수시로 확인, 지도감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 화장실 및 수거함은 사업시행기관이 관리자를 지정하여 최소 5년간 해당 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분기(매분기말 익월) 및 사업종료 후 1회(익년 1분기 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상황을 매분기말 익월 5일까지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결과보고서」<서식 4>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4/4분기에는 <서식 5> 자료를 추가로 첨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추진

8. 기타

○ 사업시행업체(또는 사업위탁기관)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함

Ⅳ.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수요조사 : 시·군·구에서 사업자 수요조사 신청을 통해 조사 실시

○ 사업신청 : 시·군·구 (3월말까지)→ 시·도 (4월말까지)→ 해양수산부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사업시행지침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침서를 준용하여 신청

3. 기타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함

<서식 1>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
청
자</td><td>사업체명</td><td colspan="6"></td></tr>
<tr><td>성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11">신
청
내
용</td><td>사업분야</td><td colspan="6">(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안전환경구축사업 중 선택)</td></tr>
<tr><td>사업예정지
(구체적으로 기재)</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2">사업비</td><td rowspan="2">계</td><td colspan="3">정부지원</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부담</td></tr>
<tr><td>국고계</td><td>보조</td><td>융자</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사업내용별
규모</td><td colspan="4">환경정화사업</td><td colspan="3">환경오염방지 사업</td></tr>
<tr><td>대 상
수 면</td><td>면 적
(ha)</td><td>수 거
대 상</td><td>수거량
(톤)</td><td>설치 시설
(화장실 또는
쓰레기 수거함)</td><td>형태</td><td>수량</td></tr>
<tr><td>내수면
또는
해수면</td><td></td><td>쓰레기
또는 납추</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td><td colspan="4">안전환경구축사업</td><td colspan="3" rowspan="3"></td></tr>
<tr><td colspan="2">설치시설
(데크, 펜스, 계단)</td><td>형태</td><td>수량</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8">"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ㅇㅇ (시장·군수·구청장) 귀하</td></tr>
</table>

<서식 2>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서

1. 사업 목적

□

○

2. 현 황

구분 / 시·군·구	면적(㎢)	해안선길이 (육지부, ㎞)	낚시터 현황			
			비관리 낚시터		우수낚시터 등	
			개소 수	면적	개소 수	면적

3.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규모

사업지별	사업비 (천원)	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안전환경구축사업			사업기간	비고
		구분 (내수면·해수면)	사업면적 (ha)	화장실 (개)	쓰레기수거함 (개)	데크 (개)	펜스 (개)	계단 (개)		
계										

○ 사업 추진체계(도표)

□ 사업 설계 및 시행업체 선정방법

○

□ 작업요령 및 착안사항

○ 작업 전, 중, 후 준비 및 조치사항

□ 안전 및 보안관리 등

○ 안전 및 보안관리, 사업효과 홍보 등

□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갈등조정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관련기관(주민) 협조 상황 등

□ 기타 참고사항

○ 2019년도 시·군·구별 예산 지출계획

○ 2018년도 시·군·구별 사업실적

4. 사업추진일정

5. 환경오염 방지 시설 관리 계획

* 비관리 낚시터에 설치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만 해당

6. 안전환경 구축 시설 관리 계획

<서식 3>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대상지 선정결과 보고서

□ 시·군별 현황

사업분야 / 시·군·구	면적 (㎢)	해안선길이 (육지부, ㎞)	낚시터 현황			
			비관리 낚시터		우수낚시터 등	
			개소 수	면적	개소 수	면적

□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사업분야 / 시군구	환경정화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안전환경구축사업			
	구분	지역	면적	예산	지역	구분	수량	예산	지역	구분	수량	예산
	내수면 또는 해수면	00면00리	ha	백만원	00면00리	화장실 또는 쓰레기 수거함	개	백만원	00면00리	데크, 펜스 또는 계단	개	백만원

<서식 4>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결과 보고서

1. 환경정화사업

□ 내수면

시·군·구	예산액(천원)			정화면적(ha)			사업기간	수거 실적(톤)	비 고 (납추 수거량(톤))
	계획	실적	대비 (%)	계획	실적	대비 (%)			
계									

□ 해수면

시·군·구	예산액(천원)			정화면적(ha)			사업기간	수거 실적(톤)	비 고 (납추 수거량(톤))
	계획	실적	대비 (%)	계획	실적	대비 (%)			
계									

2. 환경오염방지사업

시·군·구	예산액(천원)			화장실 설치			쓰레기수거함 설치			사업기간
	계획	실적	대비 (%)	계획	실적	종류	계획	실적	종류	
계						소멸식 0 소각식 0			철제 0	

3. 안전환경구축사업

시·군·구	예산액(천원)			데크			펜스			계단			사업기간
	계획	실적	대비 (%)	계획	실적	종류	계획	실적	종류	계획	실적	종류	
계						철제 0			철제 0			철제 0	

4. 사업 집행실태 점검 결과

□ 점검 대상 지역 / 일시 / 점검자 / 점검결과 / 조치사항 등

* 사진 자료 등 첨부

5. 기타 참고사항

□ 납추 등 재활용에 따른 수입 등

<서식 5>

낚시터환경개선사업 정산서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 사업수행자 :
○ 사업기간 :

2. 사업비 집행총괄

(단위 : 원)

배정액 (시군구별)	보조금수령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잔액 발생사유
계				

3. 사업별 집행내역(별첨)

○ 환경정화사업 (내수면)

시·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예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적		
			ha	ton	ha	ton	
계							(잔액발생·불용 및 이월·사업실적 부진 사유 등)

○ 환경정화사업 (해수면)

시·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예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적		
			ha	ton	ha	ton	
계							(잔액발생·불용 및 이월·사업실적 부진 사유 등)

○ 환경오염방지사업 (화장실)

시·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예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적	
계					(잔액발생·불용 및 이월·사업실적 부진 사유 등)

○ 환경오염방지사업 (쓰레기수거함)

시·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예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적	
계					(잔액발생·불용 및 이월·사업실적 부진 사유 등)

○ 안전환경구축사업 (데크)

시·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예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적	
계					(잔액발생·불용 및 이월·사업실적 부진 사유 등)

○ 안전환경구축사업 (펜스)

시·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예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적	
계					(잔액발생·불용 및 이월·사업실적 부진 사유 등)

○ 안전환경구축사업 (계단)

시·군	사업비		사업량		비고
	예산	집행액 (이월액)	계획량	실적	
계					(잔액발생·불용 및 이월·사업실적 부진 사유 등)

○ 기타 세부집행내역
○ 수입내역
○ 기타 필요시 별도요구 자료에 의함

② 낚시산업 수출산업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 영 신 사무관 김 주 성 주무관 조 문 래	044-200-5530 044-200-5538 044-200-5539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출부	과 장 박 규 태	02-6300-870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침체된 국내 낚시산업의 재도약 및 부흥을 위하여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전개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와 산업진흥을 통한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 확대

2. 근거법령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육성)

-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3. 추진방향

○ 세계적으로 성장추세에 발맞추어 침체된 낚시용품의 수출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 국산 낚시용품 생산 유망기업에 대한 해외마케팅 기회 지원

4. 성과목표 및 지표

○ 낚시용품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낚시박람회 참가 업체의 바이어 상담 실적을 성과지표로 설정

- (성과목표) ‘19년도 박람회 참가업체의 바이어 상담실적 : 1,500천불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신규)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바이어 상담 실적	1,500	-	-	-	‘19.12월	참가업체 상담 실적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40**	**240**	**240**	**240**
- 국 비	200	200	200	200
- 자 부 담	40	40	40	4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수행기관)

○ 한국수산무역협회(02-6300-8702)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수산분야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사업 운영자

2.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용도

○ 지원대상

- 낚시용품(낚시대, 낚시줄, 낚시바늘, 낚시찌, 낚시봉, 떡밥 등) 업체 및 낚시 관련 산업체(방송, 매거진) 등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낚시용품 업체 등의 부스임차비, 장치비, 비품임차비, 운송통관비, 왕복항공료 등 해외 국제낚시박람회 참가 지원

* 국비지원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 부담

- 박람회 참가 관리, 한국관 설비 및 홍보 등 운영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비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

4. 지원형태

○ 지원형태 : 국고보조 80%(민간경상보조), 자부담 20%

○ 지원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규모(총 지원액) : 200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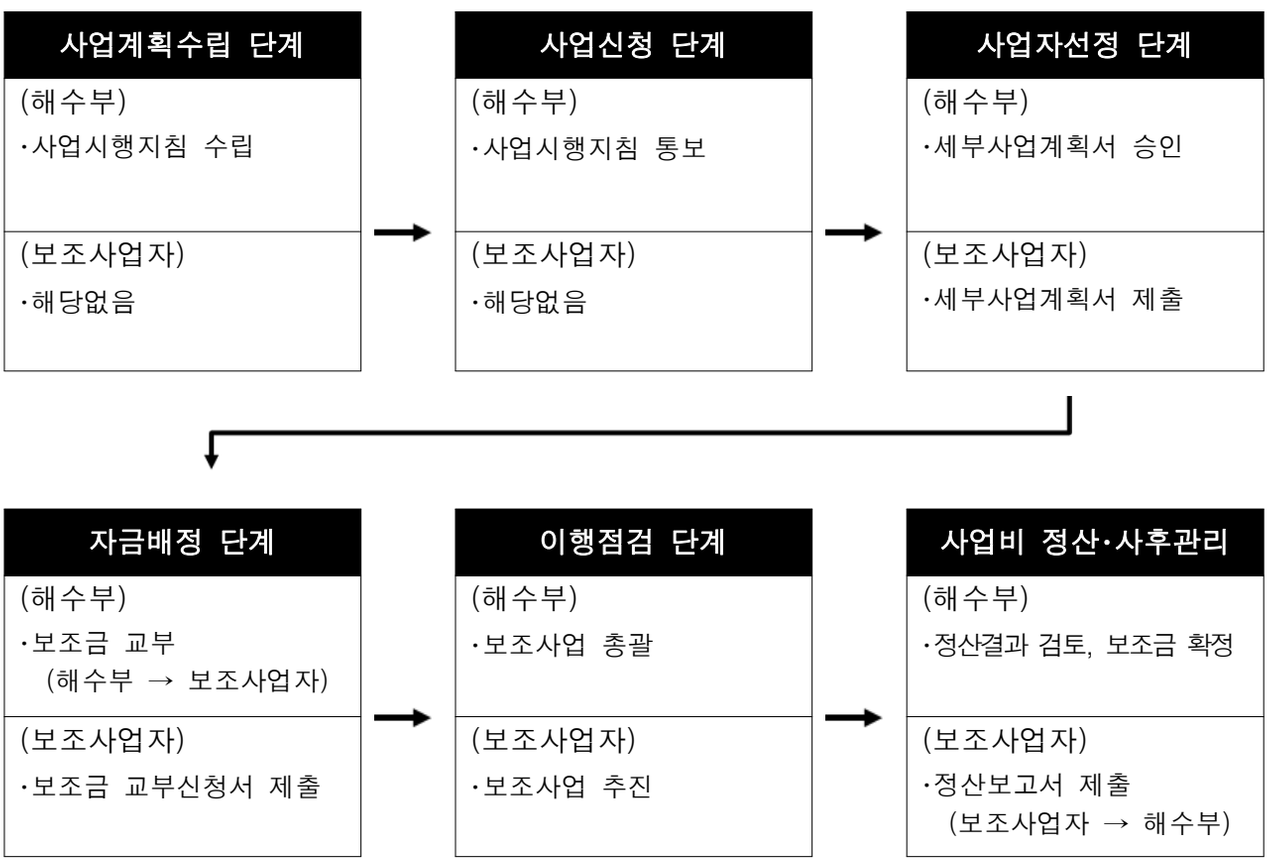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정책 방향 및 지원형태 등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서,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별로 보조사업의 연속성, 기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제출하되,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모집 : 한국수산무역협회(모집공고 및 확정) → 한국낚시협회(참가 통합 신청)

  *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한국낚시단체총연합회에서 참가 신청업체 통합 신청(지원은 개별업체 지원)

- 확정 : 한국낚시협회에서 참가를 개별적으로 희망 업체를 조사하여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국제수산박람회 참가업체 세부선정 평가기준 준용(붙임 1)

4. 자금배정 단계

보조 사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자금송금 요청

해양수산부

○ 사업비 신청

-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승인 결정 후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개산급)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2개월 이내에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정산서를 제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 점검 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상 문제점, 예산 사용의 적정성 등

보조 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보조 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별지 제4호 서식)

○ 기타 사항은「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및「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제재》

해양수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 삭감

보조 사업자

○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금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보조사업별로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해양수산부에 성과달성 여부 보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1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추진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보조사업자에 시정토록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

8. 기타

○ 본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처분 등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은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함

붙임 1 국제수산박람회 참가업체 세부선정 평가기준

<table>
<tr><th>평가항목</th><th>평가내용</th><th>평점</th><th colspan="5">세부평가</th></tr>
<tr><td rowspan="2">사업실적
(5점)</td><td rowspan="2">○ 전년도 수출실적</td><td rowspan="2">5점</td><td>50만불
이상</td><td>20만불
이상</td><td>10만불
이상</td><td>5만불
이상</td><td>5만불
미만</td></tr>
<tr><td>5점</td><td>4점</td><td>3점</td><td>2점</td><td>1점</td></tr>
<tr><td rowspan="6">수출시장
개척의지
(30점)</td><td rowspan="2">○ 포장지의 표기(필수표기사항 기준)</td><td rowspan="2">10점</td><td colspan="2">현지어</td><td colspan="2">영어</td><td>기타</td></tr>
<tr><td colspan="2">10점</td><td colspan="2">8점</td><td>5점</td></tr>
<tr><td rowspan="2">○ 홍보 카탈로그(인쇄물 기준)</td><td rowspan="2">10점</td><td>현지어</td><td>영어</td><td>기타</td><td colspan="2">없음</td></tr>
<tr><td>10점</td><td>8점</td><td>5점</td><td colspan="2">0점</td></tr>
<tr><td rowspan="2">○ 자사 홈페이지 운영</td><td rowspan="2">10점</td><td>현지어</td><td>영어</td><td>기타</td><td colspan="2">없음</td></tr>
<tr><td>10점</td><td>8점</td><td>5점</td><td colspan="2">0점</td></tr>
<tr><td>정부시책
(15점)</td><td>○ 품질관련 국내외 인증서 보유업체</td><td>15점</td><td colspan="5">- ISO, 낚시 관련 인증 등</td></tr>
<tr><td rowspan="2">시장진출
여건
(30점)</td><td rowspan="2">○ 심사위원 평가
- 국제박람회 참가 사업계획서 평가
- 마케팅계획, 현지시장전망 등 종합</td><td rowspan="2">30점</td><td>수</td><td>우</td><td>미</td><td>양</td><td>가</td></tr>
<tr><td>30</td><td>24</td><td>18</td><td>12</td><td>6</td></tr>
<tr><td colspan="2">기 본 평 가</td><td>80점</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가점제도</td><td>○ 국제수산박람회 참가업체(국내개최)</td><td>10점</td><td colspan="5">- 익년도 참가신청시 1년간 적용</td></tr>
<tr><td>○ 수출관련 포상업체</td><td>10점</td><td colspan="5">- 정부(10), 지자체(5), 기타기관(3)</td></tr>
<tr><td rowspan="4">감점제도</td><td>○ 수출이행실적 등 사후관리자료 미제출</td><td>⊿20점</td><td colspan="5">- 익년도 참가신청시 1년간 적용</td></tr>
<tr><td>○ 선정후 중도포기업체
(불가항력적인 경우 제외)</td><td>⊿20점</td><td colspan="5">- 해당시점으로부터 1년간 적용</td></tr>
<tr><td>○ 박람회기간 중 중도 귀국
○ 박람회시 업체간 불협화음 야기 등 한국관 이미지를 심히 손상
○ 박람회 참가신청시 허위사실 기재
○ 박람회업무진행에 심각한 차질 제공, 협회의 업무상 정당한 요청에 불응
○ 해양수산부 권고사항 위반행위</td><td>⊿20점</td><td colspan="5">- 해당시점으로부터 1년간 적용</td></tr>
<tr><td>○ 당해년도 박람회 참가횟수 1회당
○ 최근 3년간 동일박람회 참가횟수 1회당</td><td>⊿10점</td><td colspan="5">- 신규업체에 참가기회 우선 부여</td></tr>
<tr><td>기타사항</td><td>○ 동일 전시품목 참가업체 수는 전체 참가 업체수의 30%이내</td><td></td><td colspan="5">- 다만, 참가 신청업체 중 타품목 업체선정이 불가피한 경우 및 미달로 인하여 추가업체 모집시에는 제외</td></tr>
</table>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부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　　년)

<보조사업자명>

(단위 : 천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비				
		집행계획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이자

주) 1. “단위사업”은 낚시산업 수출산업화로 기재
2. “세부사업”은 세부 내역사업명을 기재
3.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작성(별지 작성)
-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비 미집행액(이월, 불용, 집행잔액으로 구분), 사유 등
4. 이자는 반납 시점을 고려하여 작성
5. 필요할 경우, 작성서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해도 무방

25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구축 (어선어업생산자단체 육성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 장 조일환 사무관 송창수	044-200-5510 044-200-552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선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을 통하여 어업경쟁력 강화, 자율적 자원관리·분쟁조정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 구축 도모

2. 근거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 자조단체육성(개소)	1	-	3	3	-	'19.4	FTA국내보완 대책 어업인지원 성과분석 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450**	**2,400**	**2,400**	**2,400**
- 국 비	800	1,200	1,200	1,200
- 자부담	650	1,200	1,200	1,20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조직화 지원

○ 공모를 통해 어선어업 생산자 단체 선정 등 조직화 지원을 위한 위탁기관 선정

자조금 지원

○ 전국적인 생산자(어선어업) 조직 구성이 가능하여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 능력을 갖춘 국내산 연근해 수산물(양식·원양산 제외)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어업인,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그 밖에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① 사업자격

조직화 지원

○ 어선어업의 자조금단체 조직화를 위한 행정·기술 지원이 가능한 법인, 단체 또는 연구·교육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자조금 지원

○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또는 금액)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또는 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단체

○ 자조금 조성 단체는 동일 품목의 미가입 생산자단체가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가입·탈퇴를 자유롭게 허용 필요

- 이를 위해 해당 단체는 정관에 해당사항을 반영·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목 또는 생산자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가입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필요

○ 하나의 수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자조금을 설치

- 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2개 이상 품목을 통합하거나 하나의 품목을 분리하여 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음
- 품목을 통합하는 경우 2개이상의 자조금 단체가 있을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하나의 자조금 단체로 통합하여야 함.

② 사업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 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품목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생산자 조직 구성이 가능하여 소비촉진 및 수급 조절 능력을 갖춘 국내산 연근해 수산물(양식·원양산 제외)

조직화 지원

○ 품목단체 조직화 및 기존단체를 위한 행·재정적(사업계획 수립·사업비 집행·정산)지원 등 보조사업 통합관리 역할 수행

* 비영리사단법인 결성 지원, 자조금 설치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지원, 자조금 운용계획안 수립 지원 등

○ 관계분야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조금 단체의 신청을 받아 분야별* 기술 지원 수행

* 수산자원/마케팅/유통·가공 등 현황 분석 및 진단, 개선방안 제시

자조금 지원

○ 수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 수산업자,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수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자조금단체 가입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 범위

조직화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100%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위탁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자조금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50%, 자부담(임의 거출금) 50%

* 국고 보조교부액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 자조금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자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의자조금 설치 단체(임의자조금단체)에 임의자조금위원회를 설치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 임의자조금단체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수산업자, 학계 및 생산·가공·유통·수출·홍보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소비자,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 기능 : 임의자조금 폐지, 임의거출금의 금액, 임의자조금 운용계획 수립·변경과 결산,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음(자조금 관련 업무 전반사항 분장)
  * 자조금사무국은 자조금사업 전체를 총괄·취합·보고·관리
  *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자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개 이상의 품목을 통합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음

○ 수산물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지출은 자조금 조성 금액의 50% 이내

○ 운영경비 : 자조금 조성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조성액의 20% 이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30% 이내
  * 동일 자조금 단체에서 2개 이상 품목의 자조금을 조성, 운영할 경우에는 50% 이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ㅇ 조직화·자조금 지원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 수행사업자 공고	(해수부) ·보조사업 수행 기관 선정 ·품목단체 선정 및 세부사업 계획 승인
(조직화 지원 위탁기관) ·해당없음	(조직화 지원 위탁기관) ·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신청 ·세부사업 계획서 제출	(조직화 지원 위탁기관) ·컨설팅 수요조사 및 자조금 품목단체 선정 제출
(자조금 지원 단체) ·해당없음	(자조금 지원 단체) ·해당없음	(자조금 지원 단체) ·비영리 단체 신청(생산자단체)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해수부 → 보조사업 기관)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조직화 지원 위탁기관) ·보조금 교부요청 ·보조금 교부(보조사업 기관 → 자조금 단체)	(조직화 지원 위탁기관) ·조직화지원 회계 집행 ·보조사업 이행관리 및 행정지원	(조직화 지원 위탁기관) ·조직화, 자조금 지원사업 집행 정산결과 검토 및 제출 ·보조사업 성과 평가
(자조금 지원 단체) ·세부사업 계획서 제출 ·보조금 교부요청	(자조금 지원 단체) ·농수산자조금 조성 및 운영(자조금 용도)	(자조금 지원 단체) ·자조금 집행내역 등 제출 ·차기 년도 사업추진 계획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사업 시행지침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조직화 지원 위탁 사업자 선정(공고)

- 공고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매년 1~2월까지 모집 공고

  * 필요시 신청기간의 변경 또는 별도의 신청기간을 둘 수 있음

- 구비서류 : 조직화 지원사업 제안서(붙임 1~3)

- 신청·접수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

○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심의결과에 따라 조직화 지원 위탁사업자 선정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조직화 지원 위탁사업자를 선정

조직화 지원

○ 조직화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신청서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양식 7)를 첨부하여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에 신청

4. 자금배정 단계

조직화 지원

○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공통 제3호 서식】('19.1월까지)

자조금 지원

○ 품목별 단체의 세부 사업계획*(별지 제4호서식)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 세부 사업계획 제출 : 기존 생산자 품목단체('19.1월까지), 신규 품목단체(조직화 선정 시)

○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공통 제3호 서식】('19.1월까지)

해양수산부

○ 조직화·자조금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공통 제4호 서식】('19.2월까지)

○ 보조금 지급 시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공통 제4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별 특정 교부조건이 필요하여 【공통 제5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변형하는 경우 별도서식으로 작성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 현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조직화 지원

○ 위탁 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 달 말까지 추진결과 및 정산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2~4호 서식)

자조금 지원

○ 사업 신청자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다음 달 말까지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별지 제4호 서식)

- 다만, 품목 특성상 지역적, 계절적 요인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기한 내 가정산 보고 후, 사업이 완료된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이 경우 사업자는 자체 적립금에 대해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다음 년도 조성액과 구분될 수 있도록 자체적립금을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갖추어야 함

○ 사업 신청자는 정산보고서와 함께 사업 결산보고서, 사업계획서 제출('19.1월까지)

- 보고서는 사업추진 결과, 발전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함

《제재》

해양수산부

○ 년 1회 이상 조직화·자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지침에 적합토록 시행 조치

○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는 물론, 사업 참여 1년간 제외

《기타사항》

○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자조금 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확대 및 우선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환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2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개선을 추진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9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추진(다만, 여건변화에 따라 다소 변경이 될 수 있음)

○ 사업신청 : 기존 생산자 품목단체 및 신규 품목단체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0년도 사업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확보 시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 준용

○ 동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어업정책과)과 협의하여 추진

[붙임 1] 2019년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보조사업 수행기관 제안 요구서

<table>
<tr><td>사 업 명</td><td colspan="3">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지원 사업</td></tr>
<tr><td>사업개요</td><td>민간경상보조사업</td><td>사업기간 : . . 까지</td><td>정부보조금 :</td></tr>
<tr><td>사업목표</td><td colspan="3">ㅇ 어선어업인에 대한 행정·기술 지원을 통해 규모화·조직화를 촉진시키고 조직화된 생산자단체의 합리적 운영방향을 제시</td></tr>
<tr><td>사업필요성</td><td colspan="3">ㅇ 자조금단체의 결성을 원하는 어업인에게 행정적 지원을 통한 조직화를 유도
ㅇ 자조금단체의 자원·경영·유통가공 등 현황을 진단 ·컨설팅하여 어업경쟁력강화 및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td></tr>
<tr><td>과 업
지시내용</td><td colspan="3">ㅇ 조직화 지원
- 위탁기관은 관계분야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조금단체의 신청을 받아 생산자단체 결성 및 분야별 기술 지원 수행
* 비영리사단법인 결성 지원, 자조금 설치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지원, 자조금 운용계획안 수립 지원 등

ㅇ 자조금 지원
- (컨설팅) 전문 자문단을 구성하여, 자조금단체의 신청을 받아 보조금 사업·운영에 부합하는 분야별의 사업계획수립 등 기술지원
‣ 생산, 보관, 판매 등 전반적인 경영과정에 대해 심도 있는 컨설팅 실시
‣ 컨설팅 기간은 당해 연도 생산 시작과 출하 종료시점까지 진행
* 생산성 향상/품질관리/마케팅/유통·가공 등 현황 분석 및 진단, 개선방안 제시
- (행정지원) 생산자단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예산교부·집행·정산) 지원 등 보조사업 통합관리 역할 수행
- (평가·보조사업 관리) 보조사업 추진 평가, 사업추진 보고·점검</td></tr>
<tr><td>최 종
성과물</td><td colspan="3">ㅇ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조직화 지원
- 비영리사단법인 결성 지원, 자조금 설치계획 수립 및 위원회 설치 지원, 자조금 운용계획안 수립 지원 등
ㅇ 자조금 지원 컨설팅 결과 보고서
- 컨설팅 결과물로부터 도출한 자조금단체의 개선방안·운영방향 등 정책적 제언</td></tr>
<tr><td rowspan="2">keyword</td><td>한글</td><td colspan="2">컨설팅, 조직화, 자조금</td></tr>
<tr><td>영문</td><td colspan="2">consulting, organization,</td></tr>
</table>

[붙임 2] 사업제안 평가기준 양식

사업제안 평가기준

과제명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상기의 사업제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1.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점	피평가자			비고
			A사	B사	C사	
1.사업계획 적정성 (20)	◦ 사업추진방법 및 체계가 사업수행에 적정한가	10				
	◦ 예산산출내역, 인력투입 등 추진계획이 적정한가	10				
2.사업내용 타당성 (30)	◦ 사업내용이 사업목표에 부합하며 과업요청내역을 포괄하는 내용인가	10				
	◦ 사업내용이 논리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가	10				
	◦ 사업내용이 구체성과 창의성이 있는가	10				
3.사업수행능력 (20)	◦ 사업책임자, 사업팀, 자문전문가의 능력(전문성) 및 경험은 적정한가	20				
4.보조금 집행·관리 (20)	◦ 체계적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10				
	◦ 부정수급 방지 및 정산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5.사업일정의 적정성 (10)	◦ 사업일정은 사업방법, 사업목적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한가	10				
총 점		100				

2. 종합의견

[붙임 3] 제안서 서식 양식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수행기관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및 경영상태 제시	【양식 2】 【양식 3】
2. 주요사업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 최근 3년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양식 4】
Ⅲ.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1. 참여 사업진 구성계획	1) 책임별 사업진 구성안 및 세부 항목에 따른 각각의 담당범위 제시	【양식 5】
2. 참여자 인적사항 (연구진, 전문가)	연구진 개개인의 학력, 이력, 실적 등 자문을 구할 전문가 구성계획 및 세부 자문 내용 명시	【양식 6】
Ⅳ. 사업계획		
1. 사업추진계획	사업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상세히 제시 - 조직화 지원, 자조금 지원 구분	
2. 추진일정계획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 조직화 지원, 자조금 지원 구분	【양식 7】
3.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중간, 결과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Ⅴ. 예산집행계획	세부항목별 소요비용에 대한 산출근거 제시	【양식 8】

【양식 1】

사업 신청서

사업명				
공고번호				
기관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팩스	
주 소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사업참여자	사업총괄책임자 제외	명	보조원	명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부의 공모 사업에 참가하고자 제안요구서 및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사업기관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별첨서류 : 사업제안서 등 관련 서류

2019년 월 일

신 청 인 : (인감)

해양수산부 귀하

【양식 2】

수행기관 일반현황

<table>
<tr><td rowspan="3">주 소
및
연락처</td><td colspan="2">○ 주소 :</td></tr>
<tr><td>○ 담당자 :
○ 전화 :</td><td>○ E-mail :
○ FAX :</td></tr>
<tr><td colspan="2">○ 홈페이지 :</td></tr>
<tr><td>설립목적</td><td colspan="2">○ 주요내용으로 간략하게 작성</td></tr>
<tr><td>연 혁</td><td colspan="2">○ ’00.00.00 ○○○ 창립
○ ’00.00.00 ○○○○ 사단법인 설립허가</td></tr>
<tr><td>주요사업
(최근 3년간)</td><td colspan="2">○
○
* 증빙서류 별첨</td></tr>
<tr><td>조직 및
인력현황</td><td colspan="2">○ (조직)

○ (인력) <상근>, <비상근></td></tr>
<tr><td>사업자
자산 및
부채</td><td colspan="2">○

* 증빙서류 별첨</td></tr>
<tr><td>2017년
주요사업</td><td colspan="2">○</td></tr>
<tr><td>2018년
주요사업계획</td><td colspan="2">○</td></tr>
</table>

【양식 3】

수행기관 경영상태

□ 제안사의 재정상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비 고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주)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단, 당해년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제출

□ 제안사의 신용도

최근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여부	제재기관	제 한 사 유	제 한 기 간	비 고

주) 1. 본 용역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의 입찰참가 제한여부를 기재하되,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켜서는 아니 되며 평가 후라도 허위 또는 누락이 판명될 시는 제안서 평가를 무효화 함.

2. 참가 제한이 없는 경우는 상기 상기양식에 “해당 없음” 이라고 기재

【양식 4】

주요사업실적

(단위 : 천원)

연 도	사 업 명	발주기관	용역금액	비 고

(첨부) 사업수행 실적 증명원

※ 관계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 실적 증명원 서식 변경 가능

<table>
<tr><td>사업(계약) 명</td><td colspan="4"></td></tr>
<tr><td>발 주 기 관
(담당자명,
전화번호 포함)</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신 청 인</td><td>기 관 명</td><td></td><td>대 표 자</td><td></td></tr>
<tr><td>소 재 지</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 rowspan="3">계약 및 준공</td><td>계약일자</td><td></td><td>총 계약금액</td><td></td></tr>
<tr><td>착수일자</td><td colspan="3"></td></tr>
<tr><td>완료일자</td><td colspan="3"></td></tr>
<tr><td>사업수행
종류 및 개요</td><td colspan="4">※ 사업수행 규모, 종류 및 개요(구체적으로 작성)</td></tr>
<tr><td colspan="5">위와 같이 사업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td></tr>
<tr><td colspan="5">위 사실을 증명함
(발급기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td></tr>
<tr><td>용 도</td><td colspan="4">국고보조사업자 공모 참가 자격 증빙</td></tr>
<tr><td>문의처</td><td colspan="4">담당자(전화번호):</td></tr>
</table>

1. 건별로 별도 작성하여 기재·증명하여야 함

【양식 5】

참여 연구진 구성 계획

연구 직책	이 름	전공 및 학위	소속 및 직위	역 할

【양식 6】

연구자 인적사항

가.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소 속		직명(급)		
생년월일		전 화	사무실 : (교)	
E-Mail			자 택 :	
주 소	집) 사무실)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소속 기관 및 단체	직위 또는 직책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연구 실적 내용(최근 3년간)

구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과 제 명	연구(사업)비		기 간 (~)	비고
			금액(천원)	주관기관		
완료 실적						
수행 중인 과제						

【양식 7】

사업 계획서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Ⅲ.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Ⅳ. 사업계획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사의 특장점
4. 각 과업 내용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및 전략(①조직화 지원, ②자조금 지원)
5. 소요예산 산출내역, 인력투입 등 추진계획
6. 사업성과 및 기대효과
7. 추진일정계획(①조직화 지원, ②자조금 지원)

   * 월별·분기별로 도식화하여 공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8.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업무분장 포함)
9. 보고 및 검토 계획

Ⅴ. 예산집행계획

【양식 8】

사업비 세부내역서

(단위 : 천원)

항 목	세부항목	산출근거	금 액	비 고
계				

참고 **사업공고문(안)**

해양수산부 공고 제0000 - 00호

년도 「어선어업 생산자단체 육성」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고

년도 어선어업생산자단체 육성(조직화·자조금)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보조사업 기관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업기간
① 조직화 지원(품목 생산자단체 결성) - 전국 단위의 생산자단체 00개소 결성		사업자선정일 ~00.12.31
② 자조금 지원(생산자단체 육성지원) - 생산자단체(00개)에 대한 행정적(지원센터 운영)·기술적(컨설팅)·재정 (자조금 출연) 지원		

* 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 제안요구서 참조

2. 사업자 선정방법

○ 사업제안 설명회 개최를 통한 서류심사 및 수행능력 평가

* 입찰자가 단독이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재공고 실시

3. 참가자격

○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소금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

4. 제안서 제출서류 및 일정 안내

○ 제출기한 : 년 월 일( ) 18:00시 도착분까지
○ 제출기관 :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정부세종청사 5동 453호)
○ 제출서류 : 붙임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서식 참조
○ 제안서 설명회 : 일시 및 장소는 제안기관에게 별도 통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담당 ☎ 044-200-5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품목명) 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사업 신청서

<table>
<tr><td>조직명</td><td colspan="3"></td><td>대표자</td><td></td><td>설립연월일</td><td></td></tr>
<tr><td>회원수
(어가수)</td><td colspan="3">명</td><td colspan="2">최초 보조금 지원년도</td><td colspan="2"></td></tr>
<tr><td>지역별
분포현황</td><td colspan="7"></td></tr>
<tr><td>생산현황</td><td colspan="2">전국 생산량
(생산액)</td><td colspan="2"></td><td>단체 생산량
(생산액)</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운영실적 및
계획</td><td colspan="2">구분(백만원)</td><td>‘19</td><td>‘20</td><td>‘21</td><td>‘22</td><td>‘23</td></tr>
<tr><td rowspan="3">예산</td><td>자조금조성액</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국고보조액</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집행액</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집행율(%)</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독립적
사무기능
수행여부</td><td colspan="2">가입조건</td><td colspan="5">○ 개인어가 :
○ 생산자단체 :
○ 기타</td></tr>
<tr><td colspan="3">자조금 조성방법</td><td colspan="4">○ 납부대상자 :
○ 산정기준 :
○ 납부방법 :</td></tr>
<tr><td>사무실 소재지</td><td colspan="3">☏</td><td colspan="2">상시 근무자
배치여부(명)</td><td>명</td></tr>
<tr><td>’19년 사업계획
주요 내용</td><td colspan="7">○ 소비촉진 홍보 : 백만원(총사업비의 %)
- 주요 집행계획 명 : 금액
○ 수급조절 : 백만원(%)
-
○ 교육 : 백만원(%)
-
○ 기타 : 백만원(%)
-
○ 운영비 : 백만원(%)
-</td></tr>
<tr><td>첨부</td><td colspan="7">1. 최근년도 생산(출하)실적 입증자료 1부.
2. 해당품목의 전국 생산(출하)규모 확인이 가능한 자료 1부.
3. 0000년 세부사업 추진계획 1부.
(사업계획 총괄표, 사업목적, 및 추진 계획 등 포함)
4. 기타 품목 담당부서에서 요구한 자료</td></tr>
</table>

< 년 ○○○ 자조금사업 계획 총괄표 >

관	항	목	세목	금액
○○○ 자조금사업비	01 소비홍보	0110 광고	세부사업명	
		0120 소비촉진	세부사업명	
	02 수급안정	0210 수급	세부사업명	
		0220 가격안정	세부사업명	
	03 유통구조개선	0310 물류개선	세부사업명	
		0320 포장재개선	세부사업명	
		0330 유통개선	세부사업명	
		0340 유통협력	세부사업명	
		0350 소비자협력	세부사업명	
	04 경쟁력제고	0410 품질향상	세부사업명	
		0420 생산성 향상	세부사업명	
		0430 안전성 제고	세부사업명	
		0440 원료·자재구입비 지원	세부사업명	
	05 수출활성화	0510 수출마케팅지원	세부사업명	
		0520 전문가·바이어초청	세부사업명	
		0530 해외시장개척	세부사업명	
		0540 선진지견학·해외연수	세부사업명	
		0550 수출물류지원	세부사업명	
	06 교육 및 정보제공	0610 거출홍보	세부사업명	
		0620 교육	세부사업명	
		0630 정보제공	세부사업명	
	07 조사연구	0710 조사·연구용역	세부사업명	
		0720 연구회	세부사업명	
		0730 성과평가	세부사업명	
	08 선거	0810 총회의장 선거	세부사업명	
		0820 대의원 선거	세부사업명	
	09 징수수수료	0910 거출기관 수수료	세부사업명	
	10 운영관리	1010 인건비	세부사업명	
		1020 회의비	세부사업명	
		1030 복리후생비	세부사업명	
		1040 자산취득비	세부사업명	
		1050 기타경비	세부사업명	
	11 예비비	1110 예비비		

[별지 제2호 서식]

컨설팅 완료보고서(요약)

1. 컨설팅 개요

단체명 (연락처 : 전화번호)		소재지	
품목명		경영규모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회원수 (어가수)	명	지역별 분포현황	
생산현황	전국 생산량 (생산액)		단체 생산량 (생산액)
혁신컨설팅지원 업체명		책임 컨설턴트 (연락처 : 전화번호)	
컨설팅 분야 (세부분야)		컨설팅 기간	
컨설팅 금액		총 투입일수	

2. 컨설팅 내용 및 성과관리

1) 컨설팅 수행목표

부문별	세부 수행목표
	※ 수행계획서에 제시되었던 컨설팅 세부추진 목표/도달수준 기술

2) 경영체 현황

항목별	세부 현황(문제점, 현상)
	※ 컨설팅 니즈에 해당하는 일반적 경영체의 현상 및 문제점을 기술

3) 세부컨설팅 분야에 대한 진단내용

항목별	세부 내용
	※ 세부 컨설팅분야의 진단내용에 대한 세부 분석결과를 제시

4) 개선과제 도출

항목별	세부 내용
	※ 세부 컨설팅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에 따른 혁신 및 개선 이슈사안을 도출

5) 해결 방안(혁신, 개선) 도출 과정

항목별	세부 내용
	※ 혁신 및 취약점 개선을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 수립 과정을 제시

6) 현장 실행 혹은 구현내용(향후 혁신 및 개선계획 포함)

항목별	세부 내용
	※ 수립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경영체 현장적용(혁신, 개선)한 내용을 기술하고 향후 적용 혹은 도입계획은 별도로 표시

7) 최종 컨설팅 효과

부문별		수행 효과
정량적		
정성적		

8) 수행과정의 애로/건의사항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조직화 지원(컨설팅) 사업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확인자 : 책임컨설턴트 (인)

생산자단체 (인)

별첨 : 컨설팅완료보고서, 생산자단체 진단서, 수행일지

[별지 제3호서식]

조직화 지원(컨설팅) 완료보고서(원문)

[편집순서_1.표지]

표지 뒷면		표지 앞면
이 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생산자단체 조직화 컨설팅 지원 사업의 완료보고서입니다.	위여백 2cm 연도 주 제 명 조 직 명 아래 여백 2cm	가로 21.0 cm 세로 29.7 cm 년 조직화 지원(컨설팅)사업 완료보고서 **(컨설팅주제)** 년 월 일 생산자단체명 ○ ○ ○ ○ 컨 설 팅 업 체 ○ ○ ○ ○ 00000장 귀하

※ 표지는 A4 크기로, 백색바탕에 흑색활자로 작성함

제 출 문

000000장 **귀하**

본 보고서를 조직화 지원사업(컨설팅)의 최종완료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컨설팅 주제 :

□ 사 업 기 간 : . . ~ . . (00개월)

. . .

생산자단체 : (대표자) (인)

컨 설 팅 업 체 : (대표자) (인)

책임컨설턴트 : (인)

[별지 제4호서식]

년 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1. 품　　목 :

2. 단체의 명칭 :

3. 대　표　자 :

4. 사업기간 :

5. 사업비 정산명세

(단위 : 천원)

세부사업	계　　획(A)			실　　적(B)			B/A (%)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합 계							

위와 같이　　년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보고합니다.

첨부 : 관련증빙 서류 등

.　　.　　.

생 산 자 단 체 :　　(서명 또는 인)

또는 위 탁 사 업 체 :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26 어촌6차산업화지원

①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학기 사무관 한정수	044-200-5650 044-200-5659

* 본 사업시행지침은 정책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 마을과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 지원 전담기구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정·운영으로 어촌특화발전 지원체계 구축

○ 어촌인구 감소·고령화와 어업 중심 단일 경제구조의 다변화를 위한 현장밀착형 전담지원 기능을 수행하여 어업 외 소득증대 등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

<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개요 >

(사업형태) 자치단체 경상보조 **(기간)** '16～계속
(예산) 개소당 연 5억원(국비 50%, 지방비 50%)
(기능) 어촌특화역량강화, 특화상품 연구·개발지원, 판매·유통·홍보지원 등
(설립장소) 전남(목포해양대학교·광주일보), 경남·인천·제주(한국어촌어항공단), 강원(강릉원주대학교·한국농어촌공사), 충남(충남연구원), 경기·전북(한국농어촌공사), 경북(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부산(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 근거법령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3. 성과목표 및 지표

○ 사업수행 목표 달성도(공통)

(단위 : 백만원, 건수)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	'16	'17	'18		
▪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한 소득 증대	709.8		12	214	676	매년 12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된 연간 사업추진실적보고를 바탕으로 성과목표 및 지표 달성 평가 실시
▪ 마을 문제 해결 건수	50		6	10	50		

○ 센터별 시행계획 수립 시 제시한 성과목표(개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5,000	5,000	5,000	5,000
국 비	2,500	2,500	2,500	2,500
지 방 비	2,500	2,500	2,500	2,500

Ⅱ. 2019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개요

○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

○ 사업기간 : 2016~계속

○ 사업규모 : 10개소(광역시·도 단위 각 1개소)

* '16년(전남, 경남), '17년(강원, 충남), '18년(경기, 전북, 경북, 제주, 인천, 부산)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지원규모/조건 : 개소 당 연 5억원/농특회계(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구 분	어촌특화지원센터 담당업무
창업 및 컨설팅	·어촌의 경영·기술, 창업 등에 관한 애로사항 해결 및 신기술 개발을 희망하는 특화어촌을 위한 컨설팅 사업 지원
연구개발	·어촌의 특화자원을 발굴하고 각 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상품·서비스 개발 및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관리	·어촌특화 사업 시행자의 사업 추진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지원 (특화어촌에 대한 분기별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결과 보고) ·어촌6차산업화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육성 및 지원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 지원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교육·연수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 연계의 지원 ·국내 어촌자원 및 어촌특화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
정책지원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바다가꿈 등 어촌개발정책 지원 ·어촌의 특화지원을 활용한 신규사업 발굴 제시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촌특화지원센터 담당업무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사업 포괄 지원(컨설팅, 특화프로그램개발, 역량강화사업, 홍보 등)

< 지원배제 사항 > 별첨 1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참조

- 투입에 비해 효과가 미약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주민 보조사업
- 불법 양식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토지·부지의 매입 또는 임차비용
- 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업무추진 비용
- 개별 어가단위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
- 그물·부표·사료·종묘대 등 어가단위 소모성 투입 지원 사업
- 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 외의 타 보조사업 참여에 필요한 자부담으로의 사용
- 기타 어촌 6차 산업화 지원사업 정책 목표와 배치되는 지원 등
- 기타 법령에 의한 지원 제외사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단계별 프로세스

단 계	단계별 주요내용
보조금 교부신청·교부 (어촌특화지원센터→시·도→해양수산부)	·세부사업계획 확정(사업시행연도 1월 10일) 후,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시·도에 보조금 교부신청→시·도는 해양수산부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1월~2월) ·해양수산부는 시·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시·도는 어촌특화지원센터에 국고보조금(지방비 포함) 교부
⬇	
사업추진 (어촌특화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와 시·도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확정받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시행
⬇	
사업추진 실적보고(분기) (어촌특화지원센터→시·도→해양수산부)	·어촌특화지원센터는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을 해당 시·도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에 분기별 보고(별첨 3 참조, 익월 15일까지 제출)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등 자료 또는 보고요청 시 수시보고
⬇	
성과평가(해양수산부)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실적 평가(12월중)(별첨 4 참조)
⬇	
다음연도 사업계획 제출 (어촌특화지원센터→시·도→해양수산부)	·어촌특화지원센터는 다음연도에 시행할 보조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12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센터→시·도→해양수산부)
⬇	
사업추진 실적보고(최종) 및 사업비 정산·확정 (어촌특화지원센터→광역시·도→해양수산부)	·어촌특화지원센터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3항에 따라 사업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보고서가 첨부된 사업실적 보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센터→시·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법 제28조에 따라 보조금 금액 확정(집행잔액, 이자수입 등 반납)

2. 단계별 세부 프로세스

(1)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어촌특화지원센터, 광역시·도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광역 시·도에 제출(1월)

○ 광역 시·도는 어촌특화지원센터로부터 제출된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검토 후, 해양수산부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1~2월)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광역시·도에서 신청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국고보조금 결정 통보(1~2월)

(2) 사업 시행 및 변경

어촌특화지원센터, 광역시·도

[사업시행]

◇ **사업시행자** : 어촌특화지원센터, 광역시·도

◇ **시행 방법 :**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별 추진계획과 일정대로 어촌특화지원센터 업무수행

◇ **관련 법령 :** 「어촌특화발전지원 특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사업시행 시 유의사항**

①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계약의 체결은 관련 법령에 의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입찰로 집행하여야 함

②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고, 그 현황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③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함

④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⑤ 사업비 집행은 별첨2 '사업비 세부항목 편성 및 집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세부사업계획서의 변경]

◇ **변경 주체** : 어촌특화지원센터·광역시·도 / 승인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 **변경 원칙 및 절차**

① 세부사업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될 사업계획 시행 전에 광역시·도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 요청

② 단, 세부사업계획은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추진방향 및 목적의 범위 내에서 당초 승인된 사업시행계획의 총사업비 대비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 수립

- 10% 미만 : 해당 어촌특화 지원센터 자체적으로 변경 수립하고 그 결과를 해당 광역 시·도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10～20% 미만 : 해당 어촌특화 지원센터는 해당 광역시·도와 협의를 거쳐 변경 수립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
- 20% 이상 : 해당 어촌특화 지원센터는 해당 광역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변경수립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2호에 따른 전문인력(센터장 등) 및 시설 변경 시 해양수산부 사전 승인 필요

③ 세부사업계획서 변경수립 승인 절차

- 어촌특화지원센터는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광역시·도에 제출
- 광역시·도는 사업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타당할 경우에 한하여 광역시·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요청
- 해양수산부는 변경수립 여부에 대한 적정 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광역시·도에 통보

(3) 사업추진 실적보고 및 검사

어촌특화지원센터, 광역시·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 **보고 주체** : 어촌특화지원센터, 광역시·도

◇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보고 주기**

① 어촌특화지원센터는 매 분기별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광역시·도는 어촌특화지원센터로부터 추진실적과 사업예산 집행상황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별첨 3 보고서식 참조)

해양수산부

[보조사업 수행상황 검사]

◇ **검사 주체** : 해양수산부

◇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검사 방법**

① 보조금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② 보조사업 수행상황 파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음

광역시·도, 어촌특화지원센터

[보조금 정산]

◇ **보고 주체** : 어촌특화지원센터, 광역시·도

◇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보고 시점**

①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때, 폐지의 승인을 한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3항에 따라 실적을 적은 사업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2개월 내에 제출(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 보고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② 보조사업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필요 조치를 명하는 등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③ 기타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반환,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교부 일시 정지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법령을 적용함

(4) 성과평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사업추진실적보고를 바탕으로 성과지표 달성도를 평가(12월 중)

○ 운영기관의 취소 사유 및 심사

- 당연취소: 사업기간 중 아래 열거된 사유가 발생할 시 당연 취소 대상에 해당

① 사업 변경 등으로 인해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참고> 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

구 분	세 부 내 용
전문인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 1인 이상을 확보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세무사 2. 경영학, 관광학, 지역개발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 그 밖에 수산, 가공, 유통, 관광, 지역개발 및 어업인 교육·상담·컨설팅 등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시 설	○ 지원센터는 다음의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함 1. 지원센터 전용사무실 2. 1개 이상의 회의실 3. 1개 이상의 교육실 ※ 회의실 및 교육실은 지원센터 전용사무실과 동일한 건물(층)에 있지 않아도 무방함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검사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이 3회 이상 누적된 경우 또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③ 컨소시엄으로 지정된 운영기관이 컨소시엄을 해제하여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정되었을 때와 다른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 심사취소: 매년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기간(3년) 종료 후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사업기간(3년) 내 2번 이상 '하'를 받을 경우 운영기관 재공모 실시
  단, 사업기간(3년)내 3번 '하'를 받을 경우 운영기관 재공모시 기존 운영기관(해당기관) 공모신청 불가

<참고> 성과평가 순위 및 등급

<table>
<tr><th colspan="2">2016년</th><th colspan="2">2017년</th><th colspan="2">2018년 ~</th></tr>
<tr><th>순위</th><th>등급</th><th>순위</th><th>등급</th><th>순위</th><th>등급</th></tr>
<tr><td rowspan="5">1위</td><td rowspan="5">상</td><td rowspan="3">1위</td><td rowspan="3">상</td><td>1위</td><td rowspan="3">상</td></tr>
<tr><td>2위</td></tr>
<tr><td>3위</td></tr>
<tr><td rowspan="4">2위</td><td rowspan="4">중</td><td>4위</td><td rowspan="4">중</td></tr>
<tr><td>5위</td></tr>
<tr><td>6위</td></tr>
<tr><td>7위</td></tr>
<tr><td rowspan="5">2위</td><td rowspan="5">하</td><td rowspan="3">3위</td><td rowspan="3">중</td><td>8위</td><td rowspan="3">하</td></tr>
<tr><td>9위</td></tr>
<tr><td>10위</td></tr>
<tr><td rowspan="2">4위</td><td rowspan="2">하</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r>
</table>

※ 평가등급별(상:중:하)비율 : 2016년(50:0:50), 2017년(25:50:25), 2018년 이후(30:40:30)

별첨 1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규정된 사업

1. 초·중등학교 학생중식 지원	41. 공주미술제
2. 초·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42. 청소년문화의 집(리모델링에 한함)
3. 민간개발소프트웨어	43. 청소년상담실 운영
4. 사이버가정학습	44.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5. 일반계 고교 직업교육	45.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6. 전문계 고교 확충 등(경상)	46. 농가도우미 지원
7. 지역평생교육센터 운영	47.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8. 학력인정평생 교육시설(경상)	48. 농촌PC보내기 사업
9. 주요교육정책홍보	49. 농산물유통시설 보완
10. 교육정보화우수기관지원	50. 지방자치단체 종자보급
11. 실업계고 확충 등(자본)	51.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
12.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자본)	52.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
13. 농어촌 실업계고교 학과개편	53. 정신요양시설 운영
14. 저소득층 고교생자녀 학비지원	54. 사회복귀시설 운영
15. 중학교학력인정시설 수업료 지원	55. 공공보건인력 개발
16.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56. 공공보건사업
17. 공공자금관리기금이차보전	57.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18. 지역정보화 지원	58. 지역봉사사업
19. 자전거도로 정비	59. 장애인복지관 운영
20.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	60.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21. 공공도서관 운영	6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22.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자료구입)	62.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23. 문화의 집 조성	63. 공동생활가정 운영
24. 장애인편의시설설치(종전 문체부 사업)	64. 의료재활시설 운영
25. 문화시설운영평가 인센티브	65. 장애인체육관 운영
26. 관리책임자대회	66.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27.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67.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28.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68.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
29. 조각공원 조성	69.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30. 통영국제음악제	70. 장애인해피콜봉사센터 운영
31. 문화학교 운영	71. 장애인특별운송사업(운영비)
32. 지방문화원사업활동 지원	72.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33. 지역별 특성화 사업	73.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 지원
34. 문화인물 기념사업	7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35. 노량해전 재현	75.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36. 문화의 거리 조성	76.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37. 조선통신사행렬 재현	77.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38. 근대문인탄생100주년 기념	78.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39. 예술창작공간 조성	79.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 지원
40.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80.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81. 경로당 운영
82. 경로당활성화 지원
83. 경로식당무료급식
84.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85. 노인건강진단
86. 치매상담센터 운영
87. 노인일거리마련사업
88.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89.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
90. 노인시설 운영
91. 노인복지회관 신축
92. 아동시설 운영
93. 결연기관 운영
94. 입양기관 운영
95.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96.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97. 소년소녀가장 지원
98. 가정위탁양육 지원
99. 퇴소아동자립정착금
100. 결식아동급식
101.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10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운영
10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04. 미혼모중간의집 운영
105. 사회복지관 운영
106.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07.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108.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09.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10. 푸드뱅크운영장비 지원
111. 노숙자보호
112. 쪽방생활자 지원
113. 중소도시보건소 신축
114.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방센터 운영
115.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116. 노인복지회관 운영
117.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118. 결연기관 PC구입비
119.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120.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121. 노후수도관개량사업 이차보전
122.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123. 재활용기반시설 이차보전
124. 나눔장터생활문화 정착지원
125.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126. 시·도주최 여성주관사업 지원
127.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128.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29. 선계획 후개발국토이용체계
130. 산업단지문화재 조사비
131. 환승주차장 건설
132.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133. 벽지노선 손실보상
134. 오지·도서공영버스 지원
135. 김유기산처리제 구입
136. 불가사리 구제
137. 자영수산과급식비 지원
138. 장보고축제
139. 담수어첨단양식장 시설
140. 내수면환경조사, 어도시설 등 지원
141. 내수면시험장 개·보수
142. 연어 치어 방류
143. 토산어종 치어 방류
144. 수산물유통시설 보완
145. 수산물 위생안전
146. 잔류물질 통제계획 이행
147. 수출주력상품 개발
148. 국제수산산업전(부산광역시)
149. 양식기반시설
150. 마을어장 개발
151. 현충시설
152. 시·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153.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54. 과학영농기술 현장문제해결기술 개발비 지원
155. 원격영농상담시스템
156.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
157. 친환경 화장실
158. 개발기술소득사업 및 지역특성화시범사업
159. 영농4H시범 영농사업
160.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 지원
161. 보호수 정비
162. 임산물유통·가공
163. 인권교육시범학교 운영

별첨 2 사업비 세부항목 편성 및 집행 기준

□ 직·간접성경비 편성 기준

구 분	편성기준
직접성경비	총사업비의 60%이상
간접성경비	총사업비의 40%이내

* 시·도에서 별도 집행기준을 마련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은 이에 따라 사업비 편성 및 집행 가능

□ 사업유형별 편성 및 집행 기준

유 형		편성 및 집행기준
창업 및 컨설팅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시 1개 특화어촌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수부 사전 승인 필요 ·(컨설턴트 수임료) 1시간당 10만 원 이내 편성 * 단, 컨설턴트 1인당 1일 최대 400천원 이내 편성(교통비 실비 지급 가능)
상품·서비스 및 기술 연구개발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 시 1개 어촌 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수부 사전 승인 필요
사업 모니터링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시 1개 특화어촌 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수부 사전 승인 필요
육성 및 지원	홍보지원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시 1개 특화어촌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홍보시 해수부 명시 필수
	교육·연수*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시 1개 특화어촌당 최대 25백만원 한도 내 지원
	산학·기업 연계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시 1개 특화어촌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조사·분석	·개별 특화어촌 직접지원시 1개 특화어촌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교육·연수 세부항목 편성 및 집행기준(1회 기준)>

목	편성 및 집행기준
① 강 사 비	·150천원 이내 × 시간 × 강사인원 * 단, 강사 1인당 1일 최대 400천원 이내 편성(강사비 외 교통비 실비지급)
② 홍 보 비	·2,000천원 이내 * 교육장 실내 현수막 제작 필수, 실외 현수막, 신문광고(홍보시 해양수산부 명시 필수)
③ 교 재 비	·20천원 이내 × 교육인원 + 주관기관 보관용 등 5권
④ 문 구 비	·3천원 이내 × 교육인원
⑤ 음료다과비	·2천원 이내 × 교육인원 × 교육일수
⑥ 현장견학비	·**(차량임차비)** 1,000천원 이내 × 1일 * 선박료 등 차량임차료 이외에 소요되는 교통비는 실비 지급 ·**(식비 및 다과비)** 10천원 이내 × 견학인원 × 1식 ·**(견학비)** 1인당 15천원 이내 실비 적용 * 견학지 입장료, 체험료 등 ·**(보험료)** 보험사의 견적 보험료 적용
⑦ 실습재료비	·30천원 이내 × 교육인원 × 교육횟수 * 실습재료비의 경우, 실습교육 시에만 편성
⑧ 교육장임차비	·200천원 이내 × 교육일수
⑨ 기자재임차비	·5,000천원 이내 편성
·① ~ ⑨항목 이 외 항목은 원칙적으로 편성이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처 사전 승인 필요 ·(이론교육) 1회당 20백만원 이내 편성, (실습교육) 1회당 25백만원 이내 편성	

□ 목별 편성 및 집행기준

목	편성 및 집행기준
인건비 (센터 인력)	·용역인건비에 준용하여 인건비 협상을 통해 결정 * 단,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정한 별도 규정에 의거 지급 가능 ** 4대 보험, 각종 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등 제반 비용 포함 ·지원센터 인력은 인건비를 타 사업에서 수령할 수 없음(운영기관에서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단, 전문인력(센터장)의 경우 인건비의 30% 한도 내에서 타사업과 인건비 분담 가능
인건비 (일용직)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단,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정한 별도규정에 의거 지급 가능 ** 법정(본인)부담금 포함 *** 일용직 근로자가 1주 만근 시 주휴수당 별도 지급
자문위원비 (상시)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 * 월 200만원 한도
사무용품비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인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안내 ·홍보물 등 제작비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기념품제작비는 1인당 3만원 이내(행사성 사업의 경우, 1인당 20천원 이내)
간행물 등 구입비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비품 수선비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등기 및 소송료	·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검정료, 감정료 등
위원수당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100천원 × 시간 × 평가(심의)위원 * 단, 평가 및 심의위원 1인당 1일 최대 400천원 이내
공고료 및 광고료	·TV,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 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철도화물 운송요금,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각종부담금,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피복비	·상시착용근무피복(작업복포함)
특근매식비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목	편성 및 집행기준
임차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에 따른 임차료 등
유류비	·차량에 필요한 모든 유류 구입비
재료비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국내여비	·**(근무지내 출장)** 일비·식비 구분 없이 2만원 정액 ·**(근무지외 출장)** 일비·식비 2만원 정액, 숙박비·운임 실비 * 숙박시 숙박비 5만원 이내 실비지급(단,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이내 지원가능) ** 단, 지자체 및 운영기관에서 정한 별도규정에 의거 지급 가능
사업추진비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공식회의 및 행사경비) * 건당 500천원 이상 집행시 집행대상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관서업무추진비	·기관 간 업무협의 및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 및 체육대회, 종무식 등 기관의 공식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 30천원 이내 × 참석인원 * 업무추진비 집행목적 · 일시 · 장소 ·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명확히 기재 ** 건당 500천원 이상 집행시 집행대상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
자산취득비	·총 취득가 100만원 미만의 물품구입 * 소모품비의 경우, 내용연수 1년 미만으로서 개별 취득단가 30만 원 미만
일반용역비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법률적 의미의 민간위탁과 법정대행,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 조사연구, 장비·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기타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인건비, 자산취득비, 식비, 기타 해당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간접성 경비 편성 불가 및 불인정

·작업환경 개선사업 추진 불가

* 해당 목 지원한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수부 사전승인 필요

별첨 3 어촌특화지원센터 추진실적 보고(양식)

1. 사업주체 : *○ ○ 어촌특화지원센터*

2. 사업기간 : *'19.00.00 ~ '19.00.00*

3. 사업예산 집행내역

○ 총 괄 *(광역시·도에서 작성, 특화지원센터에 지급한 교부금 현황을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교부결정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 세부사업별 사업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사업비	집행실적					비 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집행율)	
합 계							
① 어촌특화 역량강화 (신규과정)							
② 어촌특화 역량강화 (심화과정)							
· · · ·							
⑧ ○○○○○○							
⑨ 센터운영비							

**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계획서 상 세부사업 순으로 작성*

4.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① 어촌특화 역량강화(신규과정)

구 분	계획	추진실적	비 고
세부사업계획 수립	*0월중*	*·세부사업계획 수립(0.00)*	
대상마을 지정	*0월말*	· ·	
교육 컨설팅	*0~0월*	*·(자원발굴)* *·(선진지견학)* · · · · ·	
사업성과 결과보고	*12월*		

② 어촌특화 역량강화(심화과정)

구 분	계획	추진실적	비 고
세부사업계획 수립	*0월중*	*·세부사업계획 수립(0.00)*	
		· ·	
		· ·	
사업성과 결과보고	*12월*		

* *①번 세부사업 작성례와 같이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과 일정 대비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⑧번 세부사업까지 작성*

5. 사업부진 원인 및 문제점

① 어촌특화역량강화(신규과정)

○ *(부진사유) 0000 사유로 세부사업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역량강화 대상마을 선정 부진*

- ○○○○○○

○ *(만회대책) 세부사업계획 수립('19.0월) 및 역량강화 대상마을 선정 완료('19.0월)로 추진계획 대비 추진실적 정상화*

- ○○○○○○

* *①~⑧ 세부사업 중, 최종 승인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과 일정 대비 부진(일정 지연, 예산집행 지연 등) 세부사업에 대한 부진원인과 만회대책을 기술*

* *사업추진 실적은 누계실적으로 작성 필요*

6. 사업별 추진실적 사진자료

<'19.00.00 >	*<'19.00.00 >*
<'19.00.00 >	*<'19.00.00 >*

별첨 4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실적 성과평가 지표(100점)

□ 사업수행 평가 : 80점

<table>
<tr><th colspan="2">평가내용</th><th>배점</th><th colspan="4">비고</th></tr>
<tr><td colspan="2">소계</td><td>80</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5">총괄지표</td><td colspan="2">○ 사업수행 목표 달성도</td><td>30</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 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한 소득 증대(15점)
40% 이상 | 35% 이상 | 30% 이상 | 25% 이상 | 20% 이상 | 15% 이상 | 10% 이상 | 5% 이상 | 5% 이하 | 0% 이하
15 | 13 | 11 | 9 | 7 | 5 | 3 | 2 | 1 | 0
* 그 외 부가가치 창출 증빙자료(사업시행전후 비교)</td><td>15</td><td colspan="4">산출방법
* 객관적 증빙자료 첨부</td></tr>
<tr><td colspan="2">○ 마을 문제 해결 건수(10점)
5건 이상 | 4건 | 3건 | 2건 | 1건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td><td>10</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 역량강화 성과평가 실적(3점)
대상 수상 | 최우수 수상 | 우수 수상 | 수상실적 없음
3점 | 2점 | 1점 | 0점</td><td>3</td><td colspan="4">산출방법
* 수상실적 증빙자료 첨부</td></tr>
<tr><td colspan="2">○ 바다가꿈 경진대회 평가 실적(2점)
대상 수상 | 최우수 수상 | 우수 수상 | 수상실적 없음
2점 | 1.5점 | 1점 | 0점</td><td>2</td><td colspan="4">산출방법
* 수상실적 증빙자료 첨부</td></tr>
<tr><td rowspan="13">사업별성과지표</td><td colspan="2">○ 사업수행 효과</td><td>50</td><td colspan="2">난이도</td><td rowspan="13">산출방법
"아래 참조"</td></tr>
<tr><td>수행업무</td><td>세부수행업무(예시)</td><td>기본</td><td>부여</td><td>자체</td><td>점수</td></tr>
<tr><td>- 어촌특화사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td><td>○ 어촌마을 경영 역량강화사업
○ 6차산업화 창·취업 지원사업</td><td rowspan="2">3</td><td rowspan="2"></td><td>상
중</td><td></td></tr>
<tr><td>- 어촌특화사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td><td>○ 어촌특화 수산식품 개발 지원
○ 산학연 연계 제품개발 지원</td><td rowspan="2">3</td><td rowspan="2"></td><td>상
하</td><td></td></tr>
<tr><td>-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의 사업추진 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td><td>○ 어촌특화지원 사후모니터링
○ 6차산업화 시범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td><td rowspan="2">3</td><td rowspan="2"></td><td>중
중</td><td></td></tr>
<tr><td>- 어촌특화사업으로 생산된 제품의 판매·유통 및 홍보지원</td><td>○ 특산물 활용 어촌특화상품 유통체계 구축
○ 수산식품 카탈로그 및 인포그래픽 제작</td><td rowspan="2">3</td><td rowspan="2"></td><td>상
중</td><td></td></tr>
<tr><td>-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에 대한 교육·연수</td><td>○ 어촌특화 역량강화사업(신규,심화)
○ 어촌특화 전문강사 육성교육</td><td rowspan="2">3</td><td rowspan="2"></td><td>상
하</td><td></td></tr>
<tr><td>- 어촌특화사업 시행자와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간 연계 지원</td><td>○ 1교 1촌 자매결연 지원사업</td><td>3</td><td></td><td>하</td><td></td></tr>
<tr><td>- 국내·외 어촌자원 및 어촌특화에 대한 조사·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td><td>○ 어촌마을 기초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
○ 어촌특화자원 DB화 및 모델발굴사업</td><td rowspan="2">3</td><td rowspan="2"></td><td>하
하</td><td></td></tr>
<tr><td>- 그 밖에 어촌특화에 직·간접으로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인정되는 사업</td><td>○ 바다가꿈 지원(5개마을)</td><td>3</td><td></td><td>하</td><td></td></tr>
</table>

1. 자체평가 합계는 50점 기준으로 평가하고, 난이도는 **"상"을 30% 이상 줄 수 없음**
   * **난이도 : "상" 30%, "중" 30%, 이하 "하"**
2. 난이도는 상(자체평가점수×1.2), 중(자체평가점수×1.0), 하(자체평가점수×0.8)으로 점수 부여
   * 외부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자체 난이도 평가 검토 후 최종 검토결과 도출
3. 수행업무별 기본점수는 3점 부여(사업수행시)하고, 미수행시 0점 부여
   * 수행업무에 2개 이상의 세부수행업무가 있을시 기본점수 3점을 배분하여 부여

□ 조직운영 평가 : 20점

<table>
<tr><th colspan="2">평가내용</th><th>배점</th><th>비고</th></tr>
<tr><th colspan="2">소계</th><td>20</td><td rowspan="2"></td></tr>
<tr><td rowspan="5">기관운영지표</td><td>○ 센터장 전임 여부
<table><tr><th>전임</th><th>겸직</th></tr><tr><td>2점</td><td>0점</td></tr></table></td><td>2</td></tr>
<tr><td>○ 센터 상근인력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table><tr><th>3명이상</th><th>2명</th><th>1명</th><th>없음</th></tr><tr><td>3점</td><td>2점</td><td>1점</td><td>0점</td></tr></table></td><td>3</td><td>증빙자료 검토
* 운영기관 인사 관련 공문 첨부</td></tr>
<tr><td>○ 센터 인력의 전문성(「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2호의 전문인력 확보 여부)
<table><tr><th>3명이상</th><th>2명</th><th>1명</th></tr><tr><td>2점</td><td>1점</td><td>0점</td></tr></table></td><td>2</td><td></td></tr>
<tr><td>○ 사업계획 변경 횟수
<table><tr><th>없음~2회</th><th>3회</th><th>4회</th><th>5회</th></tr><tr><td>3점</td><td>2점</td><td>1점</td><td>0점</td></tr></table></td><td>3</td><td>증빙자료 검토
* 사업계획변경 등 공문 첨부</td></tr>
<tr><td>○ 사업비 집행 실적
<table><tr><th>5억원</th><th>5억원 미만
~
4.5억원 이상</th><th>4.5억원 미만
~
4억원 이상</th><th>4억원 미만
~
3.5억원 이상</th><th>3.5억원 미만
~
3억원 이상</th><th>3억원
미만</th></tr><tr><td>5점</td><td>4점</td><td>3점</td><td>2점</td><td>1점</td><td>0점</td></tr></table></td><td>5</td><td>증빙자료 검토
* 정산자료 첨부</td></tr>
<tr><td rowspan="4">기타</td><td>○ 봉사활동· 재능기부 참여 노력
<table><tr><th>2회 이상</th><th>1회</th><th>없음</th></tr><tr><td>2점</td><td>1점</td><td>0점</td></tr></table></td><td>2</td><td rowspan="4">증빙자료 검토
* 행사 진행 결과보고 등 첨부</td></tr>
<tr><td>○ 타 센터와의 차별성 확보 노력</td><td>1</td></tr>
<tr><td>○ 타 센터와의 협업을 위한 자체적 노력
(해수부 주도 행사 및 사업, 센터 간 단순 문의 등 제외)</td><td>1</td></tr>
<tr><td>○ 센터 직원 임금수준의 적정성(최고임금 대비 최저임금)</td><td>1</td></tr>
<tr><td rowspan="2">가점</td><td>○ 센터 사무실의 접근성(대중교통 연계성, 주차장 확보 여부 등)</td><td>+0.5</td><td rowspan="2">증빙자료 검토
*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첨부</td></tr>
<tr><td>○ 센터 업무 외 사업 추진 여부</td><td>+0.5</td></tr>
<tr><td>감점</td><td>○ 자문의원/운영위원 활용 성과</td><td>-1</td><td>증빙자료 검토
*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첨부</td></tr>
</table>

②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학기 사무관 한정수	044-200-5650 044-200-565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어촌마을 주민의 역량강화 도모

○ 주민 스스로 현안사항을 도출해보고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서 향후 어촌개발사업 추진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배양

2.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제49조의3

* 해수부장관은 어촌의 소득 증대,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어촌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의2 및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2호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제28의2(**'15년 신설**)에 따라 '16년부터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어촌특화역량강화를 시행하며, **미설치 지역은 동 사업을 통해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어촌특화역량강화 만족도 (단위: %)	87.0	84.7	85.2	85.9	86.9	매년 12월	○ (종합만족도)= (전반만족도)×50%+ (요소만족도)×30%+ (사회적만족도)×20% ※ 위 종합만족도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기획재정부) 모형인 PCSI모형에 준하여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00**	**100**	**100**	**100**
- 국 비	100	100	100	1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1호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1호

○ 사업자 선정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6호에 해당되는 어촌주민 및 공동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대상지에 대한 공모·선정·평가 관리 지원

○ 사업대상지 주민에 대한 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 지원

○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문단 운영 지원

○ 역량강화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어촌 주민 만족도 조사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 국고 100%(민간경상보조)

○ 지원한도 : 2019년도 어촌특화역량강화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범위 내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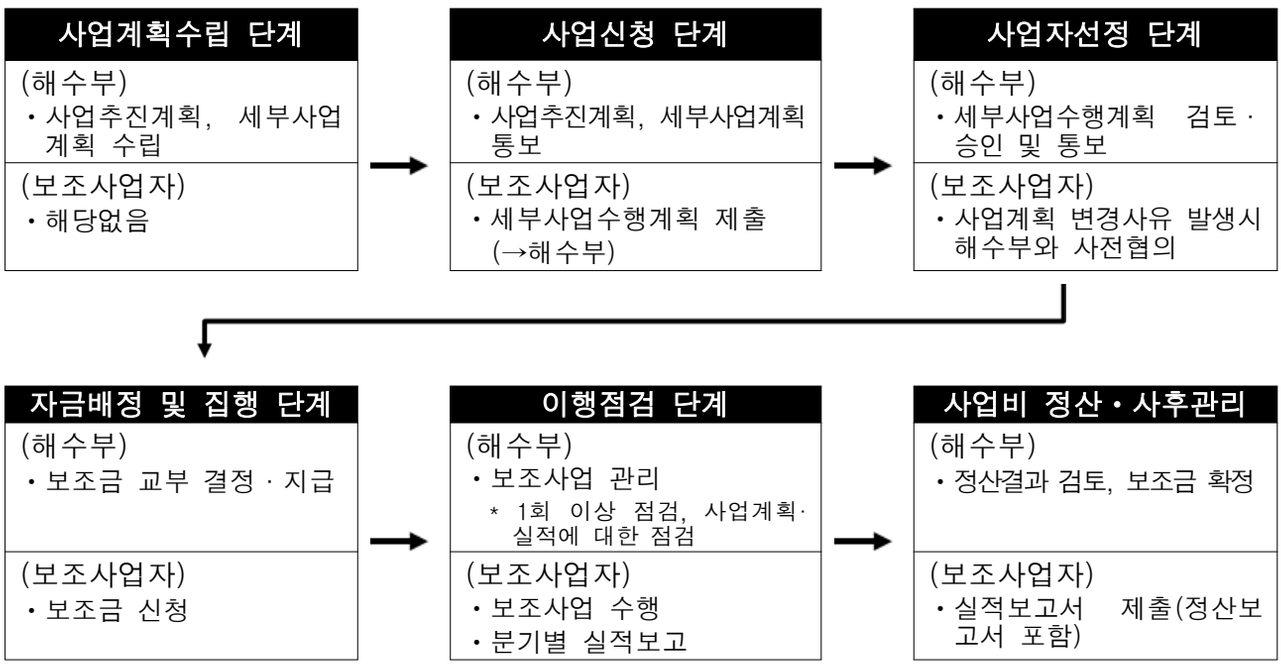

1.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어촌특화역량강화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어촌특화역량강화 민간경상보조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조사업자에 통보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에서 통보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세부사업계획에는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및 보조금 집행계획 포함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제출 받은 세부사업추진계획을 검토·승인하여 보조사업자에 통보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기간, 사업비 증감 등 사업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하여 중요사항은 승인을 받아 변경 조치하여야 함. 다만, 사업비의 비목간 20% 이하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보조사업 기관에서 자체 검토·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결과 보고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로부터 분기별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고 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개산급) 교부를 결정·지급

○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수행내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실시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 등 상황 점검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승인 결정 후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개산급) 교부 및 국고 송금 요청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 사항은 보조사업 기관에서 자체 검토·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결과 보고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2개월 이내에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사업성과 및 관리를 위해 1회 이상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사업 및 예산집행실적, 사업수행의 적정성 및 현장실태 등 사업계획 승인내용 이행상황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 목적 및 성과를 달성하도록 보조사업을 수행

○ 분기별 사업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실적 및 성과를 익년 1월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6.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사업의 실적이 법령, 사업비 집행 내용 또는 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보조사업 시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추진 부진사항은 중점적으로 관리

○ 보조사업비 집행결과 다음과 같은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부를 취소하고, 취소에 해당하는 사업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한 회수 조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년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19년도 성과측정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원 칙

○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만족도, 교육 만족도, 사업 이해도 등에 대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 주관기관 : 외부 리서치 만족도조사 전문기관

○ 평가기간 / 평가대상 : '19. 11~12월 / 사업대상마을 어촌주민

○ 평가기준 : 사업 만족도, 교육 만족도, 사업이해도 등

- 성과지표 : 어촌특화역량강화 주민 만족도(%)
- 지표산출시기 : 매년 12월
- 측정방법 : 사업지 대상 어촌마을 주민 설문조사
- 측정산식 : (종합만족도)=(전반만족도)×50%+(요소만족도)×30%+(사회적만족)×20%

다. 평가 후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추진 부진사항은 중점적으로 관리

라. 환류

○ 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등을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

③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학기 사무관 손소연	044-200-5650 044-200-56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사무장을 지원하여 어업 외 소득증대와 어촌활력 증진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어촌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한시적으로 사무장 채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무장은 직무수행계획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직무를 수행

3. 근거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

4.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19 목표치	최근 5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여성사무장 채용율(%)	59.5	51.8	54.8	55	57.1	59.5 (추정)	차년도 1월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무장 채용 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5. 연도별 지원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592	1,592	1,592	1,592
- 국 비	800	800	800	800
- 지방비	800	800	800	800
- 자부담	-	-	-	-

※ 사업량(예산안)은 예산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Ⅱ. 2019년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2-1) 사업자격

○ 1순위 : 지원 년수(회차 수)가 적은 마을

○ 2순위 : 별지 제11호에 따른 평가점수가 높은 마을

○ 3순위 : 어촌체험휴양마을 등급을 획득한 마을

○ 4순위 : 여성사무장 채용마을(성인지 사업으로 여성사무장 우선지원)

* 마을에서 지원 대상마을 신청 시 채용대상자를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 등 적용

2-2) 사업운영

○ 어촌체험휴양마을에 고용된 사무장은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시·군·구는 업무 추진 실적 및 현황 등을 점검하여 인건비 지급

○ 사무장 채용은 어촌체험휴양마을(어촌계), 사무장, 시장·군수 3자간 협약 체결

* 마을사무장은 마을에서 채용하며, 시·군은 마을에서 사무장 채용에 필요한 행정지원

2-3) 사무장 자격 및 업무

가. 자격

○ 채용공고일(또는 재계약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사무장 주요업무 및 채용 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 상 담당업무를 원활하게 수행가능한자

○ 상근직으로 근무가 가능하며, 타 업무를 겸직하지 않아야 함
- 다만, 지원 대상마을 및 시장·군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영어·영농은 겸직 가능
- 성인지 사업으로 동일한 조건일 경우 여성 우선순위 적용
- 지원 대상마을 대표의 직계존속인 자 또는 배우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마을대표와 마을사무장 직책은 겸임 불가
- 가급적 어촌계원은 배제하고 체험 전문가 등을 채용

나. 업무

○ 어촌 특성에 맞춘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어촌체험휴양마을의 핵심 자원인 바다에 대하여 물 때, 바람, 해상기상, 해양자원 등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
- 주요어법 안내, 지역 특산 수산자원에 대한 특징 안내
- 체험 진행 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조치 상식 보유

○ 체험활동 안내·지도
-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필요한 규정 숙지
- 마을의 인문 자원 및 전통문화, 풍습, 전설, 설화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화
- 어업인들의 특성, 정서 등을 이해시킴
- 특산 수산물의 조리방법 안내

○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 어촌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활용
- 바다여행(www.seantour.com) 마을별 홈페이지 “운영실적 관리”창에 체험휴양마을 운영실적 작성
- 어촌체험휴양마을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 작성

○ 회계·고객관리 등 체험휴양마을사무
- 모든 일처리는 문서화 및 투명한 회계정리
- 1사1촌, 1교1촌 등 자매결연,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노력

○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 체험휴양마을 운영 및 행사 등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교육시키거나,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수립 등

○ 마을특산물 판매 등

- 체험프로그램 운영 전담 뿐 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산 특산물의 판매 대행 등 마을대표 및 주민과 의논하여 업무 진행 등

○ 멘토링 참여

-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멘토링 제도 운영에 따라 멘토로 선정된 사무장은 월 2회(년간 20회 이상) 미흡마을 또는 발전가능마을 사무장의 방문을 받거나 방문하여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함
- 멘토로 선정되지 않은 마을의 사무장은 멘토의 자문 및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멘토마을을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아 자문 및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음 (월 1회 이내)

*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는 멘토링에 참여하는 멘토 및 멘티의 활동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멘토링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기타 체험휴양마을 운영활성화를 위한 업무

2-4) 지원 제외 대상

○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어촌계(공동체)에서 운영하지 않고 타인 등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는 등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원 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지원대상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및 해양수산부에 선정 보고된 어촌체험휴양마을

나.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무장 채용비용 지원 :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75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다만, 최근 3년 간 체험소득(직접소득의 합계)이 평균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월 지원금액의 10%를 감축

*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차액은 지자체 또는 마을에서 추가 지급, 또한 사무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은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함

** 당해연도 체험소득은 어촌체험휴양마을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당해연도 직접소득의 합계를 말함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가. 지원월수

○ 지원기간 : 12개월(1개월 미만은 채용일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

나.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지자체→어촌마을) 등

다. 지원방법

○ **(시·군 → 마을)** 첫 분기에는 협약서 및 채용상황 등 확인 후 보조금 지원, 두 번째 분기부터는 급여지급 및 4대 보험료 납부 및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여부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선 지급 후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분기는 집행확인 후 정산 지급 가능

** 협약내용 등에 따라 시·군별로 집행방법을 정하여 지급 가능

○ **(마을 → 사무장)** 협약에 따라 매월 보조금 통장에서 급여를 인출하여 사무장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라. 지원한도 : 마을사무장 1인당 월 175만원(국비 50%, 지방비 50%)

6.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044-200-5662~5663)

○ 시·도 : 해양수산 업무 관련 과

○ 시·군·자치구 : 어촌체험휴양마을사무장 채용지원 담당과

다. 기관별 역할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 해양수산부, 시·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지침시달, 시·도별 사업량 배분(해양수산부)
- 지원 대상마을 선정 및 지방비 확보(시·도)

○ 사업시행 및 예산 집행 : 시·군·자치구

- 지원 대상마을 추천 및 사무장 채용대상자 공모·선정
- 협약 체결, 이행점검 등 사업 사후관리 및 보조금 지급

라. 사업추진체계

< 업 무 흐 름 >	<시기>	<주 요 내 용 >
지침 시달·홍보 (해양수산부→시·도→시·군→마을)	전년도 11월	- 사업지침 시달 및 시·도별 사업량 배분(해양수산부) -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시·군→마을)
⇓		
지원대상마을 신청 (마을→시·군→시·도)	전년도 11월	- 지원 대상마을 신청(마을→시·군→시·도) · 마을에서 지원서, 사무장운영계획서 제출·신청 ·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마을을 추천
⇓		
지원대상마을 선정 (시·도)	전년도 11월	- 지원 대상마을 선정·통지(시·도→시·군→마을) - 해양수산부에 선정결과 보고(시도→해양수산부)
⇓		
사무장 채용대상자 공모·선정 (시·군)	전년도 11~12월	- 채용대상자 공모(시장·군수) - 채용대상자 신청(희망자→시·군) - 채용대상자 선정·통지(시·군→마을, 사무장) ·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 해양수산부에 선정결과 보고(시·군→시도→해양수산부)
⇓		
협약 체결 및 승인 (마을·사무장·시군)	전년도 12월말	- 시·도별 사업량 최종 확정 배정(해양수산부→시·도→시·군) - 협약체결 및 승인요청(마을, 사무장→시·군) - 협약승인(시·군→마을, 사무장)
⇓		
사후 관리 (마을)	년중	- 이행상황 점검(시·군, 월별 1회) · 협약내용 이행·준수 여부 등 - 보조금 지급(시·군, 월별 또는 분기 1회) · 이행상황 점검 후 지급(마을→시군→사무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단계

가. 해양수산부

○ 시도별 사업 수요조사를 통하여 시·도별 사업물량 배정 등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에서 예비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을 배정하고, 필요시 시·도간 사업량 조정 및 재배정 실시

나.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근거로 세부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

다.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해양수산부 및 시·도지사가 수립·시달한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 시행시침을 홍보하여 체험휴양마을에서 마을사무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제반사항을 강구하여 시행

다. 어촌체험휴양마을

○ 사업지원 대상마을로 선정 받고자 하는 마을은 어촌계의결 또는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3. 사업자 선정단계

가. 지원대상마을 선정

1)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신청마을에 대하여 내용의 사실여부를 반드시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운영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대상마을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마을을 시·도지사에게 추천

* 추천 대상마을과 협의하여 신청서 및 운영계획 수정 가능

○ 시·도지사로부터 지원 대상마을 선정 통보가 있을 시 해당마을에 결과 통보

*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 및 후순위 마을 목록을 관리하여, 향후 사업변경 시 활용

2)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도별 사업물량 내에서 아래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마을로 선정

-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되거나,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보고 되었는지 확인
- 지원 대상마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지원 대상마을 통지 및 보고

- 시·도지사는 선정된 지원 대상마을을 시·군에 통지하고, 해양수산부에 선정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보고

* 시·도지사는 지원 대상마을을 시장·군수에게 통보 시, 미 선정된 신청마을 중 향후 지원이 적합한 후순위마을 목록을 함께 통보

나. 사무장 채용대상자 선정

1) 채용대상자 공모

가)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무장 담당업무, 직무수행내용 등을 대상마을과 협의 후 공모

○ 전년에 사무장채용을 지원한 마을에 당년에도 계속 사무장채용을 지원하는 경우,

- 어촌체험휴양마을과 근무 중인 사무장이 상호간 협약을 체결하여 사무장 채용지원을 받고자 연명으로 건의(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첨부)하고, 시군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 채용대상자공모 및 선정위원회 개최 절차 생략
- 마을 자체 채용 사무장(6개월 이상 채용하였고, 월 보수가 1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대해 계속채용 건의가 있을 시에는 시·군에서 동 지침에 따른 사무장 자격 여부를 명확히 확인 후 인정여부 결정

○ 여성의 참여 기회 확대 차원에서 시·군 홍보지 및 지방지 게재, 시·군 및 마을 홈페이지 등에 공모하고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해서는 알림 문서를 통지하는 등 별도 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일반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시·군별 공모일정을 시·도 지방지 게재 및 시·도 홈페이지공고 등에 적극협조

나) 사무장 채용 희망자

○ 마을사무장 채용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채용희망마을 현지방문을 실시한 후, 지원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등)를 첨부,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무장은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의무 사항으로 체험휴양마을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방안과 월 1회 이상 업데이트하는 것을 명시하여야 함.

2) 채용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직무수행계획 설명회 및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사무장 채용이 적합한 자를 선정

* 선정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대상마을 대표 및 주민이 30%이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아울러 본 사업은 성인지 예산이므로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여성이 50%이상 되도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

** 채용대상자는 평가표(별지 제12호 서식)를 참조하여 평가·선정

- 채용대상자는 추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무장 채용결과를 지원 대상마을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채용 결과(별지 제7호 서식)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에게 추후,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하는 교육과정을 지정기간 내에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을 통지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 목록과 미 선정된 신청자 중 향후 지원이 적합한 후보자 목록을 관리하여야 함

나)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 사무장 채용결과(별지 제7호 서식) 보고

4. 사업시행 단계

가. 협약 체결 등

1) 체험휴양마을 및 마을사무장

○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는 협의를 거쳐 가협약서를 3부 작성하고, 시장·군수는 협약 체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적정화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등 지원

- 시장·군수는 필요시 일시·장소를 정하여 협의회 개최

* 협약기간은 매년 12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협약내용에는 근무시간, 휴무일, 후생복지, 편의제공, 4대보험, 퇴직급여 등 복무 및 활동 등에 관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

○ 지원 대상마을은 가협약서와 함께 채용대상자와 협의를 거쳐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재작성·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협약 승인 요청

2)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마을로부터 가협약서 및 첨부문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 확인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협약서에 날인하고 협약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협약 승인 조치

○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마을, 채용대상자와 협약 체결 시 지원금액 결정

* 시장·군수는 협약승인 및 지원금액 통보 시 본 지침상의 협약 무효·해지·변경사유를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나.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등

○ 허위나 거짓으로 인한 협약은 무효가 되며, 기 지원한 금액 전체를 회수

○ 시장·군수는 당초 협약에도 불구하고 사무장 중도 사직 등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신규협약 체결 가능

* 신규 협약의 종료기한은 전임자(마을)의 종료기한을 승계

** 사무장 중도 사직으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시·군은 10일 이내에 채용대상자 선정 시 후보자에 대하여 사무장 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채용할 수 있으며,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 3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선정 가능

- 사무장 재선정 의지가 없거나 재선정 추진에도 불구하고 미채용 되었다면 시·도에서 통보받은 후순위 마을에 대해 신규협약 체결 추진
- 시·군에서 재채용이 불가능 할 경우,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사전 보고한 후 타 시·군에 배정 할 수 있음

○ 당초 협약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상의 변경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을 변경 할 수 있음

- 협약서 상에 정해진 사정변경사유 또는 협약쌍방의 합의에 따라 중요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체결의 예에 따름

* 중요협약사항 변경 : 지원금액, 담당업무 및 주요내용, 추진목표, 기타 협약의 본질적 요소라고 인정되는 사항

** 지원 대상마을은 협약서 변경 안 및 첨부문서 사본, 협약변경이유서(서식 자유, 협약쌍방 서명날인) 각 1부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협약의 무효·해지·변경 및 이에 따른 자금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함

다. 협약 체결 후 사업이행

1) 마을 사무장

○ 지원대상마을과 채용대상자는 협약서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적을 바다여행 사이트(www.seantour.com) 마을별 운영자 페이지 “운영실적 관리”창에 등록하여야 함

○ 사무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이론 및 현장교육)을 년 1회이상 이수하여야 함

- 우수사무장으로 선정된 자는 2년에 1회 이상 이론교육 이수 가능
- 모든 사무장은 현장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하나, 현장교육 강사로 출강 시 현장 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봄

2) 어촌체험휴양마을

○ 체험휴양마을은 마을사무장에 대한 4대보험 납부실적 및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실적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시장·군수에게 제출

○ 채용대상자와 지원 대상마을은 사업집행 분기단위로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를 익월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

3)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사무장 추진실적을 추진상황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및 바다여행 사이트(www.seantour.com) 시스템을 통해 운영실적을 확인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해양수산부

○ 사업량에 대한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각 시·도에 자금배정

나. 시·도지사

○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매칭하여 시·군에 자금배정

○ 시·군의 분기별 집행실적을 종합하여 익월 15일까지 집행실적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다.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채용대상자와 지원 대상마을에서 별지 제9호 서식의 추진상황 보고서(사업추진기간 종료이후에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1주 이내 증빙서류 및 현장 확인

- 허위사실, 협약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이한 사항이 없을 경우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마을이 마을사무장의 계좌에 입금한 통장사본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송금자와 수취인 확인이 가능한 입금확인서로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현장 확인 후 직무수행계획서, 추진상황(결과)보고서와 상이한 점이 발견될 경우

* 경미한 경우는 보고서 재작성 또는 협약의 이행을 촉구

** 협약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반 또는 사업의 목적 일탈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촉구(시정이 안 될 경우 보조금 지급 중단)

*** 지원 대상마을의 추진상황(결과) 보고서에 대한 시·군의 현장 확인 시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

○ 보조금 지급은 지원 대상마을 보조금 통장에 입금

-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되, 첫 분기에는 협약서 및 채용상황 등 확인 후 보조금 지원, 두 번째 분기부터는 급여지급 및 4대 보험료 납부 및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여부 등을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선 지급 후 확인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내용 등에 따라 시·군별로 집행방법을 정하여 지급 가능

○ 시장·군수는 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집행실적을 시·도에 보고

라. 어촌체험휴양마을

○ 지원 대상마을은 사업추진상황(결과)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 제출(통장사본 또는 입금확인서를 첨부)시 시장·군수에게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

6. 이행점검단계

가. 사업추진점검

1)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추진상황보고서 및 자체조사를 통해 운영기간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운영내용이 부실한 경우 개선을 촉구하고, 그 후로도 개선이 없을 때에는

- 귀책사유가 지원 대상마을에 있을 경우 협약 해지 및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며 시·도에서 통보한 후순위 대상마을로 승계하거나 지원 대상마을 선정절차 등을 통해 타 체험휴양마을에 알선

- 귀책사유가 사무장에게 있을 경우 협약을 해지하며, 향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 참여를 3년간 제한하며, 시·군 사무장채용대상자 선정 시, 관리 목록 후보자에 대하여 사무장 채용 절차를 생략하고 채용하거나 채용대상자 선정 절차 등을 통해 타 대상자를 알선

○ 지원 대상마을 신청 또는 관련 보고 시 지원 대상마을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무장 채용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대상마을 지정 취소 및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리

○ 채용대상자가 신청 또는 관련 보고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관련법령에 의하여 처리

○ 시장·군수는 점검결과 보조금 회수 등의 사유발생시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2) 시·도지사

○ 시장군수가 제출한 사업추진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나.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협약기간 중 협약 쌍방의 협약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마을 및 채용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실시
- 협약 이행여부 점검, 개선요구사항 지도·감독, 시·군과 사무장간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정기 협의회 운영 등)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시행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 추진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는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마을사무장 운영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지극히 불량한 경우 예시>

* 사무장의 근로능력이 없거나 전문적 지식이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채용을 3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근로능력 :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능력)
* 마을의 시설관리 상태나 위생상태가 지극히 불량하여 협오감을 줄 경우(이 경우 해당사진 첨부)
* 마을운영의 독단적 추진으로 다수주민의 민원이 있는 경우(어촌계원 1/2이상 민원시)
* 기타 회계처리 및 급여지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

다. 제 재

○ 지원 대상마을 선정 취소 등

- 지원 대상마을 신청 또는 관련 보고 시 지원 대상마을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사무장 채용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 대상마을 지정 취소 및 지원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향후 지원 대상마을 지정 배제

* 다만,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고, 3년 이상 마을 스스로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마을로 선정 가능

- 바다여행 사이트(www.seantour.com)를 통한 체험휴양마을 운영실적 입력이 2개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7.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비 집행결과에 의거 회계연도 종료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시·군의 실적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정산보고

8. 추진상황 등 보고

가. 체험휴양마을 운영책임자 및 사무장 → 시장·군수·구청장

○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적(별지 제13호) 입력 : 매일 또는 주간

* 입력방법 : 운영책임자 또는 사무장이 바다여행(www.seantour.com) 마을별 홈페이지 “운영실적관리”창에 운영실적을 매일 또는 주간 간격으로 작성(주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0” 입력필요)

○ 채용대상자와 지원 대상마을은 시장·군수에게 매분기 사업추진결과(별지 제9호 서식)를 익월 10일 이내에 작성·제출

나.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사무장 채용결과(별지 제7호 서식) : 사업 전년도 12월 초순까지

○ 추진현황(결과)보고(별지 제5호 서식)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추진결과(별지 제10호 서식)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다. 시·도지사 → 해양수산부

○ 지원 대상마을 선정결과(별지 제6호 서식) : 사업 전년도 12월 중순까지

○ 사무장 채용결과(별지 제7호 서식) : 사업 전년도 12월 말까지

○ 추진현황(결과)보고(별지 제5호 서식)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추가선정 및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변경의 경우 익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추진결과(별지 제10호 서식) 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라. 체험휴양마을 운영책임자 및 사무장 → 한국어촌어항공단

○ 어촌체험휴양마을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 : 매년 3월 10일까지

8. 사업평가 및 환류

가. 사업평가

○ 해양수산부는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연합회 및 마을사무장,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평가(점검)를 실시하고 향후 발전방향 모색

나. 환류

○ 매년 지자체로부터 우수사무장을 추천받아 멘토링 제도 운영을 위한 멘토로 활용

- 마을 : 사무장 채용 우선지원 배려
- 사무장 : 우수사무장은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현장교육 시 강사 및 멘토링 제도 운영 시 멘토로 활용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희망 수요조사 : 시·군·구는 관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사업수요를 조사하여 시·도를 통해 제출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신청기한 : 2019. 3. 31

○ 신청방법 :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공문으로 제출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주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향후 문서로 통보

[참고]

○ 별지 제1호 서식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마을용)

○ 별지 제2호 서식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계획서(마을용)

○ 별지 제3호 서식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채용희망자용)

○ 별지 제4호 서식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계획서(채용희망자용)

○ 별지 제5호 서식 : 사업추진 현황(결과)보고(분기별)

○ 별지 제6호 서식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대상마을 목록

○ 별지 제7호 서식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결과

○ 별지 제8호 서식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협약(안)

○ 별지 제9호 서식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보고서

○ 별지 제10호 서식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

○ 별지 제11호 서식 : 지원 대상마을 선정 심사평가표

○ 별지 제12호 서식 : 채용 대상자 선정 심사평가표

○ 별지 제13호 :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적 작성요령

○ 별지 제14호 서식 : 어촌체험휴양마을 관리대장 작성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 00년도 사업 수요조사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마을용 : 앞면①>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

①신청마을명(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마을일반현황	(가구수) 호 (어가 : 호, 반농반어가 : 호, 비어가 : 호) (인구수) 명 (남 : 명, 여 : 명) (어촌계원수) 명 (남 : 명, 여 : 명) (어선세력(재적어선)) 척 (주요생산물 및 생산량)		
③사업 참여실태	(사업참여가구수) : 호 (어가 : 호, 반농반어가 : 호, 비어가 : 호) (사업내용) : 민박 호, 체험프로그램 운영 호, 어가식당 호 어업특산물 판매장 호, 기타 호		
④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현황			
⑤마을사무장 운영계획(요약)			
⑥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 이수실적			

<마을용 : 앞면②>

<table>
<tr><td>⑦어촌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및 주민 역할분담내용</td><td colspan="12"></td></tr>
<tr><td>⑧마을 홍보 실적</td><td colspan="12"></td></tr>
<tr><td rowspan="5">⑨어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 수</td><td colspan="2" rowspan="2">구분/년도</td><td colspan="2">2014년</td><td colspan="2">2015년</td><td colspan="2">2016년</td><td colspan="2">2017년</td><td colspan="2">2018년</td></tr>
<tr><td>방문객 수 (천명)</td><td>증△감 (%)</td><td>방문객 수 (천명)</td><td>증△감 (%)</td><td>방문객 수 (천명)</td><td>증△감 (%)</td><td>방문객 수 (천명)</td><td>증△감 (%)</td><td>방문객 수 (천명)</td><td>증△감 (%)</td></tr>
<tr><td colspan="2">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체험시설 이용객</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체험시설 미 이용객</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8">⑩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td><td colspan="2" rowspan="2">구분/년도</td><td colspan="2">2014년</td><td colspan="2">2015년</td><td colspan="2">2016년</td><td colspan="2">2017년</td><td colspan="2">2018년</td></tr>
<tr><td>마을 소득 (백만원)</td><td>증△감 (%)</td><td>마을 소득 (백만원)</td><td>증△감 (%)</td><td>마을 소득 (백만원)</td><td>증△감 (%)</td><td>마을 소득 (백만원)</td><td>증△감 (%)</td><td>마을 소득 (백만원)</td><td>증△감 (%)</td></tr>
<tr><td colspan="2">계</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직접 소득</td><td>체험프로그램 이용료</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민박</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식사</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특산물 판매 등</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간접(기타) 소득</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⑪사무공간 및 숙식제공 여부</td><td colspan="12"></td></tr>
<tr><td>⑫기타 특이사항</td><td colspan="12"></td></tr>
<tr><td>⑬확인란 (시장·군수)</td><td colspan="12"></td></tr>
</table>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상과 같이 20○○년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년 월 일

신청마을대표 : (인)

※ 별첨 :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마을용 : 뒷면①>

※ 작성요령

① 신청마을(어촌계) : 신청마을의 행정주소와 어촌계명,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

② 마을일반현황 : 신청마을의 가구수, 인구수, 어촌계원수, 어선세력, 주요생산물 및 생산량을 기재

③ 사업 참여실태 : 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가구수와 가구별 참여내용을 기재

④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현황 : 다음 사항을 기재

- 가. 마을단위 대표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종류 및 운영, 마을 축제 등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

  ※ 연간 실시회수, 프로그램 내용 및 효과 등을 상세히 설명·기재

- 나.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마을과 주변지역 관광자원 활용정도 및 잠재자원 발굴·활용가능성

  ※ 지역 자원과 프로그램의 연계여부, 추가적인 잠재자원 발굴 및 프로그램과 연계가능성 등을 상세히 설명·기재

- 다. 서비스 수준 및 고객관리현황

  ※ 마을·참여어가의 서비스 수준, 고객관리카드 작성·비치 및 사후관리 주요내용·성과 등을 기재

⑤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요약) : 마을사무장의 담당업무 및 주요내용, 운영계획, 기대효과 등을 기재

※ 별첨의 운영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 ⑦의 주민역할분담내용과 구분되도록 사무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⑥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 마을리더·주민의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 현황을 기재(교육명, 교육일시, 교육기관 등을 명시)

<마을용 : 뒷면②>

※ 작성요령

⑦ 어촌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 및 주민역할분담내용

- 마을리더·주민 등의 사업참여의 적극성 등 추진의지, 참여주민의 역할분담(주민조직체계 등)내용을 기재

⑧ 마을 홍보 실적 : 다음 사항을 기재

- 가. 마을 홈페이지 보유여부 및 구성

  ※ 홈페이지 내용, 예약·사후관리 상태, 타 사이트 링크 등

- 나. 마을 홍보 책자 등 자체 홍보물 제작·보유현황(활용실적 등)

- 다. 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일시, 매체, 주요내용 등을 기재)

- 라. 1사1촌 결연·추진현황,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노력

⑨ 어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수

- 어촌체험관광 관련 방문객수 및 증감율(전년대비), 방문객(체험시설 이용객, 미 이용객 구분)현황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

⑩ 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 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 및 증감율(전년대비)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민박 운영, 농어업특산물 판매, 기타로 구분)

주) 직접소득 : 체험프로그램이용료, 체험프로그램 이용객의 민박, 식사 및 특산물 판매 등

간접소득 : 상기를 제외하고, 일반 방문객으로 인한 관광소득

⑪ 사무공간 및 숙식제공여부 : 사무공간 및 숙식제공여부, 제공시 방법에 대해 기재

⑫ 기타 특이사항 : 마을사무장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⑬ 확인란(시장·군수) : 시장·군수의 검토의견, 추천여부 등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마을용 : 앞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운영계획서

<table>
<tr><td>①신청마을</td><td colspan="4"></td></tr>
<tr><td>②추진목표</td><td colspan="4"></td></tr>
<tr><td>③사무장채용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도</td><td colspan="4"></td></tr>
<tr><td>④운영계획 개요</td><td colspan="4"></td></tr>
<tr><td>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5">⑥운영계획</td><td>분기</td><td>담당업무</td><td>주요내용 및 계획</td><td>비고</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⑦기대효과</td><td colspan="4"></td></tr>
</table>

이상과 같이 20○○년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년 월 일

신청마을대표 : (인)

<마을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신청마을 : 신청마을의 주소와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

② 추진목표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③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관심도

-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어촌계)합의여부, 마을리더·주민의 이해도 및 관심도 등을 상세히 기재

④ 운영계획 개요 : 사무장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의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⑥ 운영계획 : 사무장 운영계획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⑦ 기대효과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를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3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①나 이(만)		②학력(전공)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③채용희망마을			
④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⑤직무수행계획 (요약)			
⑥주요경력			
⑦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년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마을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나　이(만) : 사업시행연도 1월1일 기준

② 학력(전공) : 졸업년도 및 전공 등을 기재하되, 고등학교부터 기재

(예시 : 00학교 00대학 00과(전공) 00년도 졸업)

③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행정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④ 자기소개 및 지원동기 : 지원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⑤ 직무수행계획(요약) : 사무장 채용 시 직무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별첨의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⑥ 주요경력 : 예시된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 또는 채용희망마을의 운영계획서상의 담당업무 관련 분야 경력을 포함하여 주요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년,월을 표기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 등도 포함하여 기재

* 마을사무장의 주요 담당업무(예시)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주민교육 등

⑦ 기타 특이사항 : 채용희망마을에 특별히 요구하는 내용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채용희망자용 : 앞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table>
<tr><td>①신청자</td><td colspan="4">(성명) (생년월일)</td></tr>
<tr><td>②채용희망마을</td><td colspan="4"></td></tr>
<tr><td>③추진목표</td><td colspan="4"></td></tr>
<tr><td>④직무수행계획
개요</td><td colspan="4"></td></tr>
<tr><td>⑤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5">⑥직무수행계획</td><td>월</td><td>담당업무</td><td>주요내용 및 계획</td><td>비고</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r>
</table>

이상과 같이 20○○년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20○○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채용희망자용 : 뒷면>

※ 작성요령

① 신청자 : 신청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

② 채용희망마을 : 채용희망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을 기재

③ 추진목표 :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목표를 기재

④ 직무수행계획 개요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

⑤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 : 사무장 직무수행시 담당업무(분야) 및 주요내용을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 담당업무(분야) 작성예 : 마을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체험활동 지도, 마을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관리·운영, 회계·고객 관리 등 마을사무관리, 마을축제 등 이벤트 기획·운영, 주민교육 등

⑥ 직무수행계획 :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 (추진일정, 추진방법, 추진전략 등을 명시)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추진현황(결과) 보고 (/4 분기)

□ 사업명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사업 (단위 : 천원)

시군별	마을명	예산액			집행실적(누계)			일정		○ 기타 추가지원액, 지원항목 및 지원주체 ※예 : 4대보험 00군 00원지원) ○ 집행잔액 사유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합계										
										체험휴양마을 퇴출로 '00.8.25일 까지만 급여 산정
										사무장 신규채용시 공백기간(13일) 제외 지급

≪잔액 발생사유 및 지급내역≫

※ 예) 00시 00향마을 : 체험휴양마을 퇴출('11.8.25일) / 지급액(9,368천원) : 1~ 7월 8,400천원(매월 120만원), 8월 : 968천원 (25일분)

00시 00마을 : 신규채용 공백('11.10월) / 지급액(13,880천원) : 1~ 9월, 11~12월 : 13,200천원(매월 120만원), 10월 : 680천원 (17일분)

[별지 제6호 서식]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지원대상마을 목록

(00 시·군)

(단위 : 천명, 백만원)

연번	마을명	마을 홈페이지	-대표성명 -전화번호 -대표연령	사업추진현황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방문객 현황				매출액 현황					
					구분	계	체험시설 이용객수	체험시설 미 이용객수	계	체험프로그램 이용료	민박	식사	특산물 판매	간접소득 (기타)
					전년									
					2년전									
					3년전									

* 작성요령

-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 지원대상마을에서 운영 중인 어촌체험관광 관련 주요프로그램을 기재
- 방문객 현황 : 최근 3년간(2019년 지원일 경우 '18, '17, '16년) 어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 수를 기재
- 매출액 현황 : 최근 3년간 어촌체험관광 관련 매출액을 기재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소득, 민박소득, 특산물 판매소득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결과

연번	시·군	채용(예정) 마을	채용 신청자 수			채용(예정)자								
						성 명	주 소	연령	성별 (해당에 "○")		전화번호 (이메일)	주요경력 (이력)	출신 (해당에 "○")	
			계	남	여				남	여			귀촌	토착 주민

* 작성요령

- 채용 신청자수 : 경쟁률 파악 등을 위한 통계자료이므로, 채용희망 마을별 신청자 수를 남녀로 구분 작성
- 주요경력 : 사무장 채용대상자의 주요경력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교사 20년,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3년, 회사원 20년 등)

[별지 제8호 서식]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협약(안)

어촌체험휴양마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마을사무장 ○○○를 "을"이라 하며, 마을사무장을 채용하는 지원 대상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협약기간 :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12개월)

2. 협약내용

제1조(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업무수행) ①"병"은 "을"에 대하여 직무수행계획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을"은 직무수행계획서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병"과 "을"은 협의를 통해 근무일은 주○일, 일일 근무시간은 ○시간, 휴일은 월○회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병"과 "을"은 협의된 복무 관련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마을사무장에 대한 수당 등의 제공) ①"갑"은 "병과 을"의 협약 이행여부, 사업수행계획의 추진실적, 업무수행의 성실성 등을 점검, 확인한 후, "병"에게 분기별로 ○○○만원의 채용비용 보조금(국고,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을 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②"병"은 "을"을 채용함에 있어 협의를 통해 필요한 식사, 후생복지(보험 등) 등 편의를 제공하며, 이와 별도로 "병"은 "을"에게 월 ○○○만원의 채용비용(국고, 지방비를 합한 금액임)을 매월 지급한다.

③ "병"은 "을"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 복지를 위해 4대보험 가입 및 퇴직충담금을 마을 부담으로 적립한다.

제3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을" 또는 "병"이 허위 사실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협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협약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협약이 무효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된 보조금 등을 환수 할 수 있다.

제4조(마을사무장과 지원 대상마을) ①"을"은 당초 "병"과 협의하여 작성한 직무수행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실제 업무내용이 다르거나, 수당 등이 협약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협약

의 해약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직무수행계획서상의 업무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협약의 해약 또는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사업수행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병”과 “을”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침 및 협약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채용비용 지급 중단 및 회수, 사무장 채용대상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본 협약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협약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사항)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침과 본 협약 제1조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협약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갑”시장·군수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9호 서식]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table>
<tr><td>①지원대상마을</td><td colspan="12"></td></tr>
<tr><td>②마을사무장</td><td colspan="12">(성명) (생년월일)</td></tr>
<tr><td>③채용기간</td><td colspan="12">‘00. 00. 00 ~‘00. 00. 00</td></tr>
<tr><td rowspan="5">④ 사무장 직무 수행실적</td><td colspan="3">분기</td><td colspan="3">담당업무(분야)</td><td colspan="3">직무수행계획</td><td colspan="3">직무수행실적</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⑤마을사무장 급여지급 실적 (보조금액 기준)</td><td colspan="12">(단위 : 만원)</td></tr>
<tr><td>계</td><td>1월</td><td>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d>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⑥보조금 지급요청액</td><td colspan="12">(보조 총액) : 000,000원
(기 수령액) : 000,000원
(금회 요청액) : 000,000원</td></tr>
<tr><td>⑦기타 특이사항</td><td colspan="12">붙임 : 통장사본 및 입금확인서, 4대보험 납부실적,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실적 증빙서류 등</td></tr>
</table>

이상과 같이 20○○년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상기와 같이 ○/4분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년 월 일

보고자 : 마을대표 (인)

마을사무장 (인)

00 시장·군수 귀하

<뒷면>

※ 작성요령

① 지원대상마을 : 지원대상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

② 마을사무장 : 지원대상마을에서 직무를 수행중인 사무장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

③ 채용기간 : 협약에 따른 실질적으로 사무장이 근무한 기간부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을 기재

④ 사무장 직무수행실적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계획 대비 실적 등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⑤ 마을 사무장 급여지급 실적

- 마을에서 사무장에게 급여를 지원한 실적(보조액 기준으로 작성, 마을부담 추가지원액은 제외)

⑥ 보조금 지급요청액 : 연간 보조총액, 기수령액, 금회요청액을 기재

⑦ 기타 특이사항 : 기타 보고가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10호 서식]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table>
<tr><td>①지원대상마을</td><td colspan="13"></td></tr>
<tr><td>②마을사무장</td><td colspan="13">(성명) (생년월일)</td></tr>
<tr><td>③채용기간</td><td colspan="13">‘00. 00. 00 ~‘00. 00. 00</td></tr>
<tr><td rowspan="5">④ 사무장
직무수행실적</td><td colspan="3">분기</td><td colspan="3">담당업무(분야)</td><td colspan="3">직무수행계획</td><td colspan="3">직무수행실적</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⑤마을사무장
급여지급 실적
(보조금액 기준)</td><td colspan="13">(단위 : 만원)</td></tr>
<tr><td>계</td><td>1월</td><td>2월</td><td>3월</td><td>4월</td><td>5월</td><td>6월</td><td>7월</td><td>8월</td><td>9월</td><td>10월</td><td>11월</td><td>12월</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⑥보조금
지급요청액</td><td colspan="13">(보조 총액) : 000,000원
(지급 누계액) : 000,000원(국비 000원 + 지방비000원)</td></tr>
<tr><td>⑦종합검토의견</td><td colspan="13"></td></tr>
</table>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의 ○/4분기 추진상황(결과)를 점검 보고합니다.

20○○년 월 일

점검기관 : (인)

00 시·도지사 귀하

<뒷면>

※ 작성요령

① 지원대상마을 : 지원대상마을의 주소 및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

② 마을사무장 : 지원대상마을에서 직무를 수행중인 사무장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기재

③ 채용기간 : 협약에 따른 실질적으로 사무장이 근무한 기간부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을 기재

④ 사무장 직무수행실적 : 협약체결시 직무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계획 대비 실적 등을 분기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⑤ 마을 사무장 급여지급 실적

- 마을에서 사무장에게 급여를 지원한 실적(보조액 기준으로 작성, 마을부담 추가지원액은 제외)

⑥ 보조금 지급요청액 : 연간 보조총액, 기 수령액, 금회요청액을 기재

⑦ 종합검토의견 :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한(할) 사항을 기재

* 각 해당란에 기입할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 첨부 가능

[별지 제11호 서식]

지원 대상마을 선정 심사평가표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25	○ 마을 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 마을축제 등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시 지역자원 활용 정도 ○ 지역의 잠재자원 발굴·활용가능성 ○ 마을·참여어가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관리 현황	
2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 운영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마을의 발전가능성(기대효과)	
3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15	○ 마을리더·주민 등의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현황	
4	사업추진의지 및 관심도	10	○ 마을리더·주민 등의 체험관광사업 추진 의지(적극성 등)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5	마을 홍보 실적	10	○ 홈페이지 보유 및 내용의 충실성 ○ 마을홍보책자 등 자체 홍보물 보유 및 수준 ○ 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 ○ 1사1촌 결연,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 노력	
6	체험휴양마을 운영성과	10	○ 마을 방문객 수 및 증가율(전년대비) ○ 마을 체험객 수 및 증가율(전년대비)	
7	사무장 채용예산 지원 필요성	10	○ 사무장채용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종합평가(100)			○ 평가의견 :	

※ '대상마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12호 서식]

채용 대상자 선정 심사평가표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주요경력	40	○ 주요경력내용(실적) ○ 담당(예정)업무와의 관련성 및 연계가능성 ○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기여가능성 ○ 담당(예정)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전산 등) 및 교육이수현황(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 등)	
2	직무수행계획의 적정성	30	○ 직무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 직무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 마을발전에 대한 기여가능성(기대효과)	
3	마을사무장 으로서의 자질	30	○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이해, 애정, 관심정도 ○ 채용희망마을에 대한 사전지식, 이해정도 ○ 헌신성, 성실성, 추진력 등	
4	가점	20점	○ 여성에게 가점 20점 부여	
종합평가(120)			○ 평가의견 :	

※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13호 서식]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적 작성요령】

마을명 : 마을 시·군명 :

운영책임자 : 성명 연락처 : tel

년월일	방문객수 (인)	체험시설 이용객수 (인)	직접소득(천원)						간접소득 (천원)	운영경비 (천원)
			계	체험프로그램 이용료	민박	식사비	특산물 판매	기타		

※ 작성요령

1) 작성은 체험휴양마을 운영책임자 또는 사무장

2) 매일 기록하며, 매월단위 누계 작성

3) 산정기준

○ 방문객 : 여행객, 관광객으로 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한 총 인원

* 가능한 실제에 근접한 인원 산출

○ 체험시설 이용객 : 체험료를 지불하고 실제 체험활동에 참여한 인원

*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산출

○ 직접소득 : 체험시설 이용객이 체험과 관련하여 마을에 지불한 비용

- 체험프로그램이용료, 민박·숙박료, 식사비 및 특산물 판매 등

* 수입금 총액(운영경비 지출하기 전의 소득)

○ 간접소득 : 방문객이 마을에서 지출한 총 비용 중 직접소득을 제외한 소득

- 숙박, 식당, 매점, 주유소 등 추정소득

○ 운영경비 : 체험휴양마을 운영에 소요된 비용

- 마을주민 인건비, 종묘매입비, 재료비, 사무실 운영비 등

4) 입력방법

○ 바다여행 사이트(www.seantour.com) 마을별 운영자 페이지 “운영실적 관리”창에서 운영실적 작성(의무사항)

* 관련문의 : 한국어촌어항협회 ☏ 02-6098-0822

[별지 제14호 서식]

00 어촌체험휴양마을 관리대장

http://00000.seantour.org

【마을현황】 0 0 군 담당자 :

마 을 명		위 치	
어촌계명		가구수(어가)	
어촌계장(운영책임자)			
사무장(지원)		컨설팅	
자매결연단체			

【사업현황】

지원년도		착공일		준공일	
사 업 비					
사업내용 (주요시설)					
홍 보					
관광관련 기타투자 실적 및 계획					

【체험 및 관광프로그램】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기 타 주변관광	

【 효 과 】

구 분	방문객수(명)	체험시설 이용객수(명)	체험관광수입(천원)	
			직접소득	간접소득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 직접소득 : 체험프로그램이용료, 민박·숙박료, 식사비 및 특산물 판매 등

※ 간접소득 : 방문객이 마을에서 지출한 총 비용 중 직접소득을 제외한 소득

※ 효과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년간 기준으로 작성

주) 서식 틀 변경불가(책자제작용, 파일은 해양수산부에서 문서로 별도 송부하는 작성서식에 작성)

00 어촌체험휴양마을 안내정보

계절별 체험 프로그램	봄		
	여름		
	가을		
	겨울		

구 분	내 용	비 고
마을소개		
교통편		

사진 첨부 “최근 1년 내 촬영된 사진으로 총 12매 이상~14매 이내”
사 진 설 명 ‖ 000체험휴양마을 입구 전경

사진 첨부
사 진 설 명 ‖ 000안내센터 전경

사진 첨부	
사 진 설 명	000시설① 전경

사진 첨부	
사 진 설 명	000시설② 전경

사진 첨부	
사 진 설 명	000체험① 광경

사진 첨부	
사 진 설 명	000체험② 광경

[별지 제15호 서식]

【00년도 사업 수요조사 결과】

시·도	시·군·구	마을명	지원실적		00년도 신청 내역	비고
			지원기간	지원인원 (누계)		
○○도	○○군	○○마을	2013~2017 5명		00명	

④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학기 사무관 손소연	044-200-5650 044-200-56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체험안내소, 체험장, 숙박시설 등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지원을 통하여 체험객 편의성 및 만족도 제고

2. 근거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어촌체험마을 체험객 수(만명)	132	-	-	131	132 (목표)	'19.1	어촌체험마을에서 '바다여행(www.seantour.com)' 사이트에 입력한 실적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800	1,000	1,000	1,000	1,000
- 국 비	400	500	500	500	500
- 지방비	320	400	400	400	400
- 자부담	80	100	100	100	10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중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평가 1차 평가* 결과 80점 미만인 마을

* 해수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평가' 평가로, 직전년도 평가 결과를 적용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사업지원 자격

- 사업대상 마을 중 사업추진 의지가 있고, 사업 지원 시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마을로 해당 시도가 마을운영 역량평가* 후 선정

* [별지 1호 서식]의 기준에 따르거나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여 평가 가능

○ 선정 제외 대상

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②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평가 1차 평가 결과 80점 이상으로 분류된 마을

③ 어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태평가를 받은 실적이 없는 마을

④ 기존에 동 사업 지원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마을

○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기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체험마을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및 구축(S/W 사업은 지원 제외)

- 경관, 체험안내소, 안내판, 민박개선, 식사장소 조성, 공공화장실, 세척장, 교육장, 소공원, 체육시설, 체험 기반시설, 전통어업시설, 전통문화복원 등

- 도로 등 지자체로 등기 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는 사업비로 매입가능하나, 체험안내소 등 어촌계로 등록되는 재산의 토지는 매입불가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 : 지자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40%, 자담 10%)

* 사업성을 고려하여 자담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비로 대체 가능하며 담장, 민박개선 및 간판 등 개인시설물 설치보수 등은 자담 20%

- 사업비 집행은 자담금액의 100%를 선 집행한 이후 국비 및 지방비 집행 (보조금 정산 시에는 동일한 비율로 정산)

○ 지원한도액 : 마을 당 2억원(국비 1, 지방비 0.8, 자담 0.2)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마을, 시·군·구

○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

2.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 주관기관(시·도지사)에서는 사업계획(마을→시·군→시·도)을 종합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사업신청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시·도별로 사업량 배분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지침에 따른 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원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대상마을에 통보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

○ 지원 대상마을의 세부사업계획(별지2서식)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

○ 사업추진기관은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대상 및 투자계획 등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진

* (주요사업계획 변경) 지원 대상마을 변경 및 사업내용의 20%이상 변경

○ 사업 추진체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	→	시·군· 구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 지도·감독		·사업시행 ·사후관리 ·사업추진 결과보고

5.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는 사업추진 상황, 지방비 및 자담 확보 및 집행 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점검대상) 사업 대상 지자체, (점검반)해양수산부,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 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구에 정산 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정산보고 후 시·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

《사후관리》

○ 재산의 등기

- 도로 등 공공시설물은 시·군 등 지자체로 등기
- 체험안내소 등 공공시설물 성격에 해당되지 않는 재산은 어촌계 명의로 등기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공동 등기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

- 부동산과 종물, 기계, 장비,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재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 등의 근저당권 설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기계·장 비	구입일로부터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건축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로부터 10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시·군·구 또는 시·도에서는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제재》

○ 보조사업 완료 후 해수부장관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 처분제한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아래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반환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본 사업을 지원받은 후* 10년 이내에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을 포기하거나 농촌체험마을 등으로 이탈였을 경우, 연도별로 일할 계산(연 10%)하여 반환('19년 사업부터 적용)

* 사업이 완료된 연도부터 기산

** 예) 2016년에 지원 받아 2018년에 사업을 완료한 경우 2027년까지 의무적으로 체험마을을 운영하여야 하나 2023년에 운영 포기(이탈)하였을 경우, 국비 지원금의 50%를 반환(2023~2027까지 5년분 환수)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의 집행실적, 지방비 확보상황, 보고실적 및 사업평가 등을 고려하여 다음년도 예산 반영

- 사업부진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 삭감
- 사업평가 결과 높은 성과를 나타낸 시·도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가점부여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자자체간 연계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우선 고려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희망 수요조사 : 시·군·구는 관내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사업수요를 조사하여 시·도를 거쳐 예산신청

○ 사업신청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신청기한 : 2019. 3. 31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주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향후 문서로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지원 대상마을 선정 심사평가표

번호	평가항목	배점	평가 착안사항	평가 결과
1	어촌체험관광 프로그램	25	○ 마을 단위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 ○ 마을축제 등 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자원 활용 정도 ○ 지역의 잠재자원 발굴·활용가능성 ○ 마을·참여어가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관리 현황	
2	마을사무장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 운영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마을의 발전가능성(기대효과)	
3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실적	15	○ 마을리더·주민 등의 어촌체험관광 등 어촌지역개발 관련 교육이수현황	
4	사업추진의지 및 관심도	10	○ 마을리더·주민 등의 체험관광사업 추진의지(적극성 등) ○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채용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도	
5	마을 홍보 실적	10	○ 홈페이지 보유 및 내용의 충실성 ○ 마을홍보책자 등 자체 홍보물 보유 및 수준 ○ TV, 신문 등 언론 홍보 실적 ○ 1사1촌 결연, 출향인사에 대한 홍보, 학교·기업체 수련회 등 도시민 유치 노력	
6	체험마을 운영성과	10	○ 마을 방문객 수 및 증가율(전년대비) ○ 마을 체험객 수 및 증가율(전년대비)	
7	사무장 채용	10	○ 마을 예산으로 채용(6개월이상 및 월급여 120만원 이상인 경우) : 10점 ○ 보조금으로 채용 : 5점 ○ 미채용 : 0점	
종합평가(100)			○ 평가의견 :	

※ '대상마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관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학기 사무관 서덕훈	044-200-5650 044-200-5651

* 본 사업시행지침은 정책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촌의 고유한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관리·지정함으로서 어촌방문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어업기술과 어촌의 다원적 자원 및 생물다양성을 보전·활용하여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활용)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년차	2년차	3년차		
사업공정율(%)	20 (누계)	60 (누계)	100 (누계)	매년 12월	사업실적/사업계획×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800	800	1,300	1,000
국고보조	560	560	910	700
지방비(자부담포함)	240	240	390	300

※ '19년 이후 사업량(예산안)은 예산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자체(해수부 공문에 의한 신청 및 지정)

○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

○ 시행기관 :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받은 시장·군수

○ 예비계획을 수립한 시·군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주민협의체간의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한 시·군

3. 지원대상

○ 오랜기간 전통성을 가진 어업유산으로서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이 산재되어 있는 어촌 지역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이 잘 보전되어 있고 아름다운 경관이 형성된 어촌 지역

○ 특별하고 차별화된 지식과 기술 등 유·무형의 어업자원을 보유한 지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다원적 활용을 위한 사업 지원(H/W, S/W 포괄지원)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유지·관리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홍보·마케팅·브랜드 개발 등
- 국가중요어업유산의 FAO GIAHS(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추진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원기준 : 총사업비 7억원/개소(국고 70%, 지방비 30%)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총 사업비는 예산당국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3개년(1년차 - 보존·활용계획 수립, 2~3년차 – 사업시행)

6. 주요 사업내용

분야	사업내용	사업 세부 항목(예시)
정비 개발	기획설계	기초조사, 기본계획 수립비, 실시설계비 등
	자료조사	경관영향평가, 자원지표조사, 전통자료 수집 등
	자원정비	전통자원 복원·정비(시설·경관·시스템·어법·생태 등)
		전통자원 품격화, 리모델링, 접근로 정비 등
환경 개선	환경정비	경관 조성, 폐 시설물 철거 등
	자원보호	혐오시설 이전, 생태수로 조성 등
	가치향상	생물다양성 식생장, 탐방 데크 등
가치 제고	부대시설	접근로, 조망대, 포토 스팟 간판, 휴게소, 조명, CCTV 등
	가치창조	스토리텔링, 브랜드·프로그램 개발, 연계상품 개발 등
	연계소득	소규모 특산품 전시장, 시식코너, 테마축제장 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국가중요어업유산 사업시행지침 마련 및 공문 시달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항목, 연차별 사업계획, 항목별 사업비 산출근거, 조감도 등 포함), 주민협의체 동의서

○ 시·도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사업대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내·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에서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공개 발표평가 실시

○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공개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 선정지구에 대해 예산(안) 편성 및 확정

≪심사·평가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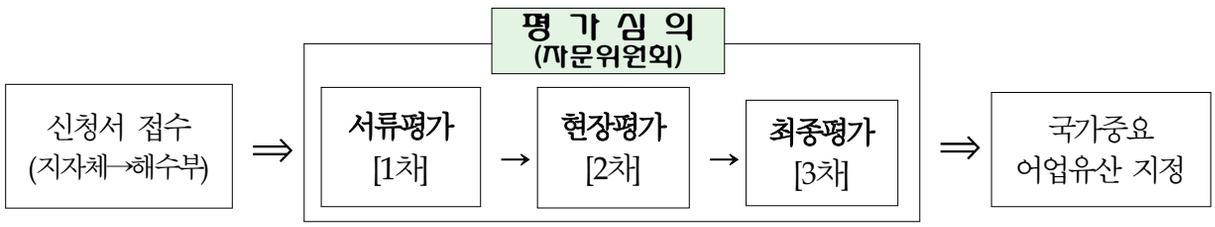

가. 자문위원회 구성

○ 어업유산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어업유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청한 어업유산에 대하여 평가 실시

- 자문위원회 구성 :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가능

※ 근거 : 「어업유산 지정 관리 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59(2015.10.07)호

나. 평가

○ 1차 서류평가 및 발표 심사

- 시·군에서 제출한 어업자원 신청서, 자원관리계획서 등의 신청서류를 국가중요어업유산 기준*을 토대로 해당 어업자원의 서류평가 및 발표 심사 진행

* 기준 : 수산물 생산성, 생물다양성, 역사성, 전통문화·지식체계, 경관

- 결정사항 : 2차 현장평가 여부

○ 2차 현장평가

- 현장 실사로 제출 서류의 적정성, 해당 어업유산 실사, 주민 의견 등을 조사

○ 3차 최종평가

- 1·2차 평가를 통합하여 위원별 평가 및 최종 평가 진행

- 위원별 평가 : '탁월', '우수', '보통'으로 기재하고 10개 항목 중 '탁월'이 7개 이상일 경우 '가', 그 외는 '부'

- 최종 평가 : 참석 자문위원 모두 '가'에 해당하면 어업유산으로 '선정'

시·도

○ 시·도는 선정된 사업대상지역을 시·군에 통보

3. 자금배정단계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 시·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구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구는 분기별 배정된 자금을 사업완료 후 검정, 정산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국고 송금

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단계

[기본계획 수립]

시·도, 시·군·구(지자체)

○ **(계획수립)** 시·군은 유산자원 기초조사 및 해당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을 받아 유지·관리 및 홍보·마케팅 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

※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지자체 공모신청서 상의 사업계획(안)을 보완하여 기본계획 수립(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가능)

- 기본계획 수립 시 필요에 따라 발굴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사전환경성평가, 경관영향평가 등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음

○ 시·군은 수립된 사업계획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검토·보완 후 해양수산부에 제출

○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성·전문성을 위해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가능

- 사업 위탁시행 시 전반적인 지도·감독 등은 시·군에서 실시

해양수산부

○ **(승인·보고)** 시·군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완료 후 해양수산부에 수립 보고한 후(시·군→시·도→해양수산부) 사업추진

[기본계획변경 절차]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군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
- 사업비의 10% 이상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검토·승인한 후 변경(시·도는 변경내역을 승인 후 15일 내에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비의 10% 미만으로서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변경

※ 사업비의 변경기준은 연간 총사업비를 말하며, 10% 이상임에도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 집행한 사업비는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

[설계, 시공, 감리, 준공 및 기타사항]

시·군·구(지자체)

○ 시·군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내용을 구체화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전문기관에 설계, 시공, 감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사업 위탁시행 시 전반적인 지도·감독 등은 시·군에서 실시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담당공무원이 수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는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는 세부내역사업의 추진실적과 자금집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등기에 관한 사항은 아래 내용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시설물 등의 등기

- 사업비를 지원한 토지·시설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확인 후 정산
  - 시장·군수가 사업비를 전부 투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
  - 시장·군수와 법인(단체)이 공동 투입한 경우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등기
- 시장·군수로 등기한 시설물의 경우 10년 이후 해당 법인에 소유권 양도 가능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처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의 제한 및 관리기간

-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
  - 건물 및 부속설비, 주요 기계·장비 등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 사업 추진상황 점검(반기별 1회)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애로 사항 등 점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필요시 세부사업내용의 수정 등을 지자체에 권고

[제 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군이 사업자금을 미집행하거나, 부당집행, 용도 외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5년간 동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사업비 정산]

사업비 정산(지자체)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 정산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

- 기타사항은「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산

○ 회계연도 별 보조금 집행 시 지방비 부담 없이 국고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점검 및 준수

6.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기간이 3년이므로 사업 공정률로 성과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원 칙

○ 사업평가는 사업기간이 3년이므로 사업 공정률을 중점적으로 평가

나. 2019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사업을 시행중인 지역

○ 평가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협조 : 한국어촌어항협회)

○ 평가 시기 : ‘19. 12월

○ 평가 기준 : 사업 진척도, 예산집행 실적 등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기 : ‘19. 6월까지 실시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 : ‘19. 6월말

○ 사업평가(1차～3차) : ‘19. 7월～10월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 ‘19. 11월말

27 어촌발전 기반조성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학기 사무관 한정수	044-200-5650 044-200-565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촌지역 낙후문제 해결과 어촌·어항 통합개발, 어촌관광 자원화 등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중장기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필요

2.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제10조(준공확인), 제13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관리), 제14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폐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제34조(지역자율계정사업의 세입과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 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75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제76조(평가)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지 관리 및 평가 지원 만족도 (단위: %)	82				신규	매년 1월	○ 사업지 대상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산출식 : 가중평균 실적값 + {(100-가중평균 실적값) × 10%} ※ 가중치 10% 설정 사유 :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가중치 10%로 조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340**	**877**	**866**	**866**
- 국 비	340	877	866	866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어촌개발지원단(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컨소시엄)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농어촌정비법 제75조에 따라 지정된 어촌개발지원단 등

○ 사업자 선정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75조에 따라 지정된 어촌개발지원단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사업에 대한 신청·접수·평가 관리 지원(중복성 등 사전 검토 포함)

○ 재정집행점검 등 현장점검 및 사업지 모니터링 지원

○ 신규사업 가이드라인 등 사업설명회, 워크숍 등 지원

○ 사업지 관리카드 작성 등 이력관리, 사후 성과관리 및 분석

○ 어촌개발사업 업무지원시스템 관리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 국고 100%(민간경상보조)

○ 지원한도 : 2019년도 어촌발전기반조성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범위 내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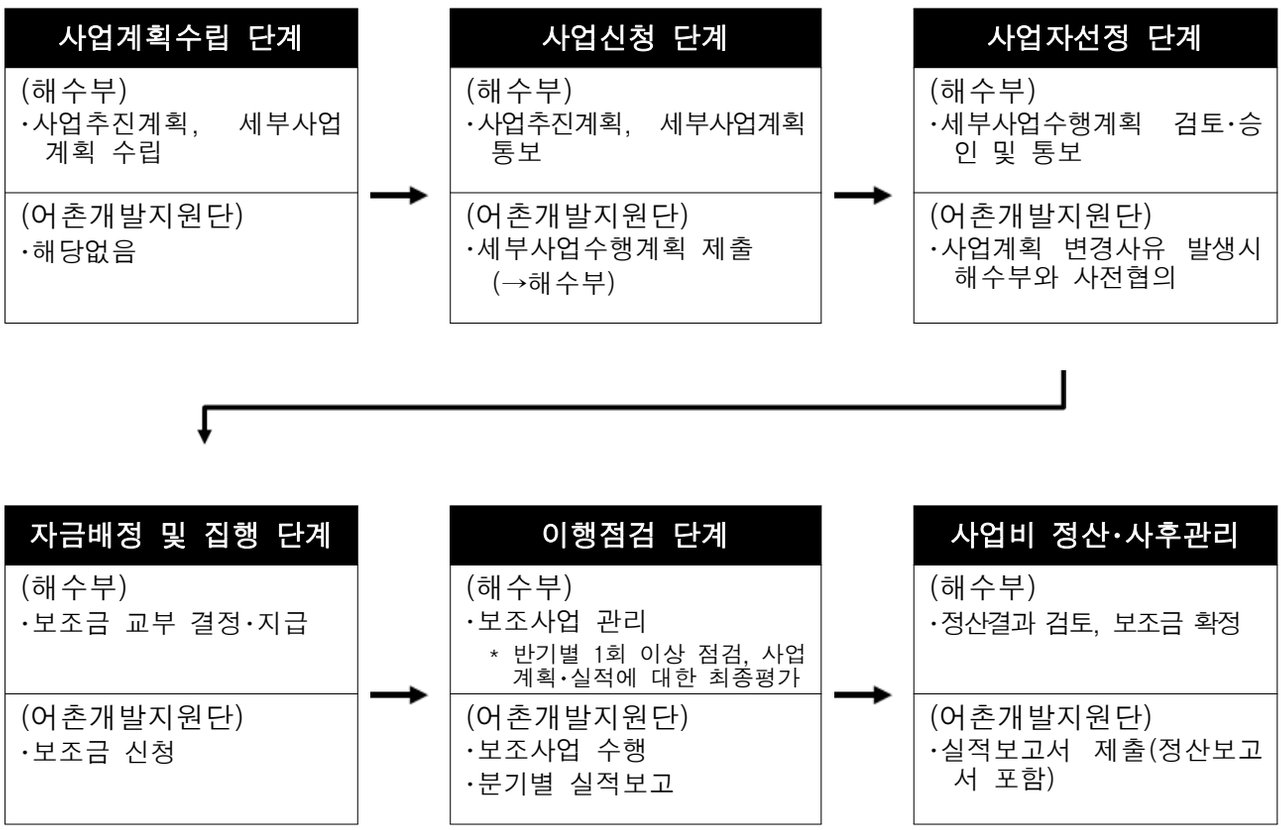

1.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어촌발전 기반조성 지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어촌발전 기반조성 지원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어촌개발지원단에 통보

어촌개발지원단

○ 어촌개발지원단은 해양수산부에서 통보한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세부사업계획에는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및 보조금 집행계획 포함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제출 받은 세부사업추진계획을 검토·승인하여 어촌개발지원단에 통보

어촌개발지원단

○ 어촌개발지원단은 사업기간, 사업비 증감 등 사업계획에 변경사유 발생 시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를 하여 중요사항은 승인을 받아 변경 조치하여야 함. 다만, 사업비의 비목간 20% 이하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어촌개발지원단에서 자체 검토·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결과 보고

* 어촌개발지원단 구성원 교체시에는 해양수산부 사전 승인 필요(어촌개발지원단 지정 요건에 부합한지를 검토)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해양수산부

○ 어촌개발지원단으로부터 분기별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고 어촌개발지원단의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검토 후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개산급) 교부를 결정·지급

○ 어촌개발지원단에게 보조사업 수행내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실시 및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 등 상황 점검

어촌개발지원단

○ 어촌개발지원단은 해양수산부의 사업계획 승인 결정 후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개산급) 교부 및 국고 송금 요청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 사항은 어촌개발지원단에서 자체 검토·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결과 보고

○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2개월 이내에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연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성과 및 목표관리를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사업 및 예산집행실적, 사업수행의 적정성 및 현장실태 등 사업계획 승인내용 이행상황

○ 사업계획·실적에 대해 매년 말 최종평가 실시

어촌개발지원단

○ 어촌개발지원단은 사업 목적 및 성과를 달성하도록 보조사업을 수행

○ 분기별 사업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실적 및 성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해양수산부로부터 최종평가(익년 1월)를 받아야 함

6.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어촌개발지원단으로부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어촌개발지원단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추진 부진 사항은 중점적으로 관리

○ 보조금 집행결과 다음과 같은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부를 취소하고, 취소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한 회수 조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어촌개발지원단

○ 어촌개발지원단은 보조사업의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년도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19년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원 칙

○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사업 추진실적, 예산집행현황,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평가기간 / 평가대상 : '19. 1~12월 / 어촌개발지원단

○ 평가기준 : 사업추진 실적, 이용자 만족도, 제도개선 실적, 보조금 적정집행, 홍보 노력 등

- 성과지표 : 어촌종합개발사업 사업지 관리 및 평가 지원 만족도(%)
- 지표산출시기 : 매년 1월
- 측정방법 : 사업지 대상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 산출식 : 가중평균 실적값 + {(100-가중평균 실적값) × 10%}, (예시) 80 + {(100 - 80) × 10%} = 82

※ 가중치 10% 설정 :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가중치 10%로 조정

다. 평가 후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사업추진 부진사항은 중점적으로 관리

라. 환류

○ 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등을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도모

28 귀어귀촌 활성화

①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학기 사무관 손소연	044-200-5650 044-200-56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어·귀촌인에 필요한 귀어귀촌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귀어·귀촌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귀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상담 실적(건)	6,000	1,826	2,930	5,030	5,500	’20.1월	상담실적 대장
어업창업 기술교육(명)	100	-	64	100	100	’20.1월	교육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619**	**1,619**	**1,619**	**1,619**
- 국 비	1,619	1,619	1,619	1,619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 한국어촌어항공단(귀어귀촌종합센터)

2.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 한국어촌어항공단(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귀어 귀촌 종합센터 운영비

- 인건비, 홍보비, 교육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교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 귀어 귀촌 박람회 개최

③ **주요 업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귀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교육훈련

○ 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지정·지원

○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귀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추진

○ 법 제14조에 따른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의 개최

○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 귀어·귀촌희망자에 대한 상담·안내

○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지원 등 귀어귀촌 활성화사업 지원

○ 기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3300-3347-303) 귀어귀촌활성화

○ 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량 및 예산

- 귀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운영 1식 / 1,219백만원

- 귀어·귀촌 박람회 개최 / 400백만원

○ 지원 조건 : 국고 1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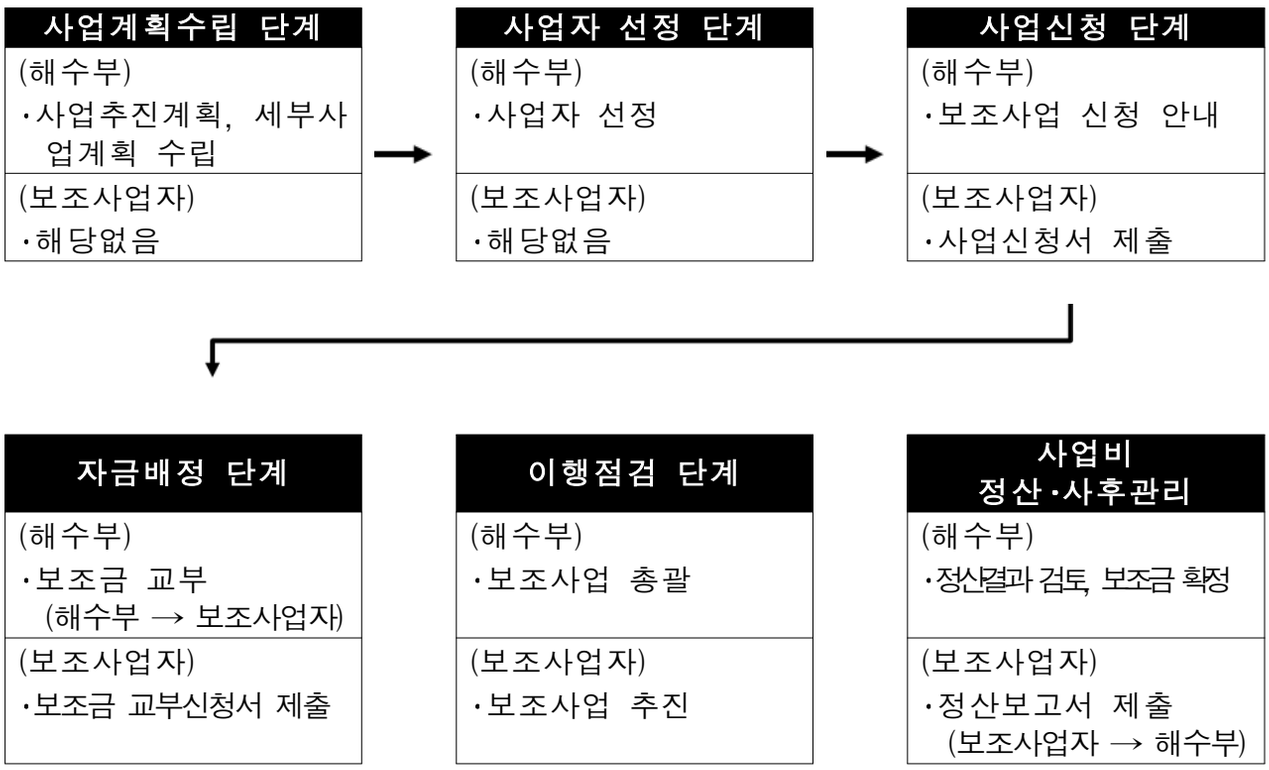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민간보조사업의 성격에 맞추어 사업계획 수립, 알림

2. 사업 신청 단계

귀어귀촌종합센터

○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공통 제2호서식, 공통 제3호 서식)

3. 사업자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예산 편성 시 운영자를 귀어귀촌종합센터로 결정

4. 자금배정 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 신청 단계와 동일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공통 제4호서식)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집행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시정 조치

- 실시방법 : 당초 계획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한 기관 등에 현장 실태조사
- 점검항목 : 사업 추진상 문제점, 사업여건 개선 파악, 조류소통 및 생산량 비교 분석 동향 등

《제재》

해양수산부

○ 보조금 집행율이 낮고, 이월율 및 불용율이 높은 경우 다음년도 예산 삭감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의 적발 시 보조금 반환은 물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타사항》

○ **사업평가**

- 귀어귀촌 교육실적, 박람회 방문객 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

○ **환 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향후 사업 확대 시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지침 개선을 추진

- 점검결과 사업지연 및 부당집행 등을 점검하여 해당 지자체에 시정토록하고 이를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② 귀어귀촌 홈스테이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학기 사무관 손소연	044-200-5650 044-200-5662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	상담위원	1899-9597
시·도 및 시·군	수산 총괄 부서		

* 귀어·귀촌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귀어귀촌종합센터(www.www.sealife.go.kr), 홈스테이 운영어가 지정 등은 시·군, 그 외 정책관련 사항은 해양수산부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사전에 어업과 어촌을 체험하게 하여 귀어·귀촌 정착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귀어촌 홈스테이 참여자 수(명)	25	-	-	3	18	'19. 12	사업 참여자수(지자체 사업결과 보고서 취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00**	**200**	**200**	**200**
- 국 비(50%)	100	100	100	100
- 지방비(30%)	60	60	60	60
- 자 담(20%)	40	40	40	4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군(수도권 및 광역시는 제외)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 중 ①군(郡) 지역과 ②읍·면이 있는 시(市)는 사업대상에 포함

2. 신청자격 및 요건

① 사업자격

○ 1순위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지자체 귀어·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어촌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시·군

○ 2순위 :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어촌 유치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시·군

* 현재 귀어·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

② 사업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③ 용어정의

○ 귀어·귀촌 홈스테이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우수 귀어·귀촌 가구 또는 선도어가가 숙박과 어업 및 어촌생활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는 사업

○ 이용자 : 우수 귀어·귀촌 가구 또는 선도어가에서 숙박, 어업 및 어촌생활 지도 등을 제공 받는 귀어·귀촌 희망자

○ 운영자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숙박, 어업 및 어촌생활 지도 등을 제공하는 우수 귀어·귀촌가구 또는 선도어가 등 어업인 가구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

○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로부터 귀어귀촌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운영하는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를 말함

○ 귀어·귀촌지원센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귀어·귀촌지원센터를 말함

○ 어촌특화지원센터 :「어촌 특화 발전지원 특별법」 제28조의 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함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경우 귀어귀촌센터로 별도 지정 후 귀어귀촌 관련 지원사업 추진 가능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자 중 귀어귀촌 홈스테이 참여자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도시민 등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숙박, 어업 및 어촌생활 지도 등을 제공하는 우수 귀어·귀촌 가구 또는 선도어가 등에게 홈스테이 운영 대가 지급

○ 도시민 등 귀어귀촌 희망자 홈스테이 대행 추진전담기구(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포함)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담 20%

* 자담 : 어촌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귀어·귀촌 희망자 본인 부담비용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연간지원 기준 : 1인 80일(1가구 2인 40일) 기준

* 가구당 1일 최대 2인까지 지원하되, 인원 초과 등에 따른 추가비용은 자담

○ 연간지원 한도(국비기준) : 가구당 200만원

- (1가구 2인기준) 2인×10만원×20일×보조율 50% = 200만원
- (1가구 1인기준) 1인×10만원×40일×보조율 50% = 200만원

<유의사항>

○ 지원 금액은 귀어·귀촌 희망 1가구를 기준으로 국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구당 지원한도(1인 기준 40일) 소진 시, 추가신청 불가(단, 추가신청분에 대해 전액 자담으로 이용가능)

○ 홈스테이 운영자(어가등)는 홈스테이 운영기간, 인원 수, 지원한도 등에 제한 없음

- 다만, 홈스테이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등에서는 우수 귀어·귀촌 가구 또는 선도어가에서 다수의 이용자를 수용하여 당초 사업목적 달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무박)**1인 1일 지원액 = 100,000원(국비 50천원, 지방비 30천원, 자담 20천원)

- 국 비 50,000원 = (숙박)60,000원+(어업·생활지도 등 컨설팅) 40,000원×(보조율)50%
- 지방비 30,000원 = (숙박)60,000원+(어업·생활지도 등 컨설팅) 40,000원×(보조율)30%
- 자 담 20,000원 = (숙박)60,000원+(어업·생활지도 등 컨설팅) 40,000원×(보조율)20%

* 컨설팅 비용은 숙박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 **(1박2일)**1인 2일 지원액 = 200,000원(국비 100천원, 지방비 60천원, 자담 40천원)

- 국 비 100,000원 = (숙박)60,000원+(어업·생활지도 등 컨설팅) 40,000원×2일×(보조율)50%
- 지방비 60,000원 = (숙박)60,000원+(어업·생활지도 등 컨설팅) 40,000원×2일×(보조율)30%
- 자 담 40,000원 = (숙박)60,000원+(어업·생활지도 등 컨설팅) 40,000원×2일×(보조율)20%

* 컨설팅 비용은 숙박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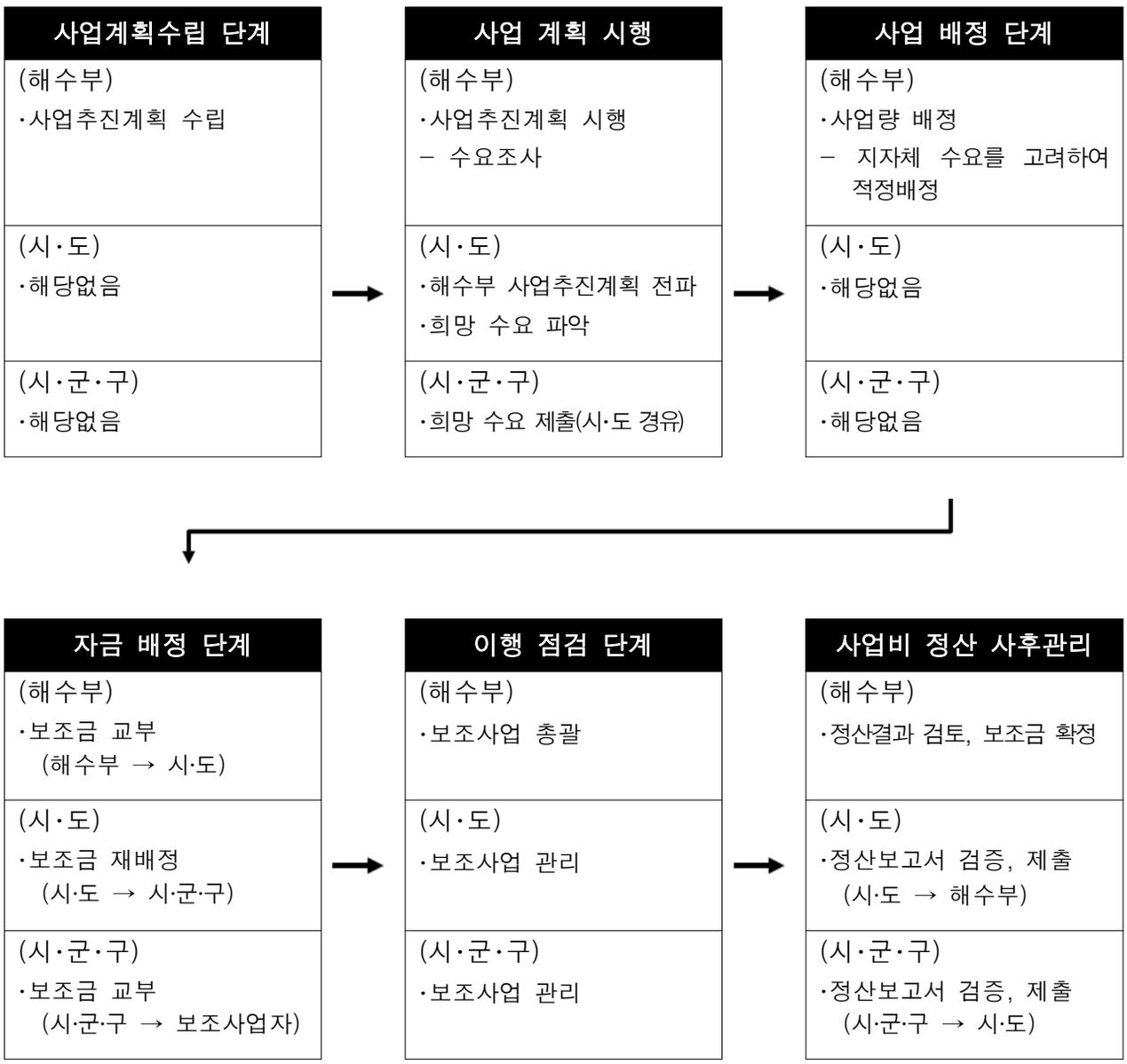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

2. 사업신청 단계 : 해당없음(시도별 배정)

3. 운영자 선정단계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지자체)**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계획 수립

- 사업시행자 선정 : 직접, 위탁, 민간보조(귀어·귀촌 종합센터, 지역내 귀어·귀촌지원센터, 권역별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역내 사회단체 등) 등

-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모집 : 운영자 공모(15일 이상) 후 현장확인 및 평가를 통해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를 선정, 운영하고 수시 추가 접수 및 평가를 통해 운영자 선정 가능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위탁 또는 민간보조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는 보조금을 별도계정(사업과 관련 없는 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면 안됨)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이용자의 자부담금(예약금)은 별도계정(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 지자체(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및 운영 지원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alife.go.kr)등을 활용 홍보 및 운영지원>
- 이용자에 대한 홍보
- 운영자 현황 및 사업시행자 홈페이지 게시
- 기타 지자체 귀어촌 홈스테이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지원

< 귀어촌 홈스테이 시행체계(예시) >

* 아래는 권장체계를 명시한 사항으로 지자체에서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가능

사업시행지침 시달 (해수부→지자체)	<해양수산부> ○ 예산배정 및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달
⬇	
사업 시행자 결정 (지자체)	<시·군> ○ 직접, 위탁 또는 민간경상보조(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역 내 귀어·귀촌지원센터, 권역별 귀어귀촌종합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역 사회단체 등)등의 방법으로 추진
⬇	

귀어촌 홈스테이 운영가구 모집 및 선정 (시·군)	<시·군> ○ 어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지자체 홈페이지 및 어업인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모집 홍보 ○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공모(15일 내외)<별지 제1호>를 통해 신청<별지 제2호 서식>을 받아 평가<별지 제3호>하여 운영자를 선정하고, 수시로 추가 신청을 접수 평가 후 선정 ○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를 선정(취소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통보<별지 제2호 서식>
⬇	
홈스테이 운영자 게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를 사업시행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 * 홍보내용 : 주소, 어업경력, 경영규모, 영어분야, 홈스테이 시설현황 사진 등 ○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취소된 경우 포함) <별지 제2호 서식>를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로 송부하여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alife.go.kr)에 게시 *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운영자 홍보
⬇	
홈스테이 신청 (이용자)	<이용자> ○ 사업시행자에게 귀어·귀촌 홈스테이 신청 * 홈스테이는 연간 총 이용가능 일수(1인 1일기준 연간 40일) 내에서 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홈스테이 이용 가능 * 사업목적과 달리 귀어·귀촌 홈스테이를 이용한 경우 잔여 예약을 취소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벌금 및 벌칙)를 받음 * 홈스테이 이용가능 일수(1인 1일 기준 연간 40일)를 초과한 경우, 추가이용에 따른 모든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함
⬇	
홈스테이 이용자(신청자)와 운영자 연결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이용자가 운영자를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홈스테이 운영자와 홈스테이 여부를 약속하도록 함 (이하"연결"이라고 함) ○ 이용자가 운영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원하는 내용을 파악하여 어업내용 및 주거여건 등이 부합하는 운영자를 추천하여 연결 - 사업시행자는 신청자가 귀어·귀촌 희망자(도시민 등)인지 여부를 상담을 통해 확인 후 운영자와 연결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모든 홈스테이 운영자가 균등하게 이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홈스테이 예약금 납부 (이용자)	<이용자> ○ 운영자와 연결된 후 사업시행자에게서 승인을 받으려면 홈스테이 비용을 사용 예정 인·일수(사용 일자를 명확히 정하여야 함)만큼 예약금(자담금100%)으로 선불 납부하여야 함 * 예약 후 일자별로 홈스테이 2일전까지 취소 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미이용 시에도 예약금을 반납 받을 수 없음을 반드시 사전 공지하여야 함
⬇	
홈스테이 이용승인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신청자와 운영자를 연결 후 운영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이용자에게서 홈스테이 예약금(이용료)을 선납 받은 후 승인 * 이용자가 홈스테이 이용 2일전까지 취소시 100% 환불하되, 1일전 및 당일에 취소 또는 홈스테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금(자담금)을 운영자에게 지급(위약금 성격으로 국비 및 지방비는 지급하지 않음) * 사업시행자는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이용자(신청자) 승인현황을 관리<별지 제4호 서식>하여, 실적보고서 작성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
⬇	
운영자에 대한 대가지급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홈스테이 운영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운영자에게 이용자의 홈스테이 일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용자에게도 확인을 하여야 함 * 이용자 및 운영자가 거짓으로 홈스테이 일수를 속이는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자체에 보고 ○ 홈스테이 이용료는 2주일 단위로 지급하되, 지급기한은 2주일 이내로 함 * 운영자에게 계좌이체로 지급 ○ 사업시행자는 월별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 현황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익월 15일까지 사업주관기관(시·군)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태 점검, 이용자의 지원한도 초과 이용방지 및 예산의 재배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
⬇	

홈스테이 실태 점검 (사업시행자 및 시·군)	<사업시행자> ○ 이용자 점검 : 사업 시행자(시·군 포함)는 홈스테이 이용자가 사업목적과 달리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경우 잔여 예약을 해지 하도록 하여야 함(보조금 지급 불가) - 사업시행자(시·군 포함)는 이용자가 사업목적과 달리 홈스테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시도에 보고하여야 함 ○ 운영자 점검 : 지자체에서는 매 반기 1회 이상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를 점검하고, 부적격한 경우(주거여건, 어업·생활 지도 부적정 등)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선정 취소를 하여야 함
실적보고 (사업시행자→시·군)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매반기말,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 종료시 기준 익월 2일까지 홈스테이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6호>를 제출하여야 함
⬇	
실적보고 (시·군→해수부)	<시·군> ○ 시·군은 시·도를 경유하여 매반기말, 회계연도 종료 및 사업 종료시 기준 익월 5일까지 홈스테이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6호>를 해수부에 제출

※ 행정사항

○ 사업시행자(시·군을 포함한다)는 홈스테이 이용자가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함

○ 사업 시행자(시·군을 포함한다)는 매 반기 1회 이상 홈스테이 운영자를 점검하고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선정 취소하여야 함

○ 운영자의 홈스테이 운영이 부적격한 경우(주거여건, 어업·생활 지도 부적정 등)
○ 운영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이용자의 홈스테이를 거부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는 이용자 및 운영자가 사업목적과 달리 홈스테이를 이용및 운영한 경우에는 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및 그 내용을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보고하고 보조금 부분 만큼 자부담으로 수령하여야 함

4. 자금배정 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공통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해양수산부

○ 보조금 지급시,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5. 이행점검단계

《이행점검》

○ 사업주관기관(사업시행자 포함)은 이용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사업의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에서는 운영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함

《사업평가 및 환류》

○ 해양수산부는 사업결과 및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배정에 반영(최대± 20%)한다.

《제재》

○ 사업주관기관(시·군)은 홈스테이 이용자 및 운영자가 사업목적과 달리 귀어·귀촌 홈스테이를 이용하거나, 거짓으로 홈스테이 일수를 속이는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하여야 함

○ 홈스테이 사업에서 배제(배제된 이용자 및 운영자를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에 통보)
- 이용자는 홈스테이 이용 권한을 영구히 제한, 운영자는 홈스테이 운영자 선정 취소 및 선정 제한

○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환수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벌금 및 벌칙)

○ 해양수산부는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 및 추진목표를 감안하여 2020년도 예산안 검토

- 2020년 사업은 2019년 『귀어·귀촌 홈스테이사업』을 추진한 시·군을 우선지원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귀어촌 홈스테이 운영자 공모(예)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모집공고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숙박과 어업·생활 지도 등을 제공할 우수 귀어·귀촌 가구 및 선도어가 등 어업인 가구주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년 ○○월 ○○일

○○군수

1. 개요

□ (**목적**)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을 통해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사전 경험기회를 제공하여 어촌 정착 실패율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유도

□ (**법적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 (**모집대상**)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숙박과 어업·생활 지도 등을 제공할 우수 귀어·귀촌 가구 및 선도어가(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

□ (**신청자격**) 군내에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숙박과 어업·생활 지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우수 귀어·귀촌 가구 또는 선도어가 등 **어업인 가구주**

□ (**선정기준**) 어업경력, 경영규모, 주거현황, 참여의지, 어업인 교육훈련실적 등 평가결과 60점 이상인자

□ (**신청기간**) ‘19.01.08(월) ~ ’19.01.29(금)18:00 [22일간]

□ (**운영기간**) 2019.2.13(월) ~ 사업종료 시까지

* 사업시행자가 사업종료 통지 시까지
* 운영자로 선정된 가구주는 다음연도 이후에도 계속사업 추진 시 운영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운영자에 대한 지원내용)**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숙박 제공, 어업·생활 지도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

<이용 형태별 지원항목 및 금액>

▪ **(무박)**1인 1일 지원액 = 100,000원(국비 50천원, 지방비 30천원, 자담 20천원)

- 국 비 50,000원 = (숙박)60,000원+(어업·생활지도 등 컨설팅) 40,000원×(보조율)50%
- 지방비 30,000원 = (숙박)60,000원+(어업·생활지도 등 컨설팅) 40,000원×(보조율)30%
- 자 담 20,000원 = (숙박)60,000원+(어업·생활지도 등 컨설팅) 40,000원×(보조율)20%

* 컨설팅 비용은 숙박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 **(1박2일)**1인 2일 지원액 = 200,000원(국비 100천원, 지방비 60천원, 자담 40천원)

- 국 비 100,000원 = (숙박)60,000원+(어업·생활지도 등 컨설팅) 40,000원×2일×(보조율)50%
- 지방비 60,000원 = (숙박)60,000원+(어업·생활지도 등 컨설팅) 40,000원×2일×(보조율)30%
- 자 담 40,000원 = (숙박)60,000원+(어업·생활지도 등 컨설팅) 40,000원×2일×(보조율)20%

* 컨설팅 비용은 숙박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 1일 2인을 초과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홈스테이 비용은 이용일수 기준으로 지급함

* 동 지원 금액에는 이용자 부담금(총액의 20%)이 포함되어 있음

2.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제출서류**)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 신청서 1부

□ (**제출방법**) ○○군청 ○○○○과로 제출(우편, 메일도 가능)

* ○○군 ○○로 ○○ ○○○○과 / 이메일 00000@0000.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과(tel 000-000-0000)로 문의

3.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선정 발표

□ (**발표**) ‘19.02.13까지 선정어가 개별통지

붙임 : 1. 귀어·귀촌 홈스테이운영 신청서

2.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선정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신청서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 신청서

<table>
<tr><td rowspan="11">신청자</td><td>성 명</td><td></td><td>나이</td><td>세</td><td>생년월일</td><td colspan="3"></td></tr>
<tr><td>주소</td><td colspan="7"></td></tr>
<tr><td>e-mail</td><td colspan="3"></td><td>전화번호
(홈페이지 게시 및 연락용)</td><td colspan="3">000-0000-0000</td></tr>
<tr><td colspan="3">운영비를 지급받을 통장
(가입자명, 은행명, 계좌번호)</td><td colspan="5">예) 홍길동, 농협, 000-00-00000-000</td></tr>
<tr><td colspan="2">영어분야(품목)</td><td colspan="6">예) 쭈꾸미, 낙지, 꽃게, 광어, 우럭, 대하</td></tr>
<tr><td>어업경력</td><td>년</td><td colspan="2">해당될 경우
경력표기</td><td colspan="4">귀어경과 년수 : 년
어업인후계자 선정 경과 년수 : 년</td></tr>
<tr><td rowspan="2">업종 및 경영규모
(㎡, Ton)</td><td>양식장</td><td>어 선</td><td>가공공장</td><td>염 전</td><td>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td><td>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td><td>기 타</td></tr>
<tr><td></td><td>예)2.9톤</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어업경영 내용 및 매출을 알기 쉽게 서술
(이용자 확인용)</td><td colspan="7">예) 3톤규모 어선으로 연근해 어업을 하고 있으며, 봄·가을에 쭈꾸미 및 낙지를 잡고 있으며, 여름에는 우럭 및 광어, 겨울에는 꽃게 및 대하를 어획하고 있음(연간 약 7,000만원의 매출)</td></tr>
<tr><td>가족상황(명)</td><td colspan="7">총 명(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td></tr>
<tr><td>주거 상태 (해당에 “○”)</td><td colspan="7">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td></tr>
<tr><td>주택 형태 (해당에 “○”)</td><td colspan="7">아파트( ), 단독( ), 연립( ), 다세대( ), 기타( )</td></tr>
<tr><td>이용자 이용가능 주거현황
*해당되는 사항에 면적입력</td><td colspan="7">거실(㎡) 방1(㎡), 방2(㎡), 방3(㎡),
부엌(㎡), 욕실(㎡), ○○(㎡), ○○(㎡)</td></tr>
</table>

본인은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로 선정되고자 신청하며, 사업추진기관에서 운영자 선정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의 본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며, 관련법령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성실하게 귀어·귀촌 홈스테이를 운영할 것을 서약합니다.

☑ 사업선정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영어시설 및 어업관련 소개사진(한글파일로 제출) 1부.

2. 주거관련 소개사진(한글파일로 제출) 1부.

<첨부1> 영어시설 및 어업 소개사진(2~4장 내외, 한글파일로 제출)

“사진”
사진설명 :

“사진”
사진설명 :

<첨부2> 주거관련 소개사진(2~4장 내외, 한글파일로 제출)

“사진”
사진설명 :

“사진”
사진설명 :

[별지 제3호]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자선정 평가기준

○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경우 운영자로 선정가능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평점기준	평점
계	100			
1.어업경력	20	○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어업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노하우 정도	○ 귀어귀촌자 - 5년이상 20점 - 3년이상 15점 - 1년이상 10점 - 1년미만 5점 ○ 어업인후계자 - 7년이상 20점 - 5년이상 15점 - 3년이상 10점 - 1년미만 5점 ○ 어업인 - 10년이상 20점 - 7년이상 15점 - 5년이상 10점 - 3년이상 5점 ○ 체험마을, 어촌계 : 20점	
2.경영규모	20	○ 귀어귀촌 희망자가 배울수 있는 경영체 규모	○ 연 매출 - 5억이상 : 20점 - 3억이상 : 15점 - 1억이상 : 10점 - 5천만이상 : 5점 ○ 순 이익 - 1억이상 : 20점 - 7천만이상 : 15점 - 5천만이상 : 10점 - 3천만이상 : 5점	
3.주거현황	20	○ 귀어귀촌 희망자가 이용할 홈스테이 주거시설 수준	- 아주 우수 : 20점 - 우수 : 15점 - 보통 : 10점 - 미흡 : 5점 - 아주미흡 : 0점	
4.참여의지	20	○ 귀어귀촌 활성화에 대한 운영자 의지	- 귀어귀촌 활성화 의지가 매우 높은자 : 20점 - 귀어귀촌 활성화 의지가 높은자 : 15점 - 귀어귀촌 활성화 의지가 보통인자 : 10점 - 귀어귀촌 활성화 의지가 낮은자 : 5점 - 귀어귀촌 활성화 의지가 매우 낮은자 : 0점	
5.어업인교육훈련 수준	20	○ 최근 5년이내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교육훈련이수시간	- 35시간 이상 : 20점 - 20시간 이상 : 15점 - 10시간 이상 : 10점 - 5시간 이상 : 5점	

[별지 제4호 서식] 귀어·귀촌 홈스테이 이용자(신청자) 승인현황(*엑셀 파일로 작성)

○ 사업주관기관 : ○○군

(단위 : 원)

연번	이용자															홈스테이 운영자 및 승인일자			
	성명	남여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동까지)	연락처(H·P)	해당에 "○"		희망업종(해당에 "○")							운영자 성명	1월	2월	계속 작성
							귀어	귀촌	양식장	어선	가공공장	염전	어촌비즈니스(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해양수산레저)	기타		승인날짜 및 이용자수 예약금	승인날짜 및 이용자수	
1	*홍길동*			*000000-0000000*	*00000 0000*		*o*			*o*						*장보고*	*예) 1 월21(2 명) 1 월22(1 명)*		
																이순신		*예) 1 월21(2 명) 1 월22(1 명)*	
2	*지화자*																		

주) 1) 운영자를 변경하여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칸에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귀어·귀촌 홈스테이 운영 상황보고서(* 엑셀 파일로 작성)

○ 사업주관기관 : ○○군

(단위 : 원)

연번	이용자															홈스테이 이용 인·일수 및 지급금액									
	성명	남여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동까지)	연락처(H·P)	해당에 "○"		희망업종(해당에 "○")							계			1월		2월		계속작성	
							귀어	귀촌	양식장	어선	가공공장	염전	어촌비즈니스(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해양수산레저)	기타	운영자성명	이용인·일수	지급액	이용인·일수	지급액	이용인·일수	지급액	이용인·일수	
계																								
1	*홍길동*						*○*			*○*						*계*	*6*	*300,000*						
																장보고	*3*	*150,000*	*3*	*150,000*				
																이순신	*3*	*150,000*			*3*	*150,000*		
2.	*지화자*																							

주) 1) 홈스테이 운영자를 변경하여 홈스테이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 칸에 작성하고, 이용자 열에 합계 이용인·일수 및 지급액 입력

2) 이용인원수 : 일자별로 이용자수를 모두 더한 숫자

3) 지급액 : 국비+지방비+자담 합계액을 입력

4) 이용자가 예약 후 미이용 등에 따른 위약금은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

[별지 제6호 서식] 귀어·귀촌 홈스테이사업 실적보고서

□ 20○○년도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실적보고서(* 한글파일로 작성)

○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시행 시군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시																
○○군																
○○군																

○ 이용자별 집행현황(* 엑셀파일로 작성)

(단위 : 원)

사업시행 시군명	이용자															홈스테이 이용 인·일수 및 지급금액	
	성명	남여	나이	주민등록번호	주소 (동까지)	연락처 (H·P)	해당에 "○"		희망업종(해당에 "○")							이용 인·일 수	지급액 (국비+지방비+자담)
							귀어	귀촌	양식장	어선	가공공장	염전	어촌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비즈니스 (해양수산레저)	기타		
계																	
00군																	
00군																	
00군																	
00군																	

③ 귀어학교 개설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학기 사무관 손소연	044-200-5650 044-200-56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자, 어촌 창업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기술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귀어학교 개설(개소)	1	-	1	1	1	'19. 12	귀어학교 개설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000**	**1,000**	**1,000**	**1,000**
- 국 비(50%)	500	500	500	500
- 지방비(50%)	500	500	500	50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도, 시·군(수도권 및 광역시는 제외)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 중 군 지역은 사업대상에 포함**

※ 사업시행주체는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간접보조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① 사업자격

○ 귀어학교를 희망하는 도, 시·군(수도권 및 광역시는 제외)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 중 군 지역은 사업대상에 포함**

② 사업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 귀어귀촌 전문 어업교육을 위한 귀어학교 운영자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귀어학교 개설비용(체류하면서 어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구축에 필요한 비용)

- 교육시설 및 기숙사 등 신축(리모델링 포함)에 필요한 설계비, 건축비 등
- 교육용 시설 및 장비 등

* 지원제외 : 사업부지 매입비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3400-3440-303) 귀어귀촌활성화

○ 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 귀어학교 개설 1개소 / 1,000백만원(국비 500백만원)

※ 귀어학교 수혜 대상자 :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자, 어촌 창업 희망자 등

○ 지원 조건 : 국고 5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해당없음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해당없음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해당 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지자체에 시달

2. 사업신청단계

지자체(도, 시·군)

○ 지역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귀어학교 개설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

해양수산부

○ 귀어학교 개설 사업 시행지침을 시달하여 지자체의 사업신청 접수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대상사업 선정 통보

- 해양수산부는 사업신청서 상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

4. 시행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도, 시·군)

○ 선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당초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5. 자금배정

해양수산부

○ 도 및 시·군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지자체(도, 시·군)

○ 해양수산부에 자금수요를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함

《사업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제재》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 및 추진목표를 감안하여 2020년도 예산안 검토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귀어학교 개설 사업계획서(작성양식)

1. 사업 필요성

□

○

2. 사업지역 일반현황

□ **시·도**

○ 어업인구 :

○ 어업현황 : *주요 어업 형태, 품종 등을 기술*

○ 귀어현황 : *예) 귀어업인 가구(인원) 수, 어업 형태, 품목 등 기술*

□ **시·군**

○ 어업인구 :

○ 어업현황 : *주요 어업 형태, 품종 등을 기술*

○ 귀어현황 : *귀어업인 가구(인원) 수, 어업 형태, 품목 등 기술*

3. 사업개요

□ **사업대상 주소**(*사업시설별로 표기*)

○ 교육시설 :

○ 기숙사 :

□ **교육시설 등 배치도**

* 지도상에 교육시설 등 위치 표기

□ 사업부지 확보현황

○ 예)교육시설부지 : 00시 소유부지로 별도의 절차없이 사업추진가능

○ 예)기숙사 : 교육운영기관인 00회 소유 부지로 현재 설치된 복지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계획

○ 예) 양식장 : 개인소유 부지로 사업대상자로 확정시 매매 하기로 사전 협약체결(붙임0 매매약정서 참조)

□ 사업장소 적정성*(귀어학교 설치에 적합한 사유 및 기존시설 활용계획)*

○

□ 교육생 수용규모

* 교육생 동시수용 규모 등을 시설별로 명시

○

○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내역	수량	산출근거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기타
폐교 매입	*6,600㎡*	*6,600㎡ × 140천원 = 924,000천원*	*924*	-	*924*	-
폐교 리모델링(교육 및 기숙시설)	*990㎡*	*990㎡ × 480천원 = 475,200천원*	*480*	*240*	*240*	-
기본·실시설계·감리	*1식*	*475,200천원×5.93% = 28,179천원*	*28*	*14*	*14*	-
중개수수료		*924,000천원×0.009 = 8,316천원*	*8*	*4*	*4*	-
취등록세		*924,000천원×0.05 = 46,200천원*	*46*	*23*	*23*	-
부지 조성	*6,600㎡*	*6,600㎡ × 36천원 = 238,000천원*	*238*	*119*	*119*	-
3톤 근해어선 1척	*1척*	*1척 × 1,000천원 = 200,000천원*	*200*	*100*	*100*	-
합계			*1,924*	*500*	*1,424*	-

□ 귀어학교 개설 연계사업계획*(귀어학교 성과제고를 위한 연계사업계획 기술)*

○

-

○

-

4. 교육 운영계획(*익년기준*)

□ 교육운영주체 선정계획(*구체적으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선정사유 명시*)

○

-

○

-

○

-

□ 강사진 구성 및 운영계획

○

-

○

□ 교육생 모집계획

○

-

□ 기술교육 내용 및 방법(*어업종류별, 주요어종, 교육장소, 교육방법, 교육기간 등을 상세히 기술*)

교과목	주요어종 등	교육장소	교육방법	교육기간	교육인원수
어선어업	*쭈꾸미, 낚지*	*00군, 00면, 00리, 00어촌계 마을어장*	*이론 : 전문강사* *실기 : 00어촌계 어업인*	*○3개월(월 6일교육)* *-총18일교육*	*년간 3기수 (기수당 10명) : 30명*
전복 양식	*전복*	*완도군 00면 00리 개인(홍길동) 전복양식장 (규모:000㎡)*	*이론 : 전문강사* *실기 : 00어촌계 양식어가(홍길동)*	*○12개월(월 4일교육)* *-총48일교육*	*년간 2기수(기수당 10명) : 20명*
해조류 양식					
계					

○ **교과목별 교육여건**(*인문, 사회, 자연 등 여건을 포함 기술*)

- *어선어업 :*
- *전복 양식 :*

□ **운영비용**(*추후 운영예산 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내역	수량	산출근거	사업비	비고
합계			10억원	

5. 기타 사항

□

○

-

[별지 제2호] 귀어학교 개설사업 선정 평가기준

연번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기준	배점	점수
합계				100	
1	사업의 필요성	해당시군에서 사업추진 타당성	- 매우 적정 : 8점 - 적정 : 6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2점 - 매우 부적정 : 0점	8	
2	사업장소의 적정성	기존시설 연계 활용정도	- 매우 높음 : 10점 - 높음 : 8점 - 보통 : 5점 - 낮음 : 3점 - 매우 낮음 : 0점	10	
3	사업실현 가능성	사업부지 확보 및 사업추진 가능성	- 매우 높음 : 8점 - 높음 : 6점 - 보통 : 4점 - 낮음 : 2점 - 매우 낮음 : 0점	8	
4	투자규모의 적정성	교육생 대비 시설규모 및 사업내용 적정성	- 매우 적정 : 8점 - 적정 : 6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2점 - 매우 부적정 : 0점	8	
5	연계사업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가능성	연계사업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	- 매우 높음 : 8점 - 높음 : 6점 - 보통 : 4점 - 낮음 : 2점 - 매우 낮음 : 0점	8	
6	교육운영 주체 적정성	운영주체 선정계획 실현가능성 및 적정성	- 매우 적정 : 8점 - 적정 : 6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2점 - 매우 부적정 : 0점	8	
7	강사진 구성 및 운영계획 적정성	강사진 수준 및 구성가능성 등	- 매우 적정 : 8점 - 적정 : 6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2점 - 매우 부적정 : 0점	8	
8	교육생 모집 가능성	구체적 계획수립 및 실현가능성	- 매우 높음 : 8점 - 높음 : 6점 - 보통 : 4점 - 낮음 : 2점 - 매우 낮음 : 0점	8	
9	교육 내용 등의 적정성	교육내용, 장소, 방법, 교육기간, 교육인원수 등	- 매우 적정 : 10점 - 적정 : 8점 - 보통 : 5점 - 부적정 : 3점 - 매우 부적정 : 0점	10	
10	교과목별 교육여건 적정성	교과목 운영을 위한 지역여건 및 시설계획	- 매우 적정 : 8점 - 적정 : 6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2점 - 매우 부적정 : 0점	8	
11	교육 운영비용 적정성	지출내역의 구체성과 적정성	- 매우 적정 : 8점 - 적정 : 6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2점 - 매우 부적정 : 0점	8	
12	기대효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	- 매우 높음 : 8점 - 높음 : 6점 - 보통 : 4점 - 낮음 : 2점 - 매우 낮음 : 0점	8	

④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학기 사무관 손소연	044-200-5650 044-200-5662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	상담위원	1899-959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도 및 시·군별 도시민 어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사업참여 지자체 (시·도 수)	8	13	14	13	8	'19. 12	사업 참여 시도 (지자체 사업결과보고서 취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3,200**	**3,200**	**3,200**	**3,200**
- 국 비(50%)	1,600	1,600	1,600	1,600
- 지방비(50%)	1,600	1,600	1,600	1,60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도(수도권 및 광역시는 제외)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① 사업자격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지자체 귀어·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의 어촌유치를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 시·도

○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가 도시민의 어촌유치를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광역 시·도

* 현재 귀어·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

② 사업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 시·도(수도권 및 광역시는 제외)

- 귀어귀촌 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에 위탁 가능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경우 귀어귀촌센터로 별도 지정 후 귀어귀촌 관련 지원사업 추진 가능

②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추진기구 운영비)**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도시민 어촌유치활동전담기구(귀어귀촌 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포함)는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하드웨어 구축비)**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부문에 지원 가능

- 기존 어업인들과 융화·협력 등을 지향하는 사업 권장
- 하드웨어부문은 귀어인의 집 또는 귀어·귀촌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체험·교육·상담 등)의 귀어·귀촌에 필요한 직접적인 연관 부문으로 제한

*** 지원가능한 하드웨어 부문**

1) 어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체재에 필요한 임시 거주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주택(빈집)을 매입·임차하여 수리하는 리모델링 사업비
   * 매입·임차비 집행은 불가
2) 귀어·귀촌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이하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유휴 사무실의 리모델링 사업비
   * 매입·임차비 집행은 불가
3) 도시민 어촌이주를 위해 필요한 5호 이하의 소규모 주거단지용 기반조성사업비(기존마을 인접 주거를 위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 부지매입비는 자부담
4) 기타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드웨어 부문, 귀어센터 마련 및 예비 귀어인의 체험 등에 필요한 체재형 임시 거주용 공간 마련의 경우에는 하드웨어부문 사업비의 지원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소프트웨어 사업비)**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문에 지원 가능

- 소프트웨어부문은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되, 아래 지원내용을 준수하여 집행

*** 지원가능한 소프트웨어 부문**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해 시·도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단체, 교육기관, 마을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 위탁 및 지원 가능
(단, 주체별 위탁범위는 참고하되 시·도 자체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1) 시·군/읍·면 : 귀어·귀촌 희망자 D/B 구축, 출향인사 D/B 구축, 귀어의 날 행사, 도시민 이주가능 지역에 대한 어업·어촌정보 및 주변 환경여건 조사,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기여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클럽) 운영, 도시민 어촌유치와 연계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도시민 어촌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개발·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귀어·귀촌 선배, 지역개발전문가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이에 필요한 조사비, 운영비, 컨설팅비, 홍보비의 지원. 기타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에 지원 가능

2) 교육기관 : 어업어촌생활체험·교육프로그램, 지역이해 및 어촌정서 등 인문교육프로그램, 귀촌 자녀 교육프로그램, 지역주민 커뮤니티 교육프로그램 등 도시민 어촌유치관련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비
   * 예) 최대 7일이내(1박2일 ~ 2박3일 등) 어촌 체험프로그램 등

3) 마을·선도어가 등 : 빈집 등 주거정보 제공 및 갱신, 이주예정 귀어·귀촌인 사전교류·초청행사, 성공한 귀어인 멘토 지정·운영, 마을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선도실습장 견학 및 체험 등
   * 연구용역비는 사업 첫해 전체사업비의 10% 이내 반영하여 수립 가능
   * 예비 귀어·귀촌인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상품권 증정, 지역특산물 제공 비용은 제외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기준 : 사업자로 선정된 해당 사업자

○ 지원한도액 : 시·도당 2억원 이내(국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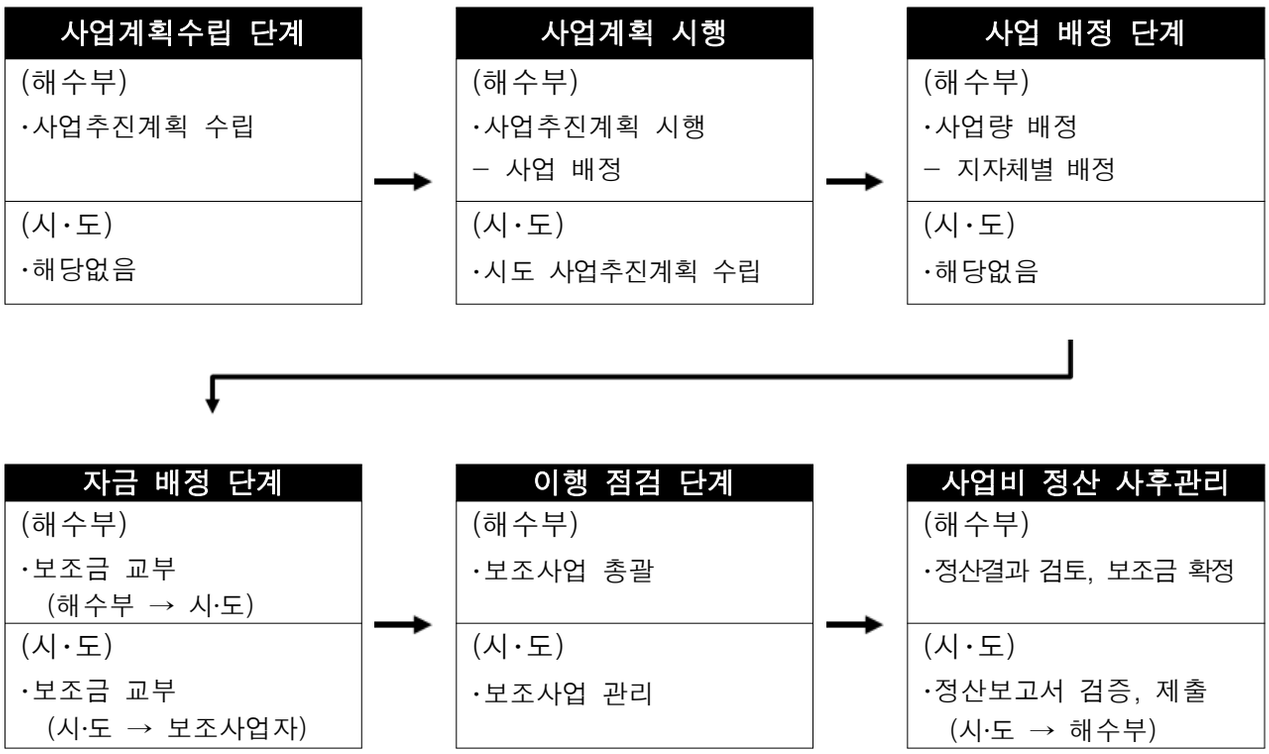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2. 사업신청단계

시·도

○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시·도는 「별표」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시·도는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촌마을, 지역단체, 귀어인 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민 어촌유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마을과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유도

○ 시·도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계획은 단계별 적정성 등을 고려하되, 분야별·항목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로 분리하여 수립

○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시·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시·도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

- 시·도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심 있는 관내 마을, 지역수협,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귀어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등을 반영

  * 사업 추진 시·도는 사업시행계획서를 해양수산부로 제출(확정 통보 후 3주내)

-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시·도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마을,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보완하는 등 분위기 확산에 주력

- 시·도의 일반현황(여건 변화), 인구변화 추이 등 분석 반영

- 도시민 어촌유치의 비전 및 목표(현재 상황, 필요성, 비전 및 목표 제시) 달성 여부 정기적 파악 등

-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계획의 로드맵 작성 및 달성 정도 체크
  ·추진방향 및 중점시책 등 연속성 여부
  ·사업 계획에 따른 시·도 전담기구(센터 등) 설치 및 운영, 각종 하드웨어용 및 소프트웨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연착륙 여부
    * 시·도 전담기구 설치 및 관련 업무 부서일원화, 각종 정보제공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창구 설치 및 운영, 정착 귀어인 활용 실태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배분 계획(추진기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구성 비율)이 실제 지침에 부합하게 이행되는지 여부
  ·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 및 프로그램 이행 여부
  ·연도별 투자계획(총사업비 의한 사업추진 내용) 대비 달성 정도

- 사업 계획에 반영된 도시민 어촌유치관련 자료(출향인사 등) 관리·운영

- 시·도의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각종 협약 이행 여부

- 도시민 어촌유치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여부
- 귀어·귀촌,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전문가(자문 등) 활용 실태

-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 의견수렴 및 반영 정도

- 지역 내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관련 사업추진 현황 실시간 정보제공 등

○ 시·도는 『사업계획』에 의거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인재풀 확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각종『도시민 어촌유치프로그램』개설 및 운영을 지역 내의 사회단체, 귀어인협의회 등에게 위탁 또는 공동 추진을 위해 '도시민 어촌유치프로그램 추진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시·도는 '도시민 어촌유치프로그램 추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시·도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다만, 지역 내 인재풀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으로 전문연구기관 또는 컨설팅업체 등에 위탁하거나 의뢰할 수 있으나 총 사업기간 중 1년 이내에서 가능

  * 전문기관에 의뢰한 기간 동안에 지역 내 선도 귀어·귀촌인, 지역 사회단체 등의 지역주민 역량 제고와 인재풀 확대 기회로 활용하되,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으로 안정적인 운영·발전이 바람직

○ 시·도는 다음의 경미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계획을 자체 변경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함.(단, 변경결과는 해수부에 보고 : 별지2-1서식)

- 여건 변화 등에 따른 각 항목의 프로그램 간 사업비 변경·조정

- 사업계획 중 추진성격에 따른 프로그램 수(증·감) 변경

- 단, 추진기구 운영비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라도 30%를 넘을 수 없음,

- 기타 사업(프로그램 등)의 당해 사업 연도 내에서 추진시기 변경(조정) 및 단순 착오로 인한 사항의 변경 등

○ **(사업계획 등 변경 및 승인)** 시·도는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별지2-1호 서식)

《사업정산》

○ 시·도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정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별지3호 서식)

3. 사업자 선정단계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에서 신청한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예산 확보 등 지자체장의 의지, 사업주체들의 추진역량, 사업의 준비성, 단계별 세부사업(프로그램)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자체 사업실적 등을 평가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계획' 평가 후 보완을 요구하거나 승인 통보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는 공통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해양수산부

○ 보조금 지급시,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5. 이행점검단계

《이행점검》

○ 시·도에서는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참여 마을, 단체, 교육기관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등 사업 부실화 방지 및 사업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시·도지사는 6월말, 12월말 및 사업 종료 시 기준 익월 10일까지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추진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시·도는 사업에 참가한 마을,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출시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소요예산 등을 파악한 후 보조금을 지급

- 프로그램(사업) 성격상 보조금의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보조금의 일부를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선지급 할 수 있으며, 참여단체 및 기관 등은 사업완료 후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함

○ 시·도는 사업기간 중 마을, 단체, 교육기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

○ 시·도는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및 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

○ 시·도는 사업내용 이행, 점검·평가결과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사후관리》

○ 시·도는 자체『도시민 어촌유치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마을, 지역단체, 교육기관 등의 역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시행하여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

○ 시·도지사는 자체 시행계획서에 의거 추진 중인『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취지와의 부합 여부,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

- 사업 시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반기 1회 이상) 점검

-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지원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별『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및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점검

- 필요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사업평가 및 환류》

○ 해양수산부는 전문가 등이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진척도(예산집행, 전담기구설치·운영 등), 귀어·귀촌시책과 연계추진실적, 세부사업(프로그램) 유형별 추진실적, 귀어·귀촌실적, 프로그램 참여 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서면·현장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 매년 하반기 중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시달하고 평가 대상 시·도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각종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출

○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평가 지침은 별도 통보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 및 추진목표를 감안하여 2020년도 예산안 검토

- 2020년 사업은 2019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선정 시·도를 우선지원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시·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 계획서(작성예시)

<작성 기준 : 3년을 1주기로 사업 시행계획 작성>

Ⅰ. 신청 시·도의 일반현황(관내 여건 분석, 인구변화 추이, 최근 3년간 귀어·귀촌 추이 등)

Ⅱ. 도시민 어촌유치의 비전 및 목표(현황, 필요성, 비전 및 목표 제시)

* (지표 1-1) 연도별 귀어·귀촌 가구수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유입 목표를 계량화할 것

Ⅲ. 도시민 어촌유치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방향 및 중점시책

* (지표 2-1) 지역특성과 현황을 분석하여 차별화된 사업방향 및 전략 제시

2. 세부사업 추진계획

* (지표 2-2) 지역사회 자원, 추진체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하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별표]의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유형 및 추진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전담기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단계별)순으로 구체적 작성**(운영 주체도 명시)
* (지표 2-2) 예산 배분, 자금조달 및 집행일정, 시·도 지방비 분담 비율 등 예산계획 수립
* (지표 2-3) 시·도 전담기구(전담부서 및 귀어·귀촌지원센터)는 설치계획에 의거, 정보제공 및 상담창구, 정착 귀어인을 활용한 상담인 지정, 담당부서, 담당자(정·부 지정), 대표전화 개설 등 구체적으로 기재[귀어귀촌업무와 도시민유치관련부서가 일원화된 시·도 우선 선정 가능]
  - 전담조직 및 인원이 있을 경우 사업담당자 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세부자료로 제출
  - 귀어·귀촌 지원센터는 민(귀어인)·관·단체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구로 설치·운영할 것

<준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본 사업 관련 기존 실적 및 준비현황 자료 별도 제출>

* (지표 1-1) 시·도 귀어귀촌종합계획 등 수립 실적, 시·도 귀어귀촌상담센터 운영 현황·실적 및 준비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
* (지표 1-2) 도의회, 지역주민, 귀어귀촌인 설명회 등 본 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보 노력 등 증빙 및 실적자료 제시
* (지표 1-2) 귀어·귀촌 페스티벌 등 각종 도시민 유치지원을 위한 활동 실적 제출

* (지료 2-3) 귀어·귀촌협의회, 귀어귀촌사업 관련 어업인단체 협력사례 등 거버넌스 관련 실적, 협력사례 및 준비현황 등 증빙자료 제출
* (지표 2-3) 귀어·귀촌인과 기존 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상생을 위해 전개하는 사업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할 것(기존 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공동 참여사업 추진 등)

※ 본 사업은 지역특성, 지자체별 노력정도, 지역별 양적·질적 편차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도지사에게 재량권과 정책역량을 부여하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업목적과 상이할 경우 보조금 회수 등 페널티를 부여

3.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연계 시책 활용 방안

* (지표 1-2) 지자체 자체예산 추가 투입 및 타 산업 연계 실적자료 제시
* (지표 1-2) 도시민 유치를 통한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계 방안 제시 등

4.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지표 3)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및 제시(로드맵 포함)

Ⅳ.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프로그램명	사업비현황				비고 (추진주체)
			총 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①+②						
전담기구	전담기구						
	계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소 계						
	정주의향 단계						
	소 계						
	이주준비 단계						
	소 계						
	이주실행 단계						
	소 계						
	이주정착 단계						
	소 계						
	계②						

* 사업비는 총사업비(국고+지방비) 기준으로 작성하고, 시행완료 연도에 대한 사업비는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항목간 변경은 반드시 도시사 승인 후 변경 가능(타당할 경우)

Ⅴ. 기 타(특이사항 등)

[별지 제2호 서식]

○ ○시·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시행계획서(작성예시)

1.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 목 적

-

○ 사업 시행자

○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 등의 참여내용

구분	위탁 단체·기관	대표자	역할 내용	주소

2. 프로그램 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프로그램 명	사 업 비 현 황								비 고
		총 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전담기구	소 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소 계									
	소 계									

* 사업비는 총사업비(국고+지방비) 기준으로 작성하고, 시행완료 연도에 대한 사업비는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3.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구분	항목별	프로그램 명		주요 변경내용	사업기간	추진주체
전담기구	전담기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어촌이주 의향단계					
	어촌이주 준비단계					
	어촌이주 실행단계					
	어촌이주 후 정착단계					

* 추진주체는 관내 귀어·귀촌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내 연계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마을단위, 지역단체 등을 활용, 다만 타 지역 전문 기관 및 단체를 통한 용역은 관내 인재 풀 확대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되, 1년 이상의 위탁은 제한

4. 사업 시행계획 검토 의견

[별지 제2-1호 서식]

○○시·도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변경 사유

-

○ 기대 효과

-

○ 참여 주체 등 참여자 변동 현황

-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 등의 참여내용

구분	위탁 단체·기관	대표자	역할 내용	주소
변경				
당초				

* 위 서식을 참고하여 변경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

2. 프로그램 구성현황(해당 없을 시, 양식 생략하고 “해당 없음”로 기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프로그램 명	사 업 비 현 황								비 고
		총 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전담기구	소 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소 계									
	소 계									

* 사업비는 총사업비(국고+지방비) 기준으로 작성하고, 시행완료 연도에 대한 사업비는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3. 프로그램 주요 변경 내용(해당 없을 시, 양식 생략하고 “해당 없음”로 기재)

구분	항목별	프로그램명		주요 변경내용	사업기간	추진주체
전담기구	전담기구	변경				
		당초				
		변경				
		당초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변경				
		당초				
		변경				
		당초				
	어촌이주 의향단계	변경				
		당초				
		변경				
		당초				
	어촌이주 준비단계	변경				
		당초				
		변경				
		당초				
	어촌이주 실행단계	변경				
		당초				
		변경				
		당초				
	어촌이주 후 정착단계	변경				
		당초				
		변경				
		당초				

* 추진주체는 관내 귀어·귀촌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내 연계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마을단위, 지역단체 등을 활용, 다만 타 지역 전문 기관 및 단체를 통한 용역은 관내 인재 풀 확대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되, 1년 이상의 위탁은 제한

4. 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종합 의견

[별지 제3호 서식]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 도별 추진실적 보고(반기)

1. 총 괄

(시도)별	총 계획 프로그램 수	변경 승인(건수)			위탁(발주/건수)			사업완료 여부(건수)			
		요청	승인	미승인	위탁	완료	미발주	합계	완료	추진중	미추진
00도											

* 전체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기재(예 : 총 계획 프로그램 개수 : 00개, 도에서 변경 승인한 내역, 시·도의 한시적 위탁 내역, 사업완료 여부 등 기재

2. 도시민 유치사업 참여 시·도별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

시·도별	구분	항목	프로그램 수	사업기간(년)	총 사업비(국비)	집행액				진도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계획	실적	달성률
00도 (예시)	계①+②											
	전담기구	전담기구										
		소계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정주의향 단계										
		이주준비 단계										
		이주실행 단계										
		이주정착 단계										
		소계②										

* 시·도별 작성, 진도율은 반기말 기준

3. 시군별 상담,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실적

시군별	상담 건수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담인력채용	
		프로그램운영 횟수	참여자수	인원	기간
○○도	*○○건*	*○건*	*50명*	*1명*	*'15년 2월~10월*
○○시	*○○건*	*○건*	*50명*	*1명*	*'15년 2월~10월*
○○군	*○건*	*○건*	*10명*	*2명*	*'15년 2월~10월,* *'15년 8월~10월*

* 전담인력채용은 동 사업비를 통한 인력 채용에 한함.

4. 사업 계획상의 문제점 및 보완 대책 등

○ 시·도별 문제점, 주요 특이사항, 변경 사유 등 활성화 방안 보완

5. 우수 또는 모범사례 제출

○ 도시민 유치, 귀어·귀촌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우수하거나 모범사례를 제출 요망(채택 시 포상 등 반영 예정)

6. 기타

○ 개선사항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침 보완 등

[별표]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유형 및 추진기준(권장, 예시)

□ 전담기구

구 분	기반적 프로그램	운영성격
전담기구	○ **도시민 유치활동 전담기구 설치(시·도 조례)** - 지역민간협의체 등 활용 가능(상담창구 운영) * 경비(인건비) 지원(전체사업비의 20% 내)	○ 상시운영 * 시·도 조례 제정 등 근거마련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단계별	운영적 프로그램	운영성격
하드웨어	○ **귀어·귀촌 희망자에 어촌·어가체험을 위한 장기 체재형 거주 공간 마련(관내 빈집 활용)** ○ **소규모 주거단지 기반조성(5호 이하)** - 기존마을 인접 주거를 위한 상하수도, 도로, 부지 정비 등하드웨어 지원	○ 1회 완성·운영 ○ 1회 조성 완료
정주의향 단계	○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 - 귀어·귀촌 포털(홈페이지) 개설·운영 - 귀어·귀촌 매뉴얼 제공 - 출향인사 DB구축 및 유대강화 - 관내투어(양식장, 지역별 어획·양식품목 설명) - 시골집 건축체험 ○ **도시민 어촌유치 홍보물 제공**	○ 개설, 제작, 운영, 갱신 유대강화
이주준비 단계	○ **어촌문화·체험/체득프로그램** - 설명회 및 귀어인 대상 워크숍 - 예비귀어인 어업체험 - 귀어클럽 등 동호회 운영·상담 ○ **빈집 등 주거정보 제공** - 전원택지, 빈집정보 - 빈집 체재형 주말어장(하드웨어와 연계)	○ 상시운영 - 교육이수자 관리
이주실행 단계	○ **이주실행 유도 프로그램** - 빈집 임차 운영 및 융자금 알선 - One-Stop 행정처리반 운영 - 어촌형 일자리 발굴 및 모니터링 - 관내 공공기관 신규채용 안내	○ 상시운영 - 자료관리
이주정착 단계	○ **연착륙 적응 프로그램** - 이주 도시민 멘토링제 운영 - 귀어인 적응 페스티벌 개최 - 귀촌인 정보실 운영 - 귀어·귀촌자 모임 구성 - 귀어·귀촌인 적응교육 알선 및 위탁	○ 상시운영

29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제주 포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황통성 사무관 정재훈	044-200-5460 044-200-54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수산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4조(농업·수산업 기초인력 양성)
○ 농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2조(농어촌의 정보화 촉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입 및 세출)제2항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 지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농어업인단체 등의 교육운영 지원)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제4항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벤처농어업 등의 육성)
○ 수산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보급사업에의 반영 등)
○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29조(해상조업 질서유지 및 안전에 관한 교육)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전업수산인의 육성)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8조(여성수산인의 육성)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후계수산업경영인의 육성) 및 제21조(귀어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①수산계 대학과정							
▪ 참여인원(명)	348	-	380	378		익년 2월	실적보고
▪ 과정 만족도(점)	80	신설				익년 2월	실적보고
②수산계고교 특성화(취업률 %)	36.7	27.5	28.4	30.3	34.7	익년 4월	실적보고
③수산후계인력장학금(명)	148	-	150	150	148	매년 12월	실적보고
④어업인 교육훈련 및 수산어업인 기술보급 등							
▪ 어업인 교육훈련 만족도(%)	87.0	85.5	84.7	86.4	-	매년 12월	[(교육구성+교육활용+교육내용+강사수준+교육진행)/5*100]
▪ 어업인 교육훈련 여성참여비율(%)	15	11.7	13.0	13.0	-	매년 12월	(여성교육생수/전체교육생수)*100
⑤어업인 안전조업교육							
▪ 안전교육 이수실적(%)	95	113	85	92	-	익년2월	(교육이수 인원/교육목표 인원)×100
▪ 안전사고 발생률	△5%	신설				익년2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자료 * 전년대비 5% 감소
⑥어업인단체 역량강화 교육							
▪ 교육 인원수(명)	7,900	-	-	7,817		매년 12월	실적보고
▪ 여성교육인원(명)	250	-	203	247		매년 12월	교육 인원 중 여성인원수 (성인지 실적기준)
▪ 교육 만족도(점)	82	-	-	80		매년 12월	[(교육구성+활용도+내용+강사수준+교육진행)/5]×100
⑦어업인 일자리							
▪ 수산분야 일자리정보제공	4,500	4,471	4,310	3,446		매년 12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실적
▪ 채용성사(건)	400	372	382	401		매년 12월	
⑧창업어가 후견인 수(명)	60	20	20	44	-		실적보고
⑨어성어업인 포럼		신규사업			-	매년 12월	[(교육구성+활용도+내용+강사수준+교육진행)/5]×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9,109**	**9,609**	**9,609**	**9,609**
- 국 비	7,583	8,083	8,083	8,083
- 지방비	1,247	1,247	1,247	1,247
- 자부담	560	560	560	56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 시·도(수산사무소)

○ (참여기관) 수산계고교, 대학교, 농어촌희망재단, 수협중앙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수산단체, 어업인 등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사업자격>

○ 어업인, 귀어·귀촌인, 수산계학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기관, 시·도(수산사무소), 민간기관(수협, 해양수산연수원, 잠수협회 등), 어업인 단체 등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규정에 따라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수산계대학과정>

○ 지원대상 : 어업인을 교육 시킬 수 있는 수산대학 또는 교육 능력이 있는 대학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강사료, 국내외 현장방문, 워크숍 등 교육목적에 소요되는 비용 및 과정 홈페이지 운영, 교육자재(소모품) 구입 등 교육지원에 필요한 비용

* 자산취득 성격의 예산 집행 불가(예 : 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용 기기)

* 수료식·입학식 행사비용 및 기념품 구매비용 과다지출 금지

<수산계고교특성화>

○ 지원대상 : 수산계고교 9개소

* 인천해과고, 충남해과고, 여수해과고, 신안해과고, 완도수고, 포항해과고, 울릉고, 경남해과고, 제주성산고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격 취득, 현장교육, 강사료 및 교육실습장비 구입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수산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수산계 고교 및 대학생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재)농어촌희망재단

- 대학장학금 : 해양수산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휴학생 제외) 중 어업인 본인 및 졸업 후 어업활동 의지가 강한 대학생
- 고교장학금 : 수산계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 중 졸업 후 해양수산계열 진출의지가 강한 학생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양수산계역 고교생 및 대학생의 장학금 지급

○ 지급액

- 대학장학금 : 250만원/학기, 고교장학금 : 50만원/연(정액지원)

* 대학장학금의 경우 타 장학금과 중복 수령 시, 등록금 총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량 및 예산 : 148명 장학금 지원, 140백만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수산어업인 기술보급>

○ 지원대상 : 시·도(수산사무소), 수산업경영인(후계어업인,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여성어업인, 어촌체험마을 운영자, 어촌계장 등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의 교육 및 기술보급에 따른 비용, 연구개발에 따른 부대비용(연구비, 유인물제작, 교육·연구개발에 따른 일반적 경상경비), 시·도(수산사무소) 지도분석장비 구입 등

<어업인단체 역량강화>

○ 지원대상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경영능력, 어업 기술, 소득증대 방안 등)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강화(삶의 질 향상, 경영능력, 어업 기술, 소득증대 방안 및 어촌정착 등) 교육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교육(경영능력, 어업 기술, 소득증대 방안 및 정보교류 등)

  *** 단순한 행사 개최, 단체 운영 등을 위한 교육 사업은 지원 불가**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기술교류를 위한 국내외 우수 사업장 방문

  * 박람회 참가 및 우수 사업장 방문의 경우 단순 관람·방문은 지원 불가
- 수산관련 학술대회(수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학술연구 발표회 등)

<어업인 안전교육>

○ 지원대상 : 선박안전조업규칙에 의거 **간부선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수협중앙회

* 어선의 선주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구명조끼 착용법, 화재발생시 소화기사용법, 심폐소생술, 해상충돌 예방법, 응급처치요령, 기관고장시 대처요령, 구명뗏목 사용법(25톤 이상) 등의 교육

<어업인 일자리 지원>

○ 지원대상 : 어업인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수협중앙회 및 전국 6개센터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분야 구직 사이트(행복海) 운영,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중앙 및 6개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 중앙센터, 부산, 광주, 강릉, 보령, 포항, 제주

<창업어가 멘토링>

○ 지원대상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3년 이내 어업인, 귀어 후 3년 이내인 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창업어가를 기술 지원하는 후견인의 후견 소요비용 지급

<여성어업인 포럼>

○ 지원대상 : 여성어업인 포럼을 시행할 수 있는 단체, 기관(공모선정)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여성어업인 포럼에 수반되는 비용 일체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비율(%)
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수산경영학회, 수협중앙회, 농어촌희망재단	70%
지자체 보조	50%, 70%, 10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보조사업 세부사업계획수립 ·사업지침서 작성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보조사업자 공고·및 선정
(소속기관) ·해당없음	(소속기관)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소속기관) ·사업자 공모·선정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사업자 공고·접수·신청 * 공모사업에 한함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사업자 공고·접수·신청 * 공모사업에 한함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소속기관, 시도, 보조사업자)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관리 ·보조사업 점검(지자체, 민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소속기관) ·해당없음	(소속기관) ·보조사업 추진	(소속기관)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소속기관 → 해수부)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보조사업 점검(합동/자체) * 하위보조사업자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추진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해수부)

* 상기프로세스는 일반적인 사항이며, 기타 상세내용은 내역사업별 추가 설명 참조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정부안 확정 시)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소속기관, 시·도, 보조사업자에 통보(매년 12월말)

○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소속기관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국립수산과학원/해양수산인재개발원)

* 국립수산과학원 : 수산어업기술지원사업, 연구교습어장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전업경영인 및 어촌여성, 현장애로기술, 귀어·귀촌정착교육, 어촌개발 사업

○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보고(매년 1월말)

시·도(시군구)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시·도)기본계획 및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이내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관할 시군구의 검토 결과를 적극 반영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신청절차 : 내역사업 설명서 참조

○ 신청서 접수 : 내역사업 설명서 참조

소속기관

○ 사업관리주체 : 국립수산과학원(연구협력과)

○ 공고시기 : 연구교습어장 사업 연 1회(국립수산과학원 자체 연구과제 확정 시)

○ 신청절차 : 내역사업 설명서 참조

* 해양수산인재개발원(교육운영과)은 자체 계획 수립 후 추진(공모 절차 없음)

시·도(시군구)

○ 해양수산부 세부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세부사업계획 수립

- 시군구의 경우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보고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보조사업자

○ 해양수산부 세부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자체 세부사업계획 수립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공모신청 사업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성 심의를 통해 사업자 선정

- 공모사업 : 수산계고교특성화 실습장비, 어업인 역량강화

○ 실장장비 규모,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서 검토 후 승인 통보

- 부적합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업량을 조정

소속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교습어장(신규 연구과제만 해당), 수산기술동영상 제작(대상 어종,품목 확정 후)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선정·확정된 결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 보고(확정 시)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경우 자체 어업인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확정 후 보고(해수부)

시·도(시군구)

○ 해수부가 통보한 예산액 및 사업량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 추진기관에 교육 및 사업추진 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사업자

○ 교육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및 승인요청(매년 2월 이후)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타당성조사 비용 선 지급, 집행잔액 및 이자 등 후 정산
- 정산시점 : 사업실적보고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 정산방법 : 타당성조사 총 소요비용에 대해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정산자료(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소속기관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시군구)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시행 중 사업자에게 타당성조사 진행 내용에 대해 중간보고 하게 하여 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소속기관

○ 사업내용에 있어 주기적인 관리·감독과 사업비 변경, 세부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 시 변경된 사항이 발생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시·도(시군구)

○ 시장, 도지사는 보조사업(자)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실시

○ 사업비 변경, 세부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 시 변경된 사항이 발생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보조사업자

○ 사업내용에 있어 주기적인 관리·감독과 사업비 변경, 세부계획 변경 등 사업 추진 시 변경된 사항이 발생되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성과,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한 시·도 또는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추진한 보조사업주체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

Ⅳ. 2019년도 내역사업별 주요내용

<수산계 대학과정>

1. 사업개요

○ 사업/지원 대상 : 지차체(시·도)/어업인

○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 40% 이상, 자담 10%

○ 총사업비 :680백만원

* 지방비와 자담부담액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하나, 자담은 최소 10%이상 투입되어야 함

* 지자체는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지방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지원가능

○ 교육시간 : 100시간 이상

* 현장학습 및 국외연수는 일 최대 4시간만 인정 가능하며, 국외연수 최대 인정시간은 12시간으로 함

* 교육과정 중 이론교육은 전공과목이 80% 이상 되도록 편성

○ 지원한도

- 시·도는 해양수산부가 정한 시·도별 배정량에 따라 국고 자금 지원

* 과정별 교육생(입학생 기준)은 지원기준 학생 수 이상 이어야 하며, 교육생이 부족한 경우 비율에 따라 지원액을 반납하여야 함

* 강사료는 지역 여건에 맞도록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현장방문, 국외연수 및 워크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산정

2. 교육생 선발 및 교육과정 운영

○ 교육생 선발

- 해당지역 내·외 수산업 종사자 또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선발

- 교육생 선발 시, 교육생의 해당 경영체 발전구상을 명시한 입학동기·참여의지를 평가항목으로 반영

- 교육생 모집을 위하여 신문, 홈페이지, 수산관련 단체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실시

○ 교육내용

- 새로운 아이디어, 신기술, 벤처정신을 수산업에 접목시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 시킬 전문수산경영인 육성

- 지역 어촌발전을 선도할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최신 수산기술 습득과 경영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 지역 수산대학의 인력 및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업종별 수산전문인력 정예화 유도

○ 과정별 교육방침

과정명	목적	특성화(커리큘럼) 방향
수산 벤처과정	신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산업에 접목시켜 수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나갈 **벤처인재 육성**	▷**벤처인력 육성**을 위한 교과목 위주로 편성 ▪ 마케팅, 창업과정, 수산가공학, 정부시책, 벤처 주요사례 등
수산업 전문가과정	**분야별 전문특화 교육**을 통해 수산전문인력 양성	▷과정 내용을 개론이 아닌 **심화 과정**으로 개설 ▪ 강사를 신지식인,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등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
최고수산 경영자과정	수산업을 선도해나갈 **리더급 인재 양성**	▷**전문경영자 양성**을 위한 교과목 위주로 편성 ▪ 리더쉽, 비즈니스 마케팅, 기업가 정신, 정부 시책, 재무관리 등

○ 교육운영 평가

- 교과 편성, 운영 등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평가위원회(5인 이내) 등을 운영하여야 함

○ 교육결과 활용

- 수료생의 사업발전계획 또는 경영혁신사례집 등을 발간하고 관련 기관(자)에게 배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 수료기준

- 대부분 대학과정의 수료기준인 출석률 외 추가지표를 설정하여 교육효과의 효율성 증대

○ 교육생 사후관리

- 수료생간의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 활성화

- 수료생들을 관련분야 전문 강사로 적극 활용

3. 지원 대상선정 및 평가

○ 지원규모 : 10개 과정 내·외('19년 최소기준 학생 수 348명)

○ 지원기간 : 3년

○ 지원 대상선정

- 3년 주기로 지자체(대학) 계속사업 평가 후 대상 선정
  - 지원기간 : 3년(2019～2021년)
  - 지원 대상(2019～2021년)

시도	수산대학	과정명	지원기준 학생 수		
			2019	2020	2021
계	**8개 대학**		**350**	**350**	**350**
부산	부경대	수산업전문가	25	25	25
강원	강릉원주대	최고수산경영자	20	20	20
충남	한서대	수산업전문가	25	25	25
전북	군산대	벤처과정	20	20	20
전남	조선대학(벤처대학)	벤처과정	50	50	50
	조선대학(벤처대학)	최고수산경영자	45	45	45
	전남대	최고수산경영자	50	50	50
경남	경상대 A	최고수산경영자	40	40	40
	경상대 B	수산업전문가	25	25	25
제주	제주대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	50	50	50

○ 성과 평가(3년 단위)

- 기존에 지원 중인 대학은 지원 3년차에 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사업 성과평가는 과거 3개년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차기('22～'24) 계속지원사업 평가 : '21년 3분기(예정)
  * 차기('22～'24) 신규지원사업 선정 : '21년 3분기(예정)
-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행정평가, 현장평가, 만족도조사로 평가

4. 기타

○ 시·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 단, 사업계획서 중 사업비(국비) 변경시 항목과 항목이 20%를 초과할 경우 시·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20% 이내일 경우 시·도 자체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각 대학과정에서 제출한 해외연수 계획 **검토** 및 **승인**

<중점검토 사항> <서식3> "수산계 대학과정 해외연수 평가기준표" 참조

① 해외연수의 타당성 여부(각 대학과정의 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② 연수 참여자의 적정성 여부(학교 측 참여자는 **담당교수** 및 **업무담당자**로 **제한**, 교직원의 "나눠먹기식 해외연수" 금지)

③ 방문국가 및 방문지의 적정성 여부(해외연수가 관광성으로 판단되면 불허 조치)

- 또한 해연연수 귀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해양수산부 및 대학과정을 담당하는 시·도 담당자에게 제출

○ 관련 서식

* <서식1> 수산계 대학과정 교육운영계획서
* <서식2> 수산계 대학과정 교육결과보고서

<서식1> 수산계 대학과정 교육운영계획서

수산계 대학과정 교육운영계획서[ㅇㅇㅇ대학교 ㅇㅇ과정]

작성자 : 직위(급), 성명(연락처)

1. 사업개요

□ 목적

ㅇ

□ 교육과정명(분야) :

□ 교육기간 : 20ㅇㅇ. 0. 0 ~ 20ㅇㅇ. 0. 0 (00일간, 000시간)

□ 교육대상

ㅇ 대상 조건

-

-

ㅇ 수강생 수 : 명

* 목표 입학자 수를 말함(반드시 명기)

□ 교육장소

ㅇ

□ 교육방법

(단위 : 시간, %)

구 분	강의	실습	현장견학	워크숍(토론)	해외견학
총 000시간	00시간(00%)	00시간(00%)	00시간(00%)	00시간(00%)	00시간(00%)

* 1일은 8시간으로 환산

2. 교육생 선발 절차 및 일정

□ 교육과정 홍보 및 신입생 모집 : 20ㅇㅇ. 0. 0 ~ 0. 0

□ 신입생 합격 통보 및 등록기간 : 20ㅇㅇ. 0. 0 ~ 0. 0

□ 입학식 : 20ㅇㅇ. 0. 0

□ 교육과정 추진 : 2014. 0. 0 ~ 20ㅇㅇ. 0. 0

□ 수료식 : 20ㅇㅇ. 0. 0

3. 세부교육계획 및 일정

□ 강사진 구성

소속	직위(급)	성명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E-메일

□ 교육내용 및 계획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일, 시간)	강사 (내부/외부)	교육장소	비고

□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보유현황

○

○

□ 교육이수기준

○

○

□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

○

4.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항목	산출내역	예산액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 지방비 : 국비에 따른 매칭지방비 + 순수지방비

5. 기대효과

□

□

6.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

* 참고자료(대학별) : 운영규정, 교육생 신청서, 수료증 등

<서식2> 수산계 대학과정 교육결과보고서

수산계 대학과정 교육결과보고서[ㅇㅇㅇ대학교 ㅇㅇ과정]

작성자 : 직위(급), 성명(연락처)

1. 사업개요

□ 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20ㅇㅇ. 0. 0 ~ 0. 0 (00일간, 000시간)

□ 교육대상

ㅇ 모집계획 인원 :

ㅇ 모집 및 수료현황

- 연령별·성별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모집	신청자 수									
	입학자 수									
수료자 수										

* 신청자수 : 입학신청원서 제출자수

- 지역별

(단위 : 명)

구 분	계	ㅇㅇ군	ㅇㅇ시	ㅇㅇ군	ㅇㅇ시	ㅇㅇ군	ㅇㅇ시
입학자 수							
수료							

ㅇ 수강생 수가 모집계획 인원 미달 원인 및 대책

- 원인 :

- 대책 및 향후계획 :

ㅇ 미수료 발생 원인 및 대책

- 원인 :

- 대책 및 향후계획 :

2. 교육결과 및 내용

□ 교육방법

구 분	강의	실습	현장견학	워크숍(토론)	해외견학
총 000시간	00시간(00%)				

□ 교육장소

○

○

□ 교육생 사후관리

○

○

3. 교육성과 및 분석

□ 성과분석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비용분석(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인당비용	시간당비용	교육생자부담

□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 작성요령 1) 교육생의 80%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를 조사하고, 표 안에는 인원수만 명기*

2) 기타 주요 의견은 서술

교육인원			구분	측정 인원	만족도 측정(명)				
계	남	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						
			교육구성						
			교육내용						
			강사수준						
			교육진행						
			교육활용						

○

○

□ 교육계획 달성현황

구분	교육내용	교육시간 (일, 시간)	강사 (내부 0명 /외부 0명)	교육장소	추진실적

4. 사업집행결과

○ 집행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산출내역	집행액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 지방비 : 국비에 따른 매칭지방비 + 순수지방비
* 총사업비에 순수지방비가 포함된 경우 집행은 보조율에 따라 국비, 지방비, 자담을 선 집행하고, 추가 집행된 경우 순수 지방비를 집행액에 포함할 것(정산서 작성 시에도 동일하게 작성)

○ 미집행내역

- 미 집행액 : 천원(국비 00, 지방비 00, 자담 00)
- 미집행사유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
-

○ 개선방안

-
-
-

* 참고자료(과정별)

□ 교육대상자 이수 현황

학번	성명	주소 (시·군·구)	주업종 (직업)	성별 (남/녀)	나이	휴대폰	E-mail	수료여부 (미수료 사유)

<수산계고교 특성화>

1. 사업개요

○ 사업/지원 대상 : 시·도, 교육위탁기관/수산계 고등학교(9개교)

* 교육위탁기관(1개소)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수산계고교(9개교) : 인천해과고, 충남해과고, 여수해과고, 신안해과고, 완도수고, 포항해과고, 울릉고, 경남해과고, 제주성산고

○ 지원형태 : 국고 100%

○ 총사업비 : 2,859백만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수산계고교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 정규교육과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전담 인력과 조직,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실습장 등을 확보할 것

<특성화 프로그램 예시>

* 학교자체프로그램 : 수산(해기사, 양식기능사 자격 등), 해양(스킨스쿠버 등), 기타(강사초빙, 산업체 방문)
* 공통프로그램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종합승선실습훈련, 현장실습훈련, 국제교류학습), 수산계고교 수요를 받아 사업내용 및 사업자 선정(예: 잠수기능사 자격)

○ 수산계 고교 교육실습장비

- 수산계 고교(9개교)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선정

<교육실습장비 예시>

* 항해운영 : 원양선풀미션선박조종시뮬레이터, INMARSAT시뮬레이터, GMDSS 시뮬레이터, 연안선선박조종시뮬레이터, 레이더시뮬레이터, ECDIS시뮬레이터, VTS시뮬레이터, 액화물시뮬레이터, 내화구명정, 탱커실습장비, 어획물처리실습장비 등
* 기관운영 : 기관시뮬레이터, 기관실습장비, 선박자동화시뮬레이터, 해양오염방지시뮬레이터, 자동제어실습장비, 냉동실습장비, 용접실습장비, 전기실습장비, 보조기계실습장비, 전자실습장비, 선반실습장비, 소화설비 등
* 제조·가공 및 기타 분야 운영에 필요한 교육 장비 등

※ 선정방법은 공모를 통하며 '19년도부터는 취업률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가점부여(0～10점)**

3. 지원대상 및 지원금의 사용용도

<지원대상>

○ 수산계고교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상적 교육비

- 학교자체프로그램 : 정규교육 이외의 자체 특성화 교육 추진

* 학교자체프로그램은 3학년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필요 시 전 학년 대상 운영 가능

- 공통프로그램 : 학교자체프로그램으로 수행하기 어려워 교육위탁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교육·훈련

* 공통프로그램은 3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다만, 국제교류학습의 경우 2학년도 참여 가능)

○ 수산계고교 교육실습장비 지원에 필요한 자본적 사업비

<사용용도>

○ **(자체프로그램)** 수산계고교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련 자격 취득, 현장교육, 강사료 등 교육목적에 맞게 소요되는 비용

- 수산계고교의 지리적 환경과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별 특화된 현장 및 실습 교육프로그램 개발

* 학생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시, 자격증 시험 및 취업 일정과 연계하여 추진

- 학교 정규교육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학교에서 자체 운영 불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및 수산과 관련이 없는 타 분야 전문지식 습득 예산은 제외(교육가능여부는 해수부 담당에게 문의)

○ **(실습장비지원)** 수산계고교 교육실습장비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형태 및 사업내용

<지원형태>

○ 사업량 및 예산

- **(지자체 보조)** 수산계 고교 특성화 프로그램(학교 자체) 운영 : 6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명)

구분	계	인천 해과고	충남 해과고	여수 해과고	신안 해과고	완도 수고	포항 해과고	울릉고	경남 해과고	제주 성산고	유보
사업비	600	155	65	25	25	150	100	15	40	15	10
학급수 (3학년)	104 (35)	30 (10)	12 (4)	6 (2)	6 (2)	12 (4)	21 (7)	2 (1)	6 (2)	6 (2)	-
학생수 (3학년)	2,524 (885)	800 (280)	276 (100)	154 (52)	154 (52)	240 (80)	525 (175)	75 (25)	120 (40)	158 (58)	-

* 학급 수, 학생 수 : '18.2월, 정원 기준

- **(지자체 보조)** 수산계 고교 교육실습장비 지원 : 708백만원
- **(민간경상 보조)** 수산계고교 특성화 프로그램(공통프로그램) 운영 : 1,501백만원

  * 공통프로그램(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종합승선실습, 현장실습교육,
  * 공통프로그램(공모) : 잠수교육, 국제교류학습 등 수산계 고교의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계획 마련

○ 지원 조건 : 국고 100%

<사업내용>

○ 학교 자체프로그램 편성 기준

- 취업 중심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1개 이상** 편성
- 특성화 교육에 필요한 **실습교재**(소모품 한정)는 사업비의 **30% 이내**로 편성
- 특성화 사업은 **교육프로그램 비용**으로만 사용(학교 홍보 및 활동비로 사용불가)

○ 공통프로그램 편성 기준

- 종합승선실습훈련(3개월) : 항해실무, 기관실무, 어구·어법실습 등 승선
- 현장실습훈련(3개월) : 양식, 냉동·냉장, 가공·유통 등 산업체 현장실습

< 현장실습훈련 선정 시 참고사항>

▪ 학교별로 별도의 선별과정을 거쳐 취업의지가 확고한 학생 우선 선정
▪ 현장실습훈련 참여 학생의 취업률을 학교별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등에 반영
▪ 현장실습훈련 참여 업체 선정 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순위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평가기준 서식3)

○ 잠수기능사 자격 취득(3주) : 산업잠수 등 현장실습(잠정)

※ '19년도부터는 수산계고교 수요 요청에 의해 프로그램 선정

○ 국제교류학습 : 공통프로그램 참여 학생과 학교를 중심으로 해외선진지 연수
(공통프로그램 미참여 학교 제외)

<국제교류학습 선정 시 참고사항>

▪ 학생반은 인솔자(교사)를 포함하여 구성
▪ 참여 학생이 가장 많은 학교의 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정할 것
(참여 학생이 없는 학교의 교사는 인솔자 선정 불가)
▪ 수산현장 및 수산학교 방문 등의 일정이 60% 이상 되도록 연수계획 수립·추진

○ 교육과정 운영

- 기초적인 이론교육보다는 어업인, 업체, 관계 연구원 등 외부 현장 전문가의 강의 및 실습 중심으로 운영
- 자격 취득, 산업현장 방문(체험) 및 강의 등 참여 학습 내용으로 구성

○ 교육운영 평가

- 교과 편성, 운영 등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졸업생,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교육과정평가위원회 등을 운영하여야 함

5. 기타

○ 해양수산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 및 해양수산연수원에 시달(1월)

○ 수산계 고교는 교육과정운영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해양수산부가 통보한 예산액 및 사업량을 기준으로 해당 수산계 고교 교육운영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서식1> 제출 및 승인 요청(2월)

○ 해양수산연수원은 수산계 고교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한 후,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요청

○ 해양수산부는 시·도 및 해양수산연수원의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

○ 시·도는 해양수산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수산계 고교에 통보

○ 시·도 및 해양수산연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를 변경 추진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비 20% 이내는 시·도에서 자체 승인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20%를 초과할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 및 시·도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로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현장점검 및 추진실적보고(시·도) : 상반기(6월)는 종료 10일 이내, 하반기(12월)는 최종실적보고(관련서식 추후통보)

* 하반기 실적보고는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2월 말까지 완료(학교실적보고 기준이 아닌 시·도 기준)

○ 정산 및 결과보고

- 지자체 보조사업 : 사업종료 및 회계연도 종료(차년 2월) 후 1개월 이내
- 민간경상보조 : 사업종료 및 회계연도 종료(당년 12월) 후 1개월 이내

○ 관련서식

- <서식> 학교 자체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서식> 학교 자체프로그램 사업계획서

20ㅇㅇ년 수산계고교 특성화 추진계획(안)

(ㅇㅇ해양과학고등학교)

(학교 작성자 : 직급, 성명, 연락처(061-000-0000)

(시·도 작성자 : 직급, 성명, 연락처(061-000-0000)

1. 학과 및 학생현황(수산관련과)

□ 학년별 학생현황(예정자)

(단위 : 명 / 기준 : 당해연도 2월)

학과 / 학년	계		ㅇㅇ과		ㅇㅇ과		ㅇㅇ과		ㅇㅇ과		ㅇㅇ과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계												
3학년												
2학년												
1학년												

* 학급수 : **00과**(3학년 0개, 2학년 0개, 1학년 0개), **00과**(3학년 0개, 2학년 0개, 1학년 0개), **00과**(3학년 0개, 2학년 0개, 1학년 0개), **00과**(3학년 0개, 2학년 0개, 1학년 0개), **00과**(3학년 0개, 2학년 0개, 1학년 0개)

□ 졸업자 현황

ㅇ 졸업자 취업현황

학과 / 졸업년도	졸업자수	취업		진학		군입대 (대기 포함)	기타 (미취업 등)
		수산계	비수산계	수산계	비수산계		
평균							
2016.2월							
2018.2월							
2019.2월							

ㅇ 졸업자('19.2월) 취업분야

(단위 : 명)

학과 / 졸업년도	취업자수	수산계					비수산계
		승선	양식	가공·유통	냉동·냉장	기 타	
계							
정규취업							
일시취업							
기타							

ㅇ 자격증 취득현황

프로그램명	2018년 실적		2019년 계획	
	인원	자격증명	인원	자격증명
계	000	00종		00종
	00	00자격증(00), 00자격증(00)		

2. 학교별 자체프로그램 추진계획

□ 교육목적 및 방향

○

○

□ 교육내용(특성화교육)

○ 프로그램명

-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장소)	사업비 (백만원)	학과명	교육대상 (학년/인원)	취득가능 자격증
	0.00～0.00 (00교육장)			3학년 00명	00자격증 00개 00자격증 00개

*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작성 / 교육대상은 학과별로 학년/인원으로 작성

- 소요예산

교육내용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비고
계			

- 세부일정

○ 프로그램명

- 교육내용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장소)	사업비 (백만원)	학과명	교육대상 (학년/인원)	취득가능 자격증
	0.00～0.00 (00교육장)			3학년 00명	

*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작성 / 교육대상은 학과별로 학년/인원으로 작성

- 소요예산

교육내용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비고
계			

3. 학교별 자체프로그램 추진실적 점검계획(시·도 작성)

□ 점검개요(시·도에서 반드시 작성)

○ 일시·장소

○ 점검자 :

○ 점검내용

-

-

<수산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지원 대상 : 농어촌희망재단/해양수산계열 고교* 및 대학생

* 인천해과고, 충남해과고, 여수해과고, 신안해과고, 포항해과고, 경남해과고, 완도수고, 포항과기고, 울릉고, 제주성산고

○ 지원형태 : 국고 100%

○ 총사업비 : 140백만원

○ 지급대상

- (대학장학금) 해양수산계열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휴학생 제외) 중 어업인 본인 및 졸업 후 어업활동 의지가 강한 대학생
- (고교장학금) 수산계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 중 졸업 후 해양수산계열 진출 의지가 강한 학생

* 지원대상별 세부 요건은 농어촌희망재단의 장학금지원 세부신청요강 참조

○ 지급액 : 대학장학금 : 250만원/학기, 고교장학금 : 50만원/연(정액지원)

* 대학장학금의 경우 타 장학금과 중복 수령 시, 등록금 총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절차

- (대학장학금) ①장학금 신청(학생) → ②심사 및 추천(대학 → 농어촌희망재단) → ③선발(농어촌희망재단)

* 평가 항목 : 거주지역, 해양수산관련 학과 관련성, 학과장 추천서, 어업활동 계획서 및 진로계획서, 성적 등

- (고교장학금) ①심사 및 추천(고교 → 농어촌희망재단) → ②자격심의·선발(농어촌희망재단)

* 평가 항목 : 거주지역, 해양수산관련 학과 관련성, 학교장 추천서, 어업활동 계획서 및 진로계획서, 성적 등

○ 가산점

- 저소득층 학생의 장학생 선발 기회 확대를 위해 신규 장학생 선발 시 소득수준을 연계하여 가산점 부여('18년도 2학기 시행)

* 적용대상 : 수산후계 신규장학생 중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0~8분위인 학생 (**복학예정자**는 마지막 학기 소득분위 적용)

* 가산점수 : 최대 10점

* 배점기준 : (0~2분위) 10점, (3~4분위) 8점, (5~6분위) 6점, (7~8분위) 4점

2. 사업 계획수립

○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통보 / 농어촌희망재단의 세부시행계획 승인

○ **(농어촌희망재단)**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 / '수산후계인력 장학금 신청요강' 공고

* 신청요강 공고 : 1학기는 전년도 12월 중, 2학기는 당해연도 6월 중

*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동 신청요강에서 정한 신청기한 내 신청

3. 사업비 배정 및 집행

○ **(해양수산부)** 예산 배정 및 집행

○ **(농어촌희망재단)** 사업비 신청 및 집행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실적 보고

<사업비 신청 및 집행 관련>
- 해양수산부의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사업비 신청 및 집행
- 장학금은 각 학교로 지급하며, 학교에서 해당 학생에게 선감면 조치 또는 직접입금 후 지금정산

<사업비 정산 및 실적 보고 관련>
- 당해연도 12월까지 사업실적 및 관련 통계 보고
- 익년 1월까지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는 해양수산부 통보(사본 첨부)

4. 기타

○ 해양수산부는 농어촌희망재단이 제출한 사업결과 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 수립 시 반영

- <서식> 수산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결과보고서

○ '19년 장학금은 신청률 및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수요 결정

<서식> 수산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결과보고서

수산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결과보고서

작성자 : 직위(급), 성명(연락처)

1. 사업개요

□ 사업명

□ 사업기간 : 20○○. 0. 0 ~ 0. 0

2. 교육결과 및 내용

□ 장학금 지원대상

○ 계획 인원 :

○ 지원현황

- 연령별·성별

가. 고등학생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고등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신청자 수						
지원자 수						
반납자 수						

* 지원자수는 반납자 수를 포함하여 작성

나. 대학생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대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신청자 수							
지원자 수							
반납자 수							

* 지원자수는 반납자 수를 포함하여 작성

- 지역별

가. 고등학생

(단위 : 명)

구 분	계	○○군	○○시	○○군	○○시	○○군	○○시
신청자 수							
지원자 수							
반납자 수							

* 지원자수는 반납자 수를 포함하여 작성

나. 대학생

(단위 : 명)

구 분	계	○○군	○○시	○○군	○○시	○○군	○○시
신청자 수							
지원자 수							
반납자 수							

* 지원자수는 반납자 수를 포함하여 작성

○ 반납자 발생 사유

가. 고등학생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반납금액	반납일시	반납사유
1						

나. 대학생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학교	반납금액	반납일시	반납사유
1						

3. 장학금 지원성과 및 분석

□ 장학금 지원계획 달성현황

구분	계획인원	지원인원	반납인원
고등학생			
대학생			

* 지원자수는 반납자 수를 포함하여 작성

○ 기타의견

-

4. 사업집행결과

○ 집행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산출내역	집행액
계		

○ 미집행내역

- 미 집행액 : 천원
- 미집행사유

5.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
-

○ 개선방안

-
-

* 참고자료 첨부

□ 장학생 현황

○ 고등학생

연번	학교명	학과명	성명	주소 (시군구)	성별 (남/녀)	나이	휴대폰	E-mail

* 연번은 학교별로 명시

○ 대학생

연번	학교명	학과명	성명	주소 (시군구)	성별 (남/녀)	나이	휴대폰	E-mail

* 연번은 학교별로 명시

<어업인 교육훈련 및 수산어업인 기술보급>

1. 사업개요

○ 사업/지원 대상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시·도

○ 지원대상

- 어업인교육 훈련 :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및 여성어업인 등
- 귀어·귀촌정착 교육 : 귀어정착자 및 귀어희망자
- 어촌개발(관광) 사업 운영자교육 : 어촌개발(관광), 어촌체험마을 운영자, 관계공무원
- 수산어업기술지원(기술보급지, 수산기술동영상) 사업 : 어업인(귀어, 전업 어업인)
- 어업인후계자 : 어업인 및 어업인후계자
- 어촌지도자교육 : 어촌계장, 어촌지도자
- 연구교습어장 :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승인을 받은 시·도(수산사무소)
- 지도분석장비 구입 : 연구교습운영 승인을 받은 시·도(수산사무소)

○ 관련예산

구 분	기 관	사 업 비(국비)		증△감		보조율
		2018예산(A)	2019예산(B)	(B-A)	%	
합 계		2,817,000	2,817,000	0	0.0	
어업인 교육훈련	어촌어항공단	100,000	100,000	0	0.0	100
	개발원	144,000	144,000	0	0.0	100
	과학원	250,000	250,000	0	0.0	100
	시·도	309,000	309,000	0	0.0	70
어촌지도자 교육	시·도	714,000	714,000	0	0.0	70
연구교습어장 운영	시·도	1,000,000	1,000,000	0	0.0	70
분석장비구입	시·도	300,000	300,000	0	0.0	100

○ 세부내역

- 어업인 교육훈련 : 803,000백만원

▪ 해수부(한국어촌어항공단) : 100,000천원

- 귀어귀촌교육(100,000천원)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144,000천원

- 해양수산경영기술교육(110,000천원) : 일반수용비 107,000, 국내여비 3,000
- 디지털시스템 유지보수(34,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34,000

▪ 국립수산과학원 : 250,000천원

- 수산기술보급지발간(50,000천원) : 일반수용비 41,000, 국내여비 9,000
- 수산기술동영상제작(200,000천원) : 업무용역비 200,000

▪ 수산사무소 : 309,0000천원

- 수산업경영인교육 : 309,000천원

- 어촌지도자 교육 : 714,000천원(어업인수 비율 등 반영)

·어촌지도자교육 : 714,000천원

- 연구교습어장 운영 등 : 1,300,000천원

·연구교습 어장 : 1,000,000천원

·연구·지도 장비구입 : 300,000천원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어업인교육 훈련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업경영인 및 어촌여성, 현장애로기술 교육과정

- 목적 :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어업경영관리 전문지식·기술·정보의 습득 및 여성어업인 지위향상, 어촌 현안문제 해소 도모
- 교육대상자 :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및 여성어업인 등
- 교육일수 : 분야별 3일간(여성어업인 1일)/소집·집체교육, 현지방문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어선어업 주요기술, 경영 교육, 어촌현안 문제, 관상어 전문인력 양성 등

※ 사업연도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교육계획(안)에 따라 추진

○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정착 교육

- 목적 : 귀어가 정착자금 지원대상자 및 귀어희망자의 안정적인 영어정착을 위한 귀어, 창업, 어업기술 및 경영능력 배양
- 교육대상자 : 귀어정착자 및 귀어희망자
- 교육일수/방법 : 5일(종합교육), 1일(주말교육)/집체교육, 현지견학 등
- 교수요목 : 수산관계주요법령, 귀어가정책, 어업허가취득, 어선·양식어업 이해, 귀어촌 성공 및 실패사례 등

※ 사업연도 한국어촌어항공단 교육계획(안)에 따라 추진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어촌개발(관광) 사업 운영자 교육**

- 목 적 : 어촌개발, 어촌관광리더 및 가이드과정 교육 등을 통해 어촌개발(관광) 사업 운영자 등의 역량 강화
- 교육대상자 : 어촌개발(관광), 어촌체험마을 운영자 및 관계공무원
- 교육일수/방법 : 3일/집체교육, 현지견학 등

※ 사업연도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교육계획(안)에 따라 추진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어업기술지원 사업**

- 목 적 : 연구 성과 기술이전 및 어업현장 애로사항 해소
- 사업내용 : 수산기술지 발간, 수산기술동영상 제작
- 추진내용
  · 연구기관과 수산기술보급 기관 간 업무 공조 체제 구축
  · 연구성과 기술이전 과제 소개 및 현장애로 과제 해소 방안 등

○ **(시·도[수산사무소])어업인후계자(산업기능요원 포함) 등 교육과정**

- 목 적 : 선진수산기술교육으로 정착기반 구축
- 교육대상자 : 어업인 및 어업인후계자

<교육제외 대상>

① 전업경영인 및 선도우수경영인 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 어업인후계자 교육에 포함된 전업경영인 및 선도우수경영인 교육은 가능
② 어업인 후계자 대표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③ 수산업경영인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④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 교육일수/방법 : 1회 2일간(14시간)/소집·집체교육
- 교수요목 : 수산시책, 양식·어선어업 주요기술, 인터넷 교육 등
- 교과운영 : 사무소별 세부 교과편성(강의, 실습, 토론, 견학 등) 집행

나. 어촌지도자 교육(시·도[수산사무소])

○ 시·도지사는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수산시책 등 교육을 실시하여 어업인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어촌지도자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협의회 구성)수산사무소장은 어촌·수산업 발전의 자문 및 가교역할을 담당할 시·군단위(부산·인천·울산광역시는 광역시단위,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단위) 또는 도단위 지역별 어촌지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임원 및 임기)협의회 회장은 수산사무소장이 되며, 회원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어촌계장 및 지역 우수지도자를 수산사무소장이 위촉(서식5)하여 구성하며, 회장 및 회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주요 임무)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보급사업 평가·자문, 기타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

- (회의 개최)수산사무소장은 연 2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회의 소집 방법)회의는 원칙적으로 회원 전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단, 낙도·오지 정주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집교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이 가능한 현지에서 특정지역 회원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

- (수당 등 경비지급)수산사무소장은 회의 소집에 참석한 회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를 우선 지급한다. 이 경우 1회 소집 시 수당 등 지급 기준액은 180천원(회의참석 수당 50천원, 관내여비 20천원, 임무수행 중 활동경비 110천원)이내로 하고, 일괄 지급한다.

※ 경비(수당 등) 우선 지급 후, 차기 정기회의 시까지 어촌지도자협의회별 임무수행결과서(서식7)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경비(수당 등) 회수 조치

- (증빙 서류)수산사무소장은 예산관련 증빙서류와 협의회 개최결과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서식6) 단, 증빙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무수행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

- (교육 지원)수산사무소장은 협의회 우수 회원을 대상으로 어촌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현장교육(선진지 견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어촌지도자 편성 예산 잔액 발생 시 추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예산 불용 최소화)

다. (국립수산과학원, 시·도)연구교습어장 운영 등

ㅇ 연구교습어장 운영

1) (대상사업)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과제 중 현장 확산이 필요한 ‘지정과제*’와 지역 소득원 개발 및 현장 애로 기술개발을 위해 지방에서 신청한 ‘자율과제’

* 지정과제 :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과제 중 현장보급이 필요한 사업 지정, 공모를 통해 사업자(지방) 선정

- (추진기관) 해양수산부 고시(2013-159호, 2013.6.13)에 따라 연구·교습어업의 승인대상기관 중 시·도 수산연구 및 기술지도 추진기관에서 할 수 있다.
- (사업기간) 사업추진기간은 최소 1년에서 3년 이내로 하며, 수산연구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1년 이하 또는 3년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
- (선정위원회 구성)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사업 선정위원회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부장을 당연직으로 둔다.
  * 위원 구성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복지인력담당), 양식산업과(개발담당), 국립수산과학원 부장급 5명(위원장 포함), 기타 관련분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인 이내
- (사업과제 선정)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다음연도 추진할 지정과제를 전년도 7월말까지 공고 또는 지방에 통보하여 사업 참여도를 높이고, 지방에서는 지정과제 또는 자율과제의 사업계획서<서식8>를 전년도 8월말까지 국립수산과학원(대외협력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제 선정 비율(예산기준)은 1대3(지정과제1, 자율과제3)을 원칙으로 하되, 하되 국립수산과학원은 과제신청 접수현황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선정위원회에 상정·심의하고, 확정된 대상과제는 전년도 10월 첫째 금요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
- (어장확보) 사업추진을 위한 어장확보는 수산업법 제45조제3항과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른 협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어업인 소유한 개별어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과제에 적합한 인허가를 취득한 어업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어업인이 소유한 개별어장'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추진기관이 어업인의 어장을 무상으로 활용하여 어업인이 직접 어장을 관리(인건비 미지급)하는 등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제를 말하며 사업 부산물은 어업인의 소유로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추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어장관리) 사업추진기관장은 어장관리를 위해 필요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어업인 개발어장은 어업인이 소유한 개별어장의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요령을 별도로 마련하여 객관성을 기하여야 한다.
  * 사업 운영 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물이 파괴, 유실 또는 병해 및 이상해황 발생 시 사고 경위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① 사업추진기관장은 사업 결과 생산된 부산물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방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산동물 질병발생 및 전염 우려가 있는 경우, 어업인 소유 개별어장 사업의 부산물은 어업인의 소유로 할 수 있음

② 사업 종료 시 재사용이 가능한 시설물은 조기에 철거하여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한 후 재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 어촌계 등 사업 협조자가 공익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증여할 수 있다.

- (계획변경) 사업추진기관장은 천재지변 또는 이상해황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중단하거나 당초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사업추진기관의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추진상황 보고) 사업추진기관장은 사업 종료 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사업 종료보고서<서식9>를 제출해야 한다.

○ 지도분석장비 구입

- 목 적 : 어장 환경 및 작황, 질병 발생여부, 품종별 어장 관리를 위한 어업 기술지도 및 조사 분석 등에 필요한 지도·분석 장비 구입
- 사업내용 : 지도·분석 장비 구입

3. 기타

○ 해양수산부는 사업결과 및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배정에 반영(최대± 20%)한다.

- 평가대상 : 어업인교육훈련(시도 및 개발원), 어촌지도자 협의회 및 교육
- 교육인원, 교육만족도, 여성참여율, 사전의견수렴 및 조치내용 등

○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연구교습어장 과제를 평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중간평가 : 사업 수행의 중간점검으로 과제별 계획에 따른 추진현황 및 실적을 서면으로 평가(7월 중)
- 연차(최종)평가 : 기술보급 및 이전, 특허출원, 교육 등 성과 활용 등을 중점으로 평가(12월 중)

○ 관련서식

- <서식1> 교육 만족도조사 보고서
- <서식2> 2018년 연구교습어장 신규 및 계속과정 선정
- <서식3> 2018년 어업인교육훈련 사업계획서
- <서식4> 2018년 어업인교육훈련 결과보고서
- <서식5> 위촉장
- <서식6> 어촌지도자협의회 회의 개최결과
- <서식7> 어촌지도자협의회원별 임무수행결과 보고서
- <서식8> 연구교습어장 사업 운영계획서
- <서식9> 연구교습어장 사업 종료보고서

<서식1> 교육 만족도조사 보고서

교육과정명	교육인원			측정인원	만족도 측정(명)																						
					교육구성					교육활용					교육내용					강사수준					교육진행				
	계	남	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계																													
어업인후계자 교육																													
어존지도자 협의회																													
어촌지도자 교육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은 교육과정 명 별로 명기

<참고자료>

○ 만족도 점수 계산식

- 교육구성 : ([매우만족 표현자수/측정인원]) × 100점 + ([만족 표현자수/측정인원]) × 75점 + ([보통 표현자수/측정인원]) × 50점 + ([미흡 표현자수/측정인원]) × 25점 = ○○점
- 교육활용, 교육내용, 강사수준, 교육진행 : 상동
- 전체만족도 : (교육구성 점수+ 교육활용 점수 + 교육내용 점수 + 강사수준 점수 + 교육진행 점수)/ 5(항목수) = ○○점

* 만족도 측정항목이 더 있으면 포함하여 계산

<서식2> 2019년 연구교습어장 신규 및 계속과정 선정

2019년 연구교습어장 신규 및 계속과제 선정

* 아래사업비는 국비70%+지방비30%로 구성됨

□ 예산총괄

(단위 : 개, 천원)

구 분	과제 수			2019년 예산액		
	계속	신규	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합 계	16	7	23	1,428,571	1,000,000	428,571
지정과제	4	1	5	529,571	370,700	158,871
자율과제	12	6	18	899,000	629,300	269,700

❑ 신규과제(7개 과제)

(단위 : 천원)

구분	시도	기관	사 업 명	기간	'19 사업비			심 의 의 견
					신청	조정	(국비)	
	합계	-	10	-	824,000	430,000	301,000	
지정과제 (1)	**소계**	-	1	-	196,000	150,000	105,000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자연석 등을 이용한 쏙 서식갯벌 바지락 생산 증대 기술개발	'19-'21	196,000	150,000	105,000	- 사업면적 축소 및 세부사업 조정 (2.0ha→1.5ha/시설비, 조사비용 감액) - 목별 예산 조정(시설부대비→국내여비, 부가가치세는 조사비용에 포함) - 마을어장 내 시설물 설치에 따른 행정기관 사전 협의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말목 철거 실시할 것 - 시험어장 설치 안내문 및 부표 설치
자율과제 (6)	**소계**	-	6		628,000	280,000	196,000	
	경기	수산기술센 터	경기만 새꼬막 치패부착 유도 시험	'19-'20	35,000	35,000	24,500	- 명칭변경(경기만 새꼬막 생산성 향상시험) - 사업 참여자 조정 - 6-가 항목별 소요명세 비목별 예산 조정 및 국내여비 산출 추가 6-나 세부 소요명세 구체화(시험시설, 소모품)
	전북	어업기술센 터	유휴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돌돔 종자생산 기술개발	'19-'20	30,000	탈락	-	- 민간 종묘장에서 기 추진 중
	충남	연 구 개발과	유류 피해지역 낙지 생산량 증대를 위한 연구	'19-'20	100,000	탈락	-	- 낙지 자원회복사업 기 추진('16) 하였고, 본 사업보다는 자원회복 사업 추진이 적합
	충남	기 술 보급과	천수만 해역 점농어 양식 기술 개발(어업인 개발)	'19-'20	83,000	60,000	42,000	- 명칭변경(천수만 해역 점농어 담수어 양식 적용시험) - '어업인개발' 과제로 종묘구입비는 어업인이 부담 - 6-나 세부소요명세(연구개발비) 구체화
	전남	수산종자연구소	육상수조 개불양식 기술개발	'19-'20	100,000	50,000	35,000	- 6-나 시설비 감액(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자체 예산으로 추진/ 사업추진을 위한

구분	시도	기관	사 업 명	기간	'19 사업비			심 의 의 견
					신청	조정	(국비)	
자율과제(6)								수조 구입, 보완은 가능하나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구축은 불가함), 1차년도 보고서 인쇄비용 삭감
	전남	자원조성연구소	참문어 종자 생산 및 중간 양성 기술 개발	'19~'20	50,000	50,000	35,000	- 명칭변경(참문어 종자생산 안정화 기술개발) - 6-나 세부 소요명세 조정(연구개발비 자산성 물품 구입 안됨. 친어구입비 증액 및 소모성 자재 구입 등으로 변경 조치)
	전남	진도지원	고품질 자숙해삼 및 건해삼 표준화 제조공정 기술 개발	'19~'20	145,000	탈락	-	- 정책사업(수출진흥 관련) 추진이 더 적합
	전남	고흥지원	순환여과 시스템을 이용한 바리과 어류 연중 생산 양식기술 개발	'19~'21	60,000	60,000	42,000	- 세부사업 명확하게 기술(해수순환여과시스템), 기초 환경조사에 암모니아, 아질산 등 수질분석 추가 - 6-나 세부 소요명세 재작성(사료비 재산정)
	경남	마산사무소	어미 미더덕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종자확보 기술개발	'19~'21	25,000	25,000	17,500	- 6-가, -나 소요명세 일원화(재료비, 여비) 및 소모성 재료비 구체적 기술

□ 계속사업(16과제)

(단위 : 천원)

구분	시도	기관	사 업 명	기간	'19 사업비			심 의 의 견
					신청	조정	(국비)	
					1,094,000	998,571	699,000	
지정과제(4)	소계		4		450,000	379,571	265,700	
	충남	태안사무소	서해안 말백합 생산 기술 개발	'17~'19	50,000	50,000	35,000	- 정상 추진 * 2mm-2cm 중간육성 단계 생존율 자료 보완
	경남	사천사무소	사천해역 수평망식 개체굴 및 걸대식 굴 양식기술 개발	'18~'20	100,000	100,000	70,000	- 정상 추진 - 개체굴의 생산성과 기준 재설정 필요
	경남	고성사무소	해만가리비 안정적 생산기술 개발	'17~'19	100,000	100,000	70,000	- 국내산과 중국산 성장 및 생존율 비교 추가 - 경남지역 해만가리비 대량폐사에 대한 원인분석 및 고찰 추가 필요, 밀도실험 보완, 먹이생물에 따른 기형율 상관관계 분석 보완
	제주	해양수산연구원	제주해역 큰열매모자반 양식기술 개발 및 대량생산 체제 구축	'18~'20	200,000	129,571	90,700	- 명칭변경(제주해역 큰열매모자반 양식기술 개발) - 위탁사업비 감액, 자체 사업비와 조정 추진 - 2차년도 사업으로 서식조사 축소, 수용비(현장조사복, 행사실비 등), 재료비(수온센서, 각종 자재 등) 감액

구분	시도	기관	사 업 명	기간	'19 사업비			심 의 의 견
					신청	조정	(국비)	
자율과제(12)	소계		12		644,000	619,000	433,300	
	강원	한해성 수산자원 연구센터	대문어 인공종묘생산 기술개발	'15-'19	40,000	40,000	28,000	- 정상 추진
	충남	민물고기 센터	물벼룩 고밀도 대량배양 표준화 기술 개발	'18-'20	55,000	55,000	38,500	- 경제성 분석을 위해 고밀도 배양기준 설정 필요 - 6-나 세부사업비 구체화 기술 (시험연구비-배양시설 운영, 사육지조성 등)
	전북	수산질병 센 터	김 황백화 저감을 위한 현장적용 시험	'18-'19	80,000	80,000	56,000	- 정상 추진
	전남	완도 지원	완도 어류해상가두리 대체품종 산업화 연구	'18-'19	100,000	90,000	63,000	- 생존율 산정 보완, 육상수조식 양식과 경제성 분석 필요 - 6-나 사무관리비(조사작업복 등), 재료비 감액
	전남	여수 지원	여수해역 새조개 생산성 증대를 위한 양식기술 개발	'18-'20	100,000	85,000	59,500	- 정상 추진 - 사업 참여자 조정, 6-나 세부 소요명세 구체화 및 피복비, 재료비 등 감액
	전남	장흥 지원	득량만 새꼬막 양식 기계화 기술 개발	'18-'20	40,000	40,000	28,000	- 정상 추진 * 살포기와 털어기 개발 특허신청 및 기술이전으로 피드백 필요
	전남	장흥 지원	키조개 인공종자 생산 기술 개발	'18-'20	50,000	50,000	35,000	- 정상 추진 * '18년 키조개 폐사 원인에 대한 고찰 추가 필요
	전남	해남 지원	토종 잇바디돌김의 신품종 개발 및 양식 어가 보급사업	'16-'18 → '16-'19	40,000	40,000	28,000	- 명칭변경(토종 잇바디돌김의 신품종 개발) - 기간연장 승인(1차년 기상악화로 장소 변경 추진함에 따라 일관성 있는 사업결과 도출을 위해 1년 연장 승인)
	전남	강진 지원	가리맛 조개 양식 산업화 현장시험	'16-'18 → '16-'19	25,000	25,000	17,500	- 기간연장 승인(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국식 양성방법 이외의 선진국형 중간육성방법 적용 시험 추진할 것) - 경제성 분석 필요
	경남	수산기술 사업소	거제만 해역 연승수하식 개체굴 양성방법 시험	'18-'19	30,000	30,000	21,000	- 경제성 분석 필요
	경남	거제 사무소	왕우럭조개 살포식 양식 기술개발 시험사업	'18-'20	70,000	70,000	49,000	- 정상 추진
	경남	남해 사무소	진주담치 채묘연 및 수하연 대체 개발 시범사업	'18-'19	14,000	14,000	9,800	- 정상 추진

<서식3> 2019년 어업인교육훈련 사업계획서

20ㅇㅇ년 어업인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담당자 : 소속 ㅇㅇㅇ도 ㅇㅇ과(소), 직급 : ㅇ급, 성명 ㅇㅇㅇ, 000-000-0000)

□ 어업인교육

ㅇ 어업인후계자교육

(단위 : 회, 명, 천원)

사무소별	교육장소	교육방법	교육횟수	교육인원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합계		계					
		집합교육					
		견학					
0000 수산기술사업소	소계						
	00시 및 00교육장	집합교육					
	00시 및 00일원	견학					
00사무소	소계						
	00시 및 00교육장	집합교육					
	00시 및 00일원	견학					

* 집합교육(강의, 실습, 토론 등 지역 내 교육), 선진지 견학(해당 지역외 견학교육)

□ 어촌지도자 교육(협의회)

(단위 : 회, 명, 천원)

사무소별	교육장소	교육방법	교육횟수	교육인원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합계		계					
		집합교육					
		견학					
0000 수산기술사업소	소계						
	00시 및 00교육장	집합교육					
	00시 및 00일원	견학					
00사무소	소계						
	00시 및 00교육장	집합교육					
	00시 및 00일원	견학					

* 집합교육(강의, 실습, 토론 등 지역 내 교육), 선진지 견학(해당 지역외 견학교육)

□ 연구교습어장 운영

(단위 : 천원)

사업기관	과제명	사업기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계	0건				
0000사업소	참문어 해상가두리 예비시험	'17~'19			
0000사업소	미더덕 현장적용 기술개발	'13~'15			
0000사업소	사천만 백합자원 복원 시험사업	'18~'19			
0000사업소	바윗굴 수하식 양식의 효율적인 양성방법 시험	'17~'19			
0000사업소	견내량 돌미역 자원 회복을 위한 미역양식	'18~'19			
0000사업소	고성해역 주름미더덕 인공채묘 및 양성시험	'19			
0000사업소	새꼬막과 피조개의 혼합살포 시험양식	'19			

□ 지도분석장비 구입

(단위 : 대, 천원)

구 분	장비명	구입대수	사업비			활용목적
			계	국비	지방비	
계						
0000 사업소	YSI 8520	1				양식어장의 해양환경 및 작황·병충해발생여부, 품종별 양식장 관리를 위한 영어지도, 정책수립 기초자료 조사 분석에 필요한지도·분석장비 구입
0000 사업소	YSI 8520	1				

<서식4> 2018년 어업인교육훈련 결과보고서

20ㅇㅇ년 어업인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담당자 : 소속 ㅇㅇㅇ도 ㅇㅇ과(소), 직급 : ㅇ급, 성명 ㅇㅇㅇ, 000-000-0000)

1. 교육훈련 전 의견수렴 및 조치사항

사무소별	교육명	교육훈련 전 의견수렴 내용	의견수렴결과 조치사항	비고
00사무소		1.‘’’’ 2. ‘’’’ 3.‘’’’	ㅇ ㅇ ㅇ	
00사무소				

2. 교육실적

□ 어업인교육

ㅇ 어업인후계자교육

(단위 : 회, 명, 천원)

사무소별	교육장소	교육방법	교육 횟수	교육인원			집행액		
				계	남	여	계	국비	지방비
합계		**계**							
		집합교육							
		견학							
0000 수산기술사업소	소계								
	00시 및 00교육장	**집합교육**							
	00시 및 00일원	**견학**							
00사무소	**소계**								
	00시 및 00교육장	**집합교육**							
	00시 및 00일원	**견학**							

* 집합교육(강의, 실습, 토론 등 지역 내 교육), 선진지 견학(해당 지역외 견학교육)

□ 어촌지도자 교육(협의회)

(단위 : 회, 명, 천원)

사무소별	교육장소	교육방법	교육 횟수	교육인원			사업비		
				계	남	여	계	국비	지방비
합계		계							
		집합교육							
		견학							
0000 수산기술 사업소	소계								
	00시 및 00교육장	집합교육							
	00시 및 00일원	견학							
00사무소	소계								
	00시 및 00교육장	집합교육							
	00시 및 00일원	견학							

* 집합교육(강의, 실습, 토론 등 지역 내 교육), 선진지 견학(해당 지역외 견학교육)

□ 연구교습어장 운영

(단위 : 천원)

사업기관	과제명	사업기간	집행액		
			계	국비	지방비
계	0건				
0000사업소	참문어 해상가두리 예비시험	‘17~’19			
0000사업소	미더덕 현장적용 기술개발	‘13~’15			
0000사업소	사천만 백합자원 복원 시험사업	‘18~’19			
0000사업소	바윗굴 수하식 양식의 효율적인 양성방법 시험	‘17~’19			
0000사업소	견내량 돌미역 자원 회복을 위한 미역양식	‘18~’19			
0000사업소	고성해역 주름미더덕 인공채묘 및 양성시험	‘19			
0000사업소	새꼬막과 피조개의 혼합살포 시험양식	‘19			

□ 지도분석장비 구입

(단위 : 대, 천원)

구 분	장비명	구입 대수	집행액			활용목적
			계	국비	지방비	
계						
0000 사업소	YSI 8520	1				양식어장의 해양환경 및 작황·병충해발생여부, 품종별 양식장 관리를 위한 영어지도, 정책수립 기초자료 조사 분석에 필요한지도·분석장비 구입
0000 사업소	YSI 8520	1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

□ 개선방향

○

-

□ 향후계획

○

-

□ 기타 건의사항 등

○

-

<서식5> 위촉장

제 호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00수산사무소 00지역 어촌지도자협의회 회원으로 위촉하오니 어촌 및 수산업발전을 위한 자문 등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0 0 수산사무소장

<서식6> 어촌지도자협의회 회의 개최결과

어촌지도자협의회 회의 개최결과

개최일시		장 소		참여인원	총00명
위원장	직급: 성명:		기타참여자	000외 0 명	
의 제	○ 개최 목적을 개조식으로 열거				
회의내용	○ 주요내용 기재 ○ 시책홍보, 교육훈련 내용 등				
임무부여 및 정책 모니터링	○ 임무 부여내용 ○ 우리부 정책에 대한 위원(어촌계장 등)들의 반응과 의견을 기록				
건의사항 및 조치결과	○ 건의사항 및 정책모니터링내용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기록				
특이사항					
붙 임	1. 참석자명단 2. 교육자료 등				

* 참석자 현황(누계)

누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서식7> 어촌지도자협의회원별 임무수행결과 보고서

어촌지도자협의회원별 임무수행결과 보고서

O 수신 : OO수산사무소장 귀하

O 임무 수행사항

임무부여 일 자	주요내용	임무 수행 결과		
		일 시	장소	대상
어촌지도자협의회 개최 일자	어촌지도자협의회 개최시 부여된 임무기재	00년00월00일	00회관,직접방문 등	00명 (남 00, 여 00)

00년00월00일 어촌지도자협의회 개최시 부여된 임무를 위와 같이 조치(홍보, 배부 등 구체적 사실 기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00시(도) 00구(군) 00동(읍,면) 00(직위) 000 (서명)

<서식8> 연구교습어장 사업 운영계획서

연구교습어장 사업 운영 계획서

과 제 명						
사업기간	20**~20**(0년차)		신규( ), 계속( ), 종료( )			
추진기관		참여기관(단체)		사업형태	연구교습( ), 어업인개발( )	
사업비(천원)	당해연도		전년도		누 계	
연구책임자	이 름		직위(직급)		연락처	
사업담당자	이 름		직위(직급)		연락처	
사업참여자	이 름		소 속		담당업무	
〃						
〃						
〃						

Ⅰ. 과제 개요

1. 최종목표

○

2. 필요성(어업인 등 현장의견 반영)

가. 기술적 측면

○

○

나. 경제·산업적 측면

○

○

3. 국내외 연구 및 기술개발 동향

○

○

○

4. 연차별 사업 목표 및 내용

구분	세부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1차년(20ㅇ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2차년(20ㅇ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3차년(20ㅇ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5.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시험 항목	1차년 20○○	2차년 20○○	6차년 20○○
가. 1) 2) 3) 4)			
나. 1) 2) 3) 4)			
다. 1) 2) 3) 4)			

6. 현재까지 시험결과 요약

가.

1)

○

○

2)

○

○

나.

1)

○

○

2)

○

○

7.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가. 기술적 측면

○

○

나. 경제·산업적(실용화) 측면

○

○

다. 수산정책 개발적 측면

○

○

Ⅱ. 당해연도 사업개요

1. 목표

○

○

2. 시범사업 내용

사업 항목	사업 내용
가.	○ ○ ○ ○
나.	○ ○ ○ ○
다.	○ ○ ○ ○

3. 시설 위치 및 방법

○ 시설위치

○ 시설방법 (측면도, 평면도, 별도 첨부)

4. 사업 수행방법

가.

1)

○

○

2)

○

나.

1)

○

2)

○

5. 월별 추진계획

세부 사업항목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가.												
1) - -												
2) - -												
나.												
1). - -												

6. 사업비 소요명세

가. 항목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세부 사업항목	계	비 목 별					
		인건비	수용비	임차료	재료비	여비	---------
총 계							
가.							
나.							
다.							

나. 세부 소요명세

(단위 : 천원)

연도	목별	소요예산	산 출 근 거						비고
			항목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계									

7. 기술이전 및 생산자료 등

<서식9> 연구교습어장 사업 종료보고서

(　년도)연구교습어장 사업 종료보고서

과 제 명						
사업기간	20**~20**(0년차)		신규(　), 계속(　), 종료(　)			
추진기관		참여기관(단체)		사업형태	연구교습( ), 어업인개발( )	
사업비(천원)	당해연도		전년도		누 계	
연구책임자	이 름		직위(직급)		연락처	
사업담당자	이 름		직위(직급)		연락처	
사업참여자	이　름		소　속		담당업무	
〃						
〃						
〃						

1. 요　약

2. 목 적(추진배경)

3. 사업개요

사업명	장 소	시설방법	사업규모	사업기간	소요예산	전담공무원

○ 어장시설 도면 : 붙임

4. 추진결과

가. 주요사항

년 월 일	주 요 추 진 내 용	비　고

나. 세부추진사항

1) 어장환경

○ 수온, 비중 등 대비표 작성 및 해황 분석

지역	구분 월별	수온 (℃)			비중			강우량(m/m)			비고
		평년	금년	대비	평년	금년	대비	평년	금년	대비	

2) 작황분석

○ 성장도, 유생출현, 생존율 등 필요사항 고찰

품종별	성 장 도		중 량		피해 상황			비고
	시설시	현재	시설시	현재	피해량	피해율	생존량	

3) 단계별 관리상황

○ 채묘, 자어(패), 성어(패), 수획(출하) 등 성장단계별 관리상황 고찰

4) 생산 및 소득

사업명	사업 규모	시설 방법	ha당 시설량	양성 기간	생산	소득	세입	비고
연구·교습어장								
인근 민간어장								

※ 타 어장과 비교 작성

다. 사업성과

□ 총괄

구 분	항 목	사업 성과	기대 효과	미비 사항
소득증대				
자원조성				
기술전파				
메스컴 홍보				

□ 세부내역

○ 대어업인 기술지도

(회/명, 분기/누계)

사 업 명	내방상담	현장교육 및 실습	순회지도	기타 지도

- 기술지도 상황

○ 파급 효과

품종 (사업)	연구·교습어장			인근 어장		
	환경개선	자원조성	어장개발 및 기타	환경개선	자원조성	어장개발 및 기타

- 해당사항에 한하여 주요 항목별로 수치화 하여 작성

○ 보도매체 활용 홍보

(회, 분기/누계)

사업명	TV	라디오	신문게제	새어민투고	기타

※지역별, 품종별 특성에 따라 서식 일부 변경 가능

4. 종 합 고 찰

○ 주요 항목별 종합의견 작성

○ 기술 지도상 문제점 및 대책도 병행 서술

6. 예산 집행

가. 예산집행 내역

집행년도	사 업 명	목 별	세부항목	규 격	수 량	단 가	금액
계							

나. 예산 집행 의견

○ 주요 항목별 예산집행에 따른 건의 및 집행의견 작성

7. 소득분석

○ 시설방법 :　　○ 조사지역 :

○ 사업규모 :　　○ 조사기간 :

항 목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조수입	계			
	판 매 소 득			
생산비	경영비	시 설 비		
		수 선 비		
		종 묘 비		
		유 류 비		
		사 료 비		
		약 품 비		
		전기요금		
		얼 음 대		
		주·부식비		
		조세공과금		
		공제및보험료		
		기타 지출		
		감가상각비		※시설 감가상각비 참조
		인 건 비		
	자 가 노 력 비			
	자 본 용 역 비			
	총 계			
총소득(조수입-경영비)				
소득율(총소득÷조수입)×100				
순소득(조수입-생산비)				
이익률(순소득÷조수입)×100				

8. 평가회의 결과

○ 일시 및 참석자 명단 명시

○ 사업계획 및 추진결과

○ 사업 추진시 도출된 문제점 및 보완책

○ 경영 분석 및 사업성과

○ 수산기술지 발간여부 및 금후 활용방안 등 구분 작성

※지역별, 품종별 특성에 따라 보고 서식 일부 변경 가능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1. 사업개요

○ 사업/지원 대상 : 수협중앙회(어업정보통신국)/어선의 선주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

○ 총사업비 : 486백만원[국비(70%) 340백만원, 자담(30%) 146백만원]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구명조끼 착용법, 화재발생시 소화기사용법, 심폐 소생술, 해상충돌 예방법, 응급처치요령, 기관고장시 대처요령, 구명뗏목 사용법(25톤 이상) 등 의 교육

2. 사업추진

○ 수협중앙회(어업정보통신본부)는 사업계획서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2019. 1. 12까지)

○ 수협중앙회(어업정보통신본부)는 기 승인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해양수산부의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수시)

- 단, 사업계획서 중 사업비(국비) 변경 시 항목과 항목 간 변경이 20%를 초과할 경우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20% 이내일 경우 수협중앙회(어업정보통신본부)에서 자체 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 수협중앙회(어업정보통신본부)에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는 교육기관(혹은 단체)이 제출한 교육결과 보고서 및 모니터링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다음연도 예산 배정에 반영

○ 해양수산부는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혹은 교육 프로그램 선정 시 불이익 조치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추진시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지시

4. 기타

○ 관련서식

- <서식1>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사업계획서
- <서식2>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결과계획서

<서식1>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사업계획서

20ㅇㅇ년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사업계획서

작성자 : 직위(급), 성명(연락처)

※ 사업성격에 따라 내용 조정 가능

1. 사업명 :

2. 사업개요

가. 목적

□

ㅇ

나. 추진방향

□

ㅇ

다. 근거법령

□

ㅇ

라. 필요성

□

ㅇ

-

**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간략히 연도별 실적 및 성과를 추가기술*

마. 사업추진 조직 및 주요업무

□

ㅇ

-

바. 주요사업 내용

□

□

□

□

사. 성과지표 및 목표

□ 어업인 교육이수 실적

성과지표	2019목표	측정방식 등
▪ 교육이수 실적(%)		(당해연도 교육이수 인원/ 당해연도 교육목표 인원)×100
▪ 안전사고 발생률 (%)	전년대비 5% 감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자료 * 전년대비 5% 감소

* *상기와 같이 사업시행지침에 있는 공통지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지표 추가가능*

아. 추진체계

□

3. 세부추진계획

가. 교육 횟수

시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나. 교육 인원

시도	계			25톤이상			25톤미만		
	횟수	척수	인원	횟수	척수	인원	횟수	척수	인원
합계									

다. 교육방법

□

○

-

라. 교육생 선발절차 및 일정

□

○

-

마. 교육내용 및 계획

□ 교육내용

○

-

□ 교육계획

○

-

바.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보유현황

□ 교육시설

○

□ 교육기자재

사. 교육이수 기준

□

○

아.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

○

4. 세부 추진일정

□

□

5.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산출내역	예산액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					
-					

* 항목 및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

6. 기대효과

□

□

7.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서식2>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결과계획서

20ㅇㅇ년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자 : 직위(급), 성명(연락처)

※ 사업성격에 따라 내용 조정 가능

1. 사업명 :

2. 사업개요

가. 목적

□

ㅇ

나. 추진방향

□

ㅇ

다. 근거법령

□

ㅇ

3. 주요사업 내용(결과)

가. 교육 회수

시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나. 교육 인원

시도	계			25톤이상			25톤미만		
	횟수	척수	인원	횟수	척수	인원	횟수	척수	인원
합계									

4. 사업성과

가. 성과(주 지표, 보조지표) 및 목표 달성도

□ 어업인 교육이수 실적

성과지표	2019목표	측정방식 등
▪ 교육이수 실적(%)		(당해연도 교육이수 인원/ 당해연도 교육목표 인원)×100
▪ 안전사고 발생률 (%)	전년대비 5% 감소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자료 * 전년대비 5% 감소

나. 교육성과 및 분석

□ 교육생 수료율

시도	계획			실적			수료율(%)		
	횟수	척수	인원	횟수	척수	인원	횟수	척수	인원
합계									

□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 작성요령 1)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를 조사(연 1,000명 이상)
2) 기타 주요 의견은 서술

구분	교육인원		구분	만족도 (점)	측정 인원	만족도 측정(명)				
	전체	만족도 측정인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합계							
			교육구성							
			교육활용							
			교육내용							
			강사수준							
			교육진행							

<참고자료>

○ 만족도 점수 계산식

- 교육구성 : ([매우만족 표현자수/측정인원]) × 100점 + ([만족 표현자수/측정인원]) × 80점 + ([보통 표현자수/측정인원]) × 60점 + ([미흡 표현자수/측정인원]) × 40점 + ([매우미흡 표현자수/측정인원]) × 20점 = ○○점
- 교육활용, 교육내용, 강사수준, 교육진행 : 상동
- 전체만족도 : (교육구성 점수+ 교육활용 점수 + 교육내용 점수 + 강사수준 점수 + 교육진행 점수)/ 5(항목수) = ○○점

* 만족도 측정항목이 더 있으면 포함하여 계산

5. 사업집행 결과

□ 집행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산출내역	집행액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 미집행 내역

○ 미 집행액 : 천원(국비 00, 자담 00)

○ 미집행사유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

□ 개선방안

○

○

<어업인역량강화 교육>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어업인 및 단체의 역량강화 교육이 가능한 기관(혹은 단체)

○ 총사업비 : 761백만원[국비(70%) 533백만원, 자담(30%) 228백만원]

○ 지원내용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업인 혹은 어업인 단체의 역량 강화 교육(경영능력, 어업 기술, 소득증대 방안 등)
- 여성어업인, 다문화가정 여성어업인 대상 역량강화(삶의 질 향상, 경영능력, 어업 기술, 소득증대 방안 및 어촌정착 등) 교육
- 어업인, 수산업경영인, 해양수산신지식인 대상 역량강화 교육(경영능력, 어업 기술, 소득증대 방안 및 정보교류 등)

  * 단순한 행사 개최, 단체 운영 등을 위한 교육 사업은 지원 불가
- 어업인 등 국내외 시장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벤치마킹·기술교류를 위한 국내외 우수 사업장 방문(단순 관람 방문은 지원 불가)
- 수산관련 학술대회(수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학술연구 발표회 등)

2. 사업추진절차(공모절차)

해양수산부	①②④⑥⑧⑨→ ←③⑤⑦⑩⑪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① 사업지침 마련 ② 교육 프로그램 공모계획 통보(홈페이지) ④ 교육 프로그램 평가 및 통보 ⑥ 사업계획서 승인 및 사업량 배정 ⑧ 보조금 교부결정 및 보조금 교부 ⑨ 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점검(수시)	③ 교육 프로그램 신청, 접수 ⑤ 사업계획 수립, 승인 요청 ⑦ 보조금 교부결정신청 및 교부요구 ⑩ 교육실적현황 보고(반기별) ⑪ 사업완료·보조금 검정 및 정산보고

3. 기타

○ 교육기관(혹은 단체)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 사업추진 시 주의사항

- 교부받은 국가보조금으로 자산취득 성격의 예산집행 불가
- 교육 시, 교육생 여비를 현금으로 개인에게 일괄 정액지급 금지

  *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 최소한의 차량임차는 허용

- 교육 시 실제 시작 시간이 13시 이후, 교육 종료 시간이 12시 이전인 경우 식대 지급 불가

  * <식대 지급 불가의 예>
    -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13시부터 교육 시작인 경우
    - 오전 12시 교육 종료인 경우(편법으로 교육 종료 시간을 12시30분으로 하는 경우도 식대 지급 불가)

○ 관련서식

- <서식1>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 <서식2> 교육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서식1>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기관명 : ○○○〕

작성자 : 직위(급), 성명(연락처)

※ 사업성격에 따라 내용 조정 가능

1. 사업명 :

2. 사업개요

가. 목적

□

○

나. 추진방향

□

○

다. 근거법령

□

○

라. 필요성

□

○

-

** 그동안 추진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간략히 연도별 실적 및 성과를 추가기술*

마. 사업추진 조직 및 주요업무

□

○

-

바. 주요사업 내용

□

□

□

□

사. 성과지표(주 지표, 보조지표) 및 목표

□ 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인원수(여성), 수료율 및 만족도

성과지표	2018목표	측정방식 등
▪ 교육 인원수(명)		
▪ 여성교육인원(명)		교육 인원 중 여성인원수
▪ 교육 수료율(%)		졸업인원/입학인원
▪ 교육 만족도(점)		[(교육구성+활용도+내용+강사수준+교육진행)/5]×100

* *상기와 같이 사업시행지침에 있는 공통지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지표 추가가능*

* *사업단위로 작성(세부사업단위로 작성 하는 것이 아님)*

아. 추진체계

□

3. 세부추진계획

* *주요과정별 세부내용 및 기준, 방법, 대상선정 등*

가. 교육기간

교육명	교육기간	비고
계		
1) 세부사업명	20○○. 0. 0 ~ 20○○. 0. 0	(00일간, 000시간)
2) 세부사업명	20○○. 0. 0 ~ 20○○. 0. 0	(00일간, 000시간)
3) 세부사업명	20○○. 0. 0 ~ 20○○. 0. 0	(00일간, 000시간)

나. 교육대상

교육명	대상조건	대상자 수
계		
1) 세부사업명		
2) 세부사업명		
3) 세부사업명		

** 교육대상자 수 : 목표 인원 수를 말함(반드시 명기)*

다. 교육장소

교육명	교육장소	비고
계		
1) 세부사업명		
2) 세부사업명		
3) 세부사업명		

라. 교육방법

(단위 : 시간, %)

교육명	교육시간 수					
	계	강의	실습	국내 견학	워크숍 (토론)	해외 견학
계	00시간	00시간 (00%)	00시간 (00%)	00시간 (00%)	00시간 (00%)	00시간 (00%)
1) 세부사업명						
2) 세부사업명						
3) 세부사업명						

** 1일은 8시간으로 환산*

마. 교육생 선발절차 및 일정

교육명	교육 프로그램 홍보 및 대상자 모집	교육 프로그램 추진	수료일
1) 세부사업명	20○○. 0. 0~0. 0	20○○. 0. 0~0. 0	20○○. 0. 0
2) 세부사업명	20○○. 0. 0~0. 0	20○○. 0. 0~0. 0	20○○. 0. 0
3) 세부사업명			

바. 교육내용 및 계획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시간 (일, 시간)	강사 (내부/외부)	비고
1) 세부사업명				
2) 세부사업명				
3) 세부사업명				

사.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보유현황

교육명	교육시설	교육기자재	기타
1) 세부사업명			
2) 세부사업명			
3) 세부사업명			

아. 교육이수 기준

교육명	교육이수 기준	비고
1) 세부사업명		
2) 세부사업명		
3) 세부사업명		

자. 교육이수자 사후관리

교육명	사후관리 내용	비고
1) 세부사업명		
2) 세부사업명		
3) 세부사업명		

4. 세부 추진일정

□

□

□

□

5. 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산출내역	예산액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					
-					

* 항목 및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

6. 자부담 확보 현황 또는 확보계획

□

□

7. 기대효과

□

□

8.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

붙임 :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자체평가서<서식1-1>

<서식1-1>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자체 평가서

* *참고1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글자크기 및 줄 간격 등 서식을 변경하지 말고, 총 5페이지 이내로 작성*

연번	평가사항	자체평가 내용	자체 평점
합계			
1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2	사업능력		
3	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4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5	교육 인원 수		
6	교육 시간 (1일=8시간)		
7	사업성과 기대효과		
8	예산집행 항목 및 내역의 적정성		
9	자부담 능력		
10	가점사항		

<서식2> 교육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교육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기관명 : ○○○]

작성자 : 직위(급), 성명(연락처)

※ 사업성격에 따라 내용 조정 가능

1. 사업명 :

2. 사업개요

가. 목적

□

○

나. 추진방향

□

○

다. 근거법령

□

○

3. 주요사업 내용(결과)

가. 교육기간

교육명	교육기간	비고
계		
1) 세부사업명	20○○. 0. 0 ~ 20○○. 0. 0	(00일간, 000시간)
2) 세부사업명	20○○. 0. 0 ~ 20○○. 0. 0	(00일간, 000시간)
3) 세부사업명	20○○. 0. 0 ~ 20○○. 0. 0	(00일간, 000시간)

나. 교육인원

□ 연령별, 성별

(단위 : 명)

교육명	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1) 세부사업명									
2) 세부사업명									
3) 세부사업명									

□ 지역별

(단위 : 명)

교육명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 세부사업명													
2) 세부사업명													
3) 세부사업명													

□ 목표 인원 대비 수료 인원이 적은 이유 및 대책

○ 이유 :

○ 대책 :

다. 교육장소

교육명	교육장소	비고
계		
1) 세부사업명		
2) 세부사업명		
3) 세부사업명		

라. 교육방법(단위 : 시간, %)

교육명	교육시간 수					
	계	강의	실습	국내 견학	워크숍 (토론)	해외 견학
계	00시간	00시간 (00%)	00시간 (00%)	00시간 (00%)	00시간 (00%)	00시간 (00%)
1) 세부사업명						
2) 세부사업명						
3) 세부사업명						

** 1일은 8시간으로 환산*

4. 사업성과

가. 성과(주 지표, 보조지표) 및 목표 달성도

□ 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인원수(여성), 수료율 및 만족도

성과지표	2016년			측정방식 등
	목표	실적	달성률(%)	
▪ 교육 인원수(명)				
▪ 여성교육인원(명)				교육 인원 중 여성인원수
▪ 교육 수료율(%)				졸업인원/입학인원
▪ 교육 만족도(점)				[(교육구성+활용도+내용+강사수준+교육진행)/5]×100

** 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서에 명시한 성과지표별로 작성*

** 사업단위로 작성(세부사업단위로 작성 하는 것이 아님)*

나. 교육성과 및 분석

□ 교육비용

교육명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비용분석(원)	
	계획	실적	계획	실적	1인당비용	시간당비용
계						
1) 세부사업명						
2) 세부사업명						
3) 세부사업명						

□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

* 작성요령 1) 교육생의 80%이상을 대상으로 교육만족도를 조사

2) 기타 주요 의견은 서술

구분	교육인원			구분	만족도(점)	측정인원	만족도 측정(명)				
	계	남	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계				합계							
				교육구성							
				교육활용							
				교육내용							
				강사수준							
				교육진행							
1) 세부사업명				합계							
				교육구성							
				교육활용							
				교육내용							
				강사수준							
				교육진행							
2) 세부사업명				합계							
				교육구성							
				교육활용							
				교육내용							
				강사수준							
				교육진행							
3) 세부사업명				합계							
				교육구성							
				교육활용							
				교육내용							
				강사수준							
				교육진행							

<참고자료>

○ 만족도 점수 계산식

- 교육구성 : ([매우만족 표현자수/측정인원]) × 100점 + ([만족 표현자수/측정인원]) × 75점 + ([보통 표현자수/측정인원]) × 50점 + ([미흡 표현자수/측정인원]) × 25점 = ○○점
- 교육활용, 교육내용, 강사수준, 교육진행 : 상동
- 전체만족도 : (교육구성 점수+ 교육활용 점수 + 교육내용 점수 + 강사수준 점수 + 교육진행 점수)/ 5(항목수) = ○○점

* 만족도 측정항목이 더 있으면 포함하여 계산

5. 사업집행 결과

□ 집행내역

(단위 : 천원)

항목	산출내역	집행액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 미집행 내역

○ 미 집행액 : 천원(국비 00, 자담 00)

○ 미집행사유

6.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

○

□ 개선방안

○

○

참고 1 평가방법 및 배점 세부내용

연번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점수
합계			100	
1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매우적정 : 10점 - 적정 : 7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0점	10	
2	사업능력	- 매우적정 : 10점 - 적정 : 7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0점	10	
3	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 매우필요 : 10점 - 필요 : 7점 - 보통 : 4점 - 불필요 : 0점 (기타 유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여부, 교육 수요 및 시급성 등)	10	
4	교육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 매우 우수 : 10점 - 우수 : 7점 - 보통 : 4점 - 미흡 : 0점	10	
5	교육 인원 수	- 500명 이상 : 15점 - 200명 이상 500명 미만 : 10점 - 100명 이상 200명 미만 : 8점 - 50명 이상 100명 미만 : 6점 - 50명 미만 : 2점	15	
6	교육 시간 (1일=8시간)	- 150시간 이상 : 15점 - 120시간 이상 150시간 미만 : 10점 - 80시간 이상 120시간 미만 : 8점 - 40시간 이상 80시간 미만 : 6점 - 40시간 미만 : 2점	15	
7	사업성과 기대효과	- 매우높음 : 10점 - 높음 : 7점 - 보통 : 4점 - 낮음 : 0점 (예시 : 단순 행사 개최 등 부적정)	10	
8	예산집행 항목 및 내역의 적정성	- 매우적정 : 10점 - 적정 : 7점 - 보통 : 4점 - 부적정 : 0점(예시 : 교육생 교통비 지급 등 교육과 관련 없는 비용 등)	10	
9	자부담 능력	- 매우높음 : 10점 - 높음 : 7점 - 보통 : 4점 - 미흡 : 0점	10	
10	가점사항	- 여성 참여비율 50% 이상 : 5점		

<어업인 일자리지원>

1. 사업개요

○ 사업/지원대상 : 수협중앙회/어업인, 수산분야 종사 희망자, 수산업체 등

○ 총사업비 : 366백만원[국비(70%) 256백만원, 자담(30%) 110백만원]

* 7개소[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6개소(부산, 광주, 강릉, 보령, 포항, 제주)]

○ 지원내용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업인 일자리포털 “행복해” 시스템 및 일자리센터 운영비

-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 인건비

* 중앙센터 : 수협중앙회 직원(과장 1명, 직원 1명) 적용

* 지역센터 : 1인당 연봉 2,400만원 수준(경력, 성과에 따라 자체 인상 가능)

- 센터홍보 및 활동비, 홍보물제작, 이벤트, 회의, 교육훈련비

※ 운영인력(인건비, 인원)은 및 지역 센터 개설은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증감 가능

2. 사업추진절차

해양수산부	• 지침시달
①지침시달 ③세부사업계획 승인 ↓↑ ②세부사업별 계획서 제출 ④사업 정산 보고 ⑤정산 승인	
수협중앙회	• 세부사업계획 수립·시행/정산

3. 기타

○ 교육기관(혹은 단체)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교육 프로그램 운영 결과 보고서(서식2)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

○ 관련서식

- <서식1> 실적보고서 목차 예시
- <서식2> 보조금 교부신청서
- <서식3> 국고보조금 개산급 신청서
- <서식4> 보조사업 추진현황보고

<서식1> 실적보고서 목차 예시

<실적보고서 목차 예시>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2 추진방향
3 근거법령
4 사업개요
5 추진경과

Ⅱ. 주요사업 내용(실적 및 성과)
1.
2.

Ⅲ. 성과 및 향후계획
1. 성과(주 지표, 보조지표) 및 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 목표 달성내용, 기여도 등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기술
2. 문제점
3. 향후 계획

Ⅳ. 정산 내역서
※ 사업성격에 따라 내용 조정 가능

<서식3> 국고보조금 개산급 신청서

국고보조금 개산급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성명(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나. 사업내용

4. 사업기간 :

5.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금	자부담	기 타
금 액				
부담률(%)				

6. 개산급 교부신청액

(단위 : 원)

보조금교부결정액	개 산 급			비 고
	기 교부액	금회교부신청액	계	

7. 개산급이 필요한 사유 : 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 작성

8. 첨부서류 : 1)자금집행계획서 2)보조사업의 계획 대 실적 3)자부담 조달계획서

위와 같이 ○○사업 보조금 개산급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 ○ ○ (인)

<서식4> 보조사업 추진현황보고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연도 분기)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년 계 획						집 행 실 적(누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상세히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창업어가 멘토링>

1. 사업개요

○ 사업/지원대상 : 시·도/어업인후계자 및 귀어가 중 창업어가

○ 총사업비 : 360백만원[국비(70%) 252백만원, 지방비(30%) 108백만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후견인 지원대상자(이하 “창업어가”라 함)

-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인 자 또는 귀어 후 2개년 이내인자
- 당년(이월사업 포함) 귀어 창업자금 지원(예정) 자

* 자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후견인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

○ 지원업종 : 어선, 양식, 종묘, 수산물가공, 소금, 유통업, 어촌관광·레저 등

○ 후견인 : 수산 신지식인,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및 수산계 대학교수 등 수산분야 전문가, 선도우수경영인, 전업경영인, 수산양식·제조기술사자격증 소지자, 동종 어업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 등

2. 지원대상 및 사용용도

○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한 후견 소요비용 및 서비스 대가

3.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 업 량 : 창업어가 60명 이상(국비 252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지방비 3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자금 지원

- 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 후견인은 창업어가에게 기술·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지도 등 제공
- 후견인은 매월 최소 6회 이상 후견활동을 수행하되, 월 3회 이상은 반드시 창업어가를 방문(방문 시에는 2시간 이상 활동)하여 후견활동 실시

5. 사업추진절차

해양수산부	①→ ←⑥⑦⑧	지방자치단체 (수산사무소)	②⑤⑦→ ←③④	창업어가, 후견인

① 사업지침 시달 및 사업량 배정 ② 사업홍보 및 희망자 신청 접수 ③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후견인지정 신청서 제출	④ 약정 체결 ⑤ 지원대상 선정 통보 및 사업추진 ⑥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정현황 보고 ⑦ 약정이행여부 지도·감독 ⑧ 매분기 추진현황(결과) 보고

6. 담당기관별 역할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수산기술보급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이하 “수산사무소”라 한다.)에 시달(2월)하고 수산사무소에 사업량 배정

* 시도 사업 량이 과하거나 부족 시 재배정

○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현황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7월, 익년도 1월) 실시

○ 점검항목

- 대상자 선정(자격요건, 선정방법)의 적절성, 예산집행, 운영현황 점검실적 등

<수산사무소>

○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해양수산부),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홍보, 지원대상 창업어가·후견인의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시, 아래 선정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창업어가>

①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②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③ 창업어가의 업종(품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④ 연령이 낮은 지원자

<후견인>

① 수산 신지식인
② 전업경영인
③ 선도우수경영인,
④ 수산·지도·연구직 퇴직공무원, 수산분야 전문가
⑤ 수산양식·제조기술사자격증 소지자
⑥ 동종 어업분야에서 10년이상 종사한 어업인

※ 수산사무소 등의 장은 선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창업어가 및 후견인 선정인원의 각각 20% 범위 내에서 여성어업인을 우선 선정하여야 있다.

- 창업어가와 후견인과의 약정체결을 통해 최종 대상자 선정
- 수산사무소장은 표준약정서<서식3>를 참고하여 약정 체결

※ 창업어가와 후견인을 연계할 때에는 창업어가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되, 가급적 창업어가와 후견인 일대일로 약정 추진

○ 창업어가와 후견인은 협의를 거쳐 가약정서(가계약서)를 3부 작성하고, 수산사무소장은 약정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 약정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10개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개월 단위로 약정

- 후견인 1인은 창업어가 2인 이내의 범위에서 후견 활동

○ 수산사무소장은 창업어가의 후견인제 추진상황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1주 이내 현장 확인을 하고 허위사실, 약정불이행 등 보고서 내용과 상위점이 없을 경우 월 60만원 한도로 후견인에게 지급

* 후견인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에 대한 현장 확인 시 창업어가후견인제 추진상황(결과) 점검보고서<서식5>를 작성하여 관리

* 수산사무소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월 60만원 한도로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약정기간 중 약정 쌍방의 약정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함

* 수산사무소장은 후견인 및 창업어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견인 목록을 작성하여 활용하여야 함

○ 창업어가 및 후견인 지정을 사업연도 2월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서식6>(창업어가 및 후견인 지정현황)에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추가선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익월 15일까지 보고

○ 만족도조사(성과측정단계 참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식8>(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으로 작성하여 사업연도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분기별 실적보고(매분기 익월 15일) 및 회계연도 종료시 실적보고(다음년도 1월15일)를 <서식7>(창업어가 후계인제 추진결과보고서)으로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신청자 또는 후견인>

○ 당해연도 사업 신청('18년의 경우 2월초 실시)

- 창업어가 :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서식1>

- 후견인 : 창업어가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 <서식2-1>, 창업어가후견인 운영계획서 <서식2-2>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후견인은 가약정서와 함께 필요시 당초 제출하였던 창업어가후견인제 운영계획서를 재작성·첨부하여 수산사무소장에게 약정승인 요청

○ 후견인은 추진상황(결과)보고서<서식4> 제출 시 수산사무소장에게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7. 성과측정

<성과지표 측정>

○ 익년도 1월에 당해연도 사업 성과지표를 측정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성과지표 : 후견실적이 있는 창업어가수
- 산정방법 : 수산사무소 등에서 제출한 결과보고서 분석

<만족도 조사>

○ 수산사무소는 연 1회 사업결과 만족도 조사 실시

- 현장애로사항, 제도개선점, 문제점 등 의견수렴 병행
- 조사 시기 : 사업연도 11월
- 조사 방법 : 설문 조사(설문지, 전화, 방문조사 등)
- 조사규모 : 전수조사
- 조사 대상 : 정책수혜대상자(어업인), 사업추진 관련자(수산사무소, 후견인)

8. 기타

○ 신청서 제출기관 : 해양수산부

- 접수기간 : 2019. 4월까지

* 사업신청 상황 등에 따라 필요시 신청접수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 신청자격 : 시·도(수산사무소)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 2017년과 동일

○ 관련서식

- <서식1> 창업어가멘토링 지원대상 신청서
- <서식2-1> 창업어가멘토링 후견인 지정 신청서
- <서식2-2> 후견인 운영계획서
- <서식3> 창업어가멘토링(표준) 약정서
- <서식4> 창업어가멘토링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 <서식5> 창업어가멘토링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서
- <서식6> 창업어가 및 후견인 지정현황
- <서식7> 창업어가멘토링 추진결과 보고서
- <서식8> 사업신청 안내서 작성서식

<서식1> 창업어가멘토링 지원대상 신청서

창업어가멘토링 지원대상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①나 이(만)		②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지원액	(백만원)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③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④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⑤후견희망기간			
⑥자기소개 및 후견을 받고자 하는 사유			
⑦기타 특이사항			
⑧확인란			
⑨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에 참가하여 후견을 받고자 하니,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우선순위 선정 해당 자료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2-1> 창업어가멘토링 후견인 지정 신청서

창업어가멘토링 후견인 지정 신청서

①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②후견희망업종	(주업종) (부업종)		
③후견희망부문	(최우선) (우선) (차선)		
④후견희망기간			
⑤자기소개	1. 주업종의 영어규모 2. 전체 경영규모 3. 영어경력(년)		
⑥운영계획 요약			
⑦기타 특이사항			
⑧확인란			
⑨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에 참가하여 창업어가에 대한 후견을 하고자 하니,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첨 : 창업어가후견인 운영계획서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2-2> 후견인 운영계획서

후견인 운영계획서

1. 후견활동계획

월	일	시간	장소	후견활동내용
		~		
		~		
		~		

월	일	시간	장소	후견활동내용
		~		
		~		
		~		
		~		
		~		
		~		
		~		
		~		
		~		
		~		
		~		
		~		
		~		
		~		
		~		
		~		
		~		
		~		
		~		
		~		
		~		
		~		

2. 후견활동확인

3월	4월	5월	6월	7월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3. 후견활동평가 :

<서식3> 창업어가멘토링(표준) 약정서

창업어가멘토링(표준) 약정서

창업어가후견인제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창업어가후견인제를 시행함에 있어, (　　)수산사무소장을 “갑”이라 하고, 지원대상 창업어가(　　)를 “을”이라 하며, 창업어가 후견인 (　　)을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2. 약정내용

제1조(후견)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수산업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실시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수산업관련 기술, 경영 및 정서적 측면의 후견을 받기 위하여 경영일지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후견인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①“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후견활동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월 6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약 또는 무효화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화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약정이 무효화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창업어가와 후견인의 관계)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후견내용이 다르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후견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경영일지 미작성 등 후견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후견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원대상 창업어가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창업어가후견인제를 시행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OO 수산사무소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창업어가멘토링 운영계획서 1부.

<서식4> 창업어가멘토링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창업어가멘토링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①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②창업어가1	(성명) (생년월일)
③후견업종	(주업종) (부업종)
전체후견기간	
④보고후견기간	
⑤후견의 주요 내용(요약)	0월0일 : 0월0일 :
⑥기타 특이사항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의 후견추진상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붙임 : 창업어가멘토링 운영 일지 1부.

2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창업어가멘토링 운영 일지]

(일시 :) 후견인 성명 : 창업어가 성명 :

후견 내용 주제	
주요내용	

<서식5> 창업어가멘토링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서

창업어가멘토링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①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②창업어가1	(성명) (생년월일)
③후견업종	(주업종) (부업종)
전체연수기간	
④보고후견기간	
⑤후견의 주요 내용	0월0일 : 0월0일 :
⑥기타 특이사항	
⑦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20 년도 창업어가후견인사업의 후견추진상황(결과)을 점검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서식6> 창업어가 및 후견인 지정현황

창업어가 및 후견인 지정현황

□ 지정현황

○ 사무소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00지소
창업어가										
후견인										
예 산										

○ 업종별·연령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업종별			연령별					
		어선	양식	기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창업어가										
후견인										

* 기타 :

* 후견인 : 신지식인 0, 선도우수경영인 0명, 퇴직공무원 0명(수산0, 지도0, 연구 0)

□ 약정체결현황

○ 사무소명

지역	분야(업종)	후견인			창업어가		후견내용
		성명(나이)	자격(경력)	연락처	성명(나이)	연락처	
시군명	양식(김)	000 (69세)	퇴직공무원(33년)		000 (43세)		김양식·종묘생산('15.0~0월)
시군명	양식(미역, 다시마)	000 (65세)	퇴직공무원(32년)		000 (47세)		미역·다시마양식('15.0~0월)

○ 사무소명

지역	분야(업종)	후견인			창업어가		후견내용
		성명(나이)	자격(경력)	연락처	성명(나이)	연락처	
시군명	양식(김)	000 (69세)	퇴직공무원(33년)		000 (43세)		김양식·종묘생산('15.0~0월)
시군명	양식(미역, 다시마)	000 (65세)	퇴직공무원(32년)		000 (47세)		미역·다시마양식('15.0~0월)

○ 사무소명

지역	분야(업종)	후견인			창업어가		후견내용
		성명(나이)	자격(경력)	연락처	성명(나이)	연락처	
시군명	양식(김)	000 (69세)	퇴직공무원(33년)		000 (43세)		김양식·종묘생산('15.0~0월)
시군명	양식(미역, 다시마)	000 (65세)	퇴직공무원(32년)		000 (47세)		미역·다시마양식('15.0~0월)

<서식7> 창업어가멘토링 추진결과 보고서

창업어가멘토링 추진결과 보고서(분기 및 회계연도 종료시)

□ 예산집행현황

(단위 : 회, 만원)

구 분		지원대상		지원분야(예산 : 백만원)	지원내용(회, 만원)													
시도(명)	사무소(명)	창업어가(성명)	후견인(성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회													
					금액													
				양식(전복)(600만원)	회	60			6	6	6	6	6	6	6	6	6	6
					금액	600			60	60	60	60	60	60	60	60	60	60
				양식(해조류(5백만원)	회													
					금액													
				양식(패류)(5백만원)	회													
					금액													
				양식(전복)(5백만원)	회													
					금액													
				양식(새고막)(5백만원)	회													
					금액													
				양식(내수면)(5백만원)	회													
					금액													
				양식(전복)(5백만원)	회													
					금액													

□ 문제점

○

□ 개선방안

○

□ 건의사항

○

□ 우수사례

○

□ 기타

○

□ 만족도 조사결과

* 회계연도 종료 시(실적보고)에만 작성 제출

(단위 : 명)

구분	측정인원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창업어가						
후견인						

○ 만족 사유

-

○ 불만족 사유

-

<서식8> 사업신청 안내서 작성서식

창업어가 멘토링

□ 지원대상

○ 어업인후계자·귀어귀촌 창업어가 및 후견인

□ 사업내용

○ 창업어가 : 창업에 필요한 전문가의 컨설팅 제공

○ 후견인 :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비용 지원

□ 자금유형

○ 후견인 60명, 국비 252백만원(국비보조 70%)

□ 지원조건

○ 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 후견인은 창업어가에 기술·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지도 등 제공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수산사무소)

□ **사업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044-200-5463)

□ **신청기관** : 시·도(수산사무소)**(신청기간 :** 20○○.1.24 ~ 2.15**)**

☞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은 각 시·도(수산사무소) 홈페이지(www.000.korea.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어업인 포럼>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여성어업인 포럼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단체

○ 지원형태 : 민간경상 보조(국비 100%)

○ 총사업비 : 30백만원

○ 사업기간 : 2019년

○ 사업방식 : 민간공모를 통해 사업자 선정

2. 추진일정

○ 여성어업인 포럼 세부계획 수립 : '19년 3월

○ 공모 : '19년 5월

○ 사업자 선정 : '19년 6월

○ 여성어업인 포럼 : '19년 10월

3. 기타

○ 선정기준 : 포럼내용, 참여 기관 및 참여자 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액 결정

○ 포럼 완료 후 1개월 이내 결과 보고서 제출

○ 관련서식

- <서식> 사업계획서

<서식> 사업계획서

2019년 여성어업인 정책포럼

□ 수행기관

○ 명칭(주소) :

○ 연락처(사무실, 핸드폰) :

□ 포럼 규모

○ *해수부, 수협,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 주요내용(자유롭게 기술)

○ 현황

-

-

○ 정책방향

□ 예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역	금액	비고
ㅇ			
ㅇ			
-			

□ 기대효과

○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구성 가능)

30 수산장비(임대)활용(지자체)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황통성 사무관 임연희	044-200-5460 044-200-546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장비 구입이 어려운 어가에 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 구입부담을 경감하고 기계화 촉진

○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

2. 근거법령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 현대화 촉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8조(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장비 임대사업소 1개소 및 이동수리소 53개소 운영 지원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 수산장비 임대 및 이동수리소 이용자 만족도	70%	-	-	70%	익년 2월	지원어가의 30%이상 조사(5점 척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2,790**	**2,570**	**2,520**	**2,494**
- 국 비	1,395	1,285	1,260	1,247
- 지방비	1,395	1,285	1,260	1,247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①	수산장비 임대사업

1. 사업대상자

○ (**사업집행주체**)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운영 및 위탁관리자**) 수산장비를 임대·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등을 확보한 사업집행주체(수산사무소 포함) 또는 사업집행주체와 사업추진계약을 체결한 지구별(업종)수협

* 사업집행주체는 지구별수협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동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리목적의 임대사업을 할 수 없음.

* 관리자는 장비 관리, 임대 수수료 및 운영비 관리, 사후관리, 홍보, 대체 장비 구입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하여야 함.

○ (**수혜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5년간 시·군·구의 수산장비임대사업을 한 경우 우선 순위에서 배제 가능

* 사업년도 상반기내 지방비 미확보시 사업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반납조치. 단, 타 지자체의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 추진의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기준**) 1개소당 10억원이내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현지 여건상 지원상한액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집행주체의 사업비 추가 확보(지방비) 후 추진 가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대 장비 구입 및 제작**)

- 어장관리선, 어선형 해상크레인, 다목적 해상작업대(크레인 및 선별기 포함) 등의 어업현장에서 어업인이 직접 사용하여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산장비로서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수산장비 우선 구매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하면서도 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산장비 구입
- 장비 구입을 위한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시설부대경비 및 일반관리비 등

○ (**임대 장비 관리시설**)

- 임대장비 보관창고 설치 및 관리시설(임대장비 관리 전산시스템 등) 구축
- 보관창고가 기 확보되어 있는 경우 보관창고 설치 후 10년이 지난 경우에 한하여 시설가능함.

4. 사업 운영

○ (**장비 임대 방안**) 많은 어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1개월 이내의 단기 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여성 및 고령어업인 등에 우선 임대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장기임대는 가능하나 이 경우 **사업집행주체가 수립한 수산장비 임대사업 관련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 (주의) 장비 임대시 장비별 취급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대여를 할 수 없음.

○ (**수산장비 임대사업의 위탁 관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수협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장비의 특성 상 위탁관리자가 수산장비를 구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자와 구매대행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함.

  이 경우, 위탁관리자는 지원되는 자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시하여야 하며, 수산장비를 잘못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장비를 구입하여 방치하고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자금 회수 조치

* 장비 구입을 위한 전용 통장과 임대 실적 관리 전용 통장을 각각 개설·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구입한 수산장비에 대해 부득이하게 위탁관리자의 소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140호)」제26조 제1항에 의거 시설처분이 제한되고, 소유권 등기(록) 시 다음 사항을 부기등기(록)하여야 하며, 사업 정산시 부기등기(록)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동 수산장비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이라는 사항
- 동 수산장비를 당초 목적한 용도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및 담보로 제공 할 수 없음.

②	이동수리소 사업

1. 사업대상자

○ (**사업집행주체**) 시·도(수산사무소 포함)

○ (**수혜자**) 어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지원기준**) 1개소당 30백만원이내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현지 여건상 지원상한액을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집행주체의 사업비 추가 확보(지방비) 또는 시·도별 배정사업비 내에서 조정 가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리대상**)

- 어선용 기관 : 디젤엔진, 선외기 엔진, 점화플러그, 연료배관, 빌지펌프 등
- 어업용 장비 : 무전기, 어군탐지기, 어선 항해등, 레이더, GPS플러그 등
- 양식용 장비 : 사료절단기, 냉동고, 베어링 등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명시된 어업용기자재

○ (**수리업체 위탁(용역)계약시 인건비**) 정기점검 수리업체 직원의 인건비 및 관리비용(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자재비, 소모품비, 피복비 등 작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

○ 소규모 부품 무상 교체비용

4. 사업 운영

○ (**수혜 대상 어업인**(수요자)) 도서·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협은 제외)

* 지자체 자체 사업비를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지역 제한이 없음

○ (**수리 및 부품교체**) 당해 연도 1인당 2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10만원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 다만, 수산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나 당해 연도 1인당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부품이 아닌 연료유 및 엔진오일 등은 무상지원 불가)

○ (**수리업체 출장비**) 수리업체 직원 1인 1일(8시간 이내)에 15만원으로 하되, 오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0% 한도내에서 조정가능

공통 사항 : 수혜자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및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자는 수혜자(장비임대 및 이동수리소 이용)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위탁사업자)는 사업운영위탁 배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 지원조건, 자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방법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서(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시달

시·도

○ 세부사업계획서를 수산사무소 및 시·군·구에 시달

○ 수산사무소 및 시·군·구에서 제출한 '20년도 사업신청서에 대한 현지확인 등 사업적합성 여부 및 사업추진 우선 순위를 검토하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사업신청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

○ 세부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시·도에 사업신청

○ **(수산장비임대)**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군·구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3월)

- 시장·군수·구청장은 반드시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임대 수산장비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수산장비 구입계획에 반영하고, 양식현황 및 양식장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 수립시 특정인의 독점 사용이 우려되는 장비는 최소화하고, 어업현장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수협에서만 사용하는 장비는 제외하여야 함. 또한, 향후 5년간 장비별 임대계획 및 특정인의 독점사용 방지계획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별로 구성된「수산장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최종 확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어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심의위원장은 시·군·구 담당과장으로 함)

○ 심의위원회는 지침에 따른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임대 수산장비 구입(임대장비 선정, 수의 계약시 업체 선정 등), 임대사업 운영계획 등을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수산장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표준예시」제18조～제20조 참조

○ **(이동수리소)**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산사무소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전년도 3월)

- 수산사무소장은 이동수리소 서비스 대상 어촌계와 어업용 기자재 수요량, 어업인수, 육지로부터의 거리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지역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을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보한 사업량을 기준으로 시·군·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임대장비의 수요조사서 첨부 여부(미첨부시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지역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구에 통보(전년도 10월)

- 사업선정기준: 최근 3년간 임대사업 추진결과(임대실적, 홍보실적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해당지역 수혜어업인의 규모, 전담기술인력 및 조직 확보 여부(계획포함), 장비 구입계획 및 운영 홍보의 적정성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

○ 시·도(수산사무소)와 시·군·구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선정 통보한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를 감안하여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확보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①	수산장비 임대사업

시·군·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당년도 2월 이후)

-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후 사업 추진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전년도에 사업대상자를 미리 선정한 취지와 연내 사업계획의 마무리를 감안하여 대내외 환경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변경을 엄격히 제한
- 또한, 승인된 사업계획서보다 지자체의 자체 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수산장비 추가 구입 등)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변경 승인하

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ㅇ 수산장비를 적기에 어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군·구는 운영규칙(계획)를 조기에 수립하고 수협 등에 수산장비 임대사업을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여 함.

시·군·구 및 수협

ㅇ 임대장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 강구 등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장기임대할 경우에는 시·군·구의 승인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ㅇ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사용료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적정가격)하고 적정 가격 이하로 임대료를 받을 경우에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사업 주요내용(임대대상 장비, 임대료, 임대신청방법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어업인에게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② 이동수리소 사업

수산사무소

ㅇ 수산사무소장은 수리가 가능한 업체로부터 운영계획서 및 소요예산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평가회를 개최하여 적격한 업체를 선정(계약)

ㅇ 수리업체는 서비스 대상 어촌계와 가약정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3부)하고, 운영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첨부하여 수산사무소장에게 약정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ㅇ 수산사무소장은 수리업체와 어촌계가 작성한 운영계획서와 가약정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는 경우 약정서에 날인하고 쌍방에 통보함으로써 약정승인 조치

* 약정기간은 당해연도 내에서 개월 단위로 약정하며, 본 시행지침상의 약정 무효·해지·변경사유 등을 약정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수산사무소장은 약정체결 승인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7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당년도 3월)하고, 수산장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시·군·구에도 통보

-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 시·군·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수산장비가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이동수리 현장에서 수리점검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수리업체는 약정서 및 운영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1개월 단위로 이동 점검·수리를 하고, 추진상황(결과)보고서[별지 제2-4호 서식], 운영일지[별지 제2-5호 서식]와 함께 수리점검 및 교체부품 사진 등을 첨부하여 익월 15일까지 수산사무소장에게 제출

4. 자금배정단계(보조금 교부)

해양수산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보조금 교부신청)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당년도 3월)

시·도

○ 시·군별,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및 보조금 교부 요청(당년도 3월)

○ 해양수산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 배정(당년도 3월)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

○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당년도 3월 이전)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장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대 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

○ 수산사무소장은 수리업체로부터 추진상황 결과 보고서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 수산사무소는 수리업체의 수리·점검 당일 담당공무원이 함께 수리현장에서 수리·점

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체부품 사진 등을 첨부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점검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작성·관리.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일 현장에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후점검 실시.(사유서 첨부)

* 도서(섬)가 많은 수산사무소의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이동수리소 수리·점검현장 동행에 소요되는 출장여비의 일부를 사업비에서 정산 가능

○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익년도 1월이내)

○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함

○ (**수산장비임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하며, 임대장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관리기간 등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임대 장비	- 건축물, 어장관리선, 다목적 해상작업대 : 준공 및 구입일로부터 10년이상 - 기타 기계류 :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의한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이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않됨 -사후관리기간 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가능 및 타 용도로 임의 사용금지	-수산장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수산장비는 계속 사용 -수산장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처리

- 표지판 부착

수산임대장비(기계)

이 장비(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제작한 장비(기계)입니다.

0000년 00월 00일(준공일)

ㅇㅇ 시장·군수·구청장

※ 규격 및 재질: 부착 기종에 따라 알맞은 규격으로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계에 직접 판서

- 임대장비 관리 담당공무원 및 위탁관리 수협의 담당자는 물품관리 교육 등을 받도록 하여 장비 관리대장(별지 제1-5호 서식)을 사후관리기간까지 작성 및 임대할 수 없는 장비 및 수요가 없는 장비 등이 방치 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시·도

ㅇ 사업시행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사업추진현황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

- 추진상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임대수산장비 구입절차 적정 여부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수산장비임대사업 추진시 사업비를 이월할 경우 사업당해년도 12월까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이월 승인을 받아야함.

ㅇ 시·군·구가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익년도 1월이내)

해양수산부

ㅇ 당해연도 사업추진현황 등에 대해 반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ㅇ 사업집행주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 국가 반환 조치할 수 있음.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임대 수산장비	-「수산장비 임대사업 세부운영지침(또는 조례 등) 표준예시」의 '별표 4'에 따른 최소 내용연수 이상으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않됨 -사후관리기간 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가능 및 타 용도로 임의 사용금지	-수산장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수산장비는 계속 사용 -수산장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폐기처분 가능

나. 제재 및 처벌내용

○ 해양수산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추진한 시·군·구와 수산사무소는 당초 계획대로 보완토록 하고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구와 수산사무소는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 수산장비임대 및 이동수리·점검사업 추진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한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다. 수산장비 임대사업소 운영 및 관리

시·군·구 및 수산사무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장비를 구입한 후에 임대수산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양식어업인이 수산장비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수산장비 임대사업 관련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 세부운영지침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3265(2015. 8. 5.)로 통보한 "수산장비 임대사업 세부운영지침 표준예시"를 기준으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 운영

6. 실적보고 및 성과측정단계

가. 실적보고

《수산장비 임대사업》

○ 2019년도 수산장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분기별 추진실적은 익월 10일까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 수산장비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인 시·도지사는 당해연도 수산장비 임대사업 추진실적을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 서식]과 통장사본(PDF파일)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이동수리소》

○ 수산사무소장은 매 분기별 추진실적(매분기 익월 10일까지)과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별지 제2-8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각각 제출하여야 함

나. 성과측정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성과를 측정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계획**)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는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운영실적, 홍보노력, 제도개선 실적 등

○ (**평가**) 사업 평가 결과 우수 시·군·구에 대한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환류**) 사업평가 결과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사업시행지침 개선

8.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신청 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19년과 동일

○ 신청절차 : 시·군·구 및 수산사업소 → 시·도 → 해양수산부

○ 제출서류

- **수산장비 임대사업** :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및 위탁사업자의 보조사업 이력서(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과 시·도별 우선순위(1개소인 경우 불필요)
- **이동수리소사업** : 사업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 신청기한 : 2019. 3. 31.(해양수산부 접수)

2. 2020년 지원대상자 선정

○ 2020년도 사업신청서 및 세부계획서를 검토하여 '19. 9월말까지 선정
(정부 예산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Ⅴ. 별표/서식

1. 공통사항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장비임대신청서

2. 수산장비 임대사업

[별지 제1-1호 서식] 수산장비 임대사업 사업계획서(예시)

[별지 제1-2호 서식] 수산장비 임대사업 추진실적(분기) 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 수산장비 임대사업 검정 및 정산결과보고

[별지 제1-4호 서식] 00시·도 수산장비 임대사업 추진실적

[별지 제1-5호 서식] 수산장비 관리대장

3.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사업

[별지 제2-1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계획서(예시)

[별지 제2-2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

[별지 제2-3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표준)약정서

[별지 제2-4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보고서

[별지 제2-5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일지

[별지 제2-6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점검 보고

[별지 제2-7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체결 결과 보고

[별지 제2-8호 서식] 이동수리·점검사업 추진실적(분기) 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장비 임대사업 신청서

<table>
<tr><td>신청기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담 당 자</td><td>소속(부서)</td><td>직위</td><td>성명</td><td>전화번호</td><td>FAX</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사업구분</td><td rowspan="2">구 분</td><td rowspan="2">물량
(개소)</td><td colspan="3">사업비(백만원)</td></tr>
<tr><td>합계</td><td>국고</td><td>지방비</td></tr>
<tr><td>수산장비임대</td><td></td><td></td><td></td><td></td></tr>
<tr><td>이동수리소</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3">사업내용</td><td>구 분</td><td colspan="4">사 업 내 용</td></tr>
<tr><td>수산장비임대</td><td colspan="4">○ 구입장비 : 00장비(선), 00대(00톤급 0척)</td></tr>
<tr><td>이동수리소</td><td colspan="4">○ 어촌계수 : 00개소
○ 점검·수리 척수(기자재명) : 000척/년</td></tr>
<tr><td rowspan="2">전담인력
확보내용</td><td>수산장비임대</td><td colspan="4">00명 (정규직 00명, 비정규직 00명)</td></tr>
<tr><td>이동수리 계약업체</td><td colspan="4">00개소 00명</td></tr>
<tr><td colspan="2">사업 세부운영지침 수립 여부</td><td colspan="4">수립 ( ), 미수립 ( )</td></tr>
</table>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수산장비임대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군수 (인)
수산사무소장(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수산장비임대사업 또는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사업 계획서 1부

수산장비 임대사업

[별지 제1-1호 서식]

수산장비 임대사업 사업계획서(예시)

1. 사업 추진기관

ㅇ 사업 주관기관 :

ㅇ 위탁기관 :

2. 일반 현황(시·군·구)

□ 어업 면허규모(면허건수, 면적, 생산량 등)

('18.12월 현재)

어촌계수	어가수	어업인수	면허 건수	면허면적(ha)	생산량(톤)

□ 수산장비 임대사업으로 인한 기존 장비 보유현황

('18.12월 현재)

사업년도	수협명	총사업비	장비	년간 임대율	비 고
		백만원	종 대(척)	%	

3. 임대사업 개요

□ 임대사업 추진방향

□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여부 :

※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한 경우 그 내용을 별지로 첨부

4. 임대사업 수요조사 결과

ㅇ 조 사 자 :

ㅇ 조사 기간 :

ㅇ 조사 지역 :

ㅇ 조사대상 : 어업인 000명*(관내 읍·면·동 00개소)*

* 관내 어업인(2.일반현황)이 1,000명 이상인 경우 2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경우 150명 이상 응답하여야함.

○ 조사 결과 - 임대 유형, 임대 수산장비 구입, 기타

순위	장비명	임대희망 어업인(명)	비율 (%)	임대희망 일수(평균)	비고(사유)
1	어장관리선(00용도)				
2	해상크레인 바지선				
:					
소계		000명	100%		

○ 조사결과를 임대사업에 반영한 내용

구입 및 제작 장비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000장비 00대(척)			

5. 임대사업 소요금액

□ 사업량 및 사업비

구입 및 제작 장비	사 업 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000장비 00대(척)			

□ 지방비 확보방안

※ 구체적으로 명시

□ 임대 수산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지원 소요금액

구 분	총 사업비	임대 수산장비 구입		보관창고 건립		인건비		관리비
		수 량	소요금액	규 모	소요금액	인원	소요금액	
합 계	천원	0종 0대 (100%)	천원 (%)	평	천원 (%)	명	천원 (%)	천원 (%)

6. 세부 추진계획

□ 운영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현황 (5인 이상)

구분	성 명	소속	직위	연락처	비고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 임　기 : 0년

ㅇ 심의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 임대 수산장비 구입

장비명	규 격	수량	단가	소요금액	공동사용 유무
		대	천원	천원	

□ 임대 유형

임대 유형	대상 수산장비	임대 대상자	비　고
장　기			
중　기			
단　기			

□ 임대 수산장비 보관창고 확보내역 및 건축 여부

ㅇ 기 확보

면 적	구 조	설치 장소	설치시기	현재 사용용도	비 고
㎡					

※ 사진 및 증빙서류(등기부 등본 등)를 첨부로 제출

ㅇ 건축필요 여부 (내용 및 비용 포함)

□ 임대 수산장비 교육 및 사후관리 방안(구체적으로 작성)

① 임대 시 운전조작요령 교육방법

② 임대사업 전담인력 및 인건비 운영계획, 임대 수산장비 공제(보험) 가입계획, 임대 수산장비 관리방법 등

③ 향후 5년간 장비별 임대계획(임대기준, 임대절차, 임대 우선순위 등)

④ 특정인의 임대장비 독점사용 방지계획

7. 행정 사항

□ 지침 수립 등 추진계획

□ 홍보계획

구 분	물량 또는 보도횟수	홍보 시기	비 고
리후렛			
지역방송, 지방지			
반상회보			
기 타			

□ 사업 추진일정

※ 임대 수산장비 구입, 보관창고 리모델링, 조례제정, 사업비정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해 추진일정을 표기

□ 임대사업 운영실적(과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연도별	장비별	임대실적		운영실적(천원)			
		임차인수	임대일수	수 입		지출	잔액
				임대료	기타수입		
20	00						
	00						
20	00						
	00						

※ 연도별 운영실적은 장비별이 아닌 합계로 작성

[별지 제1-2호 서식]

2019년도 수산장비 임대사업 추진실적(분기) 보고서

1.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시군명	계 획					추진 및 사업비 집행 실적			
	사업량	어업인수	사업비 (천원)			사업 추진율	사업비 (천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합 계	개소						천원		
○○시									
○○군									

※ 사업추진율 : 계약 5%, 착공 10%, 중도금 50%, 시운전 70%, 완공(인수) 100%
추진실적의 사업비는 실제 집행한 금액을 기재함

2. 임대사업 운영 조례 및 지침 수립 여부

시 군 명	제정 및 수립 여부	공포 및 시행일자
○○ 시		
○○ 군		

※ 결재 사본 1부 첨부 제출

3. 임대 수산장비 구입

시군명	장비명	구입 계획	구입 실적	
			수 량	소요금액
합 계		대	대	천원
○○ 시				
○○ 군				

※ 구입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내용 1부를 첨부로 제출

4. 임대 수산장비 보관창고 리모델링

시·군명	계 획		실 적		비 고
	면 적	구 조	면 적	구 조	
	㎡		㎡		
○○ 시					
○○ 군					

5. 사업 평가(기타의견)

*** 부진원인 및 문제점, 대책, 사업효과 등 기재**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수산장비 임대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0000시·도 0000과 직급 해양수산0급 000 (인)

000시·군·구 0000과 직급 해양수산0급 000 (인)

000시·군·구 0000과 직급 해양수산0급 000 (인)

[별지 제1-3호 서식]

수산장비임대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결과보고

1. 사업주관 기관 :

2. 작성 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구 분	사 업 비 집 행 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
	계	국고보조	지방비		
합 계	천원 (100%)	( )	( )		
임대 수산장비 구입					
보관창고 리모델링					
인건비					
관리비					

* 차년도 이월 또는 불용시 그 사유를 제출

□ 세부명세

○ 임대 수산장비 구입

장비명	규격	수량	단가	소요금액	제조업체	비 고
		대	천원	천원		조달구입, 수의 계약 등 구입 방법을 표기
합 계		종 대				

○ 임대 수산장비 보관창고 리모델링 등

구 조	면 적	동 수	소요금액	비 고
	㎡		천원	

○ 운영인력 인건비

업무구분	인원	단가	소요금액	비 고
	명	천원	천원	
합 계				

○ 관리비

구 분	사업량	단가	소요금액	비 고
		천원	천원	
합 계				

* 전산장비 및 S/W 개발비, 운영비 등을 포함 작성

[별지 제1-4호 서식]

00시·도 수산장비 임대사업 추진실적

(20 . 12월말 기준)

1. 임대장비 보유현황

시군별	보유 장비명	보유 대수	구입 실적			내용 연수	소유권	
			구입일	구입단가 (천원)	구입금액 (천원)		소유권 등기	부기등기 유무
합 계		대	대					

2. 임대사업 운영지침(또는 조례 등)

시 군 별	제정일	제정 형식*	조례(지침, 고시) 명	비 고
○○ 시				
○○ 군				

※ 제정형식 : 조례, 고시, 지침 등으로 구분

3. 임대사업소 운영실적(※통장사본 제출)

3-1. 운영실적

시군별	연도별	장비명	임대실적		운영실적(천원)			
			임차인	임대일수	수 입		지출	잔액
					임대료	기타수입		

* 장비명 작성시 동일장비의 경우 1호, 2호로 구분

3-2. 임대료 수입 중 지출내역

시군별	연도별	장비명	지출내역(천원)						
			계	인건비	유지보수	보험료	공과금	장비구입	기타

* 장비명 작성시 동일장비의 경우 1호, 2호로 구분

* 장비 재구입시에는 아래 여백에 구입한 장비명과 구입대수 기입

4. 사업평가(기타의견)

※ 사업추진에 따른 성과, 어업인 의견, 제도개선 또는 건의사항, 표준예시 제22조에 따른 지도·점검에 따른 특이사항 등 기입

[별지 제1-5호 서식]

수산장비 관리대장 (기계)

관리번호	**ㅇㅇ수협-기종명-일련번호** (예시 : 세종수협- 어업용 크레인 - 1)

구입금액 (천원)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제 조 년 월 일	년 월 일	제 조 사	
제 조 번 호		전 화 번 호	
형 식 (재 질)		A / S 담 당 자 (연 락 처)	
규 격 (용 량)		하 자 보 수 기 간	년 월 일
용 도		비 고	

기 타 사 항 (부 속 기 계 류 등)	

사 진	
장 비	관리번호 명판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 록	대 조	비 고

(뒷면)

수 리 내 역					
고장일시	고장내역	정비일자	정비내역	수리비	정비자

[별지 제1-5호 서식]

수산장비 관리대장 (어선 및 바지선 등)

관리번호	**ㅇㅇ수협-기종명-일련번호** (예시 : 세종수협-어장관리선 - 1)

구입금액 (천원)	합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진수년월일		년 월 일	선적항		
명칭			(어선)등록번호		
선적항			기관	종류	기관
총톤수(톤)				마력	마력
주요치수(m)	길이			대수	대
	너비			추진기의종류	기
	깊이		선체재질		
조선자			조선소전화번호		
A/S 담당자(연락처)			하자보수기간		년 월 일

기타사항 (부속기계류 등)	

사 진	
장 비	관리번호 명판

(뒷면)

자산재평가

연월일	재평가액	재평가차액	과표또는평가액	평가자	기 록	대 조	비 고

수 리 및 정 비 내 역					
고 장 일 시	고장내역	정 비 일 자	정 비 내 역	수리비	정비자

이동수리소 사업

[별지 제2-1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사업계획서(예시)

1. 사업 주관기관

2. 일반 현황

어촌계 수	어가 수	어업인 수	어선 수

3. 이동수리소 사업 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ㅇ 이동수리소 운영 수 : 개, 총 사업비 : 천원

□ 세부 운영내용 및 지원 소요금액

이동수리소 *일련번호로기입	서비스 대상 어촌계명	점검·수리 기자재명	소요 금액 (천원)		점검·수리 계획
			소요금액		
			인건비		
			관리비		
			부품교체비		

4. 사업 추진일정

※ 점검·수리업체 선정, 점검, 사업비 정산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에 대한 추진일정을 표기

[별지 제2-2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계획서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대상 어촌계명			
점검·수리 기자재명			
분야별 보유인력	(분야 : 기계, 전기, 통신 등) (자격증소지여부)		
점검·수리반 편성인원	(해당분야별 인원)		
점검·수리 계획	어촌계명	점검·수리장소	점검·수리일정
			00일/월
무상부품 교체 범위			
소요예산(월)	(인건비, 관리비, 부품교체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상세하게작성)		
특기사항			

이상과 같이 어업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별지 제2-3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표준) 약정서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사업시행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거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를 시행함에 있어, ( )수산사무소장을 “갑”이라 하고, 지원대상 어촌계( )를 “을”이라 하며, 이동점검·수리업체( )를 “병”이라 하며, “갑”, “을”과 “병”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약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개월)
2. 약정금액 : 원(월 원)
3. 약정내용

제1조(업체) “병”은 “을”에 대하여 운영계획서의 내용대로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를 실시하며, “을”은 “병”의 운영계획서에 따라 일정에 맞추어 점검·수리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조(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①“갑”은 “병”이 운영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점검·수리활동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약정금액에 따라 매월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3조(약정의 해약) ①“갑”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해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다.

1. “병”이 허위 사실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약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2. 사업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3. 기타 중요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지할 수 있다.

②약정이 무효 되었을 경우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약정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약의 귀책사유에 따라 “갑”은 “병”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어촌계와 업체와의 관계) ①“을”은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과 현저히 내용이 다르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병”은 “을”이 당초 “병”이 제시한 운영계획서상의 내용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운영일지 미 작성 등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갑”의 중재를 거쳐 약정해지 또는 약정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병”과 “을”간에 사업추진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분쟁 및 이견 등에 대해 “갑”은 중재를 제공할 수 있으나 “병”과 “을”의 민사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침 및 약정의 준수) ①“병”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②“을”은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과 본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원대

상 어촌계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적용) 지침의 제 조항은 이 약정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 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결정에 따르기로 한다.

제8조(특약) 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를 시행함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지침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 “을”과 “병”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3부를 작성하고 “을”, “병” 쌍방과 “갑”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병”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00 소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병”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계획서 1부.

[별지 제2-4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 보고서

업 체 명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어 촌 계 명	(어촌계명) (어촌계장) * 다수의 경우 어촌계별 별지로 작성
점검·수리대상 기자재명	
주요점검·수리내용	
부품 무상교환 내역	
기 타 특 이 사 항	

이상과 같이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용결과를 보고하며,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붙임 :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일지 1부.

20 년 월 일

보고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2-5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일지

ㅇ 일자/장소 :

ㅇ 대상 어촌계 명 :

점검기자재	기자재 명	수량(점)	점검내용	
수리기자재	기자재 명	수량(점)	수리내용	
부품교환	기자재 명	수량(점)	부품교환	
			무상	유상
기타 특이사항				

작성자 : 업체명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어촌계명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6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 점검 보고

업 체 명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어 촌 계 명	(어촌계명) (어촌계장) * 다수의 경우 어촌계별 별지로 작성
점검·수리 기자재	(기자재별 점검·수리 대상 수량)
점검·수리 기간	
점검·수리 장소	
주요 점검·수리 내용	(기자재별 점검·수리 수량, 부품교환 등)
기타 특이사항	
종합검토의견	

이상과 같이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추진상황(결과)을 점검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점검 담당자 : (인)

00 수산사무소장 귀하

[별지 제2-7호 서식]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소 약정체결 결과보고

□ 체결일자 :

□ 약정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개월)

□ 체결내용

업체명	어촌계명	대상 기자재명	점검·수리일	약정 금액(월)
			00일/월	

□ 이동점검·수리반 편성

□ 약정금액 산출내역

□ 특이사항

[별지 제2-8호 서식]

이동수리·점검사업 추진실적(　분기) 보고서

1.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시군명	전년도 수리 건수	계　획				실　적			
		수리 건수	사업비(천원)			수리 건수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선박: 척 선박외: 건	선박: 척 선박외: 건				선박: 척 선박외: 건			

* 수리건수는 누계로 작성(예. 동일선박에 대해 3회 수리한 경우 3척으로 작성)

2. 이동수리소 운영실적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운영기간		어가수	
이동수리소수		어업인수	
어촌계수		서비스대상	선박:　척, 선박외 :　건
점검일수		무상점검·수리	선박:　척, 선박외 :　건
점검회수		부품교체	○○ 개

* 무상점검·수리 건수는 누계로 작성(예. 동일선박에 대해 3회 무상 점검·수리한 경우 3척으로 작성)

3. 소요예산(월 평균)

합　계	인건비	관리비	부품교체비	기타
천원				

4. 기타 특이사항

*** 부진원인 및 문제점, 대책, 사업효과 등 기재**

이상과 같이 이동수리·점검사업 추진실적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사무소　　(인)

31 양식어업재해보험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황통성 사무관 김태환	044-200-5460 044-200-5471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팀 장 이준서 과 장 김동규	02-2240-2976 02-2240-297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양식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보험사업자)

> ①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재정지원)

>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률(%)	41.0	48.3	56.1	60.8		다음해 초	(보험가입 어가 수 / 보험가입 대상어가 수)×100%

【~2013년 : 넙치 / 2014년 : 넙치, 전복 / 2015~2017년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 2018년: 양식보험대상 전품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39,600	39,600	39,600	39,600
- 국 비	39,600	39,600	39,600	39,6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식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 및 어업법인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가. 가입자격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 위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보험사업자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보험인수 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양식장에 대해서는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

나. 세부 사업내용

(1) 보험대상물

○ 본 사업

- 육상수조식 넙치 및 그 시설물
  :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넙치(부화한 후 5개월 이후의 것 또는 100g이상의 것에 한함)
- 해상가두리식(육상수조식포함) 전복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육상수조식포함)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전복(각장 3.0cm 이상 또는 무게 5.0g이상의 것에 한함)
- 연승수하식 굴 및 그 시설물

: 연승수하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굴(양성단계에 있는 연승수하식 양식굴로서 수하 이후 30일이 경과된 것에 한함)

- 해상가두리식 조피볼락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조피볼락(전장 13Cm 이상 또는 무게 40g 이상)

- 해상가두리식 참돔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참돔(전장 13Cm 이상 또는 무게 40g 이상)

- 해상가두리식(육상수조식포함) 돌돔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육상수조식포함)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돌돔(전장 10Cm 이상 또는 무게 30g 이상)

- 해상가두리식 감성돔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감성돔(전장 13Cm 이상 또는 무게 40g 이상)

- 해상가두리식 농어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농어(전장 13Cm 이상 또는 무게 15g 이상)

- 해상가두리식 쥐치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쥐치(전장 10Cm 이상 또는 무게 50g 이상)

- 해상가두리식 기타볼락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기타볼락(전장 8Cm 이상 또는 무게 20g 이상)

- 해상가두리식 숭어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숭어(전장 15Cm 이상 또는 무게 45g 이상)

- 육상수조식 강도다리 및 그 시설물

: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강도다리(부화한 후 5개월 이후의 것 또는 100g이상의 것에 한함)

- 해상가두리식 능성어 및 그 시설물

: 해상가두리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능성어(전장 15Cm 이상 또는 무게 100g 이상)

- 수하식(채롱식) 가리비 및 그 시설물

: 수하식(채롱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가리비(양성단계에 있는 각장 3Cm 이상의것)

- 연승수하식 홍합 및 그 시설물

: 연승수하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홍합(양성단계에 있는 양식홍합)

- 연승수하식 다시마 및 그 시설물

: 연승수하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다시마(본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30일이 경과된 것)

- 연승수하식 톳 및 그 시설물

: 연승수하식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톳(양성단계에 있는 톳)

* 단,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시설물은 수산물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가능

○ 시범사업 : 연승수하식 멍게, 연승수하식 미역, 부류식·지주식 김, 육상수조식 뱀장어, 육상수조식 송어, 연승수하식 미더덕, 연승수하식 오만둥이, 육상수조식 터봇, 축제식(지수식) 메기, 축제식(지수식) 향어, 육상수조식 전복종자 및 그 시설물(시범사업 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의함)

(2) 보험사업 실시지역

○ 본 사업 품목 : 전국

* 넙치, 전복, 굴,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능성어, 가리비, 홍합, 다시마, 톳, 해상가두리 어류 양식시설물

○ 시범사업 품목 : 품목별 주산지

- 보험사업 실시지역 : 붙임 1

* 재해보험사업자는 품목별 시범사업 실지역의 추가, 제외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3) 보험대상 재해 범위

○ 양식수산물 : 태풍(강풍)·해일·풍랑·적조·호우·홍수·대설·한파·이상수질·고수온·저수온·이상수온·이상조류·조수·가뭄 및 이에 의한 수산질병 또는 낙뢰

○ 양식시설물 : 태풍(강풍)·해일·풍랑·호우·홍수·대설·이상조류·조수

○ 품목별 보험대상 자연재해 범위 : 붙임 2

(4) 보험 판매기간

- 품목별 보험 판매기간 : 붙임 1

○ 판매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재해보험사업자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가입 신청량이 초과되어 가입기간을 단축하거나 가입실적 부진으로 인해 가입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가입기간 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5) 보험가입 절차

○ 보험 가입신청(양식어업인 : 양식장 원장 작성) → 현지조사 및 청약서 작성(양식장 원장 확인, 가입금액 결정 등) → 인수심사 →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발급

(6) 보험료납입

○ 보험료 납입방법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 부담 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인 계약은 2회 또는 4회 분할납입 가능(다만, 굴, 김, 멍게, 미역, 홍합, 다시마, 육상수조식 돌돔, 가리비, 톳, 육상수조식 전복, 미더덕, 오만둥이, 송어, 축제식(지수식) 메기, 축제식(지수식) 향어, 육상수조식 전복종자는 일시납과 2회 분납만 가능)

(7) 보험요율 적용 및 할인·할증

○ 보험요율 적용 : 주계약, 특약별로 12개 권역 구분 요율 적용

* 동일 권역 내 시군별 위험도에 따른 요율 차등적용

○ 양식어업재해보험 권역 구분 현황 : 붙임 3

* 송어 등 내수면품목의 경우 기존 12개 권역의 행정시군과 내수면 품목의 양식지역간 기상위험 상대도 자료를 비교하여 현행 12개 권역을 준용하여 설정

** 기상상대도 : 현행 권역별 행정시군과 내수면관련 행정시군의 기상청 기상관측자료(태풍·강풍·호우)를 비교하여 보험개발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작성

○ 구조 및 시설, 방재시설에 따른 할인(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뱀장어, 강도다리, 송어, 능성어, 터봇, 전복종자) : 최대 30~40%할인

* 굴, 홍합 : 뗏목수하식 10% 할인, 간이수하식 10% 할증

○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수산물 질병 할인·할증 : -24%～50%

○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라 최고 -50%～50% 할인·할증

* 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권역별/자기부담비율별 영업요율 × (1±할인·할증요율)

○ 보험요율에서 순보험요율이 차지하는 비율 : 80.5%

* 보험요율 관련하여 변경되는 부분(순보험요율이 차지하는 비율)은 금융감독원 신고수리 후 판매일 기준 적용(4.2)

(8) 보험기간

○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멍게, 뱀장어, 강도다리, 홍합, 송어, 능성어, 터봇, 메기, 향어 : 1년
(단,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시설물 포함)

○ 굴 : 양성시설 설치일(본 수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 김 :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수확기 종료시점까지

○ 미역 :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수확기 종료시점까지

○ 다시마

- 식용다시마 : 본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익년 6월말까지

*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이 1월~2월 중인 경우에는 당년 6월말까지임

- 먹이용다시마 : 본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익년 9월말까지

*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31일째 되는 날이 1월~2월 중인 경우에는 당년 9월말까지임

○ 가리비

- 장기형 : 1년 또는 2년

* 시범사업기간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년 계약에 한함

- 단기형 : 본 양성시설 설치일부터 익년도 4월말까지

○ 톳 : 본 양성시설 설치일로부터 익년 7월말까지

* 양성시설 설치일이 1월~2월 중인 경우에는 당년 7월말까지임

○ 미더덕 : 양성시설 설치일로부터 5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익년 6월 말까지

○ 오만둥이 : 양성시설 설치일로부터 41일째 되는 날 0시부터 수확기 종료시점 까지

- 전기산만 양식하는 경우 : 12월 말

- 전기산+후기산을 양식하는 경우 : 4월 말

○ 전복종자 : 5월1일부터 출하기 종료시점까지

* 출하기 종료시점은 보험가입년도의 익년 4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9) 보험가입금액 산출

○ 주계약은 보험기간 중 양식수산물의 성장률, 잔존율 등을 고려한 최대 보유량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임의 결정. 다만, 김은 가입수확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내에서 계약자가 임의 결정

○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시설물(주계약) 및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은 재조달가액, 감가상각액 등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임의 결정

○ 자연재해 원인 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 이상조류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이상수질 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고수온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저수온원인 수산물손해담보특약, 자연재해원인 전기적장치위험보장특약은 주계약과 동일

○ 조수손해담보특약은 수산물, 시설물에 대하여 각각 주계약 및 양식시설물손해담보특약과 동일

(10) 손해평가

○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양식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됨.

(11) 보험금 지급

○ 보상하는 재해로 자기부담금 이상 피해 발생 시 자기부담금 초과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 다만, 양식 불능 또는 수확감소 보험금을 보상하는 김, 전복종자는 보험약관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

○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그 서류를 접수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며,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함

(12) 국가 재보험

○ 손해율 150%를 초과하는 손해(거대재해)는 정부가 국가 재보험으로 인수

○ 손해율 150%이하 손해(통상재해)는 보험사업자가 인수하고, 민영보험사와의 재보험약정에 의하여 일정 비율를 보험사업자가 보유

<국가재보험 책임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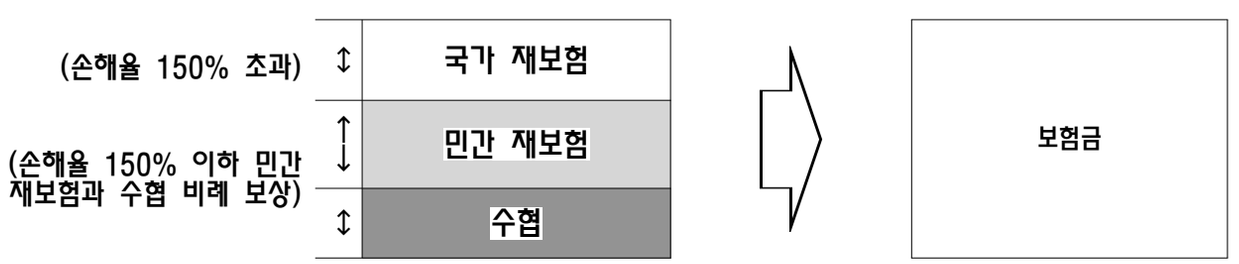

(13) 지자체와의 협의체 구성 운영

○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지자체와의 업무연계 강화를 위해 수협 지부(지역본부)와 지자체와의 협의체 구성 (반기별 회의 실시)

(14) 기　　타

○ 시범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은 별도의 시범사업 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 양식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의 납입보험료 지원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순보험료 : 순보험료 50% 보조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운영비 : 운영비 100% 보조 (순보험료 : 운영비 = 80.5 : 19.5)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5. 기타

○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양식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및 「양식어업재해보험 약관」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 보험요율 적용,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인가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9년 신규 시범사업 품목의 가입자격, 사업실시 지역, 보험 판매기간, 보험요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추후 결정 예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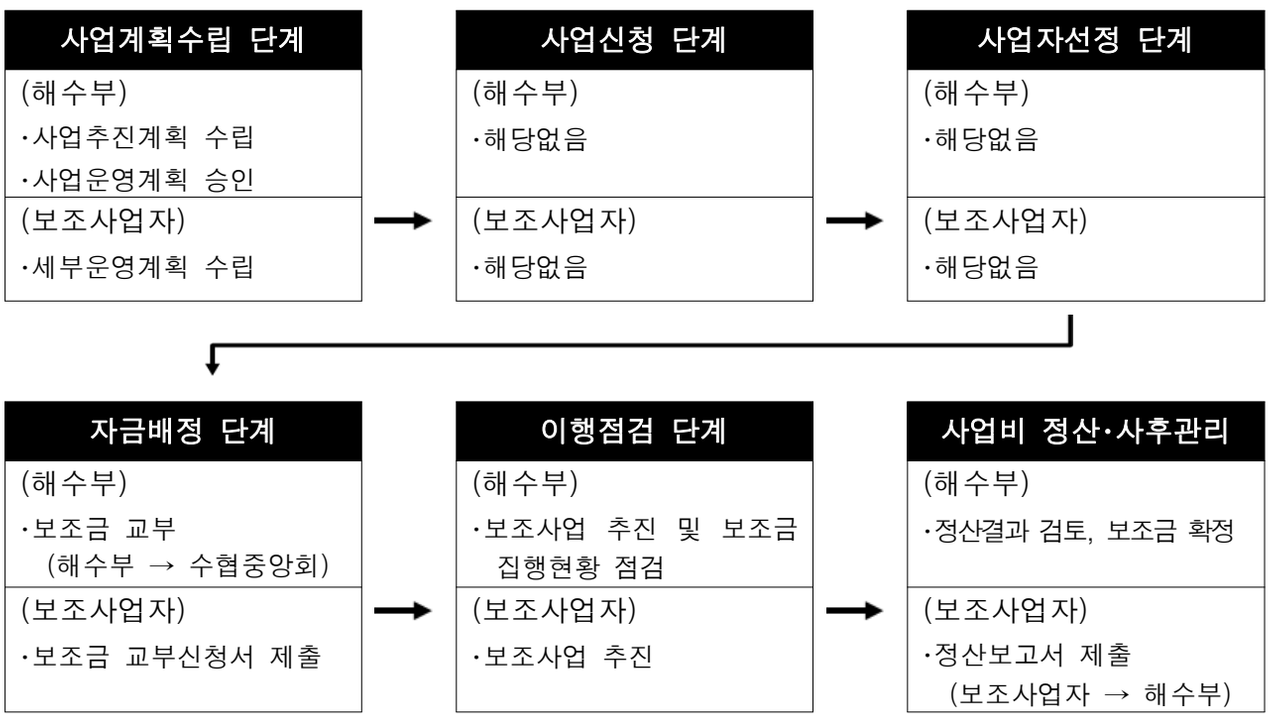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세부사업기본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수립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시달

수협중앙회

○ 세부시행계획(보험요율, 보험약관 등)을 수립하여 일선 보험취급점의 판매직원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

2. 보험의 가입 단계

보험가입자(어업인)

○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안내장, 약관 등을 확인하고 보험가입 서류(양식장원장)를 작성하여 보험취급점에 제출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영업점)

○ 보험가입 청약서를 작성한 후 보험가입 이후 민원·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

○ 보험청약서 및 관련서류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해보험사업자의 승낙을 받은 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보험가입자에게 교부

수협중앙회

○ 보험취급점으로부터 제출된 보험가입 청약서에 따라 보험가입내용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고 승낙 여부를 보험취급점에 통보

3. 보험금의 지급 단계

보험가입자(어업인)

○ 보험가입자는 보험대상 양식수산물 및 양식시설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양식어업재해보험 사고발생 통지서에 의거 보험가입 보험취급점에 통보

○ 보험금 지급안내를 받은 후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취급점에 제출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영업점)

○ 보험가입자로부터 사고발생 통지를 받은 보험취급점은 사고내용을 관할 지부(지역본부)로 즉시 보고

○ 신고된 양식장의 보험계약서를 근거로 보상대상 사고 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후 초동 조사보고서를 작성 지부(지역본부)에 보고

○ 지급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

수협중앙회

○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평가인 또는 손해사정사가 사고조사 및 손해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고조사를 의뢰

○ 손해평가의 신속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손해평가인의 사고조사 내용을 검증 조사함

- 조사주체 : 보험사업자, 재보험사 및 정부

○ 양식장별 손해수량 및 지급 보험금을 결정하여 보험취급점에 안내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회계법인 검증 등) 실시한 후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수협중앙회

○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자금집행

- 가입 및 운영비 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 정산

-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회계법인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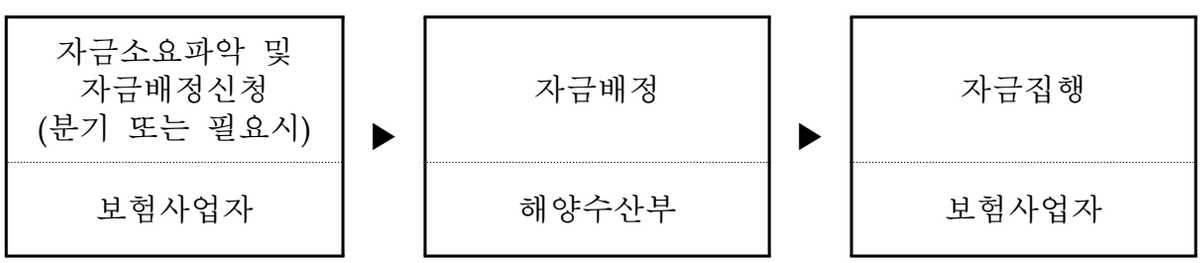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수협중앙회

○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험취급점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절차, 보험금 지급내용 및 지급절차, 국고 지원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

○ 보험모집 등 일부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보험취급점 등이 보험모집의 적절성 등 보험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해양수산부

○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정부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

- 사업계획에 따라 보험 계약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현황 등
-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추진 실적 등

《제재》

수협중앙회

○ 보험계약 및 보조금 집행결과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때
-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해양수산부

○ 보험계약, 보조금 집행 및 보험금 집행 등에 있어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기관의 징계, 해당 계약자(어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연도말 사업종료 후 익년 1월 보험사업자의 보험가입 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 주요 성과지표 : 재해보험 가입률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1월) : 보험 추진 완료 후 양식어가 가입 수 등 가입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정부정책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양식어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연간 1～2회
  *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공문으로 시행
- 조사대상 : 양식어업인
- 조사방법 : 전화(대면) 설문을 활용한 조사
- 주　　관 : 보험사업자 (또는 외부전문기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보험 가입률, 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평가기간 : ’20. 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보험 가입률, 보조금 집행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보험가입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년 2월말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양식어업재해보험 사업지역 및 판매기간

구분		사업지역	가입단위	판매기간	
본사업	넙치,전복 조피볼락 참돔,돌돔 감성돔 농어,쥐치, 기타볼락, 숭어,강도다리, 능성어	전 국	양식장	1.1 ~ 6.30 10.1 ~ 12.31	
	굴	전 국	양식장	5.1 ~ 9.30	
	가리비	전 국	양식장	장기형	1.1 ~ 6.30 10.1 ~ 12.31
				단기형	6.1 ~ 9.30
	홍합	전 국	양식장	연중	
	다시마	전 국	양식장	1.1~3.31 10.1 ~ 12.31	
	톳	전 국	양식장	1.1~2.29 10.1~12.31	
시범사업	김	전남 해남군·신안군·고흥군·완도군· 장흥군·목포시·무안군·진도군·함평군 충남 서천군·태안군·보령시 경기 안산시·화성시 전북 군산시·부안군, 부산 강서구 인천 옹진군·강화군	양식장	9.1 ~ 12.31	
	멍게	경남 통영시·남해군·고성군·거제시 강원 고성군·삼척시·강릉시·양양군·속초시 경북 경주시·포항시·영덕군·울진군 제주도 전남 여수시	양식장	4.1 ~ 10.31	
	미역	전남 고흥군·진도군, 부산 기장군 경남 통영시·거제시	양식장	9.1 ~ 12.31	
	뱀장어	전남 영광군·함평군·강진군·무안군·고 흥군·보성군·장흥군·영암군·나주시 전북 고창군	양식장	1.1 ~ 6.30 10.1 ~ 12.31	
	송어	강원 영월군·정선군·춘천시·평창군·삼 척시·철원군·횡성군·태백시 경북 구미시·상주시 충북 보은군·충주시 경기 가평군	양식장	1.1 ~ 6.30 10.1 ~ 12.31	
	미더덕	경남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	양식장	7.1~11.30	
	오만둥이	경남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	양식장	7.1~11.30	
	터봇	제주도	양식장	1.1 ~ 6.30 10.1 ~ 12.31	
	메기	충남 홍성군·논산시·당진시·부여군·아 산시·예산군·청양군 전북 전주시·익산시·김제시·정읍시·완 주군·부안군·고창군	양식장	1.1 ~ 6.30 10.1 ~ 12.31	
	향어	전북 전주시·익산시·김제시·정읍시·완 주군·부안군·고창군 전남 함평군	양식장	1.1 ~ 6.30 10.1 ~ 12.31	
	전복종자	전남 완도군 고금면	양식장	5.1 ~ 6.30 10.1 ~ 12.31	

*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시설물은 본사업으로 포함 (판매기간은 1.1~6.30, 10.1~12.31)

<붙임 2>

양식어업재해보험 품목별 보험대상 재해 현황

품목명	수산물 피해				시설물 피해
	주계약	특약			특약
		수산질병	전기적장치	기타	양식시설물
넙치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수온	주계약 보상재해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전복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이상수온	주계약 보상재해	-	이상수질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수산물*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주계약 보상재해 (쥐치 제외)	-	고수온, 저수온, 이상수질	-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시설물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	-	-	-
굴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	-	이상조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김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조수	주계약 보장재해	-	-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멍게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이상조류	-	-	-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미역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이상조류	-	-	조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조수
뱀장어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강도다리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수온	주계약 보상재해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홍합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	-	이상조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품목명	수산물 피해				시설물 피해
	주계약	특약			특약
		수산질병	전기적장치	기타	양식시설물
다시마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이상조류	-	-	조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조수
송어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가뭄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육상수조식 돌돔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수온	주계약 보상재해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가리비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	-	이상조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톳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이상조류	-	-	조수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이상조류, 조수
육상수조식 전복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수온	주계약 보상재해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미더덕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및 이상조류	-	-	-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오만둥이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적조 및 이상조류	-	-	-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터봇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적조, 한파, 저수온	주계약 보상재해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고수온 이상수질	태풍(강풍), 해일, 호우, 홍수, 대설
메기	태풍(강풍), 호우, 홍수, 대설, 가뭄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	태풍(강풍), 호우, 홍수, 대설
향어	태풍(강풍), 호우, 홍수, 대설, 가뭄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	태풍(강풍), 호우, 홍수, 대설
전복종자	태풍(강풍), 해일, 대설	-	주계약 보상재해, 낙뢰	-	태풍(강풍), 해일, 대설

* 해상가두리어류 양식수산물 : 조피볼락,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능성어

<붙임 3>

양식어업재해보험 권역 구분 현황

권역	세부권역	권역별 행정구역	추가 행정구역
1권역	1권역	당진군,안산시,화성시,평택시,아산시	경기도 양평, 여주,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화성
	1-1권역	인천광역시,김포시	
2권역	2권역	태안군,홍성군,서천시	충청남도 논산, 대전, 부여, 청양, 예산, 홍성, 충청북도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제천, 청원, 충주
	2-1권역	보령시, 서산시	
3권역	3권역	김제시,부안군,고창군	전라북도 무주, 완주, 장수, 진안, 익산, 전주, 정읍, 김제
	3-1권역	군산시	
4권역	4권역	무안군,영광군,영암군,함평군	전라남도 나주
	4-1권역	목포시,신안군	
5권역	5권역	진도군,해남군,강진군	
	5-1권역	완도군	
6권역	6권역	보성군, 순천시,광양시,장흥군,고흥군,	
	6-1권역	여수시	
7권역	7권역	하동군,사천시,고성군	경상남도 거창, 밀양, 함양, 합천
	7-1권역	남해군, 통영시	
8권역	8권역	창원시(마산구,진해구)	
	8-1권역	거제시, 부산광역시	
9권역	9권역	경주시,영덕군	
	9-1권역	울산광역시, 포항시	
10권역	10권역	삼척시, 동해시	강원도 영월, 원주, 정선, 태백, 평창, 횡성, 경기도 가평 경상북도 구미, 군위,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안동, 영주, 예천, 의성, 청송
	10-1권역	울진군	
11권역	11권역	고성군	강원도 양구, 인제, 춘천, 홍천, 화천
	11-1권역	강릉시,속초시,양양군	
12권역	12권역	제주특별자치도	

* 현행 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지역은 해당지역과 지리적 특성이 유사한 권역의 요율을 준용*

<붙임 4>

양식어업재해보험 가입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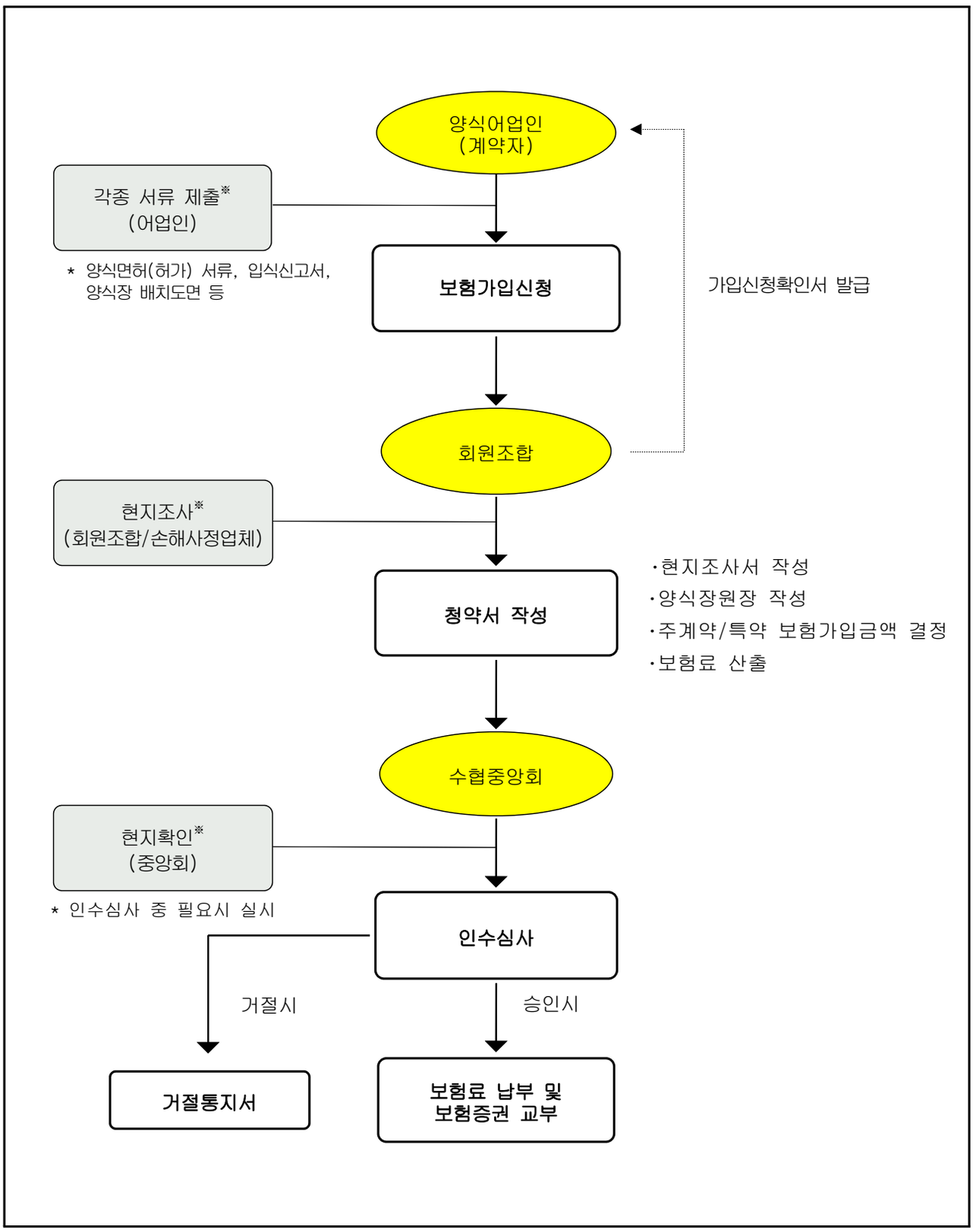

<붙임 5>

양식어업재해보험 사고발생통지서

수협중앙회 귀중

<table>
<tr><td colspan="3" rowspan="4">귀 수협중앙회와의 보험계약에 의해 다음과 같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합니다.</td><td colspan="3">년 월 일</td></tr>
<tr><td>보험증권번호</td><td colspan="2"></td></tr>
<tr><td>양식장명(상호명)</td><td colspan="2"></td></tr>
<tr><td>보험계약자</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품 목</td><td colspan="2"></td><td rowspan="2">보험책임기간</td><td colspan="2" rowspan="2">년 월 일 ~ 년 월 일</td></tr>
<tr><td>양 식 방 법</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보험사고구분</td><td>양식물</td><td colspan="5">☐ 폐사 ☐ 유실 ☐ 멸실</td></tr>
<tr><td>시설물</td><td colspan="5">☐ 손상 ☐ 유실 ☐ 멸실</td></tr>
<tr><td colspan="3">양식수산물(생물)</td><td colspan="4">시설물</td></tr>
<tr><td colspan="2">사고발생일</td><td>손해수량</td><td>사고발생일</td><td colspan="2">손해수량</td></tr>
<tr><td colspan="2">년 월 일</td><td>미, kg</td><td>년 월 일</td><td colspan="2">조(칸)</td></tr>
<tr><td rowspan="5">보험사고의 개요</td><td>일 시</td><td colspan="5"></td></tr>
<tr><td>장 소</td><td colspan="5"></td></tr>
<tr><td>원 인</td><td colspan="5"></td></tr>
<tr><td>결 과</td><td colspan="5"></td></tr>
<tr><td>기 타
(조치사항)</td><td colspan="5"></td></tr>
</table>

㈜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등에 의해 속보를 함과 동시에 양식에 의한 사고발생통지서를 가능한 빨리 제출하여 주십시오.

② 사고원인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작성하십시오.

신고인

이 름 _____(인)

32 어선원 및 어선보험

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황통성 사무관 김태환	044-200-5460 044-200-5471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팀 장 최정인 과 장 윤현수	02-2240-2980 02-2240-294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4조(국고의 지원)

>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액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9조(업무의 위탁)

>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	‘16	‘17	‘18		
▪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률(%)	7.0	11.2	9.0	9.3		다음해 초	(어선원보험 가입 선원수/어선원 보험 가입대상 선원수)×100 * 대상 : 3톤미만 어선(당연가입인 3톤이상은 제외)
▪ 어선 재해보험 가입률(%)	24.0	18.7	20.6	21.6		다음해 초	(어선보험 가입 어선척수/어선보험 가입 대상어선 척수)×100 * 대상 : 10톤미만 어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05,663	105,663	105,663	105,663
- 국 비	105,663	105,663	105,663	105,663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함) 제16조·제49조에 의한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의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 100톤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과 20톤 이상 **어선**은 부가보험료에 국한 지원

○ 지원조건(재원)

- 순보험료 : 어선별로 산출한 순보험료(총 보험료의 80%)의 아래 비율 지원

구 분	10톤미만	10~20톤미만	20~30톤미만	30~50톤미만	50~100톤미만	100톤이상
어선원 보험	70%	60%		30%	20%	0
어 선 보험	70%	60%	0	0	0	0

- 부가보험료 : 어선별로 산출한 부가보험료(총 보험료의 20%)의 75% 지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 보험가입 어선별 지원한도는 없음

5.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등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1. 사업계획수립 단계

○ 수협중앙회장은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보험규약 및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규정의 작성 및 변경시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보험요율 등 결정

- 어선의 규모별 기본요율, 업종별 할인·할증 요율, 특례요율 증감표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수협중앙회의 사업운영계획 및 보험규약, 회계규정 검토 승인

수협중앙회

○ 사업운영계획 수립

- 수협중앙회는 사업계획서 및 자금 수지계획서,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그 밖에 사업운영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운영계획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보험상품 관리자 교육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보험가입 신청서의 접수 및 보험금 지급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영업점(회원조합 등)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등

- 보험료율, 약관, 수지예산 등 세부시행계획 변경 시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함

2. 보험의 가입단계

○ 어선원보험 가입대상(당연가입 대상)자는 고용한 어선원별 임금 등을 명시한 보험가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제출

○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임의가입 대상)은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험약관 등을 확인한 후, 보험가입 신청서와 국고 지원액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협중앙회 영업점 또는 회원조합 영업점에 제출(납부)

○ 수협중앙회(공제보험지부·지역본부)는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된 보험가입 신청서(신고서)에 의한 고지내용을 심사하여 보험가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영업점에 통보하고 영업점에서는 보험가입 확인서 또는 보험증권을 교부

보험가입자(어업인)

○ 당연가입 대상 : 법 제6조 및 제16조에 의거 보험가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한 어선원별 임금 등을 명시한 보험가입 신고서와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협중앙회 영업점 및 회원조합 영업점에 제출(납부)

○ 임의가입 대상 :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험약관 등을 확인하고, 보험가입 신청서와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협중앙회 영업점 또는 회원조합 영업점에 제출(납부)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영업점)

○ 어업인으로부터 보험가입 신청(신고)서를 접수한 후 보험가입 신청서 부본 및 보험약관 등을 교부하고 중요사항을 설명

○ 접수한 보험가입 신청(신고)서를 수협중앙회(공제보험지부·지역본부)에 제출하고 승인 또는 심사결정 통보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 확인서(보험증권)를 교부

수협중앙회(지부·지역본부)

○ 영업점으로부터 제출된 보험가입 신청(신고)서에 따라 보험가입 신청내용(고지내용) 및 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영업점에 통보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국고보조금 지원 제외

3. 보험금의 지급 단계

○ 피보험자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협중앙회 영업점에 신고

○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를 제출

○ 영업점에서는 30일 이내(사고 사실 조사기간 제외)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어업인)

○ 피보험자는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해의 원인과 내용 및 손해정도에 관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영업점 또는 회원조합 영업점에 신고

○ 보험급여 수급권자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급여 지급청구서에「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규약」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점에 제출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영업점)

○ 접수된 보험급여 지급청구서류를 해당 공제보험지부(지역본부)에 청구 신청

○ 결정된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수협중앙회(공제보험지부·지역본부)

○ 보험급여 지급청구서류가 영업점에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을 결정

수협중앙회

○ 보험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 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 시 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단계

○ 수협중앙회는 분기별 자금 배정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자금배정을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자금 배정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회계법인 검증 등) 실시한 후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수협중앙회

○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자금집행

- 가입 및 운영비 실적에 따라 자금 집행

○ 정산

-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회계법인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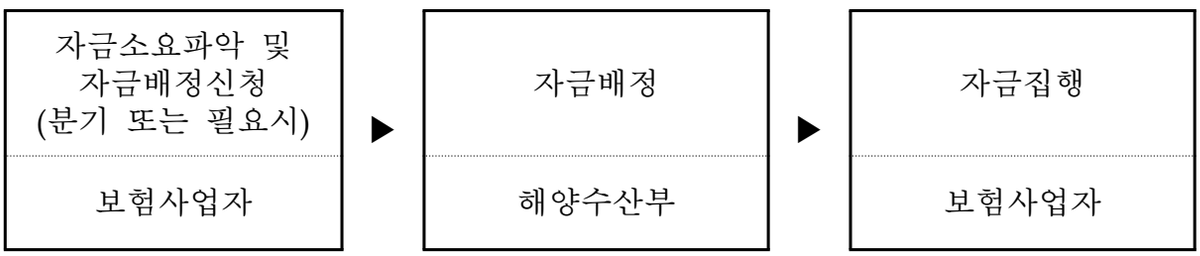

○ 사업비 신청

- 매분기별 보조금 발생액과 회수액을 산출하여 매분기 마다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순보험료 :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이후 보험료 납입시기 도래에 따라 집행하고 보조금 수령 후 정산

- 운영사업비 : 연초에 수립된 사업계획 및 예산에 따라 집행하고 보조금 수령 후 정산

-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회계법인검증)을 실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수협중앙회는 영업점의 보험모집과 보험급여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적에 대한 가결산 결과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의 재무건전성 및 정부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재정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예방

수협중앙회

○ 보험업무 취급자 교육 실시

- 신속하고 정확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업점 직원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절차, 보험급여 내용 및 지급 절차, 국고 지원사항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점검 실시 및 자료제출

- 영업점을 대상으로 보험모집의 적정성 등 보험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보험사업 운영결과에 대한 가결산 현황을 분기별로 작성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 보험가입 실태와 수협중앙회의 사후관리 사항 등을 반기 1회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교육실시 여부, 보험운영의 적정성, 보험료 징수실태 등

《제재》

○ 수협중앙회는 보험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부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수협중앙회는 보험수급권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수협중앙회

○ 보험계약 및 보조금 집행결과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보험급여 집행에 있어서 보험수급권자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액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

해양수산부

○ 보험계약, 보조금 집행 및 보험급여 집행 등에 있어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기관의 징계, 해당계약자(어업인)의 계약 취소 등 조치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년도말 사업종료 후 익년 1월 수협중앙회의 보험가입 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 주요 성과지표 :어선원 보험 및 어선보험 가입률
- 성과지표 측정(12월～익년도 1월) : 보험 추진 완료 후 양식어가 가입 수 등 가입실적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사업추진 실적, 보험가입률, 제준비금 적립현황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평가기간 : ’20. 3월말 까지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

○ 평가기준 : 보험가입률, 제준비금 적립현황, 사업추진 실적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년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익년 2월말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심사·분석(결산현황)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재해보상보험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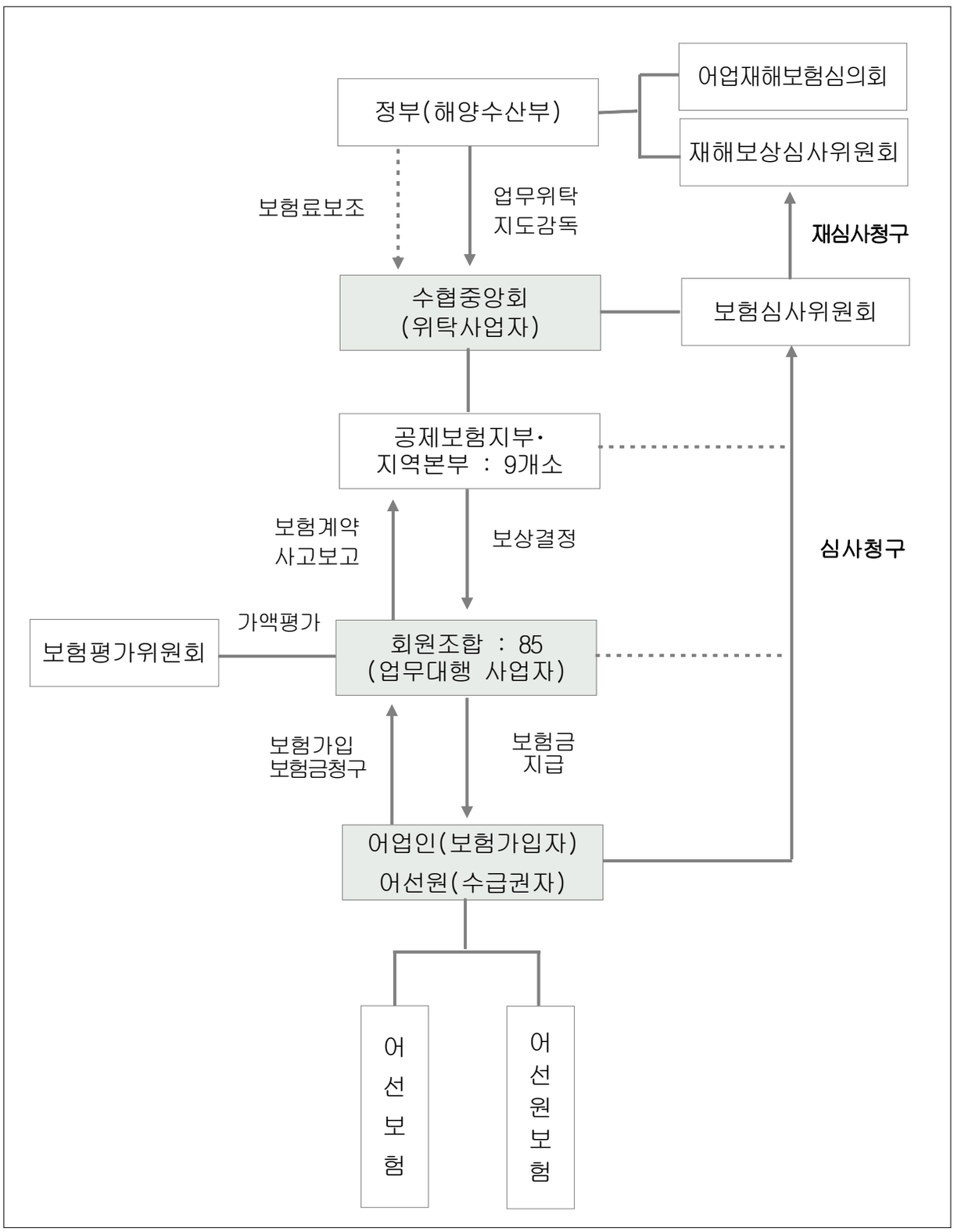

② 어선원보험 재활급여(시범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황통성 사무관 김태환	044-200-5460 044-200-5471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팀 장 박찬수 과 장 서동석	02-2240-2970 02-2240-298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요양이 종결된 장해어선원이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후유증이 악화되거나 그 후유증상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관찰, 의학적 처지 등을 통하여 증상의 악화 또는 합병증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여 노동능력의 유지·회복 및 원활한 사회복귀 촉진

2. 근거법령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4조(국고의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17조(장애발생 예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제75조(직장복귀지원금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381**	**381**	**381**	**381**
- 국 비	381	381	381	381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선원보험 가입자중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장해급여)에 따라 장해진단을 받은 자

- 장해진단일(치유일) 기준으로 2014. 1. 1 ~ 2019. 12. 31 장해등급 제1급 ~ 제13급 진단을 받은 자 다만, 2016년 이전 지원자에 대하여는 재활 종결시까지 지원가능(재활기간 2년한도)
- 원직장복귀지원의 경우 2017. 1. 1 ~ 2019. 12. 31 까지 장해진단 받은 자

*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조정전의 기초 장해등급을 말함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후유증상 진료 지원과 중복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의료재활지원) 상병치유 후 장해발생 등 합병증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이송, 재활보조기구,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을 지원

○ (원직장복귀지원)장해가 있는 재해어선원의 직장복귀 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해 원직장 사업주가 재해어선원을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

○ 재활급여비 : 장해가 있는 재해어선원의 재활급여의 재원 및 위탁사업자의 보험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 원 율 : 국고 100%

○ 재활기간 : 2년(의학적 소견에 따라 연장 가능)

○ 지원금액 : 장해어선원별 지원한도 없음('19년 예산범위)

<재활사업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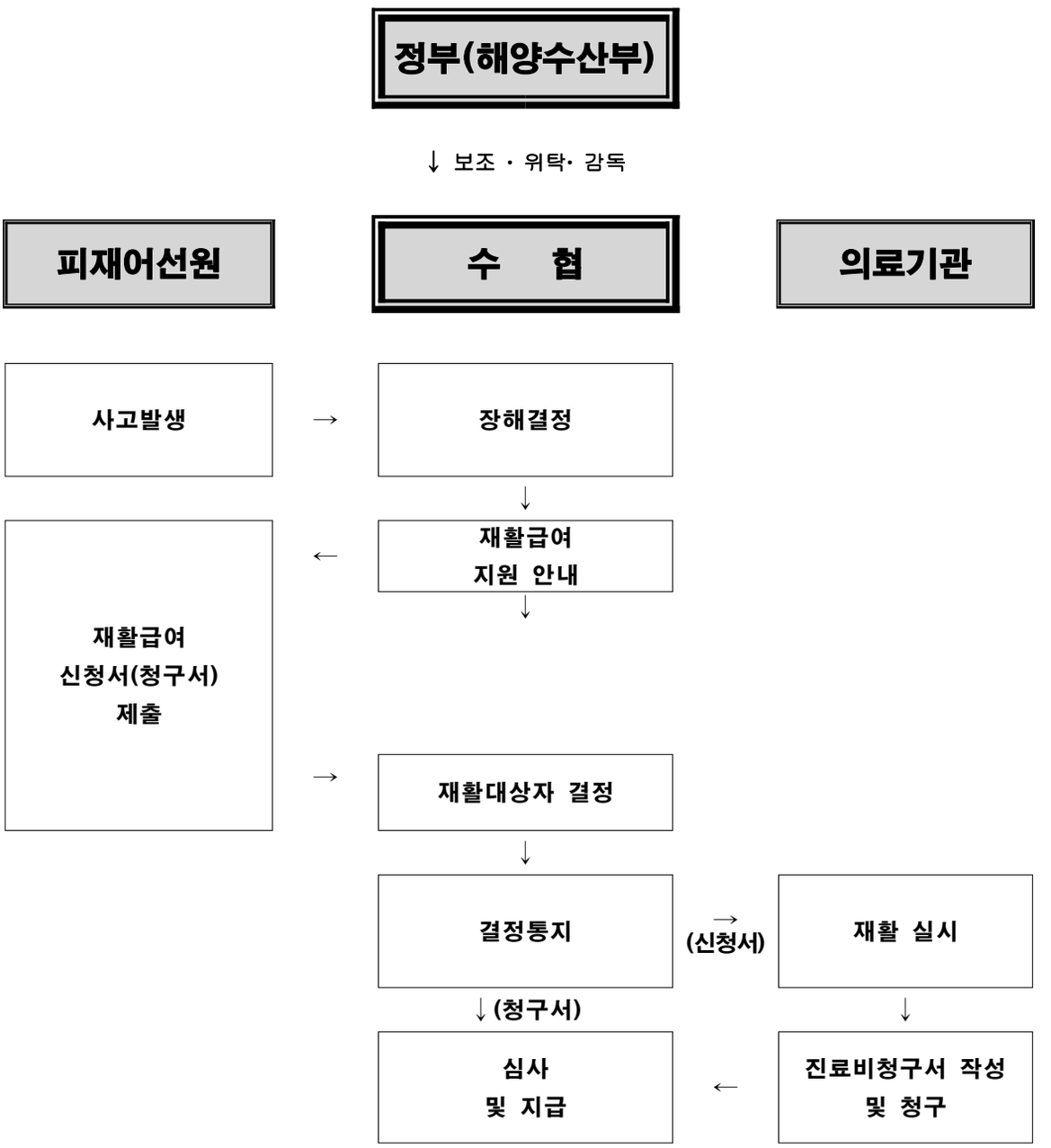
정부(해양수산부)
↓ 보조 · 위탁· 감독
피재어선원
수 협
의료기관
사고발생
장해결정
재활급여
지원 안내
재활급여
신청서(청구서)
제출
재활대상자 결정
결정통지
(신청서)
재활 실시
↓(청구서)
심사
및 지급
진료비청구서 작성
및 청구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보험의 설계 및 준비 단계

해양수산부

○ 재활사업 대상, 범위, 시행절차 등 사업시행 지침 통보

○ 사업시행에 필요한 예산 교부

수협중앙회

○ 사업시행 관계자 교육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관리, 보상 절차 등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지부(지역본부), 지정병원 등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 등

- 대상, 보상 범위, 주요 절차 등 세부시행지침 변경 시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함

○ 대상 결정

- 수협중앙회에서 “어선원보험 재활급여 지침”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 후 결정통지서 발급 및 안내

2. 사업신청 단계

수급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재활급여 신청서(청구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에 제출

수협중앙회

○ ‘재활급여 신청서’ 접수 후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자 중 합병증 등의 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자 등을 대상자로 결정

○ 소견서 등 해당자료 확보가 곤란할 경우, '재활급여 신청서'를 제출시점을 전후로 하여 의료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사의 '의학적 소견서(의료기관 양식)'를 검토하여 대상 여부 결정(필요시 의료자문 실시)

※ 대상자 결정시 최종적인 장해등급 결정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참고

○ 재활대상자로 결정되었을 경우 결정통지서를 의료기관 및 대상자에게 통지

3. 재활급여 지급 단계

지정병원

○ 지정병원은 수협중앙회의 승인결정 내용에 따른 '병명' 및 '기간'에 대한 의료재활치료를 수급권자에게 제공 후 수협중앙회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결정 기간외의 진료비 및 이송비에 대하여는 본인 부담토록 안내

○ 지정병원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에 근거하여 산정

○ 의료재활의 지원 기간 연장신청시 주치의사 소견서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요양급여 신청서용 진단서를 준용하여 지급

○ 대상자가 지정 의료기관 변경이 필요하여 '의료재활 의료기관 변경신청서(주치의 소견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심사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변경 승인 결정 후 의료기관 및 대상자에게 통지

○ 지정병원은 결정에 대한 요양 실시 후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협중앙회에 제출

수협중앙회

○ 접수된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를 검토하여 지정병원에 지급

- 지정병원의 진료비 청구 협조 불가시 대상자는 자부담후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내역서와 함께 수협중앙회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협중앙회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원직장복귀지원의 경우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 및 지원대상 확인서류를 접수하여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사업주(보험 가입자)에게 지급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단계

○ 수협중앙회는 분기별 자금 배정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자금배정을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자금 배정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하게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

수협중앙회

○ 사업비 신청

-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재활급여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금액을 집행하고 보조금 수령 후 정산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 수협중앙회는 재활급여 집행의 적정성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실적 결과를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의 재무건전성 및 정부 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재정 부실화 및 부당집행 예방

수협중앙회

○ 지부, 병원, 조합 교육 실시

- 신속하고 공정한 보험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부(지역본부) 및 지정병원을 대상으로 재활급여 대상, 내용 및 지급절차 등을 교육

○ 자체점검 실시

- 재활급여 대상의 선정, 관리, 지급 등의 보험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재활서비스·직업·사회복귀 사업 등 통합의료재활서비스 추진

- 재활급여를 비롯하여 통합재활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단계적 계획 수립 및 재해어선원의 특성에 맞는 재활사업 발굴 및 개척

해양수산부

○ 수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재활급여 운영실적 정기 점검

- 주요 점검사항 : 교육실시 여부, 보험운영의 적정성 등

《제재》

○ 수협중앙회는 재활급여의 목적 외 사용 등 부당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수협중앙회는 수급권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징수

수협중앙회

○ 재활급여 중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진단서 발행 등으로 부당 진료비 청구 및 수급을 받은 경우
-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재활급여 집행에 있어서 수급권자 등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액 징수

해양수산부

○ 재활급여 집행 등에 있어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기관의 징계, 수급자(어업인)의 부당이득 징수 등 조치

6. 성과 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사업시행 년도말 사업 종료 후 전년도 대비 실적근거로 성과지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사업지침 상 설정된 대상, 관리 지급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평가기간 : ’20. 3월말 까지

○ 평가대상 : 재해보험사업자(수협중앙회)

○ 평가기준 : 대상 선정, 관리(지급) 실적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보험사업자는 매년도말 사업지침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익년 2월말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는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성과 심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시범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 사업성과 심사·분석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 재활시범사업 시행 매뉴얼 1부.

어선원보험 재활사업 시범사업 매뉴얼 요약

□ 목적

○ 이 매뉴얼은 재활급여 시범사업에 필요한 대상선정, 관리절차 등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대상

○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자'

○ 장해진단일(치유일) 기준으로 2014. 1. 1 ~ 2019. 12. 31 진단 받은 자

(원직장복귀지원의 경우 2017. 1. 1 ~ 2019. 12. 31까지 장해진단 받은 자)

□ 관리범위

○ 상병치유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처치, 이송, 재활보조기구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

○ 장해 재해어선원의 직장복귀 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주가 재해어선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 지원

□ 관리절차

- 의료재활지원

1. 대상결정

○ 장해급여 청구시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관리대상자 결정 후 통지

2. 의료재활

○ 의료재활을 위한 진료인정기준 및 증상별 진료기준에 따라 의료재활 진료서비스를 실시

3. 진료비 등 청구 결정 및 지급

○ 의료재활의 비용 산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 기준』을 따름

4. 의료기관의 비협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본인부담 후 청구 가능

- 원직장 복귀 지원

1. 대상안내

○ 장해급여 지급시 ‘원직장 복귀 지원’ 안내 실시

2. 원직장 복귀 및 취업

○ 원직장에 복귀하여 3개월이상 취업 실시

3.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 제출

○ 건강보험가입내역서, 급여대장, 선원승선사실확인원 등을 통한 원직장 취업여부 확인

4. 재활급여 지급

○ 원직장에 복귀하여 근무한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재활급여 지원

어선원보험 재활급여
시범사업 추진 매뉴얼

2019. 1.

「하나의 가치, 하나된 힘, 최고의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원보험 재활급여 시범사업

차 례

Ⅰ. 목적 ····· 2

Ⅱ. 대상 및 범위 ····· 2

1. 대상 ····· 2
2. 관리범위 ····· 3

Ⅲ. 관리절차 ····· 3

1. 관리 지부 및 영업점 ····· 3
2. 의료재활급여 대상 결정 ····· 3
3. 의료재활급여 대상 재결정 ····· 5
4. 결정사항 통지 ····· 5
5. 의료재활급여 신청확인서 ····· 5

Ⅳ. 의료기관 결정 및 정산 등 ····· 6

1. 의료기관 결정 ····· 6
2. 진료비 등 청구 결정 ····· 7
3. 의료자문 ····· 7

붙 임 : 어선원보험 재활급여 세부사업계획 관련 서식

Ⅰ 목적

❍ 재활급여란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잔존하는 후유증상 및 해당 질환에 관련하여 일어나는 다른 질환의 합병증에 대하여 진찰, 약제, 처치 등의 의학적 조치를 실시하여 당초 상병의 악화, 재발 또는 합병증 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노동능력의 유지 회복으로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의료재활지원과, 장해어선원의 직장복귀 촉진 및 고용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원직장복귀지원을 말하며,

❍ 이 매뉴얼은 재활급여 시범사업에 필요한 대상 및 관리범위, 관리절차 등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대상 및 범위

1. 대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장해급여)에 따라 장해등급 제1급~제13급 지급결정을 받은 자

- 장해진단일(치유일) 기준으로 2014. 1. 1 ~ 2019. 12. 31 진단 받은 자
  다만, 2016년 이전 지원자에 대하여는 재활종결시까지 지원가능(재활기간 2년한도)
  ※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조정전의 기초 장해등급을 말함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후유증상진료 지원과 중복 지원 제외
- 원직장복귀지원의 경우 2017. 1. 1 ~ 2019. 12. 31 까지 장해진단 받은 자

2. 의료재활 관리범위

○ 상병치유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찰, 약제, 처치, 이송, 재활보조기구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해당(한방진료도 인정기준에 따라 적용)
※ 통원진료 원칙이나 입원치료 승인 가능하며, 통원 및 입·퇴원일 1일당 이송비 2만원 지원

○ 장해급여 진단 후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활보조 기구 지원 (요양급여에서 지원하는 재활보조기구 제외)
- 1인당 500만원 한도 인정

3. 직장복귀 지원금 범위

○ 재해어선원의 원직장복귀 촉진 및 고용유지를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

- 지원 요건

  : 고용유지기간 3개월

- 지원 수급자

  : 장해어선원을 고용하여 3개월이 경과한 사업주

- 지원금 기준

  · 장해등급 제1급~제3급 : 월 70만원 한도(실지급액 내)

  · 장해등급 제4급~제9급 : 월 60만원 한도(실지급액 내)

  · 장해등급 제10급~13급 : 월 50만원 한도(실지급액 내)

  ※ 고용이후 4개월 이후 적용하며 최대 4개월까지 지원

Ⅲ 의료재활 관리절차

◆ **관리 결정 내용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재활 진료서비스를 받고, 약제처방을 받은 경우에는 약국에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제 수령**

◆ **재활급여 진료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진료 및 약제에 대하여는 수협중앙회에서 진료·약제비 부담**

1. 관리 지부 및 영업점(조합)

- 어선원보험 최종 지급 결정 지부 및 관할 영업점(조합)

2. 의료재활 급여 대상 결정

1) 장해급여 청구에 의한 직권 결정

- 장해급여청구에 따라 의료재활급여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직권 결정

2) 의료재활급여 신청서에 의한 결정

- '의료재활급여 신청서' 접수 후 의학적 필요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최종적인 장해등급 결정시 제출된 '장해진단서'를 참고하여 검토 결정
- 자료의 확보가 곤란할 경우, 당 신청서 제출시점을 전후로 하여 주치의사이

‘의학적 소견서(별도 양식은 없음)’ 검토를 거쳐 대상 여부 결정

※ 필요시 의료자문 후 검토 결정

3) 장해등급 미달자의 의료재활급여 대상자 결정

- 의학적 타당성 검토 후 의료재활급여 대상자 결정(필요시 의료자문 실시)

4) 재요양시 의료재활급여 대상 중지

- 의료재활급여 대상자가 관리내용과 동일한 사유로 재요양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증상을 전체 중지하나, 재요양승인 상병 이외의 증상이 있는 경우 재요양승인 상병과 관련 있는 증상만 일부중지하고 의료재활급여 대상 결정

  ▶ 4주이내 금속내 고정물 제거의 경우는 기존 유효기간 유지(의료재활급여 신청 불필요)

3. 의료재활 급여 대상 재결정

1) 최초 결정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어선원이 ‘의료재활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연장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기간 연장 결정

- 연장신청 당시 직전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연속되지 않고 단절되어 있을 경우 직권 또는 신청의 방법으로 연장신청 당시의 기간까지 연장

  (필요시 의료자문 조치)

2) 휴유증상 또는 합병증 추가

- 의료재활 기간 중에 최초 결정된 후유증상 또는 합병증 이외에 다른 증상이 발견되어 새롭게 관리가 필요한 어선원이 ‘의료재활급여 신청서(주치의 소견 포함)’를 제출한 경우 추가 여부를 심사하여 추가 결정

3) 승인 상병 정정

- 의료재활급여 관리기간 중에 최초 결정된 후유증상 또는 합병증이 착오 결정되거나 결정 당시 누락된 증상이 있어 부득이하게 정정이 필요한 어선원근로자가 ‘의료재활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정정 여부를 심사하여 정정 또는 추가 결정
- 착오 결정되거나 추가할 후유증상 또는 합병증은 최초결정 당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의료재활급여 대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결정사항 통지

- 승인 기간 및 결정내용

  : 의료재활급여 대상자 및 의료기관에 결정통지서 통지

5. 의료재활급여 신청 확인서 배부 및 징구

- 최초 의료재활급여 신청시 “의료재활급여 신청 확인서[붙임 1 서식]” 날인 후 청구인 배부 및 수협 보관토록 하며, 배부시 “예산 소진시 급여 정지될 수 있음”을 필히 설명

6. 재활 보조기구 신청

- 요양비용청구서 양식을 활용하여 재활 보조기구 필요 소견 및 내역 신청

Ⅳ 의료재활사업 의료기관 결정 및 정산 등

1. 의료기관 결정

1) 최초 의료기관

- 피재어선원의 최종 주치의 또는 최종 장해진단 결정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결정
- 의료재활사업 협조사항에 따라 산재지정병원 및 어선원보험 지정의료기관내에서 결정 가능
- 대상결정, 기간 결정 등 필요에 따라 의료자문 실시 후 결정

2) 지정 의료기관 변경

- 의료재활급여 대상자가 지정 의료기관 변경이 필요하여 ‘의료재활급여 의료기관 변경신청서(주치의 소견 포함)’를 제출한 경우 심사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변경 결정
- 지정의료기관 변경사유가 생활근거지 변경 및 의료기관 개·폐업인 경우는 주치의 소견 생략 가능

※ 승인기간은 대상자가 실제로 의료기관을 전원한 날을 시작일로 함을 변경 전·후 의료기관에서 중복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3) 2개의 의료기관 지정

- 의료재활급여 대상자가 승인 의료기관 이외에 의료기관을 추가 지정이 필요하여 '의료재활급여 의료기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 결정

· 의료재활급여 대상 증상이 둘이상이고 그중 안과, 비뇨기과, 정신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의 진료가 필요하나 기 승인 의료기관에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

· 인접한 장소(같은 건물이나 일정한 구역을 말함)에서 의과·한의학 지정 의료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진료체계를 이루고 있어 동시에 양방·한방진료가 필요한 경우

※ 양방·한방 동시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재활급여 대상 증상이 1개이더라도 2개의 의료기관을 지정 가능

2. 진료비 등 청구 결정

1) 진료비 등 청구

- 수협으로부터 승인 통지서를 받고 의료재활급여 대상자에게 진료비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에서는 붙임 "의료재활급여 비용 청구서" 양식에 진료비·약제비 내역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수협에 청구

2) 진료비용 등 산정기준

- 의료재활급여의 인정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 기준』에 따른다.
  (이송비에 대하여는 통원 1회 및 입·퇴원 일자 1일 당 2만원 산정)
- 의료재활급여 승인기간 연장신청시 주치의사 소견서 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산정기준' 요양급여 신청서용 진단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 지정의료기관의 요양승인 후 수협에 직접 청구시 기존 '어선원보험 진료비·약제비 청구 및 지급·의뢰' 절차와 동일(원천징수 및 신고 동일)

3) 본인부담 후 청구

- 의료기관의 비협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본인부담 후 진단서 및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 기타 수협이 요구하는 서류 등을 첨부 청구 가능

3. 재활 보조기구 승인

- 신청된 재활보조기구 내역 확인 및 담당자의 환자 면담 실시, 재활보조기구 필요성 및 공인된 재활보조 기구 확인에 대한 자문의(해당과목 전문의) 또는 주치의 1명이상의 자문 확인
- 1명 1회 500만원 이하 지원 요건 확인

4. 의료자문

- 의료재활 사업시행상 어선원의 요양 기간 승인 및 의료기관 변경 등 검토 필요시 수협중앙회 자문의 및 주치의에게 의료자문 의뢰 가능하며 1건당 자문비 150,000원 지급

5. 의료재활급여 지급

- 지급 항목

관) 사업관리비 항) 경비 목) 지급수수료

6. 지정의료기관 관리 및 담당자 교육

- 재활전문병원 운영

: 의료재활 지원 홍보 확대를 위하여 지역별 어선원 재활전문병원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지정 간판 등 제작 지원)

- 의료재활시범사업 정착을 위한 협의 및 교육

※ 의료재활사업 담당자 교육 100만원 이내(반기별)

※ 지급수수료(회의비) 각 지부별 150만원 이내

7. 원직장복귀지원 청구 및 절차

- 원직장복귀지원의 청구 및 절차에 대하여는 의료재활 지원 절차 및 서식을 준용하여 시행하며, 상기 지원 대상 및 지원액을 기준으로 심사·결정한다.

8. 동 사업과 관련하여 매뉴얼상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협중앙회가 정한다.

어선원보험 재활급여 사업시행지침 관련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의료재활급여 신청 확인서

○ 〔별지 제2호 서식〕: 의료재활급여 신청서

○ 〔별지 제3호 서식〕: 의료재활급여 의료기관 변경 신청서

○ 〔별지 제4호 서식〕: 의료재활급여 중지신청서

○ 〔별지 제5호 서식〕: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

○ 〔별지 제6호 서식〕: 의료재활급여 결정통지서

○ 〔별지 제7호 서식〕: 재활급여 비용 지급 결정통지서

○ 〔별지 제8호 서식〕: 의료재활사업 의료자문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no.)

재활급여 신청 확인서

(신청자보관용)

재해어선원명		재 해 일 자	
청구자			
실명번호		장해진단일자 (요양종결일)	

위와 같이 재활급여를 신청하고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며, 2019년 정부예산 소진시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급여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향후 지원이 있을 경우 즉시 수협중앙회에 통지 및 반환을 확약합니다.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인)

절취선

재활급여 신청확인서

(수협보관용)

성 명		재 해 일 자	
실명번호		장해진단일자 (요양종결일)	

위와 같이 재활급여를 신청하고 접수되었음을 확인하며, 2019년 정부예산 소진시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동급여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향후 지원이 있을 경우 즉시 수협중앙회에 통지 및 반환을 확약합니다.

신 청 자 : (인)

확 인 자 : (인)

【별지 제2호 서식】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의료재활급여 신청서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공통	피재어선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재해발생일 : 년 월 일	치유일 : 년 월 일	
		의료기관명	소재지	

대상자 결정	신청 구분	[ ] 최초결정 [ ] 재결정 [ ] 연장 [ ] 재요양 시작 [ ] 재요양 종결 [ ] 증상 추가 [ ] 증상 정정 [ ] 기타	
	신청 기간	[입원] 년 월 일 ~ 년 월 일	
		[통원] 년 월 일 ~ 년 월 일	
	증상명	□□.□□	□□.□□
		□□.□□	□□.□□
	주치의 소견	① 현재 상태(증상) 및 의료재활을 위한 진료 내용(진료·검사 기록부 등 첨부 가능)	
		② 신청 기간 에 대한 의학적 소견기대 효과	
		③ 향후 의료재활 등 관리를 위한 진료지원으로 의학적 기대 효과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선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 수령여부	장려금/지원금 명칭	지원받은 월(청구기간 내 모두)	지원받은 금액(월)
[ ] 없음 [ ] 있음(우측사항 기재)			원
			원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명 (인)
의사면허번호 : 호
전문 과목 : 전문의 : 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공통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지부)장 귀하

결정사항	입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통 원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불인정 또는 요양기간 변경이유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접수	접수일자			결재	담 당		
	접수번호						
	처리기한	10일					

【별지 제3호 서식】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의료재활급여 의료기관 변경신청서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7일

공통	산재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재해발생일 □□□□년 □□월 □□일	치유일 □□□□년 □□월 □□일	
		기존 의료기관명		소재지

의료기관 변경	신청 구분	[ ] 상급종합병원 진료 [ ] 상위등급 의료기관 진료 [ ] 2개의 의료기관 지정 [ ] 생활근거지변경 [ ] 의료기관 개·폐업 [ ] 기타( )		
		변경 의료기관명		소재지
	주치의 소견	▶ 의료재활 등 관리 의료기관 변경사유(**※ 생활근거지변경, 의료기관 개·폐업 사유인 경우 제외**)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의료기관명 (인)		의사면허번호 : 호 전문 과목 : 전문의 : 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지부)장 귀하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관리 증상은 기재된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효기간 동안 관리내용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공단으로부터 변경결정통지서를 받으신 후에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변경 전 의료기관 진료 불가**)

접수	접수일자			결재	담 당		
	접수번호						
	처리기한	7일					

【별지 제4호 서식】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의료재활급여 중지신청서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공통	산재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재해발생일 □□□□년 □□월 □□일		치유일 □□□□년 □□월 □□일	
		의료기관명		소재지	
중지사항	중단 범위	[ ] 의료재활급여 대상 관리 증상 전부 [ ] 의료재활급여 대상 관리 증상 일부 (일부시 중단대상:)			
	중단 사유	[ ] 의료재활급여 관리 중단 [ ] 재요양 시작 [ ] 기타( )			
	투약 여부		투약종결 예정일	년 월 일	
	주치의 소견	▶ 의료재활급여 대상 등 관리 진료지원 중단 사유(**※ 중단사유가 '대상 관리 중단'에 한함**)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의 료 기 관 명 (인) 의사면허번호 : 호 전문 과목 : 전문의 : 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지부)장 귀하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투약중인 의료재활급여 관리대상자가 중지신청할 경우 투약처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부 사본 등 제출
2. 의료재활급여 관리 증상과 동일한 상병으로 재요양 신청하는 경우 중지신청서 제출 생략가능

접수	접수일자			결재	담 당		
	접수번호						
	처리기한	10일					

【별지제5호서식】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재활급여 비용 청구서

※ 공통란은 모두 기재하시고, 해당 신청란에 [√]하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10일

공통	피재어선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재해발생일 □□□□년 □□월 □□일	치유일 □□□□년 □□월 □□일	
		의료기관명	소재지	

청구사항	의료재활급여 관리 증 상 명	1. 2. 3. 4.		
	청구사유	[ ] 의료재활 [ ] 재활보조기구( ) [ ] 이송비 [ ] 원직장복귀지원금 [ ] 기타( )		
	재활보조기구 필요 소견 및 내역(청구사유)			
	의료기관 (약국)명			
	청구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년 월 일~ 년 월 일( )일간	입원 (일), 통원 (일) 입원 (일), 통원 (일)	
	청구금액		수령자명	
	거래은행		계좌번호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자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의 료 기 관 명 (인)
의사면허번호 : 호
전문 과목 : 전문의 : 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지부)장 귀하

공통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지부)장 귀하**

※ 구비서류 : 진료비·약제비 내역서 및 영수증, 진단서(소견서), 기타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접수	접수일자			결재	담 당		
	접수번호						
	처리기한	10일					

【별지 제6호 서식】

받는사람 귀하

주 소

□□□-□□□

□ 의료재활급여 제도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어선원에게 지정의료기관에서 그 의료재활급여 대상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부서명 : 담당자 : ☎ -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의료재활급여 결정통지서

대상자 (근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재 해 일			치 유 일	
	발 급 번 호			장 해 등 급	
	예 방 관 리 증 상				
	승 인 기 간	입 원			
		통 원			

결정 사항

구분		의료기관코드	의료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 최초결정					
□ 재결정					
□ 변경	전				
	후				
통지사항					

위와 같이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지부)장 인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의료재활급여 증상은 기재된 지정 의료기관에서 승인기간 동안 관리내용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의료재활급여는 해당 년도 정부예산 소진시 급여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 수협으로부터 결정통지서를 받으신 후에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변경 전 의료기관 진료 불가).
4. 약국에서 약제를 받기 위해서는 결정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5. 대상자에게 약제 등의 투여에 관한 처방전을 발행할 때에는 개인질병에 대한 약제와 합병증 등 의료재활급여 관리에 필요한 약제의 처방전을 구분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6. 이미 합병증 등 의료재활급여 대상 관리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의료기관은 의료재활급여 대상 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받는사람 귀하

주 소

□□□-□□□`

□ 의료재활급여 제도

직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어선원 중에서 의료재활급여 대상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어선원에게 지정의료기관에서 그 의료재활급여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지부(지역본부)명 : ☎ -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재활급여 비용 지급결정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선 박 명		재 해 일 자	
주 소	□□□-□□□ ☎		
발 급 번 호		대 상 증 상	

결 정 사 항

□ 의료재활급여 등의 증상관리비용 지급 내역

① 구분 : (진료비, 약제비,이송비,재활보조기구,원직장복귀지원금)

② 지급여부 : (지급 · 부지급)

③ 수령인 :

④ 지급결정액 :

⑤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계좌번호는 앞번호 3자리만 표시) :

⑥ 결정내용(지급기간, 산출식 포함) :

⑦ 부지급 사유 :

⑧ 기타 통지사항 :

위와 같이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협중앙회 지역본부(지부)장 인

※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합병증 등의 증상은 기재된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효기간 동안 관리내용 범위 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의료재활급여는 해당 년도 정부예산 소진시 급여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3. 공단으로부터 변경결정통지서를 받으신 후에 변경된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합니다**(변경 전 의료기관 진료 불가)**.

【별지 제8호 서식】

의료재활사업 의료자문 대장

◯◯ 지부

연번	사고 접수 번호	피재 어선원명	수신처		문서 번호	처리일자		
			병원명	자문 의명		시행 일자	회신문 접수일	자문료 입금일자

33 어업인 안전보험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황통성 사무관 김태환	044-200-5460 044-200-5471
수협중앙회	정책보험부	팀 장 최정인 과 장 윤현수	02-2240-2980 02-2240-294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복귀 촉진

2.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4조

> ①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인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의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	‘16	‘17	‘18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수(단위:명)	22,449	-	22,121	22,911		연말	어업인안전보험 가입자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773	1,773	1,773	1,773
- 국 비	1,773	1,773	1,773	1,773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 대상자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2. 제외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 등 제외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 어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의 50%(이상, 단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보험료의 70%를 지원)
  * 보험료(100%) = 순보험료(85%) + 부가보험료(15%)
-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의 납입보험료 지원

○ 지원기준 및 한도

-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5. 기타

○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어업인안전보험 약관」 등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1.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계획(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을 수립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시달

- 약정기간,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기타 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약정 체결

*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보험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재약정 체결

수협중앙회

○ 세부시행계획(보험요율, 보험약관 등) 수립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판매자 교육 실시

2. 보험 가입

보험가입자(어업인)

○ 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는 보험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장내용 등 약관을 확인한 후 청약서를 작성하고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수협중앙회

○ 약관의 설명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작업 및 안전재해의 범위, 보험금 지급기준 등 보장내용에 관한 약관의 내용을 설명

○ 청약서의 확인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작성한 청약서의 내용을 확인
- 국고 지원 제한대상에 해당할 경우 제도의 취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발생 방지

○ 보험계약 체결
- 국고 지원분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한 후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가입자에게 교부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자는 국고보조금 지원 제외

3. 보험금 지급

보험가입자(어업인)

○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 신청
- 재해 발생 시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업자에게 사고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금 지급 신청

수협중앙회

○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다만,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지급)

4. 사업비 배정 및 집행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회계법인 검증 등) 실시한 후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수협중앙회

○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 집행

- 보험가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정산

-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2개월 내에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회계법인검증)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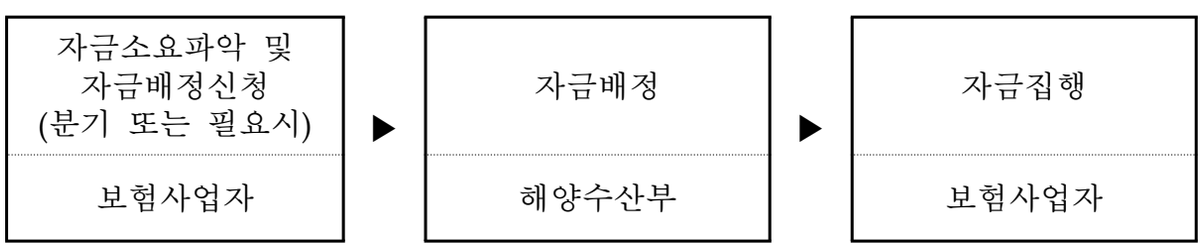

5.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수협중앙회

○ 보험 판매자 교육 실시

- 가입절차,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 절차, 국고 지원내역 등을 보험판매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 자체 점검 실시(수시)

- 보험판매자(지역 조합)의 어업인안전보험 판매실태를 확인(매월 정기보고)

해양수산부

○ 보험 판매 실태와 사후관리사항 등을 점검

○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점검대상 : 보험판매자(지역 수협)
- 점검일정 : 연간 1회 이상
- 점 검 반 : 해양수산부(주관), 보험사업자(수협 등)
- 점검내용 : 교육 실시 여부, 보조금 집행현황, 보험가입 청약서 등 확인

《제재》

수협중앙회

○ 보험계약 및 보조금 집행결과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때
-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항 미이행 등

해양수산부

○ 보험계약, 보조금 집행 및 보험금 집행 등에 있어서 부당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해당 직원 및 기관의 징계, 해당 계약자(어업인)의 계약 취소 등에 대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통보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매년 말 집행 종료 후 익년 1월 보험사업자의 어업인 안전보험 정산결과 보고를 토대로 측정

- 주요 성과지표 :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어업인 수(명)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원 칙

○ 어업인 안전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보험가입 어업인 수(명)를 평가하여 가입률 제고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평가기간 : ’20. 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보험사업자

○ 평가기준 : 보험 가입 어업인 수(명), 보조금 집행현황 등

다. 사업평가 실시 절차

○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보험가입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년 2월말까지)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을 토대로 개선사항을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부진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환 류》

○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도모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34 어업인삶의질향상

①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황통성 서기관 최창석 주무관 송현주	044-200-5460 044-200-5461 044-200-5462
지자체(시·도, 시·군·구)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관련부서(수산과 등)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낙도* 등 어업인들이 작업 중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 탈의실, 기자재 보관 등의 기능을 갖춘 다목적 용도의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함으로서 어작업의 효율성 도모 및 어업인 안전·위생 증진 도모

*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도서(섬) 또는 8㎞미만 떨어진 도서 중 정기여객선이 1일 3회 이하로 운항하되 연육교가 없는 도서(섬)

2. 근거 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8. 그 밖에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안전쉼터 조성 개소수	17	-	-	20	20	’20.3	지자체 사업 실적 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040**	**2,400**	**2,400**	**2,400**
- 국 비(50%)	1,020	1,200	1,200	1,200
- 지방비(50%)	1,200	1,200	1,200	1,20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어업인 안전쉼터는 정주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을 우선 지원하되, 쉼터 조성 후 사후관리를 위해 운영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거나 구성 계획이 있는 지역에 조성

≪정주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 우선 지원 순위≫

① 육지부(연육도서인 경우 연육도서) 선착장에서 도서(섬)지역 선착장까지 거리가 50km 이상인 도서

② 마을에 휴게공간(예, 어촌계 회관, 복지회관 등)이 없는 도서

③ 어업종사자가 10인 이상인 도서

④ 기타 조건불리 도서

※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지역 어촌계와 연계하여 어선주협의회 등 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에 조성 가능

○ (선정제외)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3. 지원대상

○ 낙도지역 어업인들이 작업 중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대피소, 탈의실, 기자재 보관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에 한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실시설계, 건축 및 시공 등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기준 및 한도

- 어업인 안전쉼터 17개소 조성/ 1개소당 사업비 1.2억원 총 20.4억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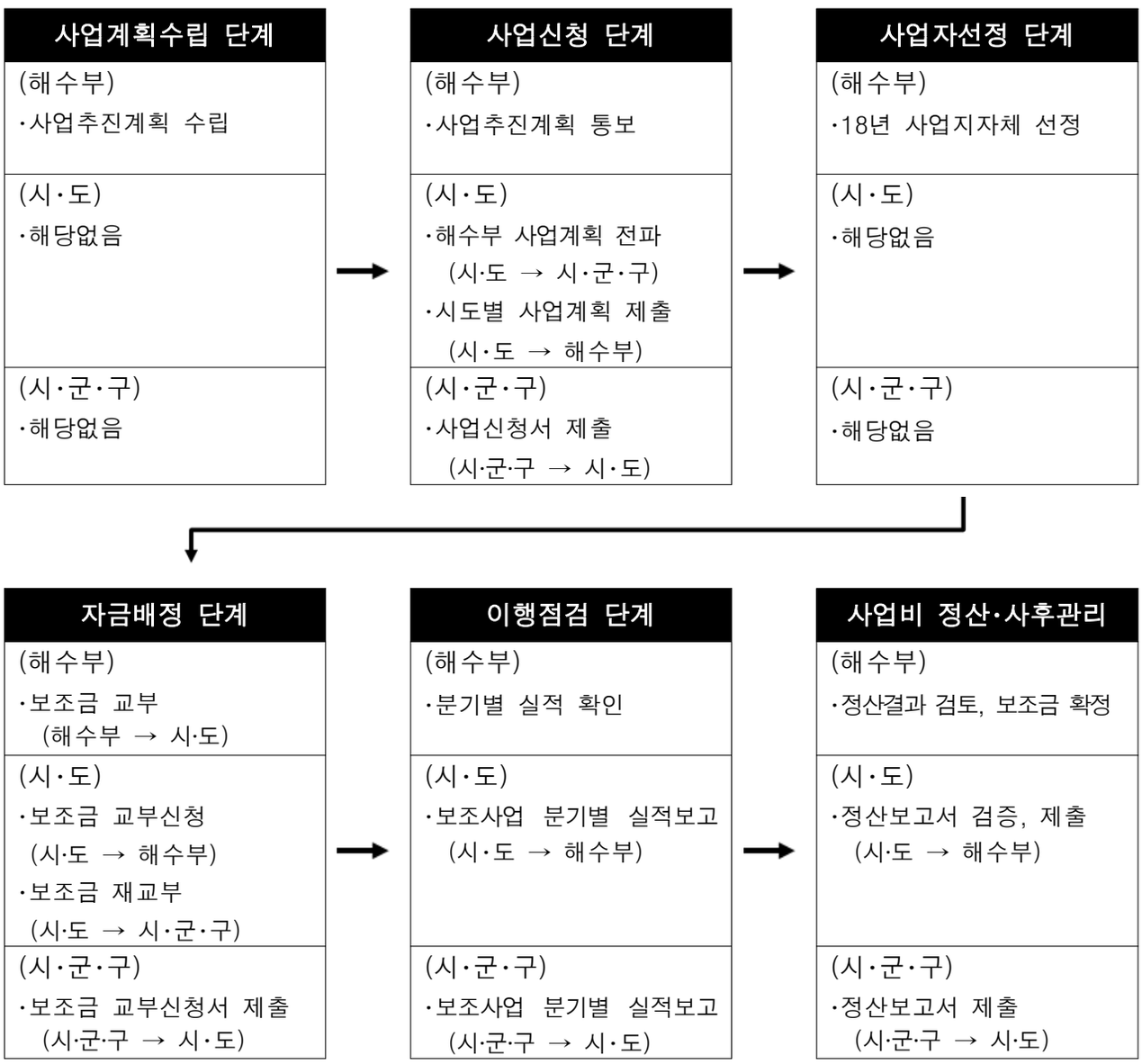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사업지침,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 사업추진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소득복지과)

○ 공고시기 : 지자체 대상 수요 조사(예산 편성시)

○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시·군·구 → 시·도 →해수부)

○ 구비서류 : 지방비 및 사업 부지 확보 계획 등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20년도 사업 예산확보 등을 위해 ’19년도에 수요파악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사업대상자로 한다.

○ ‘20년도 잔여 사업물량이 있을 경우 추가 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 지자체 선정

4. 세부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도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10일 이내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지방비 및 부지확보 여부, 주민동의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지자체

○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지자체

○ 보조사업 대상 시·도는 분기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해수부에 제출.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전에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지자체

○ 보조사업 대상 시·도는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또는 회계연도 종료시 당해연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세부내역별로 구분한 세부집행내역서를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지자체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 시·도는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며,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어촌계 등 사용자

□ 어업인 안전쉼터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어업인 안전쉼터는 마을공동체 협의에 따라 시설 유지관리 조직*(가칭 어업인 안전쉼터 관리위원회)을 고안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함

* 어촌계 또는 마을(청년회, 노인회, 부녀회 등), 필요시 인근 도서의 어촌계, 어촌계나 마을에서 운영하는 주식회사·사업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수협 등 관계된 단체의 협조를 얻어 운영·관리할 수 있는 조직 구성

〈어업인 안전쉼터 관리체계〉

○ 어업인 안전쉼터 관리위원회를 통해 운영 규약 제정·이행을 하여야 함

·어업인 안전쉼터 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용자 선정, 유지관리비용, 시설물 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생활규약 등을 마련하여야 함

·어업인 안전 쉼터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관리위원회에서 대상자, 금액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금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

·어촌계, 어업인 및 마을주민들은 어업인 안전 쉼터의 목적 외 사용, 사유화 등에 유의하여 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외부인 대여 등을 통한 이익사업 불가, 어업인 편의시설로만 사용하여야 함

○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때는 사전에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어업인 안전쉼터 안전관리

○ 운영 관리위원회를 통해 어업인 안전쉼터 안전시설 관리 규약 등을 마련하여야 함

·관리위원회는 쉼터의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자체에 보고하여야 함

○ 관리위원회는 이용자에게 건강상의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전기, 가스 사용 등에 관하여 매일 점검을 시행하여야 함

○ 관리위원회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감독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장·군수는 관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3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0년도 예산 신청(4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0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추진실적보고서(연도 분기)

1. 사 업 명 : ○○시·도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추진내용(개소별로 단계별 추진내용 작성)

○ 설계 용역 :

○ 공사 발주 :

○ 준공 :

5. 예산집행실적(개소별로 작성)

(단위 : 원)

도서명 (어촌계명)	사업량	계 획			분기말 집행실적(누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국고보조	지방비	계
예)백령도 (진촌)	1	50,000,000	50,000,000	100,000,000	10,000,000	10,000,000	20,000,000
예)흑산도 (하태)	1	50,000,000	50,000,000	100,000,000	50,000,000	50,000,000	100,000,000
계							

도서명 (어촌계명)	착공일	준공일	공정(%)	부진원인 및 대책
예)백령도 (진촌)	-	-	10	- 설계용역중으로 '19.7월 착공하여 12월 완공 예정
예)흑산도 (하태)	2019.4.1	2019.9.30	100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작성
2. 사업추진내용은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부진원인과 해결방안을 기재

붙임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조성 가이드라인(안)**

Ⅰ. 목 적

○ 17개소의 낙도에 조성하는 '어업인 안전쉼터'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건축될 쉼터가 통일된 형태를 갖으면서도 장소와 그 지역사회에 적합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면적 : 84.00㎡내외 (25평 기준) / 주요기능 : 대피소, 탈의실, 세면장 등

Ⅱ. 디자인 내용

1. 기능적 디자인

○ 어업인들의 조업 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공간을 적절히 계획

○ 공간의 활용을 고려하여 화장실, 샤워/탈의실을 한 공간에 계획

2. 상징적 디자인

○ 쉼터의 입구 부분을 통일된 형태로 디자인하여 '쉼터'로의 상징성을 부여

○ 바다의 수평선 위에 솟아 있는 섬과 쉼터라는 집의 이미지를 형상화 한 형태로 조성

3. 다양한 디자인

○ 지역여건 및 주민의 선호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3가지 디자인 유형 제시

○ 공간을 집약해서 구성한 집중형, 기능에 따라 분리하여 구성한 분산형, 한옥 구성 요소를 도입하여 실내, 실외의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한 중정형을 제안

○ 여러 사람이 작업 및 모이는 대피소와 부속 기능실(탈의실, 세면장)의 천정고를 구별하고 이를 건물에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구성

4. 친환경 디자인

○ 자연환기를 유도하는 창호와 입구 부분에 자연 친화적인 재료인 목재 사용

Ⅲ. 유형별 평면도 및 모델

1. 집중형 (공간 집약형)

○ 공간 중심에 대피소 (어구 보관 및 손질 창고)를 두어 내부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도록 계획

○ 출입구 부근에 작업 중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별도 계획

○ 개별 샤워실로 구성하고 내부에서 탈의 할 수 있도록 계획

< 평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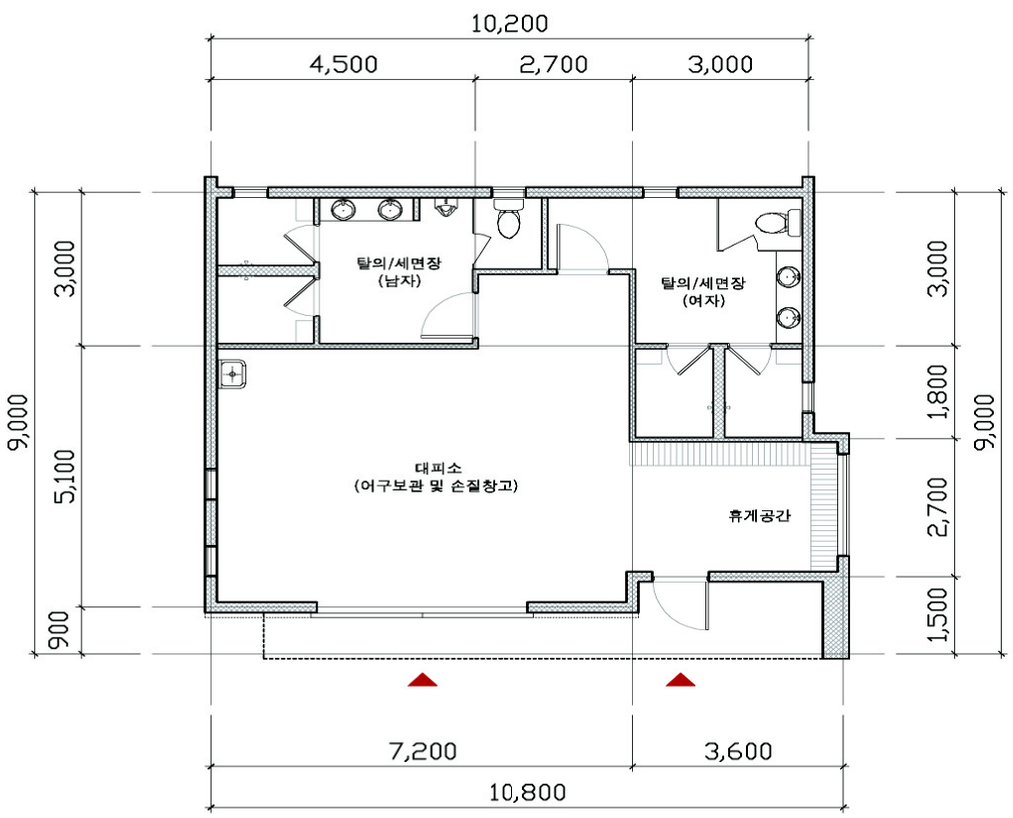

< 모델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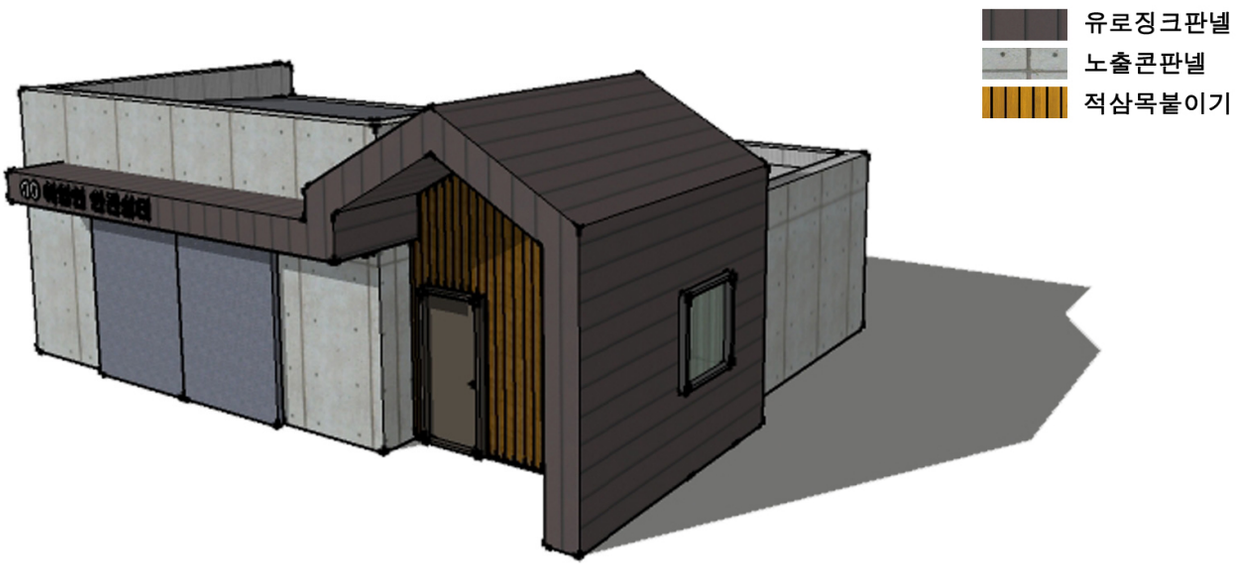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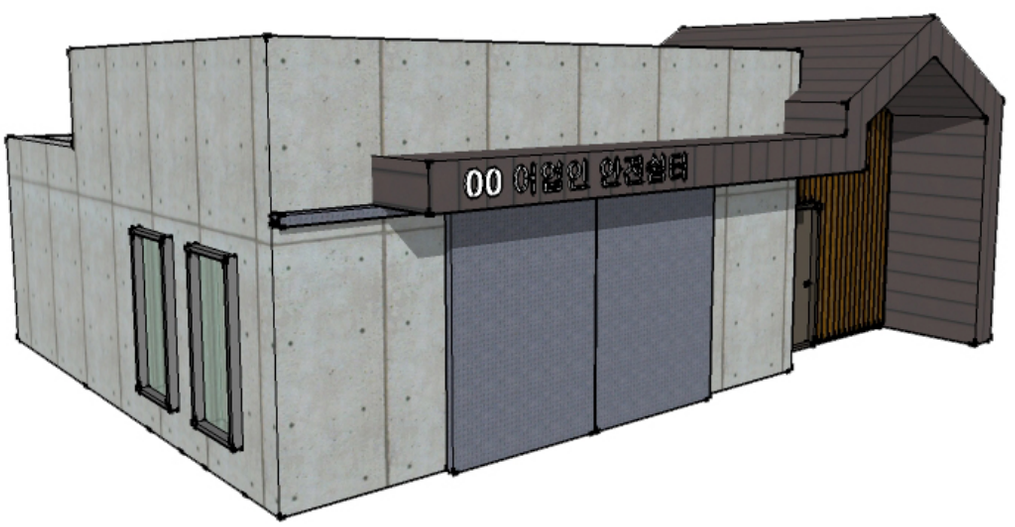

2. 분산형 (기능 분리형)

○ 주된 기능(대피소)과 부속기능(탈의실, 세면장 등)을 분리하여 계획

○ 두 기능 사이에 휴게 공간을 계획

○ 개별 샤워실로 구성하고 내부에서 탈의 할 수 있도록 계획

< 평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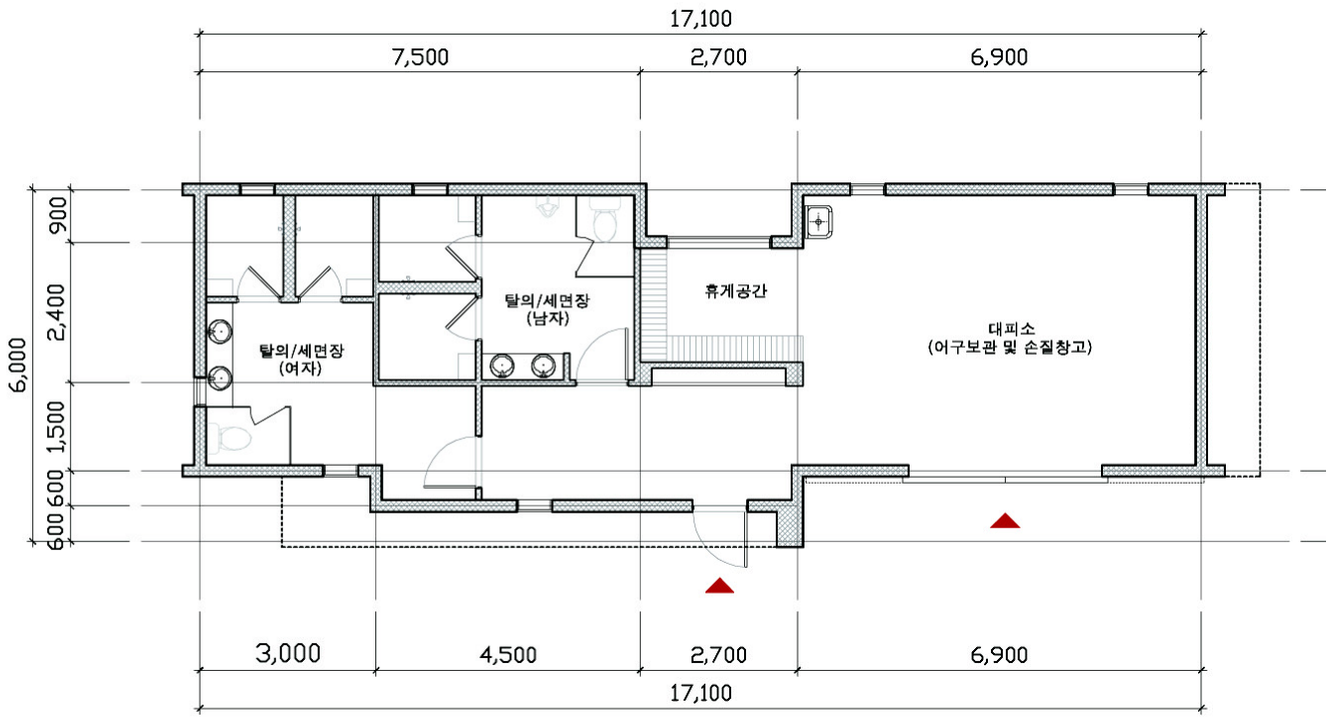

< 모델링 >

유로징크판넬
프리메탈판넬
적삼목붙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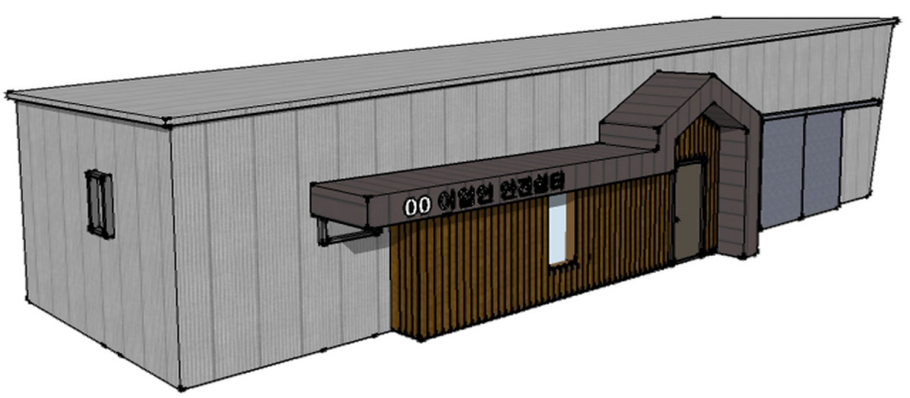

3. 중정형 (마당 독립형)

○ 중앙에 마당을 두고 대피소(어구보관 및 손질창고)를 단일 건물로 구성하고, 탈의실, 세면장을 남녀 구분하여 배치

○ 마당은 대피소(어구보관 및 손질창고)의 확장 공간으로 사용하며 어업인 들의 소통의 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

< 평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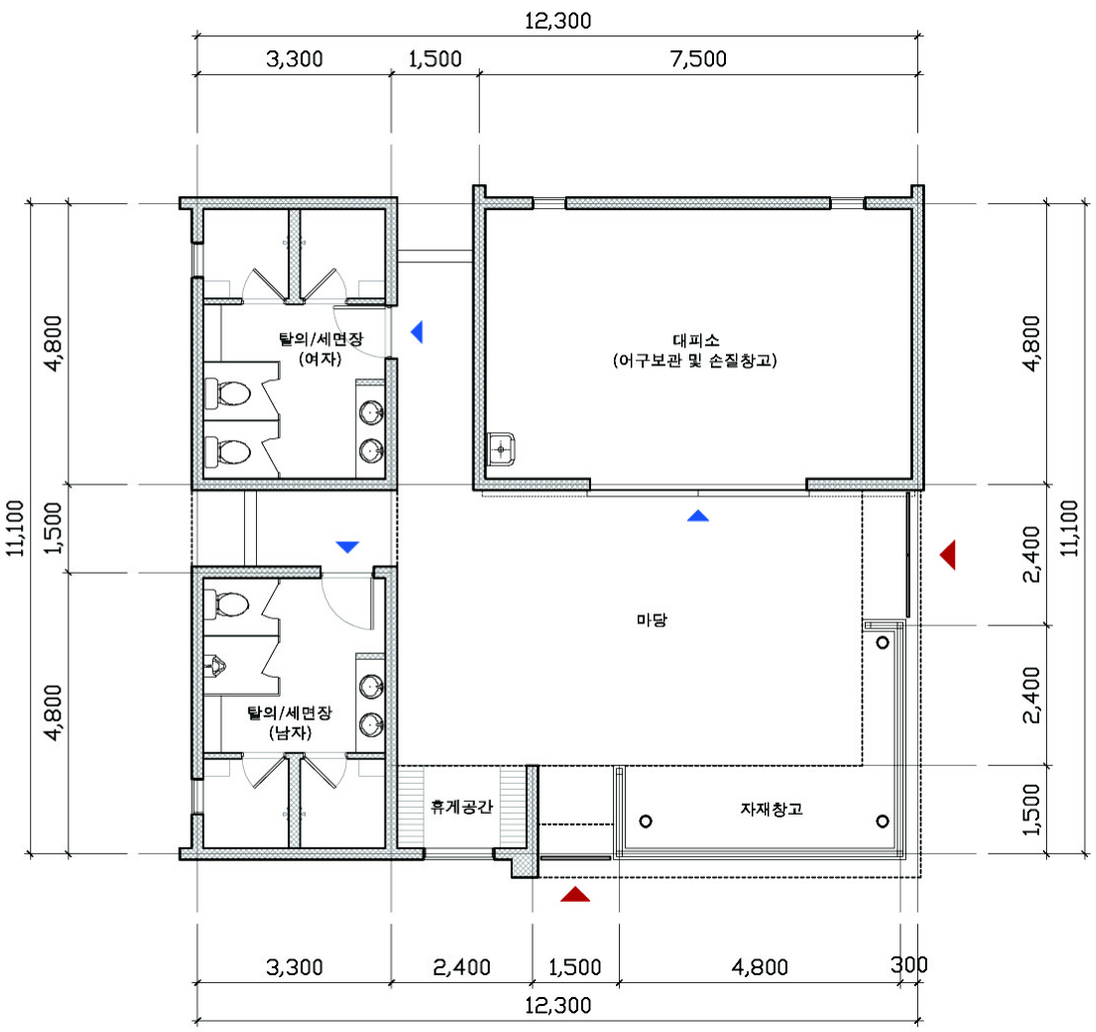

< 모델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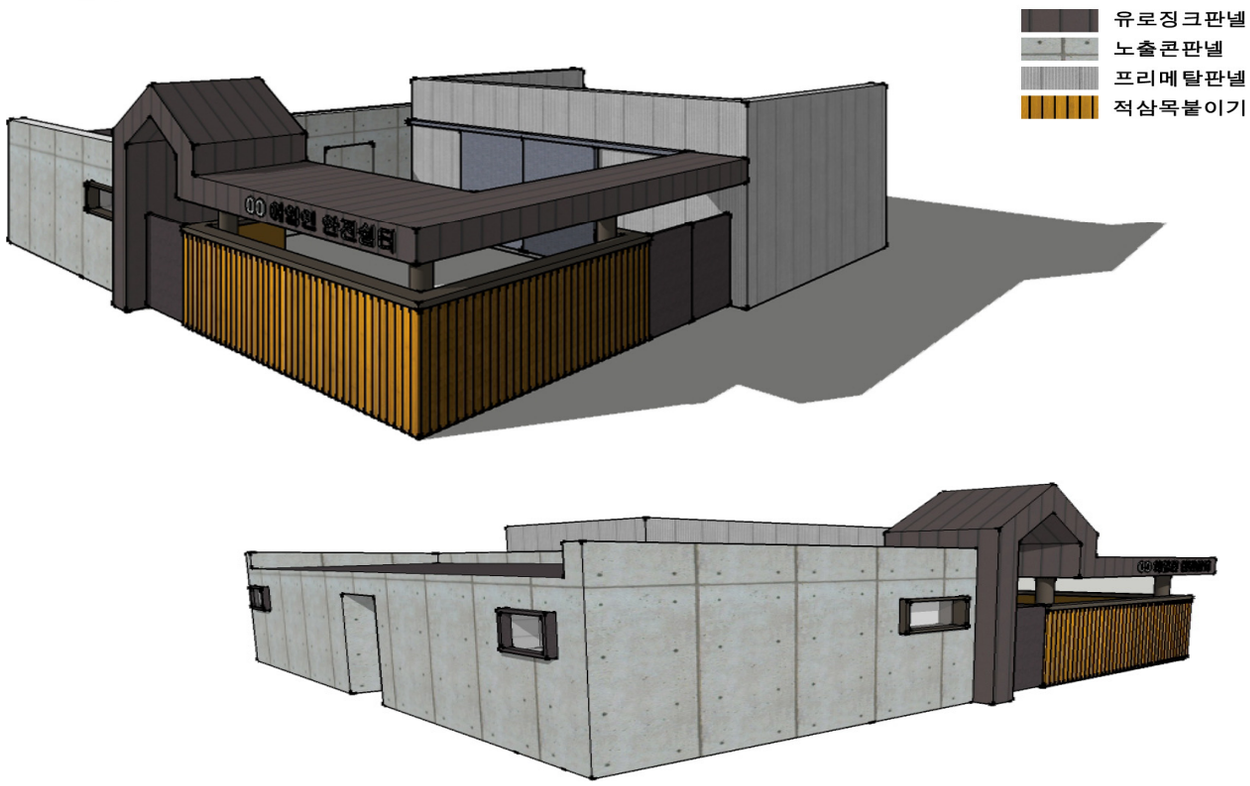

Ⅳ. 유형별 특징 비교

구분	집중형	분산형	중정형
대지 점유면적	낮다	중간	높다
공간의 다양성	낮다	중간	높다
경제성	높다	중간	낮다

Ⅴ. 적용하기

○ 제안하는 3가지 디자인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출입구 부분의 상징적인 형태와 재료는 본 가이드라인의 디자인을 유지해야 하며, 공간적 구성방법과 재료사용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자체별로 변화시켜 운영할 수 있음

- 집중형 적용 장소 : 어항 단지 내 부지가 정방형의 협소한 곳
- 분산형 적용 장소 : 어항 단지 내 부지가 장방형의 협소한 곳
- 중정형 적용 장소 : 어항 단지 내 부지에 여유가 있는 곳

② 어업도우미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황통성 사무관 정재훈	044-200-5460 044-200-54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 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제1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어업도우미 지원사업 계획수량 달성 및 수혜어가 만족도 제고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년	15년	16년	17년		
어업도우미 지원율(%)	50%	-	0.4	6.2	22.3	익년1월	- 어업도우미지원 실적 보고서
어업도우미 수혜어가 만족도(점)	80.0	-	-	-	-	익년1월	- 지원어가의 10%이상 조사(5점 척도) - 지자체 행정조사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490**	**490**	**490**	**490**
- 국 비	245	245	245	245
- 지방비	147	147	147	147
- 자부담	98	98	98	98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인

2. 지원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아래(1～5)와 같음

* 어업인 : 수산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어업인

* 우선지원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1)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2)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입원 중이나 퇴원 후 익일 2일 이내 신청 가능)

3)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3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경우

5)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 집행기관 기준)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교육

<어업인 교육과정(예시)>

- 해양수산부(해양수산인재개발원 포함) 주관 교육(여성어업인 포럼 포함)
- 지자체 수산업경영인 교육
- 해양수산부 공모 어업인교육 : 한수연 수산업경영인 교육, 수협 어촌개발리더 및 다문화가정교육, 한여련 여성어업인교육, 해양수산신지식인 학술대회, 한국어촌어항협회 귀어귀촌교육, 한국수산경영학회 학술대회 등

<어업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 어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1주일 이상 진단·입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이 어업을 대신 할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인건비)

* 가사일이나 어장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한 어업도우미는 지원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 : 국고 50%(최대 50,000원/일), 지방비 30%(최대 30,000원/일), 이용어가 자부담 20%

○ 지원금액 : 영어를 대행한 어업도우미에게 1일 100,000원(국고 50,000원) 이내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 어업도우미 임금이 10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50,000원(지방비 30,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0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일수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 이내,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30일씩 2회 사용 가능)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수 이내) 지원가능(30인 1일 또는 1인 30일)

<상황별 지원일수>

- 사고를 당한 경우 진단기한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 통원·입원·교육은 통원·입원·교육일에 한해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및 자금배정 단계	사업시행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통보 ·예산 가내시 및 내시	(해수부) ·시·도 사업추진계획 검토 승인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시·도, 시군구) ·사업수요 신청	(시·도,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시·도, 시군구) ·세부시행기준 마련 ·인력지원단 구성 ·지원대상자 선정 ·어업도우미 선정 ·어업도우미 임금 지급
(어가) ·해당없음	(어가) ·해당없음	(어가) ·어업도우미 신청 ·이용어가 부담금 사전납부 ·어업도우미 임금 청구 확인 (어업도우미) ·임금 청구

이행점검 단계	실적보고 및 사후관리
(해수부) ·집행점검 ·성과점검	(해수부) ·실적확인 검토 · 보조금 확정
(시·도, 시군구) ·사업추진상황 보고 ·성과보고서 제출	(시·도) ·실적보고서 제출 (시·도 → 해수부)
(어가) ·해당없음	(어가) ·해당없음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시·도별 사업규모) 계획 수립

- 시·도별 사업수요 및 예산 집행률 등 고려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매년 12월말)

○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시·도

○ 사업수요 제출

- 최종사업집행기관(시도, 시군구)의 수요 취합

* 해양수산부 별도요청(문서)에 따라 이행

2. 사업신청 및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송금

시·도

○ 시·도지사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추진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3. 사업시행 단계

시·도

○ 세부시행 기준 등 마련

-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어가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기준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신청어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2) 어업도우미 선정기준

  3) 어업도우미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4) 어업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5)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어업도우미 인력지원단 구성

어업도우미 임무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가의 영어작업을 대행

- 관내 어가의 어업도우미 이용신청에 대비하여, 지역내·외 영어작업 가능 유휴인력, 어업도우미로 활동한 자 및 가능한 자 등을 적극 확보하여 「어업도우미 인력지원단」 인력풀을 구성·관리하며, 신청어가가 추천한 어업도우미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 어업도우미 신청어가가 어업도우미 추천할 경우 어업도우미 선정제외대상이 아닌 경우 우선적으로 선정 가능

○ 사업추진 홍보 및 교육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포스터 및 리플렛 등을 활용한 사업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어업도우미 교육을 시도 또는 시군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 지원대상자 선정

- 시·도지사는 「어업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어가와 파견될 어업도우미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선정결과 통보시에 신청어가명, 주소, 연락처, 작업장소, 작업종류, 작업량, 어업도우미 파견기간(작업일수), 작업시간, 어업도우미 임금과

어가부담액, 파견될 어업도우미의 주소와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청어가와 어업도우미가 상호 연락하여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여야 함

- 어업도우미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 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 작업 1인당 1일 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가 산정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어업도우미 사용기간 동안 평균 8시간 작업 기준이 충족될 경우 1일 기준 임금으로 지급 가능

○ 어업도우미 선정

- 「어업도우미 인력지원단원」중에서 신청어가의 작업내용과 현지 확인결과를 참고하여 영어작업을 원활히 대행할 수 있는 자를 어업도우미로 선정
- 영어작업의 원활한 대행을 위해 신청어가가 어업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추천받은 자를 어업도우미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어업도우미 선정 제외대상> ○ 어업도우미 신청자(이용어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이용어가 부담금 사전 납입 조치

- 어업도우미 선정 결과에 따라 이용어가가 부담금을 사전납부 받아야 하며, 사전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어업도우미 파견 종료 시까지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어업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어업도우미 영어작업 대행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정한 경우 어업도우미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어업도우미 임금 지급

- 어업도우미의 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어작업 대행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금에 대한 국고 및 지방비 부담금과 이용어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어업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어가

○ 어업도우미 이용신청

- 어업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어가는 「어업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1)를 첨부하여 거주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며 입원 등 직접 방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신청 가능

* 전화신청 시는 시·도 업무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제출

○ 신청 및 이용 시기

- (입원시)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가료 기간) 이내 / (진단시) 진단기간 내

* 가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도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영어활동 가능여부 판단

○ 이용어가 부담금 사전 납부

- 시도지사로부터 지원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은 경우 이용어가는 어업도우미 파견 전에 지자체가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자체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다만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사후납부(어업도우미 파견 종료시까지는 반드시 납부) 가능

* "3. 사업시행단계 세부시행기준 등 마련"을 참고하여 사업시행 시·도에서 자체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어가 부담금 납부방법 기준 마련 가능

○ 어업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어업도우미 영어작업 대행 적정여부를 본인 또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고, 부적정한 경우에는 시·도에 어업도우미 교체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 어업도우미의 임금 청구 확인

- 어업도우미로부터 영어작업 대행에 따른 어업도우미 임금청구를 위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영어대행 일수 등 내용이 적정한 경우 확인하여야 한다.

어업도우미

○ 어업도우미 임금 청구

- 이용어가에 대한 작업이 종료된 경우, 해당어가 어업대행 최초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경우(이용어가에 대한 기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미 청구된 어업대행 첫째날을 기준으로 함)에는 「어업도우미 임금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어가의 확인을 받아 소관 시·도지사에게 제출

4. 이행점검 단계

《사업평가 및 환류》

해양수산부

○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시·도의 사업성과 및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배정에 반영한다.

* 평가대상사업 및 내용 : ① 예산 집행율, ② 이용어가 만족도

시·도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어업도우미 사업추진 상황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실적보고

해양수산부

○ 시·도의 실적보고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확정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도

○ 회계연도 종료시 익년 1월 10일까지 어업도우미 성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 및 실적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6. 사후관리 등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

시·도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부당 수혜자 예>
○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어업도우미를 이용한 어가
○ 어업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를 위한 행정사항 협조: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시 행정사항 협조

○ 부당 수혜자에 대한 조치

- 어업도우미를 부당하게 이용한 어가 및 해당 어업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는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지 제1호 서식]

20ㅇㅇ년도 어업도우미 사업계획서

○ 시도명 :

○ 사업규모

(단위 : 일, 천원)

사업시행 주체	지원일수	예산액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담	
시·군·구						
계						

* 사업시행주체 : 최종 사업집행기관명

* 지원일수 = 예산액(계)/ 100,000원

○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어업도우미 지원율(%)		-	-	-	-	익년1월	- 지원 인·일 - 지자체 행정조사
어업도우미 수혜어가 만족도(점)		-	-	-	-	익년1월	- 수혜어가의 10%이상 조사 (5점 척도) - 지자체 행정조사

[별지 제2호 서식]

어업도우미 이용신청서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성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
번호</td><td></td></tr>
<tr><td rowspan="2">주 소</td><td colspan="2" rowspan="2"></td><td>전화번호</td><td></td></tr>
<tr><td>핸드폰</td><td></td></tr>
<tr><td rowspan="5">어가
도우미
신청
기재
사항</td><td>사고·질병
발생일</td><td colspan="2"></td><td>사고질병
내용</td><td>어업작업사고, 교통사고
기타사고, 질병</td></tr>
<tr><td>어업분야
(해당에 ○)</td><td colspan="2">맨손어업, 어선어업,
내수면양식, 해면양식, 기타</td><td>작업장소</td><td></td></tr>
<tr><td>신청일수</td><td colspan="2"></td><td>희망시기
(일자)</td><td></td></tr>
<tr><td>작업요청
구체적
내용,
작업량 등</td><td colspan="4"></td></tr>
<tr><td>지원 희망
단가(1일)</td><td colspan="4">계 :　　원
* 산출근거 : (국비)　　(지방비)　　(자담)</td></tr>
<tr><td rowspan="2">도우미
내 역
(이용
어가가
추천시
신청인
기재)</td><td>성 명</td><td colspan="2"></td><td>주민번호</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2"></td><td>도우미
전화번호</td><td></td></tr>
</table>

○ 상기와 같이 어업도우미를 신청합니다.

○ 해양수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어업도우미 신청 구비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 1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어업도우미 수혜자용)

어업도우미지원 사업의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어업도우미 사업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ㅇ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ㅇ 기타 어업도우미 이용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ㅇ 개인식별정보 외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해양수산부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어업도우미 사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정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교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해양수산부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ㅇ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제공 - 해양수산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및 사업 이용신청서 항목
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서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어업도우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별지 제3호 서식]

어업도우미 임금청구서

신청인 (도우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대리인 (신청인과 관계, 성명 및 전화번호)			
수혜어가 (도움받은 어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어업도우미 활동사항

영어 대행일자	어업분야	작업장소	작업내용/작업량/작업시간	수혜자 확인 (서명)

※ 일별 어업도우미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 바랍니다.

임금청구	금 원 영어대행 일자(일수) : ※ 산출근거 : 1일 임금 (원)			
	입금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어업도우미 임금을 청구하며,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수령금 반납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어업도우미 신청인(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20ㅇㅇ년 어업도우미 사업추진상황 보고서(분기보고)

○ 사업추진현황

(단위 : 어가, 인·일, 원)

사업추진주체	예산액						집행액					
	지원어가수	지원일수	계	국비	지방비	자담	지원어가수	지원일수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 사업시행주체 : 최종 사업집행기관명

** 사업추진 중인 사업 간단히 작성

○ 추진 중인 사업

사업추진주체	지원어가수	지원일수	추진 완료 예정일
계			

[별지 제5호 서식】

20ㅇㅇ년 어업도우미 성과 보고서

ㅇ 수혜어가 만족도

- 만족도 점수 : 점

<어업도우미 수혜어가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명)

어업도우미 수혜어가 만족도 조사	수혜자			만족도 측정(명)																									
					이용편의					지원시기					도우미수준					도움정도					대가수준				
	계	남	여	측정인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계																													
00군																													

- 수혜어가의 10%이상을 대상으로 조사

<만족도 점수 계산식>

- 이용편의 : ([매우만족 표현자수/측정인원]) × 100점 + ([만족 표현자수/측정인원]) × 75점 + ([보통 표현자수/측정인원]) × 50점 + ([미흡 표현자수/측정인원]) × 25점 = ㅇㅇ점
- 지원시기, 도우미수준, 도움정도, 대가수준 : 상동
- 만족도 점수 : (이용편의 점수 + 지원시기 점수 + 도우미 수준 점수 + 도움정도 점수 + 대가수준 점수)/ 5(항목수) = ㅇㅇ점

[별지 제6호 서식]

20ㅇㅇ년 어업도우미 실적보고서

ㅇ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어가, 인·일, 원)

사업추진주체	예산액						집행액					
	지원어가수	지원일수	계	국비	지방비	자담	지원어가수	지원일수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 사업시행주체 : 최종 사업집행기관명

ㅇ 사업 이용 현황(사유)

사업추진주체	임신·출산	사고	질병	교육	기타
계					

○ 수혜어가 통계자료

(단위 : 명)

사업 추진 주체	수혜어가 현황																	
	수혜 어가 성별[1]			수혜어가 출신국적			어가 수혜자 연령[3]						어업분야					
	계	남	여	계	내국인	외국인[2]	계	30대미만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계	맨손어업	어선어업	내수면양식	해수면양식	기타
계																		

1) 수혜어가 성별분류 : 1어가에서 남녀 모두 이용 시 이용일수가 많은 성으로 분류

2) 외국인 분류 : 국제결혼 등으로 이주한 어업인이 포함된 어가

3) 어가 수혜자 연령 : 수혜자 가 2인 이상인 경우 이용일수가 많은 자를 기준으로 함

③ 가사도우미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황통성 사무관 정재훈	044-200-5460 044-200-54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업인 및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제1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복지 증진

성과지표	2018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3년	14년	15년	16년		
가사도우미 지원율(%)	50	-	-	-	-	익년1월	가사도우미 지원 실적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00**	**100**	**100**	**100**
- 국 비	70	70	70	70
- 지방비	-	-	-	-
- 자부담	30	30	30	3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어업인 가구 및 어촌지역 거주자 또는 시설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가. 사업자격 : 수협중앙회(지역수협 포함)

나. 사업운영(지원 대상자)

○ 아래에 해당하는 어업인 가구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아래에 해당하는 어촌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읍·면지역 경로당 및 경로당과 유사한 성격의 공동시설

* 어촌거주 지원대상 가구는 어업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용어해설>

1) "어업인" 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어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읍·면의 전지역
- "읍·면의 전지역" 이외 <별첨 1>에서 정하는 지역

다. 선정 제외대상 : 해당 없음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 활동비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 : 국고 70%(8,400원/회), 수협 자부담 30%(3,600원/회)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 활동 비용으로 1인당 12,000원/일 지급

○ 지원일수 : 지원대상 가구당 연간 12일/인 이내(경로당은 24일/인 이내)

○ 지원방법 :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는 가구당 1회에 1명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해당 가구의 특성, 가사량 등을 감안하여 2명이상 파견할 수 있음

* 가사도우미를 2인 이상 파견할 때 수협담당자는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 선정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사업자 선정통보
(수협) ·해당없음	(수협)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수협) ·사업자 선정결과 전파
(지역수협) ·해당없음	(지역수협)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지역수협) ·사업자 선정결과 전파
(어가 등) ·해당없음	(어가 등) ·해당없음	(어가 등)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사업추진 단계	이행점검 단계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집행점검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성과점검
(수협) ·보조금 교부 신청 (수협 → 해수부)	(수협) ·세부시행기준 마련 시달 ·가사도우미 교육훈련 ·지역수협별 예산배정	(수협)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수협 → 해수부)
(지역수협) ·보조금 교부 신청 (지역수협 → 수협)	(지역수협) ·세부시행기준 마련 시행 ·인력지원단 구성 ·사업추진 홍보 및 교육	(지역수협)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지역수협 → 수협)

	·가사도우미 이용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가사도우미 선정 ·지원대상자의 가사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가사도우미 활동비 지급	
(어가 등) ·해당없음	(어가 등) ·가사도우미 이용신청 ·지원대상자의 가사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가사도우미의 활동비 청구 확인 (가사도우미) ·활동비 청구	(어가 등) ·해당없음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시·도별 사업규모) 계획 수립
- 시·도별 사업수요 및 예산 집행률 등 고려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보조사업자(예정자 포함)에 가내시 통보

○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수요 조사(12월경)

○ 세부사업계획 통보

수협

○ 해양수산부 세부사업계획을 관련 시군구에 전파

○ 자체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목차 예시>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나. 추진방향
 다. 근거법령
 라. 필요성
 마. 사업추진 조직 및 주요업무
 바. 주요사업 내용
 사. 성과지표(주 지표, 보조지표) 및 목표
  * 주 지표는 지침 지표활용
 아. 추진체계
2. 세부추진계획
  * 주요과정별 세부 내용 및 기준, 방법, 대상선정 등
3. 세부 추진일정
4. 예산 세부내역
  ※ 사업성격에 따라 내용 조정 가능

○ 사업수요 제출

- 최종사업집행기관(지역수협)의 수요 취합

  * 해양수산부 별도요청(문서)에 따라 이행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 및 사업규모 선정 통보(12월 경)

수협

○ 사업자 선정결과 및 사업규모를 지역수협에 전파

지역수협

○ 사업자 선정결과 및 사업규모를 지역민 등에 전파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수협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송금

수협

○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지역수협

○ 자금배정을 수협에 요청

5. 사업추진 단계

해양수산부

○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수협

○ 세부시행 기준 마련 지역수협에 시달

-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가구 등의 편의 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기준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2) 가사도우미 선정기준
  3) 지역수협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4) 가사도우미 활동사항 확인
  5)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가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필요시)
  6)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가사도우미 교육훈련

- 가사도우미 활동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사도우미가 응급처치과정, 보건·복지 관련 교육 등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지역수협별 예산 배정

지역수협

○ 세부시행 기준 마련 시행

-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가구 등의 편의 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기준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가사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2) 가사도우미 선정기준
  3) 지역수협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4) 가사도우미 활동사항 확인
  5)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가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필요시)
  6)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 구성

- 관내 어업인 및 어촌주민의 가사도우미 이용신청에 대비하여, 지역내·외 가사작업 가능 유휴인력, 가사도우미로 활동한 자 및 가능한 자 등을 적극 확보하여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 인력풀을 구성·관리하며, 신청어가가 추천한 가사도우미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하여야 함

○ 사업추진 홍보 및 교육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홍보포스터 및 리플렛 등을 활용한 사업홍보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어업도우미 교육을 시·도 또는 시·군(지역수협) 단위 등으로 실시할 수 있음

○ 가사도우미 이용신청 접수

- 지역수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가사도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지역수협 사업담당자가 「가사도우미 이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접수하며,
- 일제조사 시 누락되었거나 연도 중 가사도우미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수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 지역수협은 지원대상 선정(수시 또는 일괄 등) 시 지원대상별 소관 지자체(시·군) 담당과(사회복지부서)와 사전에 협의(별지 제4호 서식)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사업이용어가 명단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 지역수협은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중복지원 방지 등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해「가사도우미 지원 대상가구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위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 지역수협은 가급적 전년도 연말 이전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지원대상별 소관 지자체(시·군) 담당과(사회복지부서), 신청가구, 파견될 가사도우미에게 통보

  ※ 지자체 통보 : [별지 제5호 서식]

  ※ 신청가구 및 파견될 가사 도우미 통보 : [별지 제6호 서식]

  ※ 신청자와 가사도우미가 사전에 연락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여야 함

- 가구별 지원기간과 지원횟수는 정해진 한도내에서 사업비 규모와 관내 지원대상 가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수협이 산정

○ 가사도우미 선정

> • 가사도우미 임무 :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제공 포함), 세탁, 청소, 가사서비스 제공 또는 각종 복지서비스 설명·안내
>
> ※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기초 가사서비스 외 수혜자에 대한 위생 및 건강상태 등 이상이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자체(사회복지부서 등)에 알려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역수협이 이미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인력지원단원」중에서 신청가구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사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가사도우미로 선정

- 신청자가 가사도우미를 추천한 경우에는 원활한 가사서비스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가사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가사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 가사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가사도우미의 가사서비스 제공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경우 가사도우미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사도우미에게 신청가구의 가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가구가 가사 사정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수협 사업담당자가 대신 설명

○ 가사도우미 활동비 지급

- 지역수협은 가사서비스 제공 사실을 확인한 후 국고부담금과 수협부담금을 합하여 가사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어가 등

○ 가사도우미 이용신청

- 가사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어업인 및 어촌주민은 「가사도우미 이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지역수협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 가사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가사도우미의 가사서비스 제공과정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경우 가사도우미 교체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가사도우미의 활동비 청구 확인

- 가사도우미로부터 가사도우미 활동비 청구를 위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가사도우미 활동일자 및 시간 활동내용 적정한 경우 확인하여야 한다.

가사도우미

○ 가사도우미 활동비 청구

- 가사서비스를 제공한 가사도우미는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 활동비 청구서」 [별지 제2호서식]를 수혜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여 지역수협에 제출

* 활동비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나, 수혜자별로 월 1회씩 모아서 신청

6. 이행점검 단계

《사업평가 및 환류》

해양수산부

○ 수협의 사업성과 및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배정에 반영한다.

* 평가대상사업 및 내용 : ① 예산 집행율, ② 이용어가 만족도

수협

○ 사업추진실태에 대해 수시 지도·점검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지역수협에서 제출한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보고서를 취합한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지역수협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분기별 사업추진 상황보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수협에 제출

《실적보고 및 정산》

해양수산부

○ 수협의 실적보고를 검토하여 보조금 확정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협

○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익년 1월 10일까지 실적보고서(재원별 집행현황, 사업추진내용, 지원대상별 통계자료(이용가구수, 연령 등) 포함)를 해양수산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지역수협

○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수시 지도·점검

○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정산 및 정산결과를 수협에 제출하여야 함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

지역수협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한다.

<부당 수혜자 예>
○ 근거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 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를 위한 행정사항 협조: 해양수산부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시 행정사항 협조

○ 부당 수혜자에 대한 조치

- 가사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및 해당 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는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별첨 1> "읍·면의 전지역" 이외의 지역 중 어촌지역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 지역을 포함

[별지 제1호 서식]

가사도우미 이용신청서

신청인	신청자 성명 (경로당명)		주민등록 번호	
	신청자 주소	(신청자 주소) (경로당 주소) ※ 경로당일 경우 경로당 주소도 작성		
	전화번호 (핸드폰)			
	신청사유		희망서비스	
	신청일수		희망시기	
	특이사항			
가사 도우미 (신청인이 추천시 신청인이 기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도우미선정 통보일시	

○ 상기와 같이 가사도우미를 신청합니다.

○ 해양수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OO수협조합장 귀하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사도우미 수혜자용)

가사도우미지원 사업의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가사도우미 사업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ㅇ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ㅇ 기타 가사도우미 이용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ㅇ 개인식별정보 외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해양수산부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사도우미 사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정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교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해양수산부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ㅇ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제공 - 해양수산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및 사업 이용신청서 항목
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서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가사도우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별지 제2호 서식]

가사도우미(자원봉사자) 활동비 청구서

신청인 (자원봉사자)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혜자 (도움받은 자)	성 명 (경로당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가사도우미 활동사항》

활동일자 및 시간	활동내용	수혜자 확인(인/서명)

활동비 신 청	금 액 : 원 ※ 산출내역 : 1일 활동비 (원) × 활동일수(일)			
	입금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가사도우미 활동비를 신청하며, 활동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자원봉사자) 성명 : (인/서명)

ㅇㅇ 수협조합장 귀하

상기와 같이 가사도우미 활동했음을 확인합니다.

ㅇ 확인자 : 수협담당자 성명 : (인/서명)

[별지 제3호 서식]

다수인 파견 사유서

아래와 같이 가사도우미를 파견합니다.

<table>
<tr><td>파견예정일</td><td colspan="2"></td><td>파견자수</td><td></td></tr>
<tr><td rowspan="2">수 혜 자
(경로당)</td><td>성 명
(경로당 명)</td><td></td><td>생년월일</td><td></td></tr>
<tr><td>주 소</td><td></td><td>전화번호</td><td></td></tr>
<tr><td>다 수 인
파견사유</td><td colspan="4"><예시1> 장기간 봉사서비스 받지 못해 업무량 과다
<예시2> 수리할 집기 등이 많아 다수 파견함
<예시3> 정원 정비를 하기 위한 인원 1인 추가파견
<예시4> 청소1명, 취사 및 밑반찬 1명 등
<예시5> 수혜자가 공격적 성향을 보여 안전을 고려 2인 파견
<예시6> 수혜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을 시키기 위해 2인 이상 필요</td></tr>
<tr><td>확 인 자</td><td colspan="4">20 년 월 일
수협담당자 성명 : (인/서명)
ㅇㅇ수협조합</td></tr>
</table>

※ 가사도우미를 1일 2인 이상 파견 시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후 수협에서 보관

[별지 제4호 서식]

가사도우미 지원대상 선정 협의서

연번	지원대상(경로당)						협의의견 (가, 부)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 번호	신청 일수	특이사항	

※ 엑셀 양식으로 작성 협의

※ 지자체(시·군) 담당과(사회복지부서) : 적정여부 검토(“부”인 경우 사유기술) 회신

[별지 제5호 서식] (지자체 통보용)

가사도우미 지원대상 선정 결과 통보서

연번	지원대상(경로당)					가사도우미		비고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번호	지원 일수	성명	연락처	

※ 엑셀 양식으로 작성 통보

※ 가사도우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란 처리

[별지 제6호 서식] 신청가구 및 가사도우미 통보용

가사도우미 지원대상 선정 결과 통보서

지원대상	성 명 (경로당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가사 도우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지원내용	지원서비스			
	지원일시 및 일수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지원대상 가구(경로당), 가사도우미 선정 및 지원일시(일수) 등을 확정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ㅇㅇ 수협조합장 (인)

상기와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ㅇㅇ수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ㅇㅇㅇ(tel 000-000-0000)

※ 가사도우미가 2인 이상인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별지 제7호 서식]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지역수협 작성용)

○ 지역수협 명 :

(단위 : 원)

연번	시군명	지원 대상 (해당되는 곳에 명시)						지원 일수	집행액		
		어업인 가구		어촌주민 가구		경로당			계	국비	수협
		성명	나이	성명	나이	성명 (신청자)	이용 자수				
계											

※ 엑셀 파일로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 보고서(수협 작성용)

(단위 : 수·개소, 일, 원)

시도	시군	지역수협명	지원현황															
			계				어업인 가구				어촌주민 가구				경로당 등			
			수	지원일수	집행액		수	지원일수	집행액		수	지원일수	집행액		개소	지원일수	집행액	
					국비	수협			국비	수협			국비	수협			국비	수협
계																		

※ 엑셀 파일로 작성

35 원양어업활성화

① 해외어장자원조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과 장 양영진 사무관 김상현	044-200-5360 044-200-53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제적인 수산자원관리와 조업규제 강화로 조업어장이 축소됨에 따라 새로운 해외어장·어종을 개척·개발하기 위한 자원조사

○ 국제수산기구에서 결정·채택한 자원관리보존조치의 이행 및 자원관리보존조치 채택을 위한 과학조사·시험연구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요경비 등을 지원하여 해외에서의 해양수산생물자원 확보 촉진

2. 근거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해외수산 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성과목표 및 지표

○ 안정적인 어장 확보를 위해 국제회의 국내 유치 및 재정적·과학적 기여와 국제수산기구 대응 강화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해외어장자원조사 수역 어업생산량(천톤)	39.2	36.5	38	38.2	-	사업 종료 후	과거 3개년('16년~'18년) 평균 해외어장자원조사 수역 생산량보다 3% 상향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400**	**1,500**	**1,600**	**1,700**
- 국 비 (민간경상보조)	1,400 (750)	1,500 (800)	1,600 (850)	1,700 (900)
- 지방비 및 자부담	-	-	-	-

※ 사업비 : 1,400백만원(국고 100%, 정액보조)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원양어업자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중 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된 원양어업자

※「원양산업발전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불법어업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33조(벌칙), 제34조(양벌규정), 36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행정처분 절차)에 따른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외어장 자원조사, 국제수산기구 관할구역 등 과학조사, 지역수산기구 보존조치 이행자료 수집 및 시험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에 소요경비 등

○ 대상사업 예시

- 기존 진출어장의 대체어종, 조업수역 확대, 모색 등을 위한 자원조사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지원한도액 : 정액보조

5. 지원항목

○ 사업에 참여하는 선박의 소요경비중 “별표” 사업비 항목별 지원기준의 사업비 범위 내 지원

○ 지원금액의 결정시에는 아래 표 기준에 따름

사 업 비	지원액	비 고
6억원 미만 (평균 4.5억원)	2.0억원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평균 9억원)	3.5억원	
12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평균 18억원)	5.0억원	
24억원 이상 (평균 36억원)	7.0억원	

※ 자원조사의 시급성·어장성·파급성 등의 인정 수준, 동일수역에 2척 이상이 공동으로 자원조사에 참여 등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자원조사가 필요한 해역, 어종 등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정할 수 있음

○ 소요경비가 사업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요된 경비(항목별 지원 기준내)만 지원하며,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비는 자부담으로 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 기간 중의 조업 일지,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6. 사업기간

○ 사업기간은 실제 자원조사에 소요된 기간을 말하며, 왕복 항해기간을 포함함

○ 사업기간은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지원규모에 따라 산정하며, 1일 실조업 일수는 1회 이상 투·양망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과제)신청 단계	지원사업(과제) 평가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시행 – 총 사업비 및 지원공모과제 수 등 세부사업 공고	(해수부) ·제안과제 평가 및 심의 실시(심의위원회 개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해당없음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전파 ·공모 과제계획서 제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심의 대응
(시·군·구) ·해당없음	(원양어업자) ·공모 과제계획서 작성 제출 (한국원양산업협회 경유)	(원양어업자) ·심의 대응

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 계획서 제출 단계	자금배정 단계
(해수부) ·사업자 선정	(해수부) ·사업 계획서 접수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한국원양산업협회)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해당없음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사업 계획서 제출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보조금 교부 신청
(원양어업자) ·해당없음	(원양어업자) ·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한국원양산업협회 경유)	(원양어업자) ·해당없음

사업시행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해당없음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보조사업 관리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원양산업협회)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원양어업자) ·보조금 집행	(원양어업자) ·보조금 집행	(원양어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원양어업자 → 한국원양산업협회)

사업체계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대상수역선정 및 사업자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개산급 지급, 보조금 확정 및 보조금 정산

<국립수산과학원>

○ 자원조사, 과학조사 및 시험연구 세부추진계획 수립(사업자와 협의)

○ 어장, 쿼터할당 유지를 위한 RFMO 보존조치 이행자료 수립계획 수립

○ 대상수역 관할 국제수산기구에 사업 계획 통보

○ 과학조사, 시험연구 및 RFMO 보존조치 이행자료 수집

○ 종합결과보고서 제출(인쇄)

○ 연구원 및 옵서버 보수 및 여비지급

<(특)한국원양산업협회>(이하 “원양협회”)

○ 보조금 교부신청, 개산급 신청 및 정산서 제출

○ 대상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30일내)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원양어업자>

○ 사업계획서 작성(원양협회, 국립수산과학원 제출·협의)

○ 원양협회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개산급 신청, 정산서 제출 및 대상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30일내)

○ 일일 어획실적보고서 제출(국립수산과학원)

○ 옵서버 보험가입(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 한국소재 보험회사에 옵서버 임금기준으로 해외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직급 전용상품으로 보장금액 250백만원 이상)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과제 공모 계획) 수립(매년 1월)

- 공모 일정, 방법, 사업 선정(평가)기준,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등 포함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매년 자원조사, 과학조사 및 시험연구 사업자를 공모하여 사업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음

○ 해양수산부는 매년 과학조사, 시험연구 및 RFMO 보존조치 이행자료 수집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음

○ 사업계획서에는 참여 선박의 입출항 및 항해, 조업 계획 및 예상 소요경비, 예상 어획량 및 판매수익 등을 포함하여야 함

원양어업자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 신청서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해외어장 자원조사 대상수역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함)”에서 사업자 선정

○ 선정위원은 원양어업관련 업무 및 학식이 풍부한 자로 5명 이내로 위촉하며,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이 위원장이 되고, 원양산업과장,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학계 또는 연구소 등 2명 이상을 추가 위촉 할 수 있음

○ 선정위원회는 전년도 사업 평가 및 당해연도 사업 대상수역을 선정하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사업 대상수역 선정은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및 동 계획서 발표 등을 듣고 “붙임 1”의 평가표에 의거 평가하고 70점 이상 득점자 중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대상수역이 연안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인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어업협정 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제

○ 평가는 ① 어장성(자원분포, 어획량 등 자원적 측면/가능성), ② 파급성(타 업계의 진출가능성), ③ 안정성(장기적인 상업조업의 가능성), ④ 경제성(예상 조업경비의 상대적 비교), ⑤ 시급성(현 관련업계의 현안사항 및 국제규제 대응 적정성) 등 평가요소별로 20점 만점(좋음 20~16, 보통 12, 나쁨 8~4)으로 평가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 계획 적정여부 및 추진 일정 등을 확인

원양협회

○ 원양협회는 사업대상자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적정성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구체적인 예상소요경비 내역을 작성하여 원양협회를 경유(원양협회 비 회원사는 직접 신청), 해양수산부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포함), 집행절차 등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9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해양수산부는 해외수역에서 시험조업을 실시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산급을 지급함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시험조업을 중단하거나, 자원조사시 시험조업 통제에 불응 또는 각종 보고내용을 불성실하게 작성·제출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반환하게 할 수 있음

6. 사업시행

보조사업자

< 시험어업 >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시험조업이 포함된 경우 시험조업을 실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참여 선박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정한 연구원 또는 옵서버가 승선할 경우 사관급에 준한 대우 및 자료수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참여 선박의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정한 연구원 또는 옵서버의 협조요구(통제)에 따라야 함

○ 참여 선박이 여러 척으로 시험조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1척을 지휘선으로 지정하고 지휘선 선장의 통제하에서 시험조업을 실시하여야 함

○ 지휘선 선장은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 또는 옵서버의 시험조업과 관련된 업무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어획물 처리 >

○ 사업에 참여한 선박이 시험조업으로 어획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소유로 함

○ 다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지정한 연구원 또는 옵서버가 어종별 생물학적 조사를 위해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육상에서 전문가의 조사·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제공하여야 함

< 일일 어획실적 보고 >

○ 보조사업자는 일일 어획실적을 매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험조업시 준수사항 >

○ 시험조업 시에는 국제수산규범과 시험조업 수역을 관할하고 있는 국제수산기구 등의 자원보존관리조치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저층어업에 따른 취약한 생태계가 확인되는 수역에서는 저층조업을 할 수 없음

7.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사업시행 시 년 1회 이상
- 점검반 : 해양수산부(주관기관)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사업 진척도, 추진 적합성 등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때에는 종료(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사유서 제출)에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 예산집행 내역서와 증빙서류 및 사업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원양협회(원양협회 비회원사는 직접제출)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어선고장, 어구파손 등과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실질적인 시험

조업 기간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시험조업 전체일수에서 시험조업에 참여한 해당 일수의 비율을 사업비에 적용하여 정산함. 다만 천재지변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8.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서식 2"의 서식에 의한 사업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원양협회(원양협회 비 회원사는 직접제출)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종료후 조업 수역에 대한 경제성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서식 3"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원양협회(원양협회 비 회원사는 직접제출)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함

국립수산과학원

○ 업체에서 제출하는 시험조업 결과와 별도로 연구원 및 옵서버 승선 시험조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학조사 및 시험연구를 종료하였을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평가시기 : 사업 완료 이후

○ 평가방법

- 원양어업자의 제출받은 평가결과와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9. 사업 추진결과 환류

해양수산부

○ 기존 허가어선이 시험조업에 참여(연 3개월 이상)하여 어장성 등이 확인된 때에는 동 선박에 대해 시험조업 수역 어업허가 우선 검토

○ 새로운 선박을 도입하여 시험조업에 참여(2년 이상, 연 3개월 이상)하여 어장성 등이 확인된 때에는 동 선박에 대해 시험조업 수역 어업허가 우선 검토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표] 사업비 항목별 지원기준

<사업비 항목별 지원기준>

항 목	내 용
○ 어구비	○ 어구비는 완성망 각 1세트 및 시험 조업에 필요한 어구비 적용
○ 유류비	○ 연료유는 조사사업 기간 동안의 실제 사용량 적용 ○ 윤활유는 연료유의 1% 범위내에서 인정 ○ 해외구입시 현지 구입가격을 적용
○ 선박수리비	○ 해외수역 자원조사 시험조업에 필요한 수리비, 다만, 선체 수리비용은 1년중 실조업일수에 해당하는 경비만 인정
○ 포장비	○ 어획물 포장에 필요한 수량만 인정
○ 선용품비	○ 조사사업 기간중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허용(당해연도 원양영어자금 수요조사 결과보고) 범위내 ○ 수입품목은 L/C 가격을, 해외구입품은 현지가격을, 국내구입품은 시중가격을 적용
○ 의약품비	○ 조사사업 기간중에 필요한 물품허용
○ 보험료	○ 선체 및 선원 보험료중 조사사업 기간 동안의 금액만 인정
○ 주부식비	○ 단체계약의 급식비 기준 적용(조사사업 기간)
○ 선원급여	○ 대상선원은 어선검사증서상 승선 선원 수(실 승선원) ○ 월급여는 출어선의 선원근로계약 임금 지급기준 적용
○ 운반비	○ 어획량 운반 및 어구·선용품 등의 운반비
○ 옵서버보험료	○ 해외근로자 재해보장보험료 전액

[별지 제1호서식] 대상수역 선정 평가표

2019년 해외어장 자원조사 대상수역 선정 평가표

순서	대상업체	대상수역	총계	어장성 (20점)	파급성 (20점)	안정성 (20점)	경제성 (20점)	시급성 (20점)
1								
2								
3								
4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20점 만점으로 평가(좋음 20~16, 보통 12, 나쁨 8~4)

20 . . .

평가자 : (소속) (성명)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시험조업 결과보고서

<시험조업 결과보고서>

1. 소속회사 :
2. 어 선 명 : (톤수 : 마력 :)
3. 선 장 명 :
4. 시험조업일 : 20 . . .~ . .(일간)

출항일	출항지	시험조업일자		입항일	입항지	총소요일
		개시	종료			

5. 어종별 어획량 :

붙임 : 1. 시험조업 결과보고서 1부
2. 경제성분석 자료 1부

20 년도 해외어장 자원조사 사업에 참여하여 붙임과 같이 자원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자대표 (인)

□ 시험조업기간 : 20 . . . ~ . . (월 일)

□ 주 조업수역 :

□ 조업현황

출항일	출항지	조업일자		입항일	입항지	총소요일
		개시	종료			

□ 어선재원

선 명	
선 질	
톤 수	
주기마력	
속 력	
어창용적	
동결능력	
유창용적	
승무원수	

□ 시험조업실적(트롤, 저인망, 선망, 봉수망)

조업실적 / 일자별	조업환경							어획량(톤)		
	조업위치	인망 시간 (H:M)	인망 회수 (회)	예망 속도 (K'T)	어획 수심 (M)	망고 (M)	표층 수온 (℃)	어 종		어획 소계
어획소계										

□ 시험조업실적(연승, 채낚기, 통발, 외줄낚시)

조업실적 / 일자별	조업환경						어획량(톤)		
	조업위치	투승 시간 (H:M)	양승 시간 (H:M)	낚시(통발) 갯수	어획 수심 (M)	표층 수온 (℃)	어 종		어획 소계 (미/kg)
어획소계									

□ 시험조업결과

(1) 어장성

(2) 어장특성

(3) 향후 대책

[별지 제3호서식] 경제성분석 자료

<경제성분석 자료>

1. 어업수익 관련 자료

① 시험조업 기간 동안에 어획한 수산물의 종류별 생산량

② 어획한 수산물의 유통경로

③ 가공 가능한 방법 및 예상가격

2. 어업비용 관련 자료

① 시험조업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모두 기입

② 시험조업기간 중에 발생한 비용

③ 1년 동안 조업을 가정할 경우에 발생할 비용

※ 단, 서식에서 빠진 비용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기입

□ 시험조업기간 중 발생한 어업비용

항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시험조업기간
출어비	어구비			
	연료비			
	용기대			
	저장대			
	선용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임금 및 일반관리비	선원 임금	고정급		
		성과급		
	사무비			
	공제 및 보험료			
	운반비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관리비			
	감가상각비			
총 계				

□ 1년 조업을 가정할 경우에 발생할 어업비용

항 목			금 액	
			산출 근거식	1년 조업비용 (환산)
출어비	어구비			
	연료비			
	용기대			
	저장대			
	선용품비			
	주부식비			
	후생비			
	수리비			
	항만·대리점비			
임금 및 일반관리비	선원임금	고정급		
		성과급		
	사무비			
	공제 및 보험료			
	운반비			
	판매비			
	조세공과			
	기타관리비			
	감가상각비			
총 계				

□ 시험조업 생산량

어획일시	어종명	어획량

□ 가공 및 예상가격

가 공 방 법	예상 가공비용	예상 가공가격

② 옵서버 승선경비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김현태 사무관 임성규	044-200-5330 044-200-534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원양어획량 확인, 어획물 해상전재 감시 등을 수행하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및 옵서버제도 운영 기반 구축

- 해외어장 확보, 지속가능한 조업활동을 위한 IUU어업 예방 및 감시, 과학자료 수집 활동, 국가 의무사항인 옵서버 양성을 위한 교육비 및 옵서버 수집정보 관리 DB 구축 등 지원

2. 근거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및 제21조(해외 수산자원조사 및 연구의 촉진)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성과목표 및 지표

○ 활동 중인 옵서버 수 전년대비 증가율

(단위 : %)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옵서버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옵서버 수 전년대비 증가율 (누계)	37 (59명)	9 (24명)	29 (31명)	10 (34명)	26 (43명)	12월 말	(금년도 옵서버수 - 작년 옵서버수) / 작년 옵서버수 × 100 *전년대비 10%이상 증가 목표치 설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370**	**1,375**	**1,380**	**1,385**
- 국 비	1,370	1,375	1,380	1,385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옵서버 승선경비지원** : 러시아 및 지역수산관리기구 관리수역 등에서 조업하는 원양업체
- **옵서버 육성관리**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 최근 2년간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불법어업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원양어업자는 제외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옵서버 승선경비지원 :** 한·러 어업협정 및 지역수산관리기구 관할 수역 등에서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해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해상전재 감시, 과학자료 조사 옵서버에 대한 승선 경비 지원

* 해상전재 감시 옵서버 승선비용의 국제기구(IATTC, IOTC, ICCAT, WCPFC) 분담금, 옵서버의 승선에 따른 임금, 여비(항공료 등 교통비, 숙식비), 보험료, 옵서버 안전을 위한 장구 구입비 등 지원

- **옵서버 육성관리** : 옵서버 교육비, 장비임차, 옵서버 수집정보 관리DB 구축 및 관리인원 인건비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옵서버 승선경비지원** : 국고 100%

- 총 소요 금액내에서 정부지원 한도 내 보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 **옵서버 승선경비지원 사업 의무량** : 13개소

- 러시아(명태트롤, 대구 저연승, 꽁치봉수망 등 3개소), 지역수산기구(IATTC, IOTC, ICCAT, WCPFC, CCSBT, UN FAO, CCAMLR, SPRFMO, SEAFO, NPFC 등 10개소)

○ **옵서버 승선경비지원 지원한도액 기준**

- 승선경비지원 한도액은 승선경비지원 대상 13개소에 대한 국제기구 등의 승선요구율과 최근 3개년 동안의 지원 실적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수립 시 기준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얻어 집행
- 다만, 러시아와 국제기구 수역간의 기준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집행
- 각 개소당 지원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모든 지원 개소는 50% 미만의 정률로 지원

○ 러시아수역 옵서버 승선경비 : 195백만원

○ 국제기구 관할수역 : 10억5백만원

○ **옵서버 육성관리 세부 집행 계획**

○ 옵서버 교육 : 100백만원

○ 옵서버 정보 관리DB 구축 : 15백만원

○ 옵서버 관리인원 인건비 : 55백만원(총1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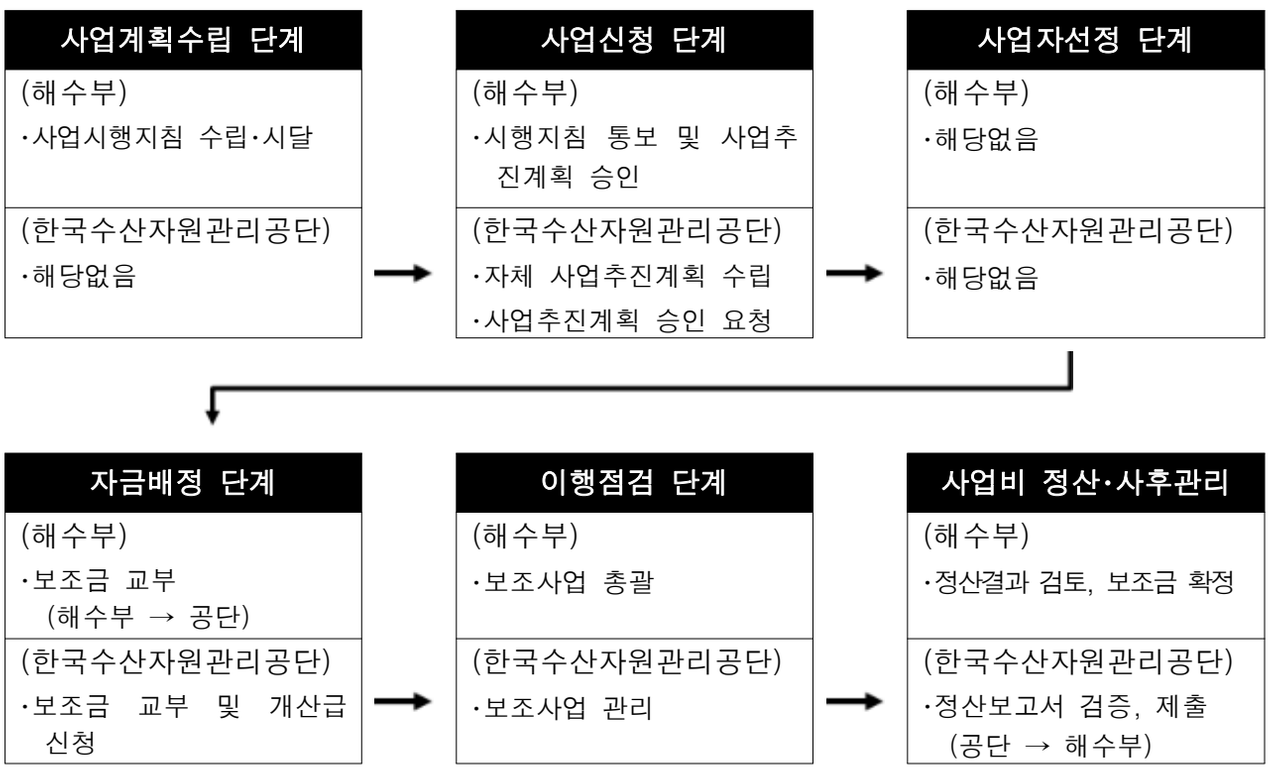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 해양수산부는 당해년도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및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수립,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당해연도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및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수립,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통보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로부터 당해연도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및 육성사업 세부사업추진계획을 통보받고 검토 후 10일 내 정정요구(5일 이내 정정요구 후 재정정요구 혹은 승인통보) 혹은 승인통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통보받은지 15일 이내 당해연도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및 육성사업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요청

○ 사업추진계획은 전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을 기본으로 수립하며, 여건 변화, 신규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음

* 수역별·지역수산기구별·업체별 옵서버 승선 계획, 소요인원 및 확보방안, 승선시기, 분기별 지출계획, 소요내역, 단가 등

○ 해양수산부로부터 당해연도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및 육성사업 세부사업추진계획 정정요구를 받았을 때는 5일 이내 정정 후 재승인 요청

3. 사업자선정 단계 : 해당사항 없음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

○ 보조금 지급시 【공통 제4호서식】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공통 제5호서식】보조금 교부조건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통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체서식]와 【공통 제3호서식】보조금 교부신청서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내국인 옵서버 승선계약을 체결한 원양업체는 부담금(경비의 50% 이상)을 매분기 첫 달까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선입금 조치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국고 보조금(경비 50% 미만)을 포함하여 해당 옵서버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해야 함

- 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하지 않은 업체와 당월 환급금 지급을 미신청한 업체에 대하여는 옵서버 경비를 지급하지 않음

○ 러시아 등 외국인옵서버 승선경비, 국제기구 분담금 등은 원양업체가 12.20일까지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경비지원요청서를 제출함

- 단, 12.20일까지 경비지원요청서(증빙서류 포함) 미제출 옵서버 경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음

○ 금년도 옵서버 승선경비 보조금 지원 적용기간 : 2019.1.1.～2019.12.31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해수부장관[혹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은 사업 점검을 위하여 현지 실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지실사 시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별지 제1호서식]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대상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60일내)

《제재》

○ 사업비 지급 후 다음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기타 관련기관이 보조금 회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발견된 경우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440호, ’18.9.14)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옵서버 승선경비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연도 분기)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 획		집행실적(누계)		추진사항 및 일정	완료예정일
	사업량	총사업비	사업량	총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공정 (%)	년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③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구축 운영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김현태 사무관 김세희	044-200-5330 044-200-53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원양산업 관련 투자정보 조사·제공, 해외 명예해양수산관 운영·관리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지원

- 관련 사업 추진,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명예**해양수산관 운영 및 투자정보 조사·제공 등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2. 근거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제19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제22조(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외진출기업(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 업체수 전년대비 증가율

- 해외진출기업 현황이 가장 정확한 지표이나, 정확한 진출기업현황 산출이 불가능하므로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 업체수 전년대비 증가율을 지표로 산정

(단위 : %)

성과지표	19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 업체수 전년대비 증가율(%) (신고업체수)	6 (76)	100 (8)	0 (8)	737 (67)	7.5 (72)	11월 말	(금년도 업체수 - 작년 업체수) / 작년 업체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359**	**370**	**380**	**390**
- 국 비	359	370	380	39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특)한국원양산업협회(해외수산협력센터, 이하 '원양협회')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원양산업협회의 사업)에 원양산업협회는 원양산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원양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어 사업을 원양산업협회에 위탁
- 동 시행령 제20조(업무에 위탁)에 원양산업협회에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명예해양수산관이 제공하는 원양산업 관련 정보의 접수 및 관리를 위탁하도록 기재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기준을 따름

○사업 운영

- 투자 정보 조사·제공 및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정보 업데이트), 현지 정보 조사
- 해외투자 전문교육 : 해외 전문가 초청, 강연
- 명예해양수산 제도 운영 : 보고사항 관리 및 홍보, 수당지급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특)한국원양산업협회(해외수산협력센터, 이하 '원양협회')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투자 정보 조사·제공 및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해외투자 전문교육비
-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인건비
  ·원양산업 및 정부간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
- 협력센터 운영 및 홍보
-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민간경상보조 / 국고 100%

○ 사업의무량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1식
- 명예해양수산관 9개국 9명 유지·관리
- 현지 정보조사 1개국
- 해외 전문가 섭외, 설명회 등 개최 1회

○사업자의 자격 박탈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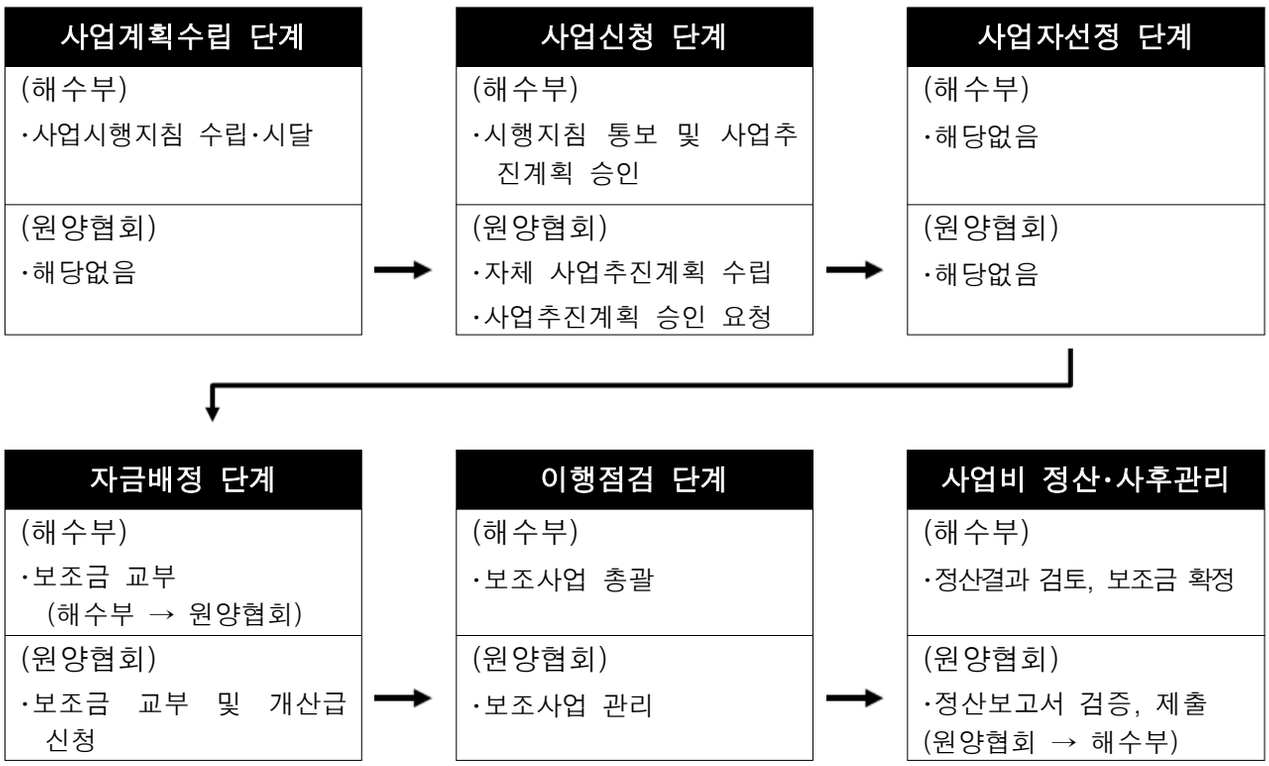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 해양수산부는 당해년도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구축운영사업 시행지침을 수립, 원양협회(협력센터)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당해연도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구축운영사업 시행지침을 수립, 원양협회(협력센터)에 통보

○ 원양협회(협력센터)로부터 당해연도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구축운영사업 세부사업추진계획을 통보받고 검토 후 10일 내 정정요구(5일 이내 정정요구 후 재정정요구 혹은 승인통보) 혹은 승인통보

원양협회(협력센터)

○ 원양협회(협력센터)는 통보받은지 15일 이내 당해연도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구축운영사업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요청

○ 해양수산부로부터 당해연도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구축운영사업 세부사업 추진계획 정정요구를 받았을 때는 5일 이내 정정 후 재승인요청

3. 사업자선정 단계 : 해당사항 없음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원양협회(협력센터)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

○ 보조금 지급시, 【공통 제4호서식】「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원양협회장(협력센터장)에게 통보

원양협회(협력센터)

○ 원양협회장(협력센터장)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원양협회 자체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세부 집행 계획

○ 투자 정보 조사·제공 및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31백만원
○ 해외투자 전문교육비 : 3백만원
○ 원양산업·정부간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팀 인건비 : 240백만원(총4명 : 센터장, 팀장, 행정관 2명)
○ 협력센터 운영 및 홍보 : 25백만원
○ 명예해양수산관 제도 운영 등 : 60백만원

- 그간 집행상태, 사업수요에 따라 임금수준 변동, 사업계획 등에 따라 총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별 지원액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세부적인 운영규칙은 붙임 1의 ‘명예해양수산관 운영지침(안)’과 붙임 2의 ‘해외수산협력센터 운영지침(안)’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해수부장관[혹은 원양협회장]은 사업 점검을 위하여 현지실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지실사 시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음

원양협회(협력센터)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별지 제1호서식]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대상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60일내)

《제재》

○ 사업비 지급 후 다음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기타 관련기관이 보조금 회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발견된 경우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371호, ’17.5.25), 해외수산협력센터 운영지침(해외수산협력센터 규정, ’18.1.1)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별지 제1호 서식>

해외진출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도 분기)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계 획		집행실적(누계)		추진사항 및 일정	완료예정일
	사업량	총사업비	사업량	총사업비		

세부사업명	사업공정 (%)	년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붙임 1>

명예해양수산관 운영지침(안)

Ⅰ. 개 요

□ **(현황)** '09년부터 원양어업 거점 또는 원양산업 진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운영 중(임기 2년, 연임가능)

* (원양산업발전법 제22조) 주요 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등을 명예해양수산관으로 위촉하여 연안국 자료 정보의 수집 등의 임무부여

○ 매월 활동 수당(약400US$)을 지급 하고, 반기별 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지급

□ **(주요임무)** 해외 주재국의 원양·수산 관련 자료·정보 수집, 투자환경 조사, 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 등

□ **(관리체계)** 원양협회(협력센터)에 위탁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0조

운영지침 마련 (해양수산부)	→	운영세칙 마련· 관리활동 상황 종합보고 (원양협회)	←	활동상황 보고 (명예해양수산관)

Ⅱ. 활동상황 보고

□ **(정기보고)** 명예해양수산관은 활동 실적을 메일, 우편, 홈페이지 입력, 팩스 등의 방법으로 매익월 10일까지 원양협회(협력센터) 보고, 원양협회는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원양협회는 각 명예해양수산관별 활동내용을 취합·분석 후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수요자들에게 정보제공

□ **(수시보고)** 원양협회는 해난사고 등 긴급상황 및 해양수산부 또는 업계 요청 정보자료에 대해 수시보고

○ 긴급 상황 대응 및 정보자료 수집 시 발생하는 비용은 예산과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명예해양수산관에게 지급

○ 원양협회는 선사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보수집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여 명예해양수산관에게 하달(필요시 활동비 지급)

□ **(종합보고)** 원양산업협회는 이듬해 1월 20일까지 당해 연도 추진실적 등 결과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Ⅲ. 명예해양수산관 위촉, 평가 및 기타

□ **(신규 위촉)** 원양협회는 '명예해양수산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신규 위촉 대상지역과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고

□ **(평가)** 원양협회는 '평가위원회'를 구성, 반기별 활동실적 평가

○ 평가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업계관계자 등으로 구성하되, 세부 구성관련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명예해양수산관의 임명, 해촉, 연임, 상여금 지급 대상 및 규모 등을 결정

* 필요시 명예해양수산관 추천위원회 회의는 실적평가회와 동시개최 가능

□ **(수당)** 원양협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월 400US$의 정액 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상여금 지급 가능

○ 단, 보고서 미제출 분기는 제출완료 후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매익월 10일까지 3회 이상 미보고시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

○ 매년 12월 보고서 제출에 따른 수당은 익년도 사업예산에서 지급 가능

□ **(정책워크숍)** 원양산업협회는 명예해양수산관의 애로사항 청취, 정책제안 등의 기회제공을 위해 필요 시 명예해양수산관을 초청하여 워크숍 개최

* 명예해양수산관 관련예산을 활용하되 필요시 해양수산부와 협의

<붙임 2>

해외수산협력센터 운영지침(안)

제정 2018년 1월 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의 해외수산자원 개발 및 국제협상업무 지원를 통하여 국제 해양수산 역량을 강화하고 원양산업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립되는 해외수산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원양산업"이란 원양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과 '원양어업 관련사업"을 말한다.

2. "운영기관"이라 함은 협력센터를 설립 · 운영하고 원양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운영기관)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관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특)한국원양산업협회로 한다.

제4조(협력센터의 조직) ①협력센터의 조직은 운영기관의 장이 제5조에서 정한 센터의 기능에 적합하게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원양산업의 발전 정도에 따라 센터의 조직을 변경할 수 있으며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협력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제협상(양자, 국제기구, 통상 등)협상 참석, 의제 및 제안서 등 각종자료 번역·분석, 관련정보 및 국제동향 파악
2. 해외수산업 진출지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해외 투자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해외투자 컨설팅 및 해외진출기업 지원
3. 원양산업통계(생산, 경영, 수출 등) 조사, 원양어업관련회사 설립 및 운영지원
4. 정부간 협력사업, 공적개발원조 등 양자협력, 수산부문 해외전문가 양성
5. 명예**해양**수산관 관리·운영, 기타 정부위탁사업

제 2 장 조직 및 인사

제6조(협력센터의 조직) ① 협력센터의 조직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외수산협력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2. 기획운영팀
3. 국제협상지원팀
4. 해외진출지원팀

② 센터장은 협력센터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감독한다.

③ 기획운영팀은 센터장 지시사항 처리총괄, 종합 사업계획 작성 및 예산의 편성업무, 예산의 집행, 결산, 제 규정의 제정·개정 및 법무에 관한 사항, 복무, 인사, 보수 및 후생관리, 원양산업통계조사, 기타 정부위탁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국제협상지원팀은 국제협상 참석, 의제 및 제안서 분석, 국제기구 동향분석 및 국제수산기구 등에서 발간되는 각종 지표의 분석 · 번역, 수산부문 해외전문가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해외진출지원팀은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원양어업 관련회사 설립 및 운영지원, 해외투자 정보 분석, 해외투자 컨설팅 및 해외진출기업 지원, 명예해양수산관의 관리 · 운영, 정부 간 협력사업, 공적개발원조 등 양자협력, 기타 정부위탁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센터장의 선임) ① 센터장은 수산업무 전문가 중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이며 장관의 승인(운영기관의 장이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의)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임이 가능하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센터장이 법령이나 협력센터의 운영지침 및 제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8조(직원의 선발 및 근무기간 등) ① 협력센터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센터장이 공개모집 후 면접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채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근무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9조(협력센터의 육성) 센터장은 협력센터가 해외수산자원개발 전담조직으로 발전 · 육성되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장 사업계획 및 예산

제10조(사업계획) ①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장관은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① 장관은 정부예산에서 협력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부보조금 예산에서 지원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득한 직후 협력센터의 사업에 소요되는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당해 연도 운영비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진행성과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의 예산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2. 예산 부족시 자체 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정부지원예산과 자체 충당재원을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시업비 집행시 지출결의서, 영수증 기타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실적을 분야별·시기별·내용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말 시행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년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승인)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한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결산서에 대하여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예산집행 및 회계기준의 적용)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집행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에 따른 기준은 정부의 예산집행 및 회계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1. 출장여비의 경우 센터장은 공무원 5급 상당, 팀장 이하(전문관, 행정관 등)는 6급 이하 상당의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이를 적용함이 부적절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5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①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원양산업 해외투자정보 제공을 위해 법 제19조에 의한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시스템을 인터넷에 구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연안국의 원양산업 관련 정책, 법령, 산업 동향
2. 주요 연안국의 경제현황 및 외국인 투자환경
3. 원양산업의 국제적인 동향
4.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정보
5. 원양산업 진출 현황, 마케팅 정보, 투자 상담 자료
6. 원양산업 관련 각종 통제, 간행물, 연구 보고서, 전문가 DB 등

제16조(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 운영) ①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최신 정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조사, 연구 용역 등을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순 정보제공 이외에 온라인 교육 및 투자 상담, 이메일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장 명예해양수산관 운영

제17조(명예해양수산관의 위촉) ①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법 제22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명예해양수산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센터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명예해양수산관으로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적격자를 명예해앙수산관으로 위촉하고 센터장을 통해 명예해양수산관증을 교부한다.
③ 센터장은 위촉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차기 명예해양수산관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여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8조 (명예해양수산관 수당 등 지급) ①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해양수산관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협력센터 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해양수산관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력센터 운영비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해양수산관 평가 등) ①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해양수산관으로부터 활동실적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해양수산관의 활동 심적이 부진한 경우 등 명예해양수산관으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위촉 기간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을 해지한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발급된 명예해양수산관증은 회수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명예해양수산관의 활동 내역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촉 여부를 검토하여 장관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세부운영규정 제정 등) ①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협력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자체규정을 제정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1조(지도·감독 등) ① 장관은 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시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센터장 또는 운영기관의 장이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장관의 승인을 얻은 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폐지지침) 이 지침 이전에 운영하던 해외수산협력원 운영지침(2017.1.31.)은 이 지침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④ 해외선원묘지 관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과 장 양영진 사무관 박형구 금유화	044-200-5360 044-200-5361 044-200-5362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원지원부	차 장 소기동 과 장 김효상	02-589-1611 02-589-161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원양어업에 종사하다가 사망한 어선원의 유족과 원양선원의 사기와 긍지를 제고

- 원양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원양어선에 승선하였던 선원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안장된 해외에 있는 선원 묘지의 개·보수와 위령탑 등 추모 조형물 등 설치, 시신이나 유해나 유골의 국내 이장(移葬) 등 지원

2. 근거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의2(해외 원양어업 선원 묘지의 국내 이장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해외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의 보존 및 체계적인 관리

성과지표	'19년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 선원묘지 유지관리 개소수	5	5	5	5	12월	사업완료 보고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 까지	'17년	'18년	'19년
합 계	564	100	100	100
- 국 비	564	100	100	1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원양산업협회

- 원양산업자가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원양산업협회를 사업대상자로 함

2. 지원 요건

○ 지원요건 : 대부분 무연고 및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어 현지 한인회, 원양업체 등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 체제 필요

3. 지원대상

○ 해외 선원묘지 개·보수 및 국내이장

* 라스팔마스, 테네리페, 수리남, 사모아, 피지, 타이티, 앙골라, 세네갈 등

○ 추모조형물 설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외선원묘지의 납골당·위령비등 추모조형물 건립 비용과 노후화, 부식, 침하 등에 따른 개보수 및 묘역 관리·정비(명예해양수산관, 한인회 등의 현지 선원묘지 관리인 출장비 포함)

○ 해외선원묘지 유해, 유골의 국내 이장 및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명예해양수산관, 한인회 등의 현지 선원묘지 관리인 출장비 포함)와 이에 따른 제반비용

○ 해외선원묘지 관리 및 국내이장 지원 관련 대국민 홍보비

5. 지원형태 및 사업 시행지역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사업 시행지역

- 해외선원묘지 관리 : 라스팔마스, 테네리페, 수리남, 사모아, 피지, 타이티, 앙골라, 세네갈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예 산	비 고
○ 해외선원묘지 관리	개소당 2천만원 이내	
○ 추모조형물 설치 및 관리	기당 2백만원 이내	
○ 해외선원묘지 국내 이장 지원	5천만원 이내	
○ 홍보	3천만원 이내	

※ 단,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원 해외묘지관리사업 지침을 수립하여 한국원양산업협회에 통보

한국원양산업협회

○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자체 게시판, 홍보용 책자 등을 통한 홍보

○ 기존 해외묘지 신규 발굴과 개·보수, 추모조형물 설치 및 개·보수 및 국내 이장 사업수요를 파악하여 사업신청

<사업신청 처리절차>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사업추진계획수립 보고(원양산업협회) → 보조금 교부신청(원양산업협회)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해양수산부) → 개산급 신청(원양산업협회) → 개산급 지급(해양수산부) → 사업정산

2. 지원 대상자 선정단계

<해외선원묘지 개·보수 및 추모조형물 설치·관리>

○ 선정방식

- 한국원양산업협회는 현지 한인회, 원양업체 등을 통해 해외선원묘지 개·보수, 추모조형물의 설치·관리 사업의 사전 사업수요를 자체 조사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사업자 선정

*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 선정기준

- 묘지의 현재 상태, 개·보수의 필요성, 조형물 설치 필요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검토

<해외선원묘지 국내 이장 지원>

○ 선정방식

- 한국원양산업협회는 해외선원묘지의 국내 이장을 희망하는 유족의 사전 사업수요를 받아 검토 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이장 대상자의 정보, 이장신청자와의 관계 등을 검토·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할 경우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추진계획에는 기존 해외묘지, 신규 발굴 해외묘지 및 추모조형물의 관리상태에 따른 지역별 사업지원 희망 수요,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내용, 사후관리와 해외선원묘지 국내 이장 지원을 위한 현지 실태 조사, 수요조사 및 홍보 계획 등 세부지원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해외선원묘지, 추모조형물의 관리상태 및 사업수요에 따라 지역별, 묘역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한국원양산업협회

○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는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개산급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에서는 세부사업계획서 및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고 교부결정 통보

한국원양산업협회

○ 한국원양산업협회는 내역사업별로 지급 요청한 사업비에 대하여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해외선원묘지 소재지역의 한인회 등에서 사후관리

○ 해양수산부장관(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해외선원묘지와 추모조형물 관리상태 및 사업점검을 위하여 현지실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현지실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점검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비 지급 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관련기관 등이 지원된 직불금을 회수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성과측정단계

○ 선원묘지 유지관리가 연내에 예정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성과지표 : 선원묘지 유지관리 개소수
  - 측정산식 : 사업 완료 보고서
  - 성과지표 측정(다음연도 1월) : 당해연도 추진실적 완료보고서 토대로 달성여부를 측정

7. 사업검토 및 환류단계

○ 해양수산부는 지원사업 정산이 완료된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받아 추진실적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지침 개정 등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 환류

8. 보고 및 기타사항

○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사업추진상황 중간보고를 9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완료시에는 실적 및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 첨부 >

원양어선원 해외묘지관리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년계획						집행실적(누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⑤ 원양산업 통계조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과 장 양 영 진 사무관 박 순 형	044-200-5360 044-200-536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원양어업 선사의 생산·경영실태를 파악하고 국적선사의 어선별 생산, 선원 승선현황 및 어로원가 등을 조사

- 국가의 원양어업 정책수립, 연구기관의 연구 분석 및 평가, 관련 업체의 원양어업 활동을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사례, 원양수산물 생산현황, 관련 종사자 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국민 정보 제공

- 원양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양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5년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2. 근거법령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국가승인통계 제114048호

○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실태조사)

3. 성과목표 및 지표

○ 원양어업통계 간행물 작성 및 발간

- 원양어업(단독) 생산 및 경영실태 위주 조사(국가승인통계)
- 해외합작원양어업 및 원양어업관련사업체 병행 조사

성과지표	'19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원양어업통계 간행물 작성	1	1	1	1	1	익년1월	통계 간행물 발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95	95	120	95
- 국 비	95	95	120	95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 향후 4년간의 재정투입 계획을 기재

Ⅱ. '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원양산업협회

- 원양어업 관련 통계의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원양 수산물 생산통계 작성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원양산업협회를 사업대상자로 함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 한국원양산업협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한국원양산업협회

- 원양산업발전법 제28조(원양산업협회의 설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원양산업협회의 사업)에 의거, 원양산업협회에서 추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양어업 단독기업체, 합작기업체 및 관련사업체 통계조사 실시, 결과표 작성 및 간행물 발간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사례 등 원양산업 실태조사 항목 추가 조사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 국고보조 100%

○ 사업의무량

- 원양(단독)기업체 : 일반현황, 생산·경영·수출실태, 어선별 생산실태, 선원승선현황 및 어로원가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
- 원양(합작, 관련사업)기업체 : 일반현황, 생산현황 위주 조사 등
- 실태조사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사례, 원양수산물 생산현황, 관련 종사자 현황 등 조사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액 : 95백만원

○ 기준 및 범위

- 위탁사업비 : 인건비, 여비, 조사경비 등
- 연구개발비 : 통계분석, 자문연구, 연구개발 등

※ 항목 간 예산을 조정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 필요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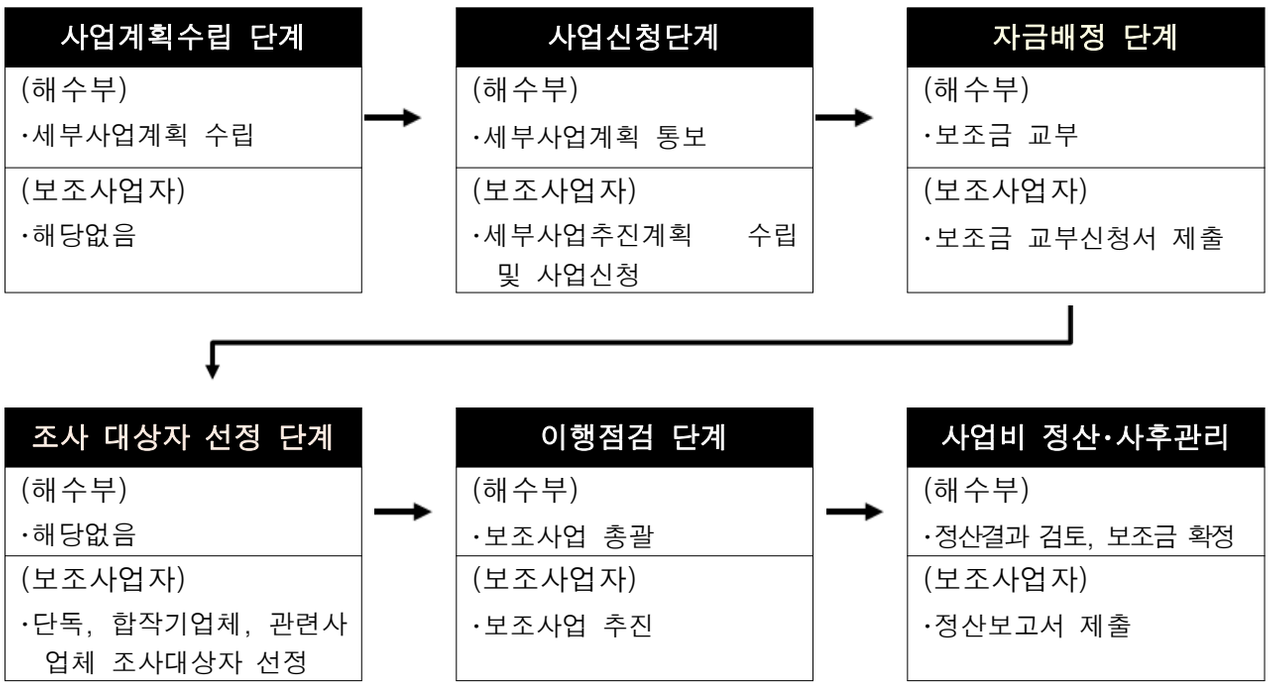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한국원양산업협회에 통보

한국원양산업협회

○ 세부사업추진계획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 보고 후 사업신청

- 조사내용, 조사대상,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 등 구체적으로 포함

○ 자체 홍보계획 수립·실시 (자체 게시판 또는 홍보용 책자 등을 통한 홍보)

2.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 통계조사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지급 시, 「【공통 제4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한국원양산업협회

○ 세부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내역사업별로 지급 요청한 사업비에 대하여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3. 조사대상자 선정 단계

한국원양산업협회

○ 선정방식 : 모집단의 변동사항 파악·정비 후 조사대상자 선정

※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점검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

○ 선정기준

- (단독기업체) 해양수산부로부터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원양어업 단독기업체와 그 기업의 보유어선 (생산실적이 있으나 도산, 휴·폐업한 업체 및 허가유예는 제외하되 생산·수출 실적 포함)
- (합작기업체) 해양수산부에 원양어업신고를 한 모든 합작 기업체와 그 기업의 보유어선 (조사기간동안 도산, 휴·폐업 및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 어선 제외)
- (관련사업체)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합작으로 원양어업 생산물 또는 시설·자금투자, 기술용역 제공, 자금융자를 통해 얻은 수산자원으로 운반·가공·유통·판매·양식 등을 하는 사업체

4. 이행점검단계

《사업이행》

한국원양산업협회

○ 원양어업 통계조사 활용을 위해 이용자 현황파악 및 의견 수렴 등을 실시
○ 통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
○ 조사지침서 등 현장조사 자료를 작성하여 조사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 조사 대상에 대한 면접조사 및 온라인조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및 내부 관계자를 통해 작성된 자료에 대한 검증을 실시
○ 원양어업 합작 및 관련 사업체에 대해 병행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자료 집계 및 분석을 실시
○ 분석된 자료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및 승인 받은 후 공표 및 간행물 발간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비 지급 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보조금 즉시 회수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지원대상자의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자로 판명된 경우
- 기타 관련기관 등에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함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5.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한국원양산업협회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업추진상황 중간보고를 7월 말까지 보고하고, 사업 완료시에는 실적 및 정산(통장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내역 보고

○ 사업 정산이 완료된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함

해양수산부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 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 원양어업 통계조사사업이 연내에 예정대로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평가

< 첨부 >

원양산업 통계조사 사업 추진상황 보고

(연도 분기)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년계획						집행실적(누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⑥ 러시아감독관 승선선박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과 장 양영진 사무관 김상현	044-200-5360 044-200-53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하는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조업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러시아 감독관 승선 선박(이하 '선도선박'이라 함)의 운항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러시아 조업규정 철저 준수 및 안정적 조업 유지

2. 근거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자원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 강구(제1항)
-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수산협력활동 촉진 지원(제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 안정적인 어장 확보를 위해 국제회의 국내 유치 및 재정적·과학적 기여와 국제수산기구 대응 강화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러시아 수역 채낚기 어선 오징어 생산량(백톤)	21.8	28.7	21.8	18.3	25.4	사업 종료 후	러시아 수역 채낚기어선 오징어 생산량(백톤) 3년('16년~'18년) 평균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638**	**638**	**638**	**638**
- 국 비	446	446	446	446
- 자부담	192	192	192	192

※ 사업비 : 638백만원(국고 70%, 자부담 3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러시아 입어업계(전국근해오징어채낚기연합회)

-「대한민국정부와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정부의 법적 승계자인 러시아 연방 정부간의 어업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수산업법」 제42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중 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된 어업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 입어를 위한 선도선박 운항경비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70%, 자부담 30%

* 총 운항경비 중 정부지원액 초과분은 자담으로 충당

○ 지원한도액 : 정액보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과제)신청 단계	지원사업(과제) 평가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시행 – 총 사업비 및 사업세부시행 지침 등 세부사업 공고	(수협중앙회) ·사업 계획서 검토
(어업인) ·해당없음	(수협중앙회)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전파 및 공고	(어업인) ·검토 대응
	(어업인)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사업자 선정 단계	사업 계획 확정 단계	자금배정 단계
(수협중앙회) ·사업자 선정	(해수부) ·사업자 및 사업계획서 확정	(해수부) ·보조금 교부 및 지급 (해수부 → 수협중앙회)
(어업인) ·해당없음	(어업인) ·해당없음	(수협중앙회)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지급 (수협중앙회 → 어업인)

사업시행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어업인) ·보조금 집행	(수협중앙회) ·보조사업 관리	(어업인) ·정산보고서 제출 (어업인 → 수협중앙회 → 해수부)

사업체계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보조금 교부결정, 개산급 지급, 보조금 확정 및 보조금 정산

<수협중앙회>

○ 보조금 교부신청, 개산급 신청 및 정산서 제출

○ 대상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30일내)

○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어업인>

○ 사업계획서 작성(수협중앙회 제출·협의)

○ 수협중앙회를 경유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개산급 신청, 정산서 제출 및 대상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30일내)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세부시행지침 수립(매년 1월)

- 사업 추진 예산, 방법 등 포함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매년 사업희망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음

○ 사업계획서에는 참여 선박의 입출항 및 항해 계획 및 예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하여야 함

어업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선도선박 용도 적합성 등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자 확정

수협중앙회

○ 선도선박 용도 적합성 등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 계획 적정여부 및 추진 일정 등을 확인

수협중앙회

○ 사업대상자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적정성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보조사업자

○ 구체적인 예상소요경비 내역을 작성하여 수협중앙회를 경유, 해수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포함), 집행절차 등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9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해양수산부는 해외수역에서 운항을 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산급을 지급함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통제에 불응 또는 각종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제출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반환하게 할 수 있음

6. 사업시행

보조사업자

○ 보조금의 사용은 선도선박 운항에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불하되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선박의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러시아 감독관의 협조요구(통제)에 따라야 함

○ 보조사업자는 선도선박 운영과 관련한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수협중앙회와 해수부에 보고하여야 함

7.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자부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사업시행 시 년 1회 이상
- 점검반 : 해양수산부(주관기관)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사업 진척도, 추진 적합성 등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때에는 종료(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사유서 제출)에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 예산집행 내역서와 증빙서류 및 사업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수협중앙회를 경유하여 해수부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이 종료된 때 수협중앙회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산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는 선도선박의 운항에 필요한 경비에 한하며, 기호식품 등은 인정되지 아니 함

8.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수협중앙회를 경유하여 해수부에게 제출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평가시기 : 사업 완료 이후

○ 평가방법

- 현장평가 실시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9. 기타 행정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처리는 해수부의 지시에 따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⑦ 국제수산협상전문가 육성관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김현태 사무관 임성규	044-200-5330 044-200-534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해외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수산기구 협상, FTA·WTO 등 수산통상 협상 전문인력 양성, 협상 지원·운영비 및 민간전문가 참석 지원

2.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 성과목표 및 지표

○ 참석한 국제회의 수 전년대비 증가율을 지표로 산정

(단위 : %)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참석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국제회의 참석수 전년대비 증가율	5 (42)	△14 (36)	25 (45)	△18 (37)	8 (40)	12월 말	(금년도 참석수 – 작년 참석수) / 작년 참석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530**	**530**	**535**	**540**
- 국 비	530	530	535	54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특)한국원양산업협회(해외수산협력센터, 이하 '원양협회')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특)한국원양산업협회(해외수산협력센터, 이하 '원양협회')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비
- 국제회의 지원 및 운영비 등
- 국제수산기구 민간전문가 참석 지원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국고 100%(정률보조)

- 총 소요 금액내에서 정부지원 한도내 보조하고 초과분은 자부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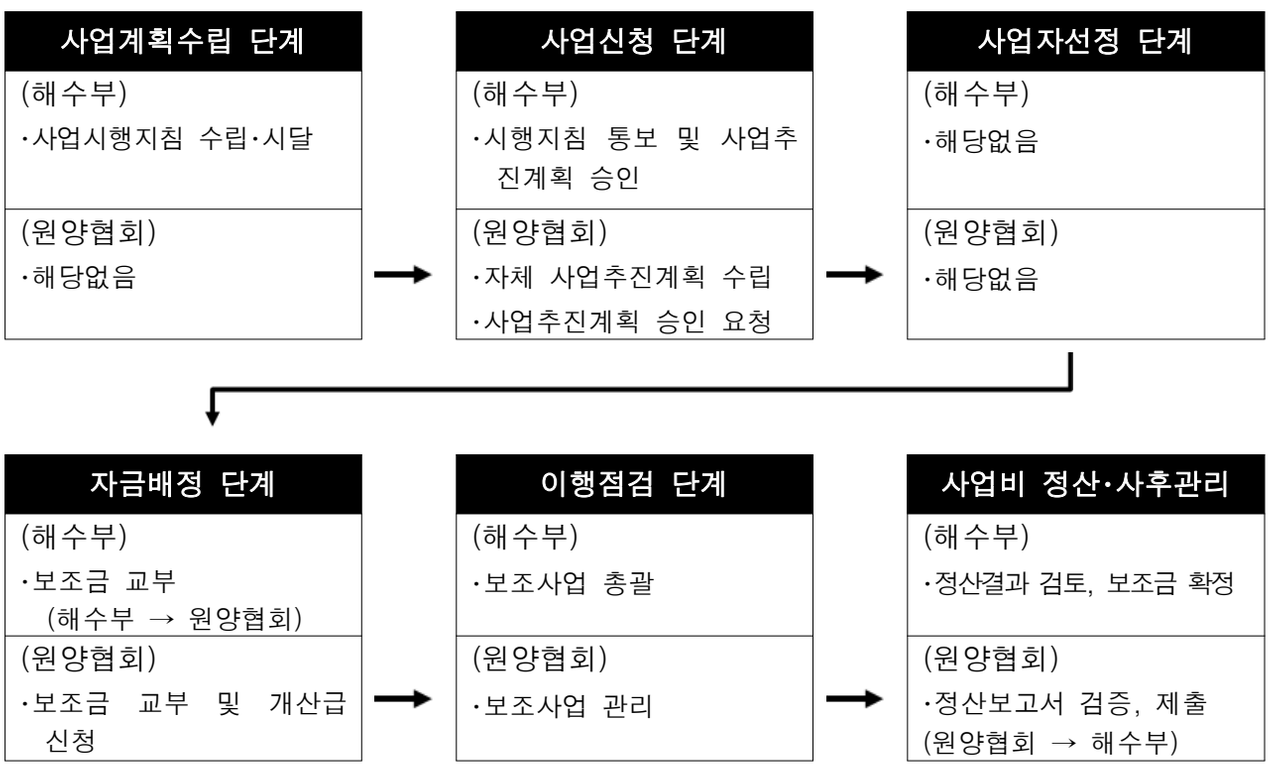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 해양수산부는 당해년도 국제협상전문가 육성관리사업 시행지침을 수립, 원양협회(협력센터)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당해연도 국제협상전문가 육성관리사업 시행지침을 수립, 원양협회(협력센터)에 통보

○ 원양협회(협력센터)로부터 당해연도 국제협상전문가 육성관리사업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통보받고 검토 후 10일 내 정정요구(5일 이내 정정요구 후 재정정요구 혹은 승인통보) 혹은 승인통보

원양협회(협력센터)

○ 원양협회(협력센터)는 통보받은지 15일 이내 당해연도 국제협상전문가 육성관리사업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요청

○ 해양수산부로부터 당해연도 국제협상전문가 육성관리사업 세부사업추진계획 정정요구를 받았을 때는 5일 이내 정정 후 재승인요청

3. 사업자선정 단계 : 해당사항 없음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원양협회(협력센터)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

○ 보조금 지급시 【공통 제4호서식】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공통 제5호서식】 보조금 교부조건을 원양협회장(협력센터장)에게 통보

원양협회(협력센터)

○ 원양협회장(협력센터장)은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원양협회 자체서식]와 【공통 제3호서식】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세부 집행 계획

○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비 : 225백만원
○ 국제회의 지원 및 운영비 등 : 215백만원
○ 국제수산기구 민간전문가 참석 지원 : 90백만원

- 그간 집행상태, 사업수요에 따라 임금수준 변동, 사업계획 등에 따라 총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별 지원액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해수부장관[혹은 원양협회장]은 사업 점검을 위하여 현지실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지실사 시 당해 연도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음

원양협회(협력센터)

○ 분기별 익월 10일까지 추진상황[별지 제1호서식]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 대상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60일내)

《제재》

○ 사업비 지급 후 다음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함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기타 관련기관이 보조금 회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이 발견된 경우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371호, ’17.5.25),–해외수산협력센터 운영지침(해외수산협력센터 규정, ’18.1.1)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⑧ 원양산업 관련 회의 개최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과 장 양영진 사무관 김상현	044-200-5360 044-200-53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제적인 어업환경 변화(연안국의 자원자국화 및 공해상 조업규제 강화)로 인해 원양업계의 해외수역 조업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해외 수산식량자원 확보

2. 근거법령

○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경비 지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의2(국제수산 관련 기관 및 단체)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러시아 수역 조업쿼터 확보(천톤)	40.7	38.0	36.0	42.3	40.1	사업 종료 후	과거 3개년('16년~'18년) 평균 조업 쿼터 보다 3% 상향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00**	**100**	**100**	**100**
- 국 비 (민간경상보조)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원양산업과)

○ 보조사업자 :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등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사업자격>

○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단체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러시아 수역의 조업쿼터 확보를 위한 한·러 어업협상, 원양어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등 경비 지원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지원한도액 : 정액보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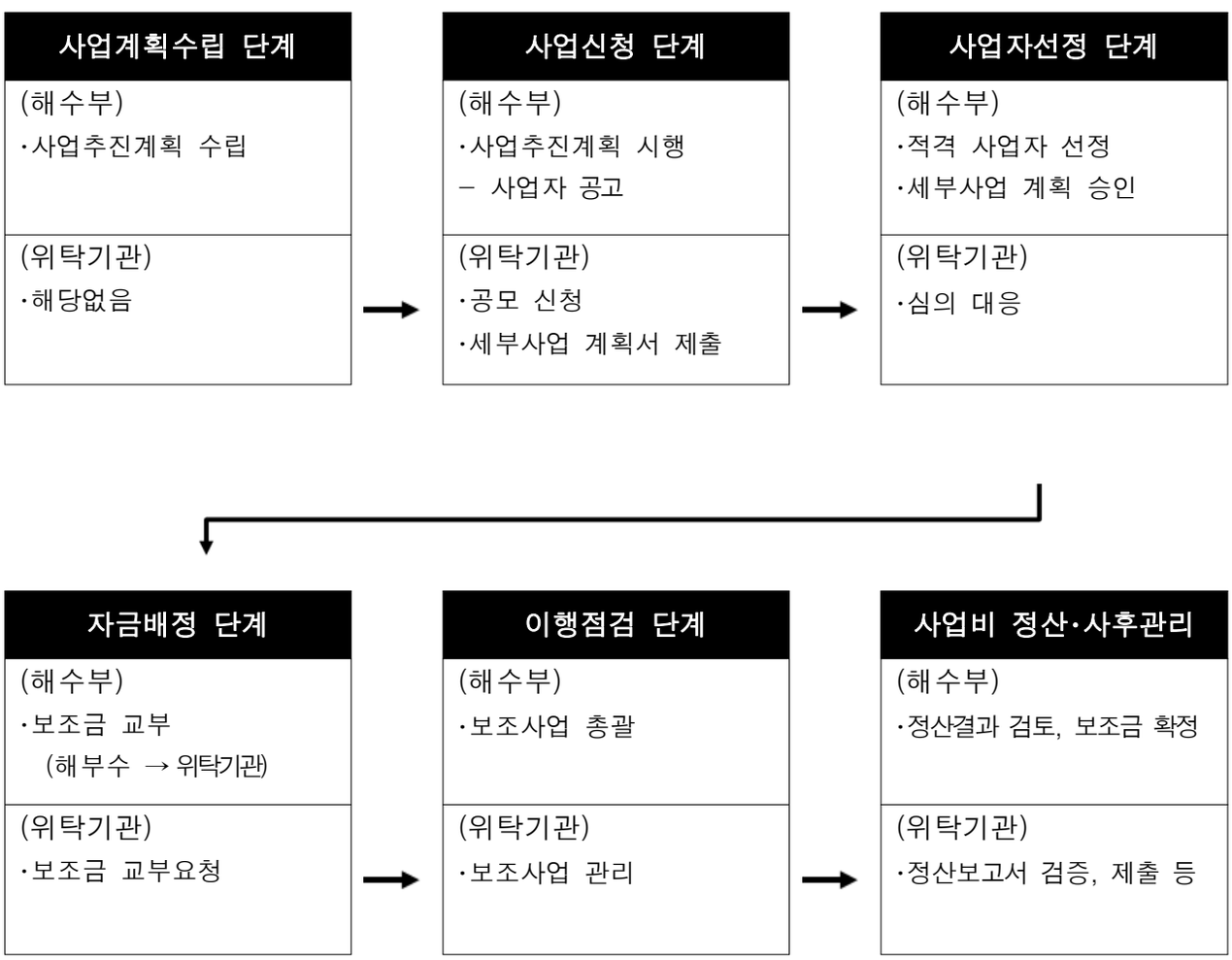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세부시행지침 수립(1월)
- 사업 추진 예산, 방법 등 포함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보조 사업자 선정(공고)

- 공고시기 : 매년 1~2월까지 모집 공고

* 필요시 신청기간의 변경 또는 별도의 신청기간을 둘 수 있음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세부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사업 계획 적정여부 및 추진 일정 등을 확인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구체적인 예상소요경비 내역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함

○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취소, 변경포함), 집행절차 등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9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통제에 불응 또는 각종 보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제출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반환하게 할 수 있음

5. 시행 단계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6.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 또는 중단된 때에는 종료(중단)일로부터 30일 이내(불가피한 경우 사유서 제출)에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 예산집행 내역서와 증빙서류 및 사업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 결과보고서를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해수부에게 제출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평가시기 : 사업 완료 이후

○ 평가방법

- 제출받은 평가결과와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8. 기타 행정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한 처리는 해수부의 지시에 따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36 국제수산기구 협상 및 대응

①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지원(WFU Pilot Program 운영)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김현태 사무관 임성규	044-200-5330 044-200-5341
부산광역시	수산자원과	과 장 임정현 사무관 김성우	051-888-5380 051-888-5383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	부 장 강진동 팀 장 양관석	051-629-5202 051-629-567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해 FAO와 공동으로 세계수산대학과 유사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증, 그 결과를 FAO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4조(수산업·어촌분야 국제협력)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한-FAO 간 수산 양식 연구 및 역량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MOU('14.1)

○ FAO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한-FAO 간 합의의사록 체결('16.7)

3. 성과목표 및 지표

○ 시범사업 석사과정 학생수 유지율(100%)

(단위 : 명)

성과지표	2019 목표치	학생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 석사과정 학생수 유지율(%)	29명	-	30	29	'19.2월	대학원 등록 기록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이후	2021년이후	2022년이후
합 계	444			
국 비	222			
지 방 비	222			
자 부 담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2016년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지역 공모」를 통해 유치후보지역으로 선정('16.2)된 부산시(국립부경대학교 포함)를 사업대상자로 함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① 일반사항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수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제3항을 위반한 자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거짓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모사업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지방비 미확보·사업 포기·지연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는 사업 포기년도 이후 향후 3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지연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1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세부사업별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2년간 사업신청 또는 지원 제한
- 상기 사항에 대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다만, 민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신청 또는 지원 제한

3. 지원 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단기훈련과정 포함)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학생지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

○ 다만, 강사료는 동 사업이 단기간에 임시로 이루지는 시범사업이고 국제기구 등 외국 저명강사의 강의 수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음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시공 및 구매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할 것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 형태**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장
- 지원범위 :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인 부경대학교 세계수산대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인력채용, 대학운영, 학생지원 등 사업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 **2019년도 지원 및 사업 의무량**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식)	지원율 (국비:지방비)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19년 지원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담
o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지원 (시범사업 운영)		50:50		3,393	444	222	222	-
① 인건비	1		'17~'19	1,028	105	52.5	52.5	-
② 대학운영비	1		'17~'19	826	98	49	49	-
③ 학생지원비	1		'17~'19	1,539	241	120.5	120.5	-

* '18년 이월 예산이 최종 확정 시 '19년 내역별 사업비를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확정 통보, 확정 이후 내역별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동 사업은 해양산부, 부산광역시, 부경대학교가 참여하여 지자체 비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며, 주관기관(해양수산부), 관리기관(부산광역시), 추진기관(부경대학교)로 분류하여 추진

○ 또한, 사업은 사업계획 → 신청 → 선정→ 자금배정 → 이행점검→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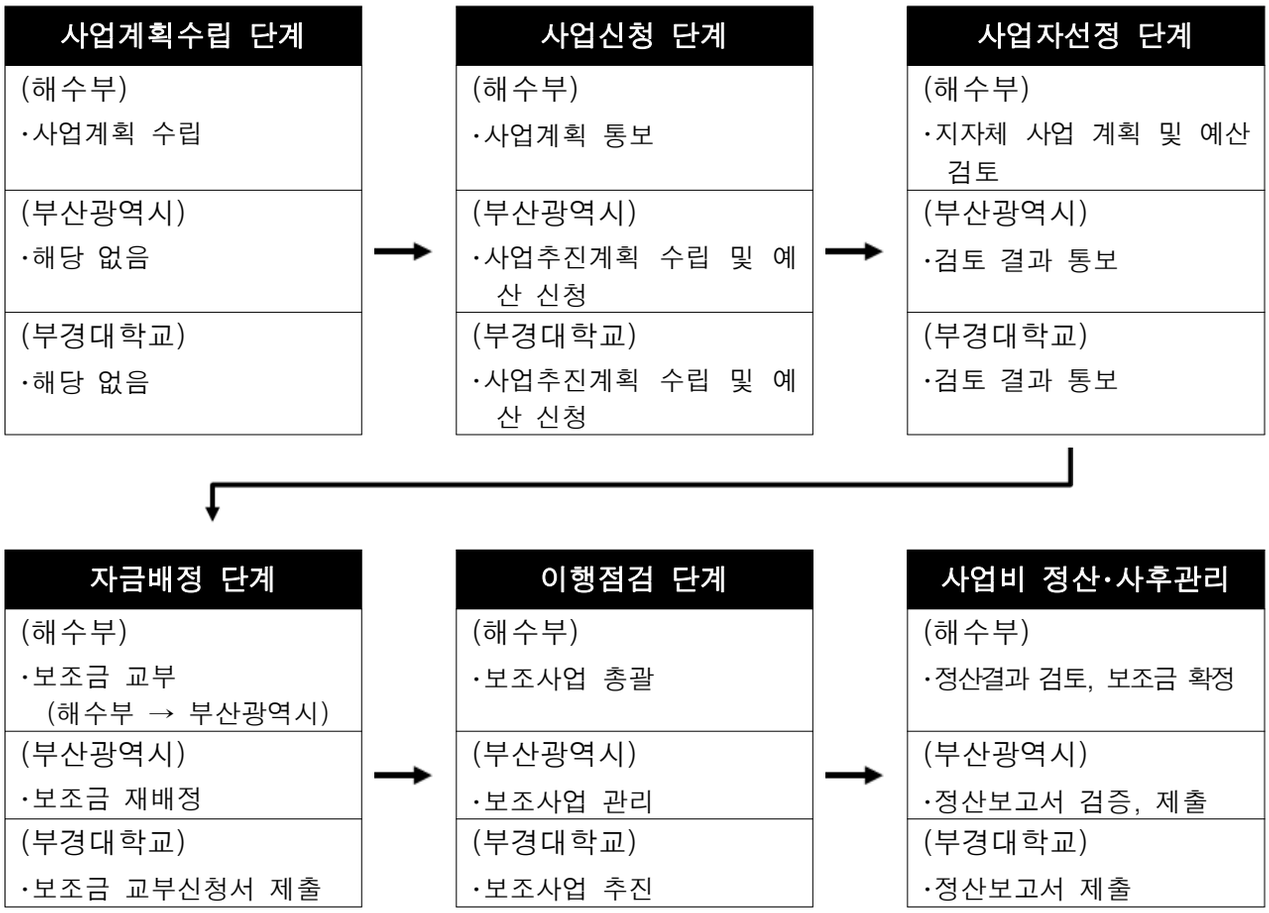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 2019년도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FAO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추진 기본계획 시달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FAO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신청

국립부경대학교

○ 부경대학교는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을 참고, FAO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에 사업 신청

3. 사업 시행 단계

부산광역시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지침서를 기본으로 하여 세부사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 사업 시행 중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국립부경대학교

○ 부경대학교는 부산광역시의 행사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WFU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직원 채용, 학생 모집, 학사운영, 학생지원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 부경대학교는 필요시, 사업관계기관 외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및 FAO 프로그램 조정관 등과 시범사업 운영에 대해 적극 협력

4. 자금배정 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부산광역시 ⇒ 국립부경대학교

○ 교부조건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 및 정산

해양수산부

○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1/4분기내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국립부경대학교

○ 부경대학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에 보조금 교부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운영상황을 점검(분기 1회 이상)

- **점검항목** : 학생 모집 및 관리, 교수(강사) 및 직원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대학원 학칙 및 운영규정, 대학원 및 단기훈련과정 운영 상황 등 점검

부산광역시

○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운영상황을 점검 및 보고(분기 1회 이상)

- **점검항목** : 보조금 신청 및 집행, 학생 모집 및 관리, 교수(강사) 및 직원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대학원 학칙 및 운영규정, 대학원 및 단기훈련과정 운영 상황 등 점검

국립부경대학교

○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운영상황을 보고(월 1회이상)

- **점검방법** : 행사 준비 상세 점검리스트를 마련하여 자체 점검 및 운영위원회 개최 시 수시 및 정기 점검 실시

《사업비 정산》

부산광역시

○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등 관계규정에 의함

○ **국립부경대학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부산광역시에 제출

○ **부산광역시장**은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될 수 있음

《사후관리》

부산광역시

○ 세계수산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후속조치를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점검 및 관리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 규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당해 년 사업 종료 후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제시한 통계를 근거로 익년도 1월말까지 확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FAO 사무국, 운영위원회를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21년 FAO 총회에 상정하여 194회원국의 평가 및 의결

○ 시범사업 추진결과가 2021년 FAO 총회에 승인을 받을 경우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본 사업 추진, 미승인시 사업 추진 재검토

【사업 추진 표준프로세스】

<지자체 직접사업>

해양수산부	→	부산광역시	→	국립부경대학교
·기본 계획 및 지침 통보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 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보고 ·사업 시행 및 관리 ·추진상황 점검·보고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 ·운영위원회 설립 및 운영

Ⅳ. 2020년도 신규사업 수요조사

○ 해당 없음

Ⅴ.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부담	계

일정		달성률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추진계획	완료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② 한-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과 장 이규선 사무관 최현수	044-200-5380 044-200-538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한-뉴질랜드 FTA 협정 시 양국의 수산물 교역촉진 및 협력강화를 위해 수산협력사업을 반영, 양국 정부의 공동부담으로 우리측의 수산분야 학생·전문가 등에게 뉴질랜드 현지 교육 및 훈련기회 제공

-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영어권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어촌 지역 청소년들에게 어학연수 기회 제공

- (수산업 산학연계 훈련비자) FTA 체결 등에 따른 시장 개방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수산계열 학생에게 뉴질랜드 현지에서 어학 및 직무교육 기회제공

- (수산협력장학금) 수산업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 (수산전문가 훈련) 1차산업 선진국인 뉴질랜드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양국간 공동연구 및 교류 촉진

2. 근거법령

○ 한-뉴질랜드 FTA 제14장(농수산협력), 한-뉴질랜드 FTA 농림수산협력에 대한 이행약정((한)농정원-(뉴)ENZ)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19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프로그램 만족도	94.35	-	93.4	90.2	91.6	매년 12월	연수생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100점 만점 환산)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307	307	307	307
- 국 비	307	307	307	307

Ⅱ. '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뉴)에듀케이션 뉴질랜드(Education NewZealand) 간 체결된 양해각서('16.3.21.)에 따라 양국의 사업관리기관을 지정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한-뉴질랜드 FTA 협정('15.12) 및 이에 근거한 (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뉴)에듀케이션 뉴질랜드(Education New Zealand) 간 체결된 양해각서('16.3.21.)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동 사업의 단일 시행자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기준을 따름

3. 지원대상

○ (어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최대 23명) 어업인 자녀 중·고등학생

○ (수산업 훈련비자, 최대 8명) 수산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해양수산업 관련 학과 대학생(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 (수산협력장학금, 최대 2명) 대학교 수산·양식업 관련학과 졸업생으로 뉴질랜드 대학원 석·박사 과정 지원생

○ (수산전문가 훈련, 최대 6명) 수산분야 전문가(과학자, 공무원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대상자의 항공료, 보험료, 대학원장학금, 체재비, 사업관리비 등

* 뉴질랜드 정부와 공동부담(5:5)하되, 수산업 훈련비자는 한국측 전액 부담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민간경상보조)

○ 지원예산 : 307백만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당해연도 한국-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2. 사업신청 및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2017년도 한국-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통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은 해수부가 통보한 추진계획 및 시행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3.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서(개산급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내역사업별로 지급 요청한 사업비에 대하여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에서는 한국-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를 검토하고 교부결정 통보

4.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실적 점검(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행관리》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한국-뉴질랜드 FTA 수산협력사업을 위해 사전에 뉴질랜드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프로그램별 교육과정을 추진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사업 프로그램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문 게시 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및 알림 활동 추진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프로그램 목적에 적합한 지원자를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고 뉴질랜드 담당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일정에 따라 해당 사업집행

○ 분기별 사업 추진경과 및 실적을 보고(농정원)

○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 평가 및 설문 조사 실시

5.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완료보고서를 평가 및 평가결과를 차기년도 사업에 반영

○ 사업비 정산, 사업 완료 및 예산집행 결과 점검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비 지급 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지원사업 정산이 완료 및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

○ 분기별 사업 추진경과 및 실적을 보고

○ 사업완료 후 추진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③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지원(WFU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김현태 사무관 임성규	044-200-5330 044-200-5341
부산광역시	수산자원과	과 장 임정현 사무관 김성우	051-888-5380 051-888-5383
국립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	부 장 강진동 팀 장 양관석	051-629-5202 051-629-567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해 FAO와 공동으로 세계수산대학과 유사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 및 보완하여 FAO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4조(수산업·어촌분야 국제협력)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한-FAO 간 수산 양식 연구 및 역량구축을 위한 상호협력 MOU('14.1)

○ FAO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한-FAO 간 합의의사록 체결('16.7)

3. 성과목표 및 지표

○ 시범사업 석사과정 학생수 유지율(100%)

(단위 : 명)

성과지표	2019 목표치	학생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 석사과정 학생수 유지율(%)	30명	-	30	29	'20.1월	대학원 등록 기록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이후	2021년이후	2022년이후
합 계	1228	784		
국 비	614	392		
지 방 비	614	392		
자 부 담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부산광역시(시행기관 : 국립부경대학교)

* 2016년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지역 공모」를 통해 유치후보지역으로 선정('16.2)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사업 자격 : 2016년「FAO 세계수산대학 유치지역 공모」를 통해 유치후보지역으로 선정('16.2)된 지자체와 그 시행기관

○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

① 일반사항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등)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환수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제3항을 위반한 자는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거짓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모사업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제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② 지방비 미확보·사업 포기·지연 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사업자는 사업 포기년도 이후 향후 3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지연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1년간 사업 신청 또는 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세부사업별 집행이 부진한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2년간 사업신청 또는 지원 제한
- 상기 사항에 대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발생 시 별도 통보. 다만, 민간사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신청 또는 지원 제한

3. 지원 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동 사업을 시행하는 국립부경대학교, FAO 회원국 개도국 학생, FAO 사무국 직원과 그 추천자, 작업반 참여자, 운영위원회가 지원을 결정한 사업 및 대상

○ 자금의 사용용도 :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사업(단기훈련과정 포함)의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학생지원비, 작업반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

○ 다만, 강사료는 동 사업이 단기간에 임시로 이루지는 시범사업이고 국제기구 등 외국 저명강사의 강의 수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음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시공 및

구매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할 것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 형태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시행기관 : 부산광역시장
- 지원범위 :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인력채용, 대학운영, 학생지원, 작업반 운영 등 사업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 비율에 따라 정산 반납

○ 2019년도 지원 및 사업 의무량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사업량 (식)	지원율 (국비:지방비)	총 사업기간	총 사업비	'19년 지원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담
o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지원 (WFU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50:50**		**2,012**	**1,228**	614	614	**-**
① 인건비	1		'19~'21	**793**	**440**	220	220	**-**
② 대학운영비	1		'19~'21	**98**	**54**	27	27	**-**
③ 학생지원비	1		'19~'21	**921**	**534**	267	267	-
④ 작업반운영비	1		'19~'21	**200**	**200**	100	100	-

* 내역별 기준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동 사업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경대학교가 참여하여 지자체 비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며, 주관기관(해양수산부), 관리기관(부산광역시), 시행기관(부경대학교)로 분류하여 추진

○ 또한, 사업은 사업계획 → 신청 → 선정→ 자금배정 → 이행점검→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로 추진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지자체 사업 계획 및 예산 검토
(부산광역시) ·해당 없음	(부산광역시)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신청	(부산광역시) ·검토 결과 통보
(부경대학교) ·해당 없음	(부경대학교)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신청	(부경대학교) ·검토 결과 통보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부산광역시)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부산광역시) ·보조금 재배정	(부산광역시) ·보조사업 관리	(부산광역시)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부경대학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부경대학교) ·보조사업 추진	(부경대학교) ·정산보고서 제출

1. 사업계획수립 단계

○ 해양수산부는 한-FAO 간 세계수산대학 공동 시범사업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 2019년도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사업 추진계획 수립·시달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추진 기본계획 시달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사업 신청

국립부경대학교

○ 부경대학교는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을 참고,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에 신청

3. 사업 시행 단계

부산광역시

○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지침서를 기본으로 하여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사업 추진

○ 사업 시행 중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국립부경대학교

○ 부경대학교는 부산광역시의 행사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WFU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직원 채용, 학생 모집, 학사운영, 학생지원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운영

○ 부경대학교는 필요시, 사업관계기관 외 '시범사업 운영위원회' 및 FAO 프로그램 조정관 등과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사업 운영에 대해 적극 협력

4. 자금배정 단계

○ 절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의함

○ 자금배정 : 해양수산부 ⇒ 부산광역시 ⇒ 국립부경대학교

○ 교부조건 :「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 및 정산

해양수산부

○ 부산광역시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자금의 조기집행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정산을 위해 조속히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송금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국립부경대학교

○ 부경대학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에 보조금 교부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사업을 점검(분기 1회 이상)

- **점검항목** : 학생 모집 및 관리, 교수(강사) 및 직원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대학원 학칙 및 운영규정, 대학원 및 단기훈련과정, 작업반 운영 상황 등 점검

부산광역시

○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사업을 점검 및 보고(분기 1회 이상)

- **점검항목** : 보조금 신청 및 집행, 학생 모집 및 관리, 교수(강사) 및 직원 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대학원 학칙 및 운영규정, 대학원 및 단기훈련과정, 작업반 운영 상황 운영 상황 등 점검

국립부경대학교

○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지원 사업을 점검 및 보고(분기 1회 이상)

- **점검방법** : 평가 및 보완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월별 계획 및 실적을 매월 정기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보고

《사업비 정산》

부산광역시

○ **절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 규정」등 관계규정에 의함

○ **국립부경대학교**는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부산광역시에 제출

○ **부산광역시장**은 정산결과를 종합 검토, 보조금 정산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될 수 있음

《사후관리》

부산광역시

○ 세계수산대학원 설립 및 운영, 작업반 및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부경대학교에서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점검 및 관리

○ 지급 보조금의 환수 등

-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 규정」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6.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당해 년 사업 종료 후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제시한 통계를 근거로 익년도 1월말까지 확인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FAO 사무국, 운영위원회, 작업반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21년 FAO 총회에 상정하여 194회원국의 평가 및 의결

○ 시범사업 추진결과가 2021년 FAO 총회에 승인을 받을 경우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본 사업 추진, 미승인시 사업 추진 재검토

【사업 추진 표준프로세스】

<지자체 직접사업>

해양수산부	→	부산광역시	→	국립부경대학교
·기본 계획 및 지침 통보 ·예산배정 및 통보 ·추진사항 점검·확인		·사업추진계획 수립·보고 ·사업 시행 및 관리 ·추진상황 점검·보고		·사업시행 및 결과보고 ·운영위원회 설립 및 운영 ·작업반 구성 및 운영

Ⅳ. 2020년도 신규사업 수요조사

○ 해당 없음

Ⅴ.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부담	계

일정		달성률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추진계획	완료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37 연안국과의 협력(ODA)

① 2019년도 연안 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김현태 사무관 김세희	044-200-5330 044-200-53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원국 주민의 식량자원 위생수준 제고 및 해외어장의 안정적 확보 지원
- 소규모 수산시장 건설 지원 및 수산관련 기자재 지원

2. 근거법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 수산 자원 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수산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보조 및 융자) ①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 수산 인프라지원 준공(개소)	1	-	-	1	1	익년 2월	수원국 수산부장관명의 인수확인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1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100	1,100	1,100	1,100
- 국 비	1,100	1,100	1,100	1,100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 해외 어장의 안정적 확보 및 어시장 건설 및 물품지원 등을 위해 수원국 수산당국과 체계적인 협력관계가 유지·관리되고 있는 (특)한국원양산업협회를 사업대상자로 함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사업자 자격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 안정적인 해외수산 자원 확보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키리바시 및 가나, 세네갈에 대한 어시장 건설, 관리기술 이전 및 수산관련 기자재 물품지원

○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선정취소기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특)한국원양산업협회

-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보조 및 융자)에 의거, 원양산업협회에서 추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나, 세네갈)** 소규모 수산시장 건설 지원 및 관리기술 이전

- 세네갈, 가나 어시장 건설 및 키리바시 수산시장 물품 지원
- 어시장 건설 공사 및 물자구매 발주, 공사 진행 관리
- 어시장 건설 지원, 관리기술 이전 전문가 파견
- 물자 수송, 수원국 수취 확인, ODA 수요조사 및 정보조사

○ **(키리바시)** 수산관련 기자재 물품지원

- 수산관련 기자재 구입
- 물자 수송, 수원국 수취 확인, ODA 수요조사 및 정보조사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지원한도

(단위:백만원)

항	목	예산	산 출 내 역
위탁 사업비	1. 물품공여비	210	○ **(키리바시) 물품 구매비, 해상운임 등** = 210 - 키리바시 수산인프라 물품구매 - 육상·해상 운임, 작업비, 통관료, 보험료 등
	2. 건설비	840	○ **(세네갈, 가나) 어시장 건설비 등** = 840 - 냉동, 제빙기 및 어시장 건설비용
	3. 국외여비	22.5	○ **물자전달식 개최 등 국외여비** = 22.5 - 준공식 및 물자전달식 등 개최 - ODA 정보조사, 컨퍼런스 참석 등
	4. 기타부대비용	27.5	○ **기타부대비용** = 7 - 국내 출장비 - 정산보고서 감사 - 우편발송 - 전달식 기념품 제작 - 토너, 잉크 등 소모품 구매 ○ **자문연구비** = 20.5 - 전문가파견, 사업평가 등
합계		1,100	

○ 사업 의무량

- 가나, 세네갈 수산시장 건설 및 전문가 파견 교육 실시
- 키리바시 수산관련 기자재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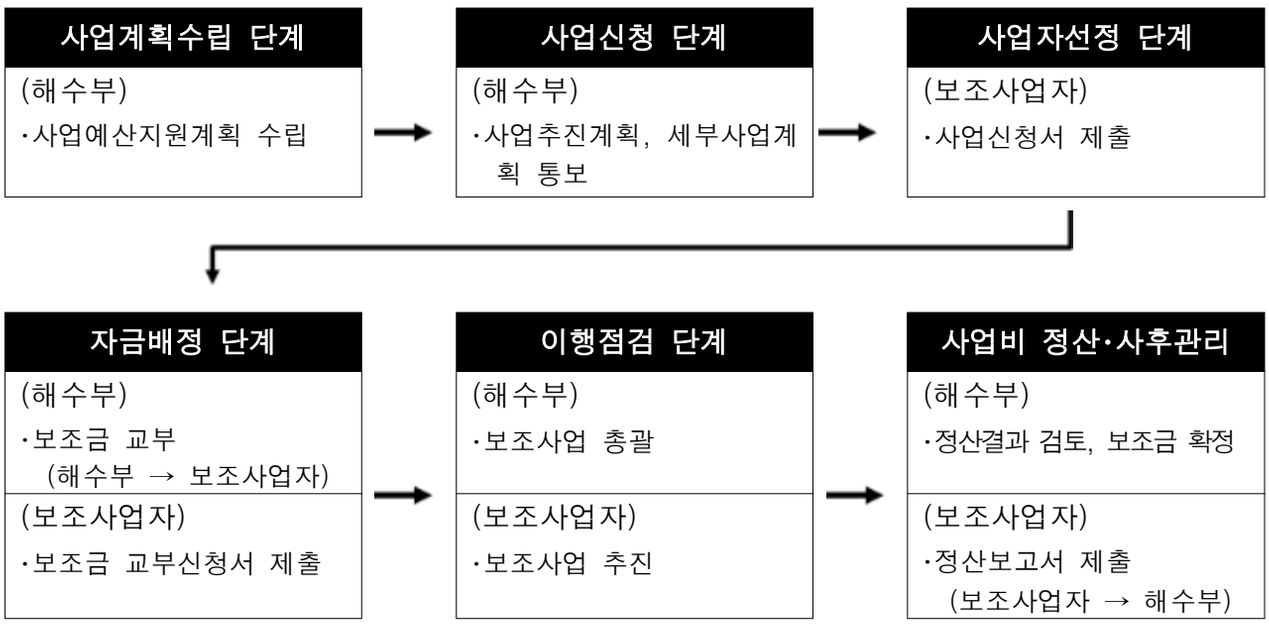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 수립(매년 1월)

- 사업 추진 예산, 방법 등 포함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연안 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특)한국원양산업협회에 통보

3. 사업자선정 단계

(특)한국원양산업협회

○ (특)한국원양산업협회는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하여 사업신청

<사업신청 처리절차>

○ 세부사업계획 시달(해양수산부) → 사업추진계획수립 보고((특)원양산업협회) → 보조금 교부신청((특)원양산업협회)*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해양수산부) → 개산급 신청((특)원양산업협회) → 개산급 지급(해양수산부) → 사업정산

* 사업추진계획과 보조금 교부신청은 동시가능

4. 자금배정 단계

(특)한국원양산업협회

○ (특)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는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개산급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 개발도상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및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고 교부결정 통보

(특)한국원양산업협회

○ (특)한국원양산업협회는 내역사업별로 지급 요청한 사업비에 대하여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5. 이행점검단계

(특)한국원양산업협회

○ (특)한국원양산업협회는 세네갈, 가나의 어시장건설 지원사업을 발주,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 (특)한국원양산업협회는 키리바시에 대한 물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수요조사 물자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키리바시 지원 물자의 발주, 해상운송, 수원국 수취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어시장 건설 및 물품운송 완료 후 전문가 파견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향후 ODA 수요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비 지급 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되는 경우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특)한국원양산업협회

○ (특)한국원양산업협회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정산 보고서 제출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에서는 정산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추진실적을 평가, 보조금을 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지침 개정 등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 환류

7. 기타사항

○ (특)한국원양산업협회는 사업추진상황 중간보고를 10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완료시에는 실적 및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② 2019년도 연안·도서국 해양수산 기술 및 정책연수교육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과 장 김현태 사무관 김세희	044-200-5330 044-200-533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개도국의 어업종사자, 대학생, 수산관련 공직자, 연구자 및 기술자 등 수산업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산분야의 교육훈련을 통해 우호협력 증진

- 연안도서국 수산교육과 기술 및 정책 연수 프로그램 운영

2. 근거법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③ 국가등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 「원양산업발전법」 제18조(국제수산협력사업의 촉진 및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협력체계 구축과 원양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해외수산 자원 확보 등 국제수산협력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수산 관련 기관·단체의 국제수산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보조 및 융자) ① 정부는 관련회사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 추진에 필요한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사용되는 비용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연안도서국 해양 · 수산기술 및 정책연수 교육 수강생 만족도(%)	90	90	90	90	90	매년말	∑(사업별 수강생 만족도× 사업별 가중치) * 사업별 가중치는 당해년도 투입예산으로 산출 * 각 사업별 교육기관이 수강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시행(리커트 척도 5사용, 100점 만점 환산)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200	100	200	200
- 국 비	200	100	200	200
- 지방비				
- 자부담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단법인 해외어업협력센터

- 안정적인 해외수산 자원 확보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도모를 목적으로 연안 개도국과의 국제협력 증진 및 기술 강의를 위해 해외어업협력센터를 사업대상자로 함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우리나라 원양산업과 관계가 깊은 아프리카, 아시아, 남태평양 어업국을 대상으로 당해 국가의 수산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과 수산 정책 수립과 집행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교육 사업비 지원

○ 선정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선정취소기준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연안개발도상국 수산 공무원

○ 지원자금 사용용도

연안수산개도국 수산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초청연수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지원한도

(단위: 백만원)

총 지급예산	교관연수사업	합계
100	100	100

1. 예산계획

항 목	산출내역			합 계
초청경비	단가	인원	일수	
1. 항공료	1,168,797원	10명		11,687,975원
2. 생활비				29,020,000원
- 일비	22,000원	10명	21일	4,620,000원
- 식비	40,000원	10명	21일	8,400,000원
- 숙박비	80,000원	10명	20일	16,000,000원
3. 준비금	60,000원	10명	1회	600,000원
4. 보험료	50,000원	10명	1회	500,000원
소 계				41,807,975원
연수경비				
1. 기관시설운영비	1,500,000원	1회	1회	1,500,000원
2. 강사료				11,440,000원
- 이론 및 현장	1,000,000원	10명	1일	10,000,000원
- 국별보고, 액션플랜	240,000원	2일	3시간	1,440,000원
3. 당일견학경비				3,900,000원
- 버스 임차료	300,000원	1대	13일	3,900,000원
4. 친교행사비	30,000원	20명	2회	1,200,000원
5. 과정진행경비	6,000원	10명	21일	1,260,000원
6. 전담자 인건비	118,064원	1명	21일	2,479,334원
7. 연수보조인력	78,921원	1명	21일	1,657,341원
8. 과정관리인건비	1,745,310원	1명	12개월	20,943,720원
소 계				44,380,395원
위탁수수료				13,314,118원
예비비				497,512원
합 계				**100,000,000**원

* 단, 항목간 예산범위를 당초와 달리 집행시 우리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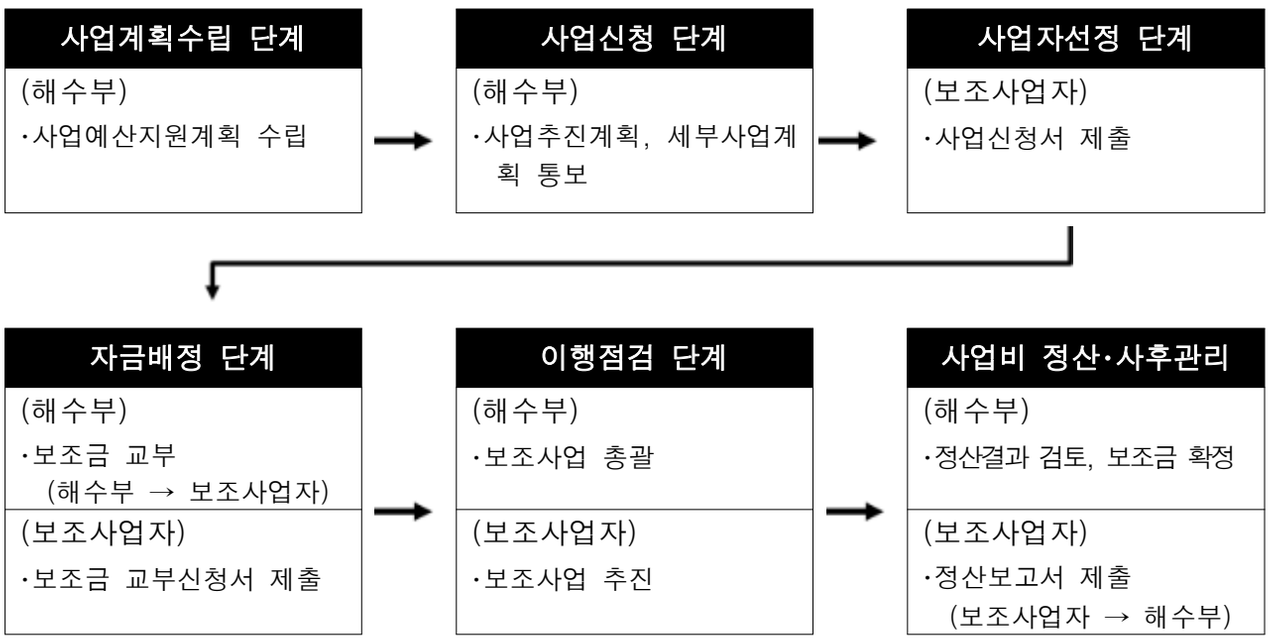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계획 수립(매년 1월)

- 사업 추진 예산, 방법 등 포함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연안·도서국 해양수산 기술 및 정책 연수교육사업 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해외어업협력센터에 통보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외어업협력센터

○ 해외어업협력센터는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하여 사업신청

< 사업신청 처리절차 >

○ 세부사업계획 시달(해양수산부) → 사업추진계획수립 보고(해외어업협력센터) → 보조금 교부신청(해외어업협력센터)*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해양수산부) → 개산급 신청(해외어업협력센터) → 개산급 지급(해양수산부) → 사업정산

* 사업추진계획과 보조금 교부신청은 동시가능

4. 자금배정단계

해외어업협력센터

○ 해외어업협력센터에서는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개산급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에서는 연안·도서국 해양수산 기술 및 정책 연수교육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및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고 교부결정 통보

해외어업협력센터

○ 해외어업협력센터는 내역사업별로 지급 요청한 사업비에 대하여 적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5. 이행점검단계

《이행관리》

○ 해외어업협력센터는 연안·도서국 해양수산 기술 및 정책 연수 교육사업을

위해 사전에 예비 초청 대상국을 선별하여야 한다.

○ 예비 초청 대상국은 남태평양, 아시아, 아프리카 연안국 3개국 이상 초청 교육 실시로 하여야 한다.

○ 해외어업협력센터는 예비 초청 대상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초청인원을 검토하여야 한다.

○ 해외어업협력센터는 교육목적에 접합한 지원자를 최종 초청국으로 선정하고 초청자를 접수하여야 한다.

○ 해외어업협력센터는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에 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향후 ODA 수요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비 지급 후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즉시 회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를 포함)
-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 되는 경우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외어업협력센터

○ 해외어업협력센터는 사업 종료 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에 정산보고 제출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에서는 정산결과 보고서를 검토하고 추진실적을 평가, 보조금을 확정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지침 개정 등 추진하여 사업의 효율적 추진 도모

○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 환류

7. 기타사항

○ 해외어업협력센터장은 사업추진상황 중간보고를 교육 개시 15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완료시에는 실적 및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별도 지시하는 바에 의함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38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① 2019년도 근해어선 감척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 장 윤분도 사무관 강문표 주무관 전진배	044-200-5510 044-200-5516 044-200-5517
시·도, 시·군·구	수산담당과	지자체 감척 담당자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근해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2. 근거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8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년	15년	16년	17년		
척당 생산금액 증가율(%)	1.5	1.8	1.23	2.6	-	'18.12월	어업생산동향조사(통계청) 및 어선통계(우리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4,840**	**4,840**	**4,840**	**4,840**
- 국 비(100%)	4,840	4,840	4,840	4,840

* 근해어선 직권감척 예산 기준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자율감척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감척 대상 업종, 기본계획을 토대로 어선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에 따른 감척 대상 업종 및 어업의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

- 우선순위 : ①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②규모가 큰 어선, ③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④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⑤「수산자원관리법」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 직권감척 :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에 따른 감척 대상 업종 및 기본계획을 토대로 어선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에 따른 감척 대상 업종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0조·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감척대상자를 선정한 업종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 근해어선 자율감척 >

○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잔존가치 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어선 해체처리비 및 출장여비 등이 포함된 금액임

○ 폐업지원금은 해당 어업별·톤급구간별로 조사된 금액의 최대 80%(붙임 1. 기초가격)까지 지원

○ 잔존가치평가액은 개별 어선별로 평가하여 100%로 지원

○ 선단조업 어선 중 본선이 침몰한 어선은 폐업지원금(50% 정액) 및 잔여어선의 잔존가치평가액을 지급(조업실적이 붙임 2.2.가.1)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 폐업지원금(50% 정액) : 붙임 1 기초가격의 5/8

○ 어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조업실적이 60일 미만)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

○ 기선저인망어업의 쌍끌이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1척이 침몰하여 공고일전부터 1척으로 조업한 경우 그 잔여 어선에 대한 쌍끌이 기준 폐업지원금의 50%를 수령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1척으로 조업한 기간이 시행기준일 현재 3년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조업기간이 15일 이상은 1월,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음)

※ 수령액=A(36-B)/36개월×C+B(시행일기준-잔여조업시작일)/36개월×C
A : 선단조업기간(월) / B : 잔여 어선 조업기간(월) / C : 폐업지원금(50% 정액)

○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선단조업 어선 중 부속선인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만 감척할 경우 잔존가치평가액만 지급한다. 이 경우 당해 업종별 수협은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등선·어획물운반선을 감척한 선단이 재 매입한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에 대해서는 향후 감척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을 본선의 어선원부에 기재

○ 지방자치단체장 및 어업자 단체장은 지역 및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단체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기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 근해어선 직권감척 >

○ 사업 집행주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의 폐업지원금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한다. 이 경우 기존의 감정평가 기관을 활용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사업 집행주체는 폐업지원금 산정 용역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용역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폐업지원금은「수산업법 시행령」별표 4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된 평년수익액의 3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비율(연안어선 : 100%, 근해어선 80%)을 곱한 금액을 지원한다.

- 폐업지원금 산정 용역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한 후 사업 집행주체가 감척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납부시기·금액·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 집행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어업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어선원 1인당 지급금액은「선원법」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선원 최저임금 고시” 중 “어선원의 재해보상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하되, 지급대상 인원은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사업 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5), 출입항신고기록, 근로계약 관련서류, 선원명부, 어선검사증서 등 필요한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

- 지급대상은 지정감척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 통보일 사이에 감척대상 어선에 승선한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선원으로서, 조업중단일까지 승선하여 노무를 제공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어업종사자가 어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은 지급신청서의 어선원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되, 개인별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선원별 지급동의서를 제출받아 어업자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사업 집행주체 및 어업자 단체장은 지역 및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단체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4. 지원형태

○ 지원조건(재원) : 직접수행(국고 100%)

5. 기타사항

○ 어선감척 신청자격·조건, 신청절차·방법,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처리 및 대상자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어선감척 신청 및 대상자 지원 등 절차(붙임 2)를 참조하여 감척을 추진

○ 폐업지원금의 어업별·톤급별 기초가격(붙임 1)

○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예시)서(붙임 3)

○ 어선·어구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붙임 4)

○ ‘18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결과 보고서(붙임 5)

○ 어선원 실태조사서(붙임 6)

○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서식 1)

○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서식 2)

○ 어선·어구 매입신청서(서식 3)

○ 폐업지원근 지급신청서(서식 4)

○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5)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	사업신청 단계	⇒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근해어선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통보 ·감척 안내 공고		(해수부) ·감척 대상자 심의 실시(중앙수산조정위원회 개최)
(시·도, 시·군·구) ·연안어선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도,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추진계획 보고(해수부)		(시·도, 시·군·구) ·감척 대상자 심의 실시(시·도수산조정위원회 개최)

자금배정 단계	⇒	이행점검 단계	⇒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지자체 통보(매년 1월)

-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목표량
- 감척 대상 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 어선 감척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어선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감척 안내 공고(매년 1월)

- 어선감척사업 추진 필요성, 목표량 및 추진계획
-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 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지자체

○ 사업계획 수립 : 지자체는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 공고시기 : 매년 1월

지자체(사업자)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

○ 신청절차 :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구비서류 : 공고문에 명기된 제출서류를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지자체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적 등에 대해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집행지침 및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을 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준수 여부(사업자 공모·선정 및 집행 등), 사후 정산 절차 준수 여부 등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지자체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시·군·구)에 대해 보조사업 집행지침 및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을 점검(매년 2회 이상)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및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어선감척 대상자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서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선체 확인 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반납 및「형사소송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원을 제한

《사업비 정산》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지자체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6.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 지자체에서 추진한 감척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

지자체

○ 집행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 지자체에서 추진한 감척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등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감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물량에 맞는 지방비 확보 등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예산 신청 포함)하여 제출('19.5월까지)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폐업지원금의 어업별·톤급별 기초가격

근해어선 감척사업 폐업지원금의 기초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어업 종류별	톤급단위(본선기준)	기초금액	비 고
대형기선저인망(외끌이)	구분 없음	310,664	
대형기선저인망(쌍끌이)	100톤 미만	390,815	* 2척 기준금액
	100톤~130톤 미만	625,384	
	130톤 이상	740,563	
중형기선저인망 (동해구기저)	구분 없음	296,423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외끌이)	구분 없음	504,834	
중형기선저인망 (서남구 쌍끌이)	50톤 미만	479,967	* 2척 기준금액
	50톤 이상	790,299	
근해트롤(대형트롤)	구분 없음	648,961	
근해트롤(동해구트롤)	40톤 미만	252,989	
	40톤 이상	685,621	
근해선망(대형선망)	100톤 미만	994,824	* 선단 기준금액 (본선1, 등선2, 운반선3척)
	120톤 이상	2,232,768	
근해선망(소형선망)	구분 없음	264,660	* 선단 기준금액
근해채낚기	35톤 미만	167,990	
	35톤~65톤 미만	204,956	
	65톤 이상	237,167	
기선선인망 (기선권현망 제1구)	200톤 미만(선단기준)	418,477	* 선단 기준금액 (본선2, 탐선1, 가공 및 운반선2척)
	200톤 이상(선단기준)	580,500	
근해자망	35톤 미만	148,242	
	35톤~65톤 미만	227,783	
	65톤 이상	286,299	
근해안강망	35톤 미만	149,505	
	35톤~65톤 미만	202,154	
	65톤 이상	253,112	

잠수기	1구	구분 없음	233,480	
	2구	구분 없음	152,154	
	3구	구분 없음	152,269	
	4구	구분 없음	113,139	
	5구	구분 없음	220,501	
근해통발(장어통발)		35톤 미만	180,672	
		35톤~65톤 미만	237,419	
		65톤 이상	299,097	
근해통발(기타통발)		35톤 미만	189,999	
		35톤~65톤 미만	218,729	
		65톤 이상	311,104	
근해통발(문어단지)		구분 없음	168,500	
근해형망		구분 없음	157,691	
근해연승		20톤 미만	132,931	
		20톤~35톤 미만	177,382	
		35톤 이상	221,770	
		8톤~20톤 미만	238,409	일본EEZ허가
		20톤~35톤 미만	261,950	일본EEZ허가
		35톤 이상	311,119	일본EEZ허가
자리돔들망		35톤 미만	75,789	
		35톤~65톤 미만	91,012	
		65톤 이상	101,439	
봉수망		35톤 미만	75,789	
		35톤~65톤 미만	91,012	
		65톤 이상	101,439	

※ 위 기초기격은 3-①(근해어선 자율감척)에 따라 80%를 적용하여 환산된 결과임

[붙임 2] 근해어선 감척 신청 및 대상자 지원 등 절차

1. 사업계획

가. 추진절차

1) 법 제9조제1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감척사업 지침 시달 및 감척 사업자 신청 안내공고

2) 감척 대상자 선정신청

3)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4)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

5)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 매입지원금)

나.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

1)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어선 감척 대상자 신청서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대상 어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

2) 해양수산부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결과를「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3항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도를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작성·통보

3)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이하 “잔존가치평가액”이라 한다)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결과 사업비 과부족이 발생한 경우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비 내역서 조정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4) 2019년도 사업집행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신청공고를 하지 않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에는 2019년도 사업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추진

다. 사업 집행체계

1) 해양수산부는 소요예산 확보, 사업집행지침 수립, 사업대상자 잠정 선정, 예산 및 물량배정 등의 업무를 분담

2) 시·도지사는 다음의 업무를 분담

(1) 사업 안내 등 홍보

(2) 사업 참가자 서류심사 및 접수

(3) 어선·어구 등의 확인 및 잔존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4) 최종 사업대상자와 어선·어구의 인도·인수

(5) 어선·어구 등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6) 지원금 지급 및 정산

3) 시·도지사는 사업 참가자 서류 심사 및 접수, 감척어선 관리, 폐선처리, 지원금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4) 시·도지사는 감척어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어선법」제41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다.

가) 어선감척사업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해어선 감척대상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자로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공동 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자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대상 어업에 속한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시행 기준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선박안전조업규칙」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업실적을 산출

(다)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이 실제 조업여

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관할 어촌계단위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4) 쌍끌이어업에서 1척이 조업실적 산정 기간 중 다른 어선으로 대체된 경우 대체한 현행 어선의 조업실적과 대체된 종전 어선의 조업실적을 합산하여 조업실적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1척은 사업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일본 EEZ 조업허가(연승) 어선은 위 요건을 충족하고, 일본 EEZ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 기간 중 EEZ 조업실적은 없으나, 어획할당량을 다른 어선에 전배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 조업실적은「일본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대한민국의 국민 및 어선이 어획하는 것에 관한 절차규칙」의 어획실적 보고 자료로 확인한다.

(나) 전배 완료일은 일본국 어획할당량 변경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 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선박 검사증서 효력 만료 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류 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 신청일 이후에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을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최종 감척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지 않을 때에는「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어선을 상속받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참가자격이 없다.

가) 어선감척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국제 감척, 근해어선감척, 연안어선 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정리사업, 태풍피해지원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하였던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만, 기존에 감척어선 이외에 다른 어선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반선만을 감척한 자는 예외로 한다.

(2)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3) 어업경쟁력 강화 등 업종 자체 구조조정을 위해 선단조업 어선 중 부속선인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만을 감척하고, 재 매입한 등선 및 어획물운반선을 소유한 자

나)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2-가-1)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다)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나. 선령

○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이 경과한 어선(직권감척은 제외)으로 하고,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본선의 선령을 기준으로 한다.

3. 어선감척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신청안내

1)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감척 신청기간, 대상자 선정기준,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어선 감척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근해어선 감척사업 안내 공고문”을 신청기간 개시일 15일 전까지(직권감척은 12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각 시·도에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통보된 공고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관련 행정기관, 관할 수협 및 어촌계,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

1)「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를 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서류

가)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서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다. 신청서의 처리절차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기간이 마감되면 대상 어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상 어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 및 어업자에게 통보한다.

3) 시·도지사는 참가어업인의 요구 시 본인의 시·도내 우선순위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4) 신청결과 신청자가 제시한 금액이 기초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무효이다.

5) 시·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붙임 5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국자료를 취합하여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의 신청자를 해당 이월예산의 범위에서 먼저 선정한 이후 2018년도 사업비 분을 선정한다.

6)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물량분에 대하여 추가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라.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1)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결과 명단을 통보 받은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에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중도 포기, 선박멸실 등으로 인해 예비후보자 중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열이 가장 후순위자의 폐업지원금 신청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통하여 추가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1)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감정평가 기관을 활용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3항 별표(붙임 4)에 의한다.

3) 시·도지사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4)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한 후 시·도지사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납부시기·금액·납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5.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1)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이하 “최종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신청기간을 정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1)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2) 중앙수산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어선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관계 공무원 및 어업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6.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가. 어선감척 대상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척대상 어선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 집행지침에 의한 자격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어선감척 대상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감척대상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7. 폐업 어선·어구 등 처리

가. 감척 어선의 인도 등

1) 어선감척 대상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시·도지사는 사업비 지급전까지 최종 사업대상자가 어선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을 인도 받은 후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감척 대상어선이 폐선 처리되기 직전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을 때 감정평가시의 목록과 대비하여 변동 및 누락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인도받아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았을 때 지체 없이 일선수협에 통보하고, 일선수협은 해당 어선의 유류공급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이 공익적 성격의 사업에 감척어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 승인(지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해외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인공어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폐선처리비는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감척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이 종료된 경우 활용기관은 당해 어선을 해체하여야 한다.(박물관 및 전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시·도지사가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을 승인(지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척 대상어선의 연근해어업 외 용도로 매각

1)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중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입찰계획을 세워 어선어업이 아닌 양식장관리선, 화물선, 유선(遊船)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2)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50%를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감척어선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어선어업 외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라.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

1) 폐업어선 중 선령 15년 이하의 저선령 어선을 노후어선 대체에 활용코자 하는 시 도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단, 저선령 어선 활용사업은 각 시 도의 어업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2) 시·도지사는 폐업어선을 매각할 경우, 동일 시·도에서 대체하고자 하는 동일 업종의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소유한 자(공공기관에서 확인한 침몰어선의 어업자는 포함)에게 입찰을 통해 매각하여야 한다.

※ 타 업종이더라도 어선현대화 어선을 매입하여 개조 활용할 의사가 있을 경우, 사업 참여 가능

3) 어선의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이상으로 하되, 공개 입찰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입찰 참가자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 받아 대체하고자 하는 어선의 톤수가「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18조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피대체어선의 실제 존재여부를 현장 확인하여야 한다.

※ 어업허가증·선박국적증서·어선검사증서 사본

※ 최근 1년간 조업실적·선명이 표시된 어선의 전체사진

5) 시·도지사는 입찰 참여자가 종전에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어업인 및 그 배우자인 경우에는 제외 하여야 한다.

6)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는 해당 어선의 어업허가, 어선등록 등을 본인의 소유로 한 후 5년간 매각, 임대 등으로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이전하거나, 정부(지자체)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소유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7) 시·도지사는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에 대하여는 상기 6)의 규정을 이행 할 수 있도록 선박매매계약의 매각조건, 공증각서의 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어선원부, 선박국적증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8) 폐업어선을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으로 매입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감독을 받아 피대체어선을 어업인의 비용으로 완전해체 처리하고 해체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을 말소 한 후 폐업어선을 대체하여야 한다.

9) 저선령 어선 활용 사업 대상어선은 지원금 집행 후 매각시까지 시·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비는 어선의 매각대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마. 해체처리 등

1) 시·도지사는 기관, 장비, 비품 등 매각이 가능한 물품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예정가격 대비 최고금액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매각·해체처리 하여야 한다.

가) 입찰 예정가격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잔존가치 평가액의 10% 이상으로 조정하여 재입찰 할 수 있다.

나) 입찰에 의하여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해체·소각·폐기 처분할 수 있다.

2) 선체는 선박 해체처리 업체(조선소, 구조물 철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등)에 위탁하여 해체 처리하여야 한다.

가) 해체처리 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하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대비 최저 금액으로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위 2)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 장비, 비품 등을 매각한 후 선체에 대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박 해체처리업체와 개별 계약에 의해 해체 처리할 수 있다.

가) 선박처리업체가 감척어선을 해체 처리 시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해체 처리비용은 원가계산에 의한 해체 처리비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초과할 경우 그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FRP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 업체가 해체처리한 후 소각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재활용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파쇄·분쇄 후 재활용 한 증빙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7-마-1)~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체처리대상 업체선정과 감척어선의 활용 가능한 기관, 장비, 어구 등의 매각을 일괄하여 공개경쟁 입찰할 수 있다.

6) 시·도지사는 선박 해체처리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바. 폐업어선의 매각대금의 처리

1)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00분의 70은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하고 100분의 30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해야할 매각대금을 자체 세입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2) 폐업어선의 매각대금 중 수산발전기금 납입분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금은 감척업무 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8.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가.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하여「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나. 시·도지사는 감척 어선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대상자 선정일(사업비 지급 확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5년 내에 감척대상 어선으로 결정된 어선의 선체·기관 및 장비 등에 대해 정부 지원(보조금에 한함)을 받은 어선의 감척어선 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E = A - { C - (C × D/B) }
A : 감척어선 지원금(폐업지원금+매입지원금)
B : 보조금의 관리기간(60월)
C : 지원받은 보조금
D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일 까지 경과된 월 단위 기간 (경과 잔여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봄)
E : 지급해야 할 감척어선 지원금

다.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해 감척사업비 지급전에 해당 어선이 침몰·화재·파손 등의 사유로 잔존가치가 손실된 경우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1) 어업인이 감척 대상어선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화재 및 파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선을 재평가하여 차감한 후 지급한다.

2) 감척 대상어선이 3)이외의 사유로 어선이 침몰한 경우 폐업지원금만 지급한다.

3)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침몰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은 보험(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라. 지원금의 집행은 어선감척 대상자가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마. 시·도지사는 현장 확인 등 원활한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를 별도의 지방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의 폐업지원금(어선·어구잔존가액은 제외)은 환수하여야 한다.

9.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별도 지시 및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며, 이 지침이 정한 이외의 사항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보조금 실집행이 지연되는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 년도 보조금 배정 시 감액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시·도지사는 사업추진관련 서류 및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10매(5×7)를 사업 완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붙임 3]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서(예시)

1. **(목적)**「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어선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서식 1)
   2) 어업허가증 사본 1부

4.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① 감척대상 어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의 어업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은「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5.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① 시·도지사는 제출된 신청서를 붙임 5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6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붙임 서식 2에 따라 어업자에게 통보한다.

6.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 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2) 규모가 큰 어선
   3)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4)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어선
   5)「수산자원관리법」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7.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 ①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즉시 구두로 안내하고 사업대상자에게는 7일

이내에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8.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 평가방법 및 기준은「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붙임 4)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②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시·도지사가 감척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 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1) 매입지원금의 결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 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3) 매입지원금이 결정된 후에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결정된 매입지원금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9.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어선·어구 등의 매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10.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에게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1.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척은 제외)
12. **(기타사항)** 어선감척 신청공고 조건 및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4]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1.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표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한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잔존가치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하되,「국유재산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서 발간한 유형 고정자산 연수표를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선체

1) 선체는 총톤수 기준이고 구톤수는 신톤수로 환산하며 선종(船種), 선질(船質), 구조, 설비, 시공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신조(新造) 단가를 적용하고 평가연수,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2) 선체의 내용(耐用) 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어선의 선질별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 >

선질	내용 연수(년)	잔존가치율(%)
철강	25	20
강화플라스틱(FRP)	20	10
나무	15	10

다. 기관

1) 기관은 주기관, 동력전달장치, 보일러, 압력용기, 보조기관 등의 설비 및 이들의 제어장치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주기관은 어선의 주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원동기를 말하며, 실제 마력을 기준으로 제작 연월, 제작회사, 규격, 회전수 등을 고려하여 재조달 원가를 결정하고 경과연수 및 관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한다.

3) 보조기관은 주기관 외의 원동기를 말하며, 현장 조사할 때 엔진 상태를 세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4) 기관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기관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 >

시설물명	내용 연수(년)	잔존가치율(%)
기관	20	10

라. 의장품(艤裝品)

1) 의장품은 복성식(複成式) 평가법 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평가하고 복성식 평가법은 대상 물건별로 재조달 원가를 정한 후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에 따라 감가수정한다.
2) 의장품의 범위는 어로활동에 필요한 기기류, 항해용 기기류, 법정 비품류 등으로서 산출기관이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3) 의장품에 대한 현지조사 시에는 제작 연월, 회사명, 규격, 재질 등을 조사하되, 종류, 규격, 재질 등이 같은 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불용품 여부를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4) 의장품 중 내용 연수 3년 미만인 품목에 대해서는 업종별 같은 규모 어선의 어업인 평균 보유수량의 2배 이내에서 평가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가) 근해어업의 경우 :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
   나)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 : 산출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
5) 의장품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의장품에 대한 내용 연수 및 잔존가치율 >

시설물명	내용 연수(년)	잔존가치율(%)
의장품	15	10

마. 어구

1) 근해어업의 경우
   가) 어구는 복성식 평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또는 중고 상태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준가격으로 평가하고,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에 따라 감가 수정한다.
   나) 어구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므로 재조달 원가의 파악에 유의해야 하고, 내용 연수가 대부분 3년 미만이므로 감가 수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다) 어구의 내용 연수는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10%로 한다.
   라) 어선별 어구의 표준수량은 다음과 같이 하되, 예비망을 포함하여 표준수량의 2배의 범위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대형기저(외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대형기저(쌍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동해구기저)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서남구기저, 외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중형기저(서남구기저, 쌍끌이)	저인망	Warp, 어망	2	틀
근해트롤(대형트롤)	트롤	Warp, 어망, 전개판	2	틀
근해트롤(동해구트롤)	저층트롤어구	Warp, 어망, 전개판	2	틀
근해선망(대형선망)	선망	Warp, 어망	1	틀
근해선망(소형선망)	선망	Warp, 어망	5	틀
근해채낚기	자동조상기			
기선선인망(기선권현망)	권현망	어망	4	틀
		오비기 · 수비	2	식
	건조기	1,050발 기준	2	대
	선별기		2	대
근해자망	자망	8톤 ~ 20톤	45,000	미터
		20톤 ~ 40톤	54,000	미터
		40톤 이상	63,000	미터
근해안강망	안강망	어장닻 1개씩 포함	15	틀
잠수기	잠수어구		2	식
근해통발	장어통발	8톤 ~ 20톤	3,200	개
		20톤 ~ 40톤	7,000	개
		40톤 이상	10,000	개
	그 밖의 통발(홍게·게)	8톤 ~ 20톤	2,500	개
		20톤 ~ 40톤	3,500	개
		40톤 이상	5,000	개
	문어단지	8톤 이상	24,000	개
근해형망	형망	Warp, 어망	4	통
근해연승	주낚		1,000	바퀴
봉수망	봉수망	Warp, 어망	2	틀
자리돔들망	들망	Warp, 어망	2	틀

※ 다만, 아래 해역에서의 조업 실적이 인정될 경우 해당 어구의 표준수량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충청남도·경기도·인천광역시 해역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근해안강망	안강망	어장닻 1개씩 포함	20	틀

- 강원도·경상북도 해역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근해통발	그 밖의 통발 (홍게·게)	8톤 ~ 20톤	4,000	개
		20톤 ~ 40톤	5,500	개
		40톤 이상	7,000	개

- 강원도·경상북도 해역

업종	어구명	규격	표준수량	단위
근해자망	자망	8톤 ~ 20톤	114,000	미터
		20톤 ~ 40톤	147,000	미터
		40톤 이상	225,000	미터

※ 기선권현망의 경우 육상 가공시설(건조기, 선별기, 잔교, 대차 등)을 포함(선주 소유분만 해당한다)하나, 선단 전체가격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

가) 어구는 복성식평가법으로 평가하되, 신품 또는 중고 상태로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비준가격으로 평가하고, 복성가격으로 평가할 경우 정률법과 관찰감가법에 따라 감가 수정한다.

나) 어구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므로 재조달 원가의 파악에 유의해야 하고, 내용 연수가 대부분 3년 미만이므로 감가 수정에도 유의해야 한다.

다) 어구는 예비망을 포함하여 업종별 같은 규모 어선의 평균 보유수량의 2배 범위에서 평가해야 하나, 평가기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배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되, 어업비용 항목 중 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와 비교하여 적절한 평가액을 산출해야 한다.

라) 연승어업의 어구(소모성 어구)는 내구성을 가진 모릿줄, 닻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통발어업과 유자망어업의 어구(내구성 어구이지만 유실에 의해 소모되는 어구)는 유실률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마) 어구의 내용 연수는 평가 사례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제한하며, 잔존가치율은 10%로 한다.

2. 감정가격 평가기관의 선정 등

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어선·어구, 어선의 시설·장비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 내용이 부실하면 해당 감정평가법인에 대하여 다음 3년간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담한다.

[붙임 5] ‘18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결과 보고서

(단위 : 원)

시·도	순위	신청업종	선 명	소유자	외국수역 조업허가	선령	보유허가	톤수	소유 년월	출어 일수	선질	기초가격 (a)	신청금액 (b)	신청율 (b/a*100)
例示)		(근해자망)			유·무기록			신톤수						
경남		(근해통발)	57만선	홍길동	유	10	자망,연승	15	95.02	80	강			

* 무저·조업선(선단조업 중 침몰어선 등) 신청자 내역

시·도	순위	신청업종	선 명	소유자	외국수역 조업허가	선령	보유허가	톤수	소유 년월	출어일 수	선질	비고
例示)		근해자망			유·무기록			신톤수				무조업선
경남		대형선망	57만선	홍길동	유	10	자망,연승	15	95,02	80	강	본선 침몰

< 작성방법 >

○ 문서형태/글자모양/글자크기/뛰어쓰기 : 엑셀, 굴림체, 10 Point 이내, 뛰어쓰기 없음

○ 신청 업종에는 1가지의 업종만 기입

- 2개 업종 이상의 어업허가를 보유한 어선이라 하더라도 신청업종은 한 업종만 기입

※ 어업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대해 반드시 소유자로부터 확인한 후 접수

※ 신청업종 결정에 따라 사업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는 결과 초래됨

○ 선명 : “57만선”으로 기입(“제57만선호”는 잘못된 것임)

○ 소유자 : 2인 이상 공동 보유한 경우 소유기간 1년 이상인 자를 기준으로 “소유기간 및 연령” 적용에 유리한 자 1인만 기입

○ 외국수역 조업허가증 보유 : 있고 없음을 “유” 또는 “무”로만 기입

○ 선령 : 年이하의 월 단위는 무조건 버림(10년 6월 또는 10년 2월 → 10년) 경합시 월 단위는 전화 등으로 추가 확인 예정

○ 보유허가 : 2 이상인 경우 띄어쓰지 않고 콤마로 이어 씀(예시: 자망·연승·기통)

○ 톤수 : 신톤수 기준임.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버림. 숫자만 기입(15.83톤 → 15)

※ 구톤수는 신톤수로 환산 : 구톤수 × 0.72 = 신톤수

○ 출어 일수 : 시행기준일 이전 최근 1년 이내 기간 중 조업을 위한 출어한 일수

○ 소유 년월 : 78.02 또는 03.11(예시는 1978년2월과 2003년11월을 표시한 것임)

○ 선질 : 강, 목, FRP 중 1가지만 기입

○ “신청업종, 보유허가”는 아래에서 선택하여 약칭으로 기입

법 령 상		감척사업 신청서 기입	
종 류	명 칭	신청업종	보유허가 (약칭)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	대형기저	외끌이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어업	동해구저인망어업	중형기저	동기저
	외끌이서남해구저인망어업		외서기저
	쌍끌이서남해구저인망어업		쌍서기저
근해트롤어업	대형트롤어업	근해트롤	대트
	동해구트롤어업		동트
근해선망어업	대형선망어업	근해선망	대형선망
	소형선망어업		소형선망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어업	근해채낚기	채낚
기선선인망어업	기선권현망어업	기선권현망	권현
근해자망어업	근해자망어업	근해자망	자망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어업	근해안강망	안강
근해봉수망어업	근해봉수망어업	근해봉수망	봉수
	근해자리돔들망어업		자리돔
잠수기어업	잠수기어업	잠수기	잠수기
근해통발어업	장어통발어업	근해통발	장통
	기타통발어업		기통
	문어단지어업		문단
근해형망어업	패류형망어업	근해형망	패형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어업	근해연승	연승

[붙임 6] 어선원 실태조사서

○ 조사연도 : 2017(○)

○ 조사방법 : 전화( ), 면담( ), 어업인 직접작성( )

○ 사업분야 : 연안어선( ), 근해어선(○)

가. 선주 주소 및 성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뒷자리 생략
주 소			

나. 선박제원 및 허가내역

허가번호			허가기간	. . . ~ . . . ( )		
어 선 명		어선번호		어업의 명칭.종류		
건조일자			톤 수	허가톤수 : , 표시톤수 :		
선체재질			기관종류	육상디젤( ),디젤( )	마력	

다. 감척어선 승선 어선원 현황

출항 (조업) 일수	승선 인원	고용보험 가입현황			선원법상 실업수당 지급현황		
		가입 인원	미가입 인원	미가입 사유	지급 인원	미지급 인원	미지급 사유
*연간조업 일수	*조업전까지 승선인원 또는 평균 승선인원			①외국 어선원( )명 ②65세이상 ( )명 ③상시 4명이하 고용 ④1개월 60시간 미만 근무 ( )명 ⑤여력부족 ⑥기타			①계약기간만료 ②20톤미만 선박 ③선원근로조건위반, 하선 등 ④선원노동위원회인정 ⑤여력부족 ⑥기타

※ 정책 수립에만 참고함(최종계약체결 완료 후 제출)

[서식 1]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대상자 선정	■	통 보
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210㎜×297㎜[백상지 80g/㎡]

[서식 2]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어선 감척 대상자 ■ 신청 ■ 직권 선정 통지서

어선 소유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지원 내용	1. 어선·어구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지급 2. 폐업지원금: ( )원 예상 3. 그 밖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개월분) 등 지원	
어선 감척 절차	○ 감척 대상 어선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 → 폐업지원금의 산정 → 어선·어구의 인수 및 해체 처리 → 어업 폐업 신고 → 지원금의 지급 ○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까지 약 2 ~ 5개월 걸립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 80g/㎡]

[서식 3] 어선·어구 매입신청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어선·어구 매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 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선·어구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합니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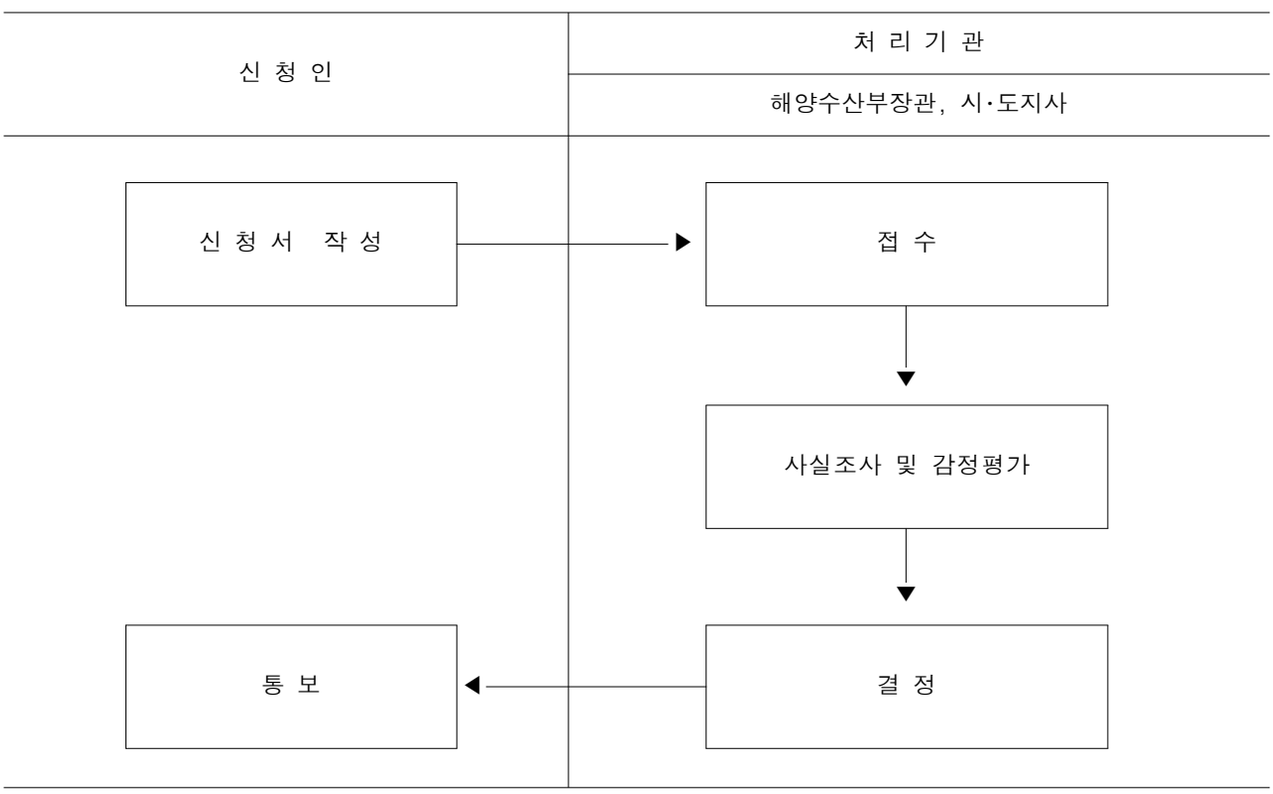

[서식 4]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 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5]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 지원 세부지침 별지 서식］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어업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 젤	기관의 마력	

신청인(생활안정지원금 수급 어선원에 관한 사항) /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전화번호	승선기간	계좌번호	서명
1							
2							
3							
4							
5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어업자) (서명 또는 인)

신청인(어선원 대표)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3.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 사본 1부 4. 「선원법」 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따른 선원명부 1부 5. 생활안정지원금 수급용 금융기관 통장 사본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어업인)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1] 2019년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 순기

구 분	일 정	집행주체
○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	1월	해양수산부
○ 근해어선 감척사업 안내 공고 - 시행령 제3조 공고내용 포함	2월	해양수산부, 시·도
○ 근해어선 감척사업 홍보 - 공고내용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문 발송 - 신청자격, 접수기간, 대상자 결정방법 등 홍보	2월	시·도(시·군·구) 수협 등
○ 근해어선 감척사업 신청서 접수 - 결격여부 확인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	수시	시·도 (시·군·구)
○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 - 관할 시·도에 통보, 필요 시 추가접수 안내	수시	해양수산부, 시·도
○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및 소요예산 내역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수시 (사업자 선정 시)	시·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국고 송금	수시	해양수산부
○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 지급	수시	시·도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4분기	시·도

※ 사업일정은 지자체별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② 2019년도 연안어선 감척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 장 윤분도 사무관 강문표 주무관 전진배	044-200-5510 044-200-5516 044-200-5517
시·도, 시·군·구	수산담당과	지자체 감척 담당자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함으로써 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2. 근거법령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제8조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어선 감척 계획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자단체등이 제8조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에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할 수 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8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년	15년	16년	17년		
척당 생산금액 증가율(%)	1.5	1.8	1.23	2.6	-	'18.12월	어업생산동향조사(통계청) 및 어선통계(우리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7,485**	**17,485**	**17,485**	**17,485**
- 국 비(80%)	13,988	13,988	13,988	13,988
- 지방비(20%)	3,497	3,497	3,497	3,497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연안어업의 감척 대상 업종은「수산업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8개 연안어업 및 제26조에 따른 12개 구획어업 중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어업실태조사결과 및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업종별 단가,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정함

- 우선순위 : ①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의 정수 보다 어선척수 또는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 ②어획 강도가 강한 업종, ③어업 분쟁이 많은 업종

나. 시·도지사가 "가"에 따른 대상업종 외의 어업과 다음 각 호의 어업을 감척대상어업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야 한다.

- 업종 간 분쟁해소 필요 어업
- 서해유류유출사고 관련 폐업희망 어업
- 새만금 내측 폐업희망 어업
- 기타 국가가 시행하는 국책사업 관련 폐업희망 어업

다. 나에 따라 시·도지사가 별도의 감척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붙임 2.2. 신청자격 및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사업 선정 제외대상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준용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보조금법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폐업지원금,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잔존가치 평가액), 감정평가 수수료(용역비), 선체확인 비용, 어선 해체처리비 및 출장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 폐업지원금은 폐업지원금의 업종별, 톤급별 기초가격(붙임 1)과 신청인의 희망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 2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어업허가증의 주어업을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어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조업실적이 60일 미만)에 대해서는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

○ 지방자치단체장 및 어업자 단체장은 지역 및 어업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단체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기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함

○ 연안어선 직권감척은 '17년도 감척 사업집행지침(자원관리형 지정감척)에 따름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 지원조건(재원) : 보조(국고 80%, 지방비 20%)

5. 기타사항

○ 어선감척 신청자격·조건, 신청절차·방법,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처리 및 대상자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세부사항은 어선감척 신청 및 대상자 지원 등 절차(붙임 2)를 참조하여 감척을 추진

○ 폐업지원금의 어업별·톤급별 기초가격(붙임 1)

○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예시)서(붙임 3)

○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기준(붙임 4)

○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서식 1)

○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서식 2)

○ 어선·어구 매입신청서(서식 3)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서식 4)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1. 사업계획수립 단계

지자체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해수부 보고(매년 1월)

-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어선 감척이 필요한 어업의 종류·목표량
- 감척 대상 업의 지정 계획 및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 어선 감척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어선 감척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감척 안내 공고(매년 1월)

- 어선감척사업 추진 필요성, 목표량 및 추진계획
-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 감척 대상 어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2. 사업신청 단계

지자체(사업자)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절차 :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구비서류 : 공고문에 명기된 제출서류를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지자체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4. 자금배정 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적 등에 대해 검토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 집행지침 및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을 점검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준수 여부(사업자 공모·선정 및 집행 등), 사후 정산 절차 준수 여부 등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지자체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자(시·군·구)에 대해 보조사업 집행지침 및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내용의 적정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 등 집행상황을 점검(매년 2회 이상)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비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및 국고금 집행 잔액의 반납 등에 대하여는「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어선감척 대상자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통보서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해당 어선의 선체 확인 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반납 및「형사소송법」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지원을 제한

《사업비 정산》

지자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지자체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6. 사업평가 및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어업정책과)

○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 지자체에서 추진한 감척사업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

지자체

○ 집행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평가시기 : 매년 12월말 기준

○ 지자체에서 추진한 감척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개선방안 등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Ⅳ.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감척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물량에 맞는 지방비 확보 등 사업추진계획을 수립(예산 신청 포함)하여 제출('19.5월까지)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1] 폐업지원금의 어업별·톤급별 기초가격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폐업지원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업 종	1.0톤 이하	2.0톤 이하	3.0톤 이하	4.0톤 이하	5.0톤 이하	6.0톤 이하	7.0톤 이하	8.0톤 이하	9.0톤 이하	10.0톤 이하
복합	24,448	29,784	35,067	39,673	43,159	45,974	46,231	46,857	48,314	48,215
통발	24,314	30,175	36,170	39,216	43,336	46,330	47,017	52,466	-	-
자망	23,808	30,048	35,354	37,666	42,293	46,727	47,299	48,568	46,973	51,141
선망	13,993	20,636	26,839	33,033	38,997	42,667	43,356	45,879		
들망	28,323	34,229	38,275	43,565	43,565	44,809	45,307	44,809	44,809	45,431
안강망	24,272	27,483	34,213	40,740	43,052	45,083	47,226	48,363	-	-
조망	14,580	18,115	22,766	23,501	26,928	30,845	32,558	33,292		
선인망	28,458	34,461	38,709	44,880	46,082	45,681	44,880	44,880	-	-
이동성 구획어업	14,613	17,764	22,149	24,348	27,062	30,702	30,815	32,933	-	-

[붙임 2] 연안어선 감척 신청 및 대상자 지원 등 절차

1. 사업계획

가. 시·도별 사업물량 및 사업비

1) 별도로 시달하는 당해 연도 사업 내역서에 의한다.

2)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구별로 물량을 재배정 및 조정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관내에 배정된 물량과 예산범위 내에서 어획강도가 높아 자원에 미치는 영향 등 시급히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은 사업대상에 따라 수립된 감척시행계획에 따라 일정 물량과 예산을 할당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진할 수 있다.

4) 2019년도 집행지침 시행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모집을 위하여 신청공고를 하지 않은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에는 2019년도 집행지침을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 사업 집행체계

1) 해양수산부는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사업물량·예산배정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확인 등의 업무를 분담

2)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수협조합장 협조)는 다음의 업무를 분담

(1) 연안어선의 감척시행계획 및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2) 사업대상 업종 선정

(3) 어선감척사업 신청공고

(4)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

(5) 사업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6) 어선·어구 등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7) 지원금 지급 및 정산

3) 시·도지사는 원활한 사업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의 (1), (2)를 제외하고 사업의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4) 시·도지사는 감척어선의 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어선법」제41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조건

가.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있다.

가) 어선감척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당해 지역 감척대상 어업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하여 소유(공동소유인 경우 적어도 1인 이상)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다만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가 감척목표 수량에 부족한 경우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추가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원받는 조건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상속인의 신청자격은 가)요건과 관계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지원 받는 조건 등은 가. 신청자격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2) 부속선이 있는 경우 본선을 기준으로 하되, 부속선의 소유기간은 어선감척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6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최근 1년 이내 어선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상속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도 신청자격이 있다.

(4) 실제 조업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가)「선박안전조업규칙」제15조에 따른 출·입항신고 실적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나)「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2의 면세유(이하 “면세유”라 한다) 구입실적

- 해당 수협 면세유 공급실적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조업실적을 산출

(다) (가) 및 (나)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군·구청장이 실제 조업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다.

가. 수협 위판 실적 및 기타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관할 어촌계단위로 구성된 감척사업 심의위원회(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수협대의원, 어촌계장, 어촌계 감사 등으로 구성)의 확인서

나)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 다만, 어선을 임차하여 어선의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감척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간 합의한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 및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지 않은 어선(선박검사증서 효력 만료전 어선법령에 의거 계선사유서를 제출하여 계류 중인 어선을 포함하되 소유기간 및 조업실적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소유한 자. 다만, 감척사업 참가 신청일 이후 어업허가 또는 검사증서의 효력이 만료된 어선은 당해 연도 감척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조업을 중단하고 계류 중인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어업허가 및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감척사업 대상자자로 확정되지 않을 경우,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 기존의 어업허가가 다시 부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선을 소유한 자는 어선감척사업 대상자 신청 참가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경락 또는 매입에 의해 어선을 소유한 후 조업실적이 없는 자

나)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사업비 지급 확정일)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다) 「선박안전법」(법률 제8221호, 2007.1.3. 공포, 2007.11.4. 시행)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2조제2항,「어선법 시행규칙」(해양수산부령 제101호, 2009.12.14. 공포 시행)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 2톤 미만 어선으로서 임의대체로 어선등록사항과 상이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하여 변경등록을 한 이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

라) 최근 5년 이내에 대상어선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해 폐업을 전제로 보상을 받은 자 또는 폐업 전제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

마)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바) 본문 사업대상자 3. “가” 및 “나”의 사업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연안어업(시·도에서 별도로 정한다)의 어선을 소지한 자. 다만, 2개 이상의 어업

허가가 있는 어선을 소유한 자 중, 한 개 이상의 어업허가가 사업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 어선의 형태로 보아 어업이 아닌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에만 전용으로 사용된 어선을 소유한 자. 다만, 2-가-(1)에서 정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조업한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나. 선령

○ 어선감척 사업대상자 선정 신청 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3. 어선감척 신청절차 및 방법

가. 신청안내

1) 사업집행주체는 어선감척 신청 개시일 15일 이전에 “세부사업집행계획”, “어선감척사업 신청절차안내서” 등으로 어업인들이 감척 참가요령 등을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련 행정기관, 관할 수협 및 어촌계,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가) 어선감척 신청기간

나)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기준

다) 감척하려는 어선의 수

라) 어선감척 절차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 안내문은 어선감척대상자 신청안내공고문(붙임 3)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어선감척 대상자 신청

1)「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어선감척 신청서류

가)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기타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다. 신청서의 처리절차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받은 사업집행주체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신청결과 신청자가 제시한 금액이 기초가격보다 높은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은 무효이다.

3) 사업집행주체는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라.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의 신청자를 해당 이월예산의 범위에서 먼저 선정한 이후 2017년도 사업비 분을 선정한다.

4) 사업집행주체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결과 사업대상자가 부족한 경우 부족한 물량분에 대하여 추가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라.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2) 규모가 큰 어선

3)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4)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어선

5)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6) 어선소유자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마.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1) 사업집행주체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결과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경우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3) 사업집행주체는 중도 포기, 선박멸실 등으로 인해 예비후보자 중에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서열이 가장 후순위자의 폐업지원금 신청비율을 일괄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추가 어선감척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1)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감정평가 기관을 활용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3항 별표에 의한다.

3) 사업집행주체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4)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사업집행주체가 감척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5.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가. 사업자 선정

1)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후 배정받은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사업대상자(이하 “최종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2) 잔여 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1) 사업집행주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2) 수산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의 어선을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 및 어업인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6. 감척 대상어선의 상속에 따른 승계

가. 어선감척 대상자가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감척대상 어선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본 집행지침에 의한 자격을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어선감척 대상자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감척대상어선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7. 폐업 어선·어구 등 처리

가. 감척 어선의 인도 등

1) 어선감척 대상자는 사업집행주체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감척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한다.

2)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비 지급전까지 최종 사업대상자가 어선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3) 사업집행주체는 감척 대상어선을 인도받은 후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인을 배치하는 등 감척 대상어선이 폐선 처리되기 직전까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사업집행주체는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을 때 감정평가시의 목록과 대비하여 변동 및 누락 등이 없는지 확인·인도받아야 한다.

5) 사업집행주체는 어선·어구 및 장비를 인도받았을 때 지체 없이 일선수협에 통보하고, 일선수협은 해당 어선의 유류공급카드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

1)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민간단체 포함) 등이 공공사업(어업지도선, 어장정화선, 실습선, 인공어초, 조형물 등)에 해체대상 어선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지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외 무상 제공 등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인공어초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어초시설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 등 별도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선박의 폐선 처리비는 인공어초시설사업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감척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이 종료된 경우 활용기관은 당해 어선을 해체하여야 한다.(박물관 및 전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사업시행주체인 시·도에서 감척 어선의 공익사업 활용을 승인(지정)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 감척 대상어선의 연근해어업 외 용도로 매각

1) 시·도지사는 감척 대상어선 중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근해어업이 아닌 양식장관리선, 화물선, 유선(遊船)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감척된 어선에 대해서 다시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근해어업을 말함

2) 매각대금은 잔존가치 평가액의 50%를 예정가격으로 정하고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 금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감척어선 재활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어선어업 외 사용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라. 해체처리 등

1) 사업집행주체는 조선소, 구조물철거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등(이하 “선박해체업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하여 감척된 어선을 해체 처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선박해체업체와 개별계약에 의해 해체처리 할 수 있다. 다만, FRP어선의 선체는 해체처리 업체가 해체처리한 후 소각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재활용처리 업체에 위탁하여 파쇄·분쇄 후 재활용 한 증빙서류를 사업집행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어선감척 대상자가 해체 처리하는 경우 해당 수협 및 사업집행주체에 신고하고 감독을 받아 해체 처리한 후 “해체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사업집행주체가 해체 처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집행주체가 지정하는 장소에 해체대상 어선을 인도하여야 한다.

4) 선박해체업체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식 및 절차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어선감척 대상자가 직접 해체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단가 이하로 적용하여야 한다.

5) 해체처리대상 어선에 매각이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6) 사업집행주체는 선박해체업체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박해체업체는 당해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활용 가능한

기관, 장비 등은 매각 또는 활용할 수 있으나 선체는 반드시 해체 처리하여야 한다.

7) 6)의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선박해체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8) 사업집행주체는 해체처리 단가를 원가계산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9) 사업집행주체는 폐선처리 등으로 무선국을 폐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어선감척 대상자에게「전파법」제25조의2에 따라 무선국 폐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마. 폐업어선의 매각대금의 처리

1) 폐업어선의 매각, 해체처리, 공공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활용 가능한 장비는 매각할 수 있다.

가) 사업집행주체가 기관 및 장비품 등을 매각할 경우 아래 감정평가기관의 잔존가치평가액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정하여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1) 1차 : 잔존가치 평가액의 20%

(2) 2차 : 잔존가치 평가액의 10%

나) 가)에 의하여도 매각되지 않을 때에는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해체·소각·폐기 처분할 수 있다.

2) 매각대금은 매각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100분의 70은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하고, 100분의 30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 수산발전기금에 납부해야할 매각대금을 자체 세입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3) 폐업어선의 매각대금 중 수산발전기금 납입분을 제외한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금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비(출장비 등)로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8.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가.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하여「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입지원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나. 사업집행주체는 감척어선의 지원금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상대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5년 내에 해당 어선의 선체·기관 및 장비 등에 대한 정부지원(보조금에 한함)을 받은 어업인에 대한 감척어선 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

E = A - { C - (C × D/B) }
A : 감척어선 지원금(폐업지원금+매입지원금)
B : 보조금의 관리기간(60월)
C : 지원받은 보조금
D : 보조금을 지원 받은 날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일 까지 경과된 월 단위 기간 (경과 잔여일이 15일 이상은 1월로 봄)
E : 지급해야 할 감척어선 지원금

다. 어선감척 대상자에 대해 감척사업비 지급전에 해당 어선이 침몰·화재·파손 등의 사유로 잔존가치가 손실된 경우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1) 어업인이 감척 대상어선을 시·도지사에게 인도하기 전에 화재 및 파손된 경우에는 당해 어선을 재평가하여 차감한 후 지급한다.

2) 감척 대상어선이 3)이외의 사유로 어선이 침몰한 경우 폐업지원금만 지급한다.

3) 최종 사업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으로 침몰된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평가액은 보험(공제)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라. 지원금의 집행은 어선감척 대상자가 제출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마. 사업집행주체는 현장 확인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부대경배(출장비 등)를 별도의 지방비를 편성 집행할 수 있다.

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의 폐업지원금(어선·어구잔존가액은 제외)은 환수하여야 한다.

9. 사후관리 및 기타사항

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별도 지시 및 질의에 대한 회신에 의하며, 이 지침이 정한 이외의 사항으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 추진상황 모니터링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하거나 보조금 실집행이 지연되는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보조금 배정 시 감액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 시·군·구별 연안어선의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실적이 80%를 초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군·구에 대하여 다음년도에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를 배정하지 아니한다.

라. 사업집행주체는 사업추진관련 서류 및 단계별 추진과정을 촬영한 사진자료 10매(5×7)를 사업 완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붙임 3] 어선감척사업 신청안내서(예시)

1. **(목적)**「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안내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을 준용한다.

3.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어선감척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안내서에 기재된 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도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서식 1)
   2) 어업허가증 사본 1부

4.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 ① 감척대상 어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의 어업자는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은「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5. **(어선감척 대상자 선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6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선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어업자에게 통보한다.
   ②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이하 “예비후보자”라 한다)에게도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6.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 사업대상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선령(船齡)이 오래된 어선
   2) 규모가 큰 어선
   3) 폐업지원금의 지원 규모 내에서 적은 금액의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업자의 어선
   4)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어선
   5)「수산자원관리법」제20조에 따른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
   6) 어선소유자 연령이 70세 이상인 경우

7.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의 평가)** ① 평가방법 및 기준은「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어선·어구, 어선의 장비·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② 선박확인 비용 및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하고 시·도지사가 감척지원금 지급 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집행주체가 정한다.

③ 사업대상자의 어선에 설치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전에 사업집행주체의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각된 장비 등의 잔존가치 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금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입지원금 지급전에 어선이 침몰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어선의 잔존가치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부담한다.

1) 매입지원금의 결정전에 화재, 침몰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본다.
2) 어업인이 대상어선을 사업집행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손 된 경우에는 해당 어선을 재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3) 매입지원금이 결정된 후에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침몰한 경우 결정된 매입지원금에서 보험(공제 포함)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8. **(어선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① 어선·어구 등의 매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어업자는「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집행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9. **(불이행시 제재 조치)** ① 사업집행주체는 사업대상자에게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가 채무 정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폐업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집행주체는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어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주체가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완료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지원금의 신청기간을 30일 범위 내에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대상자가 어선·어구 잔존가치 평가액이 결정된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어선의 선체확인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 포기일부터 향후 3년간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10. **(부정당업자의 감척사업 신청 자격 제한)** 사업대상자, 최종 사업대상자와 계약상대자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어선감척사업 신청 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척은 제외)

11. **(기타사항)** 어선감척 신청공고 조건 및 이 안내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집행주체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 4]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가격(예시)

어선·어구 잔존가치는 아래 표준가격을 참고하되 기초가격 공개시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표준가격은 참고자료에 불과하며 실제 잔존가치는 해당어선의 개별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 선체·기관·의장품·어구 등 잔존가치 표준가(10년 경과)

○ 자망, 복합, 통발, 들망, 안강망, 조망

(단위 : 천원)

허가업종	강			FRP			목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1톤	3.5톤	7톤
자망	6,782	18,390	41,227	6,368	16,940	38,326	5,301	14,089	32,624
복합	8,040	19,651	43,556	7,626	18,201	40,655	6,811	15,350	34,953
통발	8,184	19,286	41,554	7,770	17,836	38,653	6,955	14,985	32,951
들망	6,634	18,184	75,887	6,220	16,734	72,986	5,405	13,883	67,284
안강망	18,213	30,436	54,099	17,799	28,986	51,198	6,984	26,135	45,496
조망	10,093	19,980	40,296	9,679	18,530	37,395	8,864	15,679	31,693

○ 선망

선망(1척) : 5톤			선망(2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47,290	45,218	41,145	87,551	84,264	77,805	55,951	52,664	46,205
선망(3척)								
선망(본선) : 7.93톤			선망(부속선) : 4.5톤			선망(운반선) : 7.93톤		
강	FRP	목	강	FRP	목	강	FRP	목
77,211	73,924	67,465	26,757	24,892	21,226	42,065	38,778	32,319

[서식 1]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희망하는 폐업지원금의 액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기안·결재	■	대상자 선정	■	통 보
신청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210㎜×297㎜[백상지 80g/㎡]

[서식 2] 어선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어선 감척 대상자 ■ 신청 ■ 직권 선정 통지서

어선 소유자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선 내용	어선의 명칭	어선의 종류
	총톤수	진수연월일
지원 내용	1. 어선·어구의 매입: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 지급 2. 폐업지원금: ( )원 예상 3. 그 밖에 어업종사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개월분) 등 지원	
어선 감척 절차	○ 감척 대상 어선의 감척은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 → 폐업지원금의 산정 → 어선·어구의 인수 및 해체 처리 → 어업 폐업 신고 → 지원금의 지급 ○ 감척 대상 어선의 감정평가에서부터 지원금의 지급까지 약 2 ~ 5개월 걸립니다.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이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직인

210㎜×297㎜[백상지 80g/㎡]

[서식 3] 어선·어구 매입신청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어선·어구 매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 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어선·어구의 매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합니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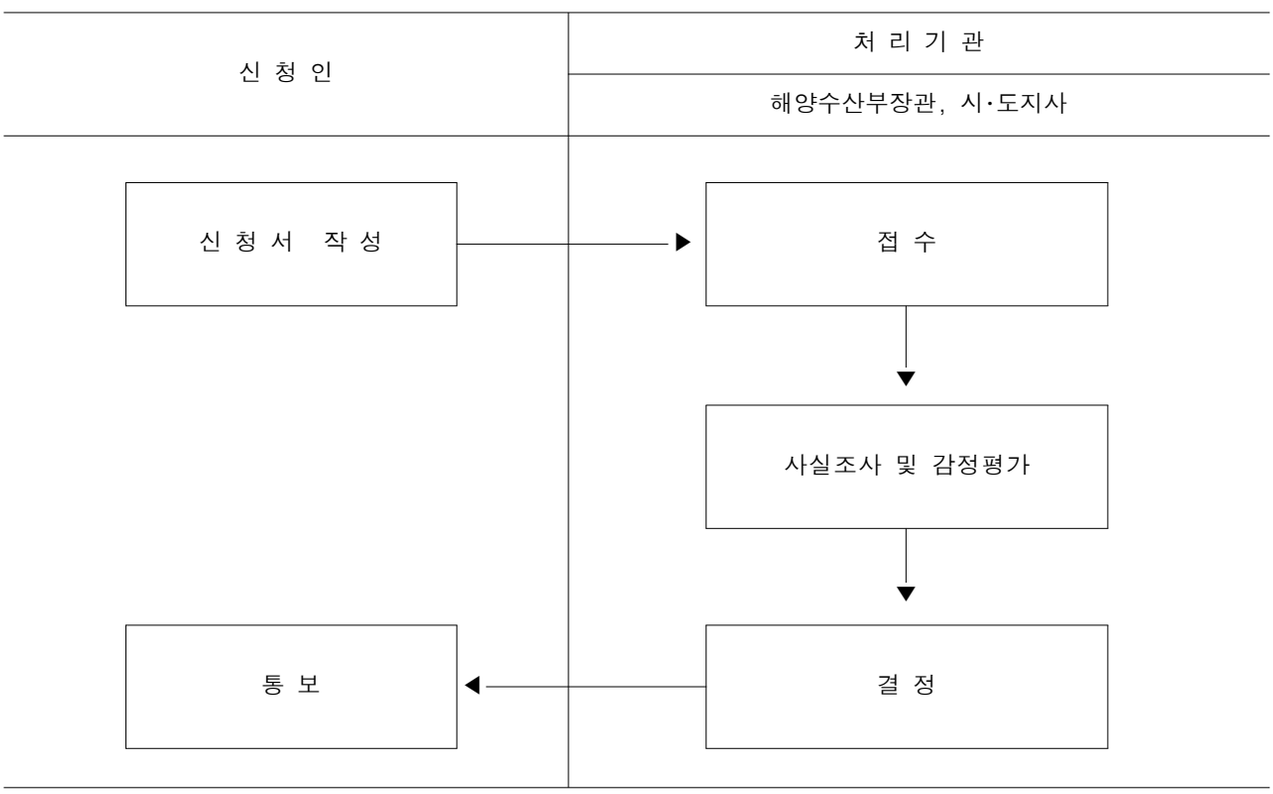

[서식 4]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방침 통보): 30일

신청인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적습니다)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어업 허가에 관한 사항	허가번호		허가기간	
	어업의 종류·명칭 및 어구의 규모	종류	명칭	어구의 규모
	※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주조업구역			
어선의 제원	어선의 명칭			
	어선번호		진수연월일	
	총톤수		선체의 재질	
	기관의 종류	[ ]육상디젤, [ ]디 젤	기관의 마력	
기타	승선원 수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참고자료 1] 2019년 연안어선 감척사업 집행 순기

구 분	일 정	집행주체
○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 사업물량 및 사업비 배정	1월	해양수산부
○ 연안어선 감척사업 안내공고 - 시행령 제3조 공고내용 포함	2월 (신청기간 개시일 15일전)	시·도 (시·군·구)
○ 연안어선 감척사업 홍보 - 공고내용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문 발송 - 신청자격, 접수기간, 대상자 결정방법 등 홍보	2월	시·도(시·군·구) 수협 등
○ 연안어선 감척사업 신청서 접수	3월	시·도 (시·군·구)
○ 연안어선 감척사업 대상자 선정 - 목표 미달시 추가접수 안내	3월～4월	시·도 (시·군·구)
○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실시	4월～5월	시·도 (시·군·구)
○ 폐선처리 및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 지급	5월～7월	시·도 (시·군·구)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6월～8월	시·도 (시·군·구)

※ 사업일정은 지자체별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변경될 수 있음

[참고자료 2] 연안어선 감척사업 추진 절차(예시)

추진순서	수행 기관	소요 기간	내 용
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해양수산부	즉시	o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
사업물량 및 예산 배정	해양수산부	즉시	o 시·도별 감척물량 확정 및 소요예산 배정
세부사업집행지침 수립·시달	시·도	15일 이내	o 해양수산부에서 시달한 사업집행지침을 기준으로 세부사업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o 신청자격, 제출서류, 사업대상자 결정 방법 등 안내
사업안내 사업홍보	시·도 시·군	15일 이상	o 시·도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에 공개 o 시·군·구에서 관할 수협, 어촌계 등에 신청 안내문 발송 o 기초가격, 예산, 신청자격, 신청서 접수기간, 사업대상자 결정방법 등 안내
신청서 접수	시·군 시·도	7일간	o 신청서, 기타증명서 등 서류 접수 o 신청참가자격 유무 확인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도 시·군	10일	o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평가	시·도 시·군	30일	o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 가치 평가 o 권역별로 정해진 감정평가기관에 한해 감정평가 실시
폐업어선 처리 어업허가취소	시·도 시·군	30일	o 어선·어구, 시설물 등 폐업어선 해체처리 o 증명서를 첨부하여 어선등록 말소, 어업허가 취소
지원금지급	시·도 시·군	30일	o 폐업지원금 지원금액과 어선·어구잔존가치 평가금액을 지급
사업 정산	시·도	30일	o 사업결과 취합 및 자금 정산후 반납

39 어촌뉴딜 300

① 어촌뉴딜을 통한 혁신어촌 조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혁신행정일자리기획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혁신행정 일자리기획단	부단장 권준영 서기관 김남웅 서기관 김정화 주무관 이형필 주무관 김혜정	044-200-6170 044-200-6047 044-200-6174 044-200-6178 044-200-619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게 300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및 어촌의 재생·혁신어촌 조성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8조제1항제4호(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2,450	-	-	-
- 국 비	1,715	-	-	-
- 지방비	735	-	-	-
- 자부담	-	-	-	-

* '20년 이후 투입계획은 중기재정계획 반영 이후 확정

Ⅱ. '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자세한 사항은 어촌뉴딜 300사업 시행지침 참조

○ 사업자 자격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어촌·어항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위탁 시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사업 운영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보조사업 관련 규정 및 어촌뉴딜300 사업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운영

3. 지원대상

○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 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 마을

* **(사업대상 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항·포구

** **(배후 어촌마을)** 사업대상 어항을 중심으로 입지여건, 수산업 이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대상마을 및 사업대상 구역 설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보조금은 어촌뉴딜 300사업의 목적·규정·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재원) 국비 70%, 지방비 3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 지원기준 및 한도 : 어촌뉴딜 300사업 시행지침 참조

○ 사업자의 자격 박탈 : 어촌뉴딜 300사업 시행지침 참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 150억(국비 105억, 지방비 45억)

* 단, 지방비는 보조율을 초과하여 편성 가능

* 지방비 중 시·도비는 30%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기준 및 범위 : 어촌뉴딜 300사업 시행지침 참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관리주체 : 시·도(시·군·구)

○ 신청절차 : 사업 예비계획서 작성(시·군·구) → 사업신청서 및 예비계획서 제출(신청서 : 시·도 취합 제출, 예비계획서 : 시·군·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 선정 주체 : 해양수산부

- 3단계 평가(1단계 서면평가, 2단계 현장평가, 3단계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시·도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1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19. 1월 중)

○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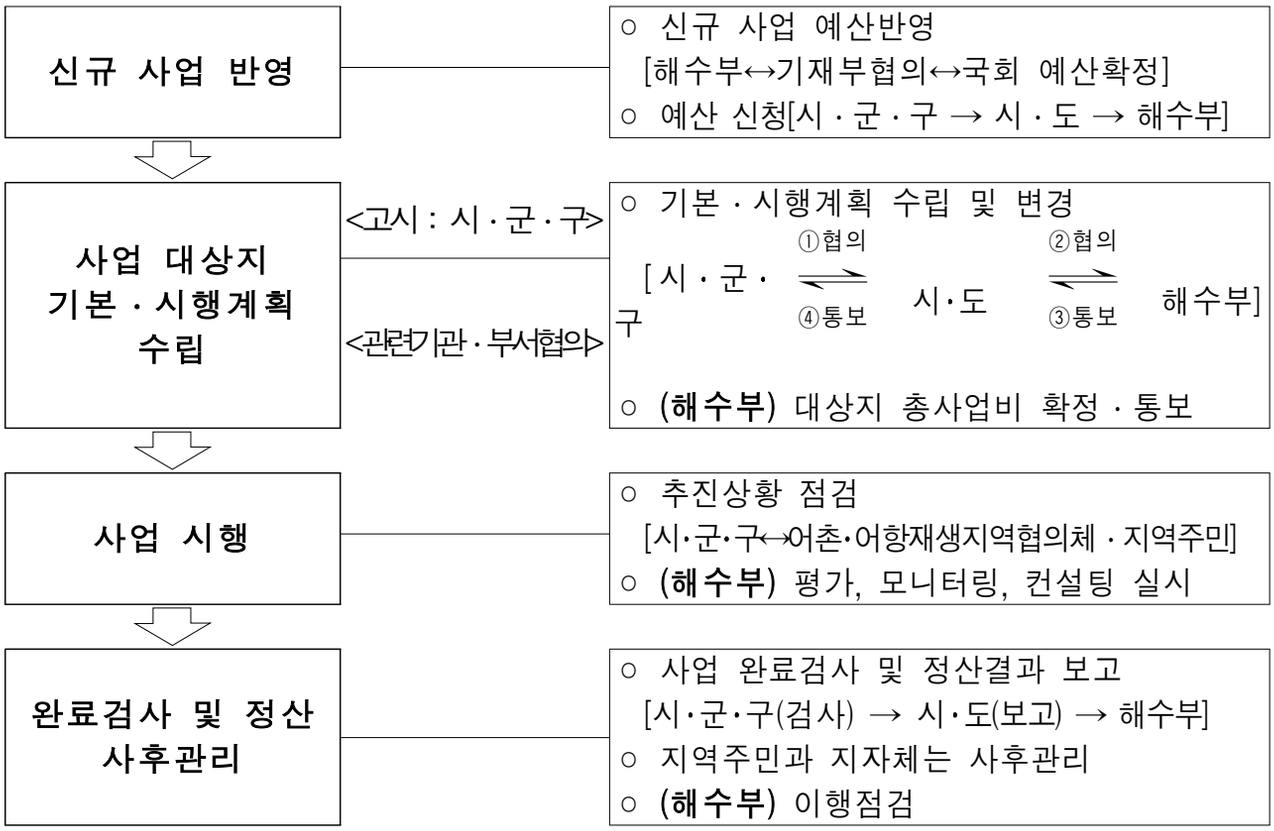

시·도(시·군·구)

○ 선정지 발표 후 3개월 이내에 '어촌뉴딜300 지역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수부에 제출

- 기획단계(초기)에서 해수부에서 구성한 '어촌뉴딜300 자문단'의 자문 의견을 반영하여 '어촌뉴딜300 지역협의체'와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

○ 어촌뉴딜300 사업계획(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가능하면 부지확보(국공유지 활용, 사유지 협의매수 등) 완료 추진

○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계획 수립 이전 단계에 완료가능한 행정상의 절차(지방재정투자심사, 계약심사 등)는 선제적으로 추진

<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

◇ **수립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협의 : 시·도 / 승인 : 해양수산부

◇ **내용** : 어촌뉴딜 300 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및 기본구상, 개발계획, 개발여건, 사업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

◇ **행정절차 :** 관계법령, 지침, 기준 등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

◇ **작성 원칙**

① 지역주민, 전문가, 시·군·구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어촌뉴딜300 지역 협의체"의 의견교환 및 결정을 통해 계획 수립

- 지역주민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적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참여방안 수립
- 지역의 자율적 개발역량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 사이의 협력적 관계를 촉진하기 위한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 활용계획 수립

② 객관적 분석을 통해 지역적 특색에 맞게 수립하되, 사업취지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성과목표와 성과측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③ 사업비 투자내역은 공통사업·특화사업·타부처 연계사업으로 구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④ 사유지의 토지보상이 필요한 경우 토지 사용승낙서 등을 기본·시행계획 보고서에 첨부

-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H/W사업의 부지매입비나 소모성 기자재 지원 불가

⑤ 사업의 우선순위와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 내역사업별로 분리하여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가능

⑥ 주민 역량강화, S/W 사업비는 전체 사업비의 5%이하로 계획 수립

- S/W 사업이 타 보조사업(일반농산어촌사업, 성장촉진지역사업 등)으로 지원되고 있을 경우,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중복지원은 불가
  * 사무장 등의 인건비 월 국비 기준 100만원 내, 지역협의체 운영비는 50만원 내 지원

⑦ 공모사업계획서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변경사유 등을 별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

⑧ 지역 소득증대사업(소득기반사업, 체험관광사업 등)은 수익자(주민) 부담 원칙이므로, 해당 토지의 100%, 시설비의 20% 이상 자부담 필요

- (예) 지역특산품판매장, 카페, 숙박시설 등의 소득사업은 반드시 자부담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사업계획 작성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소규모(집하장, 선별장, 가공장, 저장창고, 로컬푸드판매장 등) 공동 시설,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체험관광	농산어촌체험시설(폐교활용, 생태체험장, 야영장, 낚시터 등), 전망대,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⑨ 지방어항 개발계획의 변경

- 지방어항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어촌·어항법 제21조에 따라 우리부(어촌어항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전 협의 진행

⑩ 사업의 중복 계획 수립의 방지

- 어촌뉴딜 300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지역개발사업과 사업의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구내에 他 국고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검토하여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제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도시활력증진, 도서종합개발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등

⑪ 적정 수요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 무분별한 지역 숙원사업의 반영, 사업구역(어항의 배후어촌)과 원거리 지역의 사업계획 수립은 배제 하여야 하며 레저선박 계류시설, 각종 센터, 도서관, 목욕탕 등 수요에 의해 설치하여야 되는 시설물은 수요를 정확히 분석하여 제출
- 특히 시·도에서는 관할 시·군·구가 작성한 시행계획이 유사 중복*되어 않도록 내역사업별 충분한 사전검토 이행

○ 사업계획 협의 및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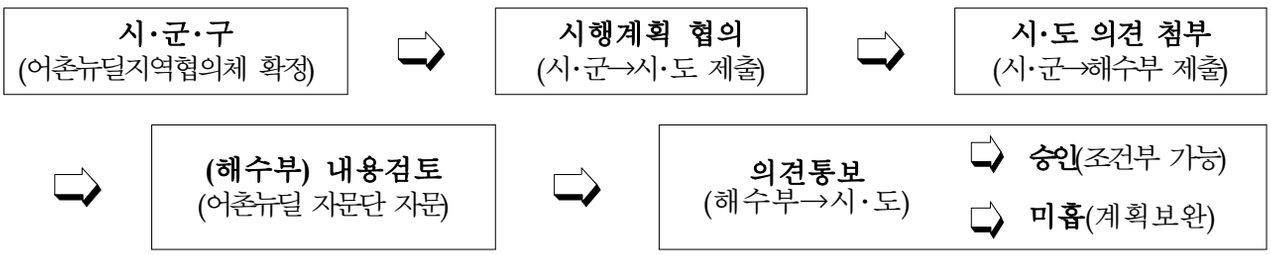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 시 즉시 주요 내용을 고시
  * 어촌 · 어항법 시행령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 · 변경의 고시) 준용

○ 사업계획의 시행 : 자세한 사항은 어촌뉴딜 300사업 시행지침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
- H/W사업과 S/W사업의 분리 발주 및 先 시행 가능
- 소득기반·체험관광사업은 주민부담(해당 토지 100%, 시설비 20%이상)이 확보된 후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소득법인을 구성하여 시행
- 자부담금 우선 집행, 별도 계정 관리 등

○ 사업계획의 변경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기본 및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함

< 계획 변경 >

◇ 변경 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승인 :해수부

◇ 변경 원칙 및 절차

① 국비기준 10% 미만 변경시 : 어촌어항재생협의체와 시·군·구
- 사업비(국비기준) 10% 미만 변경(내역사업간 변경 포함), 사업명, 사업기간, 물가변동 등의 단순 변경

* 물가변동, 단가 인상 등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증·감되는 사업비는 제외

② 국비기준 10% 이상 변경 시 : 해양수산부
- 시·군은 변경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사업목적, 법령규정상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시·도 검토의견을 시·군 제출자료와 함께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수산부는 어촌어항 재생사업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확정
- 단, 사업비의 변동시 국비 지원한도 105억원을 초과(지방비는 초과 편성 가능) 할 수 없음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년도 사업량 배정에 따라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시·군·구)

○ **(시·도)** 사업시행년도 사업량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사업계획서(기본·실시계획)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및 자금송금 요청

- 해수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에는 시·군·구 별 국고보조금액 교부 및 자금배정 실시

○ **(시·군·구)**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자세한 사항은 어촌뉴딜 300사업 시행지침 참조

해양수산부

○ 보조금법 등에 따라 사업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의 차등 교부, 차후 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시 가·감점 부여 등 추진

시·도(시·군·구)

○ 보조사업을 완료할 때,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수부에 제출 등

《제재》

시·도(시·군·구)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검사나 감사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 기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33조

6.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40 청년어촌정착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학기 사무관 손소연	044-200-5650 044-200-56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15조(가족어가의 경영안정과 수산업 종사자의 육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정된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발전 단계별로 자금, 컨설팅 또는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청년 어업인 정착지원 실적(명)	200	-	-	-	-	'20.1월	지자체 실적보고 자료 취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877**	**2,248**	**3,037**	**3,037**
- 국 비	604	1,474	2,116	2,116
- 지방비	273	774	921	921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귀어인 및 후계어업경영인 중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200명

* 단 사업대상자 선정 시 1순위 귀어인, 2순위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함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19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9.1.1. ~ 2001.12.31. 출생자

*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영어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 (거주지) 영어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영어경력)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신규 어업창업(예정)자

* 어업은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의 정의에 따름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영어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영어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어업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19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2018.1.1 이후 등록자~ 2019년 예정자), 2년차(2017.1.1~ 12.31 등록자), 3년차(2016.1.1~ 12.31 등록자)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단,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영어종사)하는 기간은 정착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영어 기간(지침 9페이지) 산정 시 제외

② **사업 선정 제외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1.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어 하는 자
2. 어업이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3. 병역미필자
4.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금의 사용용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어가 경영비, 창업 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보험가입 등 영어분야 창업, 정착에 필요한 비용

- 단, 양식장, 어선, 장비(개별 단가가 연차별 지원금의 1/4 이상인 경우) 구입 등 자산 취득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음

- 유흥업소 등 통상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는 카드승인 제한(별표 4)

4. 지원금의 지원(사용)방법

○ (시·군·구) 매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 선지급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자금을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당해년도 12월 이전이라도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청년어업인)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매월)

- 보고서 및 사용내역서 미제출 시 익월분 자금 지원 불가

○ (청년어업인)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부정사용으로 간주)하며, 체크(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 (청년어업인) 물품 구매 시 월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으며*, 매월 지원액 중 잔액은 소멸(익월에 잔액 차감 지급)됨을 유의

* 예) 1년차(지원단가 100만원)인 경우 3월에 3개월분이 일시에 지급되더라도, 10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단가가 100만원인 물품 3개는 구입 가능)

○ (시·군·구) 매월 사용내역과 잔액을 확인하고 매월 지원단가에서 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선집행

* 예) 2년차 청년어업인이 1월에 90만원을 지원 받아 50만원을 사용하고 40만원이 남은 경우, 2월에는 50만원만 선지급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 국고 70%, 지방비 30%, 일부 정액지원

- 민간 보조 : 국고 100% 정액지원

○ 지원기준 및 한도

- 1년차(2018.1.1 이후 등록자 ~ 2019년 예정자) : 월 100만원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2년차(2017.1.1 ~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3년차(2016.1.1 ~ 12.31 등록자) : 월 80만원

6.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시·군·구는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어업창업 예정자는 지원금 수령 시점부터 의무 부여
- 단, 어업창업 예정자는 사업 시행연도 12월말까지 창업을 미이행 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교육 이수 (20시간)		귀어귀촌종합(주말)교육, 어업창업 및 기술교육, 귀어학교, 귀어귀촌 박람회 등 * 귀어귀촌지원센터(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인정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영어계획 이행		사전승인 없이 임의적인 영어 계획 변경(영어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중단
전업적 영어유지		상근고용,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성실 신고	제출서류	영어어획서, 의료보험 부과액 등	지원금 전액 환수
	이행점검	영어이행실적 보고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의무영어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영어종사 의무	실제 영어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어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위 제재사항 외에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2에 따라 최대 500%의 제재부가금, 제4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실제 영어에 종사한 기간을 총 영어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 + 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을 환수(월할로 계산)

<지원금 환수 금액 예시>

※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씩 30개월 수령 후 5개월간 영어 종사를 하다가 영어 포기

▶ ① 30개월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 후 의무 영어기간은 30개월 부여
② 100% - [(35개월 ÷ 60개월) × 100] = 42%
③ 3,000만원의 42%인 1,260만원을 환수

- 다만, 사업대상자가 신병·기상재해 등으로 불가피 하게 영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환수 유예 또는 중지할 수 있음

<환수 유예 또는 중지 예>

▶ (환수 유예) : 1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 기상재해로 인하여 당해 연도 영어가 불가능 한 경우 등

▶ (환수 중지) : 질병·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영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상재해로 영어기반이 일실된 경우 등

○ 지급 대상자 권고사항

- 귀어귀촌 및 어업창업기술 교육(1개월 과정) 이수, 귀어학교(2개월 과정) 수료와 배합사료 사용, 재해보험가입, 자조금 가입(해수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 품목의 경우) 등 국가 시책 적극 참여 권고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선정 결과 취합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시·군·구별 선정결과 취합 제출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사업신청서 접수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매월 보고서 및 사용내역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에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계획을 통보하고 사업량 배정

- 시·도별 청년 귀어인 현황을 감안하여 사업량 확정 통보

시·도

○ 시·도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통보 받은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사업계획 및 세부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자체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군·구에 통보(사업량 포함)

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소 10일 이상 공고하고, 신청서 적기 접수

* 주요 공고 내용: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및 일정

신청자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춘 청년어업인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

* 다만 창업 준비단계로 신청하는 자는 정착 예정지역의 주소지 시·군·구에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단, 시·군·구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종류의 증빙서류는 미제출 가능)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은 해당자만 제출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여야 함

3. 사업자선정 단계

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대상 후보자 신청서 접수

○ 시·군·구는 접수된 청년어업인의 자격과 요건 등에 대해 별표 2에 따라 서면평가하여 면접대상자 선정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와 인력육성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 외부 전문가는 수산업, 수산어촌, 귀어귀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평가위원 평가수당은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운영비 등으로 지급

○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평균하여 점수가 60점 이상인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명부를 작성(예비자 포함)

○ 시·군·구는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시·도에 제출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선정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가 보고한 사업대상자 수에 따라 보조금 교부(반기)

시·도

○ 시·도는 대상자 선정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시·도별 사업량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

시·군·구

○ 매월 사업대상자에게 자금 집행(선지급→ 사업대상자 체크(직불)카드로 지출 → 사업대상자 시·군·구로 집행실적 제출→익월 사업비 선지급)

* 사업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받아 지출
** 예산 편성 지연으로 사업비 지급이 어려울 경우, 예산편성 후 소급 지급 가능
*** 소급 지급 시 지원대상자의 집행실적을 확인하고 지급하되, 월별 지원단가를 넘는 물품을 구매하였는지, 월별 사용한도를 초과하였는지 반드시 확인 후 지급

청년어업인

○ 청년어업인으로 선정된 자가 창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창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1) 사후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사업 완료 후 의무기간동안 사후관리(별지 제5호 서식) 실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년어업인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창업계획서의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장 이탈 등의 여부에 대해 분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 실태조사

*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에 한하여 짝수달에 현장 방문 조사 실시

○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매월)

*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년어업인 선정 통보 시 작성의무 고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별표 3의 정착지원금 사용용도 세부항목과 별표 4의 정착지원금 승인 제한 업종에 대한 해당여부를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청년어업인에게 자금집행을 정지하고 시·도에 통보

- 청년어업인(창업준비과정)으로 선정되어 정착지원금을 지원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창업준비기간) 이내에 창업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어업경영체 등록 등 창업단계의 요구사항을 완료하는 월까지 지급정지)

- 보고서 및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재

○ 시장·군수·구청장은 청년어업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업취소 또는 정착지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실태조사(현장확인) 실시(별지 제6호 서식)

① 정착지원금 지원기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도시 이주 등으로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② 시·군·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한 경우

③ 본인의 어업 종사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

④ 형사상 소추를 받아 형 집행중인 관계로 어업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경우

⑥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봉급) 및 연봉을 받는 경우(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

- 어한기에 생계보전을 위한 일시 취업(3개월 이내)
- 청년어업인 사업장에서 출퇴근 거리에 있는 곳에서의 격일·격주 근무 등 청년어업인 사업에 지장이 없는 일시 취업

* 위의 단서 조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품목별 특성,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

⑦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청년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을 취소하고 지원금 상환 통지와 지원금 회수 및 도에 통보

- 다만, 사업대상자에게 계절적 특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기한을 설정하여 시정할 것을 통보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지원금의 상환조치를 통지받은 자는 시·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기한경과일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상환액 및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 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 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의 경우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음

·사망·신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기상재해 등으로 사업이 취소된 경우
·지원금의 일시 회수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한 경우

(3) 사업장소의 이전

○ 청년어업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어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 사업장소 이전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이전 후 시·군·구)에 관련자료 등 통보

(4) 청년어업인 확인서 발급

○ 시·군·구는 청년어업인 확인서 발급 요청받을 경우 즉시 발급

○ 의무종사기간이 경과한 청년어업인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의무종사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하여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발급

(5) 청년 창업어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사업지침 이외의 청년어업인의 확보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체 계획을 수립 추진

(6)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19년도 청년어업인 선정결과, 지원현황(별지 제8호 서식), 사업취소 및 지원금 회수현황(별지 제9호 서식)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1) 성과지표 측정

○ 기준연도 목표치 대비 사업연도 사업실적으로 평가
- 성과지표 : 청년어업인 정착지원금 지원 인원

(2)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청년어업인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조사기관 : 귀어귀촌종합센터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19. 3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0년도 사업수요 제출('19. 4월말)

○ 2020년도 사업은 2019년도 세부사업계획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2020년도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19. 9. 15 ~ 10월 말)

○ 2020년도 지원대상자 선정('19. 11월 말)

[별표 1]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서면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영어비전 (30)	장기 영어 계획 (10)	1. 중장기 영어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10 □	8 □	6 □	3 □	1 □
		평가방법 : 중장기 영어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영어 방법 (10)	2. 영어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10 □	8 □	6 □	3 □	1 □
		평가방법 : 영어계획에 영어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수지 전망 (10)	3. 중장기 영어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10 □	8 □	6 □	3 □	1 □
		평가방법 : 중장기 영어계획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어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4. 영어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	4 □	3 □	2 □	1 □
		평가방법 : 영어계획서에 영어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생산 계획 (10)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10 □	8 □	6 □	3 □	1 □
		평가방법 : 영어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10)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	8 □	6 □	3 □	1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어계획 실현 가능성 (25)	자금 마련 계획 (10)	7. 향후 영어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10 □	8 □	6 □	3 □	1 □
		평가방법 : 영어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	8 □	6 □	3 □	1 □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어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신용 상태 (5)	9. 사업 신청자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5) □	보통(3) □	불량(1) □		
		평가방법 :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개인역량 (20)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 (10)	10-1. 수산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농업계 (10) □ / 비농업계 (0)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10-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어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수산고·수산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 / 70~99 (8) □ / 40~69 (6) □ / 20~39 (3) □ / 15~19 (1) □
		평가방법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귀어귀촌종합센터, 어업창업기술교육,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어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어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어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어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자격증 보유 수준 (10)	11. 수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 / 중 (3) □ / 하 (1)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친환경, HACCP 등의 인증 취득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수산식품과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수산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12. 어업 이외에 영어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 (5) □ / 중 (3) □ / 하 (1) □
		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영어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가점 (3)	○ 타 분야 지식·경험, 혁신적 경력·기술을 보유한 자(1) ○ 가족단위 창업자(1) ○ 북한이탈주민(1)		

[별표 2]

사업 대상자 평가 기준(면접평가)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문항
1. 어업에 대한 자세 (40)	1.1. 어업관	1.1.1 어업에 대한 자세는 적절한가?(15)
	1.2. 목표의식	1.2.1. 영어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15)
	1.3. 영어 추진 의지 및 열정	1.3.1. 영어를 결심하게 된 의지와 열정은 어떠한가?(10)
2. 정착 가능성 (40)	2.1. 지역사회 참여	2.2.1. 사회적 경제 실천 등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었는가?(10)
	2.2. 영어창업 목표의 구체성	2.2.1. 영어창업 동기와 정착 후 이루고자 하는 영어 목표는 명확한가?(5)
	2.3. 영어창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2.3.1. 영어창업 일정과 소요자금 등 중장기 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15)
	2.4. 성장 가능성	2.4.1. 스마트 양식 등 어업의 미래성장을 주도할 계획을 갖추었는가?(10)
3. 창업 역량 (20)	3.1. 역량 개발 계획의 구체성	3.1.1. 영어창업 계획 실현을 위한 영어역량 개발 계획은 적절한가?(10)
	3.2. 청년 창업어업인으로서 필요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	3.2.1. 청년 창업어업인으로 적합한 인성, 친화력, 소통능력이 있는가?(10)

※ 각 평가항목별로 5단계 나눠서 평가(각 단계별로 만점 점수의 20%씩 차감하여 부여) 15점 항목(15-12-9-6-3), 10점 항목(10-8-6-4-2), 5점 항목(5-4-3-2-1)

[별표 3]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자금 사용용도 세부항목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교육· 컨설팅	o 창업 관련 교육비(설명회 포함) *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멘토링 등 o 창업관련 도서 구입비 o 국내·외 연수비	
	o 어업기술·경영 컨설팅	자문비용도 인정
② 홍보· 마케팅	o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상품개발 비용 o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비용	국외 관련부분은 지자체 승인 필요
	o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 팜플렛, 상품 소개서, 동영상 등	
	o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o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o 홍보·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o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③ 운영자금	o 어구 등 어업용 기계, 자재 구입 등 어업 창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o 홈페이지 개발,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입 등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자금 등	

*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창업관련 용도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 선지급 가능항목 이외에는 지출이 발생하였음을 증빙(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
* 국비 또는 지방비가 투입되는 타 수산업정책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자부담 100%의 경우만 인정)

[별표 4]

영어정착지원금 승인 제한 업종

업종	업종코드
총포류판매점	2003
골프경기장	2101
골프연습장	2102
카지노	2103
당구장	2121
노래방	2199
기타레져업소	2199
귀금속	4411
성인용품점	4481
안마시술소	7121
기타대인서비스	7199
칵테일바	8010
유흥주점	8101
단란주점	8201
외국인전용가맹점	9993
기타 전문점	9998

[별지 제1호 서식]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준비단계)

<table>
<tr><td rowspan="5">신청자</td><td colspan="2">성 명</td><td></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주소</td><td>현재 거주지</td><td colspan="2" rowspan="2"></td><td rowspan="3">연락처</td><td>TEL :</td></tr>
<tr><td>창업 예정지</td><td>H.P :</td></tr>
<tr><td colspan="2">학 력</td><td></td><td>이전 직업</td><td colspan="2">e-mail :
(근무처 :)</td></tr>
<tr><td colspan="2">어업교육실적</td><td colspan="4">분야, 월 주</td></tr>
<tr><td rowspan="4">신청내용</td><td colspan="2">창업형태</td><td colspan="4">□ 개인(단독)창업 □ 가족 단위 창업</td></tr>
<tr><td colspan="2">창업품목(작목)</td><td colspan="4">( ) * 세부품목 기재</td></tr>
<tr><td colspan="2">창업분야</td><td colspan="4">□ 어업생산 □ 수산물 생산 기반 가공 □ 수산물 생산 기반 유통
□ 수산물 생산 기반 체험·관광 □ 기타( ) * 중복체크 가능</td></tr>
<tr><td colspan="2">창업 준비기간</td><td colspan="4">□ 1년 □ 6개월 □ 3개월</td></tr>
</table>

청년어촌정착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ㅇㅇㅇ(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창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
3.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5.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창업계획서(준비단계)

1. 현황

가. 일반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어업분야			

나. 어업 관련 교육 이수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

* 수료증 사본 제출

다. 어업인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기관

* 자격증 사본 제출

라. 어업인 관련 직무경력(재직, 인턴십 등) 현황

구분	근무기간	근무기관

* 구분은 재직, 인턴십 등으로 작성 / 증명서 사본 제출

마. 지역공동체 참여 및 활동계획

* 향후 지역공동체 참여방법 및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2. 창업을 위한 준비활동 계획

가. 창업교육계획

가-1. 교육일정표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분기별로 교육받을 예정시간을 기재

가-2. 교육내용 및 방법

* 창업을 위해 필요한 세부교육내용 및 이를 어떠한 교육방식을 통해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 (교육내용) 양식, 어선어업, 어업계획 수립, 경영관리, 회계·세무·법률, 경영체 설립 등, (교육방법) 집합교육, 온라인, 컨설팅, 멘토링, 인턴십 등

나. 어업정착 준비활동

나-1. 어업정착 계획

구분	시기(년월)	주요계획

* 어업기반구입, 어가주택구입 등 어업정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나-2. 자금조달 계획

사업 내용	소요 비용	확보방안
재배사 건축	25,000,000	은행 융자
전기공사	12,000,000	부모님 지원
콘크리트 타설	13,000,000	..
철재값 및 인건비	10,000,000	..
부대시설	5,000,000	..
사무실 및 작업실(30평)	4,000,000	
어구구입	6,000,000	
어선구입	5,000,000	
합 계	80,000,000	..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3. 창업계획

가. 창업동기 및 목표

* 어업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창업을 하게 된 동기 및 창업 이후 목표, 가족상황 등 어업에 대한 필요성과 의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나. 중장기 발전계획(3년 이상)

나-1. 1차년도

- 목표 및 추진전략

- 발전방향 및 주요내용

나-2. 2차년도

나-3. 3차년도

다.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양식장 구입								
어선구입								

* 실제 투자할 자금을 분배하고, 세부사업별로 투입계획을 작성

라.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차년도								2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양식장 구입																
창고 신축																
내부공사																
외부공사																
전체 마무리																

마. 향후 어업(신청 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양 식									
어 선									
유 통									

*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바. 기술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1) 제품(상품)의 내용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3) 기술현황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사. 홍보 및 판매 계획

(1) 판매 경로 및 방법

(2)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창업단계)

<table>
<tr><td rowspan="8">신청자</td><td colspan="2">성 명</td><td colspan="2"></td><td>주민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주소</td><td>현재 거주지</td><td colspan="3"></td><td rowspan="3">연락처</td><td>TEL :</td></tr>
<tr><td>어업 종사지</td><td colspan="3"></td><td>H.P :</td></tr>
<tr><td colspan="3"></td><td>e-mail :</td></tr>
<tr><td colspan="2">어업종사 이전 직업</td><td colspan="5">(　　), 근무처 명(　　)</td></tr>
<tr><td colspan="2">어업교육실적</td><td colspan="5">분야,　월　주</td></tr>
<tr><td colspan="2">어업경력</td><td colspan="5">년　월 ~ 년　월(　년,　월)</td></tr>
<tr><td colspan="2">현재 어업규모</td><td colspan="5">- 어업기반규모 : 양식장　㎡,　어선 :　톤
- 저장시설 :　㎡</td></tr>
<tr><td colspan="2">어업형태</td><td colspan="5">□ 개인(단독)　□ 가족 단위</td></tr>
<tr><td colspan="2">어업품목</td><td colspan="5">(　　)　* 세부업종, 허가번호 등 기재</td></tr>
<tr><td colspan="2">어업분야</td><td colspan="5">□ 어업생산　□ 수산물 생산 기반 가공　□ 수산물 생산 기반 유통
□ 수산물 생산 기반 체험·관광 □ 기타(　　)　* 중복체크 가능</td></tr>
</table>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ㅇㅇㅇ(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창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
3.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서
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5.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창업계획서(창업단계)

1. 현황

가. 일반현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어업			

나. 어업 관련 교육 이수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기관

* 구분은 경영교육, 기술교육, 소양교육으로 작성 / 수료증 사본 제출

다. 어업인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기관

* 자격증 사본 제출

라. 어업인 관련 직무경력(재직, 인턴십 등) 현황

구분	근무기간	근무기관

* 구분은 재직, 인턴십 등으로 작성 / 증명서 사본 제출

마. 수상경력 및 실적

* 해당 창업분야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사항 모두 작성 / 수상내용 사본 제출

바. 지역공동체 참여 및 활동실적

공동체(생산자 조직)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 지역의 공동체, 생산자 조직, 어업 참여 등에 대한 활동실적을 구체적으로 작성

2. 어업기반 및 경영관리 현황

가. 어업기반 현황

가). 수산물 생산

일련번호	소재지					경영형태(자영·임차)	어업기반			생산량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양식장	어선	기타	

나. 경영관리 현황

나-1. 경영 및 회계관리 현황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연도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3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제출

나-2. 어업기록 및 생산관리 현황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주기적으로 어업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3년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3	연간 생산인력 수급관리 계획을 세웠는가?	□ 예 □ 아니오
4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어업일정표 및 어업작업일지, 생산일지, 생산인력 수급관리 계획서, 고객리스트 등 제출

3. 창업계획

가. 창업동기 및 목표

* 어업에 대한 본인의 가치관, 창업을 하게 된 동기 및 창업 이후 목표, 가족상황 등 어업에 대한 필요성과 의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나. 중장기 발전계획(3년 이상)

나-1. 1차년도

- 목표 및 추진전략

- 발전방향 및 주요내용

나-2. 2차년도

나-3. 3차년도

다. 사업비 투자계획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양식장 구입								
어선 구입								
주택 신축								

* 실제 투자할 자금을 분배하고, 세부사업별로 투입계획을 작성

라.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차년도								2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양식장구입																
어선 구입																
주택 신축																

마. 향후 어업(신청 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생산량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양 식									
어 선									
유 통									

*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바. 기술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1) 제품(상품)의 내용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3) 기술현황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사. 홍보 및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2) 판매 경로 및 방법

* 현재 판매되는 경로를 분석해서 작성 / (예시) 가락동 수산물 시장 70%, 인터넷 직거래 10%, 외식업체 납품 15%, 지인 5%

(3)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도매시장 거래비율과 직거래 비율 조정, 판매단가에 따른 거래방식의 단기·중기·장기적 방향을 설정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실적 보고서(ㅇㅇ월)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33)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교육이수실적(사진 및 수료증 등 첨부)

교육 일시	교육과정명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기관	비고

3 어업 종사내역(간결하게 대표적인 사항 기재)

구분	세부 추진 사항	비 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 어업종사내역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다만, 창업준비단계 청년어업인에 한함)

4. 기타 추진사항

ㅇ

ㅇ

ㅇ

[별지 제3호 서식]

정착지원금 사용내역서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033) - 휴대폰 :
성 명	(서명)	생년월일	

2. 정착지원금 사용용도

구분	사용내역	비용(천원)
합계		

* '구분'란에는 별표2 주요항목 중 ①교육·컨설팅 비용 ②홍보·마케팅 비용 ③운영자금 인지 구분하여 표기
* '사용내역'란에는 사용내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기
* 영수증, 세금계산서, 사진, 수료증 등 입증자료 및 입금받을 통장사본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창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계획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비 고

* 변경된 창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 서식)

위와 같이 창업계획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 장 · 군 수 · 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년어업인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인적사항

관리번호	

사 진 (반명함판)	①성명 : (한자 :)	②생년월일 :	연락처 :
	③현 주소 우편번호 :	④정착사업장소 우편번호 :	⑤주 사업(희망)작목 :
	⑥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⑦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⑧병역 등 주요경력

구 분	기 간 (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병 역	. .	. .	
	. .	. .	
	. .	. .	
	. .	. .	

⑨어업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기간 (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 .	. .		
. .	. .		
. .	. .		
. .	. .		

⑩포상경력·어업국가기술자격증 등

년월일	내 용	수 여 자

⑪가족사항(본인제외)

성 명	관계	생 년 월 일	직 업

⑫ 어업기반

구분	주요내용
어업규모	

어가면담	o 면담내역(만족도, 애로 및 건의사항) -
담당자 종합의견	

[별지 제6호 서식]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사 업 내 용 :

(단위 : 천원)

구분*	정착지원금(지원액)	회수결정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 구분은 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로 표기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7호 서식]

청년어업인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용　　도 :

위 사람은　　년도 청년어업인으로 선정되어 어업에 종사중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제8호 서식]

정착지원금 지원현황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령별				
	합 계	18-24	25-29	30-34	35-39
합계					
남					
여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대 졸 이 상		
				소계	어업계	어업계 외	소계	어업계	어업계 외	소계	어업계	어업계 외
합계												
남												
여												

3. 사업별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양식어업분야	어선어업	기타어업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4. 사업별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합계	양식어업분야	어선어업	기타어업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별지 제9호 서식]

사업취소 및 지원금 회수 현황

1. 사업취소자 명단

(단위 : 천원)

시도	시군	성 명	지원연도	지원분야	지원금액			
					계	국비	도비	시군비

* 지원분야는 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 등으로 기재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 회수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41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지자체)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황통성 사무관 임연희	044-200-5460 044-200-5465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해양수산과 (시·군·구)	사무분장규정에 따름	-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직불법'이라 함) 제3조(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해당지역 어업인의 이탈을 예방하고 지역 활성화를 통하여 조건불리지역 어가(漁家) 유지를 위해 사업신청과 정주율 제고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시기	측정방식
		'15	'16	'17	'18		
▪ 마을 정주 제고율(%)	신규	-	-	-		익년도 2월말	(해당년의 정주비율/최근 3년간 평균 정주비율)×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13,736	14,320	15,325	16,330
- 국 비	10,989	11,456	12,260	13,064
- 지방비	2,747	2,864	3,065	3,266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조건불리) 지역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대상 도서지역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통보한 지역으로 함.(수산직불제법 제4조제1항)

○ 해양수산부장관이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한 도서지역은 수산직불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3월)
(전년도 12월에 연륙(준공)된 도서는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제외대상

□ 신청자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하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 어업경영체 등록 : 신청자격의 공정성을 위하여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신청일까지 등록하고 이행점검일까지 유지한 자

** 주민등록 거주기준 :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건불리지역을 고시한 날로부터 사업 이행점검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주소를 둔 자

□ 신청자

○ 생계와 주거(동일 주소)를 같이하는 가구원 중 신청자격이 있는 어업인이 다수인 경우 어가를 대표하여 **어업경영체의 경영주가 신청**

- 수산직불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자는 고시일부터 이행점검일까지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함

○ 어업경영체의 경영주가 신청하지 않고 가구원 중 어업인이 신청할 경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경영주 외 어업인으로 등록된 어업인(즉, 어업경영체별 1인만 신청 가능함) 및 **동일 주소지내** 어업경영체가 다른 경우에도 **1인만 신청 가능함**

〈어가〉 신청인인 어업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어업을 공동으로 직접 경영하는 가구단위(배우자는 신청인과 주소를 달리 하더라도 신청인과 같은 어가로 보며, 부모 자식의 경우는 주소가 같으면 동일 가구로 봄)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 주민등록상 세대가 달라도 신청인과 동일한 주소 및 주민등록표의 동거인으로서, 신청인의 주거지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 주소 : 도로명 주소 기준임.

□ 신청대상 제외

①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건불리지역을 고시한 날부터 수산직불금 이행점검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회사원, 공무원 등)

- 다만, 직장가입자 중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로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분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어업회사법인의 종사자중 고용계약서 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 중 **주(週) 20시간 이하**의 기간제 근로자는 신청대상에 **포함됨**.

다. **전년도**에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 농업직불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한 자**

〈참고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5.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3. 4. 생략

〈참고 2〉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란 1일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본문 및 고용노동부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단서)

▶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 및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년도에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을 적용 받은 경우

나. 전년도에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 등급 및 그 다음 등급을 적용 받은 경우

③ 어업경영체(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가구원 포함)로서"**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의 면허·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과징금 등 준하는 처분 포함)*을 받은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및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지급요건(이행점검일까지 의무 필수요건)**

○ 신청 어업인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건불리지역을 고시한 날부터 수산직불금 이행점검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할 것

○ 어업경영체 등록 유지와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금제분업 허가기간이 유효한 자(기간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 어촌계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어촌마을 공동기금을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업인의 소득보조(어가당 지원금액의 70%이하)

○ 어촌마을 공동기금을 조성(어가당 지원금액의 30%이상)하여 어촌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

*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는 어가당 지원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수산직불제법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관리협약(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참고)에 반영하여야 함.

4. 지원형태 및 지원금액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 원 율 : 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금액

- 직불금 : 어가 당 연간 650,000원(1회)

* ex) 어업인 지원(70%) 455천원 + 어촌마을 공동기금 적립(30%) 195천원

※ 어가당 지원금액의 일정금액(30%이상)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어촌마을 활성화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함.

◆ 어촌마을공동기금은 관리협약 이행,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어촌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기금의 용도는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관리협약에 명시하고,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

-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등의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어촌계(마을)총회를 거쳐 공동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 가능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어촌계(마을)의 공동기금 잔액은 관리협약에 따라 계속사용하되, 신규사업은 어촌게(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어촌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 담당자(위원장 또는 어촌계장과 겸임 불가)를 지정하고,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 시군, 읍면동 등 지자체는 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를 비영리 법인으로 세무서에 등록하고 법인명의 공동기금관리 계좌를 개설하여 공동기금을 관리하도록 권고 및 적극지도
- 어촌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 전용계좌를 개인 명의 계좌로 개설 시에는 회계담당자 명의로 개설하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기금' 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최소 2/3인 이상)의 인감을 공동 날인

- 행정비 : 시·도별 신청자 대비 전년도와 동일 수준 배정

  * 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관련 **전산입력 보조인부 인건비**, 행정서식 등 제작 및 구입, 관내출장여비 등 집행(집행관련서류 5년간 보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대상 지역(조건불리지역) 선정 및 통보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

시·도시자(시·군·구)

○ 시장·군수는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도서지역 해당 어촌계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고 아래의 서식으로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1.31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신청**하여야 함

제주특별자지도 본도의 경우 읍·면 및 洞지역은 어촌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만 해당

< 조건불리지역 신청 수요서 제출서식 >

시도	시군	읍면동	도서 명칭	어촌계명칭	어가수	비고

* 전년도에 연륙된 도서(준공일 기준) 및 어가가 살지 않는 도서 제외

○ 시·도 및 시·군·구 수산직불업무 담당자 및 전산입력원 대상 실무교육실시

○ 전년도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신청 홍보 (지방해양수산청 협조)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가 신청한 조건불리지역 선정 자료를 ① 시·도 ② 시·군·구 ③ 읍·면·동 ④ 도서 ⑤ 어촌계별로 정리하여 최종 검토·선정 후 2월28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3월)

시·도시자(시·군·구)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선정·통보 받은 '조건불리지역'을 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군수")에게 통지

○ 시장·군수는 '조건불리지역'을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알리고, 읍·면장은 해당 읍·면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어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 읍·면장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하 "수산직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촌계에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직불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발전계획서'를 읍·면에 제출토록 조치 및 홍보
- 읍·면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약정 신청서를 사전에 배부하여 어업인이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서식(약정신청서, 구매확인서, 조업일지 등)을 배부하고,
- 수산물 사매매에 따라 어업인들이 구비서류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기관, 상인 등에게 팜플렛, 리후렛, 소식지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적극 지도·홍보

〈공고에 포함할 내용〉
◆ 해당 읍·면의 조건불리지역(도서명·어촌계) 및 변동사항 ◆ 수산직불금 신청의 자격, 신청시기, 지급요건, 지급단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2배 환수, 가산금 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수산직불금 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있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도(시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홍보지, 지방지, 이통장 월례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지구별 수협에도 배부하여 어업인 지도·교육(어촌지도자협의회, 어업인 후계자교육 등)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실시

2. 사업신청 단계

어촌계(법정리 또는 행정리), 읍·면

○ 조건불리지역에서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는 마을은 조건불리지역의 어촌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다만,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리 지역(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로 구성·운영하고, 어촌계원이 아닌 어업인은 거주지역 어촌계 운영위원회에 포함하여 구성
- 어업인 수가 작은 낙도의 경우에는 이웃 낙도지역의 어촌계(마을)와 합동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함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라 한다)은 해당지역의 어촌계장(어촌계가 없는 지역은 동장·이장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함. 다만, 어촌계장이 위원장이 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함.
◆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어업인(전년도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음) 중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함.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
◆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운영위원회는 수산직불제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직불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4.15일까지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4.30일까지 제출**

- 시·군(읍·면)에서는 전년도에 수산직불금을 지원받은 어촌계에 대하여는 전년도에 제출된 사업신청서(수산직불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와 어촌마

을 발전계획서(수산직불제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해당 운영위원회에 송부하여 확인·수정·서명 후 제출토록 조치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음.

시·군·구

○ 보조원 등 채용(시·군, 읍면동)

-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채용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읍·면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림(5월초까지)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알릴 때에는 어촌마을명과 위원장 성명, 수산직불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시기, 약정신청서 제출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 등의 사항을 명확히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타당성 및 어업인 참여의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어촌계(마을)을 선정하되,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 어촌계(마을)에서 제외할 수 있음.

어업인·운영위원회

○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촌계(마을)의 어업인은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2018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함, 수산직불제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직불금 수령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도 **신청인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구비서류와 함께 운영위원회에 제출

※ 약정신청서 작성 오류 및 지급 후 부정적 신청에 대한 책임은 신청이 본인임을 공지

- 읍·면장과 시·도 수산사무소장(지소장 또는 센터장), 지구별 수협장은 어업인들이 약정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각각 밀착 지도

- 읍·면장과 시·도 수산사무소장(지소장 또는 센터장), 지구별 수협장은 어업인들이 약정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어업경영정보 등록을 하도록 지도하고,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어업경

영체 등록신청서〉를 운영위원회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에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각각 지도

○ **위원장은** 약정신청서의 기재항목 누락, 구비서류 완비, 신청인과 배우자 및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개인정보 기입 및 서명(약정신청서 2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쪽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인의 공람(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을 거쳐 위원장 확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읍·면·동 제출기간 : 5. 31일까지)

○ 시·도지사는 약정신청서 제출 기간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나 **이행점검일 공지(해양수산부)까지 입력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직불금 신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함.**

<약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 신청인 본인이 수산직불금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①' 또는 '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①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4-128호, '14.12.1)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약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함) 또는 전년도 9월 1일 이후 등록된 어업경영체 확인증(신규 어업경영체)

② 다음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어업경영을 통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아래 예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ㅇ 수협의 수산물 위판실적(금액)
- ㅇ 거래명세표(서) :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의 성명, 공급자의 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 거래금액, 종목, 거래일자, 인수자 서명 등이 명기된 것
- ㅇ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한 사업등록자가 발급한 계산서
- ㅇ 어촌계 사매매 장부 : 개인별 작업일자별 수산물 채취의 품목, 판매금액 등이 기재된 장부로서 어촌계장이 확인(서명)한 서류
- ㅇ 구매 확인서 : [별지 제11호 서식]

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아래 예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ㅇ 어촌계 조업일지[별지 제12호 서식]
- ㅇ 입·출항 신고서(선박출입항신고소 발행)
- ㅇ 어장관리실태조사서(「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39호 서식)
- ㅇ 휴업신고서(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이 「수산업법」제30조에 따라 미리 시·군·구에 휴업신고를 한 경우 그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은 어업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

* **상기 ②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는 7월3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구비하려는 서류가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업인의 요청에 따라 동 서류를 어업인이 별도로 구비하지 않고 읍·면이 확인**

<약정신청서 접수시 유의사항>

①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직불금은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② 어업외 종합소득금액 및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의 지급대상 제외 가능여부 안내 철저

③ 주소가 동일한 어업인은 한 어가로 봄에 따라 1인만 신청 가능함을 안내 철저

- 동일 주소지내 세대주가 다른 경우도 동일어가로 봄
- 가족관계증명을 통한 가족이 아닌 경우(동거인)로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는 신청가능

읍·면

(가) 서류 구비·보관

○ 읍·면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어업인 제출자료)를 구비·보관

(나) 구비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활용한 확인 및 입력

○ 읍·면은 운영위원장을 경유하여 제출한 “약정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신청 정보를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관리시스템 및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어업인의 자격유무 및 적격여부를 확인

* 어업면허 · 허가 · 신고 여부, 신청자격 증빙서류(어업인확인서, 수산물 판매실적, 어업종사실적 등) 적격여부 등 확인

- 읍·면장은 어업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증빙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알려 보완을 요청하여야 함

○ 전산입력 기간 이후 등록내용의 수정·변경이 필요시 상기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사유를 신청서 등에 표기 후 보관

○ 읍·면 담당자는 약정신청서의 기재항목 누락, 구비서류 완비, 신청인과 배우자 및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개인정보 기입 및 서명(약정신청서 2쪽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쪽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포함) 여부를 **재확인하고, 신청인의 공람(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을 거쳐 위원장 확인을 다시 거쳐 서명 또는 날인**하여 **5년간 보관**

(다) 마을별 신청 정보 재확인 및 이의 신청

○ 등록신청 마감 후 30일 이내(6월 30일까지) 마을운영위원회에 신청 정보(마을명, 성명, 어업의 종류 등)를 재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읍·면·동장에게 서면(별지 제 호 서식)으로 신청

3. 사업자 선정,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시·군·구

(가) 지급대상자 확인 및 선정

○ 시장·군수는 읍·면장이 1차로 제출한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확인결과(「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약정신청서"를 토대로 증빙서류 및 신청자격 등의 확인을 실시하고

* 전년도 지급자의 지급내용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격 등은 지자체 겨건에 맞게 확인하되, 신규 신청자 및 최근 3년간 부적정 신청자 정보 등은 재차 확인하고 부적격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시행

○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통지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로 읍·면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리고,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신청인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도 통보

* 관리협약 이행점검표 [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설명서, 사업안내문 등을 위원장에게 함께 송부

○ 운영위원회는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함

○ 지급약정신청서 제출 후 관계기관에 일괄 정보제공 요청(9.10까지)전까지 어업권 등 변경, 신청인의 사망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청자격(승계 등으로 인한 사유로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있는 배우자 혹은 가구원으로 지급대상자 변경 신청 가능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 절차>

◆ **어업인** : 어업권 변경, 이주 및 신청인의 사망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위원장을 경유, 읍·면·동장에게 지급약정 변경을 신청

◆ **읍·면** : 변경신청인이 수산직불금 지급대상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보고

◆ **시·군** :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읍·면장, 운영위원장 및 변경신청인에게 통지

– 변경 여부 결정 전에 전입·전출여부와 어업권 이전 여부 등을 최종 확인

– 변경 대상자는 당초 선정된 대상자의 자격 및 의무조건을 승계

(나) 관리협약 체결

○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위원장은 지급대상자의 합의로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라 한다)을 [별지 제2호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지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

* [별지 제2호 서식]은 관리협약의 효율적인 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군과 운영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정한 것임

- 운영위원은 ‘관리협약’ 작성, 어촌마을 공동기금 관리 등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

〈관리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 운영위원회의 임무
◆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지급방법 및 시기
◆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내용과 연계하여 관리협약 내용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약정신청서 제출, 지급대상자 선정 및 이행점검, 직불금 지급 시기 등을 자체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조정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기초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의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기준으로 보조금 교부

지급이행 여부 점검

(가) 관계기관에 신청제외대상자 정보제공 요청 및 확인

○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 입력정보를 토대로 신청인의 직장가입자 및 농업조건불리직불금 수령 여부, 신청인과 배우자 및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종합소득세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 여부 등을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일괄 정보제공 요청(9.16까지)

* 관계기관에 일괄 정보제공 요청은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신청인과 배우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개인정보 입력시 철저히 확인 요망

○ 읍·면은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서 제공한 신청제외대상자 정보의 적격유무 확인(09.30까지)

(나) 확인결과 제출

○ 읍·면장은 신청인의 자격 및 적격유무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제출한 “약정신청서(구비서류 포함)”를 첨부한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결과(지급용)”을 시장·군수에게 제출(10.15까지)

4. 지급요건 이행점검 및 확정단계

1) 이행점검 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 이행점검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시·도

○ 시·군의 이행점검을 지도·감독하고, 수산직불금 부당수령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군간 교체 점검계획을 세워 실시

○ 시·군의 이행점검을 적기에 완료토록 하고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양수산부에 이행점검 완료 보고

시·군·구

○ 시장·군수는 수산직불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운영위원회의 지급요건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함.

- 시장·군수 책임 하에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동을 통해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자체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읍면동을 통하여 제출받아 시·군의 이행점검에 활용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 자체점검단의 사전점검을 이행한 후 시장·군수는 서면점검과 현지점검으로 구분하여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대상 마을중 20% 이상은 현지점검하고 나머지 마을은 서면점검으로 대체가능, 단 특정 마을에 대해서 5년 연속 서면점검만을 할 수 없으며 신규 혹은 재신청 마을은 반드시 현지점검을 하여야함

읍·면

○ 읍·면은 시군구의 이행점검을 지원하여야함

어촌계(마을)

○ 운영 위원장은 자체 이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 및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자체 이행점검단의 단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점검단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4명 이내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을 활용하거나 별도 인력 고용 등 여건에 맞게 실시하고, 필요한 여비 등의 경비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에서 사용 가능

2) 지급요건 이행여부 확인

○ 시·군은 "관리협약 이행점검표(지침 별지 제3호서식)" 및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지침별지 제4호서식)"를 활용하여 어촌계(마을)별로 점검을 실시

- 점검결과 지급요건 이행 여부는 '이행'과 '불이행'으로 구분하고, '불이행'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 등을 명시

* 의무 불이행 사례 발견 시 운영위원장 또는 어업인의 확인서 징구

(가) 지급대상자(개인) 의무

○ **(거주의무)** 지급대상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상지역을 고시한 날부터 수산직불금 이행점검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어가당 1인만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는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시·군은 행정자치부의 제공자료를 토대로 적격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

○ **(어업경영체 등록 및 유지)** 지급대상자가 고시한 날부터 수산직불금 이행점검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및 유지를 하고 있는지 여부

*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의 협조를 받아 등록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 **(어업 외 종사 여부)** 지급대상자가 고시한 날부터 수산직불금 이행점검일까지 3개월이상 어업외 종사(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50만원 수령여부 포함)하고 있는 지 여부

(나) 마을공동의무

○ **(마을공동기금 관리·운영)** 시장·군수는 어촌마을별로 연2회(상·하반기) 이상 공동기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이행점검시 회계관리 담당자의 지정여부,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어촌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및 집행상태를 점검·지도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어촌계(마을)의 어촌마을공동기금 잔액은 전부 사용시까지 어촌마을별 연 1회 이상 집행상태 등을 계속 점검·지도

○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아래 예시 사업을 참고하여 마을 여건에 맞춰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을 연 1개 이상 이행

- 단,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금 적립액이 당해년도 포함 100만원 미만인 경우(운영위원회 결의 필요) 또는 100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어촌마을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관리협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몇 개 년(2~5년)의 적립액을 묶어 실천이 가능함.

* 읍·면·동장은 어촌마을공동기금이 신청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어촌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예시)>

◆ 어촌마을 활성화 활동 : 체험어장 설치 운영, 도시 주민과의 교류활동, 어업관련 축제 개최,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어장정비사업, 공동 냉동·냉장 보관창고 건립, 고소득 유망 양식품종 시험양식 및 도입 등 어촌계 소득 품종 개발

◆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 친환경어업 지원, 어촌마을 앞 해파리 침입 방지막 설치 및 구제 등 방제활동, 재난구호, 종묘방류 등

◆ 어촌 마케팅 활동 : 어촌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특산물 판매시설, 공동사용이 가능한 양식 및 어업장비 구입 등

◆ 어촌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 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등

* 부지매입 : 공동 보관창고, 마을회관 건립 등 어촌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적 기능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어촌계(마을) 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고 “어촌계(마을)” 명의로 등기

* 제세·공과금 : 어촌계(마을)총회를 거쳐 어촌계(마을)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읍·면

○ 읍·면·동장은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이행점검표를 확인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결과를 반영한 이행점검표를 시장·군수에 제출

* 읍·면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이행점검표 작성 지원

◆ **마을공동기금 미적립 및 어촌마을 활성화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수산직불제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별표)에 의거 처분함을 공지

3) 지급요건 이행여부 판정 및 확정

읍·면

○ 이행점검 결과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지급대상자는 '관리시스템' 상 부적격 처리

시·군

○ 시장·군수는 이행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급요건별 이행여부를 최종 판정하

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으로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시·도에 보고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보고한 지급대상자 확정결과를 검토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11월까지)

5. 자금배정, 직불금 지급 단계

1) 자금배정 및 교부

○ 행정비는 해양수산부에서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통보한 후 자금배정 및 교부

* 행정비는 직불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건불리직불제 사업 관련 행정서식 등 제작 및 구입, 전산입력 보조인부 인건비, 관내출장여비 등 집행(집행관련서류 5년간 보관)

○ 직접지불금은 분기별로 구분하여 자금배정 및 교부 가능

○ 시·도는 해양수산부의 조건불리지역 선정결과, 시·군의 약정신청서 접수결과를 기준으로 시·군에 보조금 배정

2) 직접지불금 지급

○ 시장·군수는 대상자 관리 및 제재기준을 감안한 지급금액을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처리(11월말까지)

- 어업인 지급액 : 약정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처리
- 마을공동기금 지급액 : 관리협약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처리

* 시·군은 마을공동기금 지급시 지급계좌가 어촌계(마을) 단체 명의가 아닌 회계담당자 계좌인 경우에는 통장명의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기금" 부기 여부와 운영위원의 인감 공동 날인여부 확인하여야 함

6. 대상자 관리 및 제재 등

가. 대상자 관리

○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어업인 등이 매년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경우, 계속하여 직불금 지급

나. 제 재

① 지급요건 불이행시 제재기준

○ 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산직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업인과 운영위원회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별표>의 지급제한 기준에 따라 처리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

○ 법 제13조에 따라 수산직불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직불금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함

* 환수절차 및 가산금 부과, 벌칙 등은 법 제13조 및 제14조, 시행령 제6조 참조

③ **약정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수산물 판매 및 어업종사 실적을 확인**하여 준 자는 법 제14조에 따라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음.

* 어업인 확인을 위한 수산물 판매금액이나 조업일수 증빙서류의 작성 및 구비에 있어 허위작성 및 위조 등을 통한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7.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와 동시에 관리시스템 입력완료

- 조건불리지역 도서 현황 제출 : 1월말까지
- 수산직불금 신청 결과[지침 별지 제5호 서식] : 8월말까지
-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지침 별지 제6호 서식] : 11월말까지
- 수산직불금 지급(정산) 결과[지침 별지 제7호 서식] 보고 : 익년도 1월말까지

○ 공문은 별도 보고하되, **첨부물은 '관리시스템' 보고로 대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익년도로 이월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8.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성과지표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사업 추진 후 마을 정주 제고율(%)

- 마을 정주 제고율 = (사업해당년의 정주비율/최근 3년간 평균 정주비율)

  * 마을 정주비율 = (금년 세대수/전년도 세대수)×100%

9.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추진 절차 >

① 신청·접수 전 (~2월)

-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 대상도서 및 신청 수요 제출
  (읍면→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 교육 (시군구)
- ▶ 전년도 어업경영체 미등록자 신청(해양수산청)

⇓

② 사업대상지역 선정 (~3월)

- ▶ 조건불리 대상지역 선정·통보
  (해양수산부→시도→ 시군 → 읍면)
  * 조건불리지역 10일 이상 공고(읍·면)
  * 사업설명 및 홍보(지자체)
- ▶ 신청서 사전 배부(시군구)

⇓

③ 신청·접수 (~5월)

- ▶ 사업신청서(어촌마을 발전계획서) 제출
  (어업인·운영위원회→읍면→시군)
- ▶ 지급대상 어촌마을 확정·통지
  (시군→읍면→운영위원회)
- ▶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제출**
  (어업인→운영위원회→읍면→시군)
  * 구비서류 : 수산물 판매 및 조업실적 증빙서류
- ▶ **신청서 전산입력**(~5월, 읍면)

⇓

④ 신청자 정보공개 (~6월)

- ▶ **마을명·성명·어업의종류 등 신청정보 재확인**
  (읍면동→마을운영위원회별 통보)
- ▶ 신청정보 공개에 따른 이의 신청 처리(시군구)

⇓

⑤ 지급대상자 선정 및 관리협약체결 (~8월)

- ▶ 서류 및 현지조사(읍면) : 적격여부 등
- ▶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서 수정 제출 및 전산입력 수정
- ▶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제5호서식)
  (시군→읍면→운영위원회)
-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
- ▶ 관리협약 체결 (운영위원회↔시군)

⇓

⑥ 등록사항 변경 이행점검	(5~9월)	▶ 신청사항 변경(신청자 사망에 따른 어업승계 또는 신청사항이 잘못이 있는 경우) ▶ 지급요건 이행여부 점검결과 이의 신청처리(읍면)
⇓		
⑥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지급	(~11월)	▶ **검증 후 지급대상자 확정**(시군구) ▶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시군구)
⇓		
⑧ 사업정산	(~익년 1월)	▶ 수령자 자료 관리 (시군구) ▶ 사후 관리 및 보조금 정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시행지침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협약(예시)

○〔별지 제3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관리협약 이행점검표(공동의무)

○〔별지 제4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개인의무)

○〔별지 제5호 서식〕: 20 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 결과

○〔별지 제6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별지 제7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별지 제8호 서식〕: 구매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어촌계 조업일지

※ 수산직불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직불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어촌마을 발전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약정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대상변경)확인결과

[별지 제1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통지서

1. 운영위원회 현황

어촌마을명		위원장 성명	
주 소		전화	

2. 지급 대상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급예정금액(천원)
합 계				

위와 같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정보를 기재

※ 위원장은 선정결과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쪽)

[별지 제2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협약(예시)

(단위 : 건수)

법정리(어촌계)	시·도 시·군·구 읍·면 리(어촌계)
협약 참가자	총 명(자연인 , 법인)

전체 가구수 (호)	어업현황															
	면허							마을·협동양식			허가		구획	신고		
	소계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소계	마을	협동	근해	연안	어구	소계	나잠	맨손

* 전체가구 수는 어업가구수를 어업종류는 각각의 면허·허가·신고건수를 기재함.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협약(예시)

ㅇㅇ 시장·군수·구청장

ㅇㅇ 마을 운영위원회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ㅇㅇ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ㅇㅇ마을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관리협약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5년)

2. 협약내용

제1조(지급대상자)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갑”이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이라 한다)로 선정한 **어업자**를 말한다.

제2조(지급대상 어가)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급대상 어가는 사업시행지침에서 선정한 어업자가 있는 어가를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어촌마을발전계획서”** 작성, 어촌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관리 및 조건불리 수산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등 위원장 및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 및 관리) 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비율 및 사용 용도는 붙임의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장이나 위원장이 아닌 운영위원 또는 지급대상자 중에서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계담당자를 선임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입출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④ 어촌마을 공동기금은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엄격히 구분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개설 시에는 회계담당자 명의로 개설하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0명의 운영위원의 인감을 공동 날인한다.

제5조(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등) ① “을”의 각 지급대상자는 “갑”이 제시하는 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및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와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실천 등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 당해연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지급대상 어촌마을 선정 통보일부터 수산직불금 지급일까지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

2.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가.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조건불리 수산직불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대상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조성하기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할 의무

나. 어촌마을공동기금을 관리협약의 이행, 관리협약의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소요 경비로 사용할 의무

다. 기타 어촌마을공동기금과 관련된 지급대상자간의 합의 사항 준수 의무

3.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증진활동 등 실천 의무

○ 어촌마을 여건과 지급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어촌마을활성화 실천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붙임의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에 반영하고, 매년 1개 이상을 실천할 의무

○ 단,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금 적립액이 당해년도 포함 100만원 미만인 경우(운영위원회 결의 필요) 또는 100만원을 초과하였더라도 ‘어촌마을발전계획서’와 연계하여 관리협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 몇 개년(2~5년)의 적립액을 묶어 실천이 가능함. 이 경우 회계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당해년도의 지급요건은 이행한 것으로 처리

② 위원장은 지급대상자가 제①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지도하여야 하며, 지급대상자는 위원장·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와 협력하여 제①항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지급요건 이행점검에 대한 ‘갑’의 사전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체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협약 이행표’를 작성하여 매년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④ “갑”이 제①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불이행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시행

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 또는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중단, 보조금 환수, 가산금 부과, 벌칙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자격 상실) ① “갑”은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은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을”을 경유하여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대상자의 자격 상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여야 한다.

제7조(조건불리수산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① “갑”은 “을” 및 각 지급대상자가 제4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하고, 조건불리수산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건불리수산보조금을 지급대상자가 약정신청서에 기재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갑”은 지급대상자간 합의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운영위원회가 본 관리협약에 기재한 어촌마을 공동기금 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이 경우 “갑”은 계좌가 법인 명의가 아닌 회계담당자 등 개인 계좌인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기금” 부기 여부와 운영위원의 인감 공동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제한 등) “을” 및 지급대상자는 제5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갑”으로부터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제9조(해석 등) 이 관리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과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법 및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특약사항)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지침과 이 관리협약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갑”과 “을”사이 또는 “을”의 지급대상자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1.
2.
3.

3. 관리협약 체결 지급대상자

연번	지급대상자				서명(인)
	읍·면·동	리	성 명	생년월일	

* 본 표는 위원장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지급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4. 입금 은행 및 계좌

어촌계용	입금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5.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 : 붙임

위 관리협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관리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운영위원장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붙임)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

1. 어촌마을의 공동 목표(미래상)

가. 마을의 공동 발전 목표(장기목표)

○

** 마을발전계획서의 마을발전목표 기재*

나.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사업기간 내)

○

** 위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기간(5년) 동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기재*

2. 운영위원회 명부

직　　책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운 영 위 원			
운 영 위 원			
운 영 위 원			
운 영 위 원			회계담당

3.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가. 조성 비율 : 보조금 수령액의　　%(조성 예정금액　　천원)

나. 사용 용도

구체적 사업내용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계　획	
	추진 기간	예 산
		원
		원
		원
		원
		원

<작성 요령>

① 1란은 '아름다운 어촌마을 가꾸기' 사업전개, 전통문화·생활풍습 등의 전승을 통한 도시주민과의 교류추진 등 어촌마을의 공동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마스터 플랜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작성

② 2란은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 명단을 작성

③ 3란은 어촌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비율(최소30%이상) 및 조성 예정금액을 작성하고,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별 추진기간 및 사용 예정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

<어촌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권장 사항>

1. 어촌마을 활성화 활동

가. 체험어장 설치 및 운영 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다. 어업관련 향토축제 개최 라. 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마. 어장 정비사업	마. 어장 정비사업바. 마을공동 냉동·냉장 보관창고 건립 사. 고소득 유망 양식품종 시험양식 도입 및 어촌계 소득 품종 개발 아. 마을어업 공동개발 및 시험어업

2.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가. 친환경어업 지원 나. 재해 복구(붕괴제방·호안복구 등) 다. 적조 방제사업	라. 해수욕장 해파리 방지막 설치 및 해파리 구제 마. 종묘방류 바. 패류껍질 수거장 설치

3. 어촌 마켓팅 활동

가. 마을 웹사이트 개설 나. 전자상거래 다. 정보화 교육	라. 산지 공동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마. 공동사용이 가능한 양식 및 어업장비 구입 등

4. 마을주민 복리향상

가. 어촌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나.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병문안 등

※ 지역 특색에 따라 시군에서 어촌마을공동기금 조성취지의 범위 내에서 추가 가능

* 마을 공동기금 조성 취지에 맞도록 선진지 견학과 마을경로잔치 비용은 마을공동기금의 당해 연도 말 잔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별지 제3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관리협약 이행점검표(공동의무, 20 년)

□ 어촌마을 현황

어촌계명		법정리명		위원장 성명		지급대상자 수	명

□ 공동의무 이행 상황	이행점검결과	
○ 마을공동기금 적정 관리 의무	이행점검단	시·군
①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		
② 마을공동기금 관련 증빙서류 보관 여부		
③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 이행점검결과 란에 "여"인 경우 "○", "부"인 경우 "×"를 기재하고 "×"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 어촌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증진활동 등 실천의무	이행점검결과	
	이행점검단	시·군
①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구체적 내용) :		
②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구체적 내용) :		
③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구체적 내용) :		

*** ①,② …란에 실천사항을 간단히 적시하고,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인 경우 "○", "불이행"인 경우 "×"를 기재하고, "×"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20 년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공동의무 이행상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인자(이행점검단) : ○○○ (인), ○○○ (인), ○○○ (인)

운영위원장 확인 ○○○ (인)

(○○시·군) : ○○○ (인), ○○○ (인)

20 년 월 일

< 작성요령 >

* 시·군·구는 운영위원회에 "□ 어촌마을 현황"란을 기재한 본 점검표를 위원장에게 전달

* 시·군·구 확인자 란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본 이행점검표를 기초로 이행점검을 확인한 경우 확인자가 서명

* 당해년도에 처음으로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사업을 시작한 경우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만 점검 실시

[별지 제4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대상자 이행점검표(개인의무, 20 년)

1 지급대상자 현황

①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어업종류		어업형태	

*** 어업종류 : 면허, 허가, 신고 중 선택 기입**
**** 어업형태 : 어업종류에 따른 세부 어업형태를 아래에서 선택 기재**
(면허)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허가) 근해, 연안 (신고) 나잠, 맨손

2 개인의무 이행 상황

○ 조건불리지역 거주 및 마을공동기금 적립	이행점검결과	
	이행점검단	읍·면(시·군)
① 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② 마을공동기금 적립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인 경우 "○", "불이행"인 경우 "×"를 기재하고, "×"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20 년 조건불리수산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공동의무 이행상황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확인자(이행점검단) : ○○○ (인), ○○○ (인), ○○○ (인)
운영위원장 확인 ○○○ (인)

(○○시·군) : ○○○ (인), ○○○ (인)

20 년 월 일

< 작성요령 >

* 본 이행점검표는 어촌마을 자체 이행점검단이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확인자란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확인·서명 후 읍·면·동장에게 제출)
* 시·군·구는 운영위원회에 "1 지급대상자 현황"란을 기재한 본 점검표를 위원장에게 전달
* 시·군·구 확인자 란은 운영위원회에서 작성한 본 이행점검표를 기초로 이행점검을 확인한 경우 확인자가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20 년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신청 결과(엑셀파일로 작성)

시군별	읍면동별	도서명칭	이격거리(km)	어촌계명	대상어가수(a)	신청 결과(단위 : 어가)					미신청 현황(단위 : 어가)												
						어업종류별				신청률	어업종류별				사유별								
						계(b)	허가어업	면허어업	신고어업	(b/a)	계(c)	허가어업	면허어업	신고어업	계(c)	타지역거주	농업직불금수령	증빙서류미구비	직장인	재산세	소득세	어업안함	기타
합계																							
00시	소계																						
	00읍	00도	20.1	00																			
00군	소계																						
	00면	00도	20.1	00																			

* 작성시 참고사항

① 이격거리 : 육지쪽 선착장에서 도서쪽 선착장까지 산정한 거리를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기

② 대상어가수(a) : 해양수산부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신청시 기입된 어가 수 기입

③ 미신청 어가(c) : b-a

[별지 제6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 천원 (국비 : 지방비 :)

시·도	시·군·구	읍·면·동(수)	법정리(수)	어촌계(수)	신청현황														선정(확정)결과													보조금 지급예정금액(천원)		
					어가구수	어업면허·허가·신고건수													어가구수	어업면허·허가·신고건수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구획	나잠	맨손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구획	나잠	맨손	계	어가지급	공동기금
합계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은 행정비를 제외한 조건불리수산보조금액임.
* 어업 = 정치망, 양식, 마을(마을+협동양식), 허가(근해+연안), 구획, 신고(나잠+맨손) 등으로 구분

[별지 제7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ㅇㅇ도)

1.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어업현황

(단위 : 건수)

시도	시군구	읍·면·동(수)	법정리(수)	어촌계(수)	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불이행												
					신청어가	어업면허·허가·신고건수													불이행 건수												
						계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구획	나잠	맨손	계	정치망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외해	마을	협동	근해	연안	구획	나잠	맨손

2.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시도	시군구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어가+마을)				잔액(반납액)				마을공동기금(어촌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조성비율	어촌계당조성금액

3.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 행정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예산액(교부액)				실집행액				잔액(반납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별지 제9호 서식]

구매 확인서

판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매내역

연번	일 자	품 목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구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산직불금을 받았거나 거짓임을 알고도 구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 자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0호 서식]

○○ 어촌계 조업일지 (　　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홍길동 (생년월일)	○																														
김갑돌 (생년월일)		○																													
김말자 (생년월일)	○																														
:																															
:																															
:																															

위와 같이 조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운영위원) : 어촌계장 ○○○ (인), 마을이장 ○○○ (인)
어촌계원 ○○○ (인), 어촌계원 ○○○ (인), 어촌계원 ○○○ (인)

○○ 읍·면·동장 귀하

1. 운영위원장은 회원(어촌계원+비어촌계원) 중 조업여부 확인이 곤란한 맨손어업자 등(출입항 신고로 확인이 가능한 어선어업 등은 제외)에 대한 조업실적을 매월 작성하여 운영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다음달 10일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어촌계 조업일지를 근거로 조업사실을 확인합니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업일지를 작성하여 수산직불금을 받았거나 거짓임을 알고도 허위로 확인하여 준 자는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2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①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사무관 오상필	044-200-5630 044-200-56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을 양식어가에 보급하고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에너지 이용 비용 절감 등으로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보급 및 이용·보급사업비의 조성) 및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등의 책무) 및 제14조 (금융·세제상의 지원)

-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25년까지 에너지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722천kW 설치 지원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연간 설비보급용량(천kW)	48	42	43	42	46	익년 2월	시설대수 * 장비별용량(KW)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실적 (당해년도 사업 12월 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37,422**	**30,730**	**35,564**	**35,564**	**35,564**
- 국 비	**81,252**	18,438	20,938	20,938	20,938
- 지방비	**28,685**	6,146	7,513	7,513	7,513
- 자부담	**27,485**	6,146	7,113	7,113	7,113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과 「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과 「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양식어업(종자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

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선정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사업자 선정 시 사업대상 양식장의 환수량에 맞는 적정설비가 당해연도에 모두 설치되도록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자를 선정
- 시설 부지 등을 임차한 어업인의 경우 임차 잔여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되, 관련법에 따라 임차 잔여기간(사용허가)이 5년 이하로 정하여 있는 경우도 사업지원대상자에 포함

○ 대체사업자 선정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 사업자 선정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시 기존 가온 또는 냉각시설을 반드시 존치하여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추진 제한지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선정 제외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설치 지원

ㅇ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해수 취수를 필요로 하는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설치 지원

② **대상시설 요건**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기계실 부지 등) 사업선정 전까지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단, 위 (수)면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는 반드시 히트펌프 열원 확보(복합열원 히트펌프는 수열원 히트펌프 가동을 위한 열원 확보)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

  * 미 허가(신고) 지하수 관정 및 취수시설 등은 열원으로 활용 불가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은 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水(수)면적 1,000㎡이상 또는 사용전압 440V이하 취수펌프 3상 전동기 전체용량이 150kW이상인 시설

○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

<지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 복합열원 히트펌프는 수열원 냉난방용량이 50% 이상의 제품

<수열원 및 복합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

  *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인버터 적용 기준>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6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

③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2018년도에 지원자금의 한계로 적정시설 규모보다 작게 지원된 경우는 가용예산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 전년도 신청했으나 예산부족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로 당해연도 재 신청 사업자를 2순위로 지원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 때문에 적정설비의 일부만 설치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후순위로 지원

ㅇ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2018년도에 실시한 사업수요조사 시 신청한 자를 우선순위로 지원
- 최대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

ㅇ 경합 시 우선순위

1. 환경친화형 배합사료를 100% 사용하는 자
2. 양식장 HACCP 동록양식장
3.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자
4. 최근 2년간 수출실적이 있는 자
5. 유류사용 또는 환수량이 많은 양식시설
6. 태풍 등 재해를 입은 어가

*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

④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공통사항

- 양식장 신축 또는 증축 등 사업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확장을 고려한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에 설계도면 및 시공사 계약서 등 첨부하여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단, 확장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원시는 차액 설계해야 함

ㅇ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히트펌프 가동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

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 열원설비의 주요구성(히트펌프, 열교환기, 전원설비 및 주 배관 설비)를 제외한 부대설비(기계실, 축열 및 폐열조, 여과설비)는 전체공사비의 30%이하로 지원 가능

* 보급되는 장비 및 구조물의 용량은 열원설비(히트펌프)의 용량에 부합하여야 한다.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

- 인버터 가동에 필요한 인버터가 설치된 배전반, 제어장치 및 부속설비, 배관·배선, 기존 설비와 연계시설, 온도저감시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① 지원형태

○ 지원조건(재원)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구 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	지열·수열원 히트펌프	60%	20%	20%
	복합열원 히트펌프(신설)	50%	20%	30%
에너지절감시설	인버터	60%	20%	20%

○ 지원규모 : 국비보조 20,93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35,563	20,938	7,112	7,512
에너지절감시설 (히트펌프)	30,655	18,333	6,161	6,161
에너지절감시설 (복합열원)	4,000	2,000	8,000	1,200
에너지절감시설 (인버터)	1,009	605	202	202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

○ 사업 진행 중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형식변경 또는 사업비 증가, 사업 취소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검토결과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또는 취소

○ 사업진행 중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해당 투입비율대로 조정한 후 시행

- 다만, 당초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사업자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

○ 사업신청 어가의 주소지와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사업장과의 행정구역상 시·군·구가 다른 경우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에 신청함(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여부 사전 확인)

② **지원한도**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설치 희망 시설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생육적정 온도조건, 양식어가의 수조 환수량, 운영방법, 지역적 특성 등
- 사 업 비 : 시설용량(kW) × 지원한도

구 분			지원한도(천원/kW)
설비 형식	지열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해수열	해수열	850
		복합열원	

* 해수열 및 복합열원 히트펌프의 단위별 최소 지원사업비 : 110백만원
* 열교환기-히트펌프 설비는 열교환기를 제외하고 히트펌프 단독으로 보급가능 (열교환기 단독 보급 불가)
* 설비형식별 적용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준단가 공고에 따라 변경적용 할 수 있다.
* 히트펌프의 지원 한도 용량은 양식장에 확보되는 (해)수열원 용량 기준

○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지원 사업비는 각 인버터 용량과 대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지원

- 사업비(지원한도) = Σ(인버터 용량에 따른 금액 × 대수) × 1.5

구 분		금액(천원)
사용전압	인버터용량(kW)	
380	3.7	4,080
380	5.5	4,600
380	7.5	5,020
380	11	5,600
380	15	6,020
380	18.5	6,410
380	22	6,980
380	30	7,553
380	37	8,665
380	45	9,331
380	55	10,551
380	75	11,299
380	90	13,623
380	110	16,776
380	132	19,234
380	160	21,851
380	185	26,444
380	220	29,724

* 인버터는 전동기보다 한단계 상위규격 선정(예 전동기 3.7kW → 인버터 5.5kW)
* 인버터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별도 가산(1.5배)
* 인버터 용량 220㎾ 초과의 경우 직선보간법을 적용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계획 수립 통보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해당없음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해당없음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공고	(시·군·구) ·사업자 선정(수산조정위원회 공개심의)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지원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 체결 (시·군·구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보조사업 위탁시행 (설계, 감리, 사업관리 등) ·사업비 집행	(한국농어촌공사) ·정산보고서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구) ·하자관리
(보조사업자) ·자부담 납부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운영현황 효과 자료 제출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도에 통지('18.12월)

○ 시·도의 사업수요, 그 동안의 지원성과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배정 통보(예산 확정 시)

* 집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시·도간 지원금 조정 배정

2. 사업신청 단계

시·도

○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된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 예산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 통보('18.12월)

시·군·구

○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계속)

○ 어가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자료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후 사업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19.2월)

- 시·군·구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성을 검토[별지 제1호서식]
-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 시행[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현장조사 지원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19.2월)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18.2월)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18.2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가온 또는 냉각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3. 사업자선정 단계

시·도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 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19.2월～계속)

시·군·구

○ 시·도에 사업신청 및 예산요구('19.2월～계속)

- 제출서류 :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1호서식], 현장조사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사업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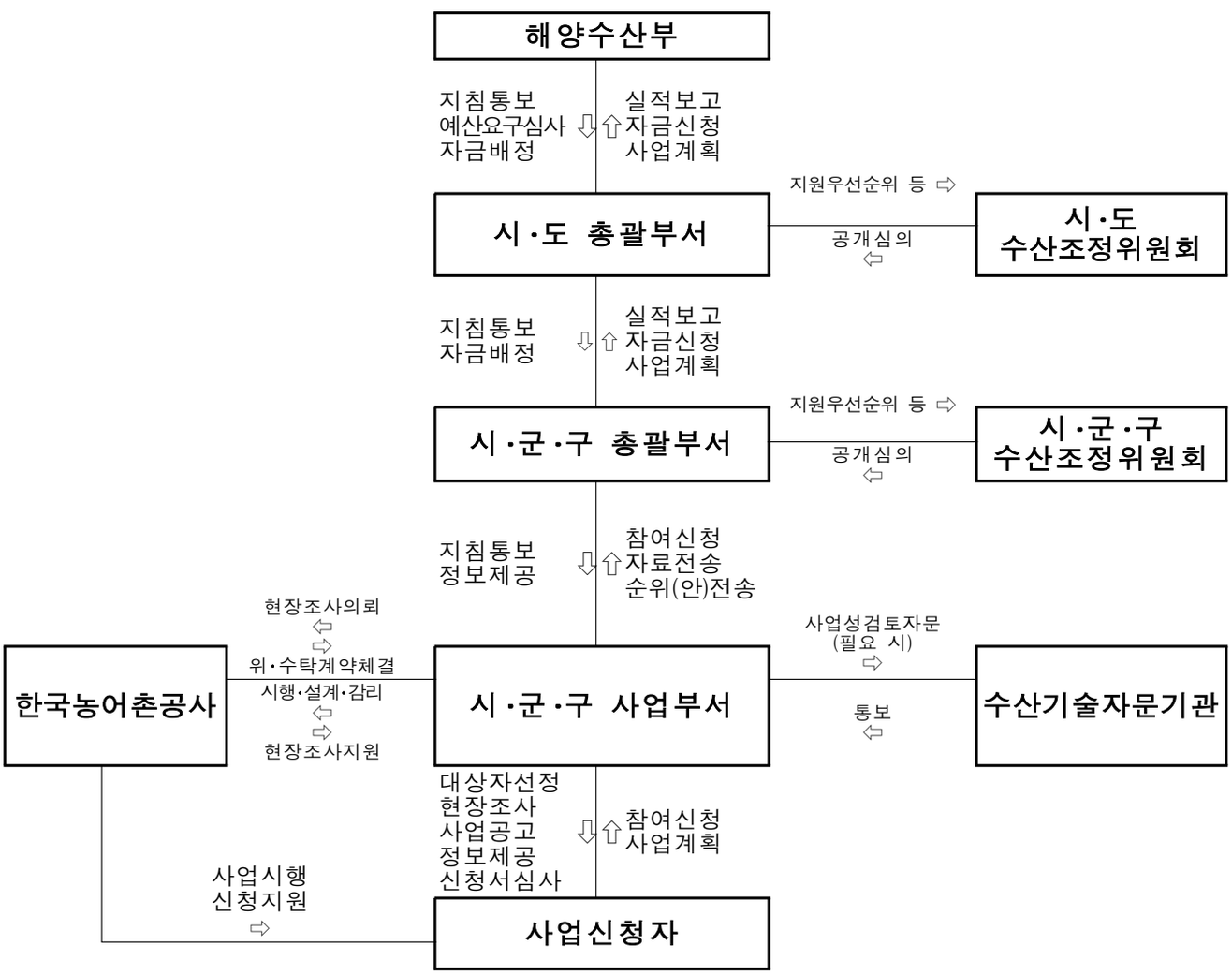

* 수산기술자문기관은 어업기술센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기술보급기관 등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선정 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비를 지자체로 배정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대행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 대행하여 시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조건을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대상자(어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 공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일괄 교부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 자금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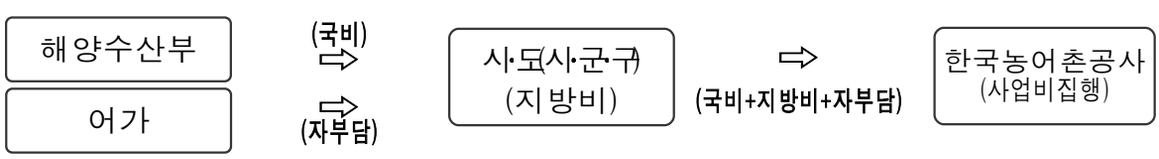

5. 이행점검 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과 어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함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

사업시행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 추진상황을 보고(분기별 익월 10일까지)하여야 함[별지 제9호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할 수 있음

- 사업시행 중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업자로 선정된 이후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구 담당자를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사업비 집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 완료 보고하여야 한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 대상 어업인의 요구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위탁시행 및 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등을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한도

(단위 : %)

구분 \ 대상액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사업관리대가	8.83	7.98	7.35	7.10	6.89	6.64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은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요율적용은 위·수탁 협약시 사업대상자(어가)별 대상액으로 각각 결정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공사비 대상액에 따라 요율 산출하여 적용(직선보간법)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①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구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② 업무 추진단계

사업신청 ⇨ **설계단계** ⇨ **공사발주** ⇨ **시공관리** ⇨ **준공단계** ⇨ **하자관리**

○ 한국농어촌공사는 단계별 추진사항 또는 분기별 추진사항을 시장 · 군수에게 보고

③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ㅇ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
-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건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존재유무를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ㅇ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ㅇ 설계도서는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도서 작성

ㅇ 사업대상자에게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ㅇ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ㅇ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기준에 의함.

ㅇ 공사착수 전 업무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ㅇ 공사 중 업무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ㅇ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ㅇ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어업인, 어업법인 등) 및

시·군·구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및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 정산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구 담당자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군·구에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변경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함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

○ 점검시기 : 사업담당자는 연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 현장점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 사업완료 익년 7~8월중 전년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시·도 또는 어가는 중점 관리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평가기준 : 시·도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추진성과 보고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익년도 2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후 익년 3월말까

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해양수산부로 취합 제출[별지 제13호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 대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

○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 기술지도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수산기술자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 사업대상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사후관리 기간 중 법인의 파산, 해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또는 시설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시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적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 간	처분제한기준
에너지절감시설	5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구)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취득한 에너지절감시설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기간을 동일시 적용

-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증기간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사업완료 후 익년 3월까지 사업추진결과를 시·도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별지 제12호서식]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사업대상자

○ 에너지절감시설 운영현황 효과에 대한 자료를 사업완료 후 익년 2월까지 시·군·구 제출[별지 제14호서식]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어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와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16호서식]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0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19. 4월)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후 해양수산부에 수요조사 결과 제출 및 예산요구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0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2.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table>
<tr><td>신청자</td><td colspan="2"></td><td>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td><td colspan="2"></td><td>참여자수</td><td colspan="2"></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남/여)</td><td colspan="2"></td><td>전 화</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 rowspan="3">신청내용</td><td>사업명</td><td colspan="7"></td></tr>
<tr><td>사업규모</td><td></td><td rowspan="2">합계</td><td colspan="3">정부지원(재원명)</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담</td></tr>
<tr><td>사 업
예정지</td><td></td><td>계</td><td>보조</td><td>대출</td></tr>
</table>

2.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 경영능력 ○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 생산기술 또는 경영능력 ○ 경영 규모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입지여건	○ 토지이용계획 ○ 생산 또는 원료조달 ○ 용수 ○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3. 종합의견

년 월 일

ㅇㅇ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현 장 조 사 확 인 서 (히트펌프Ⅰ)

일반개요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현황	생산시설	시설유형	계				기 타		
		면적/마릿수	㎡/마리						
		가온면적	㎡						
	가온방법 *(○)	기 종	*유류보일러( ) *전기보일러( ) *기타( )						
		가온연료	계	경유	중유	전기	기타		
		1년총사용량	-	L	L	kWh			
		1년총사용액	백만원						
		가온기간 : 월 ~ 월(일간)			동계 최저 설정온도 : ℃				
	부대시설 및 규모						기 타		
		㎡	㎡	㎡					
수출납품	품 목 별	계							
	최근2년실적 (톤,백만원)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 출 국							
		수출시기	월 ~ 월		월 ~ 월		월 ~ 월		
	참여년수	총 년간	계약업체						
신청자 재정상황	자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연소득	어업소득	백만원		어업외소득	백만원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현 장 조 사 확 인 서 (히트펌프 II)

신청자 일반개요	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설립년월일				
	주 소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설치장소							(地番까지)		
	사업신청 대상시설 *(ㅇ)	기존/신규		*기존시설( ) *신규설치완공(예정)일 :						
		시설유형						기타		
		설치년도								
		면 적		㎡						
		가 로		m						
		세 로		m						
		높 이		m						
		보온 시설	지붕							
			벽체							
			단열재							
	유형확인 *(ㅇ)	수평밀폐형( ),수직밀폐형( ),SCW형( ),수열히트펌프( ), 복합열 히트펌프( )								
	지열교환기 설치공간 *(ㅇ)	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설치공간 토지소유자		*자가( ) *임차 : 잔여기간(년)						
	신청자여건 *(ㅇ)	자부담(20%) 능력		시설부지 소유권자		생산시설 소유여부	열원 확보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년					
	입지여건 *(ㅇ)	설치장소 토양조건			전기시설		신청 장소 금후 10년이내 개발예정		최근침수 피해연도	
		양질토	암석토	매립지	현재 계약용량	한전 인입 거리	개발예 정연도	*비대상		
					kW	m	년		년	
	생 산 계 획	생산물		종류	종류		종류		종류	
		면적 및 규모		㎡						
		시기		월 ~ 월						
		생육적정온도		℃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현 장 조 사 확 인 서 (인버터)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현황	시설 운영현황	가온비/년	연료종류	전력요금/년	사용전력량/년					
		천원		천원	kWh					
		총수면적	㎡	계/형식	OO식 수조	OO식 수조				
		총 설비용량	kW	톤/ 조	톤/ 조	톤/ 조				
	가온방법	가온기종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기타( )					
		가온면적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조수간만의차	평균조차	m	최대	m	최소	m			
	취수시설현황	펌프유형								
		펌프규격	mm	mm	mm	mm	mm			
		전동기용량	kW	kW	kW	kW	kW			
		상용전압	V	V	V	V	V			
		대수	대	대	대	대	대			
사업신청 내 용	설치장소	(지번까지)								
	설치용량 및 대수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kW	kW	kW	kW	kW				
		대	대	대	대	대				
	절감설비 필요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신청자 재정상황	자산	동산	백만원	부동산	백만원	예금	백만원			
	부채	금융대출	백만원	임대보증금	백만원	기타	백만원			
	연소득	어업소득	백만원	어업외소득	백만원	기타	백만원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히트펌프)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규모	시설 운영현황	가온비/년	연료종류		전력요금/년	사용전력량/년				
		천원			천원	kWh				
		계/형식	OO식 수조		OO식 수조	OO식 수조	기타( )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톤/ 조			
	가온방법	가온기종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기타( )				
		가온면적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	㎡		㎡	㎡	㎡			
수출납품	최근 2년간 수출실적	품 목			물 량	톤	금액	백만원		
		참여년수	총 년		수출국		시기	월 ~ 월까지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친환경 (지열, 냉, 가온) 시스템								
	설치장소	(지번까지)								
	시설유형	순환여과식( ), 유수식( ), 반 유수식( ), 지수식( )								
	시설용량 (kW)	※10RT(35kW)단위 작성			사업비 (천원)					
	생육적정(희망) 온도(℃)									
	희망유형(ㅇ)	수직밀폐형( ), SCW형( ), 열교환가히트펌프( ), 수열히트펌프( ), 복합열히트펌프( )								
	시설설비 필요공간확보	가능면적	㎡		설치장소					
	경영여건(ㅇ)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사항 및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ㅇㅇㅇ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6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 세부사업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공통사항>

1.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5. 지하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서류 제출
6.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사본) 1부.
7.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 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별지 15호) 첨부 제출 1부.
8.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개인, 법인) 1부.

[별지 제5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 (인버터)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규모	시설 운영현황	가온비/년	연료종류		전력요금/년	사용전력량/년			
		천원			천원	kWh			
		총수면적	㎡		계/형식	OO식 수조	OO식 수조		
		총 설비용량	kW		톤/ 조	톤/ 조	톤/ 조		
	가온방법	가온기종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기타( )			
		가온면적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취수시설 현황	펌프유형							
		펌프규격	mm		mm	mm	mm	mm	mm
		전동기용량	kW		kW	kW	kW	kW	kW
		상용전압	V		V	V	V	V	V
		대수	대		대	대	대	대	대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에너지절감시설(인버터)시스템							
	설치장소	(지번까지)							
	설치용량 및 대수	유형	유형		유형	유형	유형		
		kW	kW		kW	kW	kW		
		대	대		대	대	대		
	사업비(천원)				필요공간 확보면적		㎡		
	경영여건(ㅇ)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사항 및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ㅇㅇㅇ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7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세부사업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

<첨부서류>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공통사항>

1.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5.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사본) 1부.
6.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 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별지 15호) 첨부 제출 1부.
7.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개인, 법인) 1부.

[별지 제6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히트펌프)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전체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비닐(부직포)	철근콘크리트	패널구조	기타	계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기타		현재용량	한전인입거리	비상발전기
㎡	㎡	㎡	㎡	㎡	㎡				년	kW	m	kW

나.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 고
시설형태	면 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						

2. 사업계획

가. 시스템 설치

시스템 선택					
계	지열에너지 설비			수열에너지 설비	
	수 직 밀폐형	수 평 밀폐형	수 직 개방형 (SCW)	해수열 히트펌프	복합열 히트펌프
면적	㎡	㎡	㎡	㎡	㎡
용량	kW	kW	kW	kW	kW

ㅇ 시스템 설치 계획

- 구체적인 사업신청 사유

ex) 부화, 먹이배양, 착저기 등 양식 시기별 환수량 감소, 썰물 취수 불능으로 가동불능 등

- 복합열원 히트펌프 등의 운영 계획

나.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 시기 및 과정				생육적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계	㎡(마리)	월 순				℃

다.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17		2018		2019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	톤	백만원					

라. 재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마.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ㅇ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ㅇ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ㅇ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 (2매 이상) 1부.

[별지 제7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세부계획서(인버터)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전기설비 보유현황

전기일반현황			전기설비현황			
한전계약 용량(kW)	설비 용량	비상 발전기	설 비 명	○○반	○○반	○○반
kW	kW	kW	크 기			
			면 수	면	면	면

나. 전력사용 현황

전년도 전력사용 현황(○○○○년)													
사용월	총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사용량 (kWh)													

다. 사업예정시설 현황

취수펌프				전동기				비고
형 식	구 경	유 량	양 정	형 식	용 량	극 수	전 압	
	mm	㎥/s	m		kW		v	
	mm	㎥/s	m		kW		v	
	mm	㎥/s	m		kW		v	
	mm	㎥/s	m		kW		v	
	mm	㎥/s	m		kW		v	

2. 사업계획

가. 시스템 설치

순번	인버터용량(kW)	대수	주파수(Hz) 조정 범위(%)	비고
1				※주파수 조정 범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을 받아 작성
2				
3				
4				
5				

나.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 시기 및 과정				생육적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계	㎡(마리)	월 순				℃

다.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17		2018		2019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계	㎡	톤	백만원					

라. 재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마.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ㅇ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ㅇ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ㅇ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 및 각 전동기별 명판 사진 (2매 이상) 1부.

[별지 제8호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제9호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세부사업명을 히트펌프와 인버터로 구분 작성
2.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3.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4.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　　년)

<ㅇㅇ시·도>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계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잔액	이자
			개소수	설치대수	용량(kW)	열교환기(kcal/h)	계	국비(A)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B)	지방비	자부담	국비(C)	국비(D)	국비
계																	

주) 1. “세부사업”은 “지열”, “해수열”, “인버터”로 기재하고 정산서는 히트펌프와 인버터로 구분 작성

2. 이자는 반납 시점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3. 국비(A) = (B)+(C)+(D)

4. 사업자별(사업자명, 주소) 포함 정산내역 별첨 제출(엑셀)

5. 작성서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한글 또는 엑셀)

[별지 제11호서식]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

1. 사업대상자 :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3. 소 재 지 :
4. 사 업 포기/변경 내용 :

사업계획(당초)		포기/변경		사 유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유로 사업을 (포기/변경)하고자 함

년 월 일

신청자 : ㅇ ㅇ ㅇ (인)

ㅇㅇ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시설)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주요 변경·승인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12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 추진결과(　　년)

* 히트펌프/인버터 구분작성

시·도	시·군·구	사업신청내역									사업정산내역										준공여부		
		사업자	주소	양식 품종	설비 형식	에너지 절감 장치 용량 (kw)	사업비 (천원)				설비 형식	열교환기		에너지절감장치			사업비 정산액(천원)				여/부	미준공 사유	준공일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규격 (kcal/h)	수량	합계 (kW)	평균 용량	대수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소계																						

[별지 제13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 추진성과 보고서(　　년)

* 히트펌프/인버터 구분작성

1.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현황 및 효과

시·도	시·군·구	사업자명	주소	해수면/내수면	양식품종	양식방법	설비형식	대수	용량(kW)	열교환기 규격(kcal/h)	사업신청(천원)				사업정산(천원)				준공일(년월일)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소계																		

가온 또는 냉각기간	기간 설정온도	설치 전					설치 후				
		전 기		유 류		소득	전 기		유 류		소득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월.일 ~ 월.일	(℃)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 기존가온, 냉각시설 운영결과와 비교하되, 기존시설이 없었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절감시설 전수조사보고서 참조(매년 3월 중 보고서 발간)

2. 교육 및 평가결과

시·도	시·군·구	교 육		현장지도		평가회개최		평가회 참석자 사업내용 만족도					
		계		횟수	연인원	횟수	인원	계	매우만족	만 족	보 통	불만족	매 우 불만족
계	소계	회	명	회	명	회	명	명					

3.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시·도	시·군·구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별지 제14호서식]

사업자용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 추진성과 보고서(　　년)

* 히트펌프/인버터 구분작성

1.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현황 및 효과

시·도	시·군·구	사업자명	주소	해수면/내수면	양식품종	양식방법	설비 형식	대수	용량 (kW)	열교환기 규격 (kcal/h)	사업신청 (천원)				사업정산 (천원)				준공일 (년월일)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가온 또는 냉각기간	기간 설정온도	설치 전					설치 후				
월.일 ~ 월.일	(℃)	전 기		유 류		소득	전 기		유 류		소득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2.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3.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사진(첨부)

[별지 제15호서식]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 지원 동의서

○ 사업신청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2.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 시행지침의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공 동 명 의 자			
연번	주 소	성 명(날인)	연락처
		(인)	
		(인)	
		(인)	
		(인)	
		(인)	

[별지 제16호서식] — 사업장 전시 표찰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1. 준 공 일 :　　년　　월　　일
2. 사업장소 :
3. 성　　명 :　　(휴대전화 :　　)
   법인체명 :　　(참여인수 :　　명,　대표 :　　)
4.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5. 사업규모 :　　㎡
6. 주요 시설내용 및 용량
   ㅇ
7. 양식대상 :　　(기간 :　　)
8. 기대효과 :
   ㅇ
   ㅇ
9. 기술지도 : 소속　　(담당자 :　　☎　　)

10. 시공업체 :　　(담당자 :　　☎　　)

해양수산부·한국농어촌공사
·ㅇㅇ시도·ㅇㅇ시군구

<사업장 전시표찰 규격>

ㅇ 규격 : 가로 60cm × 세로 45cm
ㅇ 재질 : 포맥스(고밀도 압축판)
ㅇ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ㅇ 설치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온실 밖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ㅇ 기관명 표기 : 시도명 및 시·군·구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할 수 있음

② 양식장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시범사업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사무관 오상필	044-200-5630 044-200-564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를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친환경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전력비용 절감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어가의 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 제9조(신·재생에너지 기술 보급 및 이용·보급사업비의 조성) 및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등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수산업의 경영구조 개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등의 책무) 및 제14조 (금융·세제상의 지원)

-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를 양식어가에 보급하여 전력비용 절감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여 어가의 경영안정 도모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연간 설비보급량(천kW)	1,792	-	-	-	400	익년 2월	발전용량(KW) * 한국농어촌공사 추진실적 (당해년도 사업 12월 기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21,200**	**2,000**	**6,400**	**6,400**	**6,400**
- 국 비	**10,800**	1,200	3,200	3,200	3,200
- 지방비	**6,160**	400	1,920	1,920	1,920
- 자부담	**4,240**	400	1,280	1,280	1,280

※ 3개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평가 후 2021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

5. 2019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지원규모 (개소)	지 원 액			
		계	국고	지방비	자담
태양광발전설비 시설	2,560㎾ (13개소)		3,200	1,920	1,280

※ 지원규모는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자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선정

- 해당 양식장의 수면 및 유휴부지(제방, 수조구조물 외벽 끝), 지붕 등을 이용하여 50kW 규모(700㎡) 이상의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한 양식장이어야 함

○ 대체사업자 선정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사항 및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 사업자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추진 제한지역

(시장 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
- 개발제한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수변경관지구, 문화재보호법 적용지역, 농업진흥구역 등 발전사업허가의 취득이 어렵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지역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 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선정 제외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 해수 또는 담수를 이용하여 어류 등을 양식하는 양식장의 수면 및 유휴부지, 건축물의 지붕 등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 유휴부지(제방 부지 등)에 설치하는 경우 수면과 연접하여야 하며, 태양광발전설비 전체 면적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 지원시설은 수면을 벗어나 단독으로 설치 불가

② 대상시설 요건

○ 양식시설로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능 면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신청 전까지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신청 불가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장비 반입, 소음, 진동, 빛반사 등 주변 환경 및 공사 진행 등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한국전력 계통연계가 가능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법」, 「건축법」 등과 관련하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에 제약이 없는 양식장이어야 함

○ 사업신청 해당 지자체별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및 시·군 관리계획 조례에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양식장이어야 함

○ 에너지발전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

<발전설비(모듈, 인버터 등) 적용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③ **사업자 선정 기준**

- 양식장 시설부지 및 시설물이 신청자 소유의 토지인 경우 우선 지원
- 사업기간 내에 한국전력 계통연계가 가능한 지역
- 해당 양식장에 태양광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 우선 지원
-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 태양광발전사업에 지장이 없는 양식장

*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별지 14호]를 기준으로 평가

< 사업자 선정 방법 >

○ 지자체에서 어가별 사업계획 및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수산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신설)

○ 수산조정위원회는 대상자 사업계획서, 사업여건,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등 종합하여 결정(신설)

○ 예산은 사업대상자 선정 후 해당 시·도별 배정

④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태양광발전 시설에 필요한 토목공사, 전기공사, 발·변전설비 및 인버터, 전기실, 구조물 및 지지대, 태양광전지판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발전설비 운영에 필요한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및 감시·제어설비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① **지원형태**

○ 지원형태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규모 : 국비보조 3,200백만원

- 총사업비 6,400백만원(국비 3,200, 지방비 1,920, 자담 1,280)

○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청장(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

② **지원한도**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지원 시범사업비는 발전용량 용량에 따른 지원

- 지원 사업비 : **발전용량(kW) × 지원한도금액** (지원한도 : kW당 250만원)

* '19년 사업의 경우 발전용량을 500kW이하로 제한하여 사업비 책정

Ⅱ.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계획 수립 통보	(해수부) ·사업추진계획, 세부사업계획 통보	(해수부) ·해당없음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해당없음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공고	(시·군·구) ·사업자 선정(수산조정위원회 공개심의)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지원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 ·위수탁 계약 체결 (시·군구 →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보조사업 위탁시행 (설계, 감리, 사업관리 등) ·사업비 집행	(한국농어촌공사) ·정산보고서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구) ·하자관리
(보조사업자) ·자부담 납부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운영현황 효과 자료 제출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도에 통지('18.12월)
○ 시·도의 사업수요, 그 동안의 지원성과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배정 통보(예산 확정 시)

2. 사업신청 단계

시·도

○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정된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별도의 자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군·구별 사업량 및 예산 배정 통보('18.12월)
○ 시·군·구별 사업자 선정 시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19.3월)

시·군·구

○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계속)
- 발전수익 등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어가에 설명(한국농어촌공사 협조)

○ 어가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세부사업계획서) 등 사업신청 자료를 접수하고 현장조사 후 사업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19.2월)
- 시·군·구에서는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성을 검토[별지 제1호서식]
-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을 의뢰하여 현장조사 시행[별지 제2호서식]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현장조사 지원 의뢰를 받아 현장조사('19.2월)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 지원('19.2월)
○ 시·군·구로부터 발전수익 등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 요청 시 협조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수산기술보급기관 등의 검토를 받아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19.2월)

- 사업신청서 작성 시 태양광발전설비 및 전기실 필요 면적을 확보하고 시설 형식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해당 양식장에 태양광발전사업이 가능한지 해당 지자체에 복합민원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사업 사전검토 결과 제출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서

3. 사업자선정 단계

시·도

○ 시·군·구별 사업자가 선정되어 시·도에 통보시 시·도 수산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확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19.3월)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자료 등을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19.3월)

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사업성 검토서, 현장조사서를 검토해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사업자 우선순위 등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30% 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신설)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시는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별지14호) 기준에 의거 심사하고 사업자를 선정.('19.3월)

○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시·도에 사업신청 및 예산요구('19.3월～계속)

– 제출서류 :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1호서식], 현장조사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사업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사업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 자금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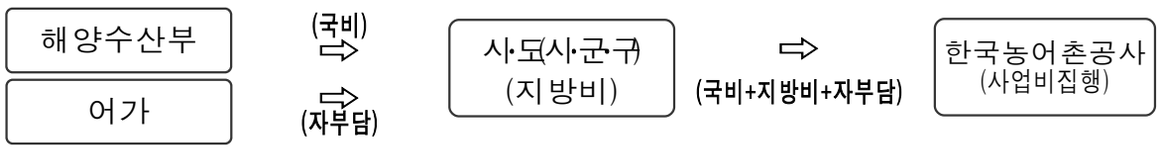

(사업 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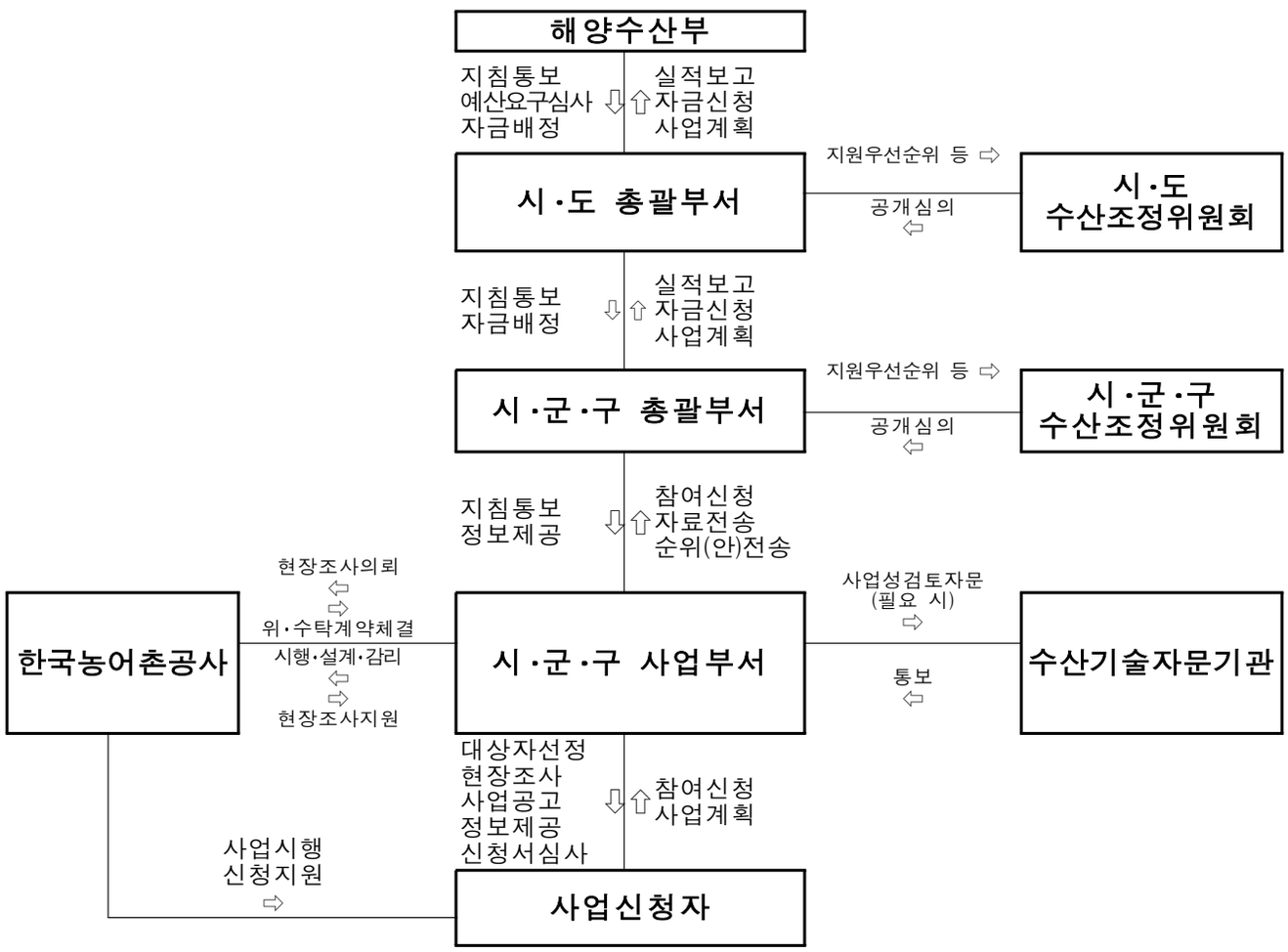

* 수산기술자문기관은 어업기술센터,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기술보급기관 등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별 선정 결과에 따라 국비지원 사업비를 지자체로 배정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

에 따라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약대행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 대행하여 시행(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조건을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대상자(어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받아 지방비와 함께 사업비를 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 공사)에게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일괄 교부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

5. 이행점검 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과 어가에서 예치한 자부담을 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함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에 대한 감독을 행하고, 사업시행을 점검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로 추진상황을 보고(분기별 익월 10일까지)하여야 함[별지 제6호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 할 수 있음

- 사업시행 중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함
-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사항 및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지원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 선정하여야 함

ㅇ 시·도지사는 배정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업계획의 중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구 담당자를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사업비 집행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사업 준공 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준공 완료 보고하여야 한다.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 대상 어업인의 요구 및 현장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비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ㅇ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의 위탁시행 및 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등을 담당

ㅇ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사업관리비는 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하여 집행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한도

(단위 : %)

구분 \ 대상액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사업관리대가	8.83	7.98	7.35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은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요율적용은 위·수탁 협약시 사업대상자(어가)별 대상액으로 각각 결정
-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공사비 대상액에 따라 요율 산출하여 적용(직선보간법)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①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ㅇ 사업 각 단계별 사·군·구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ㅇ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ㅇ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련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ㅇ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② 업무 추진단계

사업신청 ⇨ **설계단계** ⇨ **공사발주** ⇨ **시공관리** ⇨ **준공단계** ⇨ **하자관리**

ㅇ 한국농어촌공사는 단계별 추진사항 또는 분기별 추진사항을 시장 · 군수에게 보고

③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ㅇ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ㅇ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
- 입지조건 확인(계통연계 용량,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건 등)

-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일정 거리 이내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일정 거리 : 해당 지자체 조례 발전시설 허가기준 참고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ㅇ 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ㅇ 설계도서는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해당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업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설계도서 작성

ㅇ 사업대상자에게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ㅇ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ㅇ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ㅇ 공사착수 전 업무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ㅇ 공사 중 업무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5) 준공 단계

ㅇ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ㅇ 사업위탁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자(어업인, 어업법인 등) 및 시·군·구 담당자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및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 정산

ㅇ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구 담당자

사업대상자

ㅇ 사업대상자가 경영상황 등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포기 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시·군·구에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변경사항은 승인을 받아야 함

6.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단계

해양수산부

ㅇ 점검시기 : 사업담당자는 연 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ㅇ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실태, 추진상황 등 현장점검

ㅇ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ㅇ 사업완료 익년 7~8월중 전년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에너지절감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시·도 또는 어가는 중점 관리하여 사업성과 극대화

- 평가기준 : 시·도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추진성과 보고

ㅇ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시·도(시·군·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익년도 2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ㅇ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경영 장부를 기록 비치하게 하고 사업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를 사업완료 후 익년 3월말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해양수산부로 취합 제출[별지 제10호서식]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평가회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어업인 대상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

ㅇ 태양광발전설비 보급사업장에 대한 현장 기술지원 및 교육 등 생산 기술지도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수산기술자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 사업대상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허위 신청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후 반환조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제31조(보조금의 반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시장·군수는 사후관리 기간 중 법인의 파산, 해산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 또는 시설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시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적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 기 간	처분제한기준
태양광발전설비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하자보증기간에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문제를 일으킨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 제한 등의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여야 함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사업완료 후 익년 3월까지 사업추진결과를 시·도 및 해양수산부에 제출[별지 제9호서식]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 설치 완료된 시설에 대한 효과분석 계획·수립 및 이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태양광발전설비 운영현황 효과에 대한 자료를 사업완료 후 익년 2월까지 시·군·구 제출[별지 제11호서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어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와 확대보급 유도[별지 제12호서식]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시·도지사는 2020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19. 4월)(신설)

- 수산조정위원회 심의 후 해양수산부에 수요조사 결과 제출 및 예산요구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0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2.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table>
<tr><td>신청자</td><td colspan="2"></td><td>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td><td colspan="2"></td><td>참여자수</td><td colspan="2"></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남/여)</td><td colspan="2"></td><td>전 화</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8"></td></tr>
<tr><td rowspan="3">신청내용</td><td>사업명</td><td colspan="7"></td></tr>
<tr><td>사업규모</td><td></td><td rowspan="2">합계</td><td colspan="3">정부지원(재원명)</td><td rowspan="2">지방비</td><td rowspan="2">자담</td></tr>
<tr><td>사 업
예정지</td><td></td><td>계</td><td>보조</td><td>대출</td></tr>
</table>

2. 사업검토

<table>
<tr><td colspan="2" rowspan="2">구 분</td><td rowspan="2"></td><td colspan="3">평가</td><td rowspan="2">검 토 의 견</td></tr>
<tr><td>상</td><td>중</td><td>하</td></tr>
<tr><td rowspan="3">사업대상자</td><td>사업능력</td><td>○ 사업신청 자격요건
○ 자부담 능력</td><td></td><td></td><td></td><td></td></tr>
<tr><td>사업계획</td><td>○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 사후관리 계획</td><td></td><td></td><td></td><td></td></tr>
<tr><td>입지여건</td><td>○ 사업부지 확보
○ 토지이용계획
○ 전력(계통연계) 여건
○ 주변 민원 발생소지</td><td></td><td></td><td></td><td></td></tr>
<tr><td>지자체</td><td>사업여건</td><td>○ 지자체 조례의 발전사업 허가기준과 대상지 사업여건의 부합성 검토
○ 지방비 확보 여건</td><td></td><td></td><td></td><td></td></tr>
</table>

3. 종합의견

년 월 일

ㅇㅇ 장 (인)

[별지 제2호서식]

현 장 조 사 확 인 서 (태양광)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현황	양식장	총수면적	제방식/석축식	제방식/석축식	제방식/석축식	제방식/석축식			
		㎡/ 조	㎡/ 조	㎡/ 조	㎡/ 조	㎡/ 조			
	건축물 형식/규모								
		00m×00m×1동	00m×00m×1동	00m×00m×1동					
	지붕면적	㎡	㎡	㎡	㎡	㎡			
	배전선로	계통연계 가능용량		전주번호		선로와의 거리			
		kW		22.9kV 3상4선식 ○○○선 ○○○		m			
	진입로	확보여부(여 / 부)		도로폭(m)					
사업신청 내 용	형 식	수면활용 고정식 / 수면 부력식 / 지붕 고정식			발전용량	kW			
	발전설비 설치장소	주소지							
		지번	지목	면적	지역·지구(토지이용계획 확인)				
				㎡					
	전기실 설치 가능 장소	가능 면적	㎡	설치장소					
기타 특이사항 (조사의견)									

현장조사 결과 위 내용과 틀림없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현 장 조 사 사 진 (1)

위치도(항공사진)

양식장 전체 전경

현 장 조 사 사 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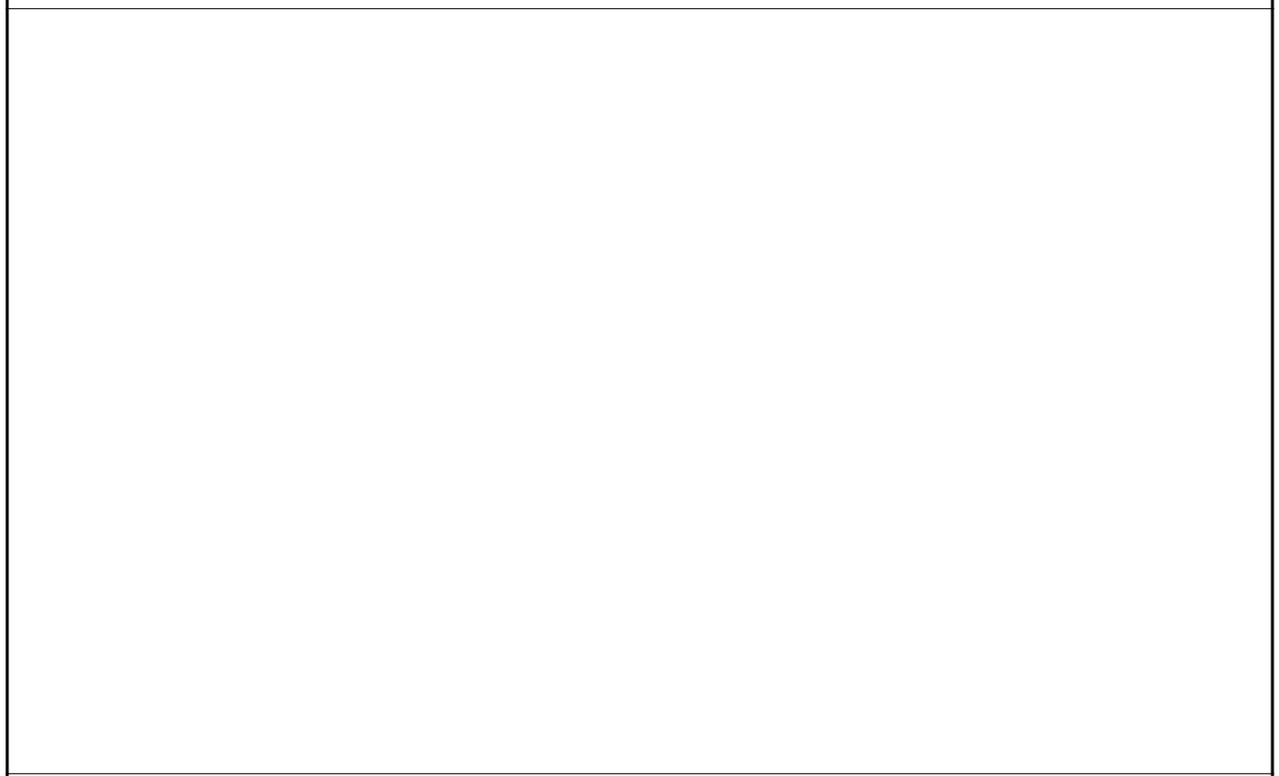

태양광 설치 부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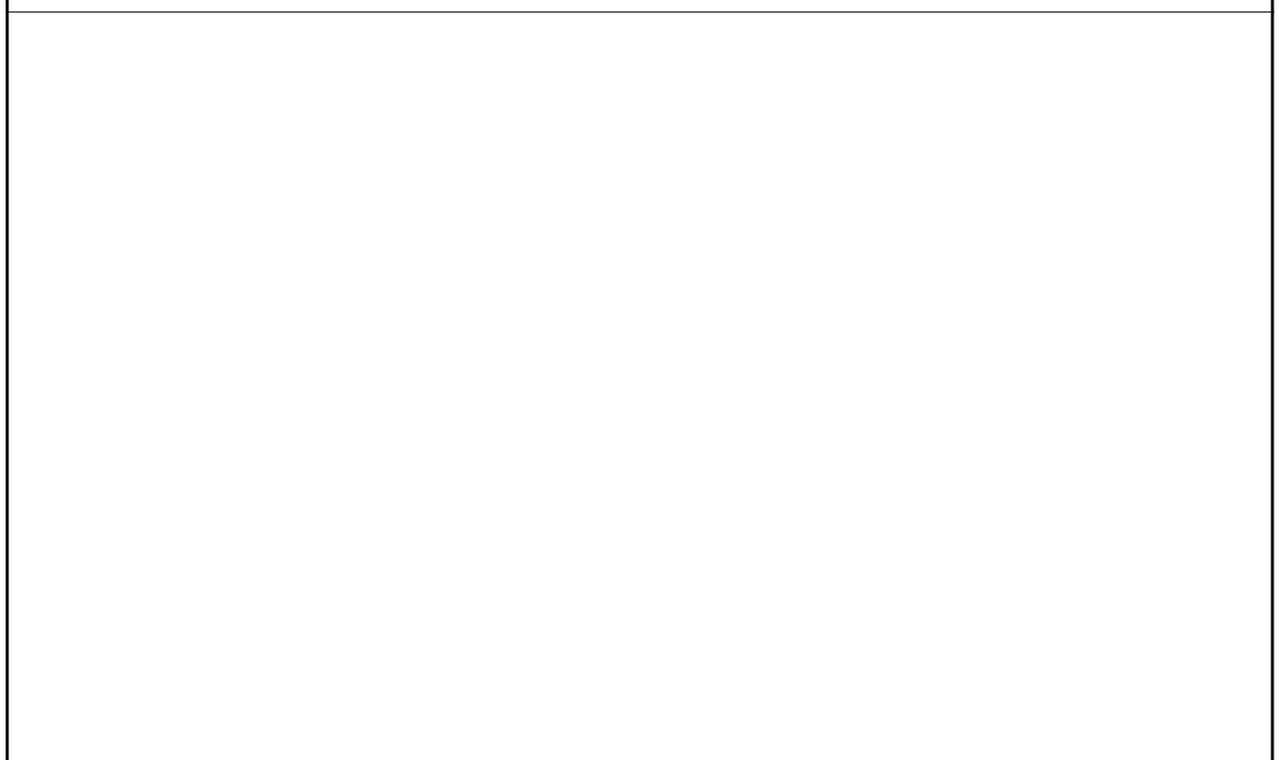

인입 전주 번호 사진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신청서 (태양광)

신청자 (법인체) 일반개요	신청자				생년월일		(남/여)		
	법인체명								
		참여자 수		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영 경력	년		
	연 락 처	전 화			팩 스				
		휴대폰			이메일				
기 존 시설규모	양식장	총수면적	제방식/석축식		제방식/석축식	제방식/석축식	제방식/석축식		
		㎡/ 조	㎡/ 조		㎡/ 조	㎡/ 조	㎡/ 조		
	건축물 형식/규모								
		00m×00m×1동	00m×00m×1동		00m×00m×1동				
	지붕면적	㎡	㎡		㎡	㎡	㎡		
	부대시설 형식/규모								
	계약전력	kW			연평균 전력료	백만원			
	생산물	종류	생육시기		적정온도	출하시기			
			월~ 월		℃	월			
사업신청 내 용	신청내용	태양광발전설비							
	설치형식	수면활용 고정식 / 수면 부력식 / 지붕 고정식				발전용량	kW		
	모듈설치장소	지번(대표)							
		확보면적	㎡		지목				
	전기실위치	지번							
		확보면적	㎡		지목				
	사업비(천원)				자부담				
	경영여건(○)	자부담(20%) 가능여부		시설부지 자가소유 상황		생산시설 자가소유 상황	신청지역 개발 예정 대상여부		
		가능	불가	자가	임차잔여기간		대상	비대상	
					년				

신청인은 사업시행지침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인허가 사항 및 양식순기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별지 제4호서식]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 1부(신청자 작성)

<첨부서류>

1.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3.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④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4.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서 1부.
5. 신용조사서 1부.
6. 어업(양식업) 면허·허가증 또는 신고 증명서(사본) 1부.
7. 최근 2년 매출계산서 또는 종합소득세 납입증명서 각1부.
8. 어업면허(허가)가 공동면허 일 경우 신청자 이외 공유자의 동의서(별지 13호) 첨부 제출 1부.
9.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개인, 법인) 1부.

[별지 제4호서식]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 사업 세부계획서

1. 사업신청자 현황

가. 전체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경력	전기시설		
계	축제식 구조	비닐 (부직포)	철근콘크리트	패널 구조	기타		현재용량	한전인입 거리	비상 발전기
㎡	㎡	㎡	㎡	㎡	㎡	년	kW	m	kW

나. 전력사용 현황

최근 1년간 전력사용 현황(ㅇㅇㅇㅇ년)													
한국전력 고객번호													
사용월	총계	ㅇ월	ㅇ월	ㅇ월	ㅇ월	ㅇ월	ㅇ월	ㅇ월	ㅇ월	ㅇ월	ㅇ월	ㅇ월	ㅇ월
사용량 (kWh)													

다. 경영 현황(최근 2년)

최근 2년간 분기별 매출액								
년도	ㅇㅇㅇㅇ년				ㅇㅇㅇㅇ년			
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매출액								

※ 경영 현황 확인을 위한 매출계산서 또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등 증빙서류 제출

2. 사업계획

가. 태양광발전설비

태양광발전설비 계획				
발전용량	모듈설치 형식	인버터 용량	계통연계	연계전압
kW	수면활용 고정식 / 수면 부력식 / 지붕 고정식	kW 대	유 / 무	저압 / 고압

나.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 시기 및 과정				생육 적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계	㎡(마리)	월 순				℃

다. 재원 조달계획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백만원				-

라.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 ㅇ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ㅇ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경영비 절감 효과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첨부서류 :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양식장 전경, 발전설비 및 전기실 설치 예정 장소, 한전 인입주 전주번호 사진 (4매 이상) 1부.

[별지 제5호서식]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임대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차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 :

○ 임대차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1.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임대차대상목적물(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임 대 인 :　　(인)

임 차 인 :　　(인)

첨부 1. 임대인 인감증명서 1통.
　　2. 임차인 인감증명서 1통.

[별지 제6호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　　년　　분기)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연 계획					집행 실적(누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일정		사업공정 (%)	연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세부사업명을 히트펌프, 인버터, 태양광으로 구분 작성
2.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3.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4.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보조사업 정산결과 보고(년)

<ㅇㅇ시·도>

(단위 : 천원)

시·도	시·군·구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계				집행실적(정산)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이자
			개소수	설치 대수	용량 (kW)	열교환기 (kcal/h)	계	국비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B)	지방비	자부담	국비 (C)	국비 (D)	국비
계																	

주) 1. “세부사업”은 “지열”, “해수열”, “인버터”, “태양광”로 기재하고 정산서는 히트펌프와 인버터, 태양광으로 구분 작성

2. 이자는 반납 시점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함

3. 국비(A) = (B)+(C)+(D)

4. 사업자별(사업자명, 주소) 포함 정산내역 별첨 제출(엑셀)

5. 작성서식은 A4 횡으로 변경하여 작성(한글 또는 엑셀)

[별지 제8호서식]

사업 (포기/변경) 신청서

1. 사업대상자 :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3. 소 재 지 :
4. 사 업 포기/변경 내용 :

사업계획(당초)		포기/변경		사 유
내용	금액	내용	금액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유로 사업을 (포기/변경)하고자 함

년 월 일

신청자 : ㅇ ㅇ ㅇ (인)

ㅇㅇ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시설) 변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주요 변경·승인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9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 추진결과(　　년)

시·도	시·군·구	사업신청내역									사업정산내역										준공여부		
		사업자	주소	양식 품종	설비 형식	태양광 발전 설비 (kw)	사업비 (천원)				설비 형식	열교환기		태양광발전설비			사업비 정산액(천원)				여/부	미준공 사유	준공일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규격 (kcal/h)	수량	합계 (kW)	인버터 용량	대수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계																							
	소계																						

[별지 제10호서식]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태양광발전) 추진성과 보고서(　　년)

1.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현황 및 효과

시·도	시·군·구	사업자명	주소	해수면/내수면	양식품종	양식방법	설비형식	대수	용량(kW)	사업신청(천원)				사업정산(천원)				준공일(년월일)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소계																	

가온 또는 냉각기간	기간 설정온도	설치 전					설치 후						
		전 기		유 류		소득	전 기		유 류		태양광		소득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발전량	발전수익	
월.일 ~ 월.일	(℃)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kWh)	(천원)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 기존가온, 냉각시설 운영결과와 비교하되, 기존시설이 없었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에너지절감시설 전수조사보고서 참조(매년 3월 중 보고서 발간)

2.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시·도	시·군·구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자용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태양광발전) 추진성과 보고서(년)

1. 에너지절감시설 설치현황 및 효과

시·도	시·군·구	사업자명	주소	해수면/내수면	양식품종	양식방법	설비형식	대수	용량(kW)	사업신청(천원)				사업정산(천원)				준공일(년월일)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가온 또는 냉각기간	기간 설정온도	설치 전					설치 후						
		전 기		유 류		소득	전 기		유 류		태양광		소득
월.일 ~ 월.일	(℃)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전기소모량	비용	발전량	발전수익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kWh)	(천원)	(kWh)	(천원)	(kWh)	(천원)	(천원)

2. 미흡한 점 및 개선방안

미 흡 한 점	개 선 방 안

3.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사진(첨부)

[별지 제12호서식] — 사업장 전시 표찰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지원 사업

1. 준 공 일 :　　년　　월　　일
2. 사업장소 :
3. 성　　명 :　　(휴대전화 :　　)
   법인체명 :　　(참여인수 :　　명, 대표 :　　)
4. 총사업비 :　　백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5. 사업규모 :　　㎾
6. 주요 시설내용 및 용량
   ㅇ
7. 양식대상 :　　(기간 :　　)
8. 기대효과 :
   ㅇ
   ㅇ
9. 기술지도 : 소속　　(담당자 :　　☎　　)

10. 시공업체 :　　(담당자 :　　☎　　)

해양수산부·한국농어촌공사

·ㅇㅇ시도·ㅇㅇ시군구

<사업장 전시표찰 규격>

ㅇ 규격 : 가로 120cm × 세로 90cm
ㅇ 재질 : 포맥스(고밀도 압축판)
ㅇ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ㅇ 설치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온실 밖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
ㅇ 기관명 표기 : 시도명 및 시·군·구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할 수 있음

[별지 제13호서식]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 사업신청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동의내용

1. 본인은 동의서에 날인하기 전에 사업신청자로부터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 받았음.

2.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지원사업 시행지침의 사후관리기간(10년) 동안 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공 동 명 의 자			
연번	주 소	성 명(날인)	연락처
		(인)	
		(인)	
		(인)	
		(인)	
		(인)	

[별지 제14호서식]

□ 사업자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표

구 분		배점	심사항목	비 고 (증빙자료)
1.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50)	정량 지표 (30)	10	○ 법적, 제도적 제약 요인의 존재 여부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서
		10	○ 사업부지 확보 가능 여부	사업신청서(별지3호)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10	○ 한국전력 계통연계 여건	사업성검토서(별지1호), 현장조사서(별지2호) (한국전력 해당지점 문의 결과)
	정성 지표 (20)	10	○ 대상지 입지 조건 (설치위치, 진입로, 전기 인입)	사업성검토서(별지1호), 현장조사서(별지2호), 사업신청서(별지3호)
		10	○ 민원발생 가능여부	사업성검토서(별지1호), 현장조사서(별지2호)
2.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	정성 지표 (20)	5	○ 재원확보 가능성 (지방비, 자부담)	사업성검토서(별지1호), 사업 세부계획서(별지4호), 신용조사서, 매출계산서
		5	○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사업 세부계획서(별지4호)
		5	○ 대상자의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사업 세부계획서(별지4호)
		5	○ 사후관리 계획의 적정성	사업 세부계획서(별지4호)
3. 우선 순위 가점 (30)	정량 지표 (30)	14	○ 발전사업 허가 취득 여부	발전사업허가증
		10	○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	복합민원 사전심사 결과서
		2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100% 사용	배합사료 구매 세금계산서 등 제출 증빙서류
		2	○ 유기식품 인증 획득	유기식품 인증서 사본
		2	○ HACCP 등록 양식장	HACCP 양식장 등록증 사본
계		100		

③ 양식장 용수관리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사무관 오상필	044-200-5630 044-200-5642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지질처 지하수지질총괄부	부 장 전병칠 차 장 노영조	061-338-5791 061-338-579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해안·도서지역에서 양식장용수용 지하해수의 탐사 및 시추조사를 통해 개발가능적지 등 개발·이용 방안 제시

2.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 농어촌정비법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3. 성과목표

○ 지하해수조사를 통해 ‘25년까지 전국에 운영중인 육상양식장을 대상으로 양식장용수 개발 및 이용방안을 제시하여 육상양식산업의 경쟁력 제고

○ 간척지 수산양식단지를 대상으로 양식장용수 개발 및 이용방안 제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지구)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전체 사업지구 125지구	15	15	14	15	15	매년 말	지하해수 조사공 계획 대비 실적 작성 및 인계공 인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10년~2017년까지	2018년	2019	2020년이후
합 계	16,400	8,900	1,500	1,500	4,500
국 고	16,400	8,900	1,500	1,500	4,500
지 방 비	-	-	-		-
자 부 담	-	-	-		-

* 국고보조 : 100%(한국농어촌공사 위탁)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농어촌공사(지하수법 시행령 제4조)

3. 지원대상

○ 물리탐사, 시추조사 등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 간척지 수산양식단지 용수공급을 위한 현장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현장조사비, 조사기기 구입비, 외주용역비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직접비

○ 현장조사여비, 투입인력의 복리후생비, 보고서인쇄비, 교육훈련비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

○ 사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기타 일반관리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 및 용수관리)

○ 지원형태 및 기준 : 민간자본보조(국고 100%)

○ 사업의무량 : 당해 연도 정부예산으로 내시된 사업물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9년도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예산 1,500백만원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매년 양식장용수관리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시·도(시·군·구)를 통해 사업수요조사 실시('18.11～'18.12월)

- 양식장용수관리사업안내서 및 신청서(별도 통보)

시·도(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양식장용수관리사업을 희망하는 육상양식(종묘)생산시설어가를 조사하고 시·도지사는 사업수요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18.12월)

2. 사업지구 선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도에서 신청한 사업대상 후보지의 현지답사와 함께 시·도 및 시·군·구 협의를 통하여 다음의 대상지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19.1～2월)

- 시·도지사가 요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요청사유, 우선순위의 적정성, 이미 조사된 지구와의 중복여부, 타사업·타법과의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지구 선정

  *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별표>

  ① 지구특성

  · 양식장이 위치하는 지역이 조석간만의 차가 발생하여 용수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지의 여부를 해안(서해, 남해, 동해)으로 구분

  · 각각의 후보지 내 분포하는 양식장 수

  · 해안과의 거리

  ② 사업여건

· 조사 시행을 위한 접근성 측면에서 내륙(해안), 연륙도(다리로 연결된 섬), 도서(섬)로 구분

· 지구 내 양식장 수 대비 조사 신청율 구분

· 장비투입 용이성 판단

③ 지질특성

· 지하해수가 산출될 가능성을 판단하는 지구 내 대표지질 구분

④ 기타

· 답사에 의한 어가 및 지자체 호응도 등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지사가 요청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지답사(시·도 협의)를 통해 선정한 사업지구를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사업지구를 확정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19.2월)

○ 해양수산부는 간척지 수산양식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업지구(간척지)를 확정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19.2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당해 연도에 내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요청('19.2월)

-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연말까지 계획 목표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과에 따르며, 해당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와 세부조사 계획을 협의하여 사업 추진

- 조사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의 매수보상은 이해관계인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현실성 있는 적정 비용이 산정되도록 하여 계획변경 요인 최소화

해양수산부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시행계획 승인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시행계획 승인

4. 자금배정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보조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해양수산부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정 후 분기별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19.2월~)

해양수산부

○ 한국농어촌공사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근거로 보조금 교부('19.2월~)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시·도(시·군·구) 담당자 및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사업성과 발표회 등으로 관련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및 모니터링·점검 등 실시

○ 분기별로 사업추진 상황을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별지 제1호 서식>

해양수산부

○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

-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 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점검 실시

《제 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사항을 점검·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변경,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사업비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 그리고 관계법령에 위반할 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시정명령에 위반할 때에는 보조사업비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대한 보조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사업비 교부결정 후의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보조조건을 변경하거나 사업비 교부 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게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보조금이 당해사업에 사용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보조금의 이자는 기타재산수입과목으로 납입한다).

【지하해수조사 표준프로세스(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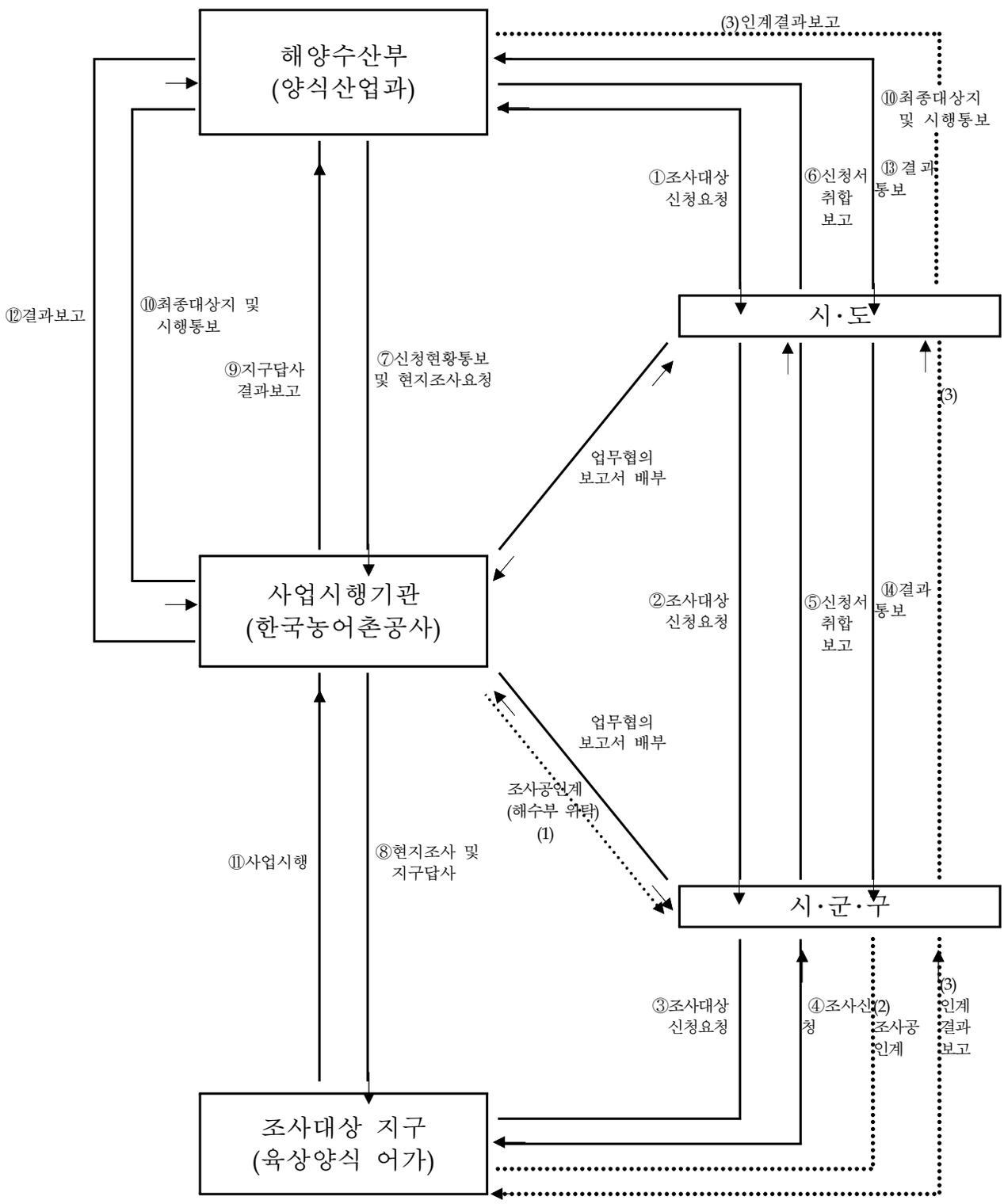

6. 성과측정단계

○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추진실적 및 준공결과 등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익년도 2월까지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사업담당부서 자체평가

○ 환　　류 :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 2019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2020년 예산 확정 후 별도 시행

<별지 제2호 서식>

Ⅴ. 기타사항

○ 조사공의 인계 및 이용

- 조사공의 경우 조사결과 도출 후 원상복구를 해야 함. 단, 해당어가에서 사용을 원할 경우,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인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자체에 조사공을 인계하고, 인계받은 지자체는 어가에 지하수법 관련조항을 첨부하여 최종 인계토록 한다. 인계받은 어가는 지하수법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 혹은 허가를 받고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는 임시보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 인계인수가 완료되면 지자체는 해양수산부(위탁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받은 내용과, 어가에 인계한 내용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별지 제3호 서식) 2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 별표 >

양식장용수관리 사업대상지구 선정기준

□ 기본방향

○ 시·도지사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요청한 후보지를 대상으로 요청사유, 우선순위의 적정성, 이미 조사된 지구와의 중복여부, 타사업·타법과의 저촉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지구 선정

- 우선 순위 : 육상양식(종묘)생산시설 밀집지역 중

① 적조 및 이상해류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가 빈발한 지역

② 정부 정책 수행, 지자체별 육상 해수양식(종묘생산)과 관련하여 양식단지 및 연구·기술개발 등의 시설 조성 계획이 있거나 추진 중인 지역

평가항목	배점	세부항목	비 고
지구특성	40	위치(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지구내 양식장수, 해안과의 거리	관련 통계연보, 지형도
지질특성	10	대표 지질	지질도
사업여건	40	접근성(내륙, 연륙도, 도서), 신청율, 장비진입도 여부 등	지형도 등
사업호응도 및 답사의견	10	해당 시·군 및 어업인의 사업 호응도, 사업대상 후보지 현지답사 결과	
합계	100		

< 별지 제1호서식>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추진실적 보고(분기)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														
				계 획					집행실적					차년도 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 잔액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비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비	융자	국비	융자
			%														

< 별지 제2호서식 >

양식장용수관리사업(지하해수조사) 신청서

①쪽

□ 신청자 일반사항

대표자 성 명		연 락 처	HP : Tel :
상 호			
양식장 주 소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소유자 주 소	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 양식장 현황

어업형태	□ 허가 □ 신고	어업종류	□ 육상종묘 □ 육상양식
등록(허가) 번 호		허가기간	
양식어종			
부지면적	㎡	시설면적	㎡
수조면적	㎡	수조개수	개

□ 양식용수 현황

지하해수 개발여부	□ 예 □ 아니요	지하해수 사용여부	□ 예 □ 아니요
냉·가온 여부	□ 동절기 가온 □ 하절기 냉온 □ 냉·가온 모두 □ 모두 안함		
지하해수 사용목적			

□ 개발·이용 계획

지하해수 산출 조건		활용성	조사 후 개발 여부 (○, × 표시)
수량	염도 (비중)		
많음	높음	직접 공급	( )
많음	낮음	해수 혼합 및 히트펌프(지하해수열)	
적음	높음	직접공급(산출량이내) 또는 혼합사용	
적음	낮음	히트펌프(지열)	

※ 지하해수 활용 형태는 지질 및 수량 산출에 따라 여러 관정형태로 사용(암반관정, 충적관정, 집수정 등)

【양식장용수관리사업 신청서】 양식에 의거 2020년 양식장용수 관리사업의 조사 대상 어가로 신청합니다.

2019 . . .

신청자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별지 제3호서식>

지하해수 조사공 인계인수서

지구명	공번	굴착행위 신고번호	위치						지하해수 조사내역					비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경도 (TMX)	위도 (TMY)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mm)	개발가능량 (㎥/일)	자연 수위 (m)	안정 수위 (m)	

상기 내역과 같이 지하해수 조사공을 정히 인계·인수함.

20 . . .

인계자

:

인수자

:

* 최종 인수자는 조사공 개발이용 전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행위를 필하여야 함.

④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팀 장 김종모 사무관 김형덕 주무관 이형록	044-200-5505 044-200-5523 044-200-550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내수면 어선에 탑재되어 있는 노후기관을 전기추진기로 대체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친환경 에너지절감을 도모하여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2. 근거법령

○「내수면 어업법」제17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30년까지 어선어업분야 20,000톤CO_2 배출 저감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목표/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 CO2배출 저감량(톤)	155	-	-	-	2월	전력간접배출계수 전기 사용단 0.459(tCO2/MWh) 기준으로 산정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800**	**800**	**800**	**800**
○ 전기추진기	**750**	**750**	**750**	**750**
- 국 고	450	450	450	450
- 지방비	150	150	150	150
- 자부담	150	150	150	150
○ 급속충전기	**50**	**50**	**50**	**50**
- 국 고	35	35	35	35
- 지방비	15	15	15	15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내수면어선에 전기추진장치를 대체(또는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 전기추진어선을 위한 급속충전기를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전기추진기) 내수면 어업법 제6조(면허어업), 제9조(허가어업), 제11조(신고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인

○ (급속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계류장 등), 운영, 정기점검, 사후관리가 가능한 지자체(시·도/시·군·구)

○ 지원제외 대상

- 최근 2년 이내에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과징금 처분이상)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수산관계 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 어선법에 따른 계선계 제출한 어선
- 가족(부부 등)이 어선의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적으로 지원하는 자

3. 지원대상

○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전기추진기 설치

○ 전기추진어선을 위한 급속 충전기 설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기추진기(전동모터 및 축전지 등) 설치

○ 급속충전기 설비의 설치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회 계 명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 지원조건

- 전기추진기 :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부담 20%
- 급속충전기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 가능)

○ 사업별 지원한도액은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한다)의 보조지원율로 지원

6. 전기추진장치(축전지 포함) 성능검사 및 승인

○ 「축전지 추진어선의 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63호)에 적합하여야 함

7. 급속충전기 성능검사 및 승인

○ 국내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함

○ 국내 인증기준이 없는 충전기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취득한 제품이어야 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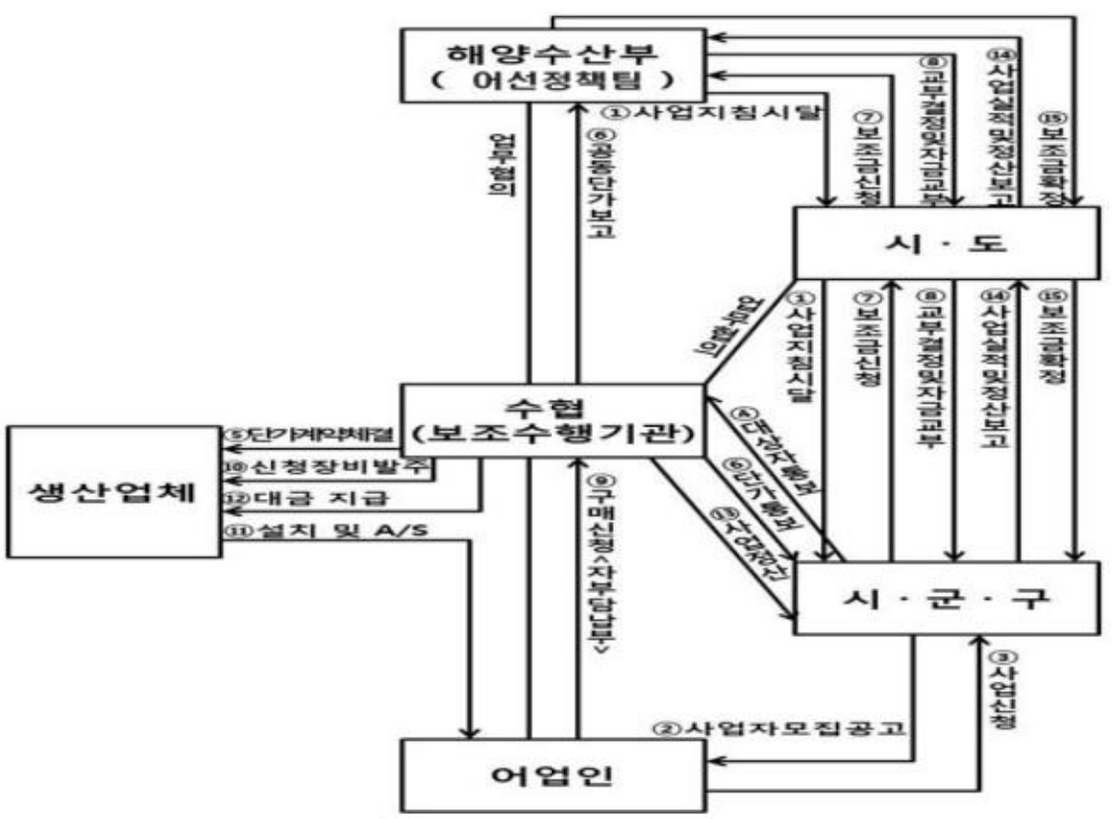

1. 사업계획 수립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매년 10월말)

○ 사업시행지침 수립 시달(매년 12월말)

○ 사업자에 대한 확정 예산을 시·도에 통보('19. 1월말)

시·도(시·군·구)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1.20일까지 수립하고 4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 보조사업자인 **시·도**에서 각 해당 시·군·구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제출

* 세부사업시행계획에는 세부단위별 사업내역 및 추진일정, 예산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급속충전기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충전 인프라·운영 지침'을 제정하여 제출

○ 지자체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수협 조합장 또는 어촌계장에게 신청하여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에게 사업전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 사업자에게 전기용품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함

2. 사업신청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 지방 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시달

시·도(시·군·구)

○ 사업 수요조사,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시행

○ 사업자 공고·모집을 위해 어촌계 등 방문 사업 홍보·지도 강화

○ 사업자 모집 공고기간 및 사업자 선정 : 2019. 1. 20. ~ 3. 31.

※ 지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모집공고 기간을 설정(30일 이상 권고) 하되, 사업별 희망자가 없거나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별 별도 계획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수협중앙회(단위수협)

○ 사업자 모집 공고 및 희망 수요자 모집을 위해 어업인 홍보·지도 강화

○ 사업에 필요한 기종(장비)별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에 통보

어 업 인

○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공통 제1호 서식〕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지자체 사업담당 부서 등에 신청

※ 사업신청서는 시·도(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비치

3. 사업자 선정 및 시행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집행 주체 시·군·구별로 사업자를 선정

○ 전기추진기 사업자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자,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①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육상용 기관 포함)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② 노후기관에서 전기추진기로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당해년도 사업에만 적용)

○ 시·군·구에서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및 지역별 수협(수협중앙회)에 통보하여야 함

○ 지자체는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수협 조합장에게 신청하여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에게 사업전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자체에서 운용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준용하여 수협중앙회에서 체결한 단가계약을 지자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급속충전기 설치·운영·검사·관리 수행기관은 지자체로 함

수협중앙회(단위수협)

○ 사업자별 장비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업무을 수행하고, 사업자에게 사업전반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공통 제3호 서식〕 : 2019. 2월말까지

○ 보조금 지급은 어업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설치하고자 하는 기관·장비·설비가 어선에 설치 완료된 때, 수협의 준공계를 제출받아 확인 후 준공계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해양수산부

○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송금〔공통 제3호 서식〕 : 2019. 3월까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6월, 10월)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등

○ 사업추진 실적 보고는 국회 등 필요에 따라 월별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하고 사업별·재원별로 보조금의 정산서를 제출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시설관리책임	비고
전기추진기 급속충전기	설치일(물품납품일)로부터 7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사업주관기관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름

- 단년도 소모품(배터리 포함) 성격의 재산은 중요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별도 관리를 아니 할 수 있음

○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제재》

해양수산부

○ 지침위반사례 적발, 언론 등 사회적 문제 야기, 사업실태점검 비협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지자체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보조금 교부결정시 지연기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비율 : 3개월 10%이내, 6개월 20%이내, 12개월 50%이내

사업관리주체
(시·도, 시·군·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집행율 95% 이상)을 평가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 보조사업 관련 우수지자체 공무원에 대하여 장관표창 상신

《환 류》

○ 사업추진 실적평가 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2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등

○ 사업희망 수요조사 : 시·군·구별(어촌계 단위별) 공고를 통한 조사 실시

○ 사업신청 : 어업인 →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 신청기한 : 2019. 3. 31

○ 시·군·구는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시·도에 제출(2019. 4. 30)

○ 시·도는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2019. 5. 31)

○ 2020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하여 시·도에 통보(2019. 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2019. 12월)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사업시행지침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침서를 준용하여 신청

【별지】

2019년 전기추진기 보급사업 집행실적 보고

□ oo시(도) 2019년 (1/4분기) 집행 실적

(단위 : 척, 천원)

구 분	2019년 또는 1/4 분기 집행 실적					
	계획			실적		
	물량		금액 (국비)	물량		금액 (국비)
	갯수	마력수		갯수	KW	
합 계						
○ 전기추진기				-		-
○ 급속충전기						

43 어업기반정비

① 지자체관리어항건설

▶ 이 내역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학기 사무관 김하성	044-200-5650 044-200-565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선을 안전하게 수용하여 어업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획물 양육·유통 원활 및 어촌정주 기반 조성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 어촌어항법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및 제49조(사업비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지방어항 완공률 (단위: %)		63.5	64.8	65.5	-	매년 12월	○지방어항 완공률 = 완공된 전국 지방어항수/ 전국 지방어항수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64,411	-	-	-
- 국 비	51,529	-	-	-
- 지방비	12,882	-	-	-
- 자부담	-	-	-	-

* 어업기반정비사업은 시·도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시·도 예산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20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지방자치단체

○ 사업자 선정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 * <참고 : 균특법 제44조> 「보조금법」 제31조의2는 균특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
>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된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 어촌·어항법 제21조에 따라 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가 완료되고, 동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고시한 어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의 방파제, 물양장, 준설 등 어항기본시설

○ 지원제외 대상사업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어업기반정비사업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해양수산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보상하는 수산물의 양식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개별 어가단위 시설·장비 지원 및 소모성 지원 사업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구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유되는 사업은 사업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

○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 계속사업은 종전 보조율 적용

* 계속사업지구는 '09년 이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 지구, 단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님

- 정액 지원사업 또는 통합 보조율 적용이 곤란한 신규 소요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 총사업비(국비+지방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은 3개년 이상 사업으로 추진 필요(단년도 사업 추진 지양)

- 연도별 사업비 배정시 세부사업의 유형 및 성격을 고려하여 배정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를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지연지구(당해년도 사업비 50%미만)에 대해 차년도 사업비 배정시 10～20% 감액

○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으로 지자체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지원하며,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국비 배정액 우선 집행 원칙

< 보조금관리법에 대한 특례 >

○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이월 가능 기간 내 타 사업으로 사용은 가능

- (포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동일 부처·계정의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방향 통보(지침) ·신규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예산요구서 작성·제출(→기재부)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및 배정 ·보조금 교부
(시·도) ·어업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자율편성 기본한도내에서 시·군·구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요구(사업신청) (→해수부)	(시·도) ·사업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군·구) ·사업신청(→시·도)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시·군·구에 제출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세부 사업계획수립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 이상 증감되는 경우 사전 협의 후 시·도에 의견 통보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 * 실집행 부진사업 현장조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중요재산 정보공시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재부)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
(시·도)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이월명세서 제출 ·실적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등
(시·군·구)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실적보고서 검증, 제출 ·중요재산 관리 등
(보조사업자)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금 집행관리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수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추진방향 등 사업시행지침을 지자체에 통보

○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 계획을 시·도에 통보

○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 및 검토 결과 지자체 통보(해수부→시·도)

○ 시·도 예산신청서와 사전사업성 검토 의견(균발위 의견 포함)을 바탕으로 예산 요구서 작성(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제2항)

시·도(시·군·구)

○ 시·도는 어업기반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에서 산정·배분한 시·도별 자율편성사업 예산 기본한도 내에서 예산 신청

- 시·도는 제출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예산 신청

- 시·군·구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 및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계획 변경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 총 사업비가 20억원(건축물 신축사업의 경우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는 자체 수립한 포괄보조사업계획(어업기반정비) 및 시·도 중장기계획 등에 따라 사업 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해양수산부

○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및 배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조금 교부(d-brain)(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도(시·군·구)

○ 시·도는 배정된 자금을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 및 검증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사업타당성, 시급성, 타법·타 사업 관련성,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시·도(시·군·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

○ 다만,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이상 증감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 · 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국비 배정액을 우선하여 집행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세부사업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권고

6.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제2항)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1조)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실적보고서 접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해당 연도 12월31일 기준)에는 이월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및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중요재산의 현황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하여야 함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 기준

- 이때,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 완료 하도록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동일부처(해수부)·동일계정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집행잔액의 활용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가능, **신규사업 추진은 불가**

○ 시·도는 사업지구의 공사 추진실적 및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지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는 분기별(3월, 6월, 10월) 어업기반정비 추진상황(총괄 및 내역사업별로 작성, 별지 1) 및 월별 보조금 실 집행실적(별지 2)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리규정 등에 따라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하여 선량하게 유지관리토록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중요재산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관리감독자로서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하여도 동 규정에 따름

7.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19년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시·도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국가균형발전포털)

해양수산부

○ ’19년도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18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주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ⅰ) 사업기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ⅱ) 사업집행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ⅲ) 사업성과 :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 환류 》

해양수산부

○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포괄보조사업(어업기반정비) 계획에 기초하여 어업기반정비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 시·도는 2020년도 추진할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해양수산부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2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 2020년도 예산 신청

* 2020년도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별도 통보 예정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구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지자체관리 어항 개발계획수립(어촌·어항법 관련 법령),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별지 제1호 서식】

어업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3월/6월/10월)

1.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일정		사업비 집행률(%)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및 건의사항
내역사업	세부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계획	실적		
지자체관리 어항개발	00항 사업							
	00항 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2.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0000년 계획				집행실적(합계)				집행실적(1분기)				집행실적(2분기)				집행실적(3분기)				집행실적(4분기)			
내역사업	세부사업명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지자체관리 어항개발	00항 사업																								
	00항 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별지 제2호 서식】

어업기반정비사업 월별 실 집행실적(00월)

1. 어업기반정비사업(예산집행실적 00월)

(단위 : 백만원)

시도	내역사업	시군	세부사업 (항명, 지구명)	사업량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국비집행률			익월집행전망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계	국비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B)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C)	지방비	자부담	교부률 (B/A) (%)	실 집행율 (C/A) (%)	실 집행율 (C/B) (%)	계	국비 (D)	지방비	자부담	실 집행율 (D/A) (%)	
부산	**합계**																								
	지방어항건설	소계																							
		본청	00항	00m																					

* (1) 교부액 : 예산 중 현재 기준 해수부가 자금 교부한 금액
  - 도본청(소관과) 및 시·군으로 배정한 금액 입력
  (2) 실집행액 : 사업시행자(도본청 및 시·군) 집행액으로 e-호조 시스템상 집행액임
  - 도본청(소관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 : 도본청 집행액
  - 시·군으로 예산 배정 후 집행하는 경우 : 시·군 집행액

② 소형어선인양기설치

▶ 이 내역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학기 사무관 김하성	044-200-5650 044-200-565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어획물 인양 등에 활용하여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8,469**	**-**	**-**	**-**
- 국 비	6,775	-	-	-
- 지방비	1,694	-	-	-
- 자부담	-	-	-	-

* 어업기반정비사업은 시·도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시·도 예산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20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지방자치단체

○ 사업자 선정제외 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참고 : 균특법 제44조> 「보조금법」제31조의2는 균특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및 소형어선이 이용하는 항·포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소형어선인양기시설 설치(전기인입 등 부대시설 포함) 및 정비(보수·보강)

○ 지원제외 대상사업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어업기반정비사업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해양수산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보상하는 수산물의 양식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개별 어가단위 시설·장비 지원 및 소모성 지원 사업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구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유되는 사업은 사업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

○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 계속사업은 종전 보조율 적용

* 계속사업지구는 '09년 이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 지구, 단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님

- 정액 지원사업 또는 통합 보조율 적용이 곤란한 신규 소요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은 3개년 이상 사업으로 추진 필요(단년도 사업 추진 지양)

- 연도별 사업비 배정시 세부사업의 유형 및 성격을 고려하여 배정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를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지연지구(당해년도 사업비 50%미만)에 대해 차년도 사업비 배정시 10~20% 감액

○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으로 지자체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지원하며,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국비 배정액 우선 집행 원칙

< 보조금관리법에 대한 특례 >

○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이월 가능 기간 내 타 사업으로 사용은 가능

- (포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동일 부처·계정의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방향 통보(지침) ·신규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예산요구서 작성·제출(→기재부)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및 배정 ·보조금 교부
(시·도) ·어업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자율편성 기본한도내에서 시·군·구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요구(사업신청) (→해수부)	(시·도) ·사업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군·구) ·사업신청(→시·도)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시·군·구에 제출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세부 사업계획수립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 이상 증감되는 경우 사전 협의 후 시·도에 의견 통보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 * 실집행 부진사업 현장조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중요재산 정보공시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재부)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
(시·도)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이월명세서 제출 ·실적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등
(시·군·구)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실적보고서 검증, 제출 ·중요재산 관리 등
(보조사업자)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금 집행관리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수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추진방향 등 사업시행지침을 지자체에 통보

○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 계획을 시·도에 통보

○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 및 검토 결과 지자체 통보(해수부→시·도)

○ 시·도 예산신청서와 사전사업성 검토 의견(균발위 의견 포함)을 바탕으로 예산 요구서 작성(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제2항)

시·도(시·군·구)

○ 시·도는 어업기반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에서 산정·배분한 시·도별 자율편성사업 예산 기본한도 내에서 예산 신청

- 시·도는 제출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예산 신청

- 시·군·구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 및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계획 변경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 총 사업비가 20억원(건축물 신축사업의 경우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는 자체 수립한 포괄보조사업계획(어업기반정비) 및 시·도 중장기계획 등에 따라 사업 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해양수산부

○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및 배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조금 교부(d-brain)(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도(시·군·구)

○ 시·도는 배정된 자금을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 및 검증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사업타당성, 시급성, 타법·타 사업 관련성,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시·도(시·군·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

○ 다만,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이상 증감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 · 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국비 배정액을 우선하여 집행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세부사업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권고

6.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제2항)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1조)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실적보고서 접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해당 연도 12월31일 기준)에는 이월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및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하여야 함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 기준

- 이때,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 완료 하도록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동일부처(해수부)·동일계정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집행잔액의 활용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가능, **신규사업 추진은 불가**

○ 시·도는 사업지구의 공사 추진실적 및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지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는 분기별(3월, 6월, 10월) 어업기반정비 추진상황(총괄 및 내역사업별로 작성, 별지 1) 및 월별 보조금 실 집행실적(별지 2)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리규정 등에 따라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하여 선량하게 유지관리토록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중요재산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관리감독자로서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하여도 동 규정에 따름

7.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19년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시·도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국가균형발전포털)

해양수산부

○ ’19년도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18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주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ⅰ) 사업기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ⅱ) 사업집행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ⅲ) 사업성과 :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 환류 》

해양수산부

○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포괄보조사업(어업기반정비) 계획에 기초하여 어업기반정비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 시·도는 2020년도 추진할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해양수산부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2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 2020년도 예산 신청

* 2020년도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별도 통보 예정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구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지자체관리 어항 개발계획수립(어촌·어항법 관련 법령),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별지 제1호 서식】

* 어업기반정비 ① 지자체관리어항건설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 어업기반정비 ① 지자체관리어항건설 참조

③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 이 내역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어촌어항과	어촌어항과	과 장 김학기 사무관 김하성	044-200-5650 044-200-565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조수간만의 차가 큰 수역에서 어획물 양육 및 승·하선 등 소형어선의 안전 이용 도모 등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 및 편의제공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 어촌어항법 제19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및 제49조(사업비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0,854**	**-**	**-**	**-**
- 국 비	8,683	-	-	-
- 지방비	2,171	-	-	-
- 자부담	-	-	-	-

* 어업기반정비사업은 시·도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시·도 예산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20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지방자치단체

○ 사업자 선정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 * <참고 : 균특법 제44조> 「보조금법」 제31조의2는 균특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
>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및 소형어선이 이용하는 항·포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소형어선의 안전 승하선 및 어획물 양육을 위한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설치 및 정비(보수·보강)

○ 지원제외 대상사업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어업기반정비사업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해양수산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보상하는 수산물의 양식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개별 어가단위 시설·장비 지원 및 소모성 지원 사업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구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유되는 사업은 사업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

○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80%, 지방비 20%

- 계속사업은 종전 보조율 적용

* 계속사업지구는 '09년 이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 지구, 단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님

- 정액 지원사업 또는 통합 보조율 적용이 곤란한 신규 소요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은 3개년 이상 사업으로 추진 필요(단년도 사업 추진 지양)

- 연도별 사업비 배정시 세부사업의 유형 및 성격을 고려하여 배정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를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지연지구(당해년도 사업비 50%미만)에 대해 차년도 사업비 배정시 10~20% 감액

○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으로 지자체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지원하며,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국비 배정액 우선 집행 원칙

< 보조금관리법에 대한 특례 >

○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이월 가능 기간 내 타 사업으로 사용은 가능

- (포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동일 부처·계정의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방향 통보(지침) ·신규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예산요구서 작성·제출(→기재부)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및 배정 ·보조금 교부
(시·도) ·어업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자율편성 기본한도내에서 시·군·구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요구(사업신청) (→해수부)	(시·도) ·사업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군·구) ·사업신청(→시·도)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시·군·구에 제출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세부 사업계획수립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 이상 증감되는 경우 사전 협의 후 시·도에 의견 통보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 * 실집행 부진사업 현장조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중요재산 정보공시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재부)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
(시·도)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이월명세서 제출 ·실적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등
(시·군·구)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실적보고서 검증, 제출 ·중요재산 관리 등
(보조사업자)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금 집행관리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수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추진방향 등 사업시행지침을 지자체에 통보

○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 계획을 시·도에 통보

○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 및 검토 결과 지자체 통보(해수부→시·도)

○ 시·도 예산신청서와 사전사업성 검토 의견(균발위 의견 포함)을 바탕으로 예산 요구서 작성(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제2항)

시·도(시·군·구)

○ 시·도는 어업기반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에서 산정·배분한 시·도별 자율편성사업 예산 기본한도 내에서 예산 신청

- 시·도는 제출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예산 신청

- 시·군·구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 및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계획 변경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 총 사업비가 20억원(건축물 신축사업의 경우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는 자체 수립한 포괄보조사업계획(어업기반정비) 및 시·도 중장기계획 등에 따라 사업 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해양수산부

○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및 배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조금 교부(d-brain)(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도(시·군·구)

○ 시·도는 배정된 자금을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 및 검증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사업타당성, 시급성, 타법·타 사업 관련성,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시·도(시·군·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

○ 다만,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이상 증감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 · 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국비 배정액을 우선하여 집행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세부사업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권고

6.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제2항)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1조)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실적보고서 접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해당 연도 12월31일 기준)에는 이월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및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중요재산의 현황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하여야 함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 기준

- 이때,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 완료 하도록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동일부처(해수부)·동일계정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집행잔액의 활용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가능, **신규사업 추진은 불가**

○ 시·도는 사업지구의 공사 추진실적 및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지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는 분기별(3월, 6월, 10월) 어업기반정비 추진상황(총괄 및 내역사업별로 작성, 별지 1) 및 월별 보조금 실 집행실적(별지 2)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리규정 등에 따라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하여 선량하게 유지관리토록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중요재산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관리감독자로서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하여도 동 규정에 따름

7.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19년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시·도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국가균형발전포털)

해양수산부

○ ’19년도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18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주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ⅰ) 사업기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ⅱ) 사업집행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ⅲ) 사업성과 :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 환류 》

해양수산부

○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포괄보조사업(어업기반정비) 계획에 기초하여 어업기반정비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 시·도는 2020년도 추진할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해양수산부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2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 2020년도 예산 신청
* 2020년도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별도 통보 예정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구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지자체관리 어항 개발계획수립(어촌·어항법 관련 법령),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

【별지 제1호 서식】

* 어업기반정비 ① 지자체관리어항건설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 어업기반정비 ① 지자체관리어항건설 참조

④ 인공어초 사업

▶ 이 내역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 영 신 사무관 윤 영 자	044-200-5530 044-200-55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중에 인공적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어초 설치, 어초어장관리 및 해중림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공어초 등을 설치하여 연안에 산란·서식장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해양수산부 훈령 제388호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인공어초 설치면적(ha)		2,790	1,194			'20년 5월	인공어초 설치사업 시행 시도별 설치면적의 합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51,902**	**-**	**-**	**-**
- 국 비	41,522	-	-	-
- 지방비	10,380	-	-	-
- 자부담	-	-	-	-

* 어업기반정비사업은 시·도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시·도 예산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20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양수산부 훈령 제388호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4조(사업집행기관 등)에 따라 시·도지사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해양수산부 훈령 제388호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제4조(사업집행기관 등)에 따라 시·도지사가 집행 및 관리
-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인공어초 설치 수역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집행 가능
- 시·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참고 : 균특법 제44조> 「보조금법」 제31조의2는 균특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공어초를 설치하여 연안에 산란·서식장을 조성함으로써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가 필요한 지자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자금 사용용도

- 인공어초 설치시설(설치 예정지에 대한 적지조사 등), 어초어장관리(어초, 바다숲, 바다목장 및 관련 부대시설(관리시설 또는 체험시설 등을 포함) 등의 관리, 적지조사, 효과조사 등)

- 어초어장관리사업비는 당해연도 인공어초사업비의 15% 이상을 반드시 편성

- 유의사항

  ▪ 지자체에서는 다음연도 인공어초 설치계획(어초어장관리사업 포함)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10월말까지 제출

  * 인공어초 설치계획 수립 시 인공어초, 바다목장, 바다숲 등 사후관리를 위해 어초어장관리사업을 포함하여 수립

  ▪ 인공어초 사업 집행에 있어서 인공어초설치사업 집행 및 관리규정(해양수산부 훈령)을 반드시 준수

  ▪ 다만, 시·도지자가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기 위해 자연석 설치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공어초 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인공어초사업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해중림 사업은 '바다숲 조성관리 사업'이 아니라 패조류용 서식장 등 어장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 지원제외 대상사업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어업기반정비사업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해양수산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보상하는 수산물의 양식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개별 어가단위 시설·장비 지원 및 소모성 지원 사업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구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유되는 사업은 사업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

○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80%, 지방비 20%

○ 지원한도 : 매년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름

○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으로 지자체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지원하며,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국비 배정액 우선 집행 원칙

< 보조금관리법에 대한 특례 >

○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이월 가능 기간 내 타 사업으로 사용은 가능

- (포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동일 부처·계정의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 가능

6.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에 따른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해수부) ·사업추진방향 통보(지침) ·예산요구서 작성·제출 (→기재부)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및 배정 ·보조금 교부
(시·도) ·수산종자관리사업계획수립 ·자율편성 기본한도내에서 시·군·구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요구(사업신청) (→해수부)	(시·도) ·사업대상해역 선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군·구) ·사업신청(→시·도)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보조금 관리

(해수부)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 이상 증감되는 경우 사전 협의 후 시·도에 의견 통보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 * 실집행 부진사업 현장조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중요재산 정보공시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재부)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
(시·도)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금 집행관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제출 ·이월명세서 제출 ·실적보고서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시·군·구 집행시 취합) ·중요재산 관리 등
<시·군·구 직접 집행>		
(시·군·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금 집행관리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제출 ·실적보고서 검증, 제출 ·중요재산 관리 등

【별지 제1호 서식】

어업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지자체명/00분기)

1.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일정		사업비 집행률(%)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및 건의사항
내역사업	세부사업명		착수일	완료 예정일	계획	실적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 내역사업은 인공어초 설치사업, 어초어장관리사업 등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명이나 시·군·구별로 구분이 필요한 경우 별도 구분

2.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0000년 계획				집행실적(합계)				집행실적(1분기)				집행실적(2분기)				집행실적(3분기)				집행실적(4분기)			
내역사업	세부사업명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3. 세부추진실적

○ 인공어초 설치사업(서식기반 조성사업 포함)

상세내용				예산액(백만원)				현분기까지 추진실적	다음분기 추진계획
설치해역	규모	설치기간 (계약방법)	설치 목적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군 ○○지선	*○○어초 00기, 00ha*								
○○시 ○○지선									
○○군 ○○지선									

○ 어초어장관리사업

상세내용			예산액(백만원)				현분기까지 추진실적	다음분기 추진계획
관리해역	규모	관리기간 (계약방법)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군 바다목장	*00ha*							
○○군 인공어초 설치해역								
○○군 바다숲 조성해역								

⑤ 수산종자관리 사업

▶ 이 내역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과 장 김 영 신 사무관 윤 영 자	044-200-5530 044-200-553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 등 국제 수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 및 기후온난화 등으로 감소된 어업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

2. 근거법령

○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단위 : 백마리)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종자방류량(천마리)		161	161			'19년 3월	수산종자방류사업 시행 시도별 방류량 합계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30,202**	**-**	**-**	**-**
- 국 비	24,162	-	-	-
- 지방비	6,040	-	-	-
- 자부담	-	-	-	-

* 어업기반정비사업은 시·도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시·도 예산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20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도지사

-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시·도 자율편성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종자매입방류사업의 주관기관은 시·도지사로 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지방비 소요액의 50% 이상을 부담할 경우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집행 가능

-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매입종자방류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 가능

- 생태계에 악영향이 적고, 부가가치가 높은 수산종자를 방류하여 자원조성이 필요한 연안해역 및 내수면

○ 사업자 선정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 * <참고 : 균특법 제44조> 「보조금법」 제31조의2는 균특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
>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자원의 증강을 위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건강한 수산종자를 방류함으로써 어업생산력 증대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가 필요한 지자체

○ 지원자금 사용용도

- 수산종자방류 대상품종으로 선정된 수산종자를 매입 방류

* 방류대상 지역이 자원회복 대상종의 산란·서식장의 경우 해당 수산종자를 우선 방류

- 방류 효과조사비용으로 방류사업비의 10% 이상 편성

- 유의사항

▪ 지자체에서는 다음연도의 수산종자 방류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10월말까지 제출

▪ 종자생산확인을 받은 건강한 종자 및 수산동물질병관리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합격한 종자만을 방류

▪ 해양수산부의 수산종자관리사업 지침을 반드시 준수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으로 지자체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지원하며,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국비 배정액을 우선하여 집행

< 보조금관리법에 대한 특례 >

○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이월 가능 기간 내 타 사업으로 사용은 가능

- (포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동일 부처·계정의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 가능

5.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산종자관리사업지침(별도시행)」에 따른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해수부) ·사업추진방향 통보(지침) ·예산요구서 작성·제출 (→기재부)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및 배정 ·보조금 교부
(시·도) ·수산종자관리사업계획수립 ·자율편성 기본한도내에서 시·군·구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요구(사업신청) (→해수부)	(시·도) ·사업대상해역 선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군·구) ·사업신청(→시·도) ·어업인·수협 등의 방류 수요 조사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보조금 관리

(해수부)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 이상 증감되는 경우 사전 협의 후 시·도에 의견 통보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 * 실집행 부진사업 현장조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중요재산 정보공시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재부)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
(시·도)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금 집행관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제출 ·이월명세서 제출 ·실적보고서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시·군·구 집행시 취합) ·중요재산 관리 등

〈시·군·구 직접 집행〉

(시·군·구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금 집행관리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제출 ·실적보고서 검증, 제출 ·중요재산 관리 등

【별지 제1호 서식】

어업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지자체명/00분기)

1.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일정		사업비 집행률(%)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및 건의사항
내역사업	세부사업명		착수일	완료 예정일	계획	실적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 내역사업은 종자방류사업, 방류효과조사사업 등으로 구분, 세부사업명 시·군·구 또는 방류 품종별로 구분

2.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0000년 계획				집행실적(합계)				집행실적(1분기)				집행실적(2분기)				집행실적(3분기)				집행실적(4분기)			
내역사업	세부사업명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3. 세부추진실적

○ 종자매입방류사업

상세내용				예산액(백만원)				현분기까지 추진실적	다음분기 추진계획
품종명	방류량	방류수역	방류시기 (계약방법)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군 *○○지선*							
		○○시 *○○지선*							

○ 방류효과조사

상세내용				예산액(백만원)				현분기까지 추진실적	다음분기 추진계획
품종명	효과조사 수역	효과조사 기간	효과조사 수행기관 (계약방법)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군 *○○지선*								
	○○시 *○○지선*								

⑥ 양식어장관리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사무관 검건효	044-200-5630 044-200-563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연안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을 조성

2. 근거법령

○ 어장관리법 제15조(어장정화·정비의 실시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에 따라 관할 어장에 대하여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여야 한다

○ 어장관리법 제16조(어장정화·정비의 대행)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정화·정비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어장정화·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면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어장관리법 제25조(국고보조)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여 줄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 어장정화 면적(ha)	9,000ha	12,953	12,000	8,957	10,000 (계획)	‘19.12	지자체 어장정화 면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6,408**	**6,408**	**6,408**	**6,408**
- 국 비	5,126	5,126	5,126	5,126
- 지방비	641	641	641	641
- 자부담	641	641	641	641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어장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장에서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한 자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어장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장에서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고 어장정화사업을 신청한 어업인, 어촌계, 수협, 법인 등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 선정

- 어장관리해역 및 어촌계(수협)어장(동 어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개인어장 및 공유수면 포함)을 주 대상으로 사업 실시

- 사업주관기관은 어장정화사업의 효과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어장오염 현황, 면적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가두리양식어장의 경우 사업의 효과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어장오염현황, 면적, 어업인의 참여 등을 고려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 2019년도 어장정화·정비지침중 어장정화와 관련된 부분 참고

* 이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어장정화사업을 실시한 어장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동 사업을 실시할 수 없음. 다만, 어장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자 선정

- 사업주관기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해양수산분야로 신고된 업체를 조사·설계업체로 선정하여 시행하되,「조사」는 공신력있는 기관(해양수산분야의 대학부설연구소 및 정부출연연구소)도 포함한다. 또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상 어장의 오폐물량 조사·설계를 일괄 발주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어장바닥의 노출이 현저한 해역이나 청정해역으로 오·폐물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지역은 시장·군수 주관으로 자체 조사·설계 가능

- 어장정화 조사·설계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대상수역 어업실태: 어업종류, 어장면적, 시설(살포)량, 살포 및 채포시기 등

·사업내용, 사업시기, 추진방법, 사업실시설계, 소요경비 내역

·사업대상지의 오폐물 실태 및 수거·인양된 오폐물의 처리방안

·기타 어장정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주관기관이 정하는 내용

- 사업주관기관은 어장관리법령에 의거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함

- 가두리 양식어장정화사업의 경우 어장정화·정비업에 등록된 업체 중 동 사업시행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정화기술을 갖추고, 사업시행계획서 평가결과 상위 점수 획득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견실한 시공업체 선정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음.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집행주체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가두리 양식어장 바닥환경개선사업 기술방식은 사업시행방법이 특별한 정화기술 방법이 요구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심사기준(적격심사기준)에 반영 시행하여야 함

·기술방식(오니류 수거 처리방법) : 강제흡입식(정화조방법, 원심분리방법 등)

·시설, 장비 : 원심분리기 시스템 장비 등이 탑재되어 설치·가동되는 정화선 및 부선, 정화조가 설치된 바지선, 기타 부속 장비 등

* 위의 기술방식 및 시설장비 기준은 정화사업에 의해 수거된 폐기물 및 배출수를 해양환경관리법, 폐수종말처리장의 배출수 허용기준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처리허용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처리시스템을 말함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퇴적물 수거·처리, 바닥갈이, 객토(투석 포함), 저질준설, 해적생물구제 등 어장정화 및 이를 위한 조사·설계·감리

* 수로개설은 어장정비 사업이므로 자금의 사용용도에서 제외

* 어장재배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용도에 포함 가능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① 지원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보조 80%(지특), 지방비 10%, 자담10%

* 자담을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가두리 어장 저질 준설사업의 경우에는 자담 비율 5～10%를 반드시 부담하여야 함 (5～10% 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 가능)

② 지원한도

ㅇ 지원기준 : 사업비 지원 단가는 전문 조사·설계업체의 조사·설계 단가를 적용할 것

ㅇ 사업비 집행

- 사업비라 함은 설계·조사, 시설비, 기타 집행주체가 인정하는 부대비를 말함

- 저질개선 객토(투석 포함)사업비는 정화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70%를 초과하여 집행하여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조사비(설계조사, 환경조사), 시설비 등으로 구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 당해 연도 사업 집행 잔액을 다음연도 사업예정지구의 조사·설계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야 함

- 사업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감독, 감리, 준공검사 등은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지침 수립, 지자체 시달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해당없음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해당없음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사업자 공고·선정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신청 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별 포괄보조사업(어업기반정비) 계획 수립하고, 어업기반 정비사업 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신청

- 시·군·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제출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총 사업비가 20억원(건축물 신축사업의 경우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19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계획 변경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 사업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위탁기관 지정)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공단에 위탁 가능

○ 공고시기 : 사업관리주체가 결정

○ 신청절차 :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붙임 3의 서식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수산사업지원신청서를 제출

○ 사업홍보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희망자 및 어장정화·정비 업체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전 또는 후에 홍보(설명회)를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 선정절차

- 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또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군·구에서 선정

* 어장정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어업인 등 관계자로 구성된 정화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 조사·설계 등을 심의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어장관리해역 및 어촌계(수협)어장(동 어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근 개인어장 및 공유수면 포함)을 주 대상으로 하되,

- 다수어장이 설치된 해역으로 사업주관기관이 정화선박을 이용하여 정화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어장(어장과 어장사이의 공유수면 포함)도 신청에 의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시행 가능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사업타당성, 시급성, 타법·타 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시·도(시·군·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

○ 다만,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이상 증감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 · 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국비 배정액 우선 집행 원칙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도(시·군·구)

○ 시·도는 배정된 자금을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검정 및 정산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대한 관리규정 등 이행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1회 이상)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세부사업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권고

시·도

○ 시·도는 사업지구의 공사 추진실적 및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는 반기별(6월, 10월) 어업기반정비 추진상황(별지 4) 및 월별 보조금 실 집행실적(별지 5)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리규정 등에 따라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하여 선량하게 유지관리토록 함

○ 시·도는 관리감독자로서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하여도 동 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19년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시·도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지역발전포털)

해양수산부

○ '19년도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18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주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ⅰ) 사업기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ⅱ) 사업집행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ⅲ) 사업성과 :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 환류 》

해양수산부

○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포괄보조사업(어업기반정비) 계획에 기초하여 어업기반정비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 시·도는 2020년도 추진할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해양수산부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2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 2020년도 예산 신청(4.30까지)

* 2020년도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별도 통보 예정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구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지자체관리 어항 개발계획수립(어촌어항법 관련 법령), 사전 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별표 1】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 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계획

□ 사업 추진계획

시·군·구별	사업면적 (ha)	어장의 종류	사업내용	사업기간	비 고
계					

□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시군 구별	국비			지방비			합계		
	예산액	전년 이월	예산 현액	예산액	전년 이월	예산 현액	예산액	전년 이월	예산 현액
계									

【별지 제4호 서식】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상황(상/하반기) 보고

(○○○○도)

1. 사 업 명 :
2. 회 계 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ha, 천원)

시군	2019년 계획					실집행실적(누계)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대 책 >

○

< 건의사항 >

○

【별지 제5호 서식】

어업기반정비사업 월별 실 집행실적(00월)

1. 어업기반정비사업(예산집행실적 00월)

(단위 : 백만원)

시도	내역사업	시군	세부사업 (항명, 지구명)	사업량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국비집행률			익월집행전망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계	국비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B)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C)	지방비	자부담	교부률 (B/A) (%)	실 집행율 (C/A) (%)	실 집행율 (C/B) (%)	계	국비 (D)	지방비	자부담	실 집행율 (D/A) (%)	
부산	**합계**																								
	양식어장관리	소계																							
		본청																							

* (1) 교부액 : 예산 중 현재 기준 해수부가 자금 교부한 금액
  - 도본청(소관과) 및 시·군으로 배정한 금액 입력
  (2) 실집행액 : 사업시행자(도본청 및 시·군) 집행액으로 e-호조 시스템상 집행액임
  - 도본청(소관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 : 도본청 집행액
  - 시·군으로 예산 배정 후 집행하는 경우 : 시·군 집행액

⑦ 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 이 내역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 성 대 사무관 한 지 용	044-200-5630 044-200-563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FTA체결에 따른 양식수산물 수입개발에 대응하여 어촌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양식시설 및 양식물 채취·관리 자동화 장비 지원으로 어업경영 경비 절감을 통한 양식산업 안정화 도모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양식 생산량(만톤)		167	184	190		‘20.1월	양식 생산량 잠정치 (KMI 관측자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 국 비	2,150			
- 지방비				
- 자부담				

* 어업기반정비사업은 시·도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시·도 예산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20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제8조, 제41조,「내수면어업법」 제11조에 따라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자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수산업법」 제8조(면허)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여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자 (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및 수협 등)

- 수산업법 제41조(허가) 및 내수면어업법 제11조(신고)에 따라 해상 및 육상에서 종자생산,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자도 지원 가능

○ 사업자 선정제외 대상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 * <참고 : 균특법 제44조> 「보조금법」 제31조의2는 균특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
>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식 생산시설 및 작업에 필요한 자동화 장비로 3천만원 이하인 시설장비 지원. 다만,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장비라도 공동이용(10어가 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원 가능

- 해상크레인, 양식물 채취기 및 분리기, 패각분쇄기, 멍게탈락기, 해조류 이양기, 부산물 컨베어, 수산물 건조기, 양식물 선별기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단 지방비와 자부담은 지자체 사정에 맞춰 조정 가능

○ 지원기준 및 한도 : 예산 범위 내에서 장비 당 3천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공동이용 장비의 경우 3천만원 초과 지원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방향 통보(지침) ·신규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예산요구서 작성·제출(→기재부)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및 배정 ·보조금 교부
(시·도) ·어업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자율편성 기본한도내에서 시·군·구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요구(사업신청) (→해수부) ·사업자 선정·공고	(시·도) ·사업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군·구) ·사업신청(→시·도)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시·군·구에 제출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세부 사업계획수립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 이상 증감되는 경우 사전 협의 후 시·도에 의견 통보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 * 실집행 부진사업 현장조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중요재산 정보공시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재부)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
(시·도)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이월명세서 제출 ·실적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등
(시·군·구)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실적보고서 검증, 제출 ·중요재산 관리 등
(보조사업자)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금 집행관리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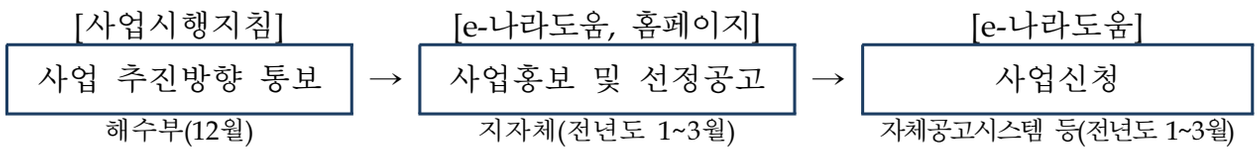

○ 해수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추진방향 등 사업시행지침을 지자체에 통보

○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 계획을 시·도에 통보

○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 및 검토 결과 지자체 통보(해수부→시·도)

○ 시·도 예산신청서와 사전사업성 검토 의견(균발위 의견 포함)을 바탕으로 예산 요구서 작성(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제2항)

시·도(시·군·구)

○ 시·도는 어업기반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에서 산정·배분한 시·도별 자율편성사업 예산 기본한도 내에서 예산 신청

- 시·도는 제출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예산 신청

- 시·군·구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 및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계획 변경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 총 사업비가 20억원(건축물 신축사업의 경우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실시

- 지자체 등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 신청방법을 안내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는 자체 수립한 포괄보조사업계획(어업기반정비) 및 시·도 중장기계획 등에 따라 사업 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해양수산부

○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및 배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조금 교부(d-brain)(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도(시·군·구)

○ 시·도는 배정된 자금을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 및 검증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사업타당성, 시급성, 타법·타 사업 관련성,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시·도(시·군·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

○ 다만,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이상 증감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국비 배정액을 우선하여 집행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세부사업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권고

6.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제2항)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1조)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실적보고서 접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해당 연도 12월31일 기준)에는 이월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및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하여야 함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 기준

- 이때,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 완료 하도록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동일부처(해수부)·동일계정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집행잔액의 활용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가능, **신규사업 추진은 불가**

○ 시·도는 사업지구의 공사 추진실적 및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지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는 분기별(3월, 6월, 10월) 어업기반정비 추진상황(총괄 및 내역사업별로 작성, 별지 1) 및 월별 보조금 실 집행실적(별지 2)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리규정 등에 따라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하여 선량하게 유지관리토록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중요재산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관리감독자로서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하여도 동 규정에 따름

7.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19년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시·도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국가균형발전포털)

해양수산부

○ ’19년도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18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주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ⅰ) 사업기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ⅱ) 사업집행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ⅲ) 사업성과 :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 환류 》

해양수산부

○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포괄보조사업(어업기반정비) 계획에 기초하여 어업기반정비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 시·도는 2020년도 추진할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해양수산부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2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 2020년도 예산 신청

* 2020년도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별도 통보 예정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구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지자체관리 어항 개발계획수립(어촌·어항법 관련 법령),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별지 제1호 서식】

* 어업기반정비 ① 지자체관리어항건설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 어업기반정비 ① 지자체관리어항건설 참조

⑧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사무관 김건효	044-200-5630 044-200-563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전남지역의 해조류 양식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양식사료 등으로 활용하여 해양오염 예방 기여

2.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119조, 수산업법 제8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해조류부산물 처리량(톤)	2,800	3,008	2,704	2,692	2,800 (예정)	‘20.2	전년대비 해조류 부산물 처리량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합 계	1,000	1,000	1,000	1,000
- 국 비	800	800	800	800
- 지방비	100	100	100	100
- 자부담	100	100	100	10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해조류양식어업 면허를 득한 자, 어업인 생산자 단체 및 해조류 가공·보관시설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해조류양식어업 면허를 득하고 해조류부산물재활용 사업을 신청한 어업인, 어촌계, 수협, 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해조류 가공시설 및 보관창고를 운영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
>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전남지역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생산 어가에서 부산물 판매, 위탁가공업체, 운반업체 및 창고 보관시설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의 효과 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매지역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해조류(미역, 다시마 등) 양식어가에서 위탁 가공시설에 판매한 금액
- 위탁가공시설의 가공비 및 창고 보관료 및 운반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지자체 보조 : 국고 80%, 지방비 10%, 자부담 10%

* 단 지방비와 자부담은 지자체 사정에 맞춰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지침 수립, 지자체 시달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해당없음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해당없음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시·군·구) ·사업자 공고·선정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신청 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별 포괄보조사업(어업기반정비) 계획 수립하고, 어업기반 정비사업 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신청

- 시·군·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제출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19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계획 변경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사업자 선정주체 : 시·도(시·군·구)

○ 선정절차

- 예산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군·구의 선정

○ 선정기준

- 사업주관기관에서 사업의 효과 제고와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사업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사업타당성, 시급성, 타법·타 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시·도(시·군·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

○ 다만,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이상 증감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 · 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국비 배정액 우선 집행 원칙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도(시·,군·구)

○ 시·도는 배정된 자금을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검정 및 정산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대한 관리규정 등 이행

○ 시·도 및 시·군·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항 모니터링 실시(1회 이상)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세부사업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권고

시·도

○ 시·도는 사업지구의 공사 추진실적 및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는 반기별(6월, 10월) 어업기반정비 추진상황(총괄 및 내역사업별로 작성, 별지 1) 및 월별 보조금 실 집행실적(별지 2)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리규정 등에 따라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하여 선량하게 유지관리토록 함

○ 시·도는 관리감독자로서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하여도 동 규정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19년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시·도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지역발전포털)

해양수산부

○ ’19년도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18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주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ⅰ) 사업기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ⅱ) 사업집행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ⅲ) 사업성과 :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 환류 》

해양수산부

○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포괄보조사업(어업기반정비) 계획에 기초하여 어업기반정비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 시·도는 2020년도 추진할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해양수산부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2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 2020년도 예산 신청(4.30까지)

* 2020년도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별도 통보 예정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구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지자체관리 어항 개발계획수립(어촌어항법 관련 법령), 사전 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별표 1】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 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어업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3월/6월/10월)

1.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일정		사업비 집행률(%)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및 건의사항
내역사업	세부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계획	실적		
해조류부산물재 활용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2.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0000년 계획				집행실적(합계)				집행실적(1분기)				집행실적(2분기)				집행실적(3분기)				집행실적(4분기)			
내역사업	세부사업명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해조류부산물재활 용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별지 제2호 서식】

어업기반정비사업 월별 실 집행실적(00월)

1. 어업기반정비사업(예산집행실적 00월)

(단위 : 백만원)

시도	내역사업	시군	세부사업 (항명, 지구명)	사업량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국비집행률			익월집행전망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계	국비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B)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C)	지방비	자부담	교부률 (B/A) (%)	실 집행율 (C/A) (%)	실 집행율 (C/B) (%)	계	국비 (D)	지방비	자부담	실 집행율 (D/A) (%)	
부산	**합계**																								
	해조류부산물 재활용	소계																							

* (1) 교부액 : 예산 중 현재 기준 해수부가 자금 교부한 금액
  - 도본청(소관과) 및 시·군으로 배정한 금액 입력
  (2) 실집행액 : 사업시행자(도본청 및 시·군) 집행액으로 e-호조 시스템상 집행액임
  - 도본청(소관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 : 도본청 집행액
  - 시·군으로 예산 배정 후 집행하는 경우 : 시·군 집행액

⑨ 내수면어업생산시설

▶ 이 내역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팀 장 안치국 사무관 박승희	044-200-5630 044-200-5680 044-200-563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제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품종 양식단지 조성으로 FTA협정으로 인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 및 다양한 내수면 생물자원을 이용한 어린 물고기 배양시설 건립으로 치어보급 및 도시민 어린이에게 체험학습 제공

2.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같은 법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 시설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 증가율	5.0	신규	6.4	4.8	-	매년 말	(당해년도 생산량 - 전년도 생산량/ 전년도 생산량)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875**	**1,875**	**1,875**	**1,875**
- 국 비	1,500	1,500	1,500	1,500
- 지방비	375	375	375	375
- 자부담	-	-	-	-

* 어업기반정비사업은 시·도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시·도 예산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20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시설부지를 확보한 지자체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부지매입비가 제외되므로 부지를 미확보 한 지자체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 * <참고 : 균특법 제44조> 「보조금법」 제31조의2는 균특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
>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지역특화 품종 양식단지 조성 및 인공부화장시설 건립을 통한 어촌 소득기반 확충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토속어류 종묘 배양장, 연구동, 전시실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80%, 지방비 20%

○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으로 지자체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방향 통보(지침) ·신규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예산요구서 작성·제출(→기재부)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및 배정 ·보조금 교부
(시·도) ·어업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자율편성 기본한도내에서 시·군·구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요구(사업신청) (→해수부)	(시·도) ·사업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군·구) ·사업신청(→시·도)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시·군·구에 제출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세부 사업계획수립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 이상 증감되는 경우 사전 협의 후 시·도에 의견 통보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 * 실집행 부진사업 현장조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중요재산 정보공시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재부)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
(시·도)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이월명세서 제출 ·실적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등
(시·군·구)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실적보고서 검증, 제출 ·중요재산 관리 등
(보조사업자)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금 집행관리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수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추진방향 등 세부사업계획을 지자체에 통보

○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 계획을 시·도에 통보

○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 및 검토 결과 지자체 통보(해수부→시·도)

○ 시·도 예산신청서와 사전사업성 검토 의견(균발위 의견 포함)을 바탕으로 예산 요구서 작성(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제2항)

시·도(시·군·구)

○ 시·도는 어업기반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에서 산정·배분한 시·도별 자율편성사업 예산 기본한도내에서 예산 신청

- 시·도는 제출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예산 신청

- 시·군·구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 및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계획 변경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 총 사업비가 20억원(건축물 신축사업의 경우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는 자체 수립한 포괄보조사업계획(어업기반정비) 및 시·도 중장기계획 등에 따라 사업 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해양수산부

○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및 배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조금 교부(d-brain)(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도(시·군·구)

○ 시·도는 배정된 자금을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 및 검증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사업타당성, 시급성, 타법·타 사업 관련성,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시·도(시·군·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

○ 다만,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이상 증감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 · 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국비 배정액을 우선하여 집행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세부사업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권고

6.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제2항)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1조)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실적보고서 접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해당 연도 12월31일 기준)에는 이월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및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중요재산의 현황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하여야 함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 기준

- 이때,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 완료 하도록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동일부처(해수부)·동일계정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집행잔액의 활용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가능, **신규사업 추진은 불가**

○ 시·도는 사업지구의 공사 추진실적 및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지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는 분기별(3월, 6월, 10월) 어업기반정비 추진상황(총괄 및 내역사업별로 작성, 별지 1) 및 월별 보조금 실 집행실적(별지 2)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리규정 등에 따라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하여 선량하게 유지관리토록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중요재산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관리감독자로서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하여도 동 규정에 따름

7.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19년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시·도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국가균형발전포털)

해양수산부

○ ’19년도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18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주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ⅰ) 사업기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ⅱ) 사업집행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ⅲ) 사업성과 :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 환류 》

해양수산부

○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포괄보조사업(어업기반정비) 계획에 기초하여 어업기반정비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 시·도는 2020년도 추진할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해양수산부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2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 2020년도 예산 신청

* 2020년도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별도 통보 예정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구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지자체관리 어항 개발계획수립(어촌·어항법 관련 법령),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별지 제1호 서식】

* 어업기반정비 ① 지자체관리어항건설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 어업기반정비 ① 지자체관리어항건설 참조

⑩ 멸종위기어종 생태계 복원

▶ 이 내역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팀 장 안치국 사무관 박승희	044-200-5630 044-200-5680 044-200-563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토산어종 인공종묘 생산 및 자원조성 사업 등으로 내수면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자원관리 추진

2. 근거법령

○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및 같은 법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 사업) : 내수면자원조성 및 양식기반 시설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내수면 수산물 생산량 증가율	5.0	신규	6.4	4.8	-	매년 말	(당해년도 생산량 - 전년도 생산량/ 전년도 생산량)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373**	**373**	**373**	**373**
- 국 비	298	298	298	298
- 지방비	75	75	75	75
- 자부담	-	-	-	-

* 어업기반정비사업은 시·도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시·도 예산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20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지자체

○ 사업자 선정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 * <참고 : 균특법 제44조> 「보조금법」 제31조의2는 균특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
>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지자체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토산어종 서식 생태조사 및 종묘생산 운영비, 종묘생산 기술개발 및 생태복원 사업 연구개발비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80%, 지방비 20%

○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으로 지자체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방향 통보(지침) ·신규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예산요구서 작성·제출(→기재부)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및 배정 ·보조금 교부
(시·도) ·어업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자율편성 기본한도내에서 시·군·구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요구(사업신청) (→해수부)	(시·도) ·사업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군·구) ·사업신청(→시·도)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시·군·구에 제출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세부 사업계획수립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 이상 증감되는 경우 사전 협의 후 시·도에 의견 통보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 * 실집행 부진사업 현장조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중요재산 정보공시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재부)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
(시·도)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이월명세서 제출 ·실적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등
(시·군·구)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실적보고서 검증, 제출 ·중요재산 관리 등
(보조사업자)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금 집행관리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수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추진방향 등 세부사업계획을 지자체에 통보

○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 계획을 시·도에 통보

○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 및 검토 결과 지자체 통보(해수부→시·도)

○ 시·도 예산신청서와 사전사업성 검토 의견(균발위 의견 포함)을 바탕으로 예산 요구서 작성(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제2항)

시·도(시·군·구)

○ 시·도는 어업기반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에서 산정·배분한 시·도별 자율편성사업 예산 기본한도내에서 예산 신청

- 시·도는 제출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예산 신청

- 시·군·구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 및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계획 변경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 총 사업비가 20억원(건축물 신축사업의 경우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는 자체 수립한 포괄보조사업계획(어업기반정비) 및 시·도 중장기계획 등에 따라 사업 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해양수산부

○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및 배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조금 교부(d-brain)(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도(시·군·구)

○ 시·도는 배정된 자금을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 및 검증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사업타당성, 시급성, 타법·타 사업 관련성,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시·도(시·군·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

○ 다만,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이상 증감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 · 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국비 배정액을 우선하여 집행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세부사업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권고

6.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제2항)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1조)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실적보고서 접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해당 연도 12월31일 기준)에는 이월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및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중요재산의 현황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하여야 함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 기준

- 이때,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 완료 하도록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동일부처(해수부)·동일계정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집행잔액의 활용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가능, **신규사업 추진은 불가**

○ 시·도는 사업지구의 공사 추진실적 및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지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는 분기별(3월, 6월, 10월) 어업기반정비 추진상황(총괄 및 내역사업별로 작성, 별지 1) 및 월별 보조금 실 집행실적(별지 2)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리규정 등에 따라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하여 선량하게 유지관리토록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중요재산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관리감독자로서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하여도 동 규정에 따름

7.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19년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시·도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국가균형발전포털)

해양수산부

○ ’19년도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18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주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ⅰ) 사업기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ⅱ) 사업집행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ⅲ) 사업성과 :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 환류 》

해양수산부

○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포괄보조사업(어업기반정비) 계획에 기초하여 어업기반정비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 시·도는 2020년도 추진할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해양수산부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2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 2020년도 예산 신청

* 2020년도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별도 통보 예정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구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지자체관리 어항 개발계획수립(어촌·어항법 관련 법령),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별지 제1호 서식】

* 어업기반정비 ① 지자체관리어항건설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 어업기반정비 ① 지자체관리어항건설 참조

⑪ 어업인 편익시설 조성

▶ 이 내역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학기 사무관 김하성	044-200-5650 044-200-565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에 유용한 편의시설 정으로 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어업생산성 향상 도모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생활기반계정사업의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3,938**	**-**	**-**	**-**
- 국 비	3,150	-	-	-
- 지방비	788	-	-	-
- 자부담	-	-	-	-

* 어업기반정비사업은 시·도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시·도 예산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20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 보조사업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지역자치단체

○ 사업자 선정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 * <참고 : 균특법 제44조> 「보조금법」 제31조의2는 균특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
>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어업인 편익시설 조성

* 항·포구에 무분별하게 적재 및 방치되어 있는 어업용 기자재를 공동보관함으로써 어촌경관 조성 및 우천, 한파 시 다목적 공동 작업 공간 제공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어업기반정비사업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해양수산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보상하는 수산물의 양식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개별 어가단위 시설·장비 지원 및 소모성 지원 사업

- 손실보전 지원사업 등

○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구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유되는 사업은 사업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

○ 그 밖에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명시하거나 예산으로 정하는 사업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 80%, 지방비 20%

- 계속사업은 종전 보조율 적용

  * 계속사업지구는 '09년 이전부터 추진해온 계속사업 지구, 단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님

- 정액 지원사업 또는 통합 보조율 적용이 곤란한 신규 소요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조정

○ 총사업비(국비+지방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은 3개년 이상 사업으로 추진 필요(단년도 사업 추진 지양)

- 연도별 사업비 배정시 세부사업의 유형 및 성격을 고려하여 배정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를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지연지구(당해년도 사업비 50%미만)에 대해 차년도 사업비 배정시 10～20% 감액

○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으로 지자체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지원하며,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국비 배정액 우선 집행 원칙

< 보조금관리법에 대한 특례 >

○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이월 가능 기간 내 타 사업으로 사용은 가능

- (포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동일 부처·계정의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방향 통보(지침) ·신규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예산요구서 작성·제출(→기재부)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및 배정 ·보조금 교부
(시·도) ·어업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자율편성 기본한도내에서 시·군·구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요구(사업신청) (→해수부)	(시·도) ·사업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군·구) ·사업신청(→시·도)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시·군·구에 제출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세부 사업계획수립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 이상 증감되는 경우 사전 협의 후 시·도에 의견 통보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 * 실집행 부진사업 현장조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중요재산 정보공시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재부)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
(시·도)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이월명세서 제출 ·실적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등
(시·군·구)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실적보고서 검증, 제출 ·중요재산 관리 등
(보조사업자)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금 집행관리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수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추진방향 등 사업시행지침을 지자체에 통보

○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 계획을 시·도에 통보

○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 및 검토 결과 지자체 통보(해수부→시·도)

○ 시·도 예산신청서와 사전사업성 검토 의견(균발위 의견 포함)을 바탕으로 예산 요구서 작성(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제2항)

시·도(시·군·구)

○ 시·도는 어업기반정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에서 산정·배분한 시·도별 자율편성사업 예산 기본한도 내에서 예산 신청

- 시·도는 제출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예산 신청

- 시·군·구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 및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계획 변경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 총 사업비가 20억원(건축물 신축사업의 경우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는 자체 수립한 포괄보조사업계획(어업기반정비) 및 시·도 중장기계획 등에 따라 사업 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해양수산부

○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및 배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조금 교부(d-brain)(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도(시·군·구)

○ 시·도는 배정된 자금을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 및 검증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사업타당성, 시급성, 타법·타 사업 관련성,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 시·도(시·군·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

○ 다만,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이상 증감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 · 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국비 배정액을 우선하여 집행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세부사업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권고

6.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제2항)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1조)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실적보고서 접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해당 연도 12월31일 기준)에는 이월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및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중요재산의 현황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하여야 함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 기준

- 이때,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 완료 하도록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동일부처(해수부)·동일계정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집행잔액의 활용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가능, **신규사업 추진은 불가**

○ 시·도는 사업지구의 공사 추진실적 및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지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는 분기별(3월, 6월, 10월) 어업기반정비 추진상황(총괄 및 내역사업별로 작성, 별지 1) 및 월별 보조금 실 집행실적(별지 2)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리규정 등에 따라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하여 선량하게 유지관리토록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중요재산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는 관리감독자로서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하여도 동 규정에 따름

7.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19년도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시·도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국가균형발전포털)

해양수산부

○ ’19년도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18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주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ⅰ) 사업기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ⅱ) 사업집행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ⅲ) 사업성과 :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 환류 》

해양수산부

○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는 포괄보조사업(어업기반정비) 계획에 기초하여 어업기반정비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 시·도는 2020년도 추진할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해양수산부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2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등에 의거 2020년도 예산 신청

* 2020년도 어업기반정비 예산신청 가이드라인 별도 통보 예정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구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지자체관리 어항 개발계획수립(어촌·어항법 관련 법령), 사전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별지 제1호 서식】

* 어업기반정비 ① 지자체관리어항건설 참조

【별지 제2호 서식】

* 어업기반정비 ① 지자체관리어항건설 참조

44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① 수산물유통시설건립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정 도 현 주무관 최 수 경	044-200-5440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산지위판장·직매장 등 산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및 산지 위판장 시설 개·보수를 통한 산지 유통기능 강화,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2. 근거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위판장 개수·보수 등 지원) 및 제36조(수산물 어획 후 위생관리 지원)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의 수산물 공동출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판장 개설자에게 부지 확보, 시설물 설치 및 현대화를 위한 개수·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 해수부장관은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저온유통체계 등의 구축을 위하여 수산물유통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 ▸ 해수부장관은 수산물 소매단계의 합리적 유통 개선에 대한 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중도매업·소매업,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사업, 생산자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직판장, 소매시설의 현대화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육성한다.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등 보조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지자체

○ 간접보조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어업인조직(어촌계)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하고, 사업신청년도 이전 1년이상 유사사업 관련 실적이 있어야 함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공통사항(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자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다만, 건축연면적 500㎡ 미만 사업장은 제외

○ 법인인 경우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하고, 사업신청년도 이전 1년이상 유사사업 관련 실적이 있어야 함

○ 기타사항

-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수협 및 법인 어촌계는 반드시 이사회, 비법인 어촌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법인의 경우 의결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구비

○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

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수산물위판장 건립 : 양륙·선별·경매·저장시설 등 위판 중심 시설
- 직매장 시설 :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건립 : 냉동·냉장시설 등 구비로 수산물 수집·보관·판매·분산 등의 기능을 갖춘 시설
-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 수산물 판매 및 홍보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설
- 수산시장 시설개선 : 위판장 바닥, 지붕, 비가림, 방풍, 냉방, 폐수처리, 냉동시설, 수산물가공작업장, 경매장, 판매장 및 양륙·선별기 등 자동화 시스템, 안전·보안 등에 대한 시설개선

○ 사용용도

- 지원대상 건물의 해당 기능이 건물 면적의 50%이상 차지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보조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지방자치사무로 전환된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지역발전특별회계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분야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어촌수산정책 추진방향에 부합하지 않거나 지원이 적절하지 않은 사업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은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불가
- 토지의 구입비(농공단지 사업 및 어촌테마공원조성 사업은 제외),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음식점·숙박시설 설치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불가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기준

내역사업명	지원조건
수산물 위판장	①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② 국비 40%, 지방비 및 자부담 60%
수산물 직매장	①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② 국비 30%, 지방비 및 자부담 70%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국비 50%, 지방비 50%
수산시장 시설개선	①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② 국비 30%, 지방비 및 자부담 70%

* ②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지자체장의 승인시 적용 가능

- 보조금은 최소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하며, 2회 이상 지원시 수행실적 평가 및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등을 사전 검토하고, 원칙적으로 최대 3회까지만 지원

* 다만, 법령위탁, 단독수행, 협약 등 사업은 적용 제외 가능

○ 사업기간 및 사업비용

-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 필요

* 단년도 사업추진 지양

- 연도별 사업비 배정 시 세부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는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지연지구(당해년도 사업비 50%미만)에 대해 차년도 사업비 배정시 10~20% 감액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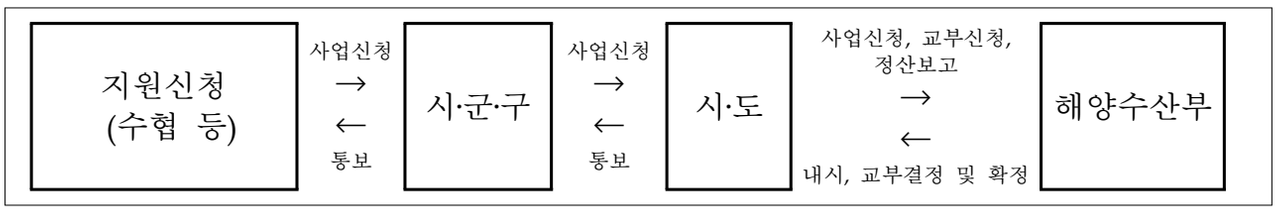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사업신청자

○ 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

시·도(시·군·구)

○ 시·도별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신청

- 시·군·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제출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자체 수립한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계획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원칙적 공모제를 활용(공모기간 10일 이상)

- 위판장 건립 및 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는 시설노후도 등 시급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 선정시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매입하는 우수한 업체 또는 수산물 이력제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가점 부여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교육 이수 등 사업추진 준비가 완료된 경우 가점 부여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세부내역 사업별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시·도별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

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에는 지자체간 연계사업을 포함할 수 있음
- 수산물 직매장의 경우 판매시설(수산물 시식코너 등은 제외)의 면적이 직매장 연면적의 50% 이상 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 다만, 현지여건, 취급 수산물 특성, 수산물 구매 및 소비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대시설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판매시설의 연면적을 40% 이상으로 조정 가능
-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수산물의 수집·보관·분산기능을 갖춰 조성되어야 함
- 해양수산복합공간 건립사업은 수산물 판매장, 홍보전시관 등이 복합적으로 갖춰 조성되어야 함

○ 시·도(시·군·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

○ 다만,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이상 증감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 · 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국비 배정액 우선 집행 원칙

○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가급적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여전문기관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대행토록 추진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보조사업 관련 계약 : 민간보조사업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시·군과 협의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시·군의 승인하에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 사업관리 >

○ 시·군은 승인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사업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사업부지 등의 변경은 시·군의 승인을 통해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변경 사유, 검토 결과 등을 첨부)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군은 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도(시·군·구)

○ 시·도는 배정된 자금을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검정 및 정산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대한 관리규정 등 이행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

지자체

○ 시·도는 시·군별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사업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지자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라. 기타사항

지자체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지 자 체

○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 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 사후관리 》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는 반기별(6월, 10월)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추진상황(총괄 및 내역사업별로 작성, 별지 1) 및 월별 보조금 실 집행실적(별지 2)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함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1회 이상)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세부사업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권고

《제재 및 처벌내용 》

시·도(시·군·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어촌기업 매출액·참여어가 소득증가 등 경제성과와 주민교육이수실적 등 지역역량강화 성과 등으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시·도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지역발전포털)

해양수산부

○ ’18년도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17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주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ⅰ) 사업기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ⅱ) 사업집행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ⅲ) 사업성과 :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 환류 》

해양수산부

○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및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5개년계획에 기초하여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

* 이 사업은 시·도 자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체계임

○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전 사업성 검토 신청

*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 시·도 및 시·군은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5개년계획에 적합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가점 부여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과 연계된 사업인 경우 가점 부여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교육 이수 등 사업추진 준비가 완료된 경우 가점 부여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구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지정, 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등)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 이행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사전 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시·도 및 시·군·구는 수산물 생산지원 사업의 경우 2·3차 산업과 연관하여 지원되도록 방안을 강구

② 수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정도현 주무관 최수경	044-200-5440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생산·유통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생산 및 유통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등 지원하여 어촌자원복합산업화를 위한 수산물 생산·유통 지원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2항,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업체, 어업회사법인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사업자가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조합원 5인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없을 것 등
- 비법인이 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건물 건립 제외
- 로컬푸드 등 지역 수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산·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운영비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생산·유통 설비 비용는 보조사업자당 10억원까지 국고 지원 * 건물 건립비 제외

*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또는 지방비 사용

○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으로 지자체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지원하며,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국비 배정액 우선 집행 원칙

< 보조금관리법에 대한 특례 >

○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이월 가능 기간 내 타 사업으로 사용은 가능

- (포괄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동일 부처·계정의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 가능
- (포괄보조금외 사업의 집행잔액) 동일 부처·계정부문의 보조사업에 사용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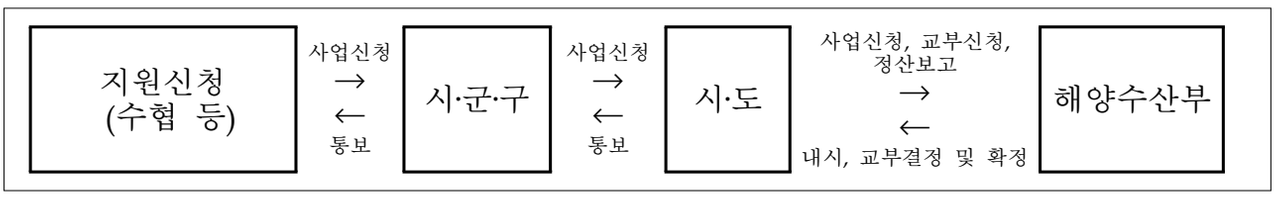

1. 사업신청 단계

사업신청자

○ 생산자단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

시·도(시·군·구)

○ 시·도별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신청

- 시·군·구는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제출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 시·도는 시·군의 예산신청 수요 등을 감안,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시·군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자체 수립한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계획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원칙적 공모제를 활용(공모기간 10일 이상)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가점 부여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교육 이수 등 사업추진 준비가 완료된 경우 가점 부여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세부내역 사업별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시·도별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에는 지자체간 연계사업을 포함할 수 있음

○ 시·도(시·군·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

○ 다만,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이상 증감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 · 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국비 배정액 우선 집행 원칙

○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계획 변경 :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보조사업 관련 계약 : 민간보조사업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사업관리 >

○ 시·군은 승인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사업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군은 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도(시·군·구)

○ 시·도는 배정된 자금을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검정 및 정산

* 지자체(시·도,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대한 관리규정 등 이행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집행》

지자체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지 자 체

○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 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 사후관리 》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세부사업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부실사업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도는 반기별(6월, 10월)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추진상황(총괄 및 내역사업별로 작성, 별지 1) 및 월별 보조금 실 집행실적(별지 2)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함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관리기간 중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항 모니터링 실시(1회 이상)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세부사업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권고

《제재 및 처벌내용 》

시·도(시·군·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법령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경우
- 사업취소·자금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6.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어촌기업 매출액·참여어가 소득증가 등 경제성과와 주민교육이수실적 등 지역역량강화 성과 등으로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시·도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지역발전포털)

해양수산부

○ ’18년도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17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주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ⅰ) 사업기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ⅱ) 사업집행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ⅲ) 사업성과 :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 환류 》

해양수산부

○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20년도 이후 동 내역사업 폐지 또는 유지 여부 검토 예정

③ 수산식품특화단지조성개보수

▶ 이 내역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학기 사무관 한정수	044-200-5650 044-200-565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수산업,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어촌형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2항,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제38조(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 농어촌정비법 제77조(농공단지 개발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 제78조(농공단지 개발의 지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개선)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500**	**-**	**-**	**-**
- 국 비	750	-	-	-
- 지방비	750	-	-	-
- 자부담	-	-	-	-

*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시·도 예산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20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시·도지사

○ 시행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농공단지 조성 : 특별·광역시 및 수도권지역 시·군·구는 제외(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의함)

○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업체, 연구단체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어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사업자가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조합원 5인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없을 것 등
- 비법인이 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사업자 선정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참고 : 균특법 제44조> 「보조금법」 제31조의2는 균특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 조성

- 특화농공단지 부지 조성 및 노후 농공단지 시설 개·보수 지원

* 부지조성비는 '13년부터 특화농공단지 조성만 지원(일반 및 전문 농공단지 국고 지원 제외)

- 특화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진입로·전력·통신·용수 등 부대 시설비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항 별표 2의 지원시설 중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지원제외대상 사업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어업기반정비사업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해양수산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구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유되는 사업은 사업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 50%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정액지원(단지면적 3.3㎡당 30～70천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 필요(단년도 사업 추진 지양)

- 연도별 사업비 배정시 세부사업의 유형 및 성격을 고려하여 배정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를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지연지구(당해년도 사업비 50%미만)에 대해 차년도 사업비 배정시 10～20% 감액

○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으로 지자체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지원하며,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자부담 배정액을 우선하여 집행

< 보조금관리법에 대한 특례 >

○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이월 가능 기간 내 타 사업(동일 부처·계정의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사용은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방향 통보(지침) ·신규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예산요구서 작성·제출(→기재부)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및 배정 ·보조금 교부
(시·도)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수립 ·자율편성 기본한도내에서 시·군·구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요구(사업신청) (→해수부) ·사업자 선정·공고	(시·도) ·사업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근거한 Check-List 마련하여 사업 지원자격 심사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군·구) ·사업신청(→시·도)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시·군·구에 제출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세부 사업계획수립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 이상 증감되는 경우 사전 협의 후 시·도에 의견 통보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 * 실집행 부진사업 현장조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중요재산 정보공시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재부)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
(시·도) ·사업목적에 맞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이월명세서 제출 ·실적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등
(시·군·구) ·사업목적에 맞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실적보고서 검증, 제출 ·중요재산 관리 등
(보조사업자)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금 집행관리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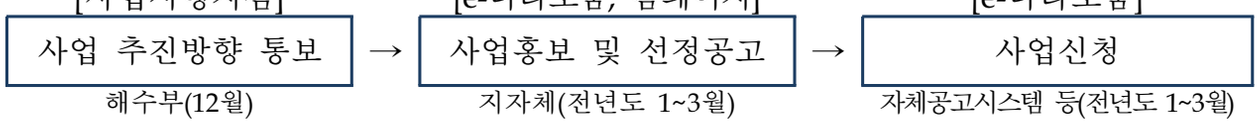

○ 해수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추진방향 등 사업시행지침을 지자체에 통보

○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 계획을 시·도에 통보

○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 및 검토 결과 지자체 통보(해수부→시·도)

○ 시·도 예산신청서와 사전사업성 검토 의견(균발위 의견 포함)을 바탕으로 예산 요구서 작성(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제2항)

시·도(시·군·구)

○ 시·도는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에서 산정·배분한 시·도별 자율편성사업 예산 기본한도내에서 예산 신청

- 시·도는 제출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예산 신청

- 시·군·구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 및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계획 변경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 총 사업비가 20억원(건축물 신축사업의 경우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실시

- 지자체 등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 신청방법을 안내

사업신청자

○ 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자체 수립한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계획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한 Check-List마련 및 심사)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 지자체는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원칙적 공모제를 활용함(공모기간 15일 이상)

- 시설설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부지확보 가능성, 자부담 능력,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
- 보조사업자 선정시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매입하는 우수한 업체 또는 수산물 이력제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가점 부여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교육 이수 등 사업추진 준비가 완료된 경우 가점 부여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보조와 관련 있는 건물 또는 토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시 제한 할 수 있음

3.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및 배정(e-나라도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조금 집행(d-brain)(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도(시·군·구)

○ 시·도는 배정된 자금을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 및 검증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2월)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시·도(시·군·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세부내역 사업별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시·도별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에는 지자체간 연계사업을 포함할 수 있음

- 세부사업 시행계획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수립을 원칙으로함

  * 지자체는 부진 또는 부실사업,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추진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해수부로 보고(시·군·구 → 시·도→해수부)

○ 시·도(시·군·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

○ 다만,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이상 증감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 민간 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음)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자부담 배정액을 우선하여 집행

○ 지자체 등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해수부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어가 소득액 등)를 제출하도록 조건부여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45조의 2)

- 그 밖의 해양수산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세부사업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권고

6.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제2항)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1조)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실적보고서 접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해수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

시·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해당 연도 12월31일 기준)에는 이월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및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중요재산의 현황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하여야 함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보조사업자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 기준

- 이때,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 완료 하도록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동일부처(해수부)·동일계정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집행잔액의 활용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가능, **신규사업 추진은 불가**

○ 시·도는 사업지구의 공사 추진실적 및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지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는 분기별(3월, 6월, 10월) 어업기반정비 추진상황(총괄 및 내역사업별로 작성, 별지 1) 및 월별 보조금 실 집행실적(별지 2)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익월 10일까지)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리규정 등에 따라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하여 선량하게 유지관리토록 함

○ 시·도는 관리감독자로서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하여도 동 규정에 따름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중요재산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해수부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해양수산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선정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 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민간보조사업자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해수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7.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어촌기업 매출액·참여어가 소득증가 등 경제성과와 주민교육이수실적 등 지역역량강화 성과 등으로 측정

사업성과 제출	→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성과측정
보조사업자→시·군·구		시·군·구→시·도→해수부		시·도, 해수부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시·도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국가균형발전포털)

해양수산부

○ '19년도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18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주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i) 사업기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ii) 사업집행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iii) 사업성과 :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 환류 》

해양수산부

○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및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5개년계획에 기초하여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

* 이 사업은 시·도 자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

행하는 체계임

○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전 사업성 검토 신청
*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 시·도 및 시·군은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5개년계획에 적합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가점 부여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과 연계된 사업인 경우 가점 부여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교육 이수 등 사업추진 준비가 완료된 경우 가점 부여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구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지정, 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등)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 이행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사전 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시·도 및 시·군·구는 수산물 생산지원 사업의 경우 2·3차 산업과 연관하여 지원되도록 방안을 강구

【별지 제1호 서식】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3월/6월/10월)

1.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일정		사업비 집행률(%)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및 건의사항
내역사업	세부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계획	실적		
수산물유통 시설건립	00지구 사업							
	00지구 사업							
어촌체험 관광지원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2.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0000년 계획				집행실적(합계)				집행실적(1분기)				집행실적(2분기)				집행실적(3분기)				집행실적(4분기)			
내역사업	세부사업명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수산물유통 시설건립	00항 사업																								
	00항 사업																								
어촌체험 관광지원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별지 제2호 서식】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월별 실 집행실적(00월)

1.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예산집행실적 00월)

(단위 : 백만원)

시도	내역사업	시군	세부사업 (항명, 지구명)	사업량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국비집행률			익월집행전망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계	국비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B)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C)	지방비	자부담	교부률 (B/A) (%)	실 집행율 (C/A) (%)	실 집행율 (C/B) (%)	계	국비 (D)	지방비	자부담	실 집행율 (D/A) (%)	
부산	**합계**																								
	수산물유통 시설건립	소계																							
		본청	00항	00m																					

* (1) 교부액 : 예산 중 현재 기준 해수부가 자금 교부한 금액
  - 도본청(소관과) 및 시·군으로 배정한 금액 입력
  (2) 실집행액 : 사업시행자(도본청 및 시·군) 집행액으로 e-호조 시스템상 집행액임
  - 도본청(소관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 : 도본청 집행액
  - 시·군으로 예산 배정 후 집행하는 경우 : 시·군 집행액

④ 어촌체험관광지원

▶ 이 내역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학기 사무관 손소연	044-200-5650 044-200-56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를 도모

○ 어촌 체험·휴양 서비스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 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어촌테마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및 어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2항,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22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제38조(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제39조(어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제40조(도시와 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1조(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등),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농어촌산업 육성), 제35조(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 어촌·어항법 제49조의2(어촌·어항 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	-	-	-
- 국 비	4,605	-	-	-
- 지방비	4,605	-	-	-
- 자부담	-	-	-	-

*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시·도자율편성 포괄보조사업으로 시·도 예산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므로, '20년 이후 재정투입계획 예측이 어려움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 : 해양수산부

○ 보조사업자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업체, 연구단체 등

- 특혜시비 방지 등을 위해 가공업체 등에 대한 시설비 지원은 시·도 또는 시·군·구별 자체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선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 목적달성 등을 위해 필요시 적격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대상 범위 설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2. 사업자격 및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 자격

- 어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사업자가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조합원 5인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없을 것 등

- 비법인이 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부지확보 가능성, 자부담 능력, 어가소득과의 연계성,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공모방식 등으로 사업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제외 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참고 : 균특법 제44조> 「보조금법」 제31조의2는 균특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①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나,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적용.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유형별 지원대상 및 용도

가. 시·도 단위 어촌산업화 기획·평가체계 구축

○ 지원대상 : 지자체에 대한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사업추진 역량의 제고와 사업비 집행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도단위 어촌산업화 기획·평가·컨설팅·모니터링을 위한 체계를 구축, 다음 역할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모형)의 개발·보급
- 시·군의 신청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 및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위한 지원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 시·군의 사업별 추진실적(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단 운영 및 전문기관 업무위탁 등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구·용역비, 인적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비, 심사·평가·컨설팅·모니터링 비용 등

나. 수산물 등 체험·전시 지원

○ 지원대상

- 생산된 수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사업비 규모 5억원 미만) 체험·전시시설,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생산 또는 제조·가공 등과 연계하여 지원)

* 공동판매장은 농축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임

- 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참가 등 홍보전시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홍보·체험 시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박람회 참가 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다. 어촌 테마공원 조성

○ 지원대상 : 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체험·휴양시설 지원

-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

- 학습전시관·산책로·탐방로·주말농원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기반시설 :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중화장실, 관리실, 무료 편의시설 등

- 체험·휴양시설 :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다목적회관 등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지원 시설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 계획수립비(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구 자체사업으로 추진)

* 지원 시설비 : 기반시설비 + 체험·휴양시설 + 진입도로 부지매입비

※ 위락시설(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판매시설(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음식점, 카페, 펜션·방갈로·야영장 등 숙박시설은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라.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 지원

○ 지원대상 : 시설비, 운영비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관련 시설 지원
-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제조·가공·체험·전시·관광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지원제외 대상사업

< 지원제외대상 사업 >

○ 법령에 의한 지원제외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 지원제외사업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 어업기반정비사업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세부사업

○ 해양수산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 시·군·구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유되는 사업은 사업신청 전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해외연수비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세부 내역사업별로 사업의 공공성·형평성, 사업자의 책임확보, 특혜시비 배제 등 여건을 고려하여 자부담율 결정

* 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3~5년간 지구당 50억 원까지 국고 지원(국고 50%, 지방비 50%), 시·군·구 당 1개 지구 지원. 단, 지방비 및 민자는 추가부담 가능

○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은 2~3개년 사업으로 추진 필요(단년도 사업 추진 지양)

- 연도별 사업비 배정시 세부사업의 유형 및 성격을 고려하여 배정

* 시·도 및 시·군·구는 2년차 이후 사업비를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 지연지구(당해년도 사업비 50%미만)에 대해 차년도 사업비 배정시 10~20% 감액

○ 지자체 자율편성 사업으로 지자체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지원하며,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자부담 배정액을 우선하여 집행

< 보조금관리법에 대한 특례 >

○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이월 가능 기간 내 타 사업(동일 부처·계정의 포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사용은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 프로세스별 기본적인 사항을 나타낸 것으로 사업추진절차 등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사업 법령,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해수부) ·사업추진방향 통보(지침) ·신규사업 사전사업성 검토 ·예산요구서 작성·제출(→기재부)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내역사업별 예산편성 및 배정 ·보조금 교부
(시·도)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수립 ·자율편성 기본한도내에서 시·군·구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요구(사업신청) (→해수부) ·사업자 선정·공고	(시·도) ·사업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근거한 Check-List 마련하여 사업 지원자격 심사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군·구) ·사업신청(→시·도)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시·군·구에 제출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세부 사업계획수립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 이상 증감되는 경우 사전 협의 후 시·도에 의견 통보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 * 실집행 부진사업 현장조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현장점검 등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중요재산 정보공시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기재부)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
(시·도) ·사업목적에 맞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이월명세서 제출 ·실적보고서 제출 ·중요재산 관리 등
(시·군·구) ·사업목적에 맞는 기본계획,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업계획 변경시 단계별 담당기관 역할 참조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실적보고서 검증, 제출 ·중요재산 관리 등
(보조사업자) ·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금 집행관리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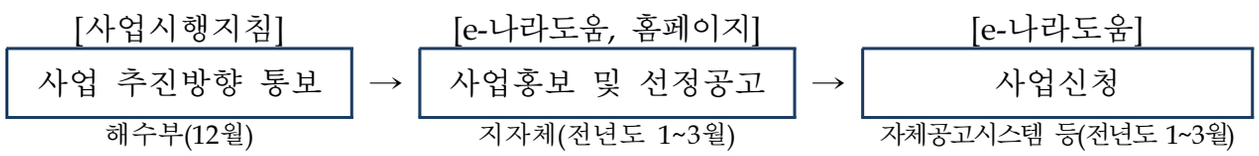

○ 해수부는 매년 12월 말까지 사업추진방향 등 사업시행지침을 지자체에 통보

○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 계획을 시·도에 통보

○ 신규사업 사전 사업성 검토 및 검토 결과 지자체 통보(해수부→시·도)

○ 시·도 예산신청서와 사전사업성 검토 의견(균발위 의견 포함)을 바탕으로 예산 요구서 작성(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8조제2항)

시·도(시·군·구)

○ 시·도는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기재부에서 산정·배분한 시·도별 자율편성사업 예산 기본한도내에서 예산 신청

- 시·도는 제출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예산 신청

- 시·군·구에서는 타 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중복여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서 및 기초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 여건변화 등에 따라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등을 거친 후 계획 변경

** 개별법령 등에 따라 세부내역사업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해당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검토의견서 첨부 여부를 확인하고, 검토의견서 적정 여부를 평가하여 중복되는 사업은 신청을 제외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 총 사업비가 20억원(건축물 신축사업의 경우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아야 함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실시

- 지자체 등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 신청방법을 안내

사업신청자

○ 어업인 조직, 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업체 등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시·도지사)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자체 수립한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계획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지구)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근거한 Check-List마련 및 심사)

○ 시·도 선정사업 중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가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결과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

○ 지자체는 보조사업자를 정하는 경우 원칙적 공모제를 활용함(공모기간 15일 이상)

- 시설설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부지확보 가능성, 자부담 능력,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동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4조)
- 보조사업자 선정시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매입하는 우수한 업체 또는 수산물 이력제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가점 부여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교육 이수 등 사업추진 준비가 완료된 경우 가점 부여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측면에서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에 추가지원 제한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보조와 관련 있는 건물 또는 토지 등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시 제한 할 수 있음

3.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내역사업별 예산 편성 및 배정(e-나라도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조금 집행(d-brain)(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시·도별 자금배정계획 수립)

시·도(시·군·구)

○ 시·도는 배정된 자금을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을 집행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 및 검증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집행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2월)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내역사업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시·도에 의견을 통보(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

시·도(시·군·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세부내역 사업별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시·도별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에는 지자체간 연계사업을 포함할 수 있음
- 세부사업 시행계획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계획수립을 원칙으로함

* 지자체는 부진 또는 부실사업,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추진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해수부로 보고(시·군·구 → 시·도→해수부)

○ 시·도(시·군·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및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수부에 보고

○ 다만, 포괄보조사업의 내역사업 예산 규모가 20%이상 증감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후 변경하여야 함

- 시·도는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해양수산부에 제출(시·도 자체변경의 경우에도 변경결과 제출)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타당한 경우 변경 승인을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시·도가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도가 승인함

  * 중요사항 : 보조사업자 변경, 사업비 · 사업규모(면적 등)의 일정비율 이상의 변경 등

○ 민간 보조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또한 같음)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사업비 집행시 국비 배정액 우선 집행 원칙

○ 지자체 등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해수부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성과(일자리, 매출액, 참여어가소득액 등)를 제출하도록 조건부여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45조의 2)

- 그 밖의 해양수산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세부사업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권고

6.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제2항)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1조)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실적보고서 접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해수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5조)

시·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해당 연도 12월31일 기준)에는 이월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및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중요재산의 현황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하여야 함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보조사업자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 기준

- 이때,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 완료 하도록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동일부처(해수부)·동일계정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집행잔액의 활용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가능, **신규사업 추진은 불가**

○ 시·도는 사업지구의 공사 추진실적 및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지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는 분기별(3월, 6월, 10월) 어업기반정비 추진상황(총괄 및 내역사업별로 작성, 별지 1) 및 월별 보조금 실 집행실적(별지 2)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리규정 등에 따라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하여 선량하게 유지관리토록 함

○ 시·도는 관리감독자로서 시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기타 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하여도 동 규정에 따름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중요재산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시·군·구는 사업완료 후 3년간 보조사업자의 매출액 등 경영실적을 점검하여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해수부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해양수산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시·군·구는 보조사업자가 선정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지역원물 확보 등) 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시·군·구는 중요재산 현황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항상 공시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민간보조사업자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해수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7. 성과측정단계

해양수산부

○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일자리 창출·어촌기업 매출액·참여어가 소득증가 등 경제성과와 주민교육이수실적 등 지역역량강화 성과 등으로 측정

사업성과 제출	→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사업성과측정
보조사업자→시·군·구		시·군·구→시·도→해수부		시·도, 해수부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

시·도

○ 시·도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발전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자료(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등) 제출(REDIS : 국가균형발전포털)

해양수산부

○ '19년도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의 '18년도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

- 주요 평가요소 및 평가항목

i) 사업기획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ii) 사업집행 : 추진체계의 적절성 및 추진과정의 효율성

iii) 사업성과 :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파급효과

《 환류 》

해양수산부

○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 페널티 부여 방안 강구(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라 조치예정),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및 시·군·구는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5개년계획에 기초하여 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에 필요한 세부사업 수요를 파악하되,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세부사업을 발굴 또는 선택(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 등이 필요)

* '20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성 평가계획』은 추후 통보 예정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신청

* 이 사업은 시·도 자율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체계임

○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전 사업성 검토 신청
* 사전 사업성 검토를 받지 않은 사업은 예산신청 불가

○ 시·도 및 시·군은 포괄보조사업(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5개년계획에 적합한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를 선정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지자체간 연계된 사업인 경우 가점 부여

○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과 연계된 사업인 경우 가점 부여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교육 이수 등 사업추진 준비가 완료된 경우 가점 부여

3. 기타 유의사항

○ 시·군·구는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농공단지 지정, 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등)은 사업신청 전(前) 행정절차 이행(행정절차 미 이행사업은 사업신청 불가)

- 기본계획수립(농어촌정비법 등 사업시행 관련 법령), 사전 환경성검토(환경정책기본법), 문화재지표조사(문화재보호법) 등

○ 시·도 및 시·군·구는 수산물 생산지원 사업의 경우 2·3차 산업과 연관하여 지원되도록 방안을 강구

【별지 제1호 서식】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3월/6월/10월)

1. 추진실적

구분		주요사업내용	일정		사업비 집행률(%)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및 건의사항
내역사업	세부사업명		착공일	준공 예정일	계획	실적		
수산물유통 시설건립	00지구 사업							
	00지구 사업							
어촌체험 관광지원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2.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0000년 계획				집행실적(합계)				집행실적(1분기)				집행실적(2분기)				집행실적(3분기)				집행실적(4분기)			
내역사업	세부사업명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수산물유통 시설건립	00항 사업																								
	00항 사업																								
어촌체험 관광지원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000사업																								

【별지 제2호 서식】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월별 실 집행실적(00월)

1.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예산집행실적 00월)

(단위 : 백만원)

시도	내역사업	시군	세부사업 (항명, 지구명)	사업량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국비집행률			익월집행전망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계	국비 (A)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B)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C)	지방비	자부담	교부률 (B/A) (%)	실 집행율 (C/A) (%)	실 집행율 (C/B) (%)	계	국비 (D)	지방비	자부담	실 집행율 (D/A) (%)	
부산	**합계**																								
	수산물유통 시설건립	소계																							
		본청	00항	00m																					

* (1) 교부액 : 예산 중 현재 기준 해수부가 자금 교부한 금액
  - 도본청(소관과) 및 시·군으로 배정한 금액 입력
  (2) 실집행액 : 사업시행자(도본청 및 시·군) 집행액으로 e-호조 시스템상 집행액임
  - 도본청(소관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 : 도본청 집행액
  - 시·군으로 예산 배정 후 집행하는 경우 : 시·군 집행액

45 수산물가공산업육성(제주 포함)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 장 지정훈 사무관 김용원 주무관 권용찬	044-200-5480 044-200-5485 044-200-5486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며,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영세한 지역 수산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통해 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생활기반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2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2항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지원 및 수산물가공시설의 현대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와 위생가공시설 확충 도모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년	17년	18년		
수산가공품 생산량 증가율(%)	110		106		'19.2	(평가년도 수산가공품 매출액/평가전년도 수산가공품 매출액)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58,550	60,017	60,017	60,017
- 국 비(30%)	17,565	18,005	18,005	18,005
- 지방비(30%)	17,565	18,005	18,005	18,005
- 자부담(40%)	23,420	24,007	24,007	24,007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

○「수산업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제조업(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인천광역시 서해5도 지역있는 아래 각 단체

-「수산업협동 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어업법인, 어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 기간 동안 지상권 확보자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다만, 건축 연면적 500㎡ 미만 사업장은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인 경우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설립 후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어업법인이 아닌 경우

-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

○ 기타사항

-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수협 및 법인 어촌계는 반드시 이사회, 비법인 어촌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법인의 경우 의결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 구비

○ 지원 제한 기준

- 동 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동안 신청제한*. 단, 수협은 제외**

  * 다만, 2018년도에 보조사업자를 기 선정한 지자체는 2020년부터 적용

  ** 수협의 경우 동일 사업에 한하여 단년도 신청 가능

- 하나의 주소지내 하나의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같은 주소지내 (지원 받은 사업자 이외) 다른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주소지내에서 최초 지원을 받은 자의 사후관리기관 동안 신청 및 지원 제한
- 어업법인 등 지원받은 단체의 구성원이 신규로 신청하는 어업법인에 속해 있으면 당초 지원 받은 어업법인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신청 및 지원 제한(개인 사업자에서 법인구성원, 법인 구성원에서 개인사업자 포함)
-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는 포기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지방(시·군·구)비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거나, 지원자격 및 요건에 맞지 않는 부적격 사업자 선정으로 사업포기가 발생한 시·군·구는 익년도부터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선정된 보조사업 자격 박탈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지자체의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지자체에 착공보고를 하여야 하며, 미보고시 행정절차 지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을 포기한 자로 간주하여 사업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즉시 대체사업자 선정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시설부지를 확보한 자

- 신청당일까지 당해부지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 또는 사후관리기간동안 지상권 확보자
- 공장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9조). 다만, 건축연면적 500㎡미만 사업장은 제외

○ 자담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사업 신청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의사록 사본 포함)
- 공장예정지 : 토지대장 및 지적도, 기타 토지사용권 관계서류(타인 소유의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증빙서류)

○ 지원 제한 기준

- 사업선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지방(시·군·구)비 부담액을 지방자치단체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시·군·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3. 지원대상

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대규모 수산물 원료 소비가 가능한 수산식품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 산지 특산물을 가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수산가공 부문

○ 지원내용

- 건물 및 시설 : 가공공장, 원료 및 제품보관시설, 수산물처리장, 소포장시설, 기타 부속건물 및 전기시설, 오폐수처리시설 등 신규 시설(부지구입비 제외, 건물 증축 포함)

  * 원료 및 제품보관 등 저장시설 면적은 사업 실시면적의 40%를 초과하지 못함

- 기존 시설에 HACCP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이를 위한 가공기계류 구입(단순 가공기계류만 구입하는 경우 제외, 다만, 2018년도에 단순 가공기계류 구입을 위한 2019년 보조사업자를 기 선정한 지자체는 2020년부터 적용)

  * HACCP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설현대화와 가공기계류를 구입한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HACCP 지정을 위해 1회이상 신청 의무

○ 지원 우선순위

- 기 조성 및 조성예정인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내에 산지가공시설 건립 또는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자

나.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수산물 냉동·냉장시설 및 제빙·저빙 시설 신축 및 개·보수

- 냉동·냉장시설을 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규모(냉동 5T/D, 냉장 500M/T)의 냉동·냉장설비를 갖추어야 함

  * 다만, 지역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최소 규모(냉동 5T/D, 냉장 500M/T) 미만으로 설비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 시설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금의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구 분	지원조건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방비와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10%내에서 상호 협의 조정 가능
수산물처리·저장시설	국고 30%, 지방비 30%, 자담 40% * 지방비와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30%내에서 상호 협의 조정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한도액(개소당 기준) : 국비 10억원

* 장비 등 기계구입을 제외한 건축공사(전기, 소방 등 공사비 포함) 사업비 지원 상한은 1백만원/㎡(건축공사 사업비가 단위면적당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업자의 추가 자부담으로 가능하고, 실제 공사단가가 낮은 경우에는 시공단가를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안 매립지역, 건물구조 등 현지 여건상 지원상한액 초과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시·군·구)이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지원상한액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 시행계획 수립	(해수부) ·해당없음	(해수부) ·해당없음
(시·도) ·자체 종합사업계획 수립	(시·도) ·시·군·구 사업수요조사 ·시·군·구 사업계획 평가	(시·도) ·최종사업자 선정 통보, 해수부에 선정결과 보고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사업자 모집 공고·접수 ·사업계획서 검토, 제출	(시·군·구) ·사업자 공고·선정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사업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해수부에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를 대상으로 익년도 사업 수요조사 시행

지자체

○ 시·도는 시·도 단위 종합사업계획(지역간 과잉·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수산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시·군·구의 사업수요 조사 및 자료 확보

2. 사업신청 단계

지자체

○ 시·군·구는 시·도 단위 종합사업계획을 토대로 다음 연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적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신청 서류 접수)

- 시·군·구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여건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모집 공고시(당해연도 사업자 첫 모집공고시 30일 이상, 사업자 미신청으로 재공고시 공고기간 단축 가능) 이를 공고해야 함

  * 의무 평가 항목 : 부지확보여부, 과거 보조사업 수혜 여부, 자부담 능력, 보조사업 신청자 유형

- 시·군·구는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로부터 지원자격 충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등을 제출받아 사업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사업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만 시·도 단위 종합사업계획 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5.31일까지>

3. 사업자 선정단계

지자체

○ 시·군·구는 사업자 선정시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 기준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해야 하며, 旣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를 사업자로 선정하되,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 다시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통보받은 예산안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 시·군·구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당연도 예산 확정 통보를 받은 후 해당연도 2월 15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통보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업시행 해당연도 2월 28일까지>

사업자

○ 선정된 사업자는 시·군·구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시행 해당연도 2.28일까지>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지자체의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지자체에 착공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을 매분기 익월 5일까지 해당지자체에 보고해야 함

지자체

○ 시·군·구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않아 사업포기로 간주*하는 경우에 대체 사업자를 선정
<사업시행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해당연도 2월 28일까지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여야 함.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교부신청 시 건축허가서(공장설립

승인서) 및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소유권확보증명서(지상권 포함),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다시 제출받아 재확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군·구에서 승인하되, 보조사업자 및 사업비 변경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즉시 보고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전면 책임감리제 등 시설공사 관련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기준을 준수하여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사전 수립해야 함

5. 자금배정단계

시·도

○ 시·도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상유무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정산방법은「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름

○ 사업완료 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시·도 및 시·군·구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 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보조시설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검토하여 담보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자체는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 등의 담보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계·장비 ○건축물	구입일부터 5년 준공일부터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제한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지자체는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10년) 사업성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익년 1월 10일까지>

7.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가공시설의 개·보수 및 신축을 통한 수산물 가공품의 생산량 변화 측정

○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을 위한 HACCP 시설등록 현황 파악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집행실적, 지방비 확보상황, 보고실적 및 사업평가 등을 평가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다음연도 시·도별 예산 지출한도를 조정

- 사업부진 지자체에 대하여 예산 삭감
-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우선 고려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자자체간 연계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우선 고려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 및 시·군·구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등 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필요사항 파악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수요를 우선적으로 조사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사업계획서

<table>
<tr><td>1. 세부사업명</td><td>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td></tr>
<tr><td>2. 내역사업명</td><td>OOOOOOOOOOOO</td></tr>
<tr><td>3. 사업위치</td><td></td></tr>
<tr><td>4. 사업규모</td><td>o 면적 : 부지 ㎡, 연면적 ㎡
o 냉동능력 : T/D, 냉장능력 : M/T
o 주요시설 :</td></tr>
<tr><td>5. 사업내용</td><td>o</td></tr>
<tr><td>6. 00년도
요구액</td><td>백만원</td></tr>
<tr><td>연 도 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td><td>
<table>
<tr><td>재원별</td><td>총사업비</td><td>‘00</td><td>‘00</td><td>‘00</td><td>‘00이후</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국 고</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지방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자 담</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r>
<tr><td>7. 지원조건</td><td>국고 %, 지방비 %, 자담 %</td></tr>
<tr><td>8. 세부 사업추진
일정</td><td>o 년. 월 :
o 년. 월 :
o 년. 월 :</td></tr>
<tr><td>9. 시행주체</td><td>○○시장, 군수 (사업자 :)</td></tr>
<tr><td>10.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요약</td><td>o</td></tr>
</table>

<table>
<tr><td>11. 필요성 및
기대효과</td><td colspan="5">o
o</td></tr>
<tr><td>12. 부지확보 여부</td><td colspan="5">o 확보여부 :</td></tr>
<tr><td rowspan="2">13. 매출규모
(단위 : 백만원)
※'19이후는 계획</td><td>'18</td><td>'19</td><td>'20</td><td>'21</td><td>'22</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14. 수출규모
(단위 : 백만원)
※'19이후는 계획</td><td>'18</td><td>'19</td><td>'20</td><td>'21</td><td>'22</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2">15. 종업원 수
(단위 : 명)
※'19이후는 계획</td><td>'18</td><td>'19</td><td>'20</td><td>'21</td><td>'22</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16. 자산(자본금)
규모
(단위 : 백만원)</td><td colspan="5">o</td></tr>
<tr><td>17. 특허, 신기술
등 보유 유무</td><td colspan="5">o 특허(실용신안) 등록 여부
o 기존 수산물(식품) 제조와 차별화되는 신기술 보유 여부 등</td></tr>
<tr><td>18. 입지여건</td><td colspan="5">o</td></tr>
<tr><td>19. 예산집행실적
('18년도)</td><td colspan="5">o</td></tr>
<tr><td>20. 광역시·도
검토의견
(우선순위 포함)</td><td colspan="5">o</td></tr>
<tr><td>21. 첨부자료</td><td colspan="5">o 시·도 현황
-
o 시·군·구 현황
-
o 신규사업 : 세부사업 설명자료(도면 등)</td></tr>
<tr><td>22. 기타</td><td colspan="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지역경제활성화사업' 등의 경우 표시 요망</td></tr>
<tr><td>23. 담당자</td><td colspan="5">o ○○시·도 :
o ○○시·군 :</td></tr>
</table>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2019년 00분기)

1.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수산물가공산업육성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	
2. 사업자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3. 사업비	사업장 주소	
	사업량	부지 00㎡, 건물 000㎡(연면적 00㎡, 00동 00층)
	사업비	총사업비 00백만원(국비00, 지방비 00, 자담 00)
	사업품목	냉동실, 저온창고, 설비 등
4. 추진상황 ※ 날짜를 기재	사업자 선정	
	사업자 확정	
	기본 및 실시설계	
	보조금교부 결정	
	보조금 교부확정(예정)	
	보조금 지급 완료(예정)	

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획				집행실적(누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금액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성과 보고

<table>
<tr><td>1. 사업명</td><td colspan="10">수산물산지가공시설, 수산물처리·저장시설</td></tr>
<tr><td rowspan="4">2. 사업자</td><td>업체명</td><td colspan="9"></td></tr>
<tr><td>대표자</td><td colspan="9"></td></tr>
<tr><td>전화번호</td><td colspan="9"></td></tr>
<tr><td>주소</td><td colspan="9"></td></tr>
<tr><td>3. 사업비</td><td colspan="10">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0, 지방비 000, 자부담 000)</td></tr>
<tr><td>4. 주요 생산품목</td><td colspan="10"></td></tr>
<tr><td>5. 종업원 수</td><td colspan="10">총 00명 (정규직 00명, 비정규직 00명)
※ 관리, 생산 인원 모두 표기</td></tr>
<tr><td rowspan="3">6. 생산실적
(사업준공 후 10년간)</td><td colspan="2">‘00</td><td colspan="2">‘00</td><td colspan="2">‘00</td><td colspan="2">‘00</td><td colspan="2">‘00</td></tr>
<tr><td>물량</td><td>금액</td><td>물량</td><td>금액</td><td>물량</td><td>금액</td><td>물량</td><td>금액</td><td>물량</td><td>금액</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7. HACCP 지정업체 등록 여부</td><td colspan="10">HACCP 지정업체 등록일 표기</td></tr>
<tr><td><u>8. 현장점검결과</u></td><td colspan="10">o 점검자 :
o 점검일 :
o 점검내용 : 업체 운영상황, 중요재산 확인 등
o 보조사업으로 설치·구입한 시설·장비 운영여부 :
* 사진 등 증빙 첨부
o 담보설정 여부 및 등기내용 :
* 보조시설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검토</td></tr>
<tr><td>9. 기타 특이사항</td><td colspan="10">o</td></tr>
</table>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자 선정기준(표준안)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부지확보	보조사업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 확보 여부(단, 지상권 확보 등은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 이상 확보함을 의미)	25	(신청자소유) 25	(지상권확보) 20	(사용승락) 15	(임대차계약) 10	(확보예정) 5
가공원료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공할 경우 국산원료 사용 비중	20	(100%) 20	(80%) 15	(60%) 10	(40%) 5	(40%미만) 0
과거 보조사업 수혜 여부	동일사업체 또는 대표자 중 동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가 있는지	20	(최초신청) 20	-	(준공 10년경과) 10	-	(준공 5년경과) 0
자부담 능력	보조사업 시설 건축에 필요한 자부담 확보 여부	10	(20%초과확보) 10	-	(20%미만~해당액확보) 5	-	(미확보) 0
보조사업용 계좌사용여부	보조사업 전용계좌 확보 여부	5	(신규확보) 5	-	(기존계좌사용) 3	-	(미사용) 0
신청자 유형	보조사업 신청자가 단체인지 여부	10	(어업법인) 10	(수협) 8	(생산자단체) 6	(수산물가공업자) 4	(기타) 2
지자체 판단	해당 지자체에 건립이 필요한 수산물 가공업인지 여부	10	(가공품목 경쟁이 없는 전혀 경우) 10	(가공품목 경쟁이 없는 경우) 8	(가공품목 경쟁이 보통인 경우) 6	(가공품목 경쟁이 있는 경우) 4	(가공품목 경쟁이 심한 경우) 2
계		100	-				
평가의견							

*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변경 추진 가능

46 수산물안전검사체계구축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과 장 윤분도 주무관 박수영	044-200-5610 044-200-5621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 안전성검사의 효율적 추진과 검사 강화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생산 공급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제2항제8호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19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4년	'15년	'16년	'17년		
▪ 수산물 안전성검사 추진 이행율(%)	100	100	100	100	100	'18	안전성조사 계획 대비 실적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2,420	2,000	2,000	2,000
- 국 비	1,210	1,000	1,000	1,000
- 지방비	1,210	1,000	1,000	1,000
- 자부담	-	-	-	-

Ⅱ. '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라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생산·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담당하는 지자체(수산자원연구소, 해양수산과학원, 수산기술지원센터 등)

2. 사업자격 및 사업 운영

○ (사업자 자격)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검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동 계획에 따른 안전성검사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지자체

- 사업추진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조달(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에 한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예산 집행 실적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사업자(지자체)는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신청 및 지원을 제한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1년~5년) 동안 지원을 제한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돈

○ 분석장비 구축 : 분석장비, 시약보관 및 시료전처리 구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자동수은분석기, 시약냉장고, 흄후드, 초음파세척기, 환류냉각장치 등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예산비목에 적정한 사용

○ 분석장비 유지관리 : 분석시약·소모품(재료비) 등 실험실 운영, 시료수거 및 안전성조사 업무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시약, 분석가스, 폐기물처리, 분석관련 도서, 출장비용(현지조사 및 시료채취 등) 등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예산비목에 적정한 사용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 의무량 :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검사 계획에 따른 연간 검사 계획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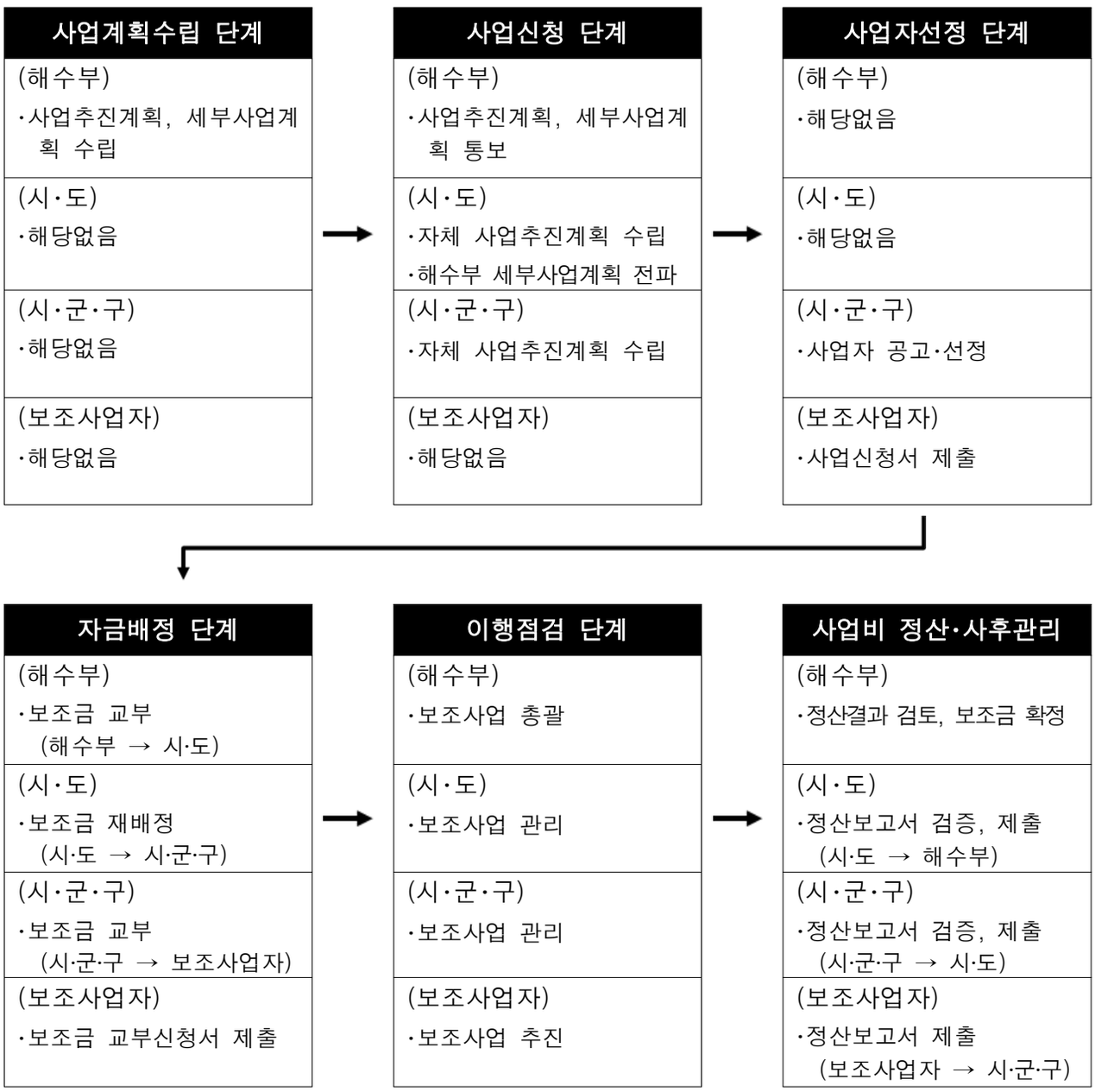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시·도

○ 사업계획 수립 : 시·도별 자체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을 토대로 사업시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규모 등 추진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

해양수산부

○ '1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19. 1월)

○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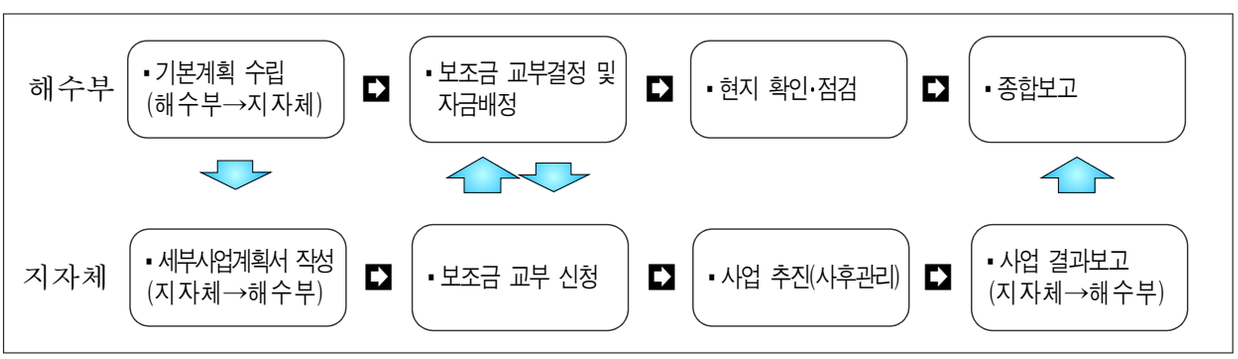

○ 정부 예산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시·도지사에게 가내시 통보(매년 10월 15일까지)

○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시·도지사에게 통지(국회 예산 확정 시)

2. 사업신청 단계

시·도

○ 사업 주관기관(시·도지사)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수립(조직·인력, 지방비 확보 등)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4월 30까지)
- 사업개요, 배경 및 목적, 사업비 산출내역, 추진계획 등 종합계획 수립
-「Ⅱ. 2. 지원자격 및 요건」에 적합한 지자체에 한 함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업물량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다만, 필요 시 현장 조사를 통해 사업타당성, 지원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 재원(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포기 또는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하거나 미배정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도별 예산안 통보

시·도

○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토대로 지방비 확보 등

4. 자금배정 단계

시·도

○ 시·도지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및 국고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요청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목적 등에 대해 검토 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국고 송금

5.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 여부, 지방비 확보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를 조사

○ 시·도지사는 보조사업 추진상황 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사업 추진상황, 사업추진 적정 여부, 지방비 확보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 시 점검하여 사업부진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

《사업비 정산》

시·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해양수산부에 보고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사업자는 지원을 제한하는 등 조치

시·도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 시 책임을 규명하고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및 해양수산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분석 장비	5년(구입일로부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의 제공 불가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제재》

○ 예산 집행 실적 부진 시·도에 대해서는 차년도 후순위 배정 또는 미배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통지된 보조사업자(지자체)는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신청 및 지원을 제한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1년~5년) 동안 지원을 제한

6. 성과측정단계

○ 수산물 안전성검사 추진실적을 산정하여 성과지표를 측정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19년도 해당 지자체에서 추진한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검사 계획에 따른 사업량 및 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익년도 사업자 선정·보조금 차등 분배

47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조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과 장 지정훈 사무관 김용원 주무관 권용찬	044-200-5480 044-200-5485 044-200-5486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행하며, 본 지침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우선 적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수산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

○ 거점단지를 통한 고부가 수산식품 개발, 가공 및 상품화, 유통·판매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거점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 촉진

2. 근거법령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제2항
○ 수산업법 제8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생산·판매 제품의 안정적 판로기반 확보 및 수산식품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	'16	'17	'18		
①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완공시설물 평균 매출액 증가율(%)	120	신규	101	135.7	-	'19.2월	(평가년도 까지 완공단지내 매출액 / 평가전년도 까지 완공단지내 매출액) * 100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	'16	'17	'18		
②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내 일자리 증가율(%)	105	신규	신규	신규	신규	'19.2월	(평가년도 완공단지내 종사자수 / 평가전년도 완공단지내 종사자수) * 100

* 측정대상 표본수 선정방법 : '18년까지 완공 된 수산식품거점단지(11개소)중 어획량 변화에 따라 매출이 증감되는 유통개념의 거점단지(여수, 영광, 부안)를 제외한 거점단지 내 2년 이상 운영중인 입주업체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0,200**	**16,250**	**9,500**	**-**
- 국 비	10,100	8,125	4,750	-
- 지방비	10,100	8,125	4,750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수협

○ 시행기관 : 시·도, 시·군·구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가공 등을 위한 인프라 조성 또는 거점단지 인프라를 활용한 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이 필요한 지자체 등

○ 선정 제외 : 동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 후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향후 신청 및 선정 제한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산가공품 개발을 위한 연구·가공시설, 부대시설(유통·판매, 홍보 등)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시설 신축

○ 지원자금은 연구·가공중심의 거점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총 사업예산의 60% 이상을 연구·가공시설 조성에 사용하여야 함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금의 재원 : 지역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 150억원 이내*

*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사업기간 : 3년

- 사업비는 1년차 5%, 2년차 45%, 3년차 50% 지원하되,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단계	사업신청 단계	사업자선정 단계
(해수부) ·사업자 공모계획 수립	(해수부) ·사업자 공모	(해수부) ·사업자 선정 평가
(시·도) ·해당없음	(시·도)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해수부 세부사업계획 전파	(시·도) ·사업계획 발표 등 평가 참여
(시·군·구) ·해당없음	(시·군·구)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응모	(시·군·구) ·사업계획 발표 등 평가 참여
(보조사업자) ·해당없음	(보조사업자)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응모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발표 등 평가 참여

자금배정 단계	이행점검 단계	사업비 정산·사후관리
(해수부) ·보조금 교부 (해수부 → 시·도)	(해수부) ·보조사업 총괄	(해수부) ·정산결과 검토, 보조금 확정
(시·도) ·보조금 재배정 (시·도 → 시·군·구)	(시·도) ·보조사업 관리	(시·도)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도 → 해수부)
(시·군·구) ·보조금 교부 (시·군·구 → 보조사업자)	(시·군·구) ·보조사업 관리	(시·군·구) ·정산보고서 검증, 제출 (시·군·구 → 시·도)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추진	(보조사업자)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군·구)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과제 공모

○ 과제 공모 계획 수립

- 공모 일정, 방법, 사업 선정(평가)기준, 과제선정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내용을 수립하고 지자체 등에 알림

○ 과제 공모

-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과제의 추진목적 및 내용, 신청자격 및 절차, 선정절차 및 기준, 제출처 및 제출기간, 기타 과제공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

2. 사업신청 단계

지자체

○ 시·도는 다음 연도 사업 추진을 위해 시·군·구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

○ 시·군·구는 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계획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자격을 충족하고 사업타당성이 있는 사업계획만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지원대상 과제신청서의 검토 및 심사 등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개최

○ 공모사업 서류 검토

- 지자체 과제신청서 및 자부담금 등 서류의 형식요건 충족여부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시정·보완 요구

○ 공모계획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접수된 사업의 순위 결정

- 공모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과제계획 검토 및 공모사업 선정위원회의 심사

- 접수된 사업을 기 공지한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결정
-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 및 지원범위 조정 가능

□ 과제선정, 선정과제의 검토 및 조정

○ 선정된 지원대상 사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는 검토 결과에 따라 과제 내용을 수정·보완

□ 보조금 확정 내역 알림

○ 선정된 시·도(시·군·구)에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4. 사업자선정 이후 단계

지자체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승인 요청

○ 시·도(시·군·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추진

○ 사업계획의 변경(필요시)

-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도(시·군·구)「수산조정심의회」등의 심의를 거쳐 계획변경
- 시·군·구는 내역사업별 계획변경(취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와 협의 절차

- 시·군·구는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시·군·구 제출 자료와 시·도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 시·군·구의 내역사업별 계획변경(취소 등)이 있을 경우 사업계획 변경 내용 및 시·도의 검토의견 참고하여 계획변경의 승인 여부를 판단

5. 자금배정단계

시·도

○ 시·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자금송금 요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시·도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상유무 확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국고 송금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는 시설공사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사업비 정산(지자체)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정산방법은「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따름

○ 사업완료 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민간보조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사후관리 책임자(지자체)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로 설치한 시설물은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후관리 책임자는 타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시설 등의 담보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민간보조사업자의 경우에 한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계·장비 ○건축물	구입일부터 5년 준공일부터 10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제한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지자체는 사업 준공 후 사후관리기간 동안(10년) 사업성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보고<익년 1월 10일까지>

7. 성과측정단계

○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에서 개발된 수산식품의 생산량과 매출액 변화 및 일자리 증가수 측정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의 사업공정율, 집행실적, 지방비 확보상황, 보고실적 및 전문평가단의 사업평가 등을 고려하여 다음년도 예산 반영

○ 사업부진 지자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정·보완, 예산 삭감, 다음연도 사업대상 선정 평가시 감점 등 패널티 부여

○ 성과평가 및 집행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자자체간 연계사업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우선 고려

Ⅳ. (필요시)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자체(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는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과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 사업의 수요를 조사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사항 등을 파악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table>
<tr><td>1. 사 업 명</td><td>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내역사업명) 사업</td></tr>
<tr><td>2. 사업위치</td><td>o</td></tr>
<tr><td>3. 시설 규모</td><td>o 부지 ㎡, 연면적 ㎡(지하 층, 지상 층)
※ 사업부지 확보여부 : (확보면적 : ㎡)</td></tr>
<tr><td>4. 시행주체</td><td>o</td></tr>
<tr><td>5. 총사업비</td><td>o 원(국비 원, 지방비 원, 자담 원)</td></tr>
<tr><td>6. 재정 투입 계획</td><td>
<table>
<tr><td>재원별</td><td>총사업비</td><td>‘00</td><td>‘00</td><td>‘00</td><td>‘00이후</td></tr>
<tr><td>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국 고</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지방비</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자 담</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
</td></tr>
<tr><td>7. 사업비 세부 내용</td><td>o 실시설계 00백만원, o 가공시설 00백만원
o 연구시설 00백만원, o 오폐수처리시설 00백만원
o 교육·홍보시설 00백만원,o 기타 부대시설 00백만원 등</td></tr>
<tr><td>8.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td><td>o</td></tr>
<tr><td>9. 사업완료후 기대효과</td><td>o</td></tr>
<tr><td>10. 관리·운영방안</td><td>o</td></tr>
<tr><td>11. 기타</td><td>o</td></tr>
<tr><td>12. 첨부</td><td>o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결과</td></tr>
</table>

※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및 상품화 사업 계획서는 동 양식에 준함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추진상황보고(2019년 00분기)

<table>
<tr><td>1. 사업명</td><td colspan="3">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내역사업명) 사업</td></tr>
<tr><td>2. 사업시행주체</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4">3. 사업비</td><td>사업장 주소</td><td colspan="2"></td></tr>
<tr><td>사업량</td><td colspan="2">부지 00㎡, 건물 000㎡(연면적 00㎡, 00동 00층)</td></tr>
<tr><td>사업비</td><td colspan="2">총사업비 00백만원(국비00, 지방비 00, 자담 00)</td></tr>
<tr><td>사업내용</td><td colspan="2">가공시설, 냉동실, 저온창고, 설비 등</td></tr>
<tr><td rowspan="7">4. 추진상황
※ 날짜를 기재</td><td colspan="2">기본계획수립</td><td></td></tr>
<tr><td colspan="2">투융자심사</td><td></td></tr>
<tr><td colspan="2">기본 및 실시설계</td><td></td></tr>
<tr><td colspan="2">보조금교부 결정</td><td></td></tr>
<tr><td colspan="2">보조금 교부확정(예정)</td><td></td></tr>
<tr><td colspan="2">보조금 지급 완료(예정)</td><td></td></tr>
<tr><td colspan="2">제품개발, 상품화 현황 및 계획</td><td></td></tr>
<tr><td colspan="4">5.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td></tr>
</table>

구분	계 획				집행실적(누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금액								

일 정		사업공정(%)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6. 대책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성과 보고

<table>
<tr><td>1. 사업명</td><td colspan="10">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내역사업명) 사업</td></tr>
<tr><td>2. 사업시행주체</td><td colspan="10"></td></tr>
<tr><td>3. 사업비</td><td colspan="10">총사업비 000백만원(국비 000, 지방비 000, 자부담 000)</td></tr>
<tr><td>4. 주요 생산품목</td><td colspan="10"></td></tr>
<tr><td rowspan="5">5. 종사자
고용인원(명)
(사업준공 후 10년간)</td><td>구분</td><td>‘00</td><td>‘00</td><td>‘00</td><td colspan="7">·····</td></tr>
<tr><td>계</td><td></td><td></td><td></td><td colspan="7"></td></tr>
<tr><td>정규직</td><td></td><td></td><td></td><td colspan="7"></td></tr>
<tr><td>일용직</td><td></td><td></td><td></td><td colspan="7"></td></tr>
<tr><td></td><td colspan="10"></td></tr>
<tr><td rowspan="3">6. 생산실적
(사업준공 후 10년간)</td><td colspan="2">‘00</td><td colspan="2">‘00</td><td colspan="2">‘00</td><td colspan="2">‘00</td><td colspan="2">‘00</td></tr>
<tr><td>물량</td><td>금액</td><td>물량</td><td>금액</td><td>물량</td><td>금액</td><td>물량</td><td>금액</td><td>물량</td><td>금액</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7. HACCP 지정
업체 등록 여부</td><td colspan="10">HACCP 지정업체 등록일 표기
* 입주업체별로 표기</td></tr>
<tr><td>8. 특허 등 등록 여부</td><td colspan="10">o 특허(실용신안) 등 등록일 표기
o 특허 등 내용 표기</td></tr>
<tr><td>9. 제품개발 및
상품화 현황</td><td colspan="10"></td></tr>
<tr><td>10. 기타 특이사항</td><td colspan="10">o</td></tr>
</table>

[별지 제6호 서식]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서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합니다(www.gosims.go.kr).

3.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해당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자기부담이나 지방자치단체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6.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우리부’)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최소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며, 최종 교부 전까지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7. 우리부는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 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8.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우리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지출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금융리스와 관련한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금융리스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조금이 자기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민간보조사업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구매계약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①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③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② 공사계약 체결(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③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시에는 이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은 상기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공사계약 체결은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점검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중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우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6. 우리부는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교부조건이 없는 경우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9. 보조사업비의 이월

   가.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에 해당될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상기의 이월 및 재이월에 관한 사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10.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1.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조성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정 도 현 주무관 최 수 경	044-200-5440 044-200-544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목포 북항 배후부지에 수산물 위판·가공·유통기능의 종합단지를 조성하여 서남권의 수산경제 중심지로 육성·지원

2. 근거법령

○「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등 보조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5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4,020**	**-**	**-**	**-**
- 국 비	2,010	-	-	-
- 지방비	804	-	-	-
- 자부담	1,206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전남도(목포시)

○ 간접보조사업자 : 목포수협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전라남도(목포시)·목포수협

* 시설부지 확보,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 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되어야 함

○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전남도(목포시)·목포수협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 시설 설치 타당성 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등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

  *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위판장, 냉동·냉장시설 등

- 물류시설 : 파렛트, 지게차, 운반상자, 냉동탑차, 활어수조차 등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사업비 산출근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종합물가정보 등) 사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해당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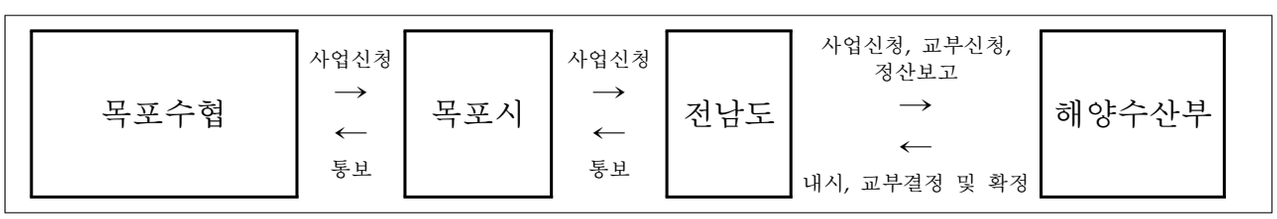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목포수협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청

전라남도(목포시)

○ 전라남도(목포시)는 목포수협에서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공정율 등의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수립, 해양수산부에 제출(매년 2월말까지)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재정당국과 국회 등 보조사업 편성 목적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자 선정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사업자

○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가급적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대행토록 추진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보조사업 관련 계약 : 민간보조사업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시·군과 협의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시·군의 승인하에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전남도(목포시)

○ 시·군은 승인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사업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사업부지 등의 변경은 시·군의 승인을 통해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변경 사유, 검토 결과 등을 첨부)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군은 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 해양수산부는 전라남도(목포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목포시)에 예산안 통보

전라남도(목포시)

○ 사업계획서(공통 제2호서식)와 보조금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 및 기타 구비서류 작성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자금송금 요청시에는 예산확보 내역서를 첨부

5.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

전라남도(목포시)

○ 시·도는 시·군별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파악하여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사업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전라남도(목포시)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라. 기타사항

전라남도(목포시)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전라남도(목포시)

○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산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전라남도(목포시)

○ 시·도 및 시·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해야 함(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시·군은 승인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 시·도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목포수협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해당 없음

49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지원

①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정 도 현 주무관 최 수 경	044-200-5440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수산물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가공·판매하는 거점 유통시설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마케팅 수익이 생산자에게 환원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FTA에 대응한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

* Fisheries Products Processing & Marketing Center

2. 근거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의 설치)

> ▸ 국가는 수산물의 처리물량을 규모화하고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목적으로 수산물을 수집·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 ▸ 국가는 농수산물의 선별·포장·규격출하·가공·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부지 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 대상사업)

▶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물 처리·가공·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등 보조 대상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세부사업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 지원 사업 공정률(%)	합계	87.5	-	-	50	12월말	(연도별 예산 누적투자액/총사업비)*100
	'18년 착수 (3개소)	100	-	-	50		
	'19년 착수 (1개소)	50	-	-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9,665	3,668	11,168	8,500
- 국 비	3,866	1,467	4,467	3,400
- 지방비	2,900	1,100	3,350	2,550
- 자부담	2,900	1,100	3,350	2,55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지자체

○ 간접보조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하고, 사업신청년도 이전 1년이상 유사사업 관련 실적이 있어야 함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유통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동 계획안에 FPC 육성방향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지자체의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에는 지역내 수산물 유통시설의 역할분담을 통한 유통 효율화 방안, 지역단위 마케팅 지원체계 등 포함

** 시설부지 확보(자가 소유 또는 임차 등), 해당 사업목적에 맞는 용도지역 등 행정절차 완료 및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되어야 함

○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 지자체

- 간접보조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 어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

· 어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하고, 사업신청년도 이전 1년이상 유사사업 관련

실적이 있어야 함

*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명기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 시설 설치 타당성 진단,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비 등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 부대 설비공사 등

- 건축공사 : 가공·포장시설, 보관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센터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기준」고시 별표 1의 시설을 HACCP 기준에 부합하도록 건립

** 상품화 프로세스를 감안, 총사업비의 20%내에서 위판장 시설개보수 등에 투자 가능

- 물류시설 : 파렛트, 지게차, 운반상자, 냉동탑차, 활어수조차 등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FPC 건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한 후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설치 가능

** 사업비 산출근거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종합물가정보 등) 사용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보조 40%, 지자체 3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2년

* 사업비는 1년차 50%, 2년차 50% 지원하되,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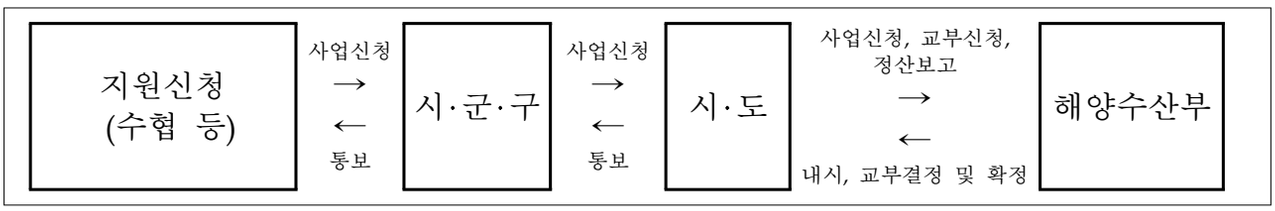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사업자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청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 사업계획서(요약본 포함),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총회(이사회) 의사록(FPC 설치에 관한 의제), 사업부지예정지조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축척 1/500),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반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원료수산물 조달실적, 가동율 등)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은 기존에 운영중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만 작성

지 자 체

○ 사업계획서 검토

- 시·도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도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에의 부합여부, 투자효율성, 중복투자의 최소화, 운영능력, 기본요건 충족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과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전국에 권역별 거점시설 건립을 위하여 기건립 산지거점유통시설 현황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권 부여 또는 배제 가능

* 공모관련 세부사항은 별도계획 수립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사업자

○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가급적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대행토록 추진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보조사업 관련 계약 : 민간보조사업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

하여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시·군과 협의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시·군의 승인하에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지자체

○ 시·군은 승인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사업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사업부지 등의 변경은 시·군의 승인을 통해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변경 사유, 검토 결과 등을 첨부)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군은 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안 통보

6.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

지자체

○ 시·도는 시·군별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익일 10일까지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사업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지자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라. 기타사항

지자체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지 자 체

○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 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산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

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산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지자체

○ 시·도 및 시·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해야 함 (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시·군은 승인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 시·도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② 청정 위판모델 구축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과 장 정 도 현 주무관 최 수 경	044-200-5440 044-200-544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양륙-선별-위판-배송 全과정에 위생시설을 갖춘 청정 위판장 조성

2. 근거법령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위판장의 개수·보수 등 지원) 및 제22조의2(위판장의 현대화 지원 등)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지의 수산물 공동출하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판장개설자에게 시설물 설치를 위한 개수·보수 등에 필요한 지원 가능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판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위판장의 수산물전자거래(전자경매를 포함한다) 확대, 위판장의 저온유통체계 확립 등 지원 가능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보조사업자 : 지자체

○ 간접보조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 등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지원 제한 기준 및 보조금 교부조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인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 : 지자체
- 간접보조사업자 : 수산업협동조합 등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비, 건축공사, 물류시설,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보조 40%, 지자체 3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2년

＊사업비는 1년차 50%, 2년차 50% 지원하되,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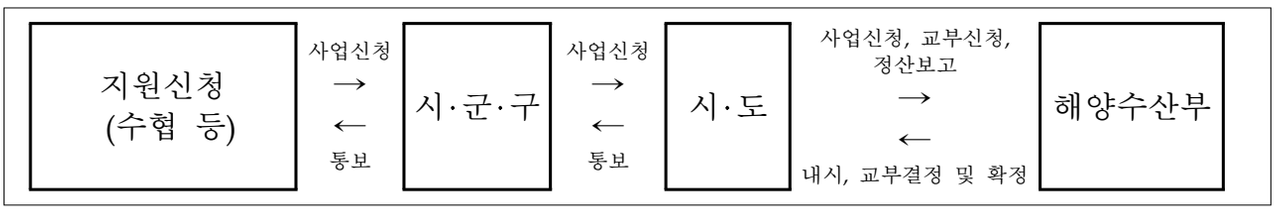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사업정책 방향, 지침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 수립하여 지자체에 통보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관리주체 : 해양수산부(유통정책과)

○ 보조사업자 대상 보조사업 교부신청 안내

사업자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청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 사업계획서(요약본 포함),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대표자 및 임원이력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및 총회(이사회) 의사록(FPC 설치에 관한 의제), 사업부지예정지조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축척 1/500),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반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건물등기부등본, 건물대장,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원료수산물 조달실적, 가동율 등)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은 기존에 운영중인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만 작성

지 자 체

○ 사업계획서 검토

- 시·도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시·도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에의 부합여부, 투자효율성, 중복투자의 최소화, 운영능력, 기본요건 충족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검토의견과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공모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공모관련 세부사항은 별도계획 수립

4.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사업자

○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가급적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설계, 시공, 감리 등 대행토록 추진

○ 사업계획 변경 : 사업대상 지역, 시설규모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포기 :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보조사업 관련 계약 : 민간보조사업 등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약 체결하도록 함

-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30억원 이상 보조사업 시설공사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의뢰하여야 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함
-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 >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 선정시 보조사업자가 직접「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자치단체에 계약대행을 의뢰하여 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함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방법

- 사업자는 시·군과 협의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설계 및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시·군의 승인하에 실시

<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해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각종 기계설비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함

지자체

○ 시·군은 승인결과,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2월말)

- 시·도는 세부사업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

○ 세부사업계획 및 설계, 사업부지 등의 변경은 시·군의 승인을 통해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변경 사유, 검토 결과 등을 첨부)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시·군은 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를 거쳐 해양수산부에 제출

5.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의 교부신청서(공통 제3호서식)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

○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정산시점 등

- 지급기준 : 2회 이상 분할 교부
- 정산방법 : Matching 비율에 따른 국고지급 보조금액 확정 및 정산처리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절차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3개월 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등 정산자료(통장 입출금 내역, 영수증 등)를 정리하여 사업관리 주체에 제출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 해양수산부는 사업계획 및 중장기투자계획을 토대로 익년도 예산요구

○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안 통보

6. 이행점검단계

《사업비 집행》

가. 사업비 집행

지자체

○ 시·도는 시·군별 사업자의 사업공정비율 및 사업비 실집행액을 매분기말 익일 10일까지 파악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

나. 감리

사업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각종 설비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다. 준공검사

지자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라. 기타사항

지자체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진 예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집행점검

- 점검항목 : 계획대로 추진여부 및 실적, 예산조기집행 상황, 사업추진상 문제점, 애로사항 및 기타 사업관련 건의사항 등
- 사업추진 점검 시 추진내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방안 강구

《제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및 제237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하고 지급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조치

《사업비 정산》

해양수산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검증지침」 등 관계규정에 의함

지 자 체

○ 보조사업 종료 후 3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 보고서 등 결과 보고

- 보조금 합계가 3억원 이상(자부담 제외)인 사업을 대상으로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사업자는 감사보고서 제출

* 추가 제출 서류 : 관련시설 사진, 세부집행내역 등 정산관련 증빙자료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정당한 사유없이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 지급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음

*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 비율 : 3개월 10% 이내, 6개월 20% 이내, 12개월 50% 이내

○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당사례 발견시 책임을 규명하고 제재 조치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산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시

- 보조사업 수행 배제 알림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 수행 배제 등 사실 발생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수행배제 사실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 제재부가금 부과· 징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명단 등 공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부정수급 적발 이후 익년 3월 31일 까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조사업자 등의 명단과 위반행위 내용 등을 1년간 게재

* 필요시,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산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시에 부기등기를 요구할 수 있음

지자체

○ 시·도 및 시·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해야 함 (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매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고, 시·군은 승인결과를 시·도에 보고, 시·도는 해양수산부에 제출하여야 함

○ 시·도는 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양수산부에 사업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보조사업자

○ 법령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장 비 ○건축물	5년(구입일로부터) 10년(준공일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없이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 불가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없음

50 수산어업행정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과 장 황통성 사무관 정재훈	044-200-5460 044-200-54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정부조직개편('08.2.28)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30개 수산사무소의 수산어업지원 기능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이양 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을 지원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경제발전계정의 세입과 세출)제4항 : 국가는 법령에 따라 지방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 체계의 정비 등) 제3항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3. 성과목표 및 지표

○ 어가에 필요한 실용수산기술 보급을 증대하여 어가의 수산업경쟁력 강화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년	16년	17년	18년		
실용수산기술 보급 증가율(%)	17.6	15.8	10.5	20.5	-	익년1월	(당년 수산기술보급 사업장 수 - 전년 수산기술보급 사업장 수/전년 수산기술보급 사업장 수)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8,871**	**22,871**	**22,871**	**22,871**
- 국 비	25,871	22,871	22,871	22,871
- 지방비	3,000	-	-	-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도 수산사무소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 정부조직개편('08.2.28)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30개 수산사무소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방이양 공무원 인건비
○ 기본경비 : 사무관리비,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 청사 및 지도선 운영비 : 유류, 공공요금 및 제세, 정기점검 및 수리비 등
○ 행정정보화 : 사무용 전산망 유지관리 및 전산장비 구입 등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
※ 청사 신축 및 기술지도선 신조 : 국고 50%, 지방비 5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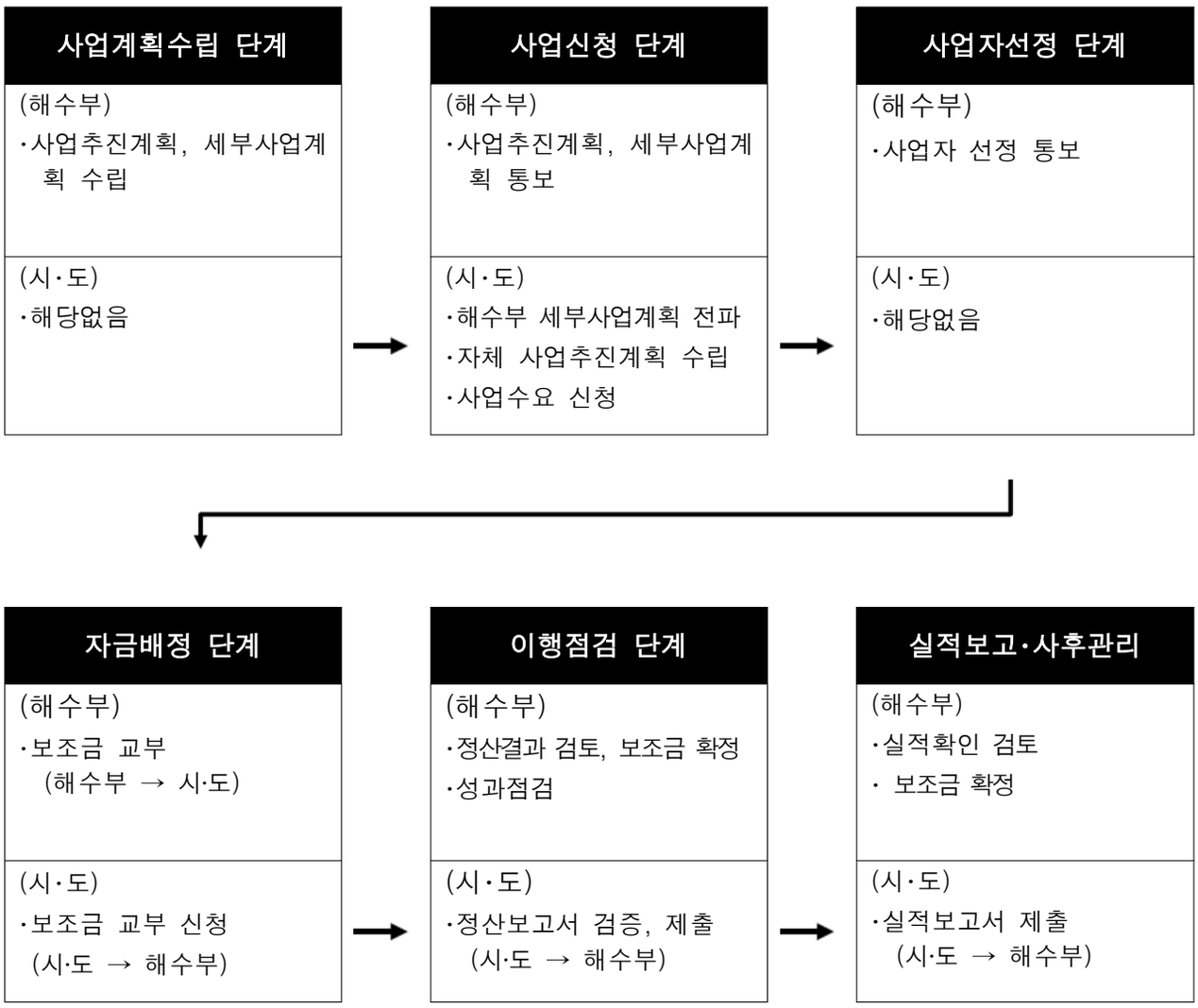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시·도별 사업규모) 계획 수립
- 시·도별 사업수요 및 예산 집행률 등 고려

○ 사업자에 대한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

○ 세부사업계획 수립(매년 12월말)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세부사업계획 통보

시·도

○ 자체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수요 제출

- 최종사업집행기관(시도, 시군구)의 수요 취합

* 해양수산부 별도요청(문서)에 따라 이행

3. 사업자 선정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자 및 사업규모 선정 통보(12월 경)

4. 자금배정 단계

해양수산부

○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 송금

시·도

○ 시·도지사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추진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업평가 및 환류》

해양수산부

○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시·도의 사업성과 및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배정에 반영한다.

※ 평가대상사업 및 내용 : ① 예산집행 : 불용 및 이월현황,
② 사업성과 : 수산기술 보급 사업장 수

시·도

○ 동 사업 지침 성과지표(실용수산기술 보급 증가율)에 따른 사업성과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익년 1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실적보고 및 사후관리

《실적보고》

해양수산부

○ 시·도의 실적보고를 검토하여 보조금을 확정

- 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대조하여 보조금 지급 금액을 최종 확정 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은 국고회수 조치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도

○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익년 3월말까지 최근 3개년도* 사업 실적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해양수산부로 제출하여야 한다(보조금 확정을 받은 후 확정내용에 변동이 없는 사업연도 실적보고서 제외)

* 최근 3개년도(예) : 2019년 사업인 경우는 2017년～2019년

《사후관리》

해양수산부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시·도

○ 사후관리 책임자 : 시 · 도지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 기계장비	재산 인수후	5년	목적외 사용, 양도, 대여 등	-
- 건축물, 선박	〃	10년		

《제재》

해양수산부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 시 불이익 조치를 취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ㅇㅇ년 수산어업행정지원 사업추진계획

(작성자 : ㅇㅇ수산사무소, 0급, ㅇㅇㅇ, 000-000-0000)

□ 자금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계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계	인건비	기본 경비	지도선 및 청사 운영비	행정 정보화	소계	기본 경비	지도선 및 청사 운영비	행정 정보화
합계										
00사무소										

※ 국비+지방비

ㅇ 국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계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계	인건비	기본 경비	지도선 및 청사 운영비	행정 정보화	소계	기본 경비	지도선 및 청사 운영비	행정 정보화
합계										
00사무소										

- 지도선 및 청사운영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계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계	공공요금 (보험료)	차량선박비 (유류비)	소계	시설비	기관교체비	청사신축 및 지도선 건조
합계								
00사무소								

○ 지방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계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계	인건비	기본 경비	지도선 및 청사 운영비	행정정 보화	소계	기본 경비	지도선 및 청사 운영비	행정 정보화
합계										
00사 무소										

- 지도선 및 청사운영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계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소계	공공요금 (보험료)	차량선박 비 (유류비)	소계	시설비	기관교체 비	청사신축 및 지도선 건조
합계								
00사 무소								

□ 주요사업 내용

○ 인건비 지원

-

○ 기본경비 지원

-

○ 청사·지도선 운영 지원

-

○ 행정정보화 지원

-

[별지 제2호 서식]

20ㅇㅇ년도 수산어업행정지원 사업성과

(단위 : 개소, %)

성과지표	전년 수산기술 보급 사업장수 (A)	당년 수산기술 보급 사업장수 (B)	증가율 (B-A/B)*100%	측정방식
▪실용수산기술 보급 증가율(%)				(당년 수산기술보급 사업장 수 - 전년 수산기술보급 사업장 수) ×100%

- 세부내역

실용수산기술명 또는 내용	보급 사업장 수		비고(추진사무소 등)
	전년	당년	
계			

※ 전년 및 당년 실적이 모두 나타나도록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2019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2019회계년도 기준)

1. 예산집행실적(총괄)

(단위 : 원)

수산어업행정지원	예산액	2019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인건비				
기본경비				
지도선·청사 운영비				
행정정보화				

* 지방비 재원이 포함된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기

2. 비목별 집행실적

□ 인건비

(단위 : 원)

비목	세목	예산액	2019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경상보조	소계				
	보수				

* 지방비 재원이 포함된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기

○ 집행내용 :

- 2019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이월 사유 :

○ 불용 사유 :

□ 기본경비

(단위 : 원)

비목	세목	예산액	2019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경상보조	소계				
자본보조	소계				

* 지방비 재원이 포함된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기

○ 집행내용

- 2019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이월 사유 :

○ 불용 사유 :

□ 지도선·청사 운영비

(단위 : 원)

세목명	세목	예산액	2019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경상보조	소계				
자본보조	소계				

* 지방비 재원이 포함된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기

○ 집행내용

- 2019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이월 사유 :

○ 불용 사유 :

□ 행정정보화

(단위 : 원)

세목명	세목	예산액	2019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경상보조	소계				
자본보조	소계				

* 지방비 재원이 포함된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기

○ 집행내용

- 2019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이월 사유 :

○ 불용 사유 :

2018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2019회계년도 기준)

1. 예산집행실적(총괄)

(단위 : 원)

수산어업행정지원	예산액	집행액			2019년 이월액	불용액
		2018년 집행액	2019년 집행액	계		
계						
인건비						
기본경비						
지도선·청사 운영비						
행정정보화						

* 지방비 재원이 포함된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기

2. 비목별 집행실적

□ 인건비

(단위 : 원)

비목	세목	예산액	집행액			2019년 이월액	불용액
			2018년 집행액	2019년 집행액	계		
계							
경상보조	소계						
	보수						

* 지방비 재원이 포함된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기

○ 집행내용

- 2018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2019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이월 사유 :

○ 불용 사유 :

□ 기본경비

(단위 : 원)

비목	세목	예산액	집행액			2019년 이월액	불용액
			2018년 집행액	2019년 집행액	계		
계							
경상보조	소계						
자본보조	소계						

* 지방비 재원이 포함된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기

○ 집행내용

- 2018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2019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이월 사유 :

○ 불용 사유 :

□ 지도선·청사 운영비

(단위 : 원)

비목	세목	예산액	집행액			2019년 이월액	불용액
			2018년 집행액	2019년 집행액	계		
계							
경상보조	소계						
자본보조	소계						

* 지방비 재원이 포함된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기

○ 집행내용

- 2018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2019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이월 사유 :

○ 불용 사유 :

□ 행정정보화

(단위 : 원)

비목	세목	예산액	집행액			2019년 이월액	불용액
			2018년 집행액	2019년 집행액	계		
계							
경상보조	소계						
자본보조	소계						

* 지방비 재원이 포함된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기

○ 집행내용

- 2018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2019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이월 사유 :

○ 불용 사유 :

2017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2019회계년도 기준)

1. 예산집행실적(총괄)

(단위 : 원)

수산어업행정지원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17년 집행액	2018년 집행액	2019년 집행액	계	
계						
인건비						
기본경비						
지도선·청사 운영비						
행정정보화						

* 지방비 재원이 포함된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기

2. 비목별 집행실적

□ 인건비

(단위 : 원)

비목	세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17년 집행액	2018년 집행액	2019년 집행액	계	
계							
경상보조	소계						
자본보조	소계						

* 지방비 재원이 포함된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기

○ 집행내용

- 2017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2018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2019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불용 사유 :

□ 기본경비

(단위 : 원)

비목	세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17년 집행액	2018년 집행액	2019년 집행액	계	
계							
경상보조	소계						
자본보조	소계						

* 지방비 재원이 포함된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기

○ 집행내용

- 2017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2018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2019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불용 사유 :

□ 지도선·청사 운영비

(단위 : 원)

비목	세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17년 집행액	2018년 집행액	2019년 집행액	계	
계							
경상보조	소계						
자본보조	소계						

* 지방비 재원이 포함된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기

○ 집행내용

- 2017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2018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2019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불용 사유 :

□ 행정정보화

(단위 : 원)

비목	세목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2017년 집행액	2018년 집행액	2019년 집행액	계	
계							
경상보조	소계						
자본보조	소계						

* 지방비 재원이 포함된 경우 재원별로 구분 표기

○ 집행내용

- 2017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2018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2019년 : *“사업명” 및 “집행내용” 기술*

○ 불용 사유 :

51 국가어항(제주)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학기 사무관 김하성	044-200-5650 044-200-565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선의 안전정박·수용으로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보호, 수산물 생산 및 유통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수산업경쟁력 강화 등

2. 근거법령

○ 어촌·어항법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 제49조(사업비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지역 국가어항 개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업무 이양('06.7)

3. 성과목표 및 지표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어항 5개항을 완공하고, 어촌사회 핵심기반시설과 지역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비 및 환경개선·관광기반시설 사업 추진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	'16	'17	'18		
▪ 제주지역 국가어항 이용자 만족도(%)	71.3	70.5	70.7	70.9	-	'20.1월	제주지역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외부전문기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4,389	계속사업	계속사업	계속사업
- 국 비	14,389	계속사업	계속사업	계속사업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사업자격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우선이양대상사무) 3호에 의거 어항개발사업의 시행권한을 제주도로 이양

> **제24조(우선이양대상사무등)** 3. 해양수산(해상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94조제4항조에 따른 사무
>
> **제294조(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등에관한 특례)**④ 제23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등) 3항에 어항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 **제25조(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③ 제24조에 따라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이동시키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제주지역 국가어항 5개항(신양항, 모슬포항, 도두항 등)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어항(5개항)개발계획에 포함된 어항시설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포함된 어항시설조성사업비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 세부용도 : 기본설계용역비, 실시설계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 재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지원기준 : 국고 100%

○ 국가어항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비이내

○ 총사업비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한도 내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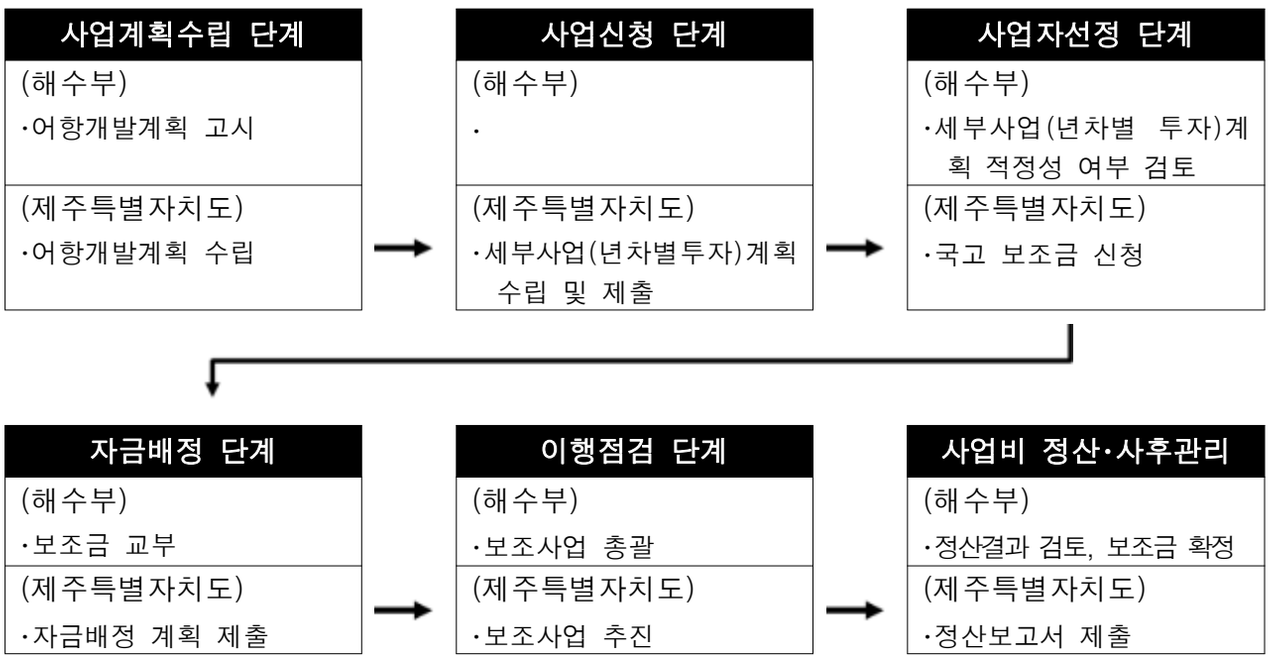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어항개발계획 수립시(제주특별자치도) 어항개발계획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 기 수립된 어항개발계획 이외 항내 여건변화로 인한 추가 개발계획 필요시 어항 개발계획 수립

2. 사업신청 단계

제주특별자치도

○ 세부사업계획 수립

- 도지사는 항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되, 신규투자(전년에 국비를 투자하지 않은 사업, 이하 같음)를 억제하고 완공위주 집중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예산의 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세부사업계획 제출

- 도지사는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국고보조금 신청(별지 제1호 서식)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발전협의회 또는 심의회 등을 거쳐 계획변경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보고. 다만, 항별 예산배정액의 20%이상 변경이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단,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당해연도에 계속투자 중인 어항의 완공촉진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사업자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해양수산부은 세부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확인하고 적정할 경우 교부결정 통지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자금배정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자금 송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국가어항(제주) 자금배정계획	14,389		7,195				2,878			4,316			

제주특별자치도

○ 도지사는 세부내역사업별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자금 집행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해양수산부 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이행

5. 이행점검단계

해양수산부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필요시)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후관리》

○ 도지사는 사업별로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 이상)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도지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분기별 추진상황을 해양수산부에 제출(익월 10일까지)

○ 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투자사업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이 완료된 경우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하고 준공된 시설물은 어촌어항법 제28조를 준용하여 기한내에 절차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인계하여야 함

《제재》

해양수산부

○ 도지사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 다른 보조금교부의 일시정지 및 강제징수 등을 조치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도지사는 2020년도 추진할 사업을 해양수산부에 예산신청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도지사 예산 요구안을 기초로 202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기타사항

○ 2019년도 예산신청서 및 사업시행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소 속 :

2. 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명칭)

주 소 :

성명(명칭) :

3. 사업시행장소 :

4. 보조(융자)사업의 내용

가. 용도(목적)

나. 사업규모

5. 보조금(융자금) 교부신청액 : **원정**

6. 사업에 요하는 총소요액 : **원정**

가. 국 고 원정

나. 융자금 원정

다. 지방비 원정

라. 자부담 원정

7. 사업시행예정기간

가. 착공(착수)예정일 년 월 일

나. 준공(완료)예정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집행코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오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 (1)세부사업계획 1부, (2) 보조금 분기별 집행계획 1부.

신청자 주 소 :

성명(명칭)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19년도 국가어항(제주) 세부사업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 m, 백만원)

어항명	총 계 획 (A)			기투자 ('18까지) (B)		잔 량 (A-B)		2019 계획				투자 우선 순위	완공 계획 년도
	시설명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계	국비	지방비		
○개항	합계												
○○항	계												
○○항	계												
○○항	계												
○○항	계												

※ 기투자('18까지) : '18예산 중 '19년으로 이월된 예산은 기 투자에 포함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분기 집행계획서

□ 국가어항별 집행계획(본 예산)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재원 구분	2019년 사업비	2019 분기별 집행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 00 사업						
▪ △△△사업						
▪ ♧♧♧사업						

※ 이월액 미포함, 2019년 예산에 대해서만 작성

□ 국가어항별 집행계획(예산현액)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2019년 사업비			2019 분기별 집행계획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예산현액 (A+B)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 계>							
▪ 00 사업							
▪ △△△사업							
▪ ♧♧♧사업							

※ 분기별 집행계획의 합이 예산현액이 되어야 함

<별지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추진상황보고(분기)

□ **사업명 : 국가어항건설(제주)**

(단위 : 천원)

시군별	어항명	사업 내용	금회계획			집행실적(누계)						일정		당해년도 사업공정 (%)			부진 원인 또는 문제점	대책 또는 건의 사항
						원인행위기준			최종집행기관 자금지출기준									
			보조금	지방비	계	보조금	지방비	계	보조금	지방비	계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계획	실적	대비		
합계																		

※ 예산집행실적의 원인행위기준은 계약체결 금액을 말하고, 최종집행기관 자금지출기준은 최종발주기관에서 자금을 지출(선금, 계약금 포함)한 금액, 부진사업(계획대비90%미만)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해결방안 기술

전년도 이월사업 또한 사업명(사업년도)을 분리 표기하여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1. 작성 년·월·일 :

2. 작성자 직·성명 :

3. 확인자 직·성명 :

4.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단위 : 원)

사업명	항명	사업내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일정		비고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국가어항 (제주)	합 계										

5. 이월·불용사유 : 항별로 이월·불용사유 자세히 작성

【첨부1】 공사준공 보고서

【첨부 1】 공사준공보고서

공 사 준 공 보 고 서

공 사 명			
위 치			
지 변 과 목			
예 산 액			
집 행 액	도 급 액 원 계 원 관 급 액 원		
사 업 량			
계약년월일		착공년월일	
준공예정년월일		실제준공일	
검사년월일			
검 사 자	(직급) (성명)		
시 공 자			
감 리 자			
첨 부 서 류	공사기록대장 첨부		

공 사 기 록 대 장

공사명 : (1면)

지변과목		장	관	항	세항	목
시 행 청				시 공 자		
위 치				감 리 자		

사업계획 (~) 단위:백만원

공 종	전체계획		기시행(까지)		'ㅇㅇ 시행		장 래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공사기간 (설계공기 일)

설 계 완 료 일		준 공 예 정 일	
계 약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준 공 검 사 일	

(단위 : 천원)

예 산 액		당초 설계액	도급액 기 타		관급자재대 계		
예정가격		낙찰액		낙찰율	%	계약방법	
계 약 처		보증인					
하자기간	~ (년)		하 자 보증금		예산배정 일 자		

공사감독자 (담당공무원)	당초	직급 성명 외 명	기간	
	변경	직급 성명 외 명	기간	
현장대리인		감리원	책임감리원(특급) 외 명	
준공검사자	직급 성명 외 명	입회원		

공사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규 격	단위	설 계 및 집 행			변경(차)	
			수량	설계액	집행액	수량	금액
설계개요	목 적 : 공사개요:				변경개요	변경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 공사개요 :	
설 계 자							
심 사 자							

관급자재내역

관급자재명	수 량	당초 설계액	계약액	계약처	계약방법	계약일	납품일

공사집행 특기사항

시행일자	근 거	특 기 사 항

(4면)

위치평면도
표준단면도

(5면)

전경사진
○ 착수전 ○ 준공후
주요 공사 사진

※ 공사기록대장 규격 : A4

52 폐업지원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이시원 사무관 송준석 주무관 유종민	044-200-5420 044-200-5427 044-200-542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어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어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 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	'16	'17	'18		
폐업지원율 (%)	90	-	66.7	-	-	'19.12	폐업신청 대비 지원율을 백분율화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089	1,089	1,089	1,089
- 국 비	1,089	1,089	1,089	1,089
- 지방비	-	-	-	-
- 융 자	-	-	-	-
- 자부담	-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급대상품목(시행령 제6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

(1) 포획·채취·양식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유·무형의 비용을 포함한다)이 크고 폐업 시 이를 회수하기 어려운 품목

○ 유형의 비용 : 어선, 양식장 등의 시설 설치 비용 등 ○ 무형의 비용 : 별도의 연구 개발, 유통 경로 확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2년 이상의 생육·사육 기간이 필요한 등 단기간에 양식한 품목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 어려운 품목

(3) 기타 비용이 크거나 장기간 소요 외의 사유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로 인정된 품목

2. 지급대상품목의 선정(시행령 제6조)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선정

(1) 요건 충족 여부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하 "어업인등 지원센터"라 함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다. 조사·분석 내용

① 해당 품목의 포획·채취·양식을 위한 평균 투자 비용(유·무형 비용을 포함)

② 해당 품목의 포획·채취·양식을 통해 수익을 얻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

③ 타 품목과 비교했을 때 해당 품목의 포획·채취·양식에 필요한 특이 사항 등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어업인등 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조사·분석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어업인등 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2019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발생 여부

(3) 지급대상품목의 선정

가. 선정 기관 : 해양수산부장관

나. 대상품목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2019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 방법 : 해양수산부 고시

3. 지급대상자(시행령 제7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어선·어구·시설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어업인등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2019년도에 해당 품목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고 있는 자

(2)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3)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

* 2개 이상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품목 생산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어선·어구·시설 등(「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② 건축·도로개설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등 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하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

* 개발계획지구 선정 등의 국가사업 추진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등 이중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④ 신청인 소유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 중 일부만 폐업(부분 폐업)하는 경우

* 신청인이 2개 이상의 폐업지원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품목 중 하나에 대하여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부분 폐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매매·증여 등의 사유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대상품목의 생산 시설 등을 소유했던 어업인등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본래 소유자와 변경된 소유자 모두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만, 어업인등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소유권이 이전(상속 등)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해양수산부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별표 1> 참고
*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지자체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소모성 사업비는 제외) 및 융자금 적용

* 다만,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융자 원금·이자 등을 상환한 경우는 제외하며, 반납 또는 상환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폐업지원금 수령 전까지 완료

  – 경쟁력 제고 사업별 상환의 범위는 융자금의 경우 원금잔액 전액을 회수하고, 보조금의 경우 사업별 사후관리관기간에 따라 정액제를 기본 원칙으로 함

⑦ 신청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폐업지원금 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치 이상인 자

- ‘17년 기준 : 직전 5년(‘12~‘16)간 전국 가구 소득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치는 51,349천원

* 자료출처 : 가계동향조사(통계청)

⑧ 신청인의 어업면허가 어촌계 소유이거나, 어업 면허·허가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이 지분으로 분할된 상태인 경우 또는 압류권·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다만, 어촌계 구성원 또는 어업 면허·허가, 어선·어구·시설의 지분권자, 압류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를 얻어 폐업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지급 형태 및 기준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2) 재원 : 수산발전기금

(3) 산출방법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어업권 또는 허가어업·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손실액 산출방법 및 산출기준에 따른 금액

가.「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평년수익액 ÷ 연리(12퍼센트)>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나.「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

<평년수익액 × 3년>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다. 평년수익액의 의미 및 기타 산출 방법 등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4 참고

(4) 지급 한도액 : 해당 없음

(5) 지급 시기 : 2019. 10월부터

◦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연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별로 우선순위자를 정하여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근거하여 연차별로 지원할 수 있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센터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 어업인등 지원센터에 해당 품목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분석하도록 지시

어업인등 지원센터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해양수산부장관이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분석하도록 지시한 품목

(2) 조사·분석 내용 : 조사·분석 대상 품목이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보고 시기 : 매년 3월 31일까지

2. 지급대상품목 선정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19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19년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수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또는 어촌계·어업인 대표 및 지역 수협·생산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어업인등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

(1) 지급 신청 :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지급 신청

◦ 지급 신청 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9. 7. 31.까지

(2) 신청 방법

◦ 어업인등은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의1 서식),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별지 제1호의2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이후, 개인사정 등으로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 포기서(별지 제1호의3 서식)를 제출

◦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이 같은 시·도 내 2개 이상 시·군·구의 관할인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이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어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해당 지자체에 등록된 면허·허가·신고 어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어업허가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 어업면허증(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나. 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선박국적증서·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선박등기부 등본 사본(선박국적증서·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 (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묘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의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업허가권자에게 보고한 생산 실적 자료

⑥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기간에 지급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 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서명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다. 어촌계 구성원 또는 어업 면허·허가, 어선·어구·시설의 지분권자(공유자)·압류권자·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군·구(지자체)

(1) 지급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

가. 지급신청서 접수 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9. 7. 31.까지

나. 지급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지급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다. 지급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2)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

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인지 여부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 선박국적증서, 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 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인

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생산량이 신청인의 전체 어업 생산량에서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인지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이후, 신청인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현황 조회 및 신청인이 첨부한 서류 등을 통해 확인

◦ 현지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최종 확인

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어선·어구·시설 등(「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 등을 하고 일정 기간 휴업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청인이 지급신청서에 첨부한 서류를 통해 확인

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된 경우인지 여부

마. FTA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 신청인에 대한 관련 사업 지원 현황 확인

바. 기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등 확인

5. 지급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1) 현지(서면) 조사(폐업 신청 어선·어구·시설 등에 대한 사진 촬영)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조사 내용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한 진위 여부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이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의 규모, 소재지 등의 사항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조사 시 병행 추진

다. 결과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면 조사 및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별지 제3호의1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함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폐업지원금 신청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3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심사와 병행 실시 가능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심사위원회 활용

다.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 심사한다.

①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 자기 소유 어선·어구·시설 등이 아닌 자의 폐업지원금 신청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별지 제4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19. 9. 27.까지) → 해양수산부장관('19. 10. 11.까지)

6. 자금 요청 단계

해양수산부

◦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 확인 결과서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산출

* 어선감척사업 등의 폐업지원금 지급 범위, 잔존가치 평가액의 표준가격 등을 참조하여 예상되는 총액을 산출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재정 상황,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일시 폐업이 어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연차별 폐업지원 계획을 제출할 것을 지시

◦ 폐업지원금 일시 지급이 적절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자금 요청을 지시

시·도 및 시·군·구

(1)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가. 우선순위 선정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등의 조사·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생산성 및 경쟁력이 낮은 어업인등에게 우선적으로 폐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군·구별로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인에 대한 지원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우선순위 결정 시 평가 기준 : 지역 조건, 경영자 연령 등 우선순위 평가 항목과 배점 등은 본 지침의 <별표 2>를 참고하여 시·도지사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

** 시·군·구 심사위원회의 구성 원칙 및 방법 준용

나. 연차별 지원 계획 수립 및 보고 : 시·도지사는 확정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수립(별지 제5호 서식)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품목별로 계획을 수립

*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보고 시기 : 2019. 10. 31.까지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과 예산 범위를 고려하여 시·도의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조정 후 시달

라. 연차별 지원 계획 변경 : 사업량, 우선순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폐업한 어가 순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마. 사업 예정년도 예고 : 폐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이 사업 예정년도를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되,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를 받기 전에 어선·어구·시설 등을 제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을 통지

(2) 폐업지원금 산정

가.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평년수익액, 어선·어구·시설 등의 잔존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법인을 달리하는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감정평가기관의 추천을 요청하여 해당 기관을 감정평가 주관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나. 시·도지사는 잔존가치 평가내용이 부실할 경우, 당해 감정평가기관에 대하여 추후 3년간 감정평가 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

다. 감정평가 비용은 잠정 사업대상자가 선지급한 후 시·도지사가 폐업지원금 지급시 사후 정산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자금 요청 : 시·도지사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확정 및 폐업지원금 산정 이후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지원 예산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별지 제6호 서식)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해양수산부 : 자금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에서 요청한 당해 연도 폐업지원금 예산을 배정

시장·군수·구청장 : 지원금 지급

(1) 최종 현장 확인

◦ 시·군·구청장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통보 전 신청인의 폐업예정 어선·어구·시설 등을 방문하여 폐업예정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의 동일여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생산 여부를 최종 확인

* 폐업예정 시설 등이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관외생산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다만, 시·군·구청장은 신청인의 폐업예정 어선·어구·시설 등이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 있어 현지 방문확인이 곤란할 경우, 폐업예정 생산자와 폐업지원금 신청인 동일 여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생산여부 확인을 위해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받아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예정 어선·어구·시설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선박검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선박검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라 함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한 폐업예정 어선·어구·시설이 존재하고, 폐업대상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 시·군·구청장은 연차별 지원 계획, 사업 우선순위 및 당해 연도 배정 예산에 따라 당해 연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별지 제7호 서식)를 통보

(3) 폐업 통보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결정서를 받은 신청인은 해당 어선·어구·시설 등을 사업집행주체(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폐업예정인 어선·어구·시설 등은 선박검사기관의 선박검사관이 신청대상 어선·어구·시설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증명서, 감정평가기관의 폐업예정 어선·어구 등 잔존가치 평가 확인서, 국적말소 증서 및 지정된 폐선업체 등과 체결한 계약 관련서류 등을 제출받아 폐업을 통보해야 한다.

* 폐업지원금 산정 이후 사업을 포기하는 때에는 결정 통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를 부담하여야 함

(4) 폐업 확인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로부터 어선·어구·시설 등을 인도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인도받은 어선·어구·시설 등의 처리를 사진 촬영).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폐업예정인 어선·어구·시설 등은 상기 (1) 최종 현장 확인 및 (3) 폐업통보에서 규정한 폐선계약 관련서류, 신청대상 어선·어구·시설의 일치여부 확인 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서 폐업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5) 폐업 어선·어구의 처리

◦ 행정기관에 인도된 어선·어구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폐업 어선·어구별 폐선계약 등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경우는 국가에 세입조치 하고, 폐업 어선·어구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선체확인 비용, 어선 해체 처리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업 어선·어구 최종계약 확정일 이전까지 소요되는 경비, 항만사용료 등 모든 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폐업지원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 사실 확인 후 폐업지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폐업지원”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7)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9호 서식)

* 보고 시기 : 폐업지원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8. 이행 점검 단계

(1) 사후 관리

가. 사후관리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후관리 내용 : 폐업지원금을 지급 받은 자가 지원금 수령 이후 포획·채취·양식 등을 하는 품목, 해당 생산지 활용 방법 등

다. 사후관리 기간 :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5년간

라. 사후관리 방법 :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 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사후관리

◦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업 현장(전·중·후) 사진을 폐업지원 관리카드에 부착하여 관리하고,

◦ 폐업한 어가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현지 확인 후 확인결과를 폐업지원 관리카드에 기재하여 5년간 기록·관리

* 폐업 시설 등이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관외생산지에 해당할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지 조사를 의뢰

◦ 폐업지원금 수령인이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여 포획·채취·양식하는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 관리카드를 이관하고, 관리카드를 이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기록·관리

(2) 지원금의 환수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 지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함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과오 지급된 경우

③ 폐업을 한 어업인등이 폐업지원금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폐업 지급대상품목을 다시 포획·채취·양식하는 경우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름

다. 시·도지사는 부당 수령자 현황 및 부당 수령금 환수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함

9. 성과 측정 및 사업 평가

◦ 지급대상품목의 지급 신청 대비 지원율을 평가

- 평가 기관 : 어업인등 지원센터

성과 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폐업 지원율(%)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자 / 신청자 × 100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 폐업지원금의 지급 단가, 자격 요건,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수혜 어가들이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 시기 : 지원금 지급 직후

- 조사 대상 : 폐업지원금 수혜 어업인등

- 조사 방법 : 전화 및 대면 설문조사

- 조사 기관 : 어업인등 지원센터

- 폐업지원제 추진절차 -

업무절차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조사·분석	'19. 1 ~ 3월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폐업지원금 요건 조사·분석(어업인등 지원센터)
⇓		
② 지급대상품목 선정	'19. 4~5월	·지급대상품목 선정(어업인등 지원위원회, 해수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 고시(해양수산부)
⇓		
③ 사업신청	'19. 5~7월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어업인등) <별지1의1>, <별지1의2>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별지2>
⇓		
④ 신청내용 서면 조사 및 심사	'19. 7~9월	·폐업 신청내용, 자격요건 해당 여부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별지3의1> ·확인 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어업인등) <별지3의2>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시·군·구→시·도→해수부) <별지4>
⇓		
⑤ 연차별계획 수립	'19. 9월	·재정여건 및 산업 기반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계획 수립 필요성 검토(해수부)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수립(시·도) <별지5>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조정 및 확정(해수부)
⇓		
⑥ 자금요청 및 배정	'19. 10월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에 따른 2019년도 자금 배정 요청(시·도) <별지6> ·자금 배정(해수부→시·도→시·군·구)
⇓		
⑦ 지원금 지급	'19. 10~12월	·폐업 예정 어선·어구·시설 등 최종 확인(시·군·구) ·지급대상자결정서 통보(시·군·구→어업인등) <별지7> ·폐업 및 폐업 사실 통보(어업인등→시·군·구) <별지8> ·폐업확인 및 폐업지원금 지급(시·군·구)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시·군·구→시·도→해수부) <별지9>, <별지10>, <별지11>, <별지12>

[별표 1]

폐업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쟁력 제고 사업 목록

구 분	사업명	소 관	사후관리기간
한·미 FTA 보완대책에 따른 경쟁력 강화 사업 등			
수산분야	원양어선설비현대화 - 기관 등 주요선박시설 : 10년 - 기타 기구 및 장비 : 5년	원양산업	5년～10년
	활어운반선건조(활어수출용컨테이너제작)	수출가공진흥	5년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양식시설현대화)('12년 신규) - 건축물 10년, 장비 5년	양식산업	5년～10년

[별표 2]

폐업지원 우선순위 선정 평가 항목(예시)

◦기본 원칙 : 경쟁력 및 생산성이 낮은 어가를 우선적으로 폐원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본 평가표(예시)를 참고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결정

◦평가 항목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음

평가 항목	항목별 구분	비 고
업종 조건	① 원양 ② 근해 ③ 연안(어선) ④ 연안(맨손 등) ⑤ 해면양식 ⑥ 내수면어로 ⑦ 내수면양식	영세어업 우선
지역 조건	① 육지에서 20㎞ 이상 ② 육지에서 10~20㎞ ③ 육지에서 5~10㎞ ④ 육지에서 0~5㎞ ⑤ 육지부	조건 불리지역 우선
폐업 규모	① 어선 2톤 미만 ② 2~5톤 ③ 5~10톤 ④ 10~20톤 ⑤ 20~50톤 ⑥ 50톤 이상	소규모 우선
	① 어장 0.1ha 미만 ② 0.1~0.5ha ③ 0.5~1ha ④ 1~2ha ⑤ 2~5ha ⑥ 10ha 이상	
품목의 생산 비중	① 80% 이상 ② 60~80% ③ 40~60% ④ 20~40%	해당 어업(업종)의 생산 비중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조직화	① 일반어가 ② 어촌계 개별출하 ③ 어촌계 공동출하	조직수준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연령	① 40대 이하 ② 50~59세 ③ 60~69세 ④ 70대 이상	연령이 높을수록 우선지원
소득 수준 (연소득)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1,999만원 ③ 2,000~2,999만원 ④ 3,000~3,999만원 ⑤ 4,000~4,999만원 ⑥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별지 제1호의1 서식]

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대상 품목					
	대상 품목의 연간 생산량(kg)			전체 연간 생산량(kg)		
	업종			면허등 번호		
	어선·어구·시설물	①	②	③	④	⑤
	종류					
	규모(톤등)					
	제작연월일					
	생산지역			생산기간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어업허가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2. 선박등기부 등본 사본(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국적증서·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연간 생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어촌계 구성원 동의서 등(신청인의 어업면허 등이 어촌계 소유이거나 지분으로 분할된 경우만 제출한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어업면허증 2. 선박국적증서, 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고, 국세청에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구 비 서 류

※ 철거·폐기하려는 어선·어구·시설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어업허가·면허증, 어업신고필증, 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 등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의 고시일 직전 1년간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정상적으로 생산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해당 기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묘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기간의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해당 기간의 지급대상품목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등

2.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어선·시설 등의 소유자를 적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2. 대상 품목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폐업하려는 품목을 적습니다.
3. 대상 품목의 연간 생산량란은 폐업품목의 연간 생산량을 적습니다.
4. 전체 연간 생산량 란은 폐업품목을 포함한 신청인의 전체 수산물 생산량을 적습니다.
5. 업종란은 어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6. 면허 등의 번호란은 어업의 면허·허가·인가 등의 번호를 적습니다.
7. 어선·어구·시설물란은 어선명 및 어선 톤수, 어구의 종류 및 규모,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 제작연원일을 각각 적습니다.
8. 생산지역란은 주 조업구역(양식업의 경우에는 양식장의 위치 등)을 적습니다.
9. 생산기간란은 폐업품목의 실제 생산기간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광역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폐업지원금 담당부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폐업지원금 사후관리 이행사항 확인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품목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생산기간

2. 사후관리 이행사항

○ 폐업지원금 수령인은 향후 5년 동안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어선·시설 등 사업장에서 해당 품목을 직접 또는 위탁받아 포획·채취·양식할 수 없음.

※ 상기 조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조치와 형사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 폐업지원금 수령 후 사후관리 이행사항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의3 서식] [사업신청을 포기하는 신청인에 한함]

폐업지원 사업신청 포기서

1.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품목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생산기간

본인이 상기 내용으로 신청한 건에 대해 사업 신청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서명	전산입력 확인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별지 제3호의1 서식]

폐업지원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폐업 신청 내용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폐업대상품목	대상품목 외	비고

2. 확인 결과

확인 기간	관내 생산지		확인 기관	관내 생산지	
	관외 생산지			관외 생산지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어업 등록지 및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019년 폐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2019년 폐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 결과서를 받으신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 서식]

폐업지원금 확인 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근거	

2019년 폐업지원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 서식]

폐업지원금 현지 확인 및 심사 결과서

(시·도 또는 시·군·구명)

1. 총 계

(단위 : 명, 톤, ha, 천원)

지급대상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지급 신청 총액
	①	②	③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수를 지급대상품목별로 적습니다.
②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전체 어선톤수 또는 면적을 지급대상품목별로 적습니다.
③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2. 시·군·구별

(1) A 시·군·구

(단위 : 명, 톤, ha, 천원)

지급대상품목	업종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지급 신청 총액
	(*)			

* 허가·면허·신고에 따른 업종을 기재합니다.

(2) B 시·군·구

(단위 : 명, 톤, ha, 천원)

지급대상품목	업종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지급 신청 총액
	(*)			

3. 지급대상자 명단

(1) 지원대상품목 ①

(단위 : 톤, ha)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또는 면적)
			(*)	(**)	

* 어업인, 어업법인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허가·면허·신고에 따른 업종 및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2) 지원대상품목 ②

(단위 : 톤, ha)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또는 면적)

(3) 지원대상품목 ③

(단위 : 톤, ha)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또는 면적)

[별지 제5호 서식]

연차별 폐업지원계획

(시·도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지급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지급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지급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				
		지급액(백만원)				

[별지 제6호 서식]

폐업지원금 자금 요청서

(○○ 시·도)

(단위 : 명, 톤, ha, 천원)

구 분		지급인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자금 소요액
합 계		①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급대상품목별로 적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
4. 폐업지원금 결정내용

폐 업 종 류	품 목	신청 톤수(톤) 또는 면적(ha)	지급대상 톤수(톤) 또는 면적(ha)	변 경 사 유

5. 준수사항 :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철거·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으로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8호 서식]

폐업 확인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폐업 품목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생산기간

2. 조사 결과

조사 결과	폐업 품목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생산기간
신청내용 변동내역 및 사유				

위 신청 내용이 신청인의 신청 내용과 일치함과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

폐업지원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

(단위 : 명, 톤, ha, 천원)

구 분		지급인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자금 배정액	지급액
합 계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별지 제10호 서식]

폐업지원 관리카드

1.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2. 폐업지원금 지급 내용

	폐업 품목	어업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지원금 지급일	지급 금액
지원 내용					

3. 점검 결과

구 분	점검일	점검자				점검 결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폐업신청 현장점검						
지원금 지급전						
폐업 직후						
폐업 1년차						
폐업 2년차						
폐업 3년차						
폐업 4년차						
폐업 5년차						

※ 붙임으로 점검 현장 사진 자료 첨부

※ 관리카드는 지역 실정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별지 제11호 서식]

폐업지원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 시·도)(지급대상품목 : ○○)

부당수령자 현황				회수 현황			회수 사유
성명	지급기준*	지급액 (천원)	지급일	회수기준	회수액	회수일	

* 지급 기준은 톤수 또는 면적(ha)을 의미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2호 서식]

폐업지원사업 추진 실적 보고

(○○ 시·도)(○○○○년 ○/4분기)

1. 그간 사업 추진 결과

구 분			○○년 (○/4)	○○년 (○/4)	○○년 (○/4)	합 계
지급대상 품목명	총 계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등)				
		지급액(백만원)				
	시·군·구 명	지급인원(명)				
		사업량(톤, ha등)				
		지급액(백만원)				

2. ○○○○년 ○/4분기 사업 추진 결과

구 분		지급 인원			사업 물량			사업비		
		계획	실적	실적률	계획	실적	실적률	계획	실적	실적률
지급 대상 품목명	총 계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3. 향후 사업 추진 계획(금년도)

* 4/4분기의 경우 다음 년도 추진 계획 작성

4. 사업 추진 상 문제점(부진내역) 및 대책

53 피해보전직불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과 장 이시원 사무관 송준석 주무관 유종민	044-200-5420 044-200-5427 044-200-542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5	'16	'17	'18		
가격지지율 (%)	100	104.5	101.9	109.3		'19.12	기준가격 대비 사업년도 실적을 백분율화 *(당해연도 평균가격+피해보전직불금)/기준가격

* 기준가격 : 해당연도 직전 5년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 × 9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2,700	2,700	2,700	2,700
- 국 비	2,700	2,700	2,700	2,700
- 지방비	-	-	-	
- 융 자	-	-	-	
- 자부담	-	-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 가능 품목(시행령 제4조)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수산물

(1) 협정의 범위 : '18. 12. 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터키 FTA, 한·호주 FTA, 한·캐나다 FTA,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한·콜롬비아 FTA

(2) 수산물의 범위(법 제2조제10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의 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의 수산가공품

2. 지원대상품목(시행령 제4조)

지원 가능 품목 중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한 품목

(1) 지원대상품목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하 "어업인등 지원센터"라 함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①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시행령 제4조제1항)

*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범위(법 제2조제6호, 시행령 제4조제1항)

▪ 어업인등 :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

* 모니터링 품목의 범위 : <별표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모니터링 품목> 참고

다. 조사·분석 내용

①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는지 여부(법 제7조제1항제1호)

* 기준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②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했는지(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여부(법 제7조제1항제2호)

* 기준총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했는지(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여부(법 제7조제1항제2호)

* 기준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수입피해발동계수 : 시장점유율(국내생산량에 수입량을 더하고 수출량을 뺀 값으로 협정상대국 수입량을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다음 값을 적용

시장점유율		수입피해발동계수
$\frac{\text{협정상대국수입량}}{\text{국내생산량}+\text{총수입량}-\text{총수출량}}$	10% 미만	1.15
	10~30% 미만	1.10
	30% 이상	1.05

※ 하나의 품목이 2개 이상의 협정 상대국에서 수입량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근 발효된 FTA를 기준으로 협정 상대국 수입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例) A 품목이 칠레와 미국의 수입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

④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정 요소인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 및 절차와 관련하여 관계학계·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밀 검증 실시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어업인등 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조사·분석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2) 지원대상 품목별 수입기여도(안) 공고 및 어업인 이의신청 접수·검토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 수입기여도를 최종 결정하기 전, 행정예고를 통해 어업인등 지원센터 등에서 조사·분석·검증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과 해당 품목별 수입기여도(안)을 공고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

◦ 이의제기 신청 기간 : 행정예고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이의신청 방법 : 행정예고문에서 정한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 검토 : 해양수산부 및 어업인등 지원센터에서 이의신청 내용 재검증

(3)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함)

나. 심의·의결 내용 : 어업인등 지원센터 조사·분석(이의신청 재검증 포함)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품목별 수입기여도

(4) 지원대상품목의 선정 및 수입기여도 확정

가. 선정 기관 : 해양수산부장관

나. 대상 품목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수입기여도 포함)

다. 선정 방법 : 해양수산부 고시

3. 지급대상자(법 제6조)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어업인등으로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어업인등에 해당하는 자

가. 어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

나. 어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구 분	신청 자격
한·칠레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04. 4.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싱가포르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06. 3. 2.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EFTA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06. 9.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아세안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07. 6.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인도 CEP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0. 1.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EU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1. 7.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페루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1. 8.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미국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2. 3. 15.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터키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3. 5.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호주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4. 12. 12.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캐나다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5. 1. 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중국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베트남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뉴질랜드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콜롬비아 FTA 지원대상품목인 경우	2016. 7. 15.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생산한 자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받은 어선·사업장 등에서 계속 해당 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어업인도 신청 가능
- 다만, 신청 대상자가 직계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자는 신청 불가

* 지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지급신청이 가능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해당 품목의 생산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음을 증빙(수협의 전산출력물 등)하는 서류 첨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신청 전에 어업 경영을 그만둔 경우에도 신청 가능

(3)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일부 위탁의 범위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채취·양식에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수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함

(4) 2019년도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5) 2018년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에 의한 어업정지·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5.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2) 재원 : 수산발전기금

(3) 지원 기준

산출기준 × 지급단가 × 조정계수(수입기여도)

가. 산출기준

①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 :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소유한(면허·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선의 톤수**

② 양식어업 :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시설의 면적***

* 평균생산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어업(업종)별 어선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

1.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른 해당 품목의 생산량을 해양수산부가 집계하는 등록어선통계조사의 어선톤수 또는 천해양식어업권통계의 양식면적으로 나누어 산출
   * 단, 정치망어업 또는 각막 등 면허·허가 면적으로 산출 가능한 경우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
2. 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값

** 어선의 톤수는 부속선을 포함한 총톤수 기준이고, 구톤수는 신톤수로 환산함

*** 동일 양식장에서 2개 이상의 품목을 생산(양식)하기 위하여 양식장을 구획(또는 양식시설 구분 등)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에 이용된 면적으로 산출

③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어업 : 어업인이 판매 영수증을 통해 증빙하는 경우의 해당 생산량

* 판매 영수증: 사실 관계를 다른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수협 위판 영수증, 도매시장 판매내역서, 택배영수증, 유통·가공업체와의 납품장부, 세금계산서 등)

④ ① 또는 ②의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이 "0"인 경우, 어업인이 ③의 방법으로 본인의 평균생산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생산량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을 증빙하면 이를 인정 가능

나. 지급단가 : (기준가격* - 지원대상품목의 '18년 평균가격**) × 95%

* 기준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평균가격 조사 기준 :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다. 조정계수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값

* 법 제8조제3항

(4) 지원 한도액

※ 지원대상품목별 지원 한도액을 의미한다.

例) 2개 이상의 지원대상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어업인등은 각각의 품목별로 지원 한도액을 적용받게 됨

가. 어업인 : 개인당 3,500만원까지

나. 어업법인 : 법인당 5,000만원까지

(5) 지급 시기 : 2019년 10월부터 12월 말까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해양수산부장관은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시책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보도자료·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과 관련된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홍보

- 시·도 및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또는 어촌계·어업인 대표 및 지역 수협·생산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

(1) 신청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입은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

(2) 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과에 우편·팩스로 제출

(3) 신청 기간 : 2019. 1. 1. ~ 2019. 2. 28.

시·도 및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도지사에게 접수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보고(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신청 기간 마감 이후 5일 이내) → 시·도(시·군·구 결과 보고 완료 후 5일 이내)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해당 품목에 대응하는 수입 품목의 HS code, 해당 품목의 국내 평균가격 조사 장소를 특정 후 어업인등 지원센터에 조사·분석을 지시

어업인등 지원센터 : 조사·분석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주요 모니터링 품목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

가. 국내 유통량(생산+수입) 중, 생산량과 총수입량이 각각 5% 이상이면서 개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1% 이상인 품목

* 생산량, 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기준은 2013~2017년 평균임
*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에 한함

나. 그간, 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2) 조사·분석 내용

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인지

나.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품목인지

다.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한 품목인지

라. 협정 이행에 따라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한 품목인지

마.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내용

(3) 조사·분석 결과를 2019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2.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 이의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해 행정예고 방식으로 이의신청

절차 진행

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 이의 신청

(1) 신청 방법 : 행정예고문에서 정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에 우편· 팩스로 제출

(2) 신청 기간 : 행정예고 공고일로부터 20일간

해양수산부·어업인등 지원센터 : 이의신청 건 재검증

◦ 행정예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재검증 실시

3.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조정계수(수입기여도) 심의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아래 사항을 요청

-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하여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의결
- 지원대상품목의 가격 하락에 수입 증가가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품목별 조정계수(수입기여도) 심의·의결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의결하고, 품목별 조정계수를 결정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검증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의결

4. 사업 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지원대상품목별 조정계수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수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또는 어촌계·어업인 대표 및 지역 수협·생산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어업인등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1) 지급 신청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지급 신청

◦ 지급 신청 기간 : 고시일로부터 2019. 7. 31.까지

(2) 신청 방법

◦ 어업인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지원대상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지원대상품목이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지급을 신청한 지원대상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이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규모가 가장 큰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어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 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대상품목에 대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다만, 법률·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한 '어획실적 자료'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한편 어업인의 제출 서류로는 지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생산 사실 확인서) 관내생산확인서(별지 제5호의1 서식) 또는 관외생산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

* 관내생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 내의 생산(지급 신청을 받은 시·군·구를 기준으로 다른 시·도 중 연접한 시·군·구 내의 생산을 포함)

* 관외생산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와 다른 시·도의 생산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 관내생산 외 2개 이상의 시·도에 관외생산이 있는 신청인은 각각의 시·도별로 관외생산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例) 전라남도·경상남도에 지원대상품목의 생산지를 보유하고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한 신청인이 경상남도 통영시에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전라남도의 관외생산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통영시장에게 제출

◦ 관외생산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관외생산지 소재지 어촌계장과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

나. (2018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2019년도 지원대상품목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 (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2018년도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묘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2019년도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2019년도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 (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③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의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별지 제5호의3 서식)

5.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군·구(지자체)

(1) 지급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

가. 지급신청서 접수 기간 : 고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나. 지급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지급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다. 지급신청서 접수 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2) 지원대상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가. 해당 생산지의 생산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생산사실확인서 확인

나. 판매 기록 : 2018년 판매 기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확인

다.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던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

6. 지급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1) 현지(서면) 조사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조사 내용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등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였는지 여부

②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등이 제출한 신청서의 지원대상품목 생산기간, 생산 지역 등의 내용이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어업권(면허·허가·신고)의 지분권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 지분권자의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사실을 다른 지분권자가 알고 있는지 여부, 직불금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한 지분권자가 있는지 여부 등

* 일부 지분권자가 자격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전체 지분권에 대한 지급액(한도: 어업인 3,500만원까지)을 기준으로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함을 통보

③ 어업경영기간(허가·면허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여 직불금 지급

다. 조사 방법

* 수협, 도매시장 등의 공문서로 신청 어업인의 지원대상품목 생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지 조사(관내·관외)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외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현지 조사를 의뢰하지 아니함

◦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하여야 하며, 현지 조사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

◦ 다만, 관외생산의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현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전송

◦ 현지 조사를 의뢰 받은 시·군·구는 현지 조사 후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FAX 등으로 현지 조사를 의뢰한 시·군·구에 전송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생산과 관외생산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별지 제6호의2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함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나. 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

*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등이 대신할 수 있음

다.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① 해당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② 해당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수산사무소 등 어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③ 감정평가사, 회계사, 학계전문가 및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지원대상품목 생산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②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③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④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임기 : 2년

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 심사한다.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 관외생산지에 대한 신청 내용과 현지 조사 결과

③ 동일 허가 또는 면허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생산자 확인

④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및 심사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보고 기한 : 2019. 9월 27일까지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확인 및 심사 결과서를 종합하여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보고 기한 : 2019. 10월 11일까지

7. 자금 요청 단계

해양수산부

◦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산출된 지원대상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최종 검토

*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대상품목별 조정계수(수입기여도)가 조정(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 및 시·군·구

(1) 자금 요청 : 2019. 10. 18.까지

(2) 요청 내용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품목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하고 개인별·법인별 한도액을 고려한 최종 지급액을 확정 후 그 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을 요청(별지 제8호 서식)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 : 2019. 10. 18.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 후, 지체 없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제9호 서식)를 통보

8.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해양수산부 : 자금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서를 검토 후 시·도에 배정 통보

시장·군수·구청장 : 직불금 지급

(1) 지급 시기 : 2019. 12월까지

(2) 지급 요건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였으며 2019년도 지원대상품목의 생산·판매 실적이 있는 어업인등 중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한 자

(3) 금액 산정 : 법 제8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 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산출 기준)에 지급단가,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

(4) 지급 상한 : 지원대상품목별로 어업인은 3,500만원, 어업법인은 5,000만원

(5) 직불금 지급 : 시·도는 해양수산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송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송금된 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어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피해직불”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6) 보고 : 시·도지사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0호 서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수령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별지 제11호 서식)

◦ 보고 기한(정산보고) : 2020. 3. 31.까지

9. 이행 점검 단계

(1) 부당 지급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환수 :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과오 지급된 경우

*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름
* 시·도지사는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2) 사업 추진 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해양수산부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1회 이상 현장 점검 실시

-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추진절차 -

업무절차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조사·분석	'19. 1 ~ 3월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시행계획 시달(해양수산부) ·사업설명 및 홍보(시·도 및 시·군·구)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별지1>, <별지2> ·조사·분석(어업인등 지원센터)
⇓		
②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조정계수 심의	'19. 4~5월	·지원대상품목·수입기여도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지원대상품목 선정 및 조정계수 심의(어업인등 지원위원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해양수산부)
⇓		
③ 사업신청	'19. 5~7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제출(어업인등) <별지3>, <별지5의1>, <별지5의2>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시·군·구) <별지4>
⇓		
④ 신청내용 조사·확인 및 심사	'19. 7~9월	·어업인등 여부 및 면적, 생산 사실 등을 현지 및 서면을 통해 조사·확인(시·군·구) <별지6의1>, <별지6의2> ·확인결과 통보 및 이의 신청(어업인등) <별지6의3> ·심사위원회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군·구)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해수부) <별지7>
⇓		
⑤ 자금요청 및 배정	'19. 10월	·조정계수를 반영하여 지급 신청액 산출(시·군·구) ·자금배정 요청(시·도 → 해수부) <별지8>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시·군·구) <별지9> ·자금 배정(해수부 → 시·도 → 시·군·구)
⇓		
⑥ 직불금 지급	'19.10 ~ 12월	·지급대상자 통장 계좌 입금(시·군·구) ·지급결과 보고(시·군·구 → 시·도 → 해수부) <별지10>, <별지11>, <별지12>

[별지 제1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의 생산현황	※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어업인 [ ]	어업법인 [ ]	생산자단체 [ ]
	생산 품목	생산 기간	2018년 생산규모(어선톤수 또는 ha)
	면허등 번호		

신청 품목	

신청 근거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 및 수입 국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접수 결과

(시·도 또는 시·군·구명)

신청 품목	신청인	신청 내용
	성 명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기

[별지 제3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품목	소재지(시·군, 읍·면, 리·동)	생산기간	생산규모(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면허등 번호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하며, 해당 사무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이용(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구 비 서 류

※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생산 사실 확인서) 관내생산확인서 및 관외생산확인서

2. 2018년 판매 기록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2019년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2019년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묘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2018년도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2019년도의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2018년도의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도매시장 등의 판매대금 입금 내역,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종묘 입식 이후 출하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출하가 입증되어야 함

③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계약 생산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④ 수산물이력제 증빙서류 및 그 밖에 해당 연도의 지원대상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품목을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법률·규정에 따라 제출된 '어획실적 자료' 또는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어업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지원대상품목의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적되,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 생산 소재지, 생산기간, 생산규모를 적습니다.
   - 생산기간란에는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월·일)을 적습니다.
   - 생산규모란에는 실제 생산에 이용한 어선의 톤수(어선어업) 또는 시설면적(양식어업, 정치망어업)을 적습니다.

3. 면허 등의 번호란은 해당 어업의 면허·허가 또는 신고 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시·군·구(피해보전직접지불금 담당부서)

[별지 제4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서명	전산입력 확인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별지 제5호의1 서식]

관내생산 확인서(어업)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지역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신청 지역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지역 거주자				
신청 지역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 서식]

관외생산 확인서(어업)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지역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해당 지역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				

※ 해당 지역 어촌계장과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어촌계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수협조합장, 원양협회장의 확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

해당 지역 거주자				
해당 지역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의 경우에는 신청 지역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신청 지역 이·통장과 신청 지역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 서식]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생산년도 (ㅇㅇ년ㅇㅇ월)	비고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생산지 소재지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원양산업협회장				
* 어촌계장, 수산업협동조합장 등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지역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 결과>

생산품목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생산년도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1 서식]

관내(외)생산 현지 조사 확인서(어업)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 확인 결과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어업 등록지 및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지원대상품목 어선톤수 또는 어장면적(ha)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2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어업)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업종별)	어업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톤) 또는 시설면적(ha)	어선·어장 이용규모(톤, ha)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비고

2. 확인 결과

확인 기간			확인 기관		
	관내 생산			관내 생산	
	관외 생산			관외 생산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어업 등록지 및 등록 사항(면허·허가·신고)	어선톤수 또는 면적(ha)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6호의3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 결과서를 받으신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3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확인 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근거	

2019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확인 및 심사 결과서

(시·도 또는 시·군·구명)

1. 총 계

(단위 : 명, 톤, ha, 천원)

지원대상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지급 신청 총액
	①	②	③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원대상품목별로 적습니다.

②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전체 어선톤수 또는 면적을 지원대상품목별로 적습니다.

③ 지원대상품목별 지급 대상 어선톤수 또는 면적에 어선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과 지급 단가 및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지급 신청 총액=지급 대상 어선톤수 또는 면적×어선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지급 단가×조정계수)

2. 시·군·구별

(1) A 시·군·구

(단위 : 명, 톤, ha, 천원)

지원대상품목	업종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지급 신청 총액
	(*)			

* 허가·면허·신고에 따른 업종을 기재합니다.

(2) B 시·군·구

(단위 : 명, 톤, ha, 천원)

지원대상품목	업종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지급 신청 총액

3. 지급대상자 명단

(1) 지원대상품목 ①

(단위 : 톤, ha)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또는 면적)
			(*)	(**)	

* 어업인, 어업법인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허가·면허·신고에 따른 업종 및 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2) 지원대상품목 ②

(단위 : 톤, ha)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또는 면적)

(3) 지원대상품목 ③

(단위 : 톤, ha)

성 명	생년월일	어업 등록지	유 형	업종	생산 규모 (톤수 또는 면적)

[별지 제8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서

(◯◯ 시·도)

(단위 : 명, 톤, ha, 천원)

구 분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자금 소요액
합 계		①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원대상품목별로 적습니다.

[별지 제9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
4.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액 : 원(금 원)
5. 지급내용

품 목	톤수(톤) 또는 면적(ha)	어선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지급단가 (원)	조정계수	지급액 (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
8. 입금예정일자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10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

(단위 : 명, 톤, ha, 천원)

구 분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톤수 또는 면적)	자금 배정액	지급액
합 계		①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별지 제11호 서식]

(작성일자 : . .)

<table>
<tr><td colspan="8">피해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 관리대장(ㅇ ㅇ읍·면·동)</td><td>관리 번호</td><td></td></tr>
<tr><td colspan="3" rowspan="2">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수령자</td><td>성 명</td><td colspan="3"></td><td>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3"></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7">신청
내역</td><td colspan="2">신청일</td><td>신청
품목</td><td colspan="3">어업 등록지 및 등록 사항
(면허·허가·신고)</td><td colspan="2">영어(營漁) 기간</td><td>생산규모
(톤수(톤) 또는
면적(ha))</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 colspan="3"></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7">지급
내역</td><td>지급품목</td><td>지급일자</td><td>톤수(톤) 또는
면적(ha)</td><td>어선톤·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td><td>지급
단가(원)</td><td>조정
계수</td><td>지급액
(원)</td><td colspan="2">입금계좌</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ㅇ ㅇ수협(은행)
ㅇㅇㅇ -ㅇ ㅇ-</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7">과거
지급
내역</td><td>지급품목</td><td>지급일자</td><td>톤수(톤) 또는
면적(ha)</td><td>어선톤·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td><td>지급
단가(원)</td><td>조정
계수</td><td>지급액
(원)</td><td colspan="2">입금계좌</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ㅇ ㅇ수협(은행)
ㅇㅇㅇ -ㅇ ㅇ-</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able>

[별지 제12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 시·도)(지원대상품목 : ○○)

부당수령자 현황				회수 현황			회수 사유
성명	지급기준*	지급액 (천원)	지급일	회수기준	회수액	회수일	

* 지급 기준은 톤수 또는 면적(ha)을 의미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5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과 장 김학기 사무관 한정수	044-200-5650 044-200-5659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2.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어촌·어항법」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농어촌정비법」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농어촌도로 정비법」

3. 성과목표 및 지표

○ 지자체(시·군)의 사업계획서를 취합한 후 별도 산출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118,860**	**121,428**	**121,428**	**121,428**
- 국 비	83,202	85,000	85,000	85,000
- 지방비	35,658	36,428	36,428	36,428

* 마을자체 투자금은 별도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일반농산어촌 31개 시장·군수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 지역(31개 시·군 124개 읍·면)

구분	전담 시·군 (10개 시·군 93개 읍·면)	전담 읍·면 (21개 시·군 31개 읍·면)
강원	-	강릉시(주문진읍), 삼척시(원덕읍)
충남	태안군	당진시(석문면), 보령시(오천면, 주교면), 서천군(서면)
전북	-	부안군(변산면, 진서면, 위도면), 고창군(심원면)
전남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고흥군, 여수시	영광군(낙월면), 해남군(송지면), 강진군(마량면, 신전면), 장흥군(안양면, 회진면), 보성군(회천면)
경북	울릉군	포항시(구룡포읍, 호미곶면), 경주시(감포읍), 영덕군(강구면, 축산면), 울진군(죽변면, 후포면)
경남	남해군, 통영시, 거제시	하동군(금성면), 사천시(서포면), 창원시(구산면, 진동면)
제주	-	제주시(구좌읍, 한림읍), 서귀포시(성산읍)

*「도서개발촉진법」제4조1항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에 포함된 도서는 제외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 지원자격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 지역(31개 시·군 124개 읍·면)

○ 지원요건 :「V.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 참조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지원대상

○ 「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 참조

②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에 따름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마을자체 투자금 별도)

○ 수익자(주민) 자체 투자 기준

- 소득기반·체험관광 사업 : 해당토지의 100%, 시설비의 20% 이상 마을자체 투자
- 사유시설 정비 : 시설비의 20% 이상 마을자체 투자

○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19년도	⇨	‘20년도 ~	
사업유형		사업유형	주요내용
○ 권역단위 거점개발		○ 권역단위 거점개발	
어촌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5년, 100억원 이내
어촌테마마을		어촌테마마을	5년, 100억원 이내
		漁울림마을(Ⅰ→Ⅱ형)	5년, 50억원 이내
		Ⅰ형(S/W 중심)	1~2년, 10억원 이내
		Ⅱ형(H/W 중심)	3~4년, 40억원 이내
○ 마을단위 특화개발		○ 마을단위 특화개발	
어촌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5년, 20억원 이내 (소득사업 10억원 이상인 경우 30억원 이내)
신규마을 기반조성 (조합 설립 후 지원)		신규마을 기반조성	5년, 20억원 이내 (시행계획 승인 후 지원)
		어촌특화 꾸러미	5년, 30억원 이내
○ 시·군 역량강화		○ 시·군 역량강화	단년도, 2.5억원 이내
○ 생활기반정비		○ 생활기반정비	시·군 자율편성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어촌분야)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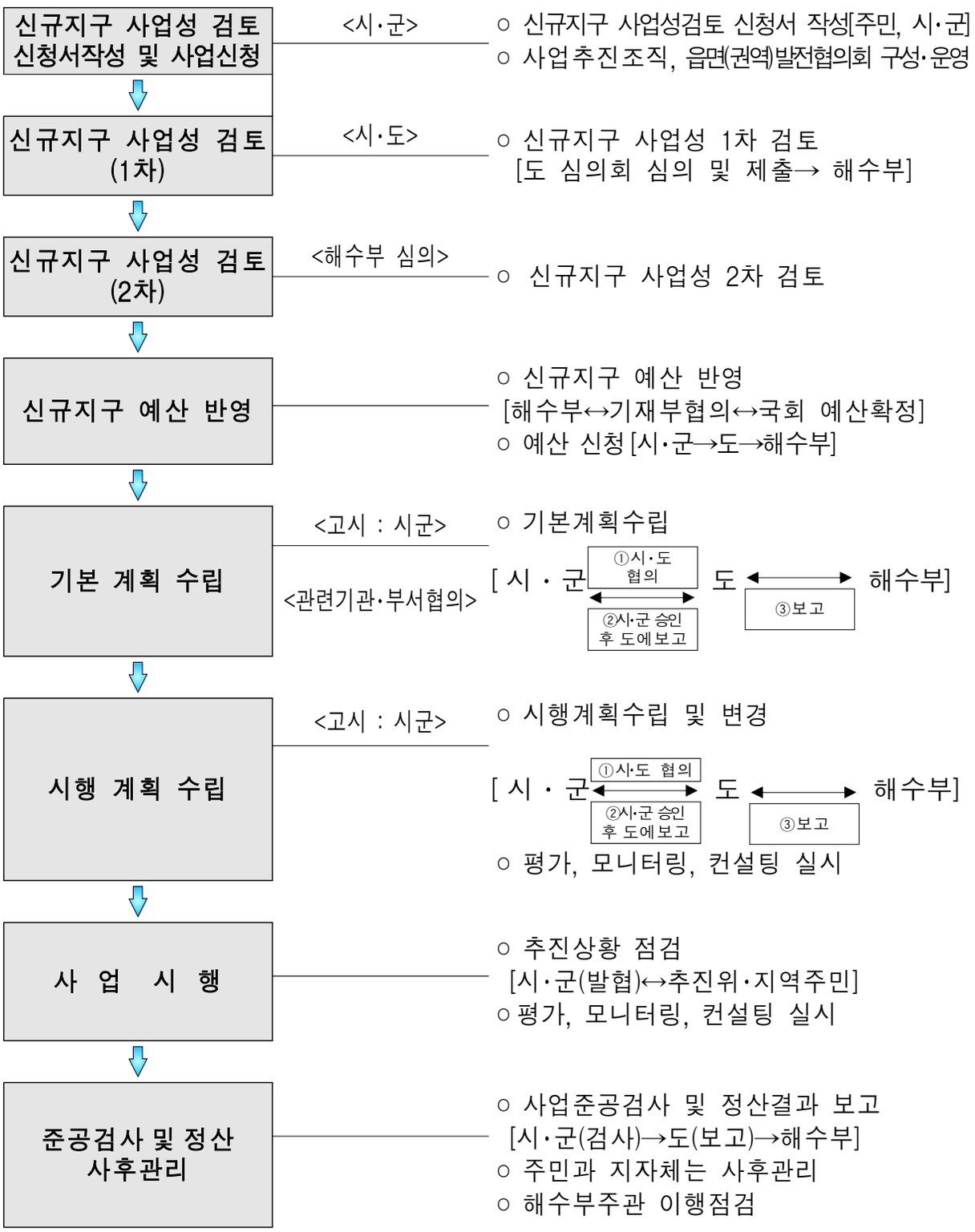

※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기본계획 생략(시행계획 승인 후 道 보고)

※ 이 절차 외에 타법에서 정한 추가적인 절차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법률을 따름

※ 권역단위 거점개발 지구는 해수부 협의 후 사업추진(기본계획, 시행계획)

1. 사업신청단계

마을대표·주민협의회·특화어촌위원회 등

○ 시·군에서 정하는 별도의 사업신청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

시·군

○ 시·군은 신청받은 사업 등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에 대하여 시·도에 사업 신청

* 신규사업 신청서는 해양수산부 제공 별도양식 참조(가이드라인)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주민상향식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은 지역별 「발전협의회」를, 주민은「특화어촌위원회」또는「추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

* 상세한 사항은 「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참조

2. 사업선정단계

시·도

○ 신규지구 사업성 시·도 검토 후 결과를 해수부에 제출

해양수산부

○ 신규지구 사업성 해양수산부 검토 및 시·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선정

3. 사업계획 수립단계

○ **(수립)** 시·군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어촌종합개발계획,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및 어촌특화발전계획 등에 따라 본 사업의 기본계획과 이를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기본계획 생략(시행계획 승인후 道 보고)

< 기본·시행계획 수립 >

◇ **수립 주체** : 시장·군수 * 승인 : 시장·군수 / 협의 : 시·도지사, 해수부

◇ **내용** : 개발여건, 기본구상, 개발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등

※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 가능(어촌어항법 제9조,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12조, 농어촌정비법 제56조 참조)

◇ **작성 원칙**

① 기본 계획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적 분석을 거쳐 지역특성에 맞게 작성하되 성과목표와 성과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② 기본(시행)계획 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음

- 기본계획서 승인을 위해 반드시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
- 예비계획서(추진계획서) 대비 총사업비 국비 기준 50%이상 변경 시 해양수산부와 사전 협의 후 진행

* 변경비율산정은 절대값으로 하고 절대값으로 계산한 비율의 1/2 적용

③ 권역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시 본 사업과 관련된 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 단, 필요한 경우 별도의 경관계획 수립

④ 사업비 투자내역은 기능별 사업으로 구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 계획 수립

⑤ 원활한 용지매수 및 보상 추진을 위해 토지 사용승락서 등을 승인 관련 자료에 첨부

⑥ 기본계획 수립 시 대가기준은 사업여건, 업무량, 지자체별 예산형편 등을 고려해 산정할 수 있음

⑦ 시행계획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

* 포함되는 내용은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6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0조를 준용 가능

⑧ 사업의 우선순위와 인허가 절차 등을 감안, 공종별로 분리하여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승인) 가능

○ **(승인·보고)** 시·군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승인한 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해수부에 보고한 후 사업추진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변경)은 승인 후 어촌·어항통합관리시스템(http://naraport.mof.go.kr)에 반드시 업로드 필요

○ **(고시)**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완료된 경우에는 주요 내용을 고시

* 고시내용 :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변경의 고시) 준용
* 고시방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을 준용

○ **(계획변경)**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

- 기본(시행)계획 변경사항은 절차이행 및 승인 후 해수부 보고

* 단, 사업시행 중 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기본계획 변경은 의무사항이 아님
* 계획변경 신청서는 [붙임1]의 표준양식을 따름

< 기본·시행계획 변경 >

◇ **변경 주체** : 시장·군수 * 승인 : 시장·군수 / 협의 : 시·도지사, 해수부

◇ **변경 원칙 및 절차**

① 기본(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시, 지역주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군「발전협의회」등의 자문을 거침

* 주요사항 : 시·도 및 해수부 협의사항, 기타 지자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기본(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 비율에 따라 해당기관과 협의 후 진행

1. 기능별* 사업비 국비 기준 30% 미만 변경시 : 시장·군수
2. 기능별 사업비 국비 기준 30%이상 50%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
3. 기능별 사업비 국비 기준 50%이상 변경시 : 해양수산부장관

*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 변경비율산정은 절대값을 적용
* 기능별 총사업비(국비 기준)의 증·감액이 2억원 이내일 경우 협의 필요 없음

③ 해양수산부와 협의 절차

- 시·군은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검토 후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적정할 경우에는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
- 해양수산부는 시·도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변경의 적정여부를 판단

○ **(사업시행)** 시장·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시행

< 유의 사항 >

◇ **시행 주체** : 시장·군수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

◇ **사업 시행 시 유의사항**

①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
* 지역역량강화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② 용지매수 및 보상은 관련 법령에 의거 감정평가에 의해 진행

③ 사업의 특성상 H/W사업과 S/W사업을 분리하여 발주

④ 소득기반·체험관광사업은 마을자체 투자금(해당토지 100%, 시설비 20%)이 확보된 후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한 소득법인을 구성하여 시행 가능
* 1가구가 30%이상 부담 금지하며 세대단위 및 가족단위는 1가구로 인정
- 다만, 해당토지는 소득법인 명의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10년)이상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기가 사전에 설정된 경우 가능

⑤ 소득법인은 시설물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한 권역법인 및 시장·군수와 기금납입 협약을 체결(기금납입 협약체결 이후에만 지역소득증대사업 시행 가능)
- 기금납부는 해당사업 준공 후 매년 납부하되 납부비율을 지원받은 총보조금의 2~5% 범위내 협의 결정
* 기금은 다시 재분배할 수 없으며, 사업의 유지관리비, 사업의 확장, 시설대수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⑥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및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으로 체험관광사업을 하는 경우 주민부담(해당토지)이 확보된 후 권역법인 또는 마을법인에서 관리
* 주민부담인 해당토지는 법인명의 토지만 가능(소득기반 및 체험관광사업 공통)

⑦ 민간보조로 시행되는 소득사업의 경우 입찰분쟁을 방지하고, 자금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사업입찰 및 자금집행 등을 대행

⑧ 사업(마을자체 투자금 및 S/W사업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산출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별표 5」를 준용
* 세부설계비 산출대상액에서 S/W사업비는 제외할 것

⑨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제2조에 따라 사업비 산출

○ **(사업준공)** 사업 준공 시 아래 사항에 유의

* 사업준공 결과보고는 [붙임2]의 표준양식을 따름

< 유의 사항 >

◇ **준공 검사** : 시장·군수 * 도지사에게 준공 검사 결과 보고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

◇ **준공 관련 유의 사항**

①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② 시·도지사는 준공결과를 해수부로 통보(건축물의 준공 전 사용허가 포함)

③ 시장·군수는 사업 준공 이후 사업 완료보고서를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와 해수부에 보고하고 어촌어항통합관리시스템(http://naraport.mof.go.kr)에 반드시 업로드 필요

* 기본계획 발전지표의 준공시 달성여부와 성과분석 자료를 포함하여 보고 및 업로드 필요

※ 시설물 완공 후 등기와 관련 사항은 「V.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 참조

○ **(인계인수)** 사업 준공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인계인수

< 유의 사항 >

①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된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

※ 지역소득증대 기능사업으로 준공된 시설물 등은 「V.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 참조

② 공사 완료된 시설물은 주민 편의도모를 위해 공종별(연차별, 단계별) 부분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계인수 가능

③ 인계인수시 준비사항으로는 1) 시설물 인수인계서, 2) 사업비 준공도서(지역역량강화사업 포함), 3)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4) 용지매수 및 보상 관련 서류, 5) 등기이전서류, 6)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관련서류, 7) 시설물 등록에 관한 서류

○ **(유지관리)**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운영

< 유의 사항 >

◇ **관리 주체** : 시장·군수, 추진(운영)위원회

◇ **유의 사항**

① 시장·군수는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시점검,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당초 설치된 목적으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함

②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유지관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지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가능

- 「유지관리협의회」는 지자체 공무원, 운영위원회, 시설관리책임자, 이용자 등으로 구성·운영하고, 유지관리계획과 유지 관련 사항을 심의
-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민 스스로 부담하되, 필요할 경우 시군비로 지원 가능(국비, 지방비가 매칭된 사업비로 지원 불가)

* 준공된 시설물을 운영위원회에서 위·수탁 관리시 수익허가를 득하여야 함

* 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수하여 진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자는 시설물을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③ 마을 상·하수도, 전기, 가스, 정보·통신 등 지하시설물은 지하시설물 도면을 작성하여 지역 내 타 사업계획 및 시공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④ 시장·군수는 소득 및 체험시설의 경영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부실운영이 발견될 시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함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해양수산부는 각 시·도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자금 배정

○ 시·도는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하고, 매월 실집행율은 e나라도움에 입력

5. 이행점검단계

○ 시·도(시·군·구)의 사업추진상황 등에 대한 집행점검 실시(연1회 이상)(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사업별 집행실적, 세부내역사업별 추진상황, 현장 애로사항 등

○ 해양수산부는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그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 등 측면지원 실시

- 모니터링 결과, 세부사업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 권고

6.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해양수산부

○ 이월명세서 제출(→기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3조제2항)

○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기재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 국가균형발전계획 연차보고서 작성 및 제출(→국회)(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1조)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의 실적보고서 접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시·도, 시·군

○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세출예산을 이월할 때(해당 연도 12월31일 기준)에는 이월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3조)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및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

- 중요재산의 현황은「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하여야 함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은 지자체 세입으로 조치할 수 없으며, 보조금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여야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 기준

- 이때,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 완료 하도록 함(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
- 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동일부처(해수부)·동일계정으로 편성된 사업에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집행잔액의 활용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가능, 신규사업 추진은 불가

○ 시·도는 사업지구의 공사 추진실적 및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집행상황을 수시(분기별 1회이상) 확인 점검하고, 부진사업지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는 매월 실집행실적을 e나라도움에 등록

○ 시·도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익년도 3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리규정 등에 따라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하여 선량하게 유지관리토록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서는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50조(중요재산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평가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수립·시달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

《환류》

○ 성과평가, 집행실태 파악(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20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지자체에 별도 통보

Ⅴ. 유형별 세부지침 및 집행기준 등

1. 유형별 세부지침

가 권역단위 거점개발

□ 목 적

○ 어촌지역 중심지(법정어항 배후지 등)와 주변지역의 통합·거점 개발을 통해 지역단위 생활권·경제권 확대와 상생발전 추진

□ 지원 기준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사업유형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마을자체투자금 별도)	시행기간(년)	부지 구입비 /해당시설 사업비
권역단위 거점개발	100	5년이내	30% 이내

* 소득기반·체험관광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0%, 부지비 100% 마을자체 투자금

○ 어촌지역 중심지의 기능 효율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규모의 경제 실현, 관광자원화를 통한 소득증대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우대

○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지속가능성(유지·관리 등), 발전가능성(사업확대 등)이 확보되는 사업 우선 추진

□ 기능별 사업내용

< 사 업 설 명 >

①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원대상 :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 ▪ 문화·복지, 주거개선, 지역경제활성화, 도로·교통, 안전·재해대비, 상하수도, 생산기반사업(어장진입로, 소규모 계류·하역시설) 등

② 지역소득증대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육성기반 조성
  - ▪ 특산물 소규모 공동 시설,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판매장 등

③ 지역경관개선

- 지원대상 : 어촌지역의 경관적 가치를 살리기 위한 보존·관리 등
  - ▪ 중심지 가로경관 개선, 전통시장 간판정비, 어업폐기물 집하장, 소규모 근린공원 등
- 유의사항 : 사유시설의 정비는 10가구 이상 집단시설에 한하여 시행

④ 지역역량강화

- 지원대상 : 어촌주민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문화·복지 활성화 프로그램
  - ▪ 계획수립 등 부대경비, 사회적 기업 및 시장 활성화·중간지원조직·자녀교육·주민평생학습·이동도서관·방문의료서비스 등 프로그램 지원, 선진지 견학
- 유의사항 : 해외 선진지 견학시 총 비용 중 30%이상 본인부담

나 마을단위 특화개발

□ 목 적

○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단위 기초생활기반 확충, 특화산업화, 경관·환경 개선 사업 등 추진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

□ 지원 기준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사업유형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마을자체투자금 별도)	시행기간(년)	부지 구입비 /해당시설 사업비
마을단위 특화개발	20억원 이하 (소득사업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30억원까지 지원가능)	5년이내	30% 이내

* 소득기반·체험관광사업의 경우 해당시설 사업비 20%, 부지비 100% 마을자체 투자금

※ 신규마을사업 세부시행지침은 「5. 신규(전원)마을 사업」 활용

□ 기능별 사업내용

< 사 업 설 명 >

① 기초생활기반확충

- 지원대상 :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 ▪ 예시 : 도로·교통, 상하수도, 재해대비, 복지시설, 문화시설, 운동휴양 등
- 유의사항
  -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마을공동시설이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와 제37조에서 규정한 농어촌 문화복지시설과 도·어교류센터에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숙식시설의 총 면적이 50%를 초과하지 못함
  - * 2018년 이전 선정사업까지 적용되며, 2019년 이후 선정사업부터 해당사항 없음

② 지역소득증대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육성기반 조성
  - ▪ 예시 : 소득기반시설(특산물 가공시설, 선별·집하장, 공동저온저장고 등), 체험관광시설(폐교활용, 체험시설, 야영장 등) 등
- 유의사항
  - ▪ 사업규모는 시장성·기술성·수익성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
  - ▪ 생산보조적 지원 제외(생산용 묘목 구입, 생산 지원을 위한 장비 구입 등)

③ 지역경관개선

- 지원대상 : 어촌지역의 경관적 가치를 살리기 위한 보존·관리 등
  - ▪ 예시 : 지역경제 활성화기반, 마을경관, 생태·환경 등
- 유의사항 : 사유시설의 정비는 10가구 이상 집단시설에 한하여 시행

④ 지역역량강화

- 지원대상 : 지역주민의 역량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부대비용 등
  - ▪ 예시 : 주민 교육·훈련, 마을홍보, 부대비용 지출 등
- 유의사항 : 해외 선진지 견학시 총 비용 중 30%이상 본인부담

다 지역 역량강화

□ 목 적

○ 기존 지역개발 사업 시행 시 시설사업 위주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맞춤형 지역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민 경쟁력 제고

* 단년도 사업으로 2.5억원 이하로(50백만원 단위) 신청가능

○ 단순한 주입식 집체교육은 지양하고, 직접적인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교육

□ 지원 부문

○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사업유형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비 고
지역 역량강화	1.5~2.5억원	1년	

□ 지원 대상 및 유의사항

유 형	지원대상	유의사항
지역 역량강화	▪ 시·군 공무원 및 사업 준비지구의 마을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s/w 사업 지원	▪ 시설물 설치비용, 관계자 해외출장 지원불가 ▪ 준공지구의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경상비)는 지원불가

□ 지원제외

○ 기초자치단체에서 주관·주도하는 축제·행사·홍보사업

○ 담당공무원 출장비

○ 공무원, 주민, 발전협의회, 자문위원회 등 일체의 해외연수 비용(교육비에 포함된 경우도 지원제외)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신규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비 등

라 생활기반 정비

소규모 계류(하역) 시설정비 및 어장진입로

< 소규모 계류(하역) 시설정비 >

○ 목　　적 : 어업활동의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어선의 계류 및 하역을 위한 시설의 효율적 정비

○ 사업내용 : 접안을 위한 계류시설, 하역시설(크레인 등) 등 시설정비

○ 지원대상 : 어업적 활용을 하는 어항시설

○ 지원부문 : 시설 개보수 등 정비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어장진입로 >

○ 목　　적 : 조위차로 인하여 서·남해안 지역의 간조시 어업활동을 위해 진입로 조성

○ 사업내용 : 어장진입로 개보수

○ 지원대상 : 마을어장 등의 활용을 위한 진입시설

○ 지원부문 : 진입로 신설 및 정비 등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빈집정비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빈집정비 >

○ 목　　적 : 어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등 공익상 유해한 주택 및 건축물의 정비를 통해 어촌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

○ 사업내용 : 어촌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 지원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

○ 지원부문 : 빈집 철거비

○ 추진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4조, 제65조

○ 지원한도 : 실비 수준에서 집행

- 빈집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5조 제2항내지 제4항에 의해 처리하되, 실비수준에서 집행
- 빈집의 소유주가 있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4조 및 제65조에 의해 빈집 150㎡기준으로 정비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20% 범위내에서 본인부담 실시
  * 150㎡를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으로 추진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 목　　적 : 기계화 영농 촉진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경지정리지구 내 주요 농로와 이에 연계되는 농산물의 가공·유통시설 간 농로를 확·포장
  * 농기계 교행 등을 위하여 포장폭을 지역여건에 맞게 확장하거나, 교행장소(대피소 등)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 지원부문 : 기계화경작로 설치에 따른 조사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 부대경비 등

○ 지원대상 : 경지정리지구내 경작로, 주산단지 또는 가공·유통시설간 농로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 지정된 도로는 반드시 제외

지표수 보강개발(소규모 용수개발)

○ 목 적 :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보강하여 안정적인 농촌용수 공급

○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 설치 및 보강 개발

○ 지원부문 : 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 지원대상

- 소규모 용수개발 : 수리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수리시설 설치 (수혜면적 50ha 미만)
- 지표수 보강개발 : 수리시설이 갖춰졌으나 농촌용수가 부족한 지역에 수리시설의 보강 및 추가 설치

○ 사업 성격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용수개발사업

○ 사업시행절차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행절차 준수

- 환경영향평가법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 준수

* 기본계획 수립 : 농식품부장관(수혜면적 50ha 이상), 시·도지사(50ha 미만)

생활환경정비

○ 목 적 : 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여 어업인의 복지향상에 기여

○ 사업내용 : 마을기반정비, 어촌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 지원부문 : 개발계획·세부설계·공감비 등 용역비, 용지매수 보상비 및 시설설치비 등 도시민 유치를 위한 5호 이상 19호미만의 기반시설 설치(대상지역, 지원내용 등은 신규마을 조성사업을 준용),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 지원대상

- 마을기반정비 : 마을 내·마을간 도로, 상·하수도 시설, 교량, 주차장

- 어촌 경관개선 : 세천 정비, 수변 공원화, 소공원, 담장 정비, (식생담 조성 등), 빈집 의 철거·정비, 체육공원 조성

- 문화복지시설 :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 환경보전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생활용수개발 등

※ 마을회관등 설치 시 펠릿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등 연계활용 권장

○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2. 사업비 집행기준

(1) 적용 대상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비(보조금, 마을자체 투자금)를 집행·수령하는 기관·단체

- 보조사업자 : 시장·군수

- 간접보조사업자 :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업체, 조합 등

(2) 사업 수행 및 사업비 집행시 적용 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보조금의 사용용도

○ 관련 법령에 의해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금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36조 별표2에 의한 지원제외 대상 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별표2에 의한 지방사무

○ 보조금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목적·규정·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아래 열거한 항목은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으로 간주함

<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 >

① 국가어항, 지방어항의 기본시설은 제외

*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 항·포구의 경우에도 전면 개발 방식은 불가하고 단, 물양장, 계류시설 등 소규모 시설의 개발·개선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② 자원조성(수산종자, 투석) 및 양식시설은 기존사업과의 중복으로 제외

③ 소형 유람여객선 지원불가

④ 건축물 건립 시 매립이나 공유수면 점사용이 필요한 사항 제외

⑤ 활용목적이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 다만, 같은 지구라 하더라도 사업 목적과 내용이 다르면 지원 가능

⑥ 수산물 양식, 자원조성, 생산 설비 등 생산 보조적 지원 및 유통센터 등

* 양식시설 : 가두리, 육상양식, 축제식, 연승식, 육성장
* 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자재 : 사료, 종자, 파이프 등
* 수산물 생산과 관련된 부지 조성비 : 측량, 분할, 등기, 토목공사 등
* 유통시설 : 수산물유통센터 ※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 가능

⑦ 사업과 상관없는 경비 지원 (* 업무추진비, 마을기금 조성비 등)

⑧ 마을자체투자금으로 해야 하는 부지 조성 및 구입비

* 소득 및 체험시설 부지구입비와 조성비(측량·분할·관련세금 등), 신규마을 조성에 소요되는 토지구입비, 주택건축비 및 기본계획비(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포함), 주용도가 체험객이나 방문객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는 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회관의 용지매입비
* 타 사업의 지자체(개인) 마을자체투자금 분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로 충당 금지

* 다만, 도로·주차장·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용 토지구입비는 지원가능(부지의 과잉 확보 방지를 위해 토지구입비는 해당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지 못함)

⑨ 사유화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선박, 농기계, 장비, 선박, 자동차, 노트북 등) 구입비, 공동사용이 어려운 창고 설치 등
* 다만, 해당지역의 수산물만 판매하기 위한 시설로서 임대나 위탁 없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직접 운영하는 판매시설 설치비는 허용

⑩ 사업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적 상업행위를 위한 지원

* 체험객과 방문객이 아닌 외부인을 위해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 전문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 설치 및 관리비
* 다만, 사업계획에 의한 체험·관광객의 숙식제공을 위한 복합시설(커뮤니티센터, 종합복지센터 등) 설치비는 허용

⑪ 기타 사업취지 및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사용

* 공무원의 국외 선진지 견학·출장(교육비에 포함된 경우도 포함) 등을 위한 경비 지원 등

(4) 별도계정으로 관리

ㅇ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해야 함

ㅇ 시·군은 투명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가능한 사업비 집행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5) 사업비의 집행원칙

ㅇ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실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ㅇ 예비비·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용도가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ㅇ 보조금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업비 집행 불가

ㅇ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인출하여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ㅇ 사업비의 수입 또는 지출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 사용을 원칙으로 함

ㅇ 사업비 통장·회계장부·영수증간에는 집행일자·금액 등이 상호 일치해야 함

ㅇ 사업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그 지출 증빙자료를 징구·첨부하여야 함

(6) 계약

ㅇ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함

-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명입찰, 수의계약도 가능

ㅇ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공능력, 실적, 기술보유상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계약·구매 등을 위한 계약 절차나 업무는 시·군 또는 위탁사업자가 시행

ㅇ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7) 마을자체 투자금의 집행

ㅇ 사업비의 일부를 마을자체 투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마을자체 투자금을 우선 집행

- 사업착수전 마을자체 투자금 전액이 (위탁)사업시행자 통장에 입금 또는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가 완료 된 후 마을자체 투자금을 포함한 사업비 우선집행

ㅇ 토지 확보가 의무인 사업은 토지가 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만 사업비 지원

- 임차나 지상권·지역권 설정 등을 통한 토지 확보는 토지 미확보로 간주
- 토지 등기는 시장·군수, 법인(단체) 명의여야 하며, 개인 명의는 지원 제외

ㅇ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10년)이상 소득법인 명의로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기가 사전에 설정된 경우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소득사업 시설물 설치 지원 가능

(8) 사업 점검

ㅇ 정기 점검

-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는 반기별 1회 이상, 시·군은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도 대장으로 관리

  * 시·군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해수부·도 합동 현장점검 가능

- 해양수산부는 부진 사업지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집행점검을 실시(연1회 이상)하고 결과를 어촌·어항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ㅇ 특별 점검

- 시·도 또는 시·군은 민원 발생, 보조금의 부정 집행 의심, 사업의 지연, 사업 목적의 위배 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

(9)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 시·군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 시행지침, 지원협약서,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위반을 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해서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협약 해지, 시설물 운영권 회수,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0) 사업비 정산

○ 사업비의 집행 시 증빙자료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카드사용 내역서이어야 함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 사업의 직접노무비를 사업자등록증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 서명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가 정한 금액 범위 내일 경우 증빙자료로 인정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음(지급한 사업비는 환수)

○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함(지급한 사업비는 환수)

○ 사업비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정리

- 보조금 집행 증빙자료는 지출결의서 다음에 A4 용지에 원본을 부착·편철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 시·군은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시에는 사업비에 대한 검정을 실시

(11) 시설물 등의 등기

○ 사업비를 지원한 토지·시설물은 소유권 등기 확인 후 정산

- 시장·군수가 사업비를 전부 투입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
- 시장·군수와 법인(단체)이 공동 투입한 경우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 등기

* 단, 건축물의 리모델링(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5조의2에 따라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를 시행하고,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최초 5년간 건축물의 타용도 사용금지

* 단순 리모델링(건물 외관정비 등)은 제외

○ 시장·군수로 등기한 시설물의 경우 10년 이후 해당 법인에 소유권 양도 가능하나 공유재산 관리 관련 법령에 근거해 처리

○ 공동 등기재산(토지포함)의 기부채납

- 소득기반·체험관광사업의 공동 등기재산(마을자체투자금 부분)은 시·군으로 기부채납 가능함

* 시·군은 기부채납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수

** 공동 등기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기부채납된 재산 가액만큼 사용료 감면

(12) 재산처분의 제한

○ 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

- 부동산과 종물, 기계, 장비,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히 정하는 재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관리

(13) 검사

○ 해양수산부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업장 등에서 장부·서류·재산 등을 검사할 수 있음.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자(시설물 운영자, 추진위원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해양수산부(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검사시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이나 시정명령에 대한 3회 불이행시 사업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4)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보조금의 환수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검사나 감사 결과 교부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 기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제33조

* 더 이상 사업수행이 불가하여 향후 집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발전협의회 심의, 시·도 및 해수부 검토를 거쳐 보조금 환수

(15) 벌칙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검사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법적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장(벌칙)

(16) 기타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규정 또는 행정지시에 따름

○ 기존 계속사업은 동 지침을 적용하도록 하되, 기본계획 수립 착수년도 시행지침 적용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계속지구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승인 및 계획변경 협의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 적용

○ 시·군은 지역역량강화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사업비의 3% 이내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 부대비용 내 '일반농산어촌사업지원비'를 편성하여 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 연구비, 자문비, 지자체 담당공무원 교육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3. 기능별 사업 내용 및 예시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기초생활기반 확충	**문화·복지**	다목적회관(공동생활홈, 공동급식, 농·어업인회관 등), 서비스전달시설*(이동식 세탁소·도서관), 공동화장실, 산책로, 마을문화시설(마을박물관, 마을도서관, 마을공부방 등), 다목적광장(예시 :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 · 레포츠시설, 쉼터 등), 마을방송, 향토자원정비 등
	주거개선	빈집정비, 신규마을기반조성, 지붕 및 담장정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5일장, 어시장) 정비(간판정비, 비가림시설 등) 등
	도로·교통	연결도로(해안도로 등), 마을안길, 버스승강장, 소형교량, 공동주차장, 보행환경개선, ICT 연계 교통시스템 등
	안전·재해대비	재난대피안내판, 간단응급처치장비, 안전펜스,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등
	상하수도	암반관정, 마을상수도, 마을하수도 등
	생산기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소규모 용수개발, 지표수 보강개발, 소규모 계류(선착장, 물양장, 부잔교 등)·하역(선양기 등) 시설, 어장진입로 등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소규모(집하장, 선별장, 가공장, 저장창고, 로컬푸드판매장 등) 공동 시설,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체험관광	농산어촌체험시설(폐교활용, 생태체험장, 야영장*, 낚시터 등), 전망대, 기존 시설을 활용한 ICT 융복합 시스템 구축 등
지역경관개선	**경관·생태**	마을경관 가꾸기(수목식재, 산울타리 조성 등), 생태공원(둠벙정비,* 갯벌생태공원 등), 마을 도랑 복원, 마을 샘 복원, 소규모 농·어업폐기물 집하장, 쓰레기분리수거시설, 소규모 친환경에너지시설, 공동화장실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리더양성, 전문가양성(체험지도사, 시설운영,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 및 장비 구입, 국내 선진지 견학 등
	홍보	홍보·마케팅(지역축제 활성화, 마을 브랜드개발, 홈페이지 구축, 정보화교육, 마을기록화, 마을신문 등)
	지역 활성화	유지관리활성화프로그램,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연계프로그램*, 전문조직육성, 공동체활성화 등
	사업지원	기본계획수립*, 세부설계수립, 감리비, 일반농산어촌사업 지원(총괄계획가, PM단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 서비스전달시설(이동식 세탁소 및 도서관)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권역단위 거점개발)에 한해 타 용도 전용 및 사유화가 불가한 특수 목적의 차량일 경우 제한적 지원(시 · 군 소유, 운영비 제외)
* 야영장은 기반시설만 지원 가능(글램핑시설, 텐트, 오토캐러밴 등은 지원불가)
* 둠벙정비 : 현재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
* 중심지와 배후마을 간 연계프로그램은 농촌중심지활성화(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만 해당
* 사업과 관련된 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별도의 경관계획수립비용 지원 불가

4. 사업추진 조직

발전협의회

○ 주　　관 : 시장·군수

○ 기　　간 : 신규사업 신청 이전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 구 성 원 : 시장·군수, 민간전문가, 사업 지역의 마을 대표, 어촌계,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농어촌공사, 상가번영회 대표, 지역사회단체 대표 등 지역 실정에 맞게 구성

○ 기　　능 : 신규사업 발굴지원, 지역특성, 개발목표 및 발전방향 설정 협의, 공간별 토지이용계획 등 부분별 자문, 사업투자 우선순위 결정, 재원부담방안 등 투자계획, 연계추진방안 협의 등

추진위원회

○ 대상사업 : 권역단위 거점개발, 마을단위 특화개발

○ 기　　간 : 신규사업 신청 이전부터 사업완료까지

* 사업완료 후 운영위원회로 계승 가능

○ 구 성 원 : 주민회의를 통해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등으로 구성·운영

○ 지원규모 : 운영경비는 월50만원 범위 내(**사업시행년도**~사업종료년도[5년한도], 연장기간 포함)

*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경우 100만원 범위 내 지원 가능

○ 기　　능 : 유형별 신규사업 신청 참여와 발전협의회에 참여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의 전반적인 과정 지원

사 무 장

○ 대상사업 : 권역단위 거점개발, 마을단위 특화개발

○ 지원규모 : 사무장 1명에 대해 월 160만원 범위 내(**사업시행년도**~사업종료년도[5년한도], 연장기간 포함)

* 사무장활동비를 월 160만원을 초과시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 112만원 한도내 지원

* 사무장활동비는 시행자(위탁시행자 포함)가 사무장에게 계좌입금

○ 선발 및 운영 :

▪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모를 통해 사무장을 선발하고, 직무수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계속채용여부를 결정(1년 단위로 계약)

▪ 사무장 운영방법 및 업무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추진위원회, 사무장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5. 신규(전원)마을조성 사업

(1) 사업 개요

1) 목 적

○ 어촌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어촌활력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

-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어촌지역 활성화
- 지역 주민간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인 유지·발전

2) 사업대상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지역 중 읍지역을 제외한 어촌 면지역. 단, 성장촉진지역은 읍지역도 포함

※ 제외지역은 「(3) 사업계획수립 1) 지원대상지역」 참조

3) 사업 추진방향

○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삶의 질 및 주거수준 향상

○ 다양한 주체에게 책임성과 창의성을 부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마을조성

○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품격 있는 어촌마을 조성

○ 지역 내 조성된 신규(전원)마을의 입주상황을 고려하여 과도한 마을조성 제한

* 사업지구선정 후 사업추진과정에 나타나는 미비사항을 사업지구 선정전에 앞당겨 해소하여 사업기간 단축, 사업촉진, 민원예방

4)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2조～제71조, 제101조～제103조, 제130조

- 이하 농어촌정비법을 '정비법' 이라 함

5) 적용범위

○ 이 지침은 농식품부·해수부에서 농어촌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 선정한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부(중앙+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집행,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운용

○ 지자체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부(중앙+지자체)의 보조금 지원없이 민간자본 또는 지방비로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지침의 준용 여부는 지자체에서 판단

6) 사업 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등을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마을정비조합 등(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공사는 제외)에서 단독주택 20호(세대) 이상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부지에 신규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와 함께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신청할 수 있음(농어촌정비법 제56조제1항제3호 참조)
- 마을정비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신청할 수 있음(주택법 제10조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과 지방공사를 제외한 마을정비조합 등은 단독으로는 사업시행자 자격이 없음

7) 사업유형

○ 사업시행주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유형을 구분하여 추진

- 법인설립 및 공동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은 당사자 간의 협약에 따름

<지자체형>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

<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

- 시장·군수·구청장과 마을정비조합(주택건설등록사업자는 제외)이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을 시행

<마을정비조합-법인형>

- 동호회 및 귀어·귀촌인 등으로 구성된 마을정비조합이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시행

8) 유형별 업무, 보조금 지원기준

○ **(지자체형)**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예정자(조성용지, 주택) 모집, 토지매입(진입도로 포함), 사업신청, 기반조성공사, 분양 등 업무담당

- 주택건축 인·허가, 건축, 입주는 조성용지를 분양 받은 자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추진

- 1개 지구(신규마을)에 5세대 이상으로 시행할 경우 보조금 지원

○ **(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 공동사업자가 협약체결, 입주예정자(조성용지, 주택) 모집, 토지매입(진입도로 포함), 사업신청, 기반조성공사, 분양 등 역할분담 및 업무담당

- 주택건축 인·허가, 건축, 입주는 조성용지를 분양 받은 자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추진

- 마을정비조합은 농어촌정비법 제57조, 시행령 제54조·제55조·제56조에 의한 마을정비조합설립 요건 및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1개 지구(신규마을)에 20세대 이상으로 시행할 경우 보조금 지원(19세대 이하는 보조금 미지원)

○ **(마을정비조합-법인형)** 법인이 협약채결, 입주예정자(조성용지, 주택) 모집, 토지매입(진입도로 포함), 사업신청, 기반조성공사, 분양 등 업무담당

- 주택건축 인·허가, 건축, 입주는 택지를 분양 받은 자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추진

- 마을정비조합은 농어촌정비법 제57조, 시행령 제54조·제55조·제56조에 의한 마을정비조합설립 요건 및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법 제9조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함

- 1개 지구(신규마을)에 20세대 이상으로 시행할 경우 보조금 지원(19세대 이하는 보조금 미지원)

9) 지원규모 및 지원금 사용용도

가. 보조금 및 융자지원 규모

○ 대지조성 보조금은 마을 규모(주택신축 기준)에 따라 세대당 지원(국고 70% 및 지방비 30%)

- (5～19호) : 30백만원/세대, (20～50호) : 40백만원/세대, (50호 초과시) 35백만원/세대. 단, **20**억원이내

* 부지매입비와 주택건축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 보조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 주택신축에 따른 융자금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

나. 보조금 사용용도

○ 마을기반시설 사업비 및 마을공동체 형성 사업비

- 진입도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전기·통신시설(단지 내 포함), 부지정리, 공동이용시설(공동주차장, 사면·소공원·녹지 포함), 인근 기존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회관 설치 및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 농어촌정비법 제70조의2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간선시설(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23조를 준용

다. 보조금 지원 시기

○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기반공사 “착수계” 제출이후 보조금 지원 가능

- 지자체형, 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은 지자체에서 추진상황, 조합원의 결원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직접 집행

- 마을정비조합-법인형은 지자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되 추진실적, 현장확인, 관련서류, 조합원의 결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 지급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지원시기를 검토한 후 예산을 신청하여 이·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2) 마을구성원 자격

○ 마을구성원은 입주예정자, 조합원 등으로 구성(사업유형에 관계없이 공통적용)

- 입주예정자, 마을정비조합설립 조합원 = 조성용지를 공급받은자 = 주택건축인허가자 = 주택건축주 = 입주가가 동일인이어야 함

* 조합원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5조의 자격을 갖춘자(마을정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

* 입주예정자 : 신규마을조성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공개모집한 조합원 또는 사업 참여에 희망하는 실수요자

*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 : 신규마을조성사업으로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 절차에 따라 계약체결 등으로 대지를 분양받은 자

* 주택건축주 :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축인허가를 받아 건축하는자

* 입주자 : 입주예정자가 조성용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축하여 입주한자

○ 사업시행계획승인일부터 주택건축을 완료하여 등기일까지 조합원 등을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될 시에는 교체인원수 만큼 보조금 반납과 본인부담분만 반환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에 해당될시에는 예외로 적용

- 마을정비조합을 포함한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조합원 결원시 보조금 반납과 본인부담 반환 등에 관한 협약서 제출

- 보조금 지급 및 집행으로 반납조치가 어려울 경우 시군에서 근저당 등 설정

- 기존 조합원 탈퇴로 가입한 신규조합원은 반환된 본인부담 금액 만큼만 부담하고 조합에 가입토록 마을정비조협 정관 등에 반영

○ 마을정비조합으로 구성된 조합원은 입주예정자 자격으로 분양절차를 거쳐 조성용지를 분양받아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입주예정자의 포기 또는 탈퇴한 세대수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주체가 분양절차를 거쳐 분양

- 조합원, 입주예정자 등간에 매매 등 거래나 타인과의 매매 등 거래는 허용하지 않음

(3) 사업계획수립

1) 지원대상지역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지역 31개 시·군 124개 읍·면 중 다음 읍 지역을 제외한 27개 시·군 116개 읍·면

도	제외지역
강원(1)	강릉시(주문진읍)
전남(1)	여수시(돌산읍)
경북(2)	포항시(구룡포읍), 경주시(감포읍)
경남(1)	통영시(산양읍)
제주(3)	제주시(구좌읍, 한림읍), 서귀포시(성산읍)

※ 균특법시행령 제2조의 2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자부, 국토부 공동지정고시)

2) 부지규모

○ ‘17년 선정지구의 조합원 1인의 최대 토지 보유는 정비구역내 전체 토지 면적의 1/5 이내로 제한 (한시적으로 적용)

○ ‘18년부터 선정지구 조합원 1인의 토지보유는 정비구역내 전체 토지 면적을 조합원(입주예정자)으로 균등분할(1/n)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대 토지 보유주와 최소 토지 보유주와의 차이는 20% 이내에서 증감을 허용 (예) 균등분할 100인 경우 최고 110, 최소 90까지 허용)

○ 조합원 중 지상권자도 토지를 보유하여야 함

3) 개인별 주택용지 규모 및 주택신축

○ 건폐율, 주택규모, 세제혜택 등을 위해 1세대당 대지면적은 660㎡미만이어야 하며, 조성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신축

4) 사업부지 확보

○ 단지최소면적 : 20세대 기준 20,000㎡ 내외(소규모마을 5세대 기준 5,000㎡ 내외)

○ 확 보 율 : 100% (단지 + 진입도로)

○ 진입도로 : 기존도로에서 사업부지 주 출입구까지

- 폭은 도로기준, 통행량을 감안 계획

○ 농림지역 : 50%이내.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8조에 의한 자투리 농지(2ha이내)의 경우 농림지역 비율 50%이내 규정 미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은 제외

다만, ‘15.12.31이전에 조합원이 농어촌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마을정비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마을정비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를 구입한 경우와 국공유지에 지자체형으로 계획한 경우에는 제외

○ 타법에 의한 개발제약 요인이 없거나 해소가 가능한 지역

○ 안전, 위생 등 마을위치로서 적합한 지역

○ 지번별 조합원명의 토지등기부 등본 및 지상권 설정입증 자료를 제시하여 사업부지 확보 증빙

5) 입주자 확보

○ 계획가구수의 100% 이상, 도시민 50% 이상

* 마을정비조합형은 최소 20명 이상의 세대주를 조합원으로 확보해야 함.

○ 판단기준 : (마을정비조합형)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

(지자체형) 지자체와 입주 협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

* 도시민 : 조합원 등록 신청일부터 사업신청일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함

6) 보조금 이외 비용부담

○ 신규마을조성사업비 중 보조금 이외는 사업시행자가 부담

○ 진입도로 신설이 필요한 경우 부지매입 및 도로개설이 가능하고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 진입도로 매입비, 공사비, 포장비, 유지관리비 등

○ 재해방지 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

○ 민원해결에 따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7) 마을위치선정시 고려사항

○ 산림훼손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지역

○ 수질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지역

○ 경사도 높아 과다한 절성토가 발생되지 않고, 배수체계 및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없는 지역

○ 사람이 살기에 지장이 없으며, 입주자 수요가 확실한 지역

○ 마을진입도로가 있는 지역, 수도·전기 등 기반시설이 용이한 지역

8) 주택 건축률

○ ‘19년부터 해당시군지역에 전원마을, 신규마을의 주택건축비율이 선정 전년도 11월말 기준 60% 미만일 경우, 신규지구 신청 제한

→ 지자체는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예방

* 건축률 : (준공세대수 + 벽체공사 1/3수준이상 시공한 건축세대수)/ 전체 건축예정 세대수

시·군	시·군·구	60% 미만 지구

9) 타 계획과의 관계

○ 청사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이 조성중이거나 계획된 개발예정지역에 연접하여 무질서한 개발 등으로 신도시 건설에 저해되는 지역은 신청 제외

10) 현장 확인 등 사업성 검토

○ 해양수산부에서 신규사업성 검토시, 현장 확인을 거쳐 마을위치의 적합성 여부와 입주예정자 확보 등을 검토한 후 선정

(4) 기반시설 착수시기

○ 사업시행자는 입주예정자 100%확보(분양 후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사업부지(국·공유지 포함) 100% 확보 및 도시민 50%이상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였을 경우 신규마을조성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시행계획을 승인받고, 기반시설 공사 착수

※ 입주예정자 확보 : 사업계획에 따른 분양예정지인 조성용지 필지수에 해당하는 수의 조합원을 확보한 경우에 입주예정자를 확보한 것으로 봄

※ 사업부지 : 사업계획에 따른 주택용지 및 공공용지(국·공유지 포함) 등을 100% 확보한 경우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봄

※ 도시민 확보 : 착수계 제출일 기준, 사업계획 총세대주의 50%이상의 소재지가 서울시 및 광역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확보한 것으로 봄 (해당 지자체 포함)

(5) 조성용지 분양시기 및 분양가격

1) 분양시기 및 대상

○ 사업시행자는 기반조성공사가 완료되면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조성용지에 대하여 분양공고 등 절차를 거쳐 분양

2) 분양가격

○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함

-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하에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분양가격 결정시 건설원가 산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감정가격 산정시 건설원가에서 보조금을 제외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포함하여 감정가격을 정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지시를 하여야 함.

○ 분양가격에 보조금 지원기준을 초과지원한 지방비 등을 포함할지여부에 대하여는 초과지원한 기관에서 판단하여 처리

○ 기타 분양공고 등 분양에 관한 사항은「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및 농어촌주택 등의 분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추진

3) 전매제한기간

○ 농어촌정비법 제70조에 따라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때(대지분양계약체결일)부터 공급받은 용도대로 농어촌주택 등을 건축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때까지로 함

-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5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6) 사업취소 및 해제, 제재 등

○ 시장·군수 및 도지사는 정비조합설립 승인, 정비구역 지정, 사업승인시 기반시설, 부지조성 등 단계별로 사업시행자(정비조합)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부대조건 등에 명시하여 사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취소('09.7.1 사업시행계획 승인지구부터 적용), 사업비 지원중단 및 사업비 반납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착공이 어려운 경우,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취소('16년 신규선정 지구부터 적용), 사업비 지원중단 및 사업비 반납조치 등을 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 승인후 분양 및 주택 건축 인·허가 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 고려 ○ 시장·군수는 기반공사 완료 후 1년 이내(기반시설 예산지원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경우 세대별 보조금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 승인시 조건부여와 함께 마을정비조합 및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 고지
보조금 환수	○ 시장·군수는 사업이 취소되어 보조목적이 상실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 지원된 국비 등의 환수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다만, 조성용지가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등 공공의 농업·농촌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국비 등의 환수를 제외할 수 있음 * 사업시행계획 승인시 조건부여와 함께 마을정비조합 및 입주예정자 등에게 사전 고지
전매 제한 적용 시점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0조에 따른 전매제한 행위를 위반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투기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09.12.10부터 적용) ○ 전매제한에 따른 조성용지를 공급 받은 시기 - 분양계약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7)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장·군수 등이 주관하는 공공기관 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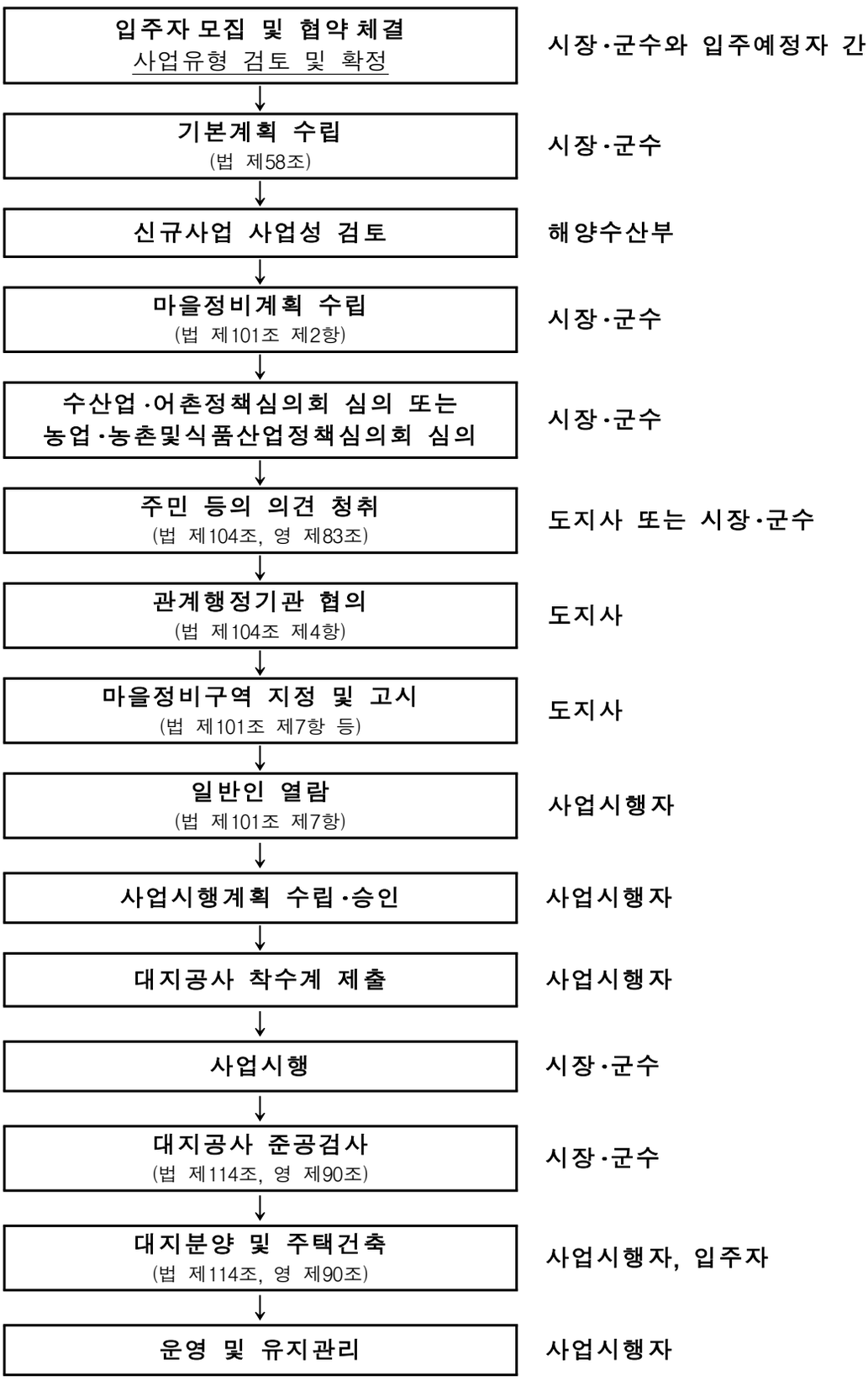

< 마을정비조합이 주관하는 지자체-마을정비조합형, 마을정비조합-법인형 >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신청
(법 제57조, 규칙 제40조)

마을조성 입주예정자 → 시장·군수
·추진위 구성요건 :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인가신청
사업유형검토 및 확정
(법 제57조, 영 제54조)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 시장·군수
·조합설립요건 :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3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수 20명 이상
·구비서류 :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장의 선출동의서, 조합원 전원 자필연명 규약, **사업계획서**, 사업대상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사용 승낙서

↓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법 제103조)

(첨부)	**마을정비계획서,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구비서류 :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마을정비계획서**
* 포함할 사항 : 법 제101조 제3항, 시행령 제78조, 시행규칙 제56조

↓

기본계획 수립
(법 제58조)

사업시행자 : 기본계획(안)을 시장·군수에게 제출
시장·군수 :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 의견 청취, 도 및 관계 기관과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

↓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해양수산부

↓

마을정비계획 수립
(법 제101조 제2항)

시장·군수

↓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법 제8조) **또는 시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법 제101조 제1항)

시장·군수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법 제104조, 영 제83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2이상의 일간신문,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 일반인(14일 이상 열람 및 의견제출) → 도지사, 시장·군수(열람종료 후 5일까지 의견 접수) → 도지사, 시장·군수(의견검토 및 60일 이내 결과회신)

↓

관계행정기관 협의
(법 제104조 제4항)

도지사

↓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법 제101조 제7항 등)

도지사

↓

일반인 열람 (법 제101조 제7항)

시장·군수

↓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
(법 제59조, 제60조, 영 제59조)

사업시행자(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 →시·군(승인, 고시, 일반인 열람, 20만㎡미만의 경우, 도 또는 해양수산부 보고)

↓

대지공사 착수계 제출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

사업시행자

↓

준공검사(법 제114조, 영 제90조)

시장·군수

↓

분양 및 주택건축

사업시행자, 입주자

↓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

(8) 사업추진 단계별 내용

1) 사업준비 단계

가. 마을정비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 사업 신청자 >

○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신청(정비법 시행규칙 제40조)

- 마을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 구성

○ 추진위원회 역할(정비법 시행령 제54조 4항)

< 시·군 (도) >

○ 시장·군수는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요건을 검토하여 승인(정비법 시행규칙 제40조)

나.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및 인가

< 사업 신청자 >

○ 마을정비조합의 설립·변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어촌정비법 제57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에 따른 인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정비법 시행령 제54조 1항)

- 마을정비조합은 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 규정된 마을정비조합원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 자격 등**

- 조합원은 마을정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진 세대주

  * 증빙서류 : 소유권 등기 및 지상권 설정 등기

- 마을정비조합설립은 사업대상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

- 마을정비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음. 다만, 조합설립인가시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하여야 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

- 사업시행계획승인 후 조합원 결원시 보조금 반납과 본인부담 반환 등에 관한 협약서 제출

< 시·군 (도) >

○ 시장·군수는 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신청내용을 검토 후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마을정비조합 추진위원회에 통보

- 마을정비조합 설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한 후 승인하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마을정비조합의 경우 부대조건 부여

▷ **보조금을 지원받는 마을정비조합의 설립 승인시 부대조건**

- 조합원 자격, 정관 등 신규마을조성에 따른 미비한 사항
- 입주예정자, 마을정비조합설립 조합원 = 조성용지를 공급받은자 = 주택건축인허가자 = 주택건축주 = 입주가가 동일인이어야 함
- 사업시행계획승인일부터 주택건축을 완료하여 등기일까지 조합원 등을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될 시에는 교체인원수 만큼 보조금 반납과 본인부담 반환 등 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에 해당될시에는 예외로 적용
  - 기존 조합원 탈퇴로 가입한 신규조합원은 반환된 본인부담 금액 만큼만 부담하고 조합에 가입토록 마을정비조협 정관 등에 반영
- 사업추진과정에서 입주예정자의 포기 또는 탈퇴한 세대수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주체가 분양절차를 거쳐 분양
  - 조합원, 입주예정자 등간에 매매 등 거래나 타인과의 매매 등 거래는 허용하지 않음

- 규약에 포함되어야 사항 : 정비법 시행령 제54조 2항에서 정하는 사항

※ 시장·군수는 규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합원간 동의 또는 결의사항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토하여 불합리한 결의 등으로 추후 조합원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시장·군수는 마을정비조합의 조합원충원시에는 정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야 함

- 특히, 조합원의 사망, 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 수만큼 시장·군수의 승인 하에 충원을 허용하되, 분양이후의 조합원 대체 충원 승인으로 전매제한 규정이 오용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하여 조치

2) 사업제안 및 신규 사업성 검토

가.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 사업 신청자 >

○ 사업신청자는 사업 후보지 선정요건을 갖추고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및 마을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안

○ 마을정비계획서 및 마을정비사업 제안서에 포함될 사항은 정비법에 따름

- 마을정비사업 제안서 포함될 사항(정비법 시행규칙 제56조)
- 마을정비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정비법 제101조 3항에서 정한 내용으로 함

< 시·군 (도) >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구에 한하여 신규지구의 사업성 검토대상지구로 도를 경유하여 해수부에 신청

* 시도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미비사항이 발견되면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사항이 충족될때까지 해수부에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마을정비조합설립요건(소유권 및 지상권 설정 증빙 ; 등기), 사업부지 확보기준, 입주자 확보 기준 등 선정요건 검토
- 기존 전원마을 및 신규마을의 주택 건축비율(60% 미만) 검토
- 마을정비계획서 및 마을정비제안서 타당성 검토
- 마을공동체 형성 노력도 및 사업 입지여건 검토
- 자연경관, 환경오염, 재해유발가능성 검토

나. 기본계획 수립

< 사업 신청자 >

○ 사업신청자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기본계획(안)은 정비법 제101조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시·군 (도) >

○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안)을 토대로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견 청취, 도 및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고시

다. 신규사업성 검토

< 시·군 (도) >

○ 시장·군수는 사업후보지 선정요건(마을정비조합설립 증빙서류 포함) 및 기본계획서 등 사업성 검토관련 자료를 도에 제출

○ 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사업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부수에 제출

○ 시장·군수, 도지사는 기존의 전원·신규마을사업에 대한 입주상황(주택건축률 60% 미만) 등을 검토하여 부분별한 사업추진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군내 전원(신규)마을의 주택건축비율이 선정 전년도 11월 말 기준 60% 미만일 경우 모든 사업유형에 대해 신규사업신청을 허용하지 않음

→ 신규사업신청시 해당시군에서 60%이상을 입증하여야 함

* 건축률 : (준공세대수 + 벽체공사 1/3수준이상 시공한 건축세대수)/ 전체 건축예정 세대수

< 해양수산부 >

○ 해양수산부는 전문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신규사업성 검토를 실시 후 사업대상지 선정

3) 계획수립

가. 마을정비계획 지정요청, 지정, 열람·고시

< 시·군 >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사업시행자) 등에게 마을정비계획 제안을 받아 마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도지사에 요청

- 마을정비계획에 포함될 내용(정비법 제101조 제3항)
- 마을정비계획서 제출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첨부

○ 시장·군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서류 이외에 사업시행자 명의로 토지 확보여부, 입주예정자 확보 여부, 위치의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후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열람해야 함

< 시도지사 >

○ 시도지사는 주민의견 청취(정비법 제104조 제1항) 및 관계기관 협의(정비법 제101조 제4항) 등을 거쳐 마을정비구역 지정(정비법 제101조)

* 시장·군수가 마을정비구역지정을 위해 정비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절차(주민의견 청취)를 거친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마을정비구역지정 후 고시(정비법 제101조 7항 및 영 제80조)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마을정비구역 관할 시장·군수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전달

나. 시행계획 수립·승인·고시

< 사업시행자 >

○ 사업시행자는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정비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군 (도) >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다만, 20ha 이상은 도지사가 승인

○ 시장·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예시를 참고한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할 수 있음

- 공사완료 기한 내 기반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 중단 및 환수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분양절차 이행
- 입주예정자, 대지분양을 받을 자, 주택건축 인·허가를 받을 자, 주택건축 시행자, 입주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교체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해당 세대수 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 지원 중단
- 대지조성공사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건축 인·허가를 미완료시 지원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
- 대지조성공사 완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축을 100% 완료하지 못한 경우 주택건축을 하지 못한 세대수 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보조금 환수
- 조합원 자격, 토지 등기 등 허위나 거짓이 있는 경우 지원 보조금 전액 환수
- 대지조성공사 기간 중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승인 취소
- 기타 필요한 사항

○ 시장·군수는 다음사항 등을 검토하여 부적합하는 등 문제가 있을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음

- 마을위치로서 부적합한 경우
- 조합원 명의로 토지 등기가 100% 안된 경우
- 입주예정자를 100%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교체 및 포기가 예상되는 경우
- 민원이 있는 경우
- 기본계획, 문화재지표조사, 조합원자격, 부지확보 등 신규마을조성사업과 관련된 서류가 허위나 거짓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실현이 어려운 경우
-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한 등 기타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정비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고시하고 열람하여야 함

4) 사업시행

가. 기반시설 및 주택건축

< 사업시행자 >

○ 지자체형 :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100% 분양하고 기반시설 등 부지정리공사 시행 및 완료

- 단, 30세대 미만의 경우는 개별 건축으로 시행하고, 30세대 이상의 경우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

○ 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 마을정비조합-법인형 : 마을정비조합은 조합원(입주예정자)에게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100% 분양하고 기반시설 등 부지정리공사 시행 및 완료

- 단, 30세대 미만의 경우는 개별 건축으로 시행하고, 30세대 이상의 경우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주택건설

< 시·군 (도) >

○ 시장·군수는 입주자 수요가 명확하게 있는지, 사업시행자 앞으로 토지(진입도로 포함)가 100%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지, 자연경관 훼손, 재해위험 등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보조사업 시행

- 부지를 분양 받은 후 장기간 주택을 건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 시장·군수는 부지정리공사를 완료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후 1년 이내 건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건축인허가 추진

○ 시장·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항에 의해 보조금 교부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부조건을 붙일 수 있음

- 보조금 교부조건을 부여한 경우, 보조금 범위내에서 근저당 등 담보권 설정이 가능(사전 고지)

- 보조금 지원을 전제로 근저당 설정 협의 필요 (지자체 ↔ 마을조합)

※ 근저당 설정을 위한 서류

- 지자체(근저당권자) : 주민등록등본, 도장, 근저당설정비용(사업비 충당)
- 마을조합(근저당설정자) : 토지소유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나. 기반시설 및 조성사업 착수

○ 지자체-마을정비조합 공동형 : 보조금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조합에서 부담하는 경우 초과분을 조합에서 시군에 납부후 공사착수

○ 마을정비조합-법인형 : 보조금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법인에서 부담하는 경우 초과분을 법인계좌에 확보한 후 공사착수

다. 확정측량 및 보존등기

○ 사업시행자는 부지정리 공사가 완료되면 확정측량, 환지 절차를 거쳐 분양을 받은 자에게 보존등기

- 사업시행전 토지대장 및 등기부는 폐쇄조치

- 확정측량, 환지에 따른 신규지번을 부여한 토지대장, 등기부 마련

○ 시군 등 공공기관에 위탁시행한 입주자위탁형인 경우 시장·군수명의로 된 소유권 보존등기를 분양받은자에게 이전 등기

○ 부지정리 공사 완료후 확정측량결과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사업구역면적변경은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마을정비구역은 농어촌정비법 제102조, 같은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처리

라. 대지조성공사 준공

< 사업시행자 >

○ 사업시행자는 대지조성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시행계획승인자인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를 신청

- 다만,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만 신청 할 수 있음

< 시·군 (도) >

○ 시장·군수는 대지조성공사의 준공검사 요청이 접수되면,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

○ 시장·군수는 준공이후 완료보고서를 3개월 이내에 시·도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고 어촌·어항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

5) 공공시설의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

< 사업시행자 >

○ 사업시행자(마을정비조합 등)는 대지조성공사 준공 후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장·군수에게 2개월 이내에 인계하여야 함

○ 시장·군수로부터 하자보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서는 시공사 등으로 하여금 조속히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시·군 (도) >

○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공공시설을 인수함

○ 시장·군수는 인수한 공공시설이 유지관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내용을 사업시행자(마을정비조합 등)에게 즉시 통보하여 하자보수가 완료되도록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힘써야 함

- 보조금을 투자하여 설치된 공공·공용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시장·군수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입주자(입주예정자)와 시·군이 협의(협약체결)하여 입주자(입주예정자)가 관리할 수 있음
- 입주자(입주예정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예정자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공공성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시·군과 협의한 후 시·군에 기부 채납하여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마을정비조합 등)는 공공하수도 시설물이 준공되면 2개월 이내에 하수도시설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하고 시설물을 인계함.
- 시장·군수가 공공하수도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준공일 2개월 이후부터 인수·인계 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
- 기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소규모 하수도사업 통합지침」의 규정을 준수

6) 자금배정단계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여건을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 소요액(국비와 지방비)을 도에 요청

○ 도는 보조사업 집행여건(기반시설공사 착수 여부)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해수부에 자금 요청

- 입주자 확보 및 주택건축 계약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해 검토

○ 해양수산부는 각 시·도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월별로 자금 배정

7)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 해양수산부에서는 시·군(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

○ 시·군(시·도)는 전자시스템(E호조)과 연계하여 예산집행을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전자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상황 수시 관리

○ 시·군은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어촌·어항통합관리시스템에 지구별 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업데이트 실시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승인시 부여한 조건을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대조건에 따라 조치

○ 해양수산부 부진 사업지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반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어촌·어항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제재조치 >

○ 시·군(도)는 사업시행자(마을정비조합)에게 제재조치를 한 경우 해수부에 보고

○ 보조금 부정수급자, 용도외 사용자 등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제재

8) 주택 인허가, 건축, 준공

○ 주택건축은 개별건축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조성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직접 주택인허가, 건축, 준공을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

[붙임1]

ㅇㅇ사업 [*기본·시행계획*] 승인[*변경*]계획서

□ **사업유형** :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 **위　　치** : 00도 00시·군 00리(법정리 0개, 행정리 0개)

□ **사업기간** : *20　. ~ 20　.(00년간)*

□ **사 업 비** : *00,000백만원(국비 000, 지방비 000, 마을자체 투자금 000)*

□ **추진경위**

○ 기본계획 시행 : '00. 00. 00(승인기관 :　　)

○ 기본계획 승인 : '00. 00. 00(승인기관 :　　)

□ **주요 변경내용**

○ *0000 으로 인한 증감 조정*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변경내역
		예비 (A)	*기본 (B)*	*시행 (C)*	증감 (C-B)	
총계		**0000**	*0000*	*0000*	*0000*	
기초 생활 기반	소계	**000**	*000*	*000*	*△0*	
	000 조성	***000***	*000*	*000*	*△0*	*◦0000000 감조정*
지역 소득 증대	소　계	***000***	*000*	*000*	*△0*	
	000 조성	***000***	*000*	*000*	*△0*	*◦00000000 감조정*
	000 조성	***000***	*000*	*000*	*△0*	*◦000000000 감조정*
지역 경관 개선	소　계	***000***	*000*	*000*	-	-
	000 조성	***000***	*000*	*000*	*0*	*◦00000 증조정*
	000 조성	***000***	*000*	*000*	*△0*	*◦00000 감조정*
지역 역량 강화	소　계	***000***	*000*	*000*	-	-
	000 조성	***000***	*000*	*000*	-	-
	000 조성	***000***	*000*	*000*	-	-

* 기본계획 수립시 예비계획대비 변경사항 작성

** 기본계획 변경시 당초 승인된 기본계획 대비 변경사항 작성

*** 시행계획 변경시 승인된 기본계획 대비 변경사항 작성

첨부 : 기본(시행)계획서 1부.(상세내용을 알 수 있는 보고서 첨부)

[붙임2]

○○사업 준공결과 보고

사 업 명	**마을 특화개발사업	진행단계	사업준공
사 업 유 형	권역단위거점개발, 마을단위특화개발, 시·군역량강화, 생활기반정비 중 기재		
위 치 / 면 적	**남도 **군 **면 00리, 00리 (**행정리 전체기재**) (법정리 *개, 행정리 *개) / ***ha		
사업시행자	**군수(시설물 관리부서 : ****과)		
인 구 / 가 구	인구 ***명 (어가인구 **명) / 가구 ***호(어가 **호)		
사 업 비	000백만원(국비 000백만원, 지방비 000백만원) / 마을자체 투자금 00백만원		
사 업 기 간	(당초) 20**년 **월 **일 ~ 20**년 **월 **일 (변경)	기 간	*년간
사 업 이 력	기 본 계 획 — 20**.**.**.(승인) 시 행 계 획 — 20**.**.**. (승인) 사 업 시 행 — 20**.**.**. (착공) 사 업 준 공 — 20**.**.**.		

1. 사업 추진실적(물량)

구 분		수량	단위	년도별 추진실적(물량)				
				1차 년도 ('00)	2차 년도 ('00)	3차 년도 ('00)	4차 년도 ('00)	5차 년도 ('00)
기초 생활	마을센터							
	마을내도로							
소득 증대								
경관 개선								
역량 강화								

※ 지구실정에 맞게 항목 및 세부사업명 조정 가능

○○사업 준공 현황사진

야외공연장	
• *위 치 : **군 **면 *리 **번지* • *사업규모 : 연면적 **㎡* • *사 업 비 : **(천원) (국비**,지방비**)* • *공사기간 : '**.**.~'**.**.* • *운영주체 : **면장* • *관 리 자 : **군수(**면장)* • *등기주체 : **군* • *준공 전 사용허가 여부 : 2017. 3. 허가* • *운영개시 : '**.**	*준공사진*
주차장 조성	
• *위 치 : **군 **면 *리 **번지* • *사업규모 : 면적 **㎡* • *사 업 비 : **(천원) (국비**,지방비**)* • *공사기간 : '**.**.~'**.**.* • *운영주체 : **면장* • *관 리 자 : **군수(**면장)* • *등기주체 : **군* • *준공 전 사용허가 여부 : 부* • *운영개시 : '**.**	*준공사진*
어촌특화간판정비	
• *위 치 : **군 **면 *리 **번지* • *사업규모 : **개소* • *사 업 비 : **(천원) (국비**,지방비**)* • *공사기간 : '**.**.~'**.**.* • *운영주체 : **면장* • *관 리 자 : **군수(**면장)* • *운영개시 : '**.**	*준공사진*

첨부 : 준공도서 1식.

55 양식시설현대화자금지원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과 장 조성대 〈해 면〉 사무관 오상필 〈내수면〉 사무관 박승희	044-200-5430 044-200-5642 044-200-5637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해면 및 내수면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에 기여

2. 기본방향

○ 자유무역협정 체결 가속화에 따른 시장 완전개방 이전에 고부가가치의 양식품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대화된 양식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양식 수산물의 위생안전 확보,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을 위해 친환경양식시스템 및 첨단 자동화 시스템 시설로 개량

3.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수산업법」 제86조(보조 등) 행정관청은 수산업 및 기르는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수산업법」제54조(기르는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하여 기르는 어업에 관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업을 하려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내수면어업법」 제17조(보조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내수면어업을 장려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4. 성과목표 및 지표

○ 양식어업인의 노후화된 양식시설을 현대식으로 개선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생활 안정

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7까지	'18	'19계획	'20계획
사업물량(개소)	2,565	1,765	300	250	250
이차보전	34,816	27,741	7,075	-	-
사업비 계	494,712	314,712	75,000	52,500	52,500
융자지원(수협은행)	410,648	266,648	60,000	42,000	42,000
자부담	73,564	33,064	15,000	10,500	15,000

6. 2019년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지원규모 (개소)	지원액		
		계	융자	자담
계	250	52,500	42,000	10,500
해면양식 및 육상양식·종묘생산시설	200	42,000	33,600	8,400
내수면양식시설	50	10,500	8,400	2,100

※ 지원규모 : 해면:내수면=8:2, 지자체 수요조사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허가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해면양식업자)

- 제8조에 의한 면허(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를 받은 자 *한정어업면허 포함
  · 수산업법 제33조에 의한 행사계약에 의한 어업권자도 포함
- 제41조 제3항에 의한 허가(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를 받은 자
  · 허가를 받아 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어업인 또는 단체(내수면양식업자)

- 신고를 하고 양식장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 또는 단체도 포함

○ 개인어장을 대상으로 하되, 어촌계·영어조합법인·내수면어업계 등 생산자단체의 양식장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2인 이상의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 필요)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양식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비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
- 기존 양식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자
- 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담보능력을 갖춘 자
- 사업자별 사업비 총액의 2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 뱀장어 기존 양식시설 면적의 확장 및 창업 등 신규 사업자. 다만, 동아시아 실뱀장어 자원보호 차원에서 기존 양식장 개보수에 한하여 지원
- 최근 5년내 정부지원사업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자

- 사업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미착수로 교체되어 포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도 사업포기 자는 차후연도 사업신청시 3년간 지원 제한(신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는 지원 제외(신설)
-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3. 지원대상

○ 양식장 및 배양장의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양식어업별 지원대상 시설 및 장비 현황(별표 1)
- 양식시설에 주로 사용되는 시설 및 장비를 우선하고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는 주시설 및 장비가 없는 경우에 대신함
- 어업인 주택 및 종사자 숙소 등 관리사는 제외

4.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한도		
	총사업비	융자지원	본인부담
신 설	80억원이하	64억원이하	16억원이하
증설 또는 개보수	50억원이하	40억원이하	10억원이하

※ 지자체 실정에 따라 지원한도 하한선 지정 가능

5. 지원조건

○ 융자 80%(연리 1%, 3년거치 7년분할 상환), 자담 20%

6. 사업추진기관별 역할

○ 사업총괄기관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자금지원부서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

○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Ⅲ. 사업시행방법 및 절차

1. 사업계획수립 단계

○ 사업집행지침 시달 및 사업물량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지사 및 수협은행장에게 시달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양식어업 면허·허가건수 및 어장면적 등을 감안하여 시·도별 사업물량 및 융자금을 배정(별지 1)한다.

○ 사업 계획의 수립·시달

- 사업집행주체는 융자금 배정액 및 사업 배정물량에 따라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시달한다.
- 주관기관은 세부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별지 2)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사업신청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를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동 계획서 검토 후 어업인에게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발급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발급 시 반드시 융자 가능액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양식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사본,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를 구비하여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별지 5)와 함께 주관기관에 신청한다.
  · 다만, 양식관련 허가 예정자로 양식관련 허가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준하는 양식시설예정 건축물 또는 부지의 사용가능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별표 2)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50% 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다만, 지자체 양식어업여건에 따라 (별표 2) 외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집행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한다.
- 주관기관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 상의 융자가능액을 참고하여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비지원(융자지원) 한도를 산정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 나 사업자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이 미착수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예비대상자 또는 신규대상자로 대체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은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어장여건이나 지역특성에 따라 시설의 내역, 규모 및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원개소, 지원규모 및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사업신청자 중 사업이 사전에 착수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다만, 전년도 사업자 중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출기한 연장신청을 일실한 사업자에 한하여 주관기관은 현지·확인 점검을 통해 사업완료 여부와 대출기한 연장 미신청 사유 등을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전년도 사업자가 재선정되는 경우는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 등을 전년도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3. 사업비 집행단계

○ 융자신청·지급
- 주관기관은 최종 사업대상자가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6)를 제출하면 사업 이행상태를 확인한 후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6)를 발급한다.
- 최종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6),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신청서(별지 7)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사업대상자별 사업비의 80%를 융자금으로 지급한다.
  ·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수협은행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지급
- 대출취급기관인 수협은행은 매월 익일 10일까지 융자금 지원규모에 맞춰 사

업총괄기관에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서(별지 8)와 관련 근거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서(별지 8)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부서에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을 요구한다.
- 자금지원부서는 수협은행장에게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자금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총괄기관에 통보한다.

4. 사업결과 관리단계

○ 융자금지원결과 보고

- 수협은행장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융자금 지원결과 및 이차보전 집행결과(별지 9)를 사업총괄기관과 사업집행주체(주관기관)에게 보고한다.
- 주관기관은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사업추진실적(별지 10)을 사업집행주체에게 보고하고 사업집행주체는 이를 취합하여 사업추진실적(별지 10)을 매분기 익월 20일까지 사업총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Ⅳ. 행정사항

1. 사업관리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주관기관은 관리감독자로서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사업집행주체와 공동으로 연 2회이상(상·하반기 각 1회) 현지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후 3개월이내 사업미착수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2. 사후관리

○ 주관기관은 필요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12월중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물량배정 등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한다.

○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건립된 시설 및 장비 등은 다음의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양식시설현대화지원	◦ 기계·장비, 파이프 등 ◦ 건축물	◦ 5년 ◦ 10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3. 사업추진일정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양수산부) : ‘18.12월

○ 세부사업시행지침 작성 시달(시·도지사) : ‘18.12월

○ 사업수요조사(해양수산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18.11월

○ 사업물량 배정(해양수산부, 시·도지사) : ‘19.1월

* 융자실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시·도간 사업물량 조정 배정

○ 사업계획 공고(시장·군수·구청장) : ‘19.1월~계속

○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시장·군수·구청장) : ‘19.1월~계속

○ 융자금 지원신청 및 융자금 지급 : ‘19.1월~계속

○ 대상 사업자 및 사업규모 확정 : ‘19. 2. 28.

○ 사업자 선정현황 및 추가 사업수요 제출 : ‘19. 3. 5.

○ 사업물량 재배정(해양수산부, 시·도지사) : ‘19. 3. 7.

4. 기타사항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 보조 및 융자사업에 관한 관리규정」,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적법·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 1]

양식어업별 시설 및 장비 등 대상시설물 현황

구분		양식대상	양식방법	현대화사업 대상시설 및 장비
공 통				관리선, 선별·포장기, 건조기, 냉동장치, 특수차량, 보안용CCTV
해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면허	해조류양식	수하식, 바닥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패류양식	수하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살포식, 투석식	투석용 돌
			침하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부이, 닻 등
			가두리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등
		어류등양식	가두리식	가두리구조물, 로프, 브이, 닻, 작업바지선, 사료저장고(배합사료만 해당),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수하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바닥식	구획시설
	허가	육상해수양식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배합사료만 해당),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종묘생산	수조식	수조, 침전조, 정화조, 사료저장고 건축물 및 전기, 수도 설비 해수 인입, 배수 시설, 양식용 파이프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등
			축제식	축제시설, 작업장 건물 등
			밧줄식, 말목식, 뗏목식	밧줄, 지주목, 부자, 닻 등
내수면 양식 주시설 및 장비	신고	육상양식 (양성 및 종묘생산)	수조식	수조, 침전조, 여과조, 건축물 및 전기·수도설비, 관정,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살균시설, 보일러, 산소공급장치, 자동선별기, 드럼스크린, 피쉬펌프, 사료배합기, 발전기,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자동전기설비 등
			노지식	담수 인입 및 배수 시설, 자동급이시설, 수온·산소 자동점검장치, 산소공급장치, 관정, 다목적 저온저장고(사료저장고), 사료배합기, 발전기 등

※ 공통시설 및 장비는 해면양식 및 내수면양식 주시설 및 장비의 후순위로 함

※ 위에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양식장 필요시설 및 장비는 해당됨

※ 관리선 및 장비는 신조 및 새로운 장비구입에 한함.

[별표 2]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구분	우선순위
공통사항	ㅇ FTA로 영향은 받았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는 품목 생산자 ㅇ 수출주력 품목 생산자
해면양식 및 육상양식·종자 생산 시설	1. 고수온 대응 취수관 개선 양식장 2.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양식장 3.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 4.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으로 양식시설을 설치한 자 5. 양식장을 HACCP 시설로 등록한 자 6.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사업 참여자 7. 수산물이력제에 가입한 자 또는 자조금 사업 참여자 8.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을 설치한 자 ※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
내수면양식	1.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자 2. 양식장을 HACCP 시설로 등록한 자 3. 수산통계 모니터링 참여자 4. 수산물이력제에 가입한 자 또는 자조금사업 참여자 5.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인버터)을 설치한 자 ※ 동일순위자간 우선순위는 허가된 수면적이 적은 자

[별표 3]

사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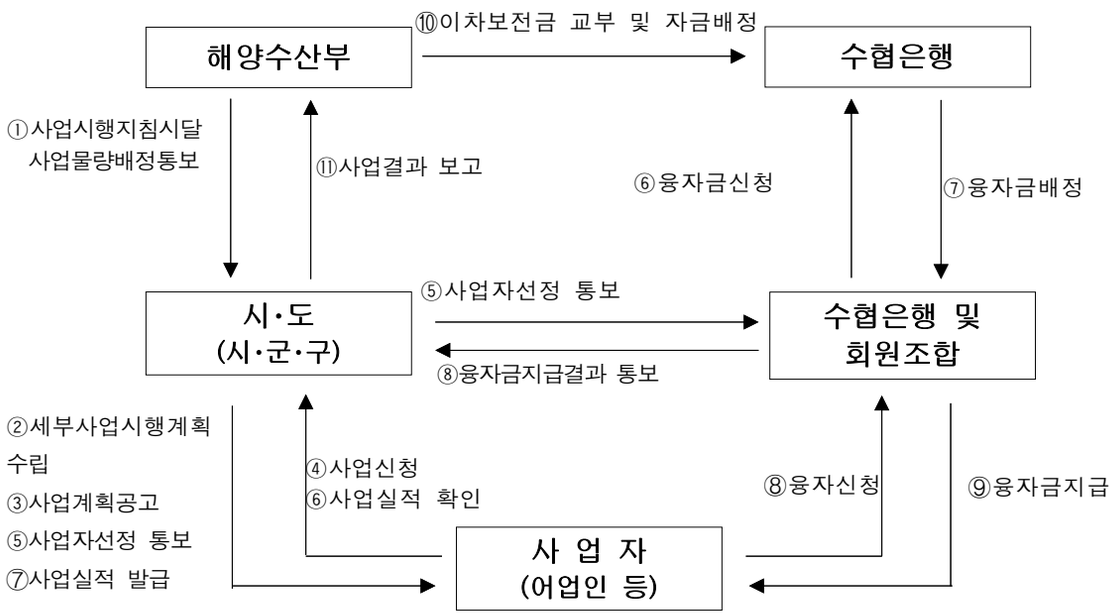
⑩이차보전금 교부 및 자금배정
해양수산부
수협은행
①사업시행지침시달
사업물량배정통보
⑪사업결과 보고
⑥융자금신청
⑦융자금배정
⑤사업자선정 통보
시·도
(시·군·구)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⑧융자금지급결과 통보
②세부사업시행계획
수립
③사업계획공고
⑤사업자선정 통보
⑦사업실적 발급
④사업신청
⑥사업실적 확인
⑧융자신청
⑨융자금지급
사 업 자
(어업인 등)

[별지 1]

시·도별 사업물량 및 융자금 배정

시·도	사업물량 (개소)	융자금 배정액(백만원)								비고
		합계	해면				내수면			
			소계	해면 양식	육상 양식	종묘 배양장	소계	육상 양식	종묘 배양장	

※ 사업수요가 많은 경우 어업세력 등을 감안 적의 안배

※ 시·도 어업여건 등 형편에 따라 해면 및 내수면 융자배정액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별지 2]

(시·군·구)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

1.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ㅇ 지원내용

ㅇ 융자금 지원규모

ㅇ 융자금 지원조건 및 상환방법

2. 신청자격 요건 및 제외대상

ㅇ

3.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및 제출서류

ㅇ

4. 사업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5. 기타 유의사항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별지 3]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계획서

1. 사업개요

ㅇ 신축 또는 개보수 여부

ㅇ 시설 개량 또는 장비 교체 등

2. 자산 및 부채

(단위 : 천원)

자 산			부 채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계						

※ 자산 : 부동산, 동산, 예적금, 공제(보험)

※ 부채 : 금융거래확인서상 부채

3.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천원)

총액	융자지원금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및 근거서류 제출

4. 사업비 명세

품 명	규 격	단 가	수 량	금 액 (천원)	비 고
계					

5. 사업추진일정

ㅇ 공사착수예정일

ㅇ 공사준공예정일

ㅇ 융자금 요청시기 : 년 월 일

ㅇ 준공후 결과 보고일 :

6. 제출서류

ㅇ 부동산 및 동산 등 제공담보 관련 서류 일체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동산)목록, 등기부등본 등

ㅇ 금융거래확인서

ㅇ 자부담 관련 서류

[별지 4]

양식시설 현대화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

(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 사실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유	무

3. 소요금액

사 업 명	총사업비(㉮+㉯)	㉮융자(80%)	㉯자담(20%)

4. 융자가능액(㉮+㉯+㉰) : 천원

㉮ 동산 · 부동산

담 보 종 류	감정가액①	담보인정비율②	선순위 설정금액③	융자가능금액 (①*②-③)

* 담보대출의 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 감정가액은 탁상감정으로 평가

㉯ 보증서

담 보 종 류	보증한도	한도산정	비 고
간이신용	5천만원 이내		
일반신용	3억원 이내		
정식신용	3억원 초과시		

※ 농신보 보증센터 보증서로 갈음 가능

㈐ 기타담보

담 보 종 류	담 보 가 액	대출가능금액	비 고

5. 유의사항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정부지침 또는 대출취급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한 정식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대출적격 여부 심사에 의해 대출 가부가 최종 결정됨

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수협은행 ( ) 지점장 (인)

[별지 5]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서

<table>
<tr><td>양식어가
(단체)명</td><td colspan="5"></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td><td>생년월일
(남/여)</td><td></td><td>전화
번호</td><td>( )
-</td></tr>
<tr><td>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td><td colspan="5"></td></tr>
<tr><td>양식장 주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td><td colspan="5"></td></tr>
<tr><td>양식어종</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양식장면적
(신청일 기준)</td><td>(면허·허가·신고)면적</td><td colspan="2">㎡</td><td rowspan="2">양식방법</td><td rowspan="2"></td></tr>
<tr><td>수면적</td><td colspan="2">㎡</td></tr>
<tr><td>사 업 명</td><td colspan="5">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td></tr>
<tr><td rowspan="2">사 업 비
(천원)</td><td>계
(100%)</td><td>융자신청액
(80%)</td><td colspan="2">자부담
(20%)</td><td>비 고</td></tr>
<tr><td></td><td></td><td colspan="2"></td><td></td></tr>
</table>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 1. 양식업 관련 허가증(면허·신고) 사본 1부.

2.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3. 양식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사업자선정용신용조사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ㅇ ㅇ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청하는 경우 연체 신용관리대상 거래처, 주사업장 권리침해 등 보증제한사항 없이 보증심사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가능함.(개인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산정)

[별지 6]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실적(계획)확인서

1. 사업자 현황

양식어가 (단체)명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
주 소					

2. 융자금 지원 신청액 : 천원

3. 사업추진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 일정	추진현황 (진도)
		계 (100%)	융자금 (80%)	자부담 (20%)		

4.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계획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기 알려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

( ) 귀하

[별지 7]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신청서

<table>
<tr><td>양식어가명</td><td colspan="5"></td></tr>
<tr><td>성 명
(대표자명)</td><td></td><td>생년월일
(남/여)</td><td></td><td>전화
번호</td><td>( )
-</td></tr>
<tr><td>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td><td colspan="5"></td></tr>
<tr><td>양식장 주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td><td colspan="5"></td></tr>
<tr><td>양식어종</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2">양식장면적
(신청일 기준)</td><td>(면허·허가·신고)면적</td><td colspan="2">㎡</td><td rowspan="2">양식방법</td><td rowspan="2"></td></tr>
<tr><td>수면적</td><td colspan="2">㎡</td></tr>
<tr><td>사 업 명</td><td colspan="5">양식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td></tr>
<tr><td rowspan="2">사 업 비
(천원)</td><td>계</td><td colspan="2">융자신청액</td><td colspan="2">자부담</td></tr>
<tr><td></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able>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수협은행 ( ) 지점장 귀하

※ 귀하의 신용도 또는 담보제공 능력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별지 8]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서

1. 신청자의 주소 및 명칭

2. 사 업 명 :

3. 사업시행기간 :

4. 보전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적

나. 내용

5. 보전금 교부신청내용

가. 총 요보전액(A) :

나. 기 수령액(B) :

다. 금차 교부신청액(A-B) :

위와 같이 년 월 일 ~ 년 월 일 기간 중 운용분 양식시설 현대화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위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확정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이차보전금 교부결정 및 확정신청액 계산내역서

2. 계좌이체 지정 의뢰서

3. 수산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액 총괄표

년 월 일

신청자의 주소 :

수협은행 은행장 000

[별지 9]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집행결과(분기)

1. 융자지원 현황

(단위 : %, 천원)

시·도	시군구	양 식 어가명	성명	융자금 (A)	융자지원내역			
					실 융자금 (B)	융 자 실행율 (B/A)	최초 융자일 (년월일)	융 자 만기일 (년월일)
합계								
	소계							

2. 이차보전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

2018년 예산 (A)	계 (B+C)	기집행액 (B)	해당분기 (C)	집행율 ((B+C)/A*100)

* 작성파일 : 한글 또는 엑셀

[별지 10]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결과(분기)

1. 총괄

(단위 : 천원)

시·도	구분	지원건수 (건)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내역			
			총사업비			실융자금
			계 (A+B)	융자금 (80%) (A)	자부담 (20%) (B)	
	해면					
	내수면					

2. 사업대상자별 지원실적

(단위 : %, 천원)

사군구	양식어가명	성명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내역									
			해면·내수면	어업종류	사업내용	총사업비			융자지원		최초 융자일 (년월일)	융자 만기일 (년월일)
						계 (A+B)	융자금 (80%) (A)	자부담 (20%) (B)	실 융자금 (C)	실 융자율 (C/A)		
계												

* 작성 시 유의사항

- 어업종류 :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등 인허가사항 작성
- 사업내용 : 양식대상 수생생물을 포함, 00양식시설 신축 또는 00양식시설 개보수 또는 00장비 교체(도입)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작성파일 : 한글 또는 엑셀

56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과 장 : 김종모 사무관 : 박상혁 주무관 : 최정호	044-200-5505 044-200-5527 044-200-5528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감소

2. 근거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선진화사업에 대한 지원)

○「수산업법」제86조(보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보조대상사업) 제9호(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지원 사업)

3. 성과목표 및 지표

○ 어선사고 절감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 산출 시기	측정방식	비고
		'16	'17	'18			
▪5톤 미만 소형어선 사고 사망·실종자 수 감소율(%)	0.0428	-	0.0430	0.0429	12월	5톤 미만 소형어선 사고 사망·실종자 수(금년도) / 5톤 미만 소형어선 전체 척수(전년도)× 100	·최근 5년('11~'15) 평균치(0.0431)보다 0.0002% 감소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공시통계 활용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ㅇ 합 계	3,800	3,633	3,633	3,633
- 국 고	1,140	1,090	1,090	1,090
- 지방비	1,140	1,090	1,090	1,090
- 자부담	1,520	1,453	1,453	1,453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5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

* 단, 팽창식구명조끼 및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는 10톤 미만 연안어선 소유 어업인까지 지원 가능

2. 사업자격 및 사업운영, 선정 제외대상

ㅇ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의 설치(구매)를 희망하는 자

ㅇ 지원 제외 대상

- 수산관계 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이 완료되지 않는 자
-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 기타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시스템(CCTV, 조타실 모니터, 탐지기, 자동소화기 포함), 팽창식 구명조끼(저체온 등 기능성 향상제품 포함),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자금의 재원 : 일반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단가/사업물량

- VHF-DSC : 120만원 이내(GPS 연동 및 설치비 포함) / 1,373대 내외
  * VHF-DSC(초단파대 무선전화)는 GPS가 연결되어야 유사시 사고위치를 알 수 있음
- 자동소화시스템 : 165만원 이내 / 297대 내외
  * 기관실 설치장소 협소 등을 감안하여 2종장비(30만원/ 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를 보급하고, 현장 어업인 희망에 따라 1종 장비(165만원/ 무인기관실 CCTV 및 조타실 모니터, 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등 설치 가능
- 구명조끼 : 14만원 이내 / 5,266벌 내외
  * 단 저체온 예방 등 기능성 향상제품은 30만원 이내

☞ 구명조끼의 경우 척당 최대 승선인원 수 만큼 지원이 가능하며, 소방 또는 항해안전 장비와 중복 지원 가능

-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 125만원 이내 / 596대 내외
  * 해양경찰청에서 1차('11～'12년)로 연안어선(10톤미만)에 보급한 V-Pass단말기(EMT-9400C) 교체에 한함

○ 사업내역 변경 필요시 시·군·구에서 자체결정
  * 시·군·구 → 시·도에 변경사항 통보(변경사유 발생시) → 우리부 변경사항 통보(반기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 구매가액(설치비 포함)의 보조 지원율
  * 수협중앙회 어업용 기자재 구매단가 체결제품 구입을 원칙으로 하나, 시·도에서 어업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별도 구매계약 체결 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에 통보

시·도(시·군·구)

○ 사업 수요조사, 사업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을 근거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자 공고·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배부 및 언론매체(지방지 등)에 게재

○ 사업자 모집 공고기간 : 2019. 1. 5. ~ 5. 30.

* 지자체 실정을 감안하여 모집공고 기간을 설정하되, 단, 사업별 포기자 발생 또는 희망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별로 별도 예비사업자 또는 추가모집 가능

** 구명조끼 구매에 대해서는 어업인 의견수렴 필요(현장의견 반영)

수협중앙회(일선조합)

○ 사업자 모집 공고 및 희망 수요자 모집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배부

○ 사업에 필요한 기종별 공동구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지자체 및 해양수산부에 통보

어 업 인

○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지자체 사업담당 부서에 신청

* 사업신청서는 시·도(시·군·구) 사업담당 부서에 비치

2. 사업신청 단계

해양수산부

○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적격 사업자 선정 지도

시·도(시·군·구)

○ 사업신청서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집행 주체(시·군·구)별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

* 기타 시·도 자체실정에 따라 우선순위 조정·추가 가능

○ 소방 및 항해안전장비 사업자 우선순위는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 상호간의 세부 우선순위는 톤수가 작은 어업인 순으로 함

- 허가어업어선 우선 → 기타 면허·신고어업 어선 순

-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어업인 우선

* 단 추가모집 사업자 선정시 지자체 판단에 의거 심의생략 가능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자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자 명단, 지원금액 등 공동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3. 사업자선정 단계

시·도(시·군·구)

○ 세부사업계획을 2019. 2월까지 수립하여 수협중앙회 및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통보

○ 사업자로 하여금 수협중앙회 공동구매 단가계약 체결된 장비를 해당 지역별 수협조합장에게 신청하여 사업대상 어선에 설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 시 이를 교육

수협중앙회(일선수협)

○ 사업자별 장비조달업무(수·발주, 검수, 대금정산, 세무, 제품 사후관리 등) 등 보조업무 수행

4. 자금배정단계

해양수산부

○ 2019. 2월까지 시·도별 자금배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송금

시·도(시·군·구)

○ 2019. 1월까지 해양수산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비 지급은 어업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어 설치하고자 하는 장비·설비 등이 어선에 설치가 완료되어 수협의 납품, 설치확인증이 제출되는 경우 확인 후 교부금 지급

- 단, VHF-DSC 경우 관할 어업정보통신국의 시험통신확인증과 교신가입증을 확인 후 교부금 지급

- 구명조끼의 경우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공동구매 제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부담금을 수령하는 등 신속한 집행방안 마련 시행 필요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추진실적, 자금집행상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점검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장비·설비	해당물품 검수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 단, 취득가액 50만원 이하는 관리에서 제외

해양수산부

○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 현황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사업 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6월, 11월)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수립 적정성 등

《제재》

사업관리주체 (시·도, 시·군·구)

○ 보조금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자를 지도·감독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는 **다음연도 예산**을 **30%내 절감*** 조치

* 18년도 집행실적 검토 후 20년도 예산에 반영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어선 안전설비 지원사업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하여 성과지표 측정

- 평가기관 : 해양수산부
- 주요 측정지표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 평가일정 : 사업종료 후 1회(익년 상반기내)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 지자체에 대한 사업물량 확대 및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환 류》

○ 사업추진 실적 평가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2020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발굴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군·구별 관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시자에게 제출(4월말)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양수산부에 2020년도 예산 신청(5월말)

○ 해양수산부 사업담당자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를 반영하여 2020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 해양수산부는 정부(안)에 대해 시·도에 통보(9~10월)
- 시·도는 정부(안)에 따라 예산 확보 추진

○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시·도별 사업량 배정(12월말)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하되, 사업시행지침서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지침서를 준용하여 신청

57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구.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어선정책팀	팀 장 김종모 사무관 김형덕 주무관 이형록	044-200-5505 044-200-5523 044-200-5507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에너지 절감, 자원 남획 방지, 어선원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 구축

2. 기본방향

□ 한·중·일 공동이용 어장에서 주변국과의 경쟁력 확보 등 산업적 육성이 필요한 업종의 노후어선을 대상으로 현대화를 지원

3.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어업선진화사업의 추진) 및 제17조(어업선진화에 대한 지원) 등

□「어선법」제33조(표준어선형의 개발)

4. '19년도 성과지표 및 목표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최근 3개년 목표/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6	'17	'18		
▪ 현대화 지원 어선의 에너지 절감 정도(%)	7	10	7	-	2월	단위 시간당 유류 소비량 감소비율 (기존선 톤당마력-현대화어선 톤당마력)/기존선 톤당마력×100

5.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18	'19계획	'20계획
사업물량(톤)	400	400	400	400
정부 이차보전예산액	833	833	833	833
사업비 계	17,778	17,778	17,778	17,778
수협은행 융자지원	16,000	16,000	16,000	16,000
자부담	1,778	1,778	1,778	1,778

* 융자금은 수협은행이 부담하고 정부는 기준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보조

** 사업물량은 예산 한도내에서 선정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어선(부속선 포함)으로서, 노후어선을 대체하여 현대화 어선으로 건조하고자 하는 자

○ 공동이용 어장 등에서 주변국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업종

○ 그 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

※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표준어선형 연구개발사업(R&D) 시제선 건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에너지 절감, 자원남획 방지, 어선원 복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하고자 하는 자

※ 노후어선 : 선령 15년 이상 선체·기관·장비·설비 등의 노후화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많고, 어선원 복지공간이 열악한 환경의 어선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제외대상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여신기관의 대출심사 규정에 자격 미달인 자

○ 최근 2년 이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2년 이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

3. 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 지원범위

○ 노후어선의 현대화 표준설계에 따른 시설 및 기계 장비 등 일체의 유형물(소모품 제외)

- 단, 현대화 표준설계는「어선법」관련 어선설비기준 고시 등에 따른 시설기준이 충족되어야 함

□ 우선순위

○ 지원 대상 업종의 생산자 단체 의견을 토대로 시·도지사(시·군·구)가 추천하는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단, 선단조업선이 자율적으로 선단규모 축소(선단 총톤수 감톤 등)를 희망할 때에는 최우선 지원하고, 그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하되, 동일한 순위에서는 선령이 높은 어선 순으로 한다.

① 선단 전체 어선의 대체 건조

② 선단 중 본선 포함 일부 어선의 대체 건조

③ 선단 중 운반선을 대체 건조

※ 선단에서 운반선 2척 이상 대체 건조 희망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에서 합의된 사항을 토대로 시·도지사(시·군·구)가 사업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

4. 지원규모 및 한도

□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지원물량	지원액		
		계	융자	자담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 건조	400톤	17,788	16,000	1,788

※ 지원대상 업종에 따라 건조선가 차이로 사업물량은 변동 가능

□ 지원한도

구분	사업비 지원한도		
	총사업비	융자지원	본인부담
연근해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노후어선 대체건조	실 투입 비용의 90%	실 투입 비용의 10%

5. 지원조건

□ 이차보전 예산액 : 국고보조 833백만원

□ 지원조건 : 융자 90%, 자담 10%(15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정책금리 : (개인) 고정 2.0% 또는 변동, (업체/법인) 3%

※ 변동금리는 대출취급기관의 기준금리와 연동되기 때문에 변동 가능

6. 사업추진기관별 역할

□ 사업총괄기관 : 해양수산부(어선정책팀)

□ 사업집행주체 : 시·도(시·군·구)

□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Ⅲ. 사업시행방법 및 절차

1. 사업계획 단계

□ 사업집행지침 시달 및 사업물량 배정

○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시·군·구) 및 수협은행장에게 시달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업종별 감척상황 및 노후화 정도를 감안, 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시·도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시·도별 사업물량 및 융자금을 배정(별지 1호)한다.

□ 사업 계획의 수립·집행

○ 시·도지사(시·군·구)는 융자금 배정액 및 사업 배정물량에 따라 세부사업 시행계획(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 집행한다.

2.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 사업신청

○ 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서(별지 2호), 사업계획서(별지 3호) 및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호)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 신청한다.

- 사업 신청자는 사업신청 전에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상담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별지 4호)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 사업신청자의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하고 보완 후 다시 신청하게 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의 장은 사업 신청자로부터 사전 대출상담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용조사 의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하여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를 작성하여 사업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사업 신청자는 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 시 관련서류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시·도지사(시·군·구)는 어선의 노후화 정도, 자원에 미치는 영향, 감척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체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신용조사 결과에 따른 대출 부적격자 발생을 감안, 50% 범위 내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용조사 및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융자금 대출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로 선정 할 수 없다.

○ 시·도지사(시·군·구)는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지연되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비대상자 또는 신규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대체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업비지원(융자지원) 한도는 사업자선정용 신용조사서(별지 4호) 상의 담보 여력액을 참고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군·구)는 사업지원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단가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및 사업신청자 경합 시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시·도지사(시·군·구)는 사업자 선정 이전 본인 부담으로 노후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발주허가를 득한 후 새로운 어선으로 건조중인 경우 사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3. 사업비 집행단계

□ 융자신청·지급

○ 시·도지사(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실적(계획) 확인서(별지 5호)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 이행상태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한다.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와 융자금지원신청서(별지 6호)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신용도, 담보능력 등을 확인한 후 노후어선의 현대화어선 대체 건조 비용의 90% 범위내에서 융자금을 지급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금 대출 시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사업자로부터 관계 증빙자료(조선소 계약, 장비구입 등)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융자금의 대출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

□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지급

○ 대출취급기관은 매월 융자금 지원규모에 맞춰 사업총괄기관에 이차보전금 예산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 요청서에 따라 신청한다.

○ 사업총괄기관은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 교부결정 및 자금을 배정하고, 그 결과를 대출취급기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4. 사업결과 관리단계

□ 융자금 지원결과 보고

○ 시·도지사(시·군·구)는 사업추진실적(별지 7호)을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출취급기관은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융자금 지원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및 수협은행장(회원조합)은 사업신청과 관련된 증거서류, 계산서, 첨부서류 등 사용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Ⅳ. 행정사항

1. 사업관리

□ 사업자는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군·구)는 관리감독자로서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이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및「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사후관리

□ 시·도지사(시·군·구)는 필요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사후관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시·도지사(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지원된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11월중 사업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년도 사업물량배정 등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한다.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으로 대체 건조한 어선(부속시설, 종물을 포함한다)은 다음의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 업 명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 현대화로 대체 건조한 어선	○ 10년	매각·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각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재

○ 자율적 선단규모 축소를 희망하여 최우선적으로 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은 선단의 경우, 사업 종료 후에도 축소한 선단의 척수, 톤수 등을 복원할 수 없다.

○ 동 선단은 향후에도 노후어선 현대화 목적 및 본 사업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하고 향후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 1]

사업 추진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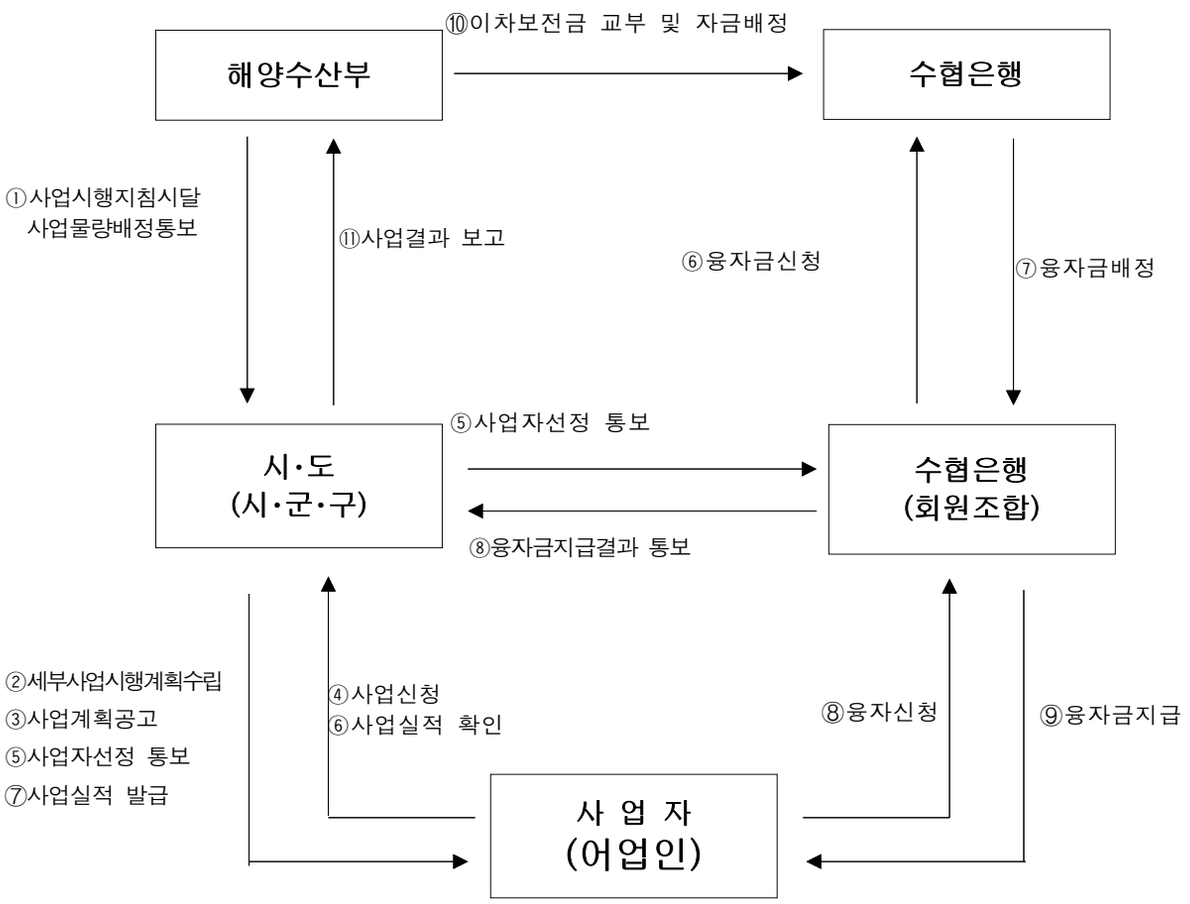
⑩이차보전금 교부 및 자금배정
해양수산부
수협은행
①사업시행지침시달
사업물량배정통보
⑪사업결과 보고
⑥융자금신청
⑦융자금배정
⑤사업자선정 통보
시·도
(시·군·구)
수협은행
(회원조합)
⑧융자금지급결과 통보
②세부사업시행계획수립
③사업계획공고
⑤사업자선정 통보
⑦사업실적 발급
④사업신청
⑥사업실적 확인
⑧융자신청
⑨융자금지급
사 업 자
(어업인)

[별지 제1호서식]

시·도별 사업물량 및 융자금 배정

(단위 : 백만원)

시·도	사업물량			배정액	비고
	건조척수	척당 건조가격	소요금액		

※ 사업수요가 많은 경우 어선세력, 노후화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정 가능

[별지 제2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구.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지원 신청서

<table>
<tr><td>사업자명(대표자)</td><td colspan="2"></td><td>상호(법인명)</td><td colspan="2"></td></tr>
<tr><td>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주소(소재지)</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4">피대체어선</td><td colspan="5">근해어업허가 번호 :</td></tr>
<tr><td colspan="5">근해어업의 종류와 명칭 :</td></tr>
<tr><td>선 명</td><td>톤 급</td><td>기관및마력</td><td>선질</td><td>진수연월일</td><td>피대체어선
소유기간</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신조어선
건조계획</td><td colspan="5">근해어업의 종류와 명칭 :</td></tr>
<tr><td rowspan="2">톤 급</td><td rowspan="2">기관및마력</td><td rowspan="2">선질</td><td rowspan="2">피대체어선
처리계획</td><td colspan="2">예정공기</td></tr>
<tr><td>착공일</td><td>준공일</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6">해양수산부 농어촌특별구조개선자금의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 건조 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또는인)

시·도지사(시·군·구) 귀하</td></tr>
<tr><td colspan="6">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피대체선 어업허가증 사본 1부
3. 신용조사서(대출취급기관 발급) 1부</td></tr>
</table>

[별지 제3호서식]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구.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계획서

1. 사업목적

O

2. 2019년도 사업계획

O

※ 노후어선 대체건조를 위한 구체적 추진일정과 계획 등을 명시

3. 예금 및 부채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현황			부채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4. 사업비 부담계획 및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O 사업비 부담계획

(단위 : 백만원)

총액	융자지원금	자부담	자부담 조달계획

※자부담 조달계획 구체적 작성 및 근거서류 제출

O 융자금의 분기별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자금명	합 계	2019. 1/4	2/4	3/4	4/4

5. 융자금의 사용용도 및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용용도	금 액	산출내역	비 고
계			

6. 담보제공 방법 및 내역

가. 담보물의 종류 :

※ 예) 동산 및 부동산, 선박,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각종 신용보증서

나. 담보가액 : 원

다. 담보내역(해당되는 경우 기재)

(단위 : 백만원)

구분	담보 재산명	담보재산의 위치 및 용도	담보재산의 규모(㎡)	담보재산의 예상가액	기 담보설정액
1					
2					
3					

* 융자 신청 시 실제 담보로 제공할 대상만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 선정용 신용조사서

(년 월 일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 지침상 대출 적격 여부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관리대상자 등록 여부	
유	무	연체금액	유	무	유	무

3. 소요금액

사 업 명	총사업비(㉮+㉯)	㉮융자(90%)	㉯자담(10%)

4. 담보여력(㉮+㉯+㉰) : _____천원

㉮ 동산 · 부동산

담 보 종 류	감정가액 ①	담보인정비율 ②	선순위설정금액 ③	담보여력 (①X②-③)

※ 담보대출의 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 감정가액은 탁상감정으로 평가

㉯ 보증서

담 보 종 류	보증한도	한도산정	비 고
간이신용	5천만원 이내		
일반신용	3억원 이내		
정식신용	3억원 초과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한 보증서로 갈음 가능

㉰ 기타담보

담 보 종 류	담 보 가 액	담 보 여 력	비 고

※ 행정기관의 사업자 선정 이후 대출신청 시점에서 대출취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정식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대출적격 여부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부를 최종 결정

《 사업신청자 제출서류 》

O 부동산 및 동산 등 제공 담보 관련 서류 일체
-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등

O 금융거래확인서

O 자부담 관련 서류

5. 종합의견

○ 신용등급, 대출가부 등 영업점 의견 작성

년 월 일

( )수산업협동조합장

(인)

수협은행 지점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

1. 사업자 현황

상 호 (법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번호**	( ) -
주 소					

2. 융자금 지원 신청액 : 천원

3. 사업추진내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 일정	추진현황 (진도)
		계	융자금	자부담		

4.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

사업추진실적	사업추진계획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기 알려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 )시·도지사(시·군·구) 귀하

위와 같이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도지사(시·군·구) (인)

( )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융자금 지원신청서

<table>
<tr><td>성 명
(대표자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남/여)</td><td colspan="2"></td><td>전화
번호</td><td>( )
-</td></tr>
<tr><td>주 소
(동, 리 번지까지 기재)</td><td colspan="7"></td></tr>
<tr><td rowspan="2">연간 사업계획
(단위 : 천원)</td><td colspan="2">사업량</td><td colspan="2">총사업비</td><td colspan="2">융자금</td><td>자부담</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2">융자금 신청액
(단위 : 천원)</td><td>교부결정액
(A)</td><td>기 배정액
(B)</td><td>금차 신청액
(C)</td><td>누계
(D=B+C)</td><td colspan="2">잔액
(E=A-D)</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자부담 집행액
(단위 : 천원)</td><td>연간자담액
(A)</td><td>기 배정액
(B)</td><td>금차 집행액
(C)</td><td>누계
(D=B+C)</td><td colspan="2">잔액
(E=A-D)</td></tr>
<tr><td></td><td></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금회
자금소요 내역</td><td colspan="7"></td></tr>
</table>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대체 건조사업을 위한 융자금 지원을 요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수산업협동조합장 귀하

수협은행 지점장 (인)

※ 귀하의 신용도 또는 담보제공 능력에 따라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 별지 7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구.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 사업 추진상황 보고

(ㅇㅇ년 ㅇㅇ분기)

(　　)시·도지사

1. 총괄

(단위 : 천원)

시·도	구분	지원건수 (건)	총사업비			융자 지원금
			계	융자금	자부담	
	건조					

2. 추진현황

(단위 : %, 천원)

시·군·구	사업자명	지원 내역							
		사업내용	총사업비			융자지원		최초 융자일 (년월일)	융자 만기일 (년월일)
			계 (A+B)	융자금 (A)	자부담 (B)	실 융자금 (C)	실 융자율 (C/A)		
계									

일정		사업공정 (%)	년간 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3. 대책 또는 건의사항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수산분야 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수산분야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수산분야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산분야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